2026.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부처별 II)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http://budget.na.go.kr

2026.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부처별 II)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http://budget.na.go.kr

CONTENTS

재 정 경 제 기 획 위 원 회

❖ 기획재정부

Ⅰ. 개 관 ····· 3

1. 결산 개요 ····· 3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 8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0

Ⅱ. 사업별 검토 ····· 12

【총 괄】

1. 국세수입: 추경 및 세수재추계 시 세수오차 최소화 노력 필요 ····· 12

【일반회계】

<세 입> ····· 19

2. 정부출자수입 - 정부출자기업의 배당금 편성 및 배당성향 결정 시 국회 제출자료의 내실화 등 투명성 제고노력 필요 ····· 19
3. 국세물납주식매각대 - 국세물납주식 매각 실패에 따른 세외수입 결손 재발방지 필요 ····· 25

4. 한국은행 잉여금: 높은 환율 변동성에 따른 한국은행 당기순이익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 29

<세 출> ····· 33

5.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기진단 시스템 구축 사업: 시스템 구축사업의 연례적 사업기간 연장 부적정 ····· 33
6. 조세개혁추진단 운영 사업: 임시조직의 운영방식 개선 필요 ····· 36
7. 일시차입금이자상환 사업: 상반기 조기집행 및 추경에 따른 한은 일시차입금 과다 집행 지양 등 ····· 41
8. 재정사업 평가 사업: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 전환을 위한 사전준비 부족 등 ···· 49
9. 분야별 지출구조조정 사업: 2025년 지출구조조정의 적정성 검토 ····· 54
10. 국제협력대사지원단 운영 사업: 임시조직의 불필요한 연장 운영 부적정 ····· 59
11. 한국수출입은행 출자(금융시장 안정화) 사업: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설된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지원 부진 부적정 ····· 63
12. 범부처 통합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 사업: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지연으로 인한 후속과제 지연 유의 필요 ····· 68
13. 청년인턴 급여 등 사업: 채용시기별 청년인턴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사업부진 부적정 ····· 73
14. 기획재정정보화(정보화) 사업: 정보화전략계획(ISP)의 사후적인 통합발주 부적정 및 부처 분리 이후 활용방안 강구 필요 ····· 76
15. 미래융복합경제교육 사업: 미래융복합경제교육의 집행 부진 부적정 ····· 83

【공공자금관리기금】

<총 괄> ····· 86

16. 총괄: 공자기금의 예수예탁 사업의 회계기금별 세부사업 개별 편성 필요 ····· 86

<지 출> ····· 99

17. 국고채이자상환(개인투자용 국채포함): 청약률 제고를 위한 가산금리 대폭 인상 부적정 등 ····· 99

【대외경제협력기금】

<지 출> ····· 106

18. 대개도국차관: 세부사업 간 대규모 자체전용 부적정 ····· 106

19. 경협증진자금 사업진행컨설팅: 당해연도 계획액의 전액 불용 및 상이한 세부사업의 예산 혼용 부적정 ····· 111

【복권기금】

<총 괄> ····· 114

20. 총괄: 복권수익금 법정배분제도 개편 관련 폭넓은 의견수렴 필요 ····· 114

<지 출> ····· 122

21.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햇살론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필요 ····· 122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지 출> ····· 126

22. 특별인프라펀드: 연말 모펀드 신설 등 펀드구조 변경 부적정 ····· 126

【국유재산관리기금】

<지 출> ····· 131

23. 대법원 청주지법 충주지원 신축: 연례적인 기금운용계획변경 지양 필요 ····· 131

【기 타】

24.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 134

❖ 국 세 청

Ⅰ. 개 관 ····· 139

1. 결산 개요 ····· 139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 142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43

Ⅱ. 사업별 검토 ····· 144

【일반회계】

<세 입> ····· 144

1. 징계부가금: 국세청의 공직윤리 제고 노력 강화 필요 ····· 144
2. 벌금 및 과료: 벌금의 징수결정 시기를 통고처분 시점으로 앞당기는 방안 검토 필요 ····· 150
3. 가산금: 가산금의 대규모 불납결손 및 저조한 수납실적 부적정 ····· 155

<세 출> ····· 159

4.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사업: 국선대리인 활용 실적 부진을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159
5.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사업: 시행시기 유예로 집행 불가능한 예산의 연례적 이용 부적정 ····· 166
6. 엔티스 고도화 사업: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ISP 사업의 전용을 통한 신규 추진 부적정 ····· 171

【기 타】

7.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 175

❖ 관 세 청

Ⅰ. 개 관 ····· 179

1. 결산 개요 ····· 179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 182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83

Ⅱ. 사업별 검토 ····· 184

【일반회계】

<세 입> ····· 184

1. 건물대여료: 건물대여료 감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설정 필요 ····· 184

<세 출> ····· 188

2. 특송화물 통관지원 사업: 안전성 검사 및 특송화물의 개장검사 확대 등을 통한 통관관리 강화 필요 ····· 188
3. 수출입화물 검사지원 사업: 세관검사비용 지원율의 잦은 변경 지양 필요 ····· 192
4.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 사업: 부산신항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 지연 ····· 196

【기 타】

5.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201

❖ 조 달 청

Ⅰ. 개 관 ····· 205

1. 결산 개요 ····· 205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 209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210

Ⅱ. 사업별 검토 ····· 211

【조달특별회계】

<세 입> ····· 211

1. 시설계약사업수입(손익): 세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 및 증가하는 미수납액 대책 마련 필요 ····· 211

<세 출> ····· 214

2. 공공혁신조달사업: 혁신조달 관련 성과지표 개선 등 ····· 214
3.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사업: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G-PASS 기업) 제도 성과제고 방안 마련 필요 ····· 222
4.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관련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등 ····· 226
5.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사업: 희소금속 재포장 사업 관리 철저 필요 ····· 232
6. 공급망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 실시설계 연장계약을 고려한 사업 추진 철저 필요 ····· 235
7. 회전자금 전출금 사업: 비철금속 재고순환 관리 철저 필요 등 ····· 238

【기 타】

8.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244

❖ 국가데이터처

Ⅰ. 개 관 ····· 245

1. 결산 개요 ····· 245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 249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250

Ⅱ. 사업별 검토 ····· 251

【일반회계】

<세 출> ····· 251

1. 지방청정보화 사업: 필수 정보보안 예산에 대한 철저한 검토 필요 ····· 251
2. 국가통계 발전 사업: 연례적인 세목조정 지양 필요 ····· 254
3. 국제통계협력강화 사업: 2027년 세계통계대회 개최 취소 및 관련 예산 낭비 부적정 ····· 257
4. 경제총조사 시범예행조사 사업: 조사지역 선정에 대한 사전협의 미흡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부적정 등 ····· 261
5. 인구주택총조사 사업: 부재·불응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266
6. 농림어업총조사 사업: 모집단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통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 269

【기 타】

7.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272

교 육 위 원 회

❖ 교 육 부

Ⅰ. 개 관 ····· 275

1. 결산 개요 ····· 275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 280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281

Ⅱ. 사업별 검토 ····· 283

【총 괄】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중 교부금 규모 변경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불안정성 해소방안 검토 필요 등 ····· 283
2. 고등교육 재정지원: 각 대학의 계열별 전임교원 확보 관련 관리감독 의무 준수 필요 ····· 294
3. 기본경비 과다 이월 지양 필요 ····· 302

【일반회계】

<세 출> ····· 311

4. 보육교직원 인건비 사업: 적정 예산 편성으로 이·전용 및 예비비 사용 지양 필요 ····· 311
5.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사업: 공사 지체에 따른 예산 이월 및 불용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316
6.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사업: 국고-광역지자체 매칭사업으로 사업구조 전면개편 후 실집행률 제고 노력 필요 ····· 320

7. 한국어능력시험운영 사업: 수입대체경비 적정 예산 편성으로 초과지출 규모 축소 필요 ····· 324
8.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 직업계고 졸업자 감소추세와 제도 변경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적정 예산 편성 필요 등 ····· 327
9.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사업과 통합 및 비목 변경 필요 ····· 332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 출> ····· 336
10. 어린이집 확충 사업: 실집행률 제고 위한 관리 강화 필요 ····· 336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 출> ····· 341
1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보조금 조기 교부 필요 등 ····· 341
12.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불용이 예상되는 재원 활용을 위한 일회적 학업장려금 지원 지양 필요 등 ····· 350
13.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 355

【사학진흥기금】

<지 출> ····· 360
14. 학교경영 지원사업(수입대체경비): 대학정보화시스템 관련 다른 일반회계 사업예산과 통합발주 지양 필요 등 ····· 360
15. 병원 필수의료 역량 강화 지원(융자) 사업: 사학진흥기금과 부합하지 않는 융자사업 시행 지양 필요 등 ····· 363

【기 타】

16.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369

❖ 국가교육위원회

Ⅰ. 개 관 ····· 371

1. 결산 개요 ····· 371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 374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375

Ⅱ. 사업별 검토 ····· 376

【일반회계】

<세 출> ····· 376

1.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 사업: 다음 연도 경비 부족에 대비한 기본경비 이월 지양 필요 ····· 376
2.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사업: 국가교육발전계획 적시 수립·시행 필요 ····· 381

【기 타】

3.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38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Ⅰ. 개 관 ····· 387

1. 결산 개요 ····· 387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 393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395

Ⅱ. 사업별 검토 ····· 397

【총 괄】

1. 정부 GPU 확보 사업: 사업관리 강화 및 GPU 현황 관리 체계 마련 필요 ····· 397
2. 추가경정예산 사업 집행 관련: 과제 지원 시 선금 전액 지급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 403
3. 4대 과학기술원 시설 지원: 행정 절차에 따른 적정 예산 편성 필요 등 ····· 407
4. 2025 APEC AI 영상 콘텐츠 공모전 개최 지원: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회계·기금 혼용 주의 필요 ····· 411
5.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R&D) 사업: 연구개발 정산금 회수 노력 강화 필요 ····· 416

【일반회계】

<세 출> ····· 420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액인건비제 운영 관련: 총액인건비 운영 실적 보고의 정확성 제고 필요 ····· 420

7. 한국식품연구원 시설 지원(R&D): 장기 이월 출연금 관리 강화 필요 ····· 423
8. 연구성과 관리·활용 및 운영지원 사업: 전문기관 실태조사 관리 강화 필요 ····· 427
9. 극한부품 시험입증 지원사업(R&D) 사업(신규): 사업 기획 전 면밀한 과제 수요 조사 필요 ····· 431
10. UNIST 캠퍼스 건립(R&D) 사업: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교부 필요 ····· 434
11. 한국고등과학원 시설 지원(R&D) 사업: 주요 내용 확정 후 예산안 편성 필요 등 ····· 437
12. 양자정보과학인적기반조성 사업: 국제공동연구 사업 관리 강화 필요 ····· 440
13. 한국연구재단 기획평가관리비(일반)(R&D) 사업: 연례적 회계연도 불일치 개선 필요 ····· 444
14. AI컴퓨팅자원활용기반강화 사업(신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주의 필요 등 ····· 446
15. 한국산업은행출자(AI컴퓨팅 인프라 확충) 사업(신규): 사업추진 시 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등 ····· 453
16. 대규모 디지털전환 지원 사업(신규): 사업설계 적정성 제고 필요 ····· 457
17.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술개발 및 보급지원(정보화) 사업(신규): 사업비 이월액 표시 등 사업관리 강화 필요 ····· 460
18. World Best LLM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신규): 사업비 이월액 표시 등 사업관리 강화 필요 ····· 464
19.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확산 사업: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주의 필요 ····· 466
20. 최고급AI해외인재유치지원(R&D) 사업(신규): 과제 선정 지연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 468
21. AI챔피언프로젝트지원사업(R&D) 사업(신규, 종료):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조정 시 협의 절차 준수 필요 등 ····· 470

22. 피지컬AI 핵심기술 PoC 사업(신규, 종료): 사업성과 발생 후 후속사업 기획 필요 ····· 476
23. 해외우수과학자 유치 사업: 해외우수과학자의 중도 포기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등 ····· 47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 출> ····· 485

24.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R&D) 사업: 연례적 이월 최소화 필요 ····· 485

【소재 · 부품 · 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세 출> ····· 488

25. 3D프린팅산업 육성기반 구축 사업: 출장비 지급 시 규정 준수 필요 ····· 488

【과학기술진흥기금】

<지 출> ····· 490

26. 연구성과스케일업 펀드 사업(신규, 종료): 주목적 투자의무비율 확대 필요 ····· 490

【정보통신진흥기금】

<지 출> ····· 493

27. AI 혁신펀드 사업(신규, 종료): 사업종료 후 펀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관리 필요 ····· 493

【기 타】

28.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 496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Ⅰ. 개 관 ····· 498

1. 결산 개요 ····· 498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 502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503

Ⅱ. 사업별 검토 ····· 504

【총 괄】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민간경상보조 사업 총괄: 국가사무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지양 필요 ····· 504

【일반회계】

<세 입> ····· 509

2. 벌금 및 과료, 과태료, 가산금 등 일반회계 세입의 징수실적 지속 개선 필요 ····· 509

<세 출> ····· 513

3. WBL 차세대 데이터 구축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시 이월액 기재 필요 ····· 513

【방송통신발전기금】

<지 출> ····· 517

4.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사업: 나눔버스 도입 추가 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 517
5.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사업: 조정의 법정기한 준수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520

6. 디지털콘텐츠 코리아펀드 사업: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한 자펀드 결성 및 투자개시 필요 ····· 523

【기 타】

7.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526

❖ 원자력안전위원회

Ⅰ. 개 관 ····· 527

1. 결산 개요 ····· 527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 531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532

Ⅱ. 사업별 검토 ····· 533

【일반회계】

<세 출> ····· 533

1. 원자력안전위원회 총액인건비제 운영 관련: 총액인건비 관련 적정 예산 편성 필요 ····· 533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사업: 연구개발적립금 집행 관리 강화 필요 ····· 536
3.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사업: 연구개발적립금 집행 관리 강화 필요 ····· 540

【기 타】

4.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543

❖ 우주항공청

Ⅰ. 개 관 ····· 544

1. 결산 개요 ····· 544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 547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547

Ⅱ. 사업별 검토 ····· 549

【일반회계】

<세 출> ····· 5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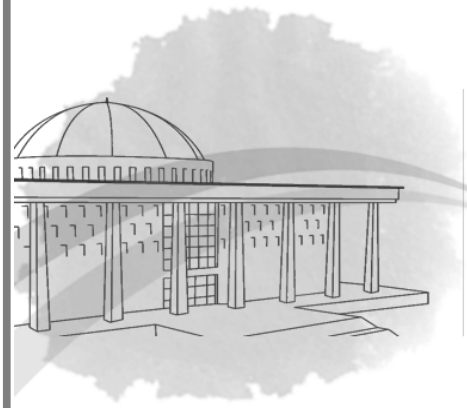
1. 드론제조 국산화 특화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사업(신규): 용역 발주 전 주요 내용 검토 강화 필요 등 ····· 549
2. 우주산업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R&D): 사업관리 강화 필요 등 ····· 553
3. 민간우주산업생태계지원 사업(신규): 법률에 근거한 제도의 신속한 추진 필요 등 ····· 560
4. 우주항공문화 저변 확대 사업(신규): 유사 목적의 행사 통합 발주 필요 ····· 564
5.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R&D) 사업: 예산의 연내활용도 제고 필요 등 ····· 566
6. 혁신형재사용발사체핵심기술(R&D) 사업(신규): 사업기획 시 다른 사업과의 유사·중복 확인 필요 ····· 570
7. 초소형위성군집시스템개발(R&D) 사업: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출연금 교부 필요 ····· 573
8. 위성활용혁신기반조성(R&D) 사업(신규): 필수 절차의 철저한 이행을 통한 사업 지연 방지 필요 등 ····· 575
9. (혁신도전형)상시 재난감시용 성층권 드론기술개발(R&D) 사업(종료): 사업성과 미달 원인 분석 및 후속사업 목표달성 방안 검토 필요 ····· 579

10. 한국형발사체고도화(R&D) 사업: 기술이전 계약체결의 적정성 점검 및 제도개선 필요 ····· 582
11. 단일통로항공기(Part25급)의 순수주익(Clean Wing)모듈 개발(R&D) 사업(종료): 연구개발환경 변화에 따른 조기중단 검토 강화 필요 ····· 585

【기 타】

12.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588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획재정부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2조 8,661억 3,100만원(△0.7%)이 적은 383조 2,888억 2,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조 4,871억 4,900만원(11.8%)이 증가함.[1)]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362,374,750	362,374,750	332,112,585	△30,262,165	384,018,485	374,922,956	372,028,244	△2,894,712	39,915,659
기 금	10,487,623	10,593,007	10,689,087	96,080	11,106,841	11,231,996	11,260,577	28,581	571,490
총수입	372,862,373	372,967,757	342,801,672	△30,166,085	395,125,326	386,154,952	383,288,821	△2,866,131	40,487,149

문의: 02-6788-5679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3조 2,146억 100만원(△7.5%)이 적은 39조 5,898억 6,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조 3,708억 2,300만원(6.4%)이 증가함.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5,199,290	5,199,290	1,733,929	△3,465,361	3,336,693	4,936,693	1,924,421	△3,012,272	190,493
기 금	35,520,246	35,011,523	35,485,115	473,592	36,123,856	37,867,774	37,665,445	△202,329	2,180,330
총지출	40,719,536	40,210,813	37,219,044	△2,991,769	39,460,549	42,804,467	39,589,866	△3,214,601	2,370,823

나.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502조 5,019억 9,600만원으로, 583조 9,364억 8,9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499조 7,209억 1,000만원이 수납(수납률 85.6%)되고 81조 5,199억 8,7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2조 6,955억 9,1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463,814,777	487,121,193	-	487,121,193	568,574,729	484,359,150	81,519,987	2,695,59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3,908,857	15,380,803	-	15,380,803	15,361,760	15,361,760	-	-
- 지역자율계정	3,213,178	3,213,178	-	3,213,178	3,666,180	3,666,180	-	-
- 지역지원계정	10,322,215	11,794,161	-	11,794,161	11,310,173	11,310,173	-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316,263	316,263	-	316,263	323,910	323,910	-	-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57,201	57,201	-	57,201	61,497	61,497	-	-
합 계	477,723,634	502,501,996	-	502,501,996	583,936,489	499,720,910	81,519,987	2,695,591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1조 5,230억 600만원으로, 이 중 39조 9,931억 2,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3%)되고 40억 8,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조 5,258억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40,931,020	44,078,021	2,131	-	△2,557,146	41,523,006	39,993,125	4,081	1,525,80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	-	-	-	-	-	-
합 계	40,931,020	44,078,021	2,131	-	△2,557,146	41,523,006	39,993,125	4,081	1,525,800

주) 총계 기준

다. 기금 결산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495조 1,510억 3,200만원으로, 854조 4,393억 7,8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464조 996억 200만원이 수납(수납률 54.3%)되고 1조 2,637억 2,8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입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				
	304,829,990	339,726,285	649,826,050	333,812,184	197,966	-
국유재산관리기금	3,481,995	3,482,355	6,529,280	3,408,321	915,096	-
기후대응기금	2,621,717	2,599,717	14,099,349	2,674,298	13,351	-
대외경제협력기금	2,352,735	2,272,735	4,189,338	2,277,146	136,787	-
복권기금	8,868,492	8,978,647	9,103,249	9,102,721	528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801,904	801,904	690,366	690,366	-	-
외국환평형기금	140,289,389	137,289,389	170,001,746	112,134,565	-	-
합 계	463,246,222	495,151,032	854,439,378	464,099,602	1,263,728	-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495조 3,315억 4,600만원으로, 이 중 464조 996억 200만원이 지출(집행률 93.7%)되고 1,704억 3,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4조 7,726억 6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304,829,990	339,726,285	-	339,726,285	333,812,184	-	5,885,347
국유재산관리기금	3,481,995	3,482,355	160,285	3,642,640	3,408,321	155,036	37,502
기후대응기금	2,621,717	2,599,717	9,101	2,608,818	2,674,298	12,291	49,319
대외경제협력기금	2,352,735	2,272,735	11,128	2,283,863	2,277,146	3,110	243,279
복권기금	8,868,492	8,978,647	-	8,978,647	9,102,721	-	2,502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801,904	801,904	-	801,904	690,366	-	12,160
외국환평형기금	140,289,389	137,289,389	-	137,289,389	112,134,565	-	18,542,497
합 계	463,246,222	495,151,032	180,514	495,331,546	464,099,602	170,437	24,772,606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5회계연도 말 기준 기획재정부 자산은 전년 대비 45조 4,938억 400만원이 증가한 550조 5,429억 100만원으로, 이는 금융자산이 44조 5,454억 1,1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129조 4,244억 500만원 증가한 1,216조 5,790억 4,400만원으로 차입부채 129조 4,852억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83조 9,306억 200만원이 감소한 △666조 361억 4,300만원임.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부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20조 1,156억 8,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조 3,136억 8,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18조 1,972억 3,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조 5,734억 7,200만원 증가하였음.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재무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A)	2024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550,542,901	505,049,097	45,493,804	9.0
		금융자산	515,179,451	470,634,039	44,545,412	9.5
		유·무형자산	35,136,007	34,280,632	855,375	2.5
		기타자산	227,443	134,426	93,017	69.2
	부 채		1,216,579,044	1,087,154,639	129,424,405	11.9
		차입부채	1,215,576,515	1,086,091,315	129,485,200	11.9
		충당부채	75,322	75,642	△320	△0.4
		기타부채	927,207	987,682	△60,475	△6.1
	순자산		△666,036,143	△582,105,541	△83,930,602	△14.4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20,115,684	13,802,000	6,313,684	45.7
	재정운영순원가		16,417,435	7,469,635	8,947,800	119.8
	재정운영결과		18,197,238	9,623,766	8,573,472	89.1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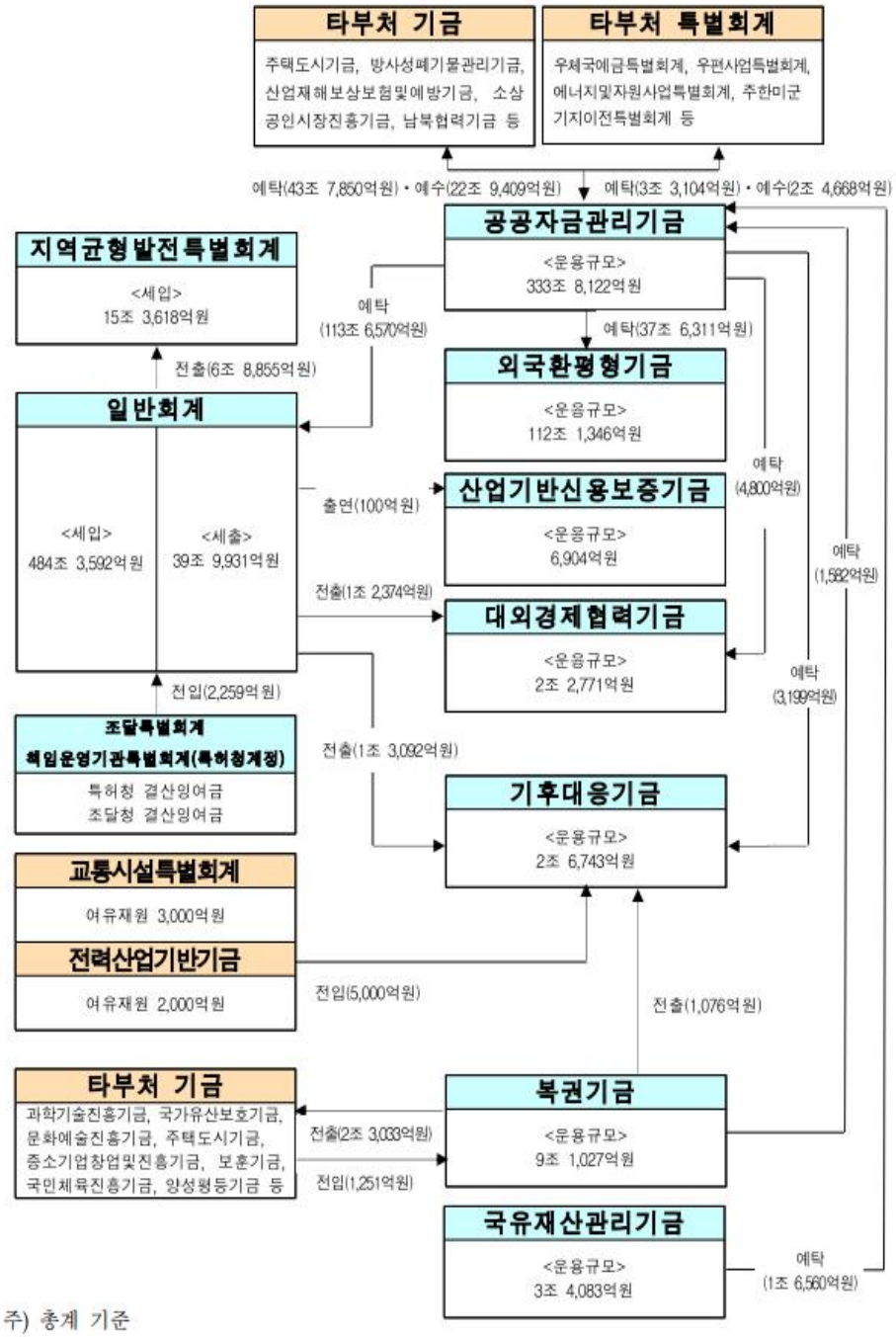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재정은 일반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2개 회계와 ·국유재산관리기금·기후대응기금·대외경제협력기금·복권기금·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 등 7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6조 8,855억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으로 100억원,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1조 2,374억원, 기후대응기금으로 1조 3,092억원이 각각 전출되었음. 또한 일반회계는 조달특별회계 및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특허청계정)로부터 2,259억원을 전입하였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113조 6,570억원을 예수하였음.

다음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외국환평형기금으로 37조 6,311억원,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4,800억원, 기후대응기금으로 3,199억원을 예탁하였으며,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부터 1조 6,560억원, 복권기금으로부터 1,582억원을 예수하였음. 또한 복권기금은 기후대응기금으로 1,076억원을 전출하였음.

한편 공공자금관리기금은 타부처 기금으로 43조 7,850억원을 예탁하고 22조 9,409억원을 예수하였으며, 타부처 특별회계로 3조 3,104억원을 예탁하고 2조 4,668억원을 예수하였음. 복권기금은 타부처 기금으로 2조 3,033억원을 전출하고 1,251억원을 전입하였으며, 기후대응기금은 교통시설특별회계로부터 3,000억원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2,000억원을 전입하였음.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재정흐름도]



주) 총계 기준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 조세정책의 수립·추진, 국제금융 및 대외경제에 관한 정책 수립·총괄, 재정제도 혁신 및 집행관리, 국고의 관리·운영, 공공기관 관련 정책 기획·조정, 복권정책 기획·집행 등을 수행하였음.

2025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2025년 3.7조원의 ㈜NXC 물납주식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세외수입 결손이 발생하고 연말 국고금 관리 역시 차질이 발생하였는바, 기획재정부(2026년 이후 재정경제부)는 향후 국세물납주식매각대 예산안 편성에 있어 매각가능성을 보다 면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기획재정부는 특정 조세제도 개편과 관련된 임시조직인 조세개혁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업무는 정규조직인 세제실의 업무와 유사, 중복되는 있다는 점에서 기획재정부(2026년 이후 재정경제부)는 조세개혁추진단의 운영 필요성을 보다 엄격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 규모는 재정의 신속집행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2025년의 경우 상반기 신속집행 및 추가경정예산의 조기집행 과정에서 자금의 차입규모가 확대되어 이자비용이 상당한 규모로 발생하였으므로, 기획재정부(2026년 이후 기획예산처)는 향후 신속집행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전제로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음.

넷째,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한국수출입은행에 2,000억원을 출자하였으나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실적이 부진하였으므로, 기획재정부(2026년 이후 재정경제부)는 향후 유사한 수출지원프로그램 예산안 편성 시 손실률, 사업수요 등을 면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실시된 지출구조조정은 사업축소 없는 단순 지출시기 연기, 자연 종료 사업 포함, 사업 단순 이관 및 명칭변경 등 지출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기획재정부(2026년 이후 기획예산처)는 지출구조조정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여섯째, 기획재정부는 당초 계획 대비 청년인턴 채용인원 및 운영기간을 축소 운영

하는 등 청년들이 효과적인 정책경험을 쌓는데 한계가 있었으므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향후 청년인턴이 계획대로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일곱째, 기획재정부(2026년 이후 재정경제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타 회계·기금으로의 예수·예탁사업을 구체적인 회계·기금별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편성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자금의 융통을 파악하기 어렵도록 하였는바, 사업구조의 세분화를 통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예탁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을 촉진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인상하였으나 이는 정부의 이자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기획재정부(2026년 이후 재정경제부)는 국채 대중화라는 정책적 목표와 국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 절감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국세수입: 추경 및 세수재추계 시 세수오차 최소화 노력 필요

가. 개　요

2025년 국세수입은 총 373조 9,193억원이 징수되었음. 3대 세목인 소득세는 130조 4,526억원, 법인세는 84조 6,090억원, 부가가치세는 79조 1,790억원 수납되었음.

2025년 국세수입은 2024년 12월 국회 심의를 거친 본예산과 2025년 6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두 차례 편성되었고, 기획재정부는 2025년 9월 세수재추계 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2025년 국세수입 수납실적을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세수재추계와 비교하면, 각각 본예산 382조 4,296억원 대비 8조 5,103억원(△2.2%) 적게 수납되었고, 추가경정예산 대비 1조 8,344억원(0.5%) 많이 수납되었으며, 세수재추계 결과 대비 3조 9,901억원(1.1%) 많이 수납되었음.

[2025년 국세수입 개요]

(단위: 억원)

구 분	본예산(A)	추경예산(B)	세수재추계(C)	결산(D)
총국세	3,824,296	3,720,849	3,699,292	3,739,193
일반회계	3,718,050	3,614,603	3,582,302	3,614,941
○ 내국세	3,381,292	3,291,519	3,273,936	3,302,404
- 소득세	1,268,192	1,268,192	1,283,584	1,304,526
- 법인세	882,543	835,671	836,355	846,090
- 부가가치세	876,388	833,293	809,381	791,790
○ 교통세	151,048	140,012	130,824	132,351
○ 관세	84,093	84,093	73,970	76,409
○ 교육세	60,402	57,765	57,768	57,235
○ 종합부동산세	41,215	41,215	45,805	46,542
특별회계	106,246	106,246	116,989	124,252
○ 주세	32,093	32,093	32,025	32,120
○ 농어촌특별세	74,153	74,153	84,965	92,132

자료: 재정경제부

[2025년 국세수입 예산 및 결산 세부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B) 대비		세수재추계(C) 대비	
	본예산 (A)	추경예산 (B)	세수 재추계(C)	결산 (D)	차액 (D-A)	비율 (D-A)/A	차액 (D-B)	비율 (D-B)/B	차액 (D-C)	비율 (D-C)/C
총국세	3,824,296	3,720,849	3,699,292	3,739,193	△85,103	△2.2	18,344	0.5	39,901	1.1
일반회계	3,718,050	3,614,603	3,582,302	3,614,941	△103,109	△2.8	338	0.0	32,639	0.9
ㅇ 내국세	3,381,292	3,291,519	3,273,936	3,302,404	△78,888	△2.3	10,885	0.3	28,468	0.9
1. 소득세	1,268,192	1,268,192	1,283,584	1,304,526	36,334	2.9	36,334	2.9	20,942	1.6
종합소득세	220,582	220,582	209,456	212,830	△7,752	△3.5	△7,752	△3.5	3,374	1.6
양도소득세	194,116	194,116	195,628	198,855	4,739	2.4	4,739	2.4	3,227	1.6
이자소득세	63,121	63,121	67,618	70,137	7,016	11.1	7,016	11.1	2,519	3.7
배당소득세	46,757	46,757	43,375	45,530	△1,227	△2.6	△1,227	△2.6	2,155	5.0
사업소득세	51,060	51,060	49,563	49,625	△1,435	△2.8	△1,435	△2.8	62	0.1
근로소득세	647,310	647,310	675,123	684,216	36,906	5.7	36,906	5.7	9,093	1.3
연금소득세	6,914	6,914	6,799	6,880	△34	△0.5	△34	△0.5	81	1.2
기타소득세	26,647	26,647	23,986	24,021	△2,626	△9.9	△2,626	△9.9	35	0.1
퇴직소득세	11,685	11,685	12,037	12,430	745	6.4	745	6.4	393	3.3
2. 법인세	882,543	835,671	836,355	846,090	△36,453	△4.1	**10,419**	**1.2**	9,735	1.2
신고분	658,569	596,604	603,666	609,029	△49,540	△7.5	**12,425**	**2.1**	5,363	0.9
원천분	223,974	239,067	232,689	237,061	13,087	5.8	**△2,006**	**△0.8**	4,372	1.9
3. 상속증여세	145,059	154,437	161,582	164,799	19,740	13.6	**10,362**	**6.7**	3,217	2.0
상속세	84,637	94,015	103,066	100,393	15,756	18.6	**6,378**	**6.8**	△2,673	△2.6
증여세	60,422	60,422	58,516	64,406	3,984	6.6	3,984	6.6	5,890	10.1
4. 부가가치세	876,388	833,293	809,381	791,790	△84,598	△9.7	**△41,503**	**△5.0**	△17,591	△2.2
5. 개별소비세	96,663	87,479	82,702	85,144	△11,519	△11.9	**△2,335**	**△2.7**	2,442	3.0
6. 증권거래세	38,454	38,454	31,371	34,430	△4,024	△10.5	△4,024	△10.5	3,059	9.8
7. 인지세	8,837	8,837	7,758	7,637	△1,200	△13.6	△1,200	△13.6	△121	△1.6
8. 과년도수입	65,157	65,157	61,201	67,989	2,832	4.3	2,832	4.3	6,788	11.1
ㅇ 교통세	151,048	140,012	130,824	132,351	△18,697	△12.4	**△7,661**	**△5.5**	1,527	1.2
ㅇ 관세	84,093	84,093	73,970	76,409	△7,684	△9.1	△7,684	△9.1	2,439	3.3
ㅇ 교육세	60,402	57,765	57,768	57,235	△3,167	△5.2	**△530**	**△0.9**	△533	△0.9
ㅇ 종합부동산세	41,215	41,215	45,805	46,542	5,327	12.9	5,327	12.9	737	1.6
특별회계	106,246	106,246	116,989	124,252	18,006	16.9	18,006	16.9	7,263	6.2
ㅇ 주세	32,093	32,093	32,025	32,120	27	0.1	27	0.1	95	0.3
ㅇ 농어촌특별세	74,153	74,153	84,965	92,132	17,979	24.2	17,979	24.2	7,167	8.4

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세입을 경정한 세목은 굵은 글씨로 표현함

자료: 재정경제부

나. 검토의견

재정경제부는 2025년도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세수재추계 과정에서 세수 오차가 크게 발생한 세목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국세수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먼저 본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살펴보자면,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전망오차 등으로 인해 3대 세목인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와 자산시장 관련 세목에서 세수오차가 발생하였음.[2)]

2025년 결산 결과, 당초 예산 편성 시점의 거시경제 전망과 실제 경기 흐름 간의 괴리가 기업 실적 및 소비 지표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남. 특히 부가가치세 수납액은 79조 1,79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8조 4,596억원(△9.7%) 부족하여 전체 세목 중 가장 큰 결손액을 기록함. 이는 고금리·고물가 기조 장기화에 따른 내수부진 및 민간소비 둔화가 예측치를 상회했음을 시사함.

법인세 역시 84조 6,090억원이 수납되어 본예산 대비 3조 6,453억원(△4.1%) 부족함. 특히 법인세 신고분에서 4조 9,540억원(△7.5%)의 결손이 발생한 것은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 등 기업 실적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의미함.

주요 간접세가 결손을 기록한 반면, 소득세는 130조 4,526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3조 6,334억원(2.9%) 초과 수납됨. 세부적으로는 근로소득세가 본예산 대비 3조 6,906억원(5.7%) 초과 수납되며 전체 소득세수 증가를 견인하였고, 이자소득세는 고금리 환경 유지로 인해 7,016억원(11.1%) 초과 수납되었음.

부동산 및 주식 등 자산시장과 관련된 세목에서는 본예산 대비 두 자릿수의 높은 오차율이 발생하였음. 상속증여세는 16조 4,799억원으로 1조 9,740억원(13.6%) 초과 수납되었고, 종합부동산세 역시 5,327억원(12.9%) 초과 수납되었음. 농어촌특별세 또한 종합부동산세 등과 연동되어 1조 7,979억원(24.2%)의 높은 초과 수납률을 기록하였음.

2) [2025년 주요 거시경제변수 전망치 및 실제 통계 비교]

구 분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시 2025년 전망 (A)	2025년 실제 통계 (B)	차이(B-A)
경상성장률(%)	4.5	4.2	△0.3%p
실질성장률(%)	2.2	1.0	△1.2%p
GDP 디플레이터(%)	2.3	3.1	+0.8%p
민간소비증가율(%)	2.3	1.3	△1.0%p
소비자물가상승률(%)	2.1	2.1	-
취업자증감(만명)	17	19	+2.0

자료: 재정경제부

반면 증권거래세는 3조 4,43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4,024억원(△10.5%) 부족하게 수납되었음.

다음 2025년 6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세입경정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2025년에는 연중 세수결손이 우려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6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비교적 증감이 확실한 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상속세)·교통에너지환경세·개별소비세·교육세 등 6개 세목에 대해 총 10조 3,447억원을 감액경정하였음.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경정한 세목과 감액경정하지 않은 세목에 대해 살펴보면, 감액경정한 세목은 감액경정에 따라 세수오차가 본예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경정내역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임.

그러나 ① 경정하지 않은 세목에서 세수오차가 크게 발생하였거나 ② 경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수오차가 5% 이상 발생한 세목이 있으므로, 향후 연중 국세수입의 경정 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

경정 미실시 세목 중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발생한 세목으로는 증권거래세, 관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① (증권거래세) 6월 주식시장 호조세가 상당하여 하반기 세수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증권거래세를 경정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본예산 대비 △10.5% 적게 수납되었고, ② (관세) 중동사태 및 미국 관세정책 향방에 따라 환율 및 수입액 등의 전망이 불확실하여 관세를 경정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본예산 대비 △9.1% 적게 수납되었으며, ③ (종합부동산세) 공동 공시지가 등이 소폭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수를 본예산 수준으로 전망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본예산 대비 12.9% 많이 수납되었음.

증권거래세의 경우 연중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의 감소세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정 내역에 반영하지 않아 두 자릿수 이상의 오차율을 기록하였음. 관세는 내국세와 달리 대외 경제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6월 추경 시점의 통관 실적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감액 경정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임.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변동 및 보유세 관련 정책 변수가 추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시사함.

한편 경정 실시 세목 중 5% 이상의 세수오차가 발생한 세목으로는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경정 절차를 거쳤음에도 5% 이상의 오차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추계 모형의 보정 작업이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임.

부가가치세는 본예산(87.6조원) 대비 4.3조원을 감액한 83.3조원으로 경정하였으나 수납액은 79.2조원에 그치며 추경 대비로도 4.1조원(△5.0%)의 추가 결손이 발생하였는데, 세입경정 당시 하반기 내수 부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됨.

상속세 및 증여세는 추경에서 15.4조원으로 증액경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6.5조원이 수납되어 1조원(6.7%)의 오차가 발생하였고,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1조원을 감액경정했음에도 결산액이 추경 대비 7,661억원(△5.5%) 부족하게 징수되었음.

한편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9월 세수재추계 결과 역시 사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2025년 8월까지의 세수실적을 고려한 세수재추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대비 오히려 세수오차가 확대되거나 여전히 세수오차가 5% 이상 발생하는 세목이 있으므로, 2026년 세수재추계 시에도 세수오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증여세는 9월 재추계액 5조 8,516억원 대비 결산액이 6조 4,406억원으로 5,890억원(10.1%) 초과 징수되었으며, 증권거래세 역시 재추계액 3조 1,371억원 대비 3,059억원(9.8%) 초과 수납되었음. 이는 4분기 중 발생한 주식 및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단기 거래량 급증이나 시장 심리 변화를 9월 시점의 세수재추계 모형이 포착하지 못했음을 시사함.

과년도수입은 재추계액 대비 6,768억원(11.1%)이 초과 징수되며 전체 세목 중 가장 높은 재추계 오차율을 기록함. 과년도수입은 당해 연도의 거시경제 지표보다는 미시적인 조세 행정 및 체납액 징수실적에 크게 의존하므로, 체납액의 징수내역 및 국세수입 관련 행정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과년도수입 추계모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세수재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당해 연도말까지의 집행 및 불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함께 보고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9월 재추계 결과는 당해 연도말까지의 국세수입의 수납액 전망을 바탕으로, 집행소요의 충당 가능성 및 기금 여유재원 투입 규모나 불용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근거로 작용함.

2025년의 경우 9월 발표된 세수재추계 결과에 따른 세출·지출 계획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세출·지출계획이 연말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2025년 12월 국방비 미지급이 발생하였음.[4)] 참고로 9월 세수재추계는 제2회 추가경정

3) 기획재정부는 2024년과 2025년 9월 세수재추계 전망을 발표하였고, 2026년 2월 「국가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6년부터는 세수재추계 전망 발표가 의무화되었음.

4) 총 1조 3038억원의 ‘국방비 펑크’가 발생한 전말은 이렇다. 국회 국방위원회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2025년도 예산안 61조 2469억원 가운데 전력운영비(5002억원)와 방

예산 대비 2조 1,557억원 감액 전망되었는데, 이에 상응하여 세출·지출계획을 조정하였다면 연말 예산 집행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보임.

정부는 매년 예산안 제출 및 세수재추계 과정에서 국회, 한국은행 및 다양한 연구기관과의 추계모형 개선 협의, 미시자료 및 AI를 활용한 추계모형 보완 등을 통해 세수추계를 개선하고 있으나, 여전히 세수오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정부의 세수추계 개선방안 관련 주요 내용]

구 분	정부의 세수추계 개선방안 관련 주요 내용
2023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2022.9.)	- 양도소득세 · 상속세 · 증여세 등 일부 자산세수의 추계방식을 회귀모형에서 기준년 대비 증가율법으로 전환 - 회귀모형을 단순화하고 세무조정 등 국세통계에 기초하여 과세표준 산출
2024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2023.9.)	- 올해 세수 전망치를 토대로(최신 정보 반영) 회귀모형을 통해 도출한 증가율을 반영(지표-세수 간 관계 체계적 반영)하여 내년 세수추계 - 변동성이 큰 상장기업의 실적 추정시 향후 시장의 경기변동 예측 등을 모두 반영한 증권시장 실적 전망 자료 활용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보도자료 (2023.9.)	- 국내 전문가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등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통해 세목별 추계모형 발전, 추계 방법·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증·보완 노력 강화 -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로부터의 기술적 자문, 해외사례 검토 등을 통한 세수 추계의 정확도 제고 방안 강구 - 국회예산정책처와 협업을 강화
202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2024.9.)	- 세수추계위원회 외부 전문가(국토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참여 확대, 정부 외 연구기관 자체 세수전망치 공표 등 추계절차 개선 - 세수추계 모형 고도화를 위한 대외협력 강화(국제협력, AI기반 추계모델 활용) - 법인세 추계모형 고도화(상장사 · 비상장사 과세표준 각각 도출 → 단계적 국세통계 적용 대신 기업유형별 실효세율을 활용해 총부담세액 전망)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보도자료 (2024.9.)	- 국회 예정처, 조세연, KDI의 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 개편 -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보다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 검토

위력개선비(8036억)를 지급 받지 못 했다. 국방부가 집행하는 전력운영비는 부대 운영비이고, 무기 체계 관련 비용인 방위력개선비는 방위사업청(방사청)이 주무 부처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네 차례에 걸쳐 총 5조원의 예산 배정을 요청했다. 12월 5주차에 쓸 예산 1조 1200억원이 포함된 액수였다. 그런데 재경부는 마지막 주 자금에 대해 "한국은행의 국고 계좌 잔액이 부족하다"며 일부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방사청도 비슷한 시기 1조원 넘는 자금을 요청했으나 국고 계좌가 텅 빈 관계로 이를 받지 못 했다. 그 결과 회계연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국방부·방사청이 1조 3,038억원을 못 받게 된 것이다.(중앙일보, "초유의 1.3조 국방비 펑크 사태…"통상 있는 일" 이라는 정부", 2026.1.13.)

구 분	정부의 세수추계 개선방안 관련 주요 내용
	- 매년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하여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 -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 조직개편 방안 검토
2026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2025.9.)	- 세수추계 전과정에 걸쳐 민간전문가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도록 세수추계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세수추계위원회와 별도로 국회 예정처와 세수전망·추계방법 논의 - 세수추계위원회에 한국은행을 신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 거시 경제 전망 관련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자문단에 조선·철강업종 및 중소기업 분야 전문가를 추가 위촉 - 미시자료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추계모형 보완방안 연구(조세재정연구원),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개선방안 연구(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세수추계 모형 고도화 추진
2025년 세수 재추계 결과 보도자료 (2025.9.)	- 과거 예산 편성 후 국회 예산정책처에 사후적으로 예산안을 설명하였으나, 예산 제출 전부터 예산정책처와 추계모형 개선 등을 논의 - AI를 활용한 기업 영업이익 전망 활용, IMF 기술자문을 반영한 양도소득세 모형 개선 등 추계모형 고도화 - 매년 9월 당해연도 세수 재추계 의무화 등을 포함한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일반회계】

〈세 입〉

2. 정부출자수입 - 정부출자기업의 배당금 편성 및 배당성향 결정 시 국회 제출자료의 내실화 등 투명성 제고노력 필요

가. 개 요

‘정부출자수입’은 정부출자기관을 대상으로 「국유재산법」 및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각 기관별 배당액을 세입조치하는 것으로, 징수결정액 1조 7,126억 3,200만원이 전액 수납(수납률 100.0%)되었음.[5)]

[2025년도 정부출자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정부출자수입	1,045,447	1,045,447	1,712,632	1,712,632	-	-	100.0	1,450,094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재무제표 등 정부배당수입 결정 기초자료를 기획재정부(2026년부터 재정경제부)에 제출하고, 기획재정부는 배당대상이 되는 이익의 규모, 정부의 재정여건, 민간배당수준, 자본금 규모 및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부배당대상기업과 배당수준을 협의한 후 배당규모를 확정함.[6)]

---

5) 일반회계-정부출자수입(52-521)(재정경제부 국고실)

6) 「국유재산법」

제65조의2(정부배당대상기업 및 출자재산의 적용범위) 이 절은 국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출자재산으로서 국가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정부가 현물로 납입받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정부배당대상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정부가 받는 배당(이하 이 절에서 “정부배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5조의3(정부배당결정의 원칙) 제8조에 따른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은 「상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된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한 해당 정부배당대상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부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일반회계 정부출자수입의 과소추계가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므로, 재정경제부는 정부출자기업의 당기순이익 및 배당성향 등을 면밀히 산정하여 추계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예산안 편성 시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 정부출자수입 예산안 편성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2025년 정부배당대상기업 배당내역 보고」(2025.5.) 및 「2026년 정부배당대상기업 배당내역 보고」(2026.5.)를 통해 해당연도 정부배당대상기업에 대한 배당내역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음.

2025년에는 40개의 정부출자기관 중 당기순손실 발생, 이월결손 보전 등으로 배당이 어려운 19개 기관을 제외하고 21개 정부출자기관이 정부배당으로 총 2조 2,987억원(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합계)을 납부하였음.[7)]

---

1. 배당대상이 되는 이익의 규모
2. 정부출자수입 예산 규모의 적정성 및 정부의 재정여건
3. 각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률 및 배당성향
4. 같거나 유사한 업종의 민간부문 배당률 및 배당성향
5. 해당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자본금 규모, 내부자금 적립 규모, 부채비율,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자기자본비율, 과거 배당실적, 투자재원 소요의 적정성 등 경영여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결정 기준

제65조의4(정부배당수입의 예산안 계상 등) ① 정부배당대상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배당수입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다음 연도의 정부배당수입을 추정하여 소관 예산안의 세입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계획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65조의5(정부배당의 결정) ① 정부배당대상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배당결정과 관련한 자료를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정부배당을 결정하는 경우 이사회·주주총회 등 정부배당결정 관련 절차를 거치기 전에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과 각각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5조의6(국회 보고 등)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이 완료된 때에는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7) [2025년 배당 실시기관(21개)]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에스알,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송유관공사,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조폐공사

[2025년 배당 제외기관(19개)]
- 당기순손실 발생(12개): 한국공항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철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88관광개발(주), 대한석탄공사 /
- 이월결손 보전 등(7개):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신문사, 한국수자원공사, 공항철도(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6년에는 40개의 정부출자기관 중 당기순손실 발생, 이월결손 보전 등으로 배당이 어려운 20개 기관을 제외하고 20개 정부출자기관이 정부배당으로 총 2조 7,951억원(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합계)을 납부하였음.

[2025년 및 2026년 정부출자기업의 정부배당 현황]

(단위: 억원)

기관명		2025년 정부배당금			2026년 정부배당금		
		정부배당 (전체)	일반회계	특별·기금	정부배당 (전체)	일반회계	특별·기금
1	한국토지주택공사	1,491	331	1,160	-	-	-
2	중소기업은행	5,053	5,053	-	5,968	5,968	
3	한국산업은행	7,587	6,972	615	8,806*	8,101	705
4	한국주택금융공사	593	557	36	380	357	23
5	한국수출입은행	2,828	2,801	27	4,762	4,717	45
6	한국가스공사	351	302	49	279	240	39
7	한국공항공사	-	-	-	-	-	-
8	부산항만공사	265	265		109	109	
9	한국자산관리공사	104	87	17	521	465	56
10	울산항만공사	163	163	0.1	92	92	0
11	인천항만공사	272	201	71	287	212	75
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	-	93	93	-
13	한국조폐공사	39	39	-	48	48	-
1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8	18	-	4	4	-
15	한국부동산원	37	37	-	35	35	-
16	한국방송공사	-	-	-	-	-	-
17	한국농어촌공사	54	54	-	188	188	-
18	한국전력공사	249	249	-	1,802	1,802	-
19	한국관광공사	-	-	-	-	-	-
20	한국교육방송공사	-	-	-	-	-	-
2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	-	-	-	-
22	한국수자원공사	-	-	-	-	-	-
23	한국석유공사	-	-	-	-	-	-
24	한국광해광업공단	-	-	-	-	-	-
25	한국철도공사	-	-	-	-	-	-
26	서울신문사	-	-	-	-	-	-
27	여수광양항만공사	-	-	-	-	-	-
28	한국해양진흥공사	-	-	-	-	-	-
29	새만금개발공사	-	-	-	-	-	-
30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	-	-	-	-	-	-
31	한국도로공사	340		340	260		260
32	인천국제공항공사	2,210		2,210	3,194		3,194
33	주택도시보증공사	-	-	-	-	-	-
34	한국투자공사	1,138	-	1,138	835	-	835
35	대한송유관공사	40	-	40	42	-	42

(단위: 억원)

기관명		2025년 정부배당금			2026년 정부배당금		
		정부배당 (전체)	일반회계	특별·기금	정부배당 (전체)	일반회계	특별·기금
36	88관광개발주식회사	-	-	-	-	-	-
37	한국지역난방공사	155		155	246		246
38	공항철도주식회사	-	-	-	-	-	-
39	대한석탄공사	-	-	-	-	-	-
40	주식회사에스알	0	-	0	-	-	-
합 계 (배당실시기관)		**22,987 (21개)**	**17,126 (15개)**	**5,860 (14개)**	**27,951 (20개)**	**22,430 (15개)**	**5,521 (12개)**

주) 2026년 한국산업은행의 정부배당에는 재정모펀드 회수자금(2,494억원)이 포함됨
자료: 재정경제부

최근 3년간 정부출자수입 예산 및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정부출자수입은 과소편성으로 인해 6,000억원 이상의 초과수입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반대로 특별회계·기금의 정부출자수입은 과다편성으로 인해 2024년 2,617억원, 2025년 4,360억원, 2026년 302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였음.

[2024~2026년 정부출자수입 예산 및 결산 내역]

(단위: 억원, %)

	2024년				2025년				2026년 6월			
	예산	실적	증감	비율	예산	실적	증감	비율	예산	실적	증감	비율
배당수입	17,729	21,322	+3,593	20.3	20,674	22,987	+2,313	11.2	20,324	27,951	+7,627	37.5
일반회계	9,823	16,033	+6,210	63.2	10,454	17,126	+6,672	63.9	14,501	22,430	+7,929	54.7
특별회계·기금	7,906	5,289	△2,617	△33.1	10,220	5,860	△4,360	△42.7	5,823	5,521	△302	△5.2

자료: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2026년 이후 재정경제부)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64조의4[8]에 따라 각 기업이 제출한 당기순이익 전망을 바탕으로 수입을 추정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데, 당기순이익 전망은 각 기업이 연간 사업계획에 기반하여 추정한 것으로서 연말 실적은 전망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고,[9] 최근 배당수입의 증가는 한

8)「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7조의4(정부배당수입 추정자료의 제출) 법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자료를 매년 5월 31일까지, 제4호의 자료를 매년 7월 31일까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사업계획 및 추정 당기순이익
2. 이익금 처리계획
3. 납입자본금 현황
4. 해당 회계연도의 상반기 당기순이익 실적 및 연간 추정 당기순이익
5. 그 밖에 총괄청이 정부배당수입을 추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국산업은행의 한화오션 관련 예측하기 어려운 일시적 비경상적 이익이 발생한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함.

그러나 정부는 정부출자수입 예산안에 대해 기관별 세부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정부출자수입 예산안 심사 시 기관별 세부내역 없이 총액만으로 예산안을 심사하여 정부출자수입의 과소·과다편성에 대해 검토할 수 없는 반면, 결산 심사 시에는 전전년도 당기순이익에 대한 정부배당의 적정 여부에 대해 사후적으로 논의할 실익이 크지 않아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음.[10)]

참고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동 사업에 대해 기관별 예상 당기순이익, 배당성향 등에 대해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미 제기된 바 있으나,[11)] 재정경제부는 개별 기업별 금년도 예상 당기순이익은 상장법인의 공시되지 않은 당기순이익 전망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 시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에 대한 공정공시 의무 위반 우려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에서는 정보의 적시성 제공 및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상장법인이 분기보고서와 반기보고서를 시장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40개의 정부출자기업 중 실제 장내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는 기업은 4개에 불과하고[12)] 그 외 기업은 주식 매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13)]

또한 이미 정부출자기업의 정부배당이 완료된 이후 국회에 사후적으로 제출되는 설명자료 역시 정부배당 협의·조정 내역이 갈수록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있어, 재정경제부는 향후 배당내역 자료를 보다 성실히 작성·제출할 필요가 있음.

---

9) 통상 정부배당대상기업은 배당수입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당기순이익 전망을 예측가능한 경상적 손익과 변동성이 큰 비경상적 손익 중 기발생한 부분으로 추정하여 제출함.

10) 2025회계연도 정부출자수입 결산은 정부출자기업의 2024년도 당기순이익의 전망과 실적의 차이에 따른 2025년도 정부배당 규모의 예산 대비 차이를 2026년도에 심사하는 것임.

11) 기관별 세부내역 없이 총액만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경우 기관별 예상 배당금의 적절성 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해 충실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관별 예상 당기순이익, 배당성향 등 세부내역을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2025.11.)

12) 중소기업은행,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13) 재정경제부는 「자본시장법」 제160조의 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실적)는 당기순이익 전망(예측)과는 별개이고, 상장기업 수가 적어 비상장기업 수치만 선별적으로 공개할 경우, 전체 예산 규모와의 연동성으로 상장기업의 실적 전망을 자의적으로 추정 가능하여 오히려 불필요한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공정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정부가 매년 5월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는「정부배당대상기업 배당내역 보고」를 살펴보면, ① 2023년까지는 기관별 배당성향 도출 시 기관의 목표배당성향에 대해 '40%±3%'로 기재하여 목표수준 및 범위를 알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이를 생략하고 있고, ② 2024년까지는 최종배당성향의 계량지표에 대해 전년 우수배당기업(△1%), 사회책임지표(△0.2%)의 증감요인을 표시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이를 생략하고 있음.

[정부 배당 산정방식]

〈1단계〉	〈2단계〉				〈3단계〉
배당 여부 판단	**기관별 배당성향 도출**				**최종배당성향**
당기순이익 - 이월결손금액 - 법정적립금 > 0 → 배당가능	당기 순이익 (A)	기관별 목표배당성향 (B)	특이사안 반영(± α) (C)	실제배당 가능금액 (D=A×B-C)	기관별 특이소요 반영(부채비율 등) → 기업별 배당성향 확정
	→ 기업별 배당성향(D/A) 도출				

자료: 재정경제부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는 국회가 사후적으로라도 재정경제부의 기관별 배당성향 도출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렵고[14] 정부출자수입의 추계오차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출자수입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보다 면밀하게 심의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기획재정부(2026년 이후 재정경제부)는 향후 정부출자수입 예산안 편성 시 정부배당대상기업이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배당내역을 충실히 작성하여 정부출자수입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14) 재정경제부는 정부 배당 산정방식이 간략화된 이유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표를 간단히 하였으나, 향후 구체적으로 기입하겠다고 설명하면서도, 개별 출자기업의 역할·기능과 재무여건 등이 상이하므로 기준을 일률적으로 설정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임.

3. 국세물납주식매각대 - 국세물납주식 매각 실패에 따른 세외수입 결손 재발방지 필요

가. 개 요

‘국세물납주식매각대’ 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된 국세물납증권 매각대금의 정산 납입금을 국고에 세입조치하는 것으로, 징수결정액 1,307억 4,300만원이 전액 수납(수납률 100.0%)되었음.[15)]

[2025년도 국세물납주식매각대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국세물납주식 매각대	3,744,140	3,744,140	130,743	130,743	-	-	100.0	1,063,783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는 납세자가 상속세의 금전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유가증권 등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의 50%를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야 하며, 납부세액이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때 물납을 허용하고 있음.[16)]

물납된 주식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된 후 가치평가를 거쳐 매각을 위한 경쟁입찰 절차를 거치게 되며, 2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절차를 진행함.[17)]

---

15) 일반회계-국세물납주식매각대(73-733)(재정경제부 국고실)

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17)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관리·처분기관) ③ 총괄청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나. 검토의견

2025년 3.7조원 규모의 ㈜NXC 물납주식 매각 실패로 인한 세외수입 결손은 연말 국고금 부족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는바, 재정경제부는 향후 국세물납주식 매각대 예산안 편성 시 수납가능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2022년 2월 넥슨 故 김정주 회장의 별세에 따라 2023년 2월 ㈜NXC 주식 851,968주(지분율 약 29.3%, 물납주식 가치 4조 7,149억원)를 상속세로 물납받아 2대 주주가 되었음. 정부는 해당 주식의 규모를 고려하여 2025년과 2026년 연내 매각을 목표로 국세물납주식매각대 세입 예산을 2025년 3조 7,441억원, 2026년 1조 638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음.

그러나 2023년 12월 2회의 온비드 공개경쟁입찰 유찰에 이어, 2024년 매각자문사단 선정 및 법률·회계실사 이후 진행된 두 차례의 예비입찰마저 모두 유찰되며 2025년에는 매각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였음.

결과적으로 ㈜NXC 주식 매각 실패로 인해 2025년도 국세물납주식매각대 세입예산 3조 7,441억 4,000만원 중 수납액은 3.5%에 불과한 1,307억 4,300만원에 그쳤으며, 이로 인해 3조 6,134억원 규모의 대규모 세외수입 결손이 발생하였음.

[(주)NXC 매각 절차 추진 경과]

(단위: 주, 억원)

연도	회차	방식	입찰기간	구분	주식수	매각예정가액	비고
2023	1회	공개경쟁[1)]	12.18~12.19	비상장	851,968	47,149	유찰
	2회	공개경쟁[1)]	12.25~12.26	비상장	851,968	47,149	유찰
2025	본공고	공개경쟁[2)]	6.30~8.25[3)]	비상장	851,968	-	유찰
	재공고	공개경쟁[2)]	8.27~9.08[3)]	비상장	851,968	-	유찰
2025	(주)NXC의 자사주 매입			비상장	7,962	463	-
2026	(주)NXC의 자사주 매입			비상장	184,001	10,227	-

주 1) 온비드 국유증권 공개경쟁입찰 진행건
2) 매각주간사를 통한 주식 매각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 진행건
3) 2단계 절차(예비입찰절차 및 최종입찰절차) 중 예비입찰절차 기간 해당
자료: 재정경제부

이러한 세외수입 결손은 일반회계 세입의 실질적 결손으로 이어져 연말 국고금 관

사무(관리·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를 포함한다.) 및 이미 처분된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1. 국세물납에 따라 취득한 일반재산

리의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였음.

2025년 결산 기준 세외수입은 224조원으로 예산 대비 3.9조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물납으로 받은 ㈜NXC 주식 매각 유찰에 따른 관유물매각대 감소(△3.7조원)에 기인함.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1.8조원 초과 수납되었으나 세외수입이 3.9조원 과소 수납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총세입이 예산 대비 2.1조원 과소 수납되었음.

[2025년도 총세입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2024년 실적(A)	2025년		예산대비 (C-B)	전년대비 (C-A)
		예산(B)	실적(C)		
합 계	535.9	600.0	597.9	△2.1	62.0
국세수입	336.5	372.1	373.9	1.8	37.4
세외수입	199.4	227.9	224.0	△3.9	24.6

주) 2025년도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함
자료: 재정경제부,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보도자료”, 2026.2.10.

세입이 당초 계획 대비 과소 수납됨에 따라, 세출 역시 계획대로 집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발생하였음. 일반회계의 경우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이 828억원 밖에 발생하지 않았는데, 국방비 등의 세입 재원 부족에 따른 불용 규모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세입 결손으로 연말 세출예산 집행 및 이월이 제약되는 문제가 초래되었던 것으로 보임.

[2025년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단위: 조원)

구 분	총세입 (A)	총세출 (B)	결산상 잉여금 (A-B)	이월 (C)	세계잉여금 (A-B-C)
합 계	597.9	591.0	6.9	3.7	3.2
일반회계	493.2	491.0	2.2	2.1	0.1
특별회계	104.7	100.0	4.7	1.6	3.1

자료: 재정경제부,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보도자료”, 2026.2.10.

참고로 2025년 12월 말 한국은행 내 정부 국고 계좌의 자금부족으로 인해,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의 급식·피복비, 군수유지비 및 전력운영비 등 필수 예산 1조 3,038억원을 제때 집행하지 못하였음.[18)19)] 이에 따라 당해 연도 내 출납을 완결하지

18) 총 1조 3,038억원의 ‘국방비 펑크’가 발생한 전말은 이렇다. 국회 국방위원회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2025년도 예산안 61조 2,469억원 가운데 전력운영비(5,002억원)와 방위력개선비(8,036억)를 지급 받지 못 했다. 국방부가 집행하는 전력운영비는 부대 운영비이고, 무기 체계

못하고 해당 미집행 금액을 사고이월 등의 방식으로 2026년으로 일괄 이월하였으며, 차년도인 2026년 1월 9일에 이르러서야 약 1조 5,000억원 규모의 이월 자금을 집행하여 방산업체 대금 미지급 사태 등을 수습하였음.[20]

㈜NXC 주식 매각이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면 세입결손 규모를 줄이고 국방부 등 주요 부처의 연말 예산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향후 국세물납주식매각대 예산안 편성 시 수납가능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21]

관련 비용인 방위력개선비는 방위사업청(방사청)이 주무 부처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네 차례에 걸쳐 총 5조원의 예산 배정을 요청했다. 12월 5주차에 쓸 예산 1조 1,200억원이 포함된 액수였다. 그런데 재경부는 마지막 주 자금에 대해 "한국은행의 국고 계좌 잔액이 부족하다"며 일부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방사청도 비슷한 시기 1조원 넘는 자금을 요청했으나 국고 계좌가 텅 빈 관계로 이를 받지 못 했다. 그 결과 회계연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국방부·방사청이 1조 3038억원을 못 받게 된 것이다.(중앙일보, "초유의 1.3조 국방비 펑크 사태…"통상 있는 일" 이라는 정부", 2026.1.13.)

19) 재정경제부는 국방부는 12월 5조 5,283억원을 신청하였고 재경부는 전액 배정하였으나, 연말 국고 부족으로 5,002억원을 집행하지 못하였고, 방사청도 비슷한 시기 1조 8,765억원을 배정받았으나 국고 부족에 따라 8,036억원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연말 자금여력이 부족하여 재경부에서 배정한 금액 중에서 1조 3,038억원을 집행하지 못한 것이라 설명함.

20) 관계부처 합동, "2025년 말 국방비 이월 집행 자금 1.5조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2026.1.9.

21) 대규모 비상장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는 2대 주주 지분이라는 특성상 유동성이 극히 떨어지는데, 비상장 물납주식의 시장 소화 능력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엄격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등 보수적으로 세입예산안을 편성하는 한편, 특정 자산의 매각 지연이나 세입결손 발생 시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국고금 관리와 연계한 매각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4. 한국은행 잉여금: 높은 환율 변동성에 따른 한국은행 당기순이익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가. 개 요

‘한국은행 잉여금’ 은 한국은행의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을 「한국은행법」에 따라 처분 후 그 잔여분을 다음 연도 정부 세입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징수결정액 5조 4,491억 100만원이 전액 수납(수납률 100.0%)되었음.[22)]

[2025년도 한국은행 잉여금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한국은행 잉여금	4,200,003	5,449,101	5,449,101	5,449,101	-	-	100.0	7,269,092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9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23)]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가 있는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 특정한 목적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하며[24)], 최종 잔여분을 정부의 세입으로 납부함.

---

22) 일반회계-한국은행 잉여금(54-546)(재정경제부 국고실)

23) 「한국은행법」
제99조(이익금 처분) ① 한국은행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을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결산상 순이익금의 100분의 30을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결산상 순이익금을 제1항에 따라 적립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를 특정한 목적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한국은행은 결산상 순이익금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처분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정부에 세입(歲入)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8조 (이익금처분) ① 한국은행은 법 제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순이익금을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4)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2025년 241억원)

[2025년 및 2026년 한국은행 잉여금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연 도		금 액	예산안 세부내역
2025	본예산	4,200,003	■ 한국은행 당기순이익 전망 × 70% -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 출연예상액 = 6,034,500 × 0.7 - 24,100 = 4,200,003
	추경	5,449,101	■ 한국은행 당기순이익 × 70% -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 출연액 = 7,818,900 × 0.7 - 24,100 = 5,449,101
2026예산안		7,269,092	■ 한국은행 2025년도 상반기 당기순이익 × 2(연간기준 조정) × 70% = 4,585,066백만원 × 2 × 0.7 = 6,419,092백만원 ■ 국회 예산 심의 증액 850,000백만원

자료: 재정경제부

나. 검토의견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인해 한국은행 당기순이익의 과소추계가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재정경제부는 한국은행 잉여금 세입 예산의 추계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2026년 이후 재정경제부)는 매년 예산안 편성시 한국은행이 추계한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에 따라 한국은행 잉여금 세입예산안을 산정하는데, 최근 연이은 세입예산의 과소추계로 인한 초과수납이 반복되고 있음.

[한국은행 당기순이익의 처리 현황]

(단위: 억원)

구분	당기순이익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정부납입금
2018	32,137	9,641	354	22,142
2019	53,131	15,939	339	36,853
2020	73,659	22,098	341	51,220
2021	78,638	23,592	266	54,781
2022	25,452	7,636	270	17,546
2023	13,622	4,087	315	9,221
2024	78,189	23,457	241	54,491
2025	153,275	45,982	232	107,050

주) 임의적립금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에 출연하기 위한 목적임

자료: 한국은행 홈페이지, 한국은행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한국은행 당기순이익은 7조 8,189억원으로, 당기순이익 중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을 제외한 한국은행 잉여금은 5조 4,491억원이 수납되었음. 당초 본예산에서는 4조 2,00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월 말 수납이 완료된 이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이미 납입된 초과수납분 1조 2,491억원을 반영하여 세입예산을 경정하였음.

참고로 2025년도 한국은행 당기순이익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조 3,275억원으로, 당기순이익 중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을 제외한 한국은행 잉여금은 10조 7,050억원이 2026년 2월 수납되었고, 이는 예산액 대비 3조 4,369억원 초과 수납된 것임.

[최근 한국은행 잉여금 세입예산 편성 및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		수납액 (C)	초과수납액 (C-A)	초과수납률 (C-A)/A
	본예산(A)	추경(B)			
2018년 (2017년도 발생분)	2,177,000	2,733,367	2,733,367	556,367	25.6
2019년 (2018년도 발생분)	1,912,854	2,214,154	2,214,203	301,349	15.8
2020년 (2019년도 발생분)	2,974,200	3,685,334	3,685,294	711,094	23.9
2021년 (2020년도 발생분)	4,306,100	5,121,987	5,121,987	815,887	18.9
2022년 (2021년도 발생분)	4,031,469	5,478,077	5,478,077	1,446,608	35.9
2023년 (2022년도 발생분)	1,272,464	1,272,464	1,754,625	1,754,625	37.9
2024년 (2023년도 발생분)	1,630,000	1,630,000	922,062	△707,938	△43.4
2025년 (2024년도 발생분)	4,200,003	5,449,101	5,449,101	1,249,098	29.7
2026년 (2025년도 발생분)	7,269,092	7,269,092	10,705,045	3,435,953	47.3

자료: 재정경제부

최근 5년간 한국은행 잉여금의 본예산 대비 초과수납률을 살펴보면, 2022년 35.9%, 2023년 37.9%, 2024년 △43.4%, 2025년 29.7%, 2026년 47.3%으로 약 30%를 넘는 오차율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음.

재정경제부는 한국은행 순이익은 외화자산 운용에 따른 이자, 매매손익 비중이 높아 국내외 금리 및 환율 변동 등에 따른 예측 불확실성이 크고, 향후 한국은행 자체 추계방법 개선과 함께 당해연도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계 정확성 제고 노

력을 지속할 예정이라는 의견임.

특히 2026년 4월까지의 한국은행 누적 당기순이익은 5조 611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전체 순이익 4조 5,850억원을 이미 넘어선 상황이고,[25] 올해 환율의 변동성이 높아 작년과 마찬가지로 외환시장 안정 조치 과정에서 외환 매매익이 크게 발생하고, 환율 상승에 따른 유가증권 매매익과 이자수익이 증가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5~2026년 원/달러 환율]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3.1.1.1. 주요국 통화의 대원화환율(자료검색일: 2026.6.11.)

한국은행 잉여금의 규모가 10조원을 상회하여 주요한 세외수입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재정경제부는 세입-세출의 전체 규모를 보다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은행 잉여금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5) 국민일보, “고환율에 한국은행 순이익 5조 돌파... 4달 만에 작년 상반기 웃돌아”, 2026.5.20.

〈세 출〉

5.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기진단 시스템 구축 사업: 시스템 구축 사업의 연례적 사업기간 연장 부적정

가. 개 요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기 진단 시스템 구축’ 사업은 데이터 발굴·정제를 통한 유의미한 경기 속보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리스크 조기탐지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5억 7,300만원 중 4억 6,000만원이 집행(집행률 80.3%)되고, 8,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200만원이 불용되었음.[26)]

[2025년도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기 진단 시스템 구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가경쟁력 강화 지원	625	625	273	-	898	536	215	97	355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기 진단 시스템 구축	300	300	273	-	573	460	80	32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기진단 시스템 구축 사업은 기존 계량모형과 달리 빅데이터를 활용해 AI 모형을 경기진단에 접목하여 관측시차를 줄이고 실시간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연구용역 사업임.

26) 일반회계-국가경쟁력 강화 지원(1133-301)(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기진단 시스템 구축 사업 목표]

〈 현황(As is) 〉		〈 목표(To be) 〉
ㅇ 공표지표 2개월 시차		ㅇ 시차 1개월 내로 단축
ㅇ 속보데이터 단순 참고(정확도↓)		ㅇ 속보데이터 정확도↑, 지표체계 구축
ㅇ 카드·전력 외 빅데이터 활용 부족		ㅇ GPS 등 다양한 데이터 활용
ㅇ 산업별·지역별 분석 부재	⇨	ㅇ 산업별·지역별 세부지표 마련
ㅇ 실물경기 리포트 미비		ㅇ 정기/수시 동향 리포트
ㅇ 조기경보시스템 미흡		ㅇ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
ㅇ 글로벌 경기 진단 부족		ㅇ 글로벌 실물경기 진단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기진단 시스템 구축사업 개요]

○ (목표) 속보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업·지역별 실물지표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① 속보성 빅데이터 기반 실물지표체계 구축 - 실물경기지표와 관련성이 높은 카드매출액 등 속보성 빅데이터 수집·저장 및 계절성 등 노이즈 제거를 통한 정합성 제고 - 계량·AI모형 등을 통해 여러 빅데이터 결합·활용하여 실물지표 추계정확도 제고 및 단기 전망·예측 - 마이크로 데이터 활용, 산업별·지역별 세부지표체계 구축 ②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주·월간 정기동향 리포트 작성 - 국내 경기뿐 아니라 글로벌 실물지표 분석 병행 ③ 급격한 경기변동시 신속하게 정책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영 및 속보리포트 발행 ④ 중장기 전망 및 잠재위험 관리 등을 위한 심층분석 실시

자료: 재정경제부

나. 검토의견

재정경제부는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인해 시스템 구축이 차년도로 이월되는 경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기진단 시스템을 통해 당초 계획했던 속보성 지표와 자료를 내외부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2026년 이후 재정경제부)는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기진단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24년 6억원, 2025년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각각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음.

한국개발연구원은 2024년과 2025년 모두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기진단 시스템 구축사업을 수주하였으나, 2024년 사업에서는 사업종료기간이 2024년 12월에서 2025년 3월로 한 차례 연장되었고, 2025년 사업에서는 사업종료기간이 2025년 12월에서 2026년 3월로, 다시 2026년 5월로 두 차례 연장되었음.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협의·검토를 면밀히 하고 연구용역 결과물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계약기간을 연장하였다고 설명함.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기진단 시스템 구축 사업]

(단위: 백만원)

연도	사업명	예산액	계약액	당해연도 집행액	차년도 집행액	사업수행기관	계약방식	사업기간
2024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기진단 시스템 구축	600	545	273	273	KDI	일반 경쟁	2024.5. ~2024.12. →2025.3.
2025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기진단	300	268	188	80	KDI	일반 경쟁	2025.8. ~2025.12. →①2026.3. →②2026.5.

자료: 재정경제부

그러나 1차 연구용역 이후 2차 연구용역 추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연구용역의 목적, 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다 심도깊은 검토를 위해 연구용역기간을 연장할 필요성[27]과 별개로, 사전에 연구용역기간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였다고 보임.

또한 연구용역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개발연구원에 실시간 경기진단 시스템 모형이 개발되는 것으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차후에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론만 제시하였을 뿐이고, 한국개발연구원이 실제 경기진단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설명되고 있음.

이에 따라 해당 연구용역이 완료된 이후에도 용역과제를 통해 도출된 경기진단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할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데, 이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재정경제부가 지속적으로 속보성 자료를 받아보아야 민간소비 및 투자 등에 대한 적시성 있는 정책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재정경제부는 해당 연구용역이 도전적인 성격이 있어 당초 연구기간 내 사업성과가 미진한 측면이 있고, 향후 한국개발연구원이 자체 사업으로 해당 연구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따라서 두 차례의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한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기진단 시스템이 한국개발연구원 외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는 한국개발연구원과 협의하여 경기진단 결과를 정책판단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27) 재정경제부는 사업 내용이 도전적인 측면이 있어 당초 계약기간을 설정했던 시점에 예상했던 것보다 연구기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계약기간을 연장하였다고 설명함.

6. 조세개혁추진단 운영 사업: 임시조직의 운영방식 개선 필요

가. 개 요

‘조세개혁추진단 운영’ 사업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간 연계성 제고 및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등 조세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임시조직인 조세개혁추진단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억 5,200만원 중 1억 6,800만원이 집행(집행률 47.7%)되고, 1억 8,400만원이 불용되었음.[28)]

[2025년도 조세개혁추진단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조세개혁추진단 운영	273	273	79	6	352	168	-	184	74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조세개혁추진단은 2023년 2월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및 부동산 세제의 개편 등 조세개혁 관련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5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되었으나, 추진단 운영기한은 당초 2025년 3월에서 2026년 3월로, 다시 2028년 3월로 두 차례 연장되었음.

기획재정부(2026년부터 재정경제부) 내에 설치된 조세개혁추진단은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개편 및 보유세 개편 등과 관련하여 조세제도 개편 추진계획 수립, 관련 법·제도 개선, 여론 수렴, 국내외 동향 점검·분석 및 시스템 구축·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29)]

---

28) 일반회계-조세개혁추진단 운영(2131-310)(재정경제부 조세개혁추진단)

29) 「조세개혁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재정경제부에 조세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은 조세제도 개편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세제도 개편 추진계획 수립
2. 조세제도 개편의 추진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
3. 조세제도 개편 관련 홍보 및 여론 수렴
4. 조세제도 개편 관련 국내외 동향 점검·분석
5. 조세제도 개편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개선
6. 그 밖에 조세제도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서 “조세제도 개편“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나. 검토의견

재정경제부 내에서 조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조직이 세제실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임시조직인 조세개혁추진단의 적정 운영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임시조직의 운영에 있어 상설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조세개혁추진단은 ① (상속세개편팀)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② (보유세개편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려는 목적에서 설치되었음.[30]

상속세 개편과 관련하여 조세개혁추진단은 세 차례의 연구용역[31] 및 공청회 등을 거쳐 2025년 5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에서 상속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귀속되는 상속취득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유산취득세)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32]

보유세 개편과 관련하여 조세개혁추진단은 재산세·종부세 제도 현황, 보유세 연계 필요성, 보유세 통합시 신고방식·기한 조정, 규정 체계 등을 포함하여 두 차례의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음.[33][34]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중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 개편
3.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의 연계성 제고
4. 그 밖에 조세개혁 관련 국정과제의 추진과 관련한 사항

30) 「조세개혁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836호)의 제정이유는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및 부동산 세제의 개편 등 조세개혁 관련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세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임.

31) [상속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 현황]

연구용역명	수행기관	기간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법무법인광장, 삼정회계법인	2022.10.~2023.12.
국가 간 상속세제 차이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5.~2023.12.
신탁에 대한 외국 상속·증여세 제도 연구	한국국제조세협회	2024.2.~2024.12.

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0618호, 정부 제출)은 2025년 5월 28일 제출되어 2025년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되었으나 소위 계류 중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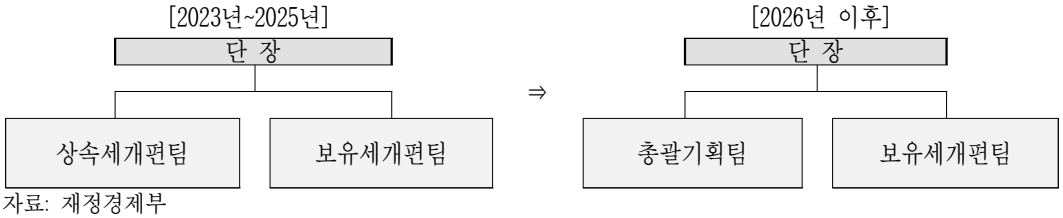
33) [보유세 개편 관련 연구용역 현황]

연구용역명	수행기관	기간
보유세 연계성 강화를 위한 개편 필요성 및 향후 개편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7월~2024.12월
부동산세제 합리화 방안 연구	한양대, 가천대 등	2025.12월~

재정경제부는 유산취득세 법안의 국회 논의 경과에 따라 후속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행정시스템 개발지원 등 최소 1년 이상 상속세 개편팀의 업무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2025년 정기회 논의 결과 유산취득세 개편이 장기과제화되었으며, 재정경제부는 상속세개편팀을 총괄기획팀으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음.

또한 보유세개편팀은 재산세·종부세에 관한 검토를 수행하고 있으나, 「재정경제부 직제」는 정규조직인 세제실이 전반적인 조세제도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중장기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및 중장기 조세개혁 과제의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35] 조세개혁추진단의 업무 중 상당부분이 세제실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조세개혁추진단 조직도]



자료: 재정경제부

그런데 재정경제부는 2026년 조세개혁추진단의 존속기간을 2년 연장하면서 조세개혁추진단의 설치목적을 조세개혁 관련 '국정과제'에서 '국정 현안'으로 변경하였으며, 조세개혁추진단을 통해 새로운 개혁과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고, 세제실과의 해당 임시조직과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조세제도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임.[36]

---

34)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53번)인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추진을 위해 재산세(지방세)-종부세(국세) 연계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35) 「재정경제부 직제」
제17조(세제실) ① 세제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5명을 둔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8. 중장기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9. 중장기 조세개혁 과제의 발굴
20. 국세와 지방세 정책의 총괄·조정 및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32. 재산 관련 세제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33.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조세개혁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목적 조항 개정사항]

개정 전 (2025.3.31. 시행 국무총리훈령 제886호)	개정 후 (2026.3.31. 시행 국무총리훈령 제927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및 부동산 세제의 개편 등 조세개혁 관련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세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및 부동산 세제의 개편 등 조세개혁 관련 국정 현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세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시스템

그러나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조세개혁추진단이 담당하는 업무 중 상당수는 정규조직인 세제실의 업무에 포함되며, 조세개혁추진단의 존속기간 연장은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른 임시조직의 설치·운영 방침과도 상이한 측면이 있음. 해당 지침에 따르면 국무총리 훈령으로 설치된 임시조직은 2년의 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조세개혁추진단은 2025년 3월 존속기간을 1년간 연장한 이후 2026년 3월 존속기간을 2년 더 연장한 것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른 임시조직의 설치·운영 기준]

○ (존속기간) 임시조직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존속기간을 설정하여 설치 근거에 명시
- 존속기간 경과 시에는 임시조직을 폐지하고 해당 수행기능을 종료시키거나 기존 정규조직으로 이관함을 원칙으로 하나,
- 불가피한 경우 2년의 기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다만, 총리훈령 이상의 법령으로 설치된 임시조직은 2년 이상으로도 연장 가능하나, 2020년 정부조직관리지침 시행이후에 설치되는 임시조직은 상기 기준 적용

○ (설치·운영) 각 부처는 기존 직제·직제시행규칙상의 상시적 업무를 별도로 분리하여 임시조직을 설치·운영하거나, 임시조직을 사실상 상설화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각 부처 내 공통업무(인사, 조직, 기획 등)의 수행을 위한 임시조직은 설치·운영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

※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 임시조직 운영•관리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자료: 행정안전부, 「2026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2026.3.

정규조직과 담당업무가 유사, 중복되는 임시조직의 운영이 상설화될 경우 인건비, 운영비 등의 예산이 임시조직의 운영을 위해 추가적으로 지출될 수 있으며, 조직 내부의 승진 적체 해소나 별도 정원 유지를 위한 우회적 수단으로 임시조직이 활용된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37]

36)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세제실은 건의 검토 등을 통해 정기 세제개편안 마련·발표(매년), 그 외 세법 해석, 수시 개정 등 세제 관련 당면 현안을 대응하는 반면, 조세개혁추진단은 심층 검토·중장기 추진이 필요한 조세개혁 방안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또는 다수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조정 등을 수행할 계획임.

37) 재정경제부는 추진단은 2026년 조직연장 과정에서 단장 직급을 고위공무원단에서 3급으로 조정하고, 별도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조세제도의 개편 추이를 바탕으로 조세개혁추진단의 운영 필요성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세제실과 유사,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화된 조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정원을 9명에서 7명으로 감축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우려는 과도하다는 의견임.

7. 일시차입금이자상환 사업: 상반기 조기집행 및 추경에 따른 한은 일시차입금 과다 집행 지양 등

가. 개 요

‘일시차입금이자상환’ 사업은 국고금 출납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시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재정증권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090억 4,400만원 중 2,063억 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7%)되고, 27억 3,700만원이 불용되었음.[38]

[2025년도 일시차입금이자상환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99,209	99,209	-	109,835	209,044	206,307	-	2,737	110,000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국고금 관리법」에서는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할 때에는 재정증권의 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는 수익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그 부족분을 일반회계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39]

---

38) 일반회계-일시차입금이자상환(2272-561)(재정경제부 국고실)

39)「국고금 관리법」
제32조(자금의 조달) ① 국가는 국고금의 출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달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금조달의 최고액은 자금조달이 필요한 각 회계·계정(통합계정에 포함되는 회계·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통합계정 및 기금별로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금은 자금이 필요한 각 회계·계정, 통합계정 및 기금의 부담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조달한다. 다만,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수익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그 부족분은 일반회계가 부담한다.
⑤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한 자금은 자금 소요의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지체 없이 상환하여야 한다.

이 사업의 2025년 당초 예산은 992억 900만원이었으나, 일시차입금 이자 부족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사업에서 총 1,098억 3,500만원을 이용(移用)하여 집행하였음.

[2025년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사업 이·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이용 (2025.7.16)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8711-871)	510-05	71,823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2272-561)	510-03	일시 부족자금 충당을 위해 발행한 재정증권 및 한은 일시차입 이자비용 지급 필요
자체이용 (2025.9.24)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8711-871)	510-05	7,580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2272-561)	510-03	일시 부족자금 충당을 위해 발행한 재정증권 및 한은 일시차입 이자비용 지급 필요
자체이용 (2025.12.24)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8711-871)	510-05	30,432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2272-561)	510-03	일시 부족자금 충당을 위해 발행한 재정증권 및 한은 일시차입 이자비용 지급 필요
합계			109,835			

자료: 재정경제부

나. 검토의견

첫째,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은 주로 재정의 신속집행으로 발생하는데, 2025년의 경우 상반기 신속집행 및 추가경정예산의 조기집행 과정에서 자금 차입 규모가 확대되어 상당한 이자비용이 발생하였으므로, 기획예산처는 향후 신속집행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전제로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2026년 이후 기획예산처)는 매년 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집행실적을 관리하는 재정의 신속집행을 시행하고 있으며, 상반기 신속집행을 위한 재원의 부족분은 재정증권의 발행이나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통해 조달하고 있음.

2025년 중앙정부 기준으로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및 실적을 보면, 주요사업비 내 관리 실익이 있는 주요 비목을 대상으로 연간계획(241.1조원)의 66.8%인 161.1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것을 목표를 설정하였고, 연간계획 대비 69.5%인 167.5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하였음.

[공공부문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및 실적]

(단위: 조원, %, %p)

구분	2024년			2025년					전년대비	
	연간 계획 (a)	상반기 집행액 (b)	집행률 (c=b/a)	연간 계획 (d)	상반기 목표 (e)	상반기 집행액 (f)	집행률 (g=f/d)	상반기 목표대비 (f-e)	집행액 (f-b)	집행률 (g-c)
합 계	618.7	389.1	62.9	622.3	390.3	406.1	65.3	15.8	17.0	2.4
❶ 재 정	549.5	349.4	63.6	551.1	349.9	363.8	66.0	13.9	14.5	2.4
중 앙	240.6	159.4	66.3	241.1	161.1	167.5	69.5	6.4	8.1	3.2
지 방	282.5	170.2	60.2	283.5	171.5	177.3	62.6	5.8	7.1	2.3
지방교육	26.4	19.8	74.9	26.6	17.3	19.0	71.4	1.7	△0.8	△3.4
❷ 공공기관 투자	63.5	37.0	58.2	66.0	37.6	39.9	60.4	2.3	2.9	2.2
❸ 민간투자	5.7	2.8	48.6	5.2	2.8	2.4	46.1	△0.4	△0.4	△2.6

자료: 기획재정부, “제19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2025.7.10.

또한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도 정부는 신속집행 기조를 유지하였음. 2025년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의결 이후 정부는 재정집행점검회의를 통해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집행관리 대상 예산을 신속집행(제1회 70%, 제2회 85%)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기획재정부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결(5.1. 의결) 후 추경예산 총 13.8조원 중 예비비(1.4조원) 등을 제외한 12.0조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국회 통과 후 3개월이 지난 7월 말까지 70% 수준인 8.4조원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참고로 2025년 8월 재정집행점검회의 결과, 제1회 추경예산 중 집행관리 대상 예산은 2025년 7월말까지 8.8조원(74%) 집행되어 목표대비 4.0%p 초과집행되었음.[40]

40) 관계부처 합동, “관계부처 합동 제21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025.8.7.

[2025년 제1회 추경예산 집행계획]

(단위: 조원)

분야	규모 (조원)	D+3개월 (7월말)	(%)	비고(주요사업)
집행관리대상 합계	12.0	8.4	70.5	-
1 재해·재난	1.7	0.9	54.1	재해·재난대책비 산림헬기 도입 등
▪ (재해·재난 대책비)	0.8	0.6*	72.8	-
2 통상 및 AI 지원	4.3	3.8	88.0	고성능 GPU 도입 등
3 민생 지원	5.1	3.3	65.2	부담경감 크레딧 등
4 기타(건설경기 보강 등)	0.9	0.4	46.7	철도·도로 유지보수 등

주) (행안부) 재난지원금, 시설복구 등 4,500억원 (환경부) 재난폐기물 처리비용 등 1,120억원, 태풍 등 여름철 재난 복구비 등 2,100억원 제외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5년 추경예산 집행계획”, 2025.5.8.

기획재정부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의결(7.4.) 후 추경예산 총 31.8조원 중 세입경정(10.3조원) 등을 제외한 20.7조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3개월이 지난 9월 말까지 87.5%를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참고로 2025년 10월 재정집행점검회의 결과, 제2회 추경예산 중 집행관리 대상 예산은 2025년 9월말까지 19.1조원(92.4%) 집행되어 목표대비 5%p 초과집행되었음.[41]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집행계획]

(단위: 조원)

구분	규모 (조원)	D+3개월 (9월말)	(%)	주요사업
합계	20.7	18.1	87.5	
1 경기진작	16.7	15.1	90.7	
▪ 소비활력	13.1	12.9	98.2	민생회복 소비쿠폰(12.2조원)
▪ 건설경기활성화	2.5	1.3	52.5	PF 개발앵커리츠 출자(0.2조원)
▪ 투자촉진	1.1	0.9	86.2	AI 혁신펀드(0.05조원)
2 민생 안정	4.0	3.0	74.4	
▪ 소상공인	1.4	1.4	99.6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0.4조원)
▪ 고용안정	1.6	1.0	62.2	국민취업지원제도(0.2조원)
▪ 취약계층 지원 등	1.0	0.6	57.8	전세임대융자(0.3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2차 추경 긴급 재정집행점검회의”, 2025.7.5.

41) 관계부처 합동, “관계부처 합동 제2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025.10.16.

이와 같은 정부의 상반기 신속집행 및 추가경정예산의 3개월 내 조기집행 기조로 인해 상반기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으로 인한 이자비용이 크게 발생하였음.

최근 10년간 한국은행 차입금 및 재정증권 발행으로 이한 이자비용은 평균적으로 1,716억원이었으나, 2023년부터 연이은 세수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이자비용은 2023년 4,244억원, 2024년 4,865억원, 2025년 3,567억원으로 최근 10년 평균(1,716억원)을 지속적으로 2배 이상 상회하고 있음.

[최근 10년간 연도별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차입 현황]

(단위: 조원, %, 억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3.
■ 일시차입 한도		30.0	30.0	30.0	30.0	30.0	40.0	40.0	40.0	40.0	40.0	40.0
■ 차입실적(누계)		29.9	9.9	2	84.7	142.5	36.4	50.5	162.1	214.8	203.5	37
- 한은차입		9.0	2.0	-	36.0	97.2	7.5	34.2	117.6	165.0	155.5	17.0
- 재정증권 발행		20.9	7.9	2.0	48.7	45.3	28.9	16.3	44.5	49.8	48.0	20.0
■ 차입실적(평잔)		3.7	1.22	0.1	10.1	12.5	5	4.6	12	14.1	13.4	8.6
- 한은차입		0.2	0.02	-	2.3	4.8	0.1	1.8	4.4	5.9	5.8	2.0
- 재정증권		3.5	1.2	0.1	7.8	7.7	4.9	2.8	7.6	8.2	7.6	6.6
■ 조달금리(평균)		1.49	1.39	1.62	1.71	0.87	0.63	1.61	3.58	3.51	2.68	2.57
- 한은차입		1.53	1.43	1.66	1.70	0.99	0.71	1.78	3.60	3.51	2.73	2.46
- 재정증권		1.45	1.34	1.57	1.71	0.74	0.55	1.43	3.56	3.51	2.62	2.67
■ 이자비용		555	160	24	1,648	1,133	293	667	4,244	4,865	3,567	166
- 한은차입		26	2	-	280	523	18	273	1,497	1,901	1,541	166
- 재정증권		529	158	24	1,368	610	275	394	2,747	2,964	2,026	-
이자상환	운용수익금	555	160	24	1,648	951	212	668	4,244	2,758	1,504	-
	예산(일시차입금 이자상환)	-	-	-	-	182	81	-	-	2,107	2,063	166
	<합계>	555	160	24	1,648	1,133	293	668	4,244	4,865	3,567	166

주) '운용수익'은 국고금 운용수익에서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함
자료: 재정경제부

그러나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의 실집행 단계에서의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실집행 실적 부진 사업이 다수 발생하였으며,[42] 이는 조기집행을 위한 자금조달과 그에 따른 이자비용이 지출되었으나 실제 사업현장에서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역시 상당수 존재하며 결과적으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음을 의마함.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조기집행의 비용 및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기반으로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기획예산처는 2024년 한국재정정보원을 통해 신속집행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해당 연구에 따르면 신속집행에 따른 추가적 이자비용 대비 민간의 이자비용 보조 효과가 더 높음.[43]

그러나 이는 중앙정부 차원의 1차적인 집행이 아닌 지자체, 공공기관 등 최종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의 실제 집행 실적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둘째, 2024년 및 2025년 일시차입금 이자 예산 부족분을 타 사업 예산 이용(移用)으로 충당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근복적으로 통합계정 운용수익으로 이자비용을 우선 지급하도록 규정한 「국고금 관리법」에 기인한 것으로, 중장기적으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운용수익과 이자비용을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1년부터 최근 5년간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사업의 편성 및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에는 대부분의 예산이 불용되고 2022년과 2023년에는 일반회계 예산집행이 없었으나 2024년과 2025년에는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이 부족하게 됨에 따라 당초 편성한 예산보다 더 많은 재원을 타 사업으로부터 이용하여 집행하였음.

---

4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법무부 등 9개 부처에서 총 21개 세부사업의 실집행률이 70% 미만인데, ① 산불피해 복구 및 산불 대응역량 강화 사업은 주민협의・설계・인허가 및 장비 도입 등 사전절차 지연으로 실집행이 저조한 사례가 나타났고, ② 수출지원 바우처・이차보전・융자 사업은 실제 수요와 지원방식 간 차이, 서비스 사용 및 정산 시차 등으로 실집행률이 낮게 나타났으며, ③ 지자체 보조사업은 지방비 확보, 주민협의 및 사업계획 수립 등에 시간이 소요되었고, ④ 공항시설・도시재생・하수관로 정비 등 시설사업은 설계, 기본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 선행절차로 인해 연내 실집행이 제한된 것으로 보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법무부 등 13개 부처에서 총 31개 세부사업의 실집행률이 70% 미만인데, ① 문화・체육 분야의 소비쿠폰・이용권 사업은 시스템 구축, 사용기간, 지방비 확보, 실제 사용률 등에 따라 실집행이 저조하게 나타났고, ② 농림・산림・해양수산 분야의 산불피해 복구 및 설비지원 사업은 공사 착수, 인허가, 대상자 선정, 추가 자부담 등으로 실집행이 지연되었으며, ③ 국토교통부의 출자사업은 국고 출자 이후 리츠 설립, 민간투자 유치 및 투자심의 절차가 남아 있어 2025년 말 기준 실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43) 재정집행을 민간에 대한 정부의 자금공급이라고 볼 경우, 일반적으로 민간의 자금조달금리는 정부의 자금조달금리 대비 높기 때문에 정부가 신속하게 자금을 집행(공급)할수록 민간이 이자율 보조 효과를 누리게 된다는 것임.

이는 일차적으로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으로 인해 본예산 편성 시보다 한국은행 일시차입 수요가 확대됨에 따른 것으로 과소추계 요인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이자비용 충당규정으로 인해 국고금 통합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에 대해 예산 편성 시에 계상하기 어려워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

[2021~2026년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사업 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1	60,800	60,800	-	-	60,800	8,096	-	52,704
2022	25,000	25,000	-	△5,916	19,084	-	-	19,084
2023	-	-	-	-	-	-	-	-
2024	99,209	99,209	-	111,500	210,709	210,709	-	-
2025	99,209	99,209	-	109,835	209,044	206,307	-	2,737
2026	110,000	110,000	-	-	-	-	-	-

자료: 재정경제부

「국가재정법」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은 국가재정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예산 총액에 온전히 계상하도록 하나, 현행 「국고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은 국고금 통합계정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을 활용하여 일시차입에 따른 이자비용을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이러한 조달 및 지출 방식은 실질적인 세입과 세출을 장부상에서 상계 처리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국가재정 상태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반영해야 하는 예산운용의 기본원칙과 상충할 여지가 있음.

이처럼 국고금 운용수익과 이자비용이 예산 체계 밖에서 상계처리됨에 따라, 정부가 실제 부담하는 이자 지출의 총액과 국고금 운용을 통해 확보한 총수익의 규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발생함. 결과적으로 이는 정부의 일시차입금 조달 규모 및 운용 내역에 대하여 국회가 예산 편성 단계에서 그 적정성을 심의하거나, 사후 결산 과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관리·감독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임.

특히 국고금 운용수익과 이자비용 상계를 규정한 「국고금 관리법」 제32조제4항은 2005년 1월 도입된 이후 큰 내용변경 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재정법」의 총계주의 근거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수정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국고금 관리법」을 개정하여 통합계정의 운용수익과 일시차입

이자비용을 각각 세입과 세출예산에 투명하게 반영하고, 국고금 이자수익과 재정증권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에 따른 이자비용을 명확히 산출하여 이를 국회가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8. 재정사업 평가 사업: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 전환을 위한 사전 준비 부족 등

가. 개 요

‘재정사업평가’ 사업은 재정사업 및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기금 및 부담금 평가관리, 보조사업 연장평가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4억 6,200만원 중 29억 2,800만원이 집행(집행률 84.6%)되고, 9,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억 4,400만원이 불용되었음.[44)]

[2025년도 재정사업평가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재정사업평가	3,311	3,311	116	35	3,462	2,928	90	444	5,229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국가재정법」은 국가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성과 중심의 재정 관리를 규정하고 있고, 동 사업은 재정사업 및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기금 및 부담금 평가관리, 보조사업 연장평가 등을 수행하는 것임.

한편, 2026년 정부조직 개편 이후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 및 재정 효율화 기능을 전담하게 되었으며, 출범 직후인 2026년 1월을 기점으로 기존의 각 부처 주관 ‘재정사업자율평가’를 폐지하고 기획예산처가 직접 총괄·주관하는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를 도입하여 전면 시행에 돌입하였음.[45)]

나. 검토의견

재정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인 재정사업자율평가가 2026년부터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로 개편되었는데, 평가의 근거법령이 뒤늦게 개정되는 등 체계적인 개편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기획예산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44) 일반회계-재정사업평가(2644-300)(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

45) 기획예산처,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2026.01.27.

기획예산처는 2026년 1월 27일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외부 전문가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150명 규모의 합동 평가단을 구성하고, 총 2,487개 재정사업에 대한 원점 재평가에 착수하였음. 올해부터 재정사업 성과평가 방식을 각 부처 자체평가 방식에서 민간 전문가 중심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통합평가 체계로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임.[46]

[2026년 재정사업 평가체계 개편 주요내용]

	(~2025년) 부처별 자체평가	(2026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평가방식	▪ 각 부처가 소관사업 자체평가	▪ 재정당국이 전부처 사업 직접평가
평가단	▪ 각 부처 주관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부처별 5인 이상, 1/2이상 민간위원 ▪ 소관부처 공무원 및 해당분야 연구원·교수 중심	▪ 기획처가 통합평가단* 일괄 구성 * 15개 분야, 총 153명 (보조사업평가 통합 실시를 위한 평가위원 약 30명 포함) ▪ 민간전문가 중심, 시민사회 포함 (기획처+개별평가 주관부처 참여)
평가대상	▪ 총 1,855개 사업 ▪ 타부처 개별평가 대상* 제외 * 재난안전·균형발전·일자리·중소기업 지원사업평가(532개)	▪ 총 2,487개 사업 ▪ 부처별 자체평가 + 타부처 개별평가 + 보조사업 연장평가 + 복권기금평가(공익지원) 포함
평가 통합·연계	▪ 평가 주관부처(행안부·고용부·중기부·지방위)에서 평가별 각각 실시	▪ 보조평가·복권기금(공익지원)·균형발전(부처직접편성) 통합 실시 ▪ 재난안전·일자리·중소기업평가는 평가연계, 정책성 평가로 차별화
평가항목	▪ 형식적 절차 준수 여부 확인 위주	▪ 재정지원 타당성·계획·집행·성과 등 실질적 내용 평가
평가등급	▪ 보통 / 우수 / 미흡	▪ 정상추진(우수포함) / 사업개선 / 감액 / 폐지·통합
환류(지출구조조정)	▪ 부처별 자체 지출구조조정 계획 반영 ▪ 우수사업 별도 인센티브 없음	▪ 평가결과 부처 통보(감액등급 개별사업 △15%이상) → 부처별 예산요구안 반영 ▪ 우수사업은 증액권고, 담당자 포상, 차년도 평가유예
평가결과 공개	▪ 열린재정에 일부 공개(5월) - 사업별 평가등급 - 부처별 지출구조조정 계획 (부처별 예산요구안 반영계획) ※ 평가보고서(원문) 미공개	▪ 열린재정에 모두 공개(6월) - 평가결과를 반영한 구조조정 실적(정부예산안 반영 현황) - 평가결과 미반영 사유서 ※ 평가보고서(원문) 공개(6월), 미반영 사유서 공개(9월)

자료: 기획예산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원년, 국민 눈높이에서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추진”, 2026.5.15.

46) 기획예산처, “재정사업 성과평가단 출범”, 2026.1.28.

해당 평가는 약 5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2026년 5월 20일 최종 결과가 확정 발표되었으며, 전체 대상 사업의 36.2%에 달하는 901개 사업이 감액, 개선, 또는 통폐합 대상으로 지정되었음.[47]

그러나 2026년 상반기에 진행된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의 추진 과정을 살펴볼 때,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 또는 법령 준비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사업자율평가의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로의 전환이 추진되었던 것으로 보임.

2025년 재정사업 평가의 '재정사업 성과관리 연구용역' 내역사업에는 당초 정책연구비가 1억원 편성되었으나 1억 500만원을 전용하여 예산현액 2억 500만원 중 1억 6,800만원을 집행하고 1,4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300만원을 불용하였음.[48]

[2025년 재정사업성과관리 연구용역 내역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재정사업성과관리 연구용역	100	100	-	105	205	168	14	23	100
- 정책연구비(260-02)	100	100	-	105	205	168	14	23	100

2025년 재정사업성과관리 연구용역은 성과관리목표관리제, 재정사업 심층평가, 기금 자산운용, 연기금 투자풀 운영기관 선정 등에 대한 것으로, 재정사업자율평가를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로 전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이 수행된 바 없음.

---

47) 기획예산처, 「2026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확정 통보」, 2026.05.20.

48) [2025년 재정사업 평가 사업 중 정책연구비(260-02) 관련 이·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025.9.12.)	재정사업평가 (2644-300)	210-14	45	재정사업평가 (2644-300)	260-02	재정사업심층평가 20주년 운용성과 점검 및 발전방향 연구 수행을 위해 일반용역비에서 정책연구비로 비목 변경
전용 (2025.11.18)	국가회계제도 운영 (2631-301)	260-02	35	재정사업평가 (2644-300)	260-02	기금 자산운용 공통 가이드라인 및 운용기본방향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가발주
	재정사업평가 (2644-300)	210-14	25			

[2025년 재정사업성과관리 연구용역 계약 체결 현황]

(단위: 백만원)

	연구용역명	발주 금액	계약 금액	수탁기관	계약기간	계약방식
1	성과목표관리제 개선방안 연구	45	45	한국재정정보원	2025.9. ~2025.12.	수의
2	재정사업 심층평가 20년 운용성과 점검 및 발전방향 연구	45	4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5.9. ~2026.2.	수의
3	기금 자산 운용 기본방향 연구	60	6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5.12. ~2026.2	수의
4	연기금투자풀 운영기관 선정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50	50	한국재무학회	2025.3. ~2025.9.	수의

자료: 재정경제부

또한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는 2026년 1월부터 2026년 5월 20일까지 진행되었으나, 해당 제도의 근거법령(「국가재정법 시행령」)은 평가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시점인 2026년 5월 6일에서야 비로소 개정·공포되었으며, 기획예산처는 시행령 입법예고는 거치지 않았음.[49)]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3 개정 전후 비교]

「국가재정법 시행령」(2025년 5월 6일 이전)	「국가재정법 시행령」(2025년 5월 6일 이후)
제39조의3(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이하 “재정사업자율평가“라 한다)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	제39조의3(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라 재정사업 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라 한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평가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49)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 · 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 ·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 ·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재정법 시행령」(2025년 5월 6일 이전)	「국가재정법 시행령」(2025년 5월 6일 이후)
률」에 따른 성과평가로 재정사업자율평가 또는 심층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1.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이나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3. 향후 지속적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심층적인 분석·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 등 개별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와 통합 또는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개별법령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각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이나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3. 향후 지속적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심층적인 분석·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평가로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 또는 제4항에 따른 심층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은 국무회의 보고(2026.1.27.)를 마쳐 행정절차를 거친 바 있고,[50]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일정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제출 기한(5월 31일) 전까지 평가결과를 통보해야 하므로, 시행령 개정 절차와 실무 평가를 병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임.

그러나 평가대상 사업이 상당수 증가하고 평가에 따른 환류가 강화되는 등 재정사업평가의 전반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평가제도의 개편이 보다 정교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연구용역, 전문가 및 피평가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거치는 한편, 근거법령 역시 평가 이전에 정비하고 개정 이전에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제도개편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다고 보임.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향후 재정제도의 개편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50) 기획예산처는 통합평가로의 개편 과정에서 피평가 기관의 예측 가능성,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회의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는 의견이나, 이와 같은 부처간 의견수렴은 평가 중의 피드백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전 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임.

9. 분야별 지출구조조정 사업: 2025년 지출구조조정의 적정성 검토

가. 개 요

‘분야별 지출구조조정’ 사업은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정수요 전망에 기초한 분야별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연구하는 정책연구용역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4억 200만원 중 1억 9,500만원만 집행(집행률 48.5%)되고 3,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 7,200만원이 불용되었음.[51]

[2025년도 분야별 지출구조조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856	856	41	-	897	599	71	227	3,561
분야별 지출구조조정	361	361	41	-	402	195	34	172	-

주 1)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시 과목구조 개편으로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사업으로 통합되었음

나. 검토의견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실시된 지출구조조정은 사업축소 없는 단순 지출시기 연기, 자연 종료 사업 포함, 사업 단순 이관 및 명칭변경 등이 포함되어 지출구조조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기획예산처는 지출구조조정이 보다 면밀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2026년 이후 기획예산처)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2025년도 예산 중 지출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하여 이를 기반으로 추경재원을 마련한 바 있음.[52]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의 지출구조조정에는 단순히 지출시기를 차년도로 이연한 경우가 많고, 감액된 사업의 경우 실제 집행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감액규모가 과

51) 일반회계-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2712-301)(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

52)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의 재원]

소추계된 경우도 발견됨.[53]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의 지출구조조정 사업 중 시설 구축사업과 ODA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를 감축하지 않고 예산 지출시기만 연기하여 실질적인 지출구조조정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지출구조조정 대상 사업 중 사업규모 감축 없이 지출 시기만 연기하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소관	회계/기금	세부사업	규모	
				지출구조조정 총규모 대비 비중
국가보훈부	일반회계	국립묘지조성	△9,724	△0.18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	중남미차관(융자)(ODA)	△8,000	△0.15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융자)(ODA)	△32,000	△0.61
교육부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60,000	△1.14
외교부	일반회계	베트남(ODA)	△5,000	△0.09
외교부	일반회계	아시아태평양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5,000	△0.09
외교부	일반회계	아프리카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5,000	△0.09
외교부	일반회계	탄자니아(ODA)	△8,000	△0.15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우수유출저감시설설치(보조)	△16,092	△0.31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신기술 융합 콘텐츠 산업육성	△5,000	△0.09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12,669	△0.24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7,000	△0.13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숙련기술장려사업	△9,189	△0.17

(단위: 백만원, %)

항 목	재원 규모	비 중
국채 발행	19,823,774	64.9
지출구조조정	5,272,166	17.3
외평채 축소	3,000,000	9.8
기금 여유자금 등	2,449,157	8.0
합계	30,545,097	100.0

자료: 기획재정부

53)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25.6.

(단위: 백만원, %)

소관	회계/기금	세부사업	규모	지출구조조정 총규모 대비 비중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25,100	△0.48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남부내륙철도	△50,000	△0.95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월곶-판교 복선전철	△20,000	△0.38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충북선 고속화	△9,957	△0.19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가덕도신공항건설	△522,364	△9.91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25.6.

또한 지출구조조정에 포함되었으나 추가 감액이 필요하거나, 유사·연관 사업 중 추가적인 감액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바 있음. 해당 사업의 2025년 결산 실적을 살펴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스마트하수도관리체계 구축·운영’[54] 및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 출자’[55] 사업은 실제로도 불용액이 각각 42억원과 92억원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당시 추가적인 지출구조조정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임.

[지출구조조정 사업 및 유사·연관사업 중 추가 검토 필요 사업]

(단위: 백만원)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	추경안 조정규모	추가 검토 필요성	예산(계획) 현액	집행액	불용액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구축·운영	△10,000	이미 확정된 총사업비의 국비 지원액 보다 과다 금액이 편성되어 추가 감액 검토 필요	42,367	38,143	4,224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	행복주택 출자	-	행복주택 물량 감소 및 LH의 미집행 출자금을 고려한 신규 출자 지원 최소화 방안 검토 필요	134,594	125,375	9,219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25.6.

54) 환경부의 **‘스마트하수관로’** 사업은 내내역사업인 ‘광주 스마트 도시침수 사업’의 총사업비가 감액 조정됨에 따라 국비지원 규모가 감액조정 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하여 2025년도 본예산 171억 2,000만원 중 100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전년도이월액 및 기 투입금액을 고려하면, 추경안 감액을 반영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총사업비의 국비 지원액보다 과다한 금액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추가 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5)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융자)’** 사업은 통합공공임대가 본격적으로 공급됨에 따라 행복주택 사업의 신규 사업승인 물량이 없어 불용예상액이 감액(△1,244억원)된 것인데, ‘행복주택 출자’ 사업의 경우에도 행복주택 물량 감소 및 LH의 미집행(상계대상) 출자금을 고려하여 신규 출자 지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시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공개하고 역대 최대인 27조 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발표하였으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예산 절감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들이 다수 포함되어 지적을 받은 바 있음.[56]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① 2025년 종료 사업 예산 감액을 지출 구조조정 실적에 포함시킨 경우,[57] ② 총사업비의 감액 변경 없이 2026년 예산만 감액한 경우,[58] ③ 사업의 이관·조정으로 인해 실제 지출 감소 효과가 미미한 경우,[59] ④ 의무지출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 성과로 보기에 미흡한 경우,[60] ⑤ 추가적인 지출 구조조정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이 있음.[61]

이처럼 2025년도에 진행된 지출구조조정은 사업축소 없는 단순 지출시기 연기, 자연 종료 사업 포함, 사업 단순 이관 및 명칭변경 등 지출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음.

한편 기획예산처는 「202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해 지출 구조조정의 대상에서 시설물 구축, 장비도입 완료 등에 따라 사업이 종료되거나 예산이 자연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의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였음. 또한 2027년도 예산안의 지출 구조조정 목표로, 규모 측면에서는 필수 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의 15%와 의무지출의 10%를 감축하고 사업 수 측면에서는 지출구조조정 대상 내역사업 수의 10% 수준을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음.

그러나 특정 내역사업을 폐지하고 다른 내역사업에서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

---

5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총괄)”, 2025.11.

57) 정부의 지출구조조정 내역 중에는 2025년에 종료 예정인 사업 예산 감액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과 관계없이 2026년도에 편성되지 않을 예정이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지출 구조조정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58)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 중 2026년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 편성되었으나 총사업비의 감액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도 정부 지출 구조조정 실적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지출 총액의 변화 없이 단순히 지출 시기만 이연된 것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지출 구조조정 성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59) 사업 내용 중 일부가 변경되어 예산이 감액됨에 따라 지출 구조조정 실적에 포함된 사업 중 일부는 해당 예산이 실제로는 타 사업으로 이관·조정되어 결과적으로 지출 총액에는 변화가 없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로 인해 지출 구조조정 실적이 과다 집계되는 문제가 있음.

60)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 의무지출 제도개선도 포함하고 있으나, 전체 지출 구조조정 실적 중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을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제도개선으로 인한 지출 절감 효과가 불확실하거나 의무지출 사업 자체에 대한 구조 개선 없이 사실상 재량지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 운영비만 감액한 사례 등이 존재함.

61) 지출 구조조정 대상 사업으로서 실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시 감액 편성이 되었으나 실제 사업 여건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감액 조정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는 방식으로 지출구조조정을 회피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획예산처는 우회수단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지출구조조정이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10. 국제협력대사지원단 운영 사업: 임시조직의 불필요한 연장 운영 부적정

가. 개 요

‘국제협력대사지원단 운영’ 사업은 국제금융 협력대사와 국제투자 협력대사를 보좌하며 대외신인도 및 해외투자자 관리 협력채널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2025년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예비비를 배정받아 예산현액 4억 4,500만원 중 3억 7,900만원이 집행(집행률 85.2%)되고, 6,600만원이 불용되었음.[62]

[2025년도 국제협력대사지원단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제협력대사 지원단 운영	-	-	-	-	445	445	379	-	66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4년 12월 비상계엄(12.3.) 이후 국무총리 탄핵(12.27.)으로 인해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모두 맡게 됨에 따라, 한국의 대외신인도 관리 등을 위한 경제 외교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해 대외직명대사로서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12.27.)와 최중경 국제투자협력대사(2025.1.6.)가 임명되었음.[63]

또한 2025년 2월 국제협력대사를 지원하기 위해 「자율기구 국제협력대사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 훈령)을 제정하여 국제협력대사지원단을 설치하고,[64] 예비비 4억 4,500만원을 배정하였음.

---

62) 일반회계-국제협력대사지원단 운영(3131-314)(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63) 국제금융협력대사는 주요국 재무부, 신용평가사, 해외투자자를 면담하고 한국경제 상황, 정부 정책 및 견조한 펀더멘털을 설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국제투자협력 대사는 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면담, 해외투자자 유치 및 외국인투자기업 인센티브 개선방안을 발굴하는 업무를 수행함.

64) 「자율기구 국제협력대사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767호, 2025. 2. 10.,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대외신인도를 관리하고 다른 국가 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투자 협력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국제협력대사지원단(이하 “국제협력대사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검토의견

국제협력대사지원단은 기재부장관의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의 설치 및 운영 필요성과 별개로 재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상당기간 존속되고 있었는바, 재정경제부는 향후 유사한 자율기구 설치 시 운영기간 설정 및 예산 집행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국제협력대사지원단은 2024년 연말 계엄사태 대응 등을 위해 임명된 국제금융협력대사 및 국제투자협력대사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산하에 구성된 자율기구로, 2025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7인(단장 1인(3·4급), 서기관(4·5급) 1인, 사무관(5급) 3인, 주무관(6급) 2인)으로 운영되었음.

국제협력대사지원단은 대외신인도 관리 및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장관(차관), 국제금융협력대사 및 국제투자협력대사를 보좌하는데,[65] 2025년 상반기에는 국제금융협력대사와 총 3회(2월 홍콩·싱가폴, 3월 미국, 4월 일본) 국외출장 및 한국경제설명회, 글로벌 금융인사 면담 등을 진행하였고,[66] 국제투자협력대사의 2회(2월 카타르·사우디·UAE, 3월 미국) 국외출장 관련 활동비를 지원하였음.[67]

국제협력대사지원단은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폐지하도록 되어 있고, 당초 운영기간이 6개월로 되어 8월에 운영 종료될 예정이었으나,[68] 기획재정부는

---

65) 「자율기구 국제협력대사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조직의 설치) ② "국제협력대사지원단"는 국제금융국장 밑에 두며, 대외신인도 관리 등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장관(차관), 국제금융협력대사 및 국제투자협력대사를 보좌하되, 그 밑에 "팀" 등 명칭을 불문하고 어떤 형태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
제3조(기능) "국제협력대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외신인도 관리를 위한 정책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대외신인도 관리를 위한 한국경제설명회 등 국내외 홍보 및 행사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행사 등에 관한 사항
5. 통상 관련 정책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외국 정부 및 관련 기관, 외국인 투자자, 국제기구, 신용평가사, 외국의 언론과의 협력관계 구축 및 협력채널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국 정부 및 관련 기관 등과의 대외신인도 관리, 외국인 투자 및 통상 관련 정책 등 국제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66) 홍콩·싱가폴(2월), 美 뉴욕(3월)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하여 주요 글로벌 투자자 대상으로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을 설명하였음. 日(4월)), 또한 WGBI 편입 관련 FTSE CEO 및 일본공적연금(GPIF) CIO,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관련 MSCI 고위급 면담을 통해 우리 자본/외환시장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설명한 바 있음.

67) 국제투자협력대사 활동 보좌는 산업통상부에서 수행하되, 국제협력대사지원단은 대사 활동비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함.

68) 「자율기구 국제협력대사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조직의 설치)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국제협력대사지원단"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국제협력대사지원단의 운영기간을 6개월 연장하였음. 기획재정부는 2025년 9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써밋’을 지원하고,[69] 11월 국내 언론사가 개최한 싱가포르 IR에 참석하여 한국 경제 동향 및 주요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밝힘.[70]

[2025년 월별 국제금융협력대사 사업추진 내역]

연번	협의 유형	일자	회의내용
1	설명회 참석	2025.2	글로벌 투자자 대상 한국경제설명회 참석(2.13일, 싱가포르) 및 글로벌 3대 신평사(무디스, S&P, 피치) 한국 담당 면담
2	인터뷰	2025.2	국제금융협력대사의 중앙일보 인터뷰
3	금융기관 협의	2025.3	국내소재 글로벌 IB, 증권사 논의
4	설명회 참석	2025.3	글로벌 투자자 대상 한국 경제설명회 참석(3.11일), WGBI 편입관련 FTSE CEO 면담, MSCI 고위급 면담, 라자드 등 주요 투자자 면담
5	글로벌 투자자 면담	2025.3	일본 공적연금 GPIF CIO 면담, 레조나자산운용CEO면담, 미쓰비시UFJ자산운용CIO면담
6	인터뷰	2025.3	국제금융협력대사의 법률신문 인터뷰
7	인터뷰	2025.4	국제금융협력대사의 매일경제 인터뷰
8	인터뷰	2025.5	국제금융협력대사의 이데일리 인터뷰
9	금융기관 협의	2025.6	국내소재 글로벌 IB, 증권사 논의
10	행사 준비 및 지원	2025.9	뉴욕 VIP 주재 대한한국 투자서밋 활동 지원
11	금융기관 협의	2025.10	국내소재 글로벌 IB, 증권사 논의
12	설명회 참석	2025.11	글로벌 투자자 대상 한국 경제설명회 참석(11.6일) 새정부 주요정책방향 설명 및 주요기관 1:1면담 진행
13	금융기관 협의	2025.12	국내소재 글로벌 IB, 증권사 논의

자료: 재정경제부

2024년 12월 말부터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탄핵으로 인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모두 수행하는 상황에서는 대외신인도 하락 방

69) 기획재정부는 2025년 9월 뉴욕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써밋’ 관련 대통령 모두·마무리말씀 등 행사컨텐츠, 행사장 최종 점검 등을 지원하였다고 설명함.

70) 기획재정부는 2025년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2025 Korean Corporate Global IR’에 참석하여, 한국 경제 동향 및 새정부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주요 기관과 1:1 면담을 진행하였다고 설명함. 참고로, ‘2025 Korean Corporate Global IR’은 국내 언론사인 The Bell이 개최하고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주택금융공사, KT, 포스코, SK(주), SK 하이닉스, 해진공, KB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11개 기관이 참여하였음.

지, 외국인투자자 유치 등을 위한 특사인 대외직명대사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단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임.

다만 2025년 6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하고, 외교부 등 공식적인 대외 협력 채널이 가동됨에 따라 한국의 대외신인도 관리 및 해외투자자 소통 등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내 정규 부서인 국제금융국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수행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임.

국제협력대사지원단 관련 규정 역시 지원단은 설치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폐지하도록 되어 있고, 당초 운영기간을 6개월로 하여 새정부 출범 이후 자연스럽게 운영 종료될 예정이었으나,[71] 기획재정부는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존속 필요성 감소한 지원단의 운영기간을 6개월 연장하였음.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향후 유사한 자율기구를 설치할 경우, 비상상황 종료 및 새정부 출범 등 행정 여건의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여 임시조직의 존속기한을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71) 「자율기구 국제협력대사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조직의 설치)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국제협력대사지원단"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11. 한국수출입은행 출자(금융시장 안정화) 사업: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설된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지원 부진 부적정

가. 개 요

‘한국수출입은행 출자(금융시장 안정화)’ 사업은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의 지원을 위한 대출, 보증 및 투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에 출자하여 자본금을 확충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000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72)]

[2025년도 한국수출입은행 출자(금융시장 안정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한국수출입은행 출자(금융시장 안정화)	100,000	300,000	-	-	300,000	300,000	-	-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인프라·방산·원전 등 초대형 해외수주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2025년 본예산에 1,0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2025년 1월 한국수출입은행에 출자되었음. 이에 더해 미국발 관세부과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10조원의 자금을 추가 공급하고자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2,000억원의 출자금을 반영하여 5월 출자되었음.

[미국 관세 등 수출위기대응 자금공급 계획]

(단위: 조원)

	위기대응 지원		상생 지원	수출 다변화	합계
	중소·중견	대기업			
추가 자금공급 계획	3.0	3.0	3.0	1.0	10.0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72) 일반회계-한국수출입은행 출자(금융시장 안정화)(3236-302)(재정경제부 대외경제국)

나. 검토의견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한국수출입은행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의 실적 부진을 감안할 때, 재정경제부는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유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상손실률, 사업수요 등을 면밀하게 검증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수출입은행에 대한 추가 출자규모(2,000억원)는 추가 자금공급 10조원에 한국수출입은행의 평균 손실률 4.1%를 반영하고, 이를 정부가 50% 분담하는 것으로 산출되었음.[73] 10조원 중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각각 3조원씩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대-중소기업 상생 지원을 위해 3조원, 수출다변화 지원 프로그램에 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음.

[수출위기대응 프로그램 세부내역]

구 분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 (6조원)	규모	3.0조원	3.0조원
	대상	첨단·혁신산업, 철강·석화 등 위기주력산업, 수출다변화 기업, 新통상·무역질서 피해 기업 등	
	주요 내용	① 금리인하 최대 2.0%p ② 신용등급 하락에도 추가가산금리 미부과 ③ 통상대응, 시장개척, ESG대응 컨설팅 등	수출실적 기반의 수출성장자금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 지원 (3조원)	대상	해외 진출 대기업에 납품 또는 동반 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 등	
	주요 내용	금리차감 확대: 최대 0.3 → 1.0%p	
수출 다변화 지원 프로그램 (1조원)	대상	신규 수출시장 개척 등 다변화 추진 기업 등	
	주요 내용	대출금리: 최대 0.4%p, 대출한도 : 최대 +10%p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기획재정부는 10조원의 추가 자금 공급(위험가중자산 160.1조원으로 증가) 시 수출입은행의 BIS 비율이 14.88%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0억원의 추가 출자를 통해 BIS 비율은 15.0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음.[74]

73) 2,000억원 = 추가자금 공급목표 10조원 × 수은 평균 손실률 4.1% × 정부 분담 50%

74) 출자가 없을 경우 예상(14.88%) 대비 일부(0.12%p) 개선 전망

[수출위기대응 프로그램 지원 및 출자에 따른 BIS 비율 변화]

(단위 : 조원, %)

	2024년	2025년		
		업무계획 (75.5조원 공급) (A)	업무계획 +10조 추가공급 (B)	(B)+2,000억 출자
BIS자기자본	23.6	23.8	23.8	24.0
위험가중자산	153.6	159.2	160.1	160.1
BIS비율	15.35%	14.96%	14.88%	15.00%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2025년 결산 결과, 평균 손실률은 추경안 편성 시의 예상치(4.1%)에 비해 1.0%p 낮은 3.1% 수준으로 나타났음. 이는 한국수출입은행이 당초 계획한 것에 비해 위기대응지원 규모가 적었고, 추경 신청시 손실률에 대한 예측이 정확하지 못했음을 의미함.

[최근 5년간 한국수출입은행 건전성 지표]

(단위: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
BIS 자기자본	169,727	175,021	200,102	235,796	283,118
위험가중자산	11,144,007	1,308,231	1,382,604	1,535,974	1,598,897
BIS 비율	14.84%	13.38%	14.47%	15.35%	17.7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

이에 따라 2025년 말 기준 수출입은행의 BIS 비율은 17.7%로 당초 추경 편성 시 목표로 했던 15.0%를 2%p 이상 상회하였고, 결과적으로 정책 목적에 시급히 유입되어야 할 추경 자금 2,000억원은 실질적인 위기대응 여신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수출입은행의 내부 자본금으로 유보되는 결과를 초래함.

월별 수출위기대응 프로그램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상품 개시 후 계획대비 집행이 부진하였고, 이듬해 지원대상 및 지원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개편하였음.

수출위기대응 프로그램 개시 초기인 2025년 5월에는 초기 대기 수요의 유입으로 인해 승인 건수와 승인 융자액이 단기적으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일시적 효과 소멸 이후 하반기 중 월별 승인 실적이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2025년 연말에는 실적이 다시 반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잔여 목표 달성을 위한 집중 집행 및 대기업 추가지원 등에 따른 것임.[75]

[월별 수출위기대응 프로그램 지원 현황]

(단위: 건, 억원, %p)

		2025.5.	2025.6.	2025.7.	2025.8.	2025.9.	2025.10.	2025.11.	2025.12.	2026.1.	2026.2.	소계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	승인건수	275	112	78	59	105	112	140	121	76	59	1,137
	승인융자액	8,126	3,719	2,084	2,452	5,631	5,575	7,209	8,684	8,227	3,320	55,028
	평균 금리우대[1]	△0.9	△0.8	△0.9	△0.9	△0.9	△0.9	△0.9	△0.7	△0.5	△0.8	△0.8
상생금융	승인건수	15	10	13	10	8	6	10	17	6	5	100
	승인융자액	2,219	3,890	2,054	2,774	2,466	1,472	1,364	1,647	2,257	821	20,963
	평균 금리우대[1]	△0.3	△0.6	△0.5	△0.5	△0.6	△0.8	△0.8	△0.7	△0.6	△0.5	△0.5
수출 다변화 지원	승인건수	18	18	15	9	16	14	24	18	10	10	152
	승인융자액	834	1,478	691	625	1,531	519	1,220	1,815	1,191	836	10,741
	평균 금리우대[2]	△0.8	△0.6	△0.7	△0.7	△0.9	△0.8	△0.8	△0.7	△0.7	△0.5	△0.7
합계[3]	승인건수	295	126	100	73	113	120	156	137	82	69	1,271
	승인융자액	10,877	8,555	4,645	5,660	8,827	7,203	9,235	11,037	11,301	4,770	82,11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2026년 2월 기존 프로그램을 전면 확대·개편하여 "수출활력 ON(溫) 금융지원 패키지"를 새로이 도입하였음. 해당 패키지는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 규모를 기존 대비 1조원 추가 확대하고, 금리 우대 폭을 넓히며, 환율 피해지원 항목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임.[76]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은 해당 연도(2025년) 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으나, 당해연도 내에 집행되지 않은 재원이 존재한다는 점은 추가경정예산

75) 재정경제부는 수출위기대응 프로그램을 통해 대기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을 받고, 연말부터 대기업을 지원함에 따라 지원실적이 증가하였다고 설명함.

76)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 비교표]

구 분	2025년	2026.3월 현재
지원 규모(목표)	6조원	7조원(확대)
주요 내용	► 통상환경·무역질서 피해 기업, 위기 기간산업 등 지원 - 금리우대 최대 △2.0%p ► 통상대응·시장개척 컨설팅 등 비금융서비스(100억원)	► 중소·중견기업 금리우대 -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최대 △2.20%p ► 환율피해기업 지원(신설) - 금리우대 최대 △0.5%p ► 통상대응·시장개척 컨설팅 등 비금융서비스 확대(150억원)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안 편성 당시 집행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당시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정부가 수출입은행에 출자한 자금은 정부 배당 등의 제한적인 수단 외에는 국고로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비가역적 특성이 있음. 대외 수출 환경 및 통상 위험이 발생할 때마다 실질적인 집행 가능성에 대한 정밀한 검증 없이 대규모 출자를 반복하는 것은 효율적인 국가재정의 운용에 있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77]

[추경 편성을 통한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현황]

(단위: 억원)

연 도	당초 출자액(A)	추경증액 (B)	소계 (A+B)	추경편성 목적
2009	3,000	2,500	5,500	경제위기 직면 수출중소기업 지원 확대
2013	200	800	1,000	수출 중소·중견기업 및 취약산업(조선)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2015	550	750	1,300	수출부진품목 등 추가지원
2016	200	10,000	10,200	조선사 구조조정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자본확충 (해운보증기구 설립사업 650억원 포함)
2019	262	300	562	특별계정 지원을 위한 자본확충
2020	1,883	3,900	5,783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여력 확충
2025	1,000	2,000	3,000	미국 관세부과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합계	**7,095**	**20,250**	**27,345**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향후 정책금융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출자금 예산 편성 시 예상손실률 등을 면밀히 산정하는 한편, 서업 수요를 정교하게 검증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77)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 2025.4.

12. 범부처 통합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 사업: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지연으로 인한 후속과제 지연 유의 필요

가. 개 요

‘범부처 통합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 사업은 대외 공급망 불안정성에 대처하기 위해 경제안보품목 등의 위험정보를 조기 입수하고 공유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한편 공급망안정화계획 등 발전방안을 연구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8억 7,400만원 중 14억 3,500만원이 집행(집행률 76.6%)되고 4억 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400만원이 불용되었음.[78)]

[2025년도 범부처 통합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범부처 통합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	1,874	1,874	-	-	1,874	1,435	405	34	492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범부처 통합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은 개별 부처·공공기관에서 관리되는 공급망 관련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하나로 통합하여 전 부처가 공유하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품목별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하고 공급망 관련 상황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전파하는 자동화시스템임. 이를 통해 공급망 관련 위험 징후 발생 시, 전 부처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경보를 발생하는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78) 일반회계-범부처 통합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3240-302)(재정경제부 경제공급망기획관)

[범부처 통합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사업 개요]

○ 개요
- 사업명: 공급망 조기경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사업예산: 10억 2,000만원 / 계약액: 8억 6,680만원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기간: (당초) 2025.6.2.~2026.1.28. / (변경) 2025.6.2.~2026.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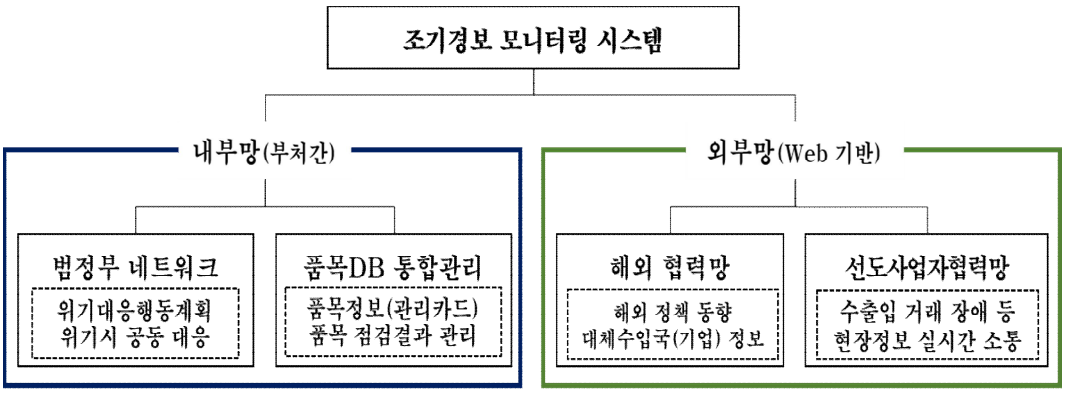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정보관리시스템 부재) 소관부처별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운영중이나, 부처간 수작업으로 공유하여 실시간 변하는 정보의 즉시 공유가 어려움
- (정보 공유 한계) 부처간 정보 칸막이로 관련기관의 공급망 모니터링이 어렵고*, 해외 정성정보는 정부 주도 모니터링 한계

* 관세청, 외교부는 각 기관에서 취득 가능한 정보만으로 모니터링하는 상황
** 외교부 EWS를 통한 해외동향 수집으로 해외 시장·수출기업 모니터링은 취약

○ 사업내용
- (정보입력) 부처별로 품목 정보 및 EWS 점검결과를 정기 입력+관세청 등 연계를 통해 정량정보 자동제공 및 DB 구축·활용
- (정보활용) 사용자는 홈화면 및 검색기능을 활용해 품목 상세정보에 접근 가능하며, 조건별 검색·출력 기능도 제공
- (정보공유) 시스템 관리 정보는 모든 관계부처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하며 경보 발령시 담당자에게 지연없이 통보
- (위기 시 심층관리) 점검결과 위기징후 포착시 위기 품목의 동향 정보를 실시간으로 집계·공유하는 채널 구축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재가공하여 작성

[범부처 통합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개요도]



* 현재 부처간 협업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산시스템은 구축되어있지 않음

자료: 재정경제부

나. 검토의견

범부처 통합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업준비 지연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 대비 시스템 구축이 지연되었으므로, 재정경제부는 이를 전제로 한 후속 추진과제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2024년 말 수립된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에 따라, 기획재정부(2026년 이후 재정경제부)는 10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를 선정하고 당초 사업기간 8개월의 단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2025년 내 범부처 통합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었음.

이는 기획재정부의 통합 시스템 구축을 전제로 EWS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후 국가정보원 및 외교부 등의 위험 모니터링 강화를 연계 추진하는 핵심 기초 과제임.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에 따른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고도화' 추진방향]

◈ (배경) 수시로 변화하는 대내외 공급망 관련 정보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점검하기 위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필요

현재	⇨	3년 후
▸ 부처·기관 간 분절적 EWS 운영으로 상호 정보연계 부족 ▸ 수출입 통계에 의존한 정량분석 위주로 사전예측 기능 한계		▸ 부처·기관 간 정보를 연계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정성정보 확충 ▸ 민·관 현장정보 소통채널 구축 등 모니터링 확대

추진 과제	추진 기한			소관 부처
	2025	2026	2027	
1 부처간 연계 강화				
ㅇ 공급망 통합 조기경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기재부 (관계부처)
ㅇ 공급망 EWS 운영지침 마련				
ㅇ 공급망 위기 선행 변수 발굴·모니터링				
ㅇ 휴민트·테킨트 등 국내외 정보네트워크 활용				국정원
ㅇ 유사입장국과 재외공관 EWS 연계 협력				외교부
2 민·관 협력 강화				
ㅇ 선도사업자와 정기적 소통채널 구축				기재부 (관계부처)

자료: 관계부처 합동,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 2024.12.19.

그러나 동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사전 준비 지연과 외부 요인이 결합되어 시스템 구축이 당초 계획 대비 약 6개월이 지연될 예정임. 기획재정부는 2025년 4월에야 경쟁입찰을 공고하고 6월에 계약(사업수행기간: 2025.6.2.~2026.1.28.)을 체결함에 따라 연내 사업 완료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하였음.

이에 더해 2025년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전산실 서버 장비 설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사업이 일시 중지되어 사업 완료시기가 더욱 지연되었음.

행정안전부가 2026년 4월 전력공급장치 확보 후 5월부터 사업 속개가 가능함을 통보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지체상금 없이 사업을 일시 중지하고 계약기간을 2026년 6월 28일로 연장하였음.[79] 비록 전산실 화재가 불가항력적 요인이라 하더라도, 애초에 사업 준비가 조속히 이루어져 상반기부터 개발이 본격화되었다면 외부 충격에 따른 지연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사업 계약기간 변경]

구분	당초	변경
계약기간	2025.6.2.～2026.1.28.	2025.6.2.～2026.6.28.
사업중지기간	-	2025.12.1.～2026.4.30.
계약금액	866,800,000원	변동 없음

자료: 기획재정부 및 조달청의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사업 계약기간 변경 요청’ 관련 공문내역을 재가공하여 작성

[당초 범부처 통합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경과 및 계획]

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진행		ISP	예산협의	예산반영	시스템 개발	개발완료 및 시범운영	고도화

주) 용역계약(2025.6월) → 환경분석(2025.8월) → 개발완료(2025.11월) → 국자원 화재로 사업중지(~2026.4월)
자료: 재정경제부

즉 동 사업은 당초 2025년 내 완공을 목표로 단년도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기획재정부의 사전준비 지연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라는 외부요인이 결합되어 계약기간이 2026년 6월 말까지로 대폭 연장되었고, 결과적으로 기본계획에 명시된 후속 추진과제 역시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게 될 우려가 있음.

79) 재정경제부는 국정자원관리원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일정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함.
※ 향후 일정(잠정): 국자원 협의(3월, 完) → EWS 서버 할당(5월, 국자원) → 국자원 내 서버에 EWS 구축(7월, 재경부) → 기능 테스트 및 보완(9월) → 시범운영(10월)

구체적으로는 범부처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과 이를 전제로 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지침’[80] 마련이 지연되면서, 국가정보원의 ‘휴민트·테킨트 등 국내외 정보네트워크 활용’ 및 외교부의 ‘유사입장국 및 재외공관 EWS 연계 협력’ 등 부처 간 정성정보 확충 작업 역시 내실있게 수행되기 어려운 상황임. 특히 2025년부터 착수하기로 한 ‘공급망 위기 선행 변수 발굴·모니터링’ 과제 역시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부재로 인해 당초 기대했던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어려움.

특히 2025년과 2026년에는 미-중 경제분쟁으로 인한 희토류 등 필수 원자재의 수출·수입제한 및 미국·이스라엘-이란과의 호르무즈 해협 분쟁 등으로 공급망 충격이 심화된 상황에서, 신규 통합 시스템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국가 경제안보 모니터링에 중대한 시스템 공백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었음.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상화 이후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지침 마련 등 후속 과제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관리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80)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지침은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방법 및 절차(점검대상·주기·점검내용, EWS 정보의 보안 관리 등), 주요 품목의 선행변수(핵심광물, 식량 등 주요 품목 선정 및 선행변수 개발·모니터링), 전산 시스템 매뉴얼 등을 반영하여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방법 및 절차 등을 전부처 공통으로 규율하는 것임.

13. 청년인턴 급여 등 사업: 채용시기별 청년인턴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사업부진 부적정

가. 개 요

‘청년인턴 급여 등’ 사업은 청년의 정부조직 및 정책 참여 활동 기회 제고를 위해 범부처적으로 운영하는 청년인턴을 단기적으로 채용하여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2억 5,800만원 중 6억 3,000만원이 집행(집행률 50.1%)되고 6억 2,800만원이 불용되었음.[81)]

[2025년도 청년인턴 급여 등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기획재정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2,723	2,723	-	△45	2,678	1,654	-	1,024	-
청년인턴 급여 등	1,258	1,258	-	-	1,258	630	-	628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청년인턴 제도는 2023년에 정부 차원에서 청년의 국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시각을 정책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되었고,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중앙부처 5,000명, 공공기관 2만 1,000명의 청년인턴을 선발할 계획으로 기획재정부 소관 2025년도 예산에는 청년인턴 140명을 선발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었음.

나. 검토의견

기획재정부는 당초 계획 대비 청년인턴 채용인원 및 운영기간 등을 축소 운영함으로써 청년들이 효과적인 정책경험을 쌓는데 한계가 있었으므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향후 청년인턴이 계획대로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81) 일반회계-기획재정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7131-301)(재정경제부 인사과)

2025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당초 산출 근거를 살펴보면, 6개월 근무 인력 80명, 3개월 근무 인력 60명 등 총 140명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12억 5,800만원(일용임금 11억 3,100만원, 고용부담금 1억 2,700만원)이 계상되었음. 그러나 실제 결산내역에 따르면, 근로 기간이 4개월로 일괄 조정되었으며, 채용 인원 또한 상반기 26명, 하반기 50명 등 총 76명을 운영하는 데 그침.

[2025년 청년인턴 등 급여 내역사업 예산 및 결산 내역]

2025년 예산	2025년 결산
○ 1,258백만원 - 일용임금 : 1,131백만원 (80명×2,096천원×6월+60명×2,096천원×3월) - 고용부담금 : 127백만원(1,131백만원×11.22%)	○ 630백만원 - 일용임금 : 576백만원 (26명×2,096천원×4월+50명×2,096천원×4월) - 고용부담금 : 54백만원 ((34명×2,096천원×4월+50명×2,096천원×4월)×11.22%)

주) 2025년 결산은 중도퇴직 등으로 인해 계산식과 실제 지출액에 일부 차이가 존재함
자료: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의 2025년 청년인턴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상·하반기 청년인턴 채용 실적이 큰 편차를 보이는데 이는 청년인턴 수요 예측 실패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2025년 기획재정부 청년인턴 채용 현황]

(단위: 명)

채용분야	상반기				채용분야	하반기				합계			
	공고 인원	지원 자수	선발 인원	채용 인원		공고 인원	지원 자수	선발 인원	채용 인원	공고 인원	지원 자수	선발 인원	채용 인원
경제정책	14	23	10	5	경제재정	29	249	29	29	55	291	48	41
국가재정	12	19	9	7									
-	-	-	-	-	전산, 데이터	3	66	3	3	3	66	3	3
외국어, 국제	12	7	5	5	외국어, 국제	11	125	11	11	23	132	16	16
세무, 회계	6	7	4	3	세무, 회계	3	59	3	3	9	66	7	6
홍보, 컨텐츠	6	14	6	6	홍보, 컨텐츠	4	69	4	4	10	83	10	10
소계	**50**	**70**	**34**	**26**		**50**	**568**	**50**	**50**	**100**	**638**	**84**	**76**

자료: 재정경제부

상반기의 경우 50명 모집 공고에 지원자는 70명에 불과하여 1.4대 1의 저조한 경쟁률을 기록함. 또한 선발인원 34명 중 최종 채용인원은 26명(공고 인원 대비 52%)에 그쳐, 합격 후 임용을 포기하거나 적격자를 찾지 못해 정원을 채우지 못하였음.

반면 하반기에는 동일한 50명 모집 공고에 568명이 지원하여 11.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선발인원과 채용인원 모두 50명으로 목표치를 100% 달성함.

이러한 상·하반기 간의 극단적인 편차는 청년층의 구직 수요(학사 일정, 졸업 시기 등)를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중심의 공고 일정 수립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상반기 수요 예측 실패는 곧 당해 연도 사업의 전체의 집행부진으로 직결되었음.

결론적으로 2025년도 기획재정부 청년인턴 사업은 채용 시기에 따른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해 당초 예산안 편성 시의 목표치(인원 및 근무 기간)를 달성하지 못하고 예산의 절반이 불용된 것임.

재정경제부는 조직여건·채용미달 및 중도퇴직 발생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여 당초 계획대로 청년인턴 채용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함. 본부만 있는 부처 특성 상 사무공간 등 관리여건 측면에 제약이 있어 청년인턴의 장기·대규모 채용이 어려운 구조이고, 상반기 채용 과정에서 면접 불참자 및 최종합격 후 임용포기자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 대비 실제 채용인원이 축소되었으며, 청년인턴 특성상 취업 및 학업 등의 사유로 중도퇴직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따른 집행 변동이 불가피하였다는 것임.

그러나 동 사업에 대해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도 ‘기획재정부가 면밀하지 못한 사업 계획에 기반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은 부적절하므로, 기획재정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의 예산 편성 시 면밀한 사업계획에 기반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정확성을 제고하라’ 는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82] 2025회계연도 결산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재차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예산의 반복적인 과다 계상 및 대규모 불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제 채용 가능한 규모를 면밀히 파악한 후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이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상·하반기 채용인원 및 공고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82)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 2025.12.

14. 기획재정정보화(정보화) 사업: 정보화전략계획(ISP)의 사후적인 통합발주 부적정 및 부처 분리 이후 활용방안 강구 필요

가. 개 요

‘기획재정정보화(정보화)’ 사업은 기획재정부 내부직원용 정보시스템의 기획, 개발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행정업무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55억 8,900만원 중 55억 6,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6%)되고 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700만원이 불용되었음.[83)]

[2025년도 기획재정정보화(정보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기획재정정보화 (정보화)	5,589	5,589	-	-	5,589	5,567	5	17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5년 기획재정정보화(정보화) 사업 예산에는 ‘기획재정부 데이터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1억 5,700만원과 ‘기획재정정보화 중장기 계획’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84)85)] 실제 집행할 때에는 이 두 사업을 합하여 ‘중장기 지능정보화 계획 수립 및 데이터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4억 700만원을 집행하였음.

83) 일반회계-기획재정정보화(정보화)(7134-500)(재정경제부 기획조정실)

84) 정보화전략계획(ISP)은 조직 내의 전략적 정보 요구를 식별하고, 업무활동과 이에 대한 자료 영역을 기술하며,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통합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이의 구현을 위한 통합 정보시스템 계획을 작성하는 체계적 접근방법임.

85) 기관 중장기 정보화 계획이란 기관 전체의 정보화 비전 및 전략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정보화 사업(과제)을 도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사업임.

[2025년 기획재정정보화(정보화) 예산 및 결산 세부내역]

	2025 예산	2025 결산
시스템 구축	○ 시스템 구축(712백만원) - 공공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제도 정비(200백만원) - 기획재정부 데이터플랫폼 구축을 위한 ISP(157백만원) - 기획재정정보화 중장기 계획(250백만원) - 개인정보 접속기록 솔루션 구축(105백만원)	○ 시스템 구축(605백만원) - 공공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제도 정비(198백만원) - 중장기 지능정보화 계획 수립 및 데이터 플랫폼 구축 ISP(407백만원)
	○ 기반시스템 구축(3,232백만원) - 노후 PC 교체(2,958백만원) - 노후 장비 교체(274백만원)	○ 기반시스템 구축(3,326백만원) - 노후 PC 교체 및 온북 도입 사업(2,906백만원) - 노후 장비 교체(301백만원) -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105백만원) - 정보통신실 재배치 공사(14백만원)
시스템 운영	○ 시스템 유지관리(1,187백만원)	○ 시스템 유지관리(1,187백만원)
	○ 기타 운영지원(458백만원) - 라이선스 이용료(367백만원) - 전산소모품 구매(6백만원) - 각종 수수료(35백만원) - 일반용역(8백만원) - 공공요금(42백만원)	○ 기타 운영지원(449백만원) - 라이선스 이용료(357백만원) - 전산소모품 구매(5백만원) - 각종 수수료(37백만원) - 일반용역(8백만원) - 공공요금(42백만원)
합계	55억 8,900만원	55억 6,700만원

자료: 재정경제부

나. 검토의견

첫째, 기획재정부의 ‘중장기 지능정보화 계획 수립 및 데이터 플랫폼 구축 정보화 전략계획(ISP)’은 당초에 예산안 편성 시점부터 통합하여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국회에서 심의된 바와 다르게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동 사업 예산안에 ‘기획재정부 데이터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1억 5,700만원과 ‘기획재정정보화 중장기 계획’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두 사업을 합하여 ‘중장기 지능정보화 계획 수립 및 데이터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추진하였음.

동 사업은 기획재정부 중장기 지능정보화 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2026~2030년) 추진할 정보화 비전·전략·이행과제 등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의 데이터 플랫폼 및 기획재정부 특화 생성형 AI를 구축하기 위한 정보화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는 것임.

[중장기 지능정보화 계획 수립 및 데이터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개요]

○ 개요
- 사업명: 기획재정부 중장기 지능정보화 계획 수립 및 데이터플랫폼 구축 ISP사업
- 사업예산: 4억 700만원 / 계약액: 4억 700만원
- 사업기간: 2025.3.4.~9.30. (계약일로부터 7개월)
-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배경 및 필요성
- 디지털플랫폼정부 활성화에 따라 5년간 기획재정부 중장기 지능정보화의 비전, 전략 및 이행과제 등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
- 디지털 업무환경 조성과 업무시성비 제고를 위해 기획재정부 전용 데이터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

○ 사업 주요내용
- (환경분석) 디지털플랫폼정부 활성화와 디지털 혁신기술 적용을 위한 환경분석으로 기획재정부 내 중장기 지능정보화 계획과 데이터플랫폼 구축을 위한 시사점 도출
- (현황분석) 정보화 조직진단, 업무환경·절차를 분석하여 거버넌스 체계 마련하고 선진사례 분석 및 부내 데이터를 활용해 시범사업(PoC)을 수행
- (정보화 비전 및 전략 수립) 중장기 지능정보화 계획 및 데이터플랫폼 구축을 위한 비전 및 전략을 도출하고 CSF(핵심성공요소)를 수립
- (목표모델 수립) 개선과제를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체계 구축하고 데이터플랫폼, 클라우드 저장소, 메신저 등 주요 정보시스템의 SW·데이터 구조 설계 및 계층형 관계 수립
- (통합 이행계획 및 효과분석) 단위 과제별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전략적 특성, 시스템 간 연관성을 바탕으로 개선과제 간 선후관계를 고려해 추진체계·일정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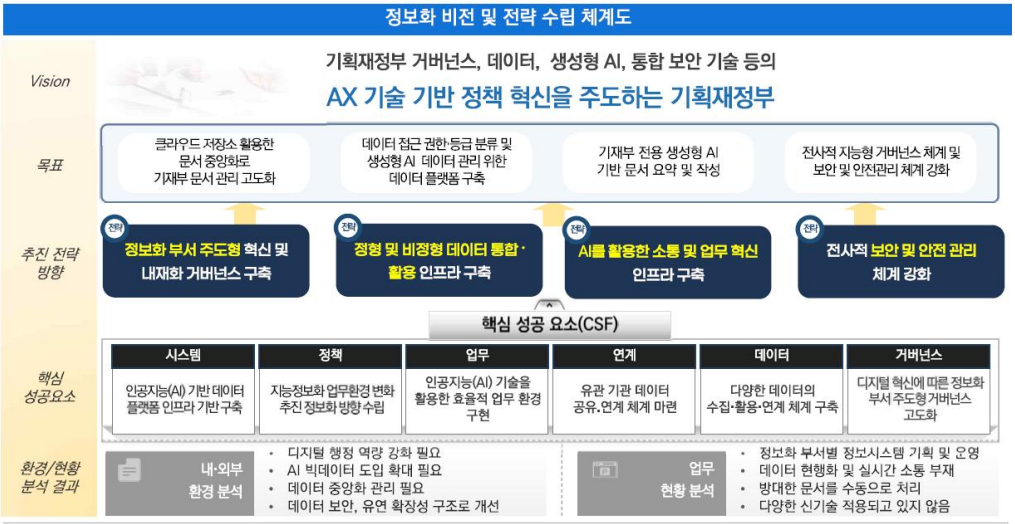
○ 사업 추진전략
- 기획재정부 중장기 지능정보화 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2026~2030년) 추진할 정보화 비전, 전략, 이행과제 등 세부 추진방안 수립
- AI·데이터 중심의 업무환경 구성, 의사결정 체계를 수립, 정보화 조직체계 구성 및 정보화·데이터 관련 규정 제·개정 추진
- 인공지능·데이터·클라우드를 활용한 정보시스템 활용 방안 마련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 도출
- 주요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SW·데이터·기반 구조 등을 설계하고 데이터 보안등급, 접근권한 및 분류체계를 연구

자료: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 데이터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와 ‘기획재정정보화 중장기 계획’은 동일한 시점에 기획재정부의 AI·데이터 활용역량을 보강한다는 차원에서 사업의 주요내용인 환경분석, 현황분석 및 정보화 비전 및 전략수립까지 유사한 내용이 도출될 수밖에 없고, 두 사업을 별도 추진하는 것보다 통합하여 추진하는 방향은 적절하였다고 보임.[86]

86) 재정경제부는 기획재정정보화 중장기 계획은 정보화 비전을 수립하는 과제로 기재부 인공지능 시스템을 기반으로 전체 정보화 관점에서 통합하여 정보화 비전과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통합

[중장기 지능정보화 계획 수립 및 데이터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에 따른 정보화 비전 및 전략수립 체계도]



자료: 재정경제부

다만 두 사업을 별개의 목적과 산출물이 있는 것으로 구분하여 예산을 각각 편성하고 이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이후 예산의 집행 단계에서 사업을 통합하는 것은 당초 국회가 심의한 바와 다른 방식의 예산 집행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87]

또한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기획재정부 데이터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와 '기획재정정보화 중장기 계획'의 사업 내용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예산안 편성 당시부터 사업 내용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통합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재정경제부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발주를 추진하였다고 설명함.

87) 참고로 당초 편성된 '기획재정부 데이터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예산 1억 5,700만원은 중앙부처 전체의 데이터플랫폼 및 특화 생성형 AI를 구축하기 위한 아키텍처 설계와 시범사업(PoC)을 수행하기에는 시장 단가 대비 과소 책정된 금액으로, 현실적으로 해당 금액만으로는 역량 있는 민간 IT 컨설팅 업체의 입찰을 유도하거나 양질의 과업 산출물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음.
또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은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전적으로 필요한 절차로, ISP 산출물에 대한 검토를 거쳐 정보시스템 구축예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관 중장기 정보화 계획은 기관 차원의 중장기 정보화 비전·전략·이행과제 등을 수립하기 위해 수립할 수 있으나, 이를 근거로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4.5., p.45~46., 기획재정부·한국지능정보원, 「2025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 제9판」, 2025.12. p.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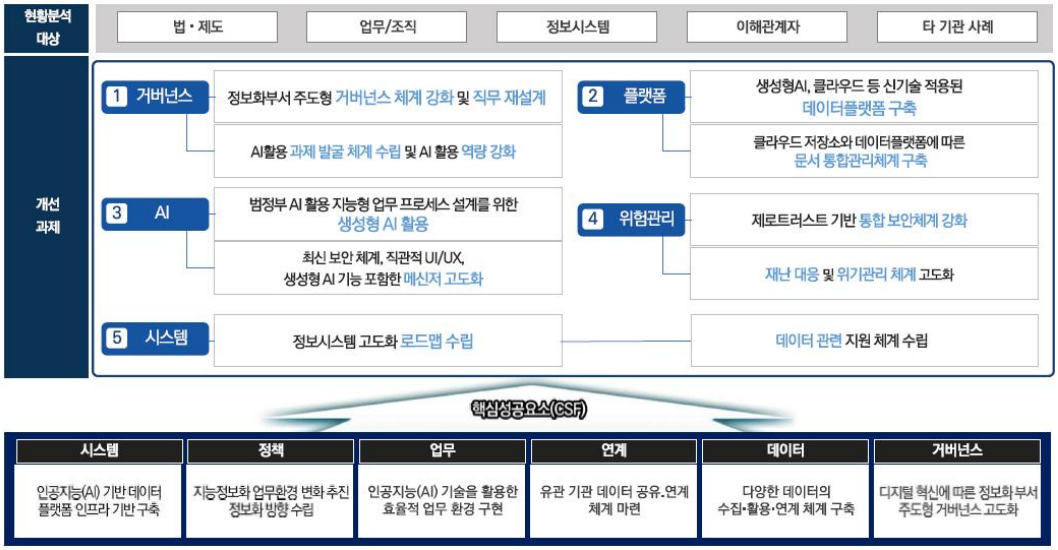
둘째, 기획재정부의 분리로 인해 업무·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당초 ISP를 통해 분석하였던 환경·현황분석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중장기 지능정보화 계획 및 데이터플랫폼·생성형 AI 구축사업의 결과를 바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향후 이를 고려하여 관련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2026년 1월부터 기존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됨에 따라, 소관 업무 및 조직 구성이 전면 개편되었음. 이러한 조직 개편에 수반하여 기존 기획재정부가 운용하던 정보시스템 역시 소관 부처의 역할에 맞춰 각각 이관되었음.

특히 기관 간 정보 보안 및 권한 분리 원칙에 따라 현재 재정경제부 소관으로 이관된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의 내부 접근권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등 부처 내 통합을 전제로 했던 기존의 데이터 공유 및 활용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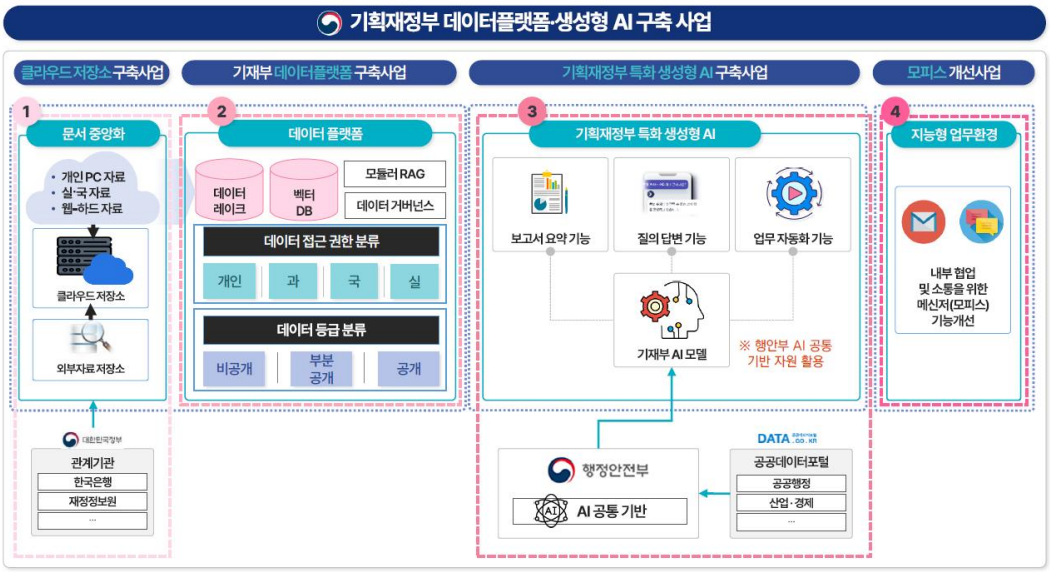
당초 2025년 결산 대상 사업인 '중장기 지능정보화 계획 수립 및 데이터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통합 용역은 '단일 기획재정부' 체제를 전제로 발주 및 수행되었음.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통합 용역의 아키텍처(SW·데이터 구조) 설계 역시 단일 부처 환경에서의 데이터 흐름을 기반으로 작성되고 있음.

[기획재정부 중장기 지능정보화 계획]



자료: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 데이터플랫폼·생성형AI 구축사업 체계도]



자료: 재정경제부

그러나 부처 분리라는 중대한 물리적·제도적 변화로 인해, 동 ISP 용역을 통해 도출된 환경분석 및 현황분석 결과는 현재의 이원화된 조직 구조와 괴리가 있음. 하나의 부처를 전제로 설계된 데이터 보안등급 산정, 사용자 접근 권한 통제 체계, 전사적 데이터 분류체계 등은 양 부처의 독립된 시스템 및 보안 환경에 맞춰 재수정이 불가피함.

기획재정부의 지능정보화 비전과 데이터플랫폼은 예산편성(기획예산처)과 거시경제·재정정책(재정경제부) 간의 유기적 데이터 연계를 핵심으로 하는데, 부처가 분리되어 각 부처에 대한 정보시스템 접근이 제한된 현 상황에서는, 당초 ISP가 목표로 했던 '통합 데이터플랫폼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즉각적으로 구현하거나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026년도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 예산안을 살펴보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모두 기존 ISP 계획에 따라 각각 부처 전용 데이터플랫폼·생성형 AI 구축 사업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음.[88] 당초 기획재정부의 데이터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에서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할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및 데이터레이크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두 부처가 각각 전용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함에 따라 데이터플랫폼 내 데이터의 내용과 접근권한이 원활하게 공유되기 쉽지 않을 수 있음.

이처럼 기획재정부 단일기관용으로 도출된 중장기 지능정보화계획과 데이터플랫폼·생성형AI 구축 정보화전략계획의 산출물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각각 이를 그대로 활용하여 차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내용상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부처 분리 이후 소관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 생성·구축·활용체계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지능정보화계획과 정보화전략계획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음.

88) 2026년도 예산안의 경우, ① 재정경제부 소관 '재정경제(정보화)' 사업(7134-503)에는 재정경제부 전용 데이터플랫폼·생성형 AI 구축 43억 1,200만원, 공공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제도정비 2억원, 메신저 개편 4억 2,400만원, ② 기획예산처 소관 '기획예산(정보화)' 사업(7134-504)에는 기획예산처 전용 데이터플랫폼·생성형 AI 구축 58억 9,900만원, 공공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제도 정비 2억원, 메신저 개편 4억 2,4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음. 특히 2026년 기획예산처 소관 예산에는 기획예산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각 부서 업무를 분석하여 최신 IT 기술을 활용한 중장기 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을 위해 '기획예산처 정보화계획 수립' 3억원이 편성되었음.

15. 미래융복합경제교육: 미래융복합경제교육의 집행 부진 부적정

가. 개 요

‘미래융복합경제교육’ 사업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일반 국민 등 대상으로 태안 정책연수원을 활용한 체험형·집중형 경제교육 및 직무교육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9억 2,800만원 중 8억 1,100만원이 집행(집행률 42.0%)되고 11억 1,700만원이 불용되었음.[89)]

[2025년도 미래융복합경제교육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미래융복합경제교육	1,928	1,928	-	-	1,928	811	-	1,117	3,857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5년 미래융복합경제교육 예산 및 결산 내역]

	2025 예산	2025 결산
교육과정 운영	○ 교육과정 운영(1,509백만원) - 국민(민간) 경제교육(318백만원), 직무기본교육(96백만원), 직무전문교육(756백만원), 융합교육(250백만원), 국제교육(36백만원), 시책교육(53백만원)	○ 교육과정 운영(573백만원) - 국민(민간) 경제교육, 직무기본교육, 직무전문교육, 융합교육(국제교육, 시책교육 미실시)
교육과정·교재개발	○ 교육과정·교재개발(50백만원) - 교육과정 개발(30백만원) - 교육교재 개발(20백만원)	○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50백만원)
홈페이지 개발	○ 홈페이지 개발(150백만원)	○ 홈페이지 개발(132백만원)
기타 운영경비	○ 기타 운영경비(219백만원)	○ 기타 운영경비(56백만원)
합계	55억 8,900만원	55억 6,700만원

자료: 재정경제부

89) 일반회계-미래융복합경제교육(7135-310)(재정경제부 기획조정실)

2025년 미래융복합경제교육은 교육과정 운영에 15억 900만원이 편성되어 5억 7,300만원이 집행되었고, 교육과정·교재개발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으로 전액 집행되었으며, 홈페이지 개발에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1억 3,200만원이 집행되었고, 기타 운영경비로 2억 1,900만원이 편성되어 5,600만원이 집행되었음.

나. 검토의견

2025년 미래융복합경제교육은 직무기본·융합교육의 운영 횟수가 당초 계획에 미달하고 국제·시책교육은 미실시되는 등 집행률이 38.0%(기타 운영경비 25.6%)에 그친바, 재정경제부는 향후 예산안 편성 시 실제 교육수요를 재평가하여 목표 인원을 실현 가능한 범위로 하향 조정하고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 있음.

기획재정부는 2025년도 예산에 국민(민간)경제교육·직무기본교육·직무전문교육·융합교육·국제교육 및 시책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15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당초 계획보다 교육 횟수가 부족하고 국제교육과 시책교육은 시행되지 않았음.

2025년 미래융복합경제교육 예산안 편성 시 산출내역과 실제 교육수행내역을 살펴보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기본교육(당초 10회, 실제 2회), 융합교육(당초 20회, 실제 13회)은 계획보다 교육과정 운영횟수가 적게 이루어졌고, 국제교육과 시책교육은 계획과 달리 수행되지 못하였음.

[2025년 미래융복합경제교육 교육계획 및 수행내역]

구분	2025년 예산		2025년 결산	
국민(민간) 경제교육	2과정	총 4회	6과정	총 12회
경제재정캠프	금액만 기재(2억 4,000만원)		-	총 6회
직무기본교육	5과정	총 10회	2과정	총 2회
직무전문교육	20과정	총 50회	38과정	총 50회
융합교육	10과정	총 20회	10과정	총 13회
국제교육	2과정	총 2회	미실시	
시책교육	2과정	총 4회	미실시	

자료: 재정경제부

이처럼 당초 계획 대비 교육이 부진하게 운영됨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 관련 예산 15억 900만원 중 5억 7,300만원만 집행(38.0%)되었음. 교육과정 운영의 부대경비에 해당하는 기타 운영경비의 경우 예산현액 2억 1,900만원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5,600

만원(집행률 25.6%)에 그쳤음.

교육수요의 과다계상으로 인해 대다수의 예산이 불용된 만큼 향후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시 재정경제부는 실제 교육수요를 재검토하여 연간 목표 교육 인원을 실현 가능한 수준까지 하향 조정하고, 이에 맞추어 교육과정 운영 및 기타 운영경비 예산을 축소 편성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법제처도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에서 법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를 위한 셔틀버스 및 장비 임차료 등을 편성하고 있는데,[90] 2025년 계획인원 1만 6,500명 대비 실제 참가인원은 5,662명으로 약 34% 수준에 불과하여 교육 참여 규모 자체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고, 2025년도 예산으로 셔틀버스 임차료가 3억 3,600만원 편성되었으나 실제 집행은 1억 3,400만원에 그쳐 약 2억 2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음.

이와 같이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에서의 교육은 당초 계획 대비 교육수요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교육과정 운영계획 및 실제 실적 등을 토대로 해당 연수원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90) 일반회계-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1034-300)(법제지원국)

【공공자금관리기금】

〈총 괄〉

16. 총괄: 공자기금의 예수예탁 사업의 회계기금별 세부사업 개별 편성 필요

가. 개 요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국고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총괄계정·융자계정·차관계정의 3개 계정으로 구분됨. 이 중 공자기금(총괄계정)은 국고채 발행 또는 다른 회계·기금으로부터 예수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재원을 필요로 하는 회계·기금에 예탁하는 역할을 수행함.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에 자금을 예탁(공공자금관리기금→타 회계·기금)하거나 다른 회계·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예수(타 회계·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받는 방식으로 운용됨. 회계·기금 간 거래 규모는 2025년 결산 기준 수입 35조 2,193억원, 지출 117조 1,107억원에 달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결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회계·기금간 거래 관련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 결산	2024 결산	2025년				2026년도 계획액
			당초 계획	수정 (A)	결산 (B)	수납률 (B/A)	
92 예탁원금회수	80,398,330	111,109,370	44,167,945	44,167,945	43,333,942	98.1	43,916,470
일반회계예탁원금회수 (92-921)	1,141,383	-	-	-	93,617	순증	-
특별회계예탁원금회수 (92-922)	686,300	758,832	622,391	622,391	438,285	70.4	591,496
기금예탁원금회수 (92-923)	77,887,140	110,350,538	43,373,753	43,373,753	42,630,240	98.3	43,324,974
94 예수금	25,465,878	26,075,423	26,079,877	26,983,951	25,407,716	94.2	25,095,998
특별회계예수금 (94-942)	2,407,275	2,662,031	4,189,322	4,189,322	2,466,786	58.9	3,157,130
기금예수금 (94-943)	23,058,603	23,413,392	21,890,555	22,794,629	22,940,930	100.6	21,938,868
95 예탁이자수입	12,675,577	25,143,043	36,259,523	36,686,511	35,219,496	96.0	32,792,553
일반회계예탁이자수입 (95-951)	5,905,619	18,148,611	28,992,437	29,403,558	28,636,671	97.4	25,558,448
특별회계예탁이자수입 (95-952)	107,558	163,458	313,389	320,783	273,298	85.2	399,645
기금예탁이자수입 (95-953)	6,649,692	6,824,009	6,950,224	6,958,697	6,307,772	90.6	6,834,460

주) 2026년도 계획액은 본예산 기준임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회계·기금간 거래 관련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 결산	2024 결산	2025년				2026년도 계획액
			당초 계획	수정 (A)	결산 (B)	집행률 (B/A)	
8500 회계기금간거래 (예탁금)	57,089,393	100,511,866	85,531,460	118,259,180	116,967,377	98.9	111,216,649
일반회계 예탁 (8520-851)	55,441,323	96,638,350	82,765,297	114,948,803	113,657,000	98.9	108,304,108
특별회계 예탁 (8540-853)	1,648,070	3,873,516	2,766,163	3,310,377	3,310,377	100.9	2,912,541
8600 회계기금간거래 (예수원금상환)	7,932,647	3,088,739	1,621,411	1,801,411	1,801,411	100.0	2,075,483
특별회계 예수원금상환 (8601-900)	7,932,647	3,088,739	1,621,411	1,801,411	1,801,411	100.0	1,971,455
일반회계 예수원금상환 (8601-901)	-	-	-	-	-	-	104,028
8700 회계기금간거래 (예수이자상환)	159,577	172,260	226,401	226,401	143,389	63.3	208,561
특별회계 예수이자상환 (8712-900)	159,577	172,260	226,401	226,401	143,389	63.3	207,553
일반회계 예수이자상환 (8712-901)	-	-	-	-	-	-	1,008
9000 기금간거래 (예탁금)	60,811,618	61,298,370	44,477,199	45,763,785	43,785,003	95.7	39,810,441
기타기금 예탁 (9020-900)	60,811,618	61,298,370	44,477,199	45,763,785	43,785,003	95.7	39,810,441
9100 기금간거래 (예수원금상환)	25,253,201	21,191,147	24,266,958	24,266,958	24,189,358	99.7	23,616,162
기타기금 예수원금상환 (9130-910)	25,253,201	21,191,147	24,266,958	24,266,958	24,189,358	99.7	23,616,162
9200 기금간거래 (예수이자상환)	921,167	744,596	904,817	915,666	847,371	92.5	750,900
기타기금 예수이자상환 (9220-920)	921,167	744,596	904,817	915,666	847,371	92.5	750,900

주) 2026년도 계획액은 본예산 기준임

나. 검토의견

재정경제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타 회계·기금으로의 예수·예탁사업을 구체적인 회계·기금별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편성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자금의 융통을 파악하기 어렵도록 하였는바, 사업구조의 세분화를 통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예탁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계획변경 시 국회의 면밀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공공자금관리기금의 '회계기금간 거래' 프로그램(8000대) 및 '기금간거래' 프로그램(9000대)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분류체계(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에 따라 형식상으로는 3단 구조를 갖추고 있으나,[91] 실제로는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이 한 개 또는 두 개에 불과하여 회계·기금별 분리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음.

먼저 공공자금관리기금과 일반회계·특별회계 간의 내부거래인 회계기금간 거래를 살펴보면, 사업 편성 방식이 체계적이지 않고 개별 특별회계에 대한 내부거래를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있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내부거래 구분이 단위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예탁금)와 세부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예수원금상환·예수이자상환)가 혼재되어 있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의 내부거래에 대한 구분방식이 체계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특별회계에 대한 내부거래가 '특별회계 예탁(예수원금상환)'이라는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일괄 편성되어 있음.

다음 공공자금관리기금과 다른 기금 간의 내부거래인 기금간 거래를 살펴보면,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이 각각 하나씩만 존재하는 구조로서 지출사업이 사실상 하나로 통합됨에 따라 개별 기금에 대한 내부거래를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있음. 이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외 다른 기금간의 내부거래를 모두 일괄하여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했기 때문임.

---

91) 「국가재정법」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② 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③ 세입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으로 구분한다.
제67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관·항으로,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목으로 각각 구분한다.

[2025년 공공자금관리기금 회계기금간거래 및 기금간거래 프로그램의 편성구조]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해당 회계·기금 수 (집행기준)
8500 회계기금간거래(예탁금)	8520 일반회계 예탁	8520-851 일반회계 예탁	일반회계
	8540 기타회계 예탁	8540-853 특별회계 예탁	4개 특별회계
8600 회계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8601 기타회계예수원금상환	8601-900 특별회계 예수원금상환	5개 특별회계
		8601-901 일반회계 예수원금상환	일반회계
8700 회계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8712 기타회계예수이자상환	8712-900 특별회계 예수이자상환	5개 특별회계
		8712-901 일반회계 예수이자상환	일반회계
9000 기금간거래(예탁금)	9020 기타기금예탁	9020-900 기타기금 예탁	18개 기금
9100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9130 기타기금예수원금상환	9130-910 기타기금 예수원금상환	15개 기금
9200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9220 기타기금예수이자상환	9220-920 기타기금 예수이자상환	17개 기금

자료: 2025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를 재가공하여 작성함

이와 같이 특별회계·기금에 대한 예수·예탁(원금 및 이자 포함)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함에 따라, 개별 특별회계·기금에 대해 사실상 신규사업을 편성하였음에도 내역사업 단위로 작성되어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경우 또는 계획액을 잘못 편성하여 사후적으로 변경한 경우 등이 발생하였음.

먼저 **'특별회계 예탁(8540-853)'** 사업의 경우 당초 교통시설특별회계·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에 대한 예탁금만 편성되었으나, 2025년 11월 협의변경을 통해 등기특별회계에 300억원이 신규로 예탁되었음.[92] 재정경제부는 등기특별회계로의 예탁금 300억원은 신규 내역사업으로서. 기금운용계획의 내역사업 신설 시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협의만으로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함.

92)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하여 세입(등기수수료)이 급감함에 따라 등기특별회계 연말 결손이 전망됨에 따라 대법원이 인건비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 경직성 경비의 연말 부족 예상액(324억원)에 대하여 신규 예탁을 요청 → 예산실 협의를 통해 특별회계 예탁금을 증액하도록 기금운용계획 변경
*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기금운용계획의 내역사업 신설시 기획재정부장관(예산실)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2025년 특별회계 예탁 사업의 계획 및 집행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명	당초 계획액 (공자기금 ←00특별회계)	제1회 추경 증감분 (5.2.)	제2회 추경 증감분 (7.5.)	협의변경 (11.26.)	계획현액 (연말기준)	집행액
1	교통시설특별회계	309,013	497,947	497,947	497,947	497,947	497,947
2	등기특별회계	-	-	-	30,000	30,000	30,000
3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1,922,147	2,141,152	2,247,427	2,247,427	2,247,427	2,247,427
4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535,003	535,003	535,003	535,003	535,003	535,003
합계		2,766,163	3,174,102	3,280,377	3,310,377	3,310,377	3,310,377

자료: 재정경제부

다음 **‘특별회계 예수원금상환(8601-901)’** 사업의 경우 당초 교도작업특별회계·우체금예금특별회계·우편사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및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대한 예수원금상환액이 편성되었으나, 2025년 11월 협의변경을 통해 우편사업특별회계에 대한예수원금상환액을 1,800억원 증액하여 집행하였음.[93]

그러나 증액 편성한 우편사업특별회계 예수원금 상환액 1,800억원은 2023년 12월 1,000억원과 2024년 6월 800억원 예탁분으로, 2025년 6월 원금상환이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것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당시 누락하였다가 뒤늦게 반영한 것임.

93) 재정경제부는 2025년 내 만기가 도래하여 상환이 필요한 예수원금 1,800억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증액하여 상환하였다고 설명함.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우편사업특별회계 예수 및 상환내역]

(단위: 백만원)

연번	예수일	예수원금만기일	예수원금상환일	원금상환금액
1	2023-12-27	2025-06-27	2025-06-27	100,000
2	2024-06-28	2025-06-28	2025-06-30	80,000
3	2024-12-23	2025-12-23	2025-12-23	250,000

자료: 재정경제부

[2025년 특별회계 예수원금상환 사업의 계획 및 집행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명	당초 계획액 (공자기금 →00특별회계)	협의변경 (11.26.)	계획현액 (연말기준)	집행액
1	교도작업특별회계	47,000	47,000	47,000	47,000
2	우체국예금특별회계	1,265,000	1,265,000	1,265,000	1,265,000
3	우편사업특별회계	250,000	430,000	430,000	430,000
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37,874	37,874	37,874	37,874
5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21,537	21,537	21,537	21,537
합계		1,621,411	1,801,411	1,801,411	1,801,411

자료: 재정경제부

다음 **‘특별회계 예수이자상환(8712-900)’** 사업의 경우 교도작업특별회계·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우체국예금특별회계·우편사업특별회계·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특허청) 등 6개 특별회계에 대한 예수이자상환액이 편성되었으나, 이 중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예수이자 130억 4,300만원은 당초 편성된 것과 달리 전액 미집행되었음.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에 대한 예수이자가 발생할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이자 상환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후 전액 불용한 것임.[94]

[2025년 특별회계 예수이자상환 사업의 계획 및 집행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명	당초 계획액 (공자기금 →00특별회계)	계획현액 (연말기준)	집행액	불용액
1	교도작업특별회계	2,749	2,749	1,849	900
2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13,043	13,043	-	13,043
3	우체국예금특별회계	174,969	174,969	125,560	49,409
4	우편사업특별회계	31,273	31,273	12,139	19,134
5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64	364	405	△41
6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특허청)	4,006	4,006	3,437	569
합계		226,401	226,401	143,389	83,012

자료: 재정경제부

94) 2025년 초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의 예수원금은 없고 2025년 말 370억원을 예수하여 2026년 3월 2억원, 2026년 9월 5.5억원을 상환할 예정임.

다음 **‘기타기금 예탁(9020-900)’** 사업의 경우 18개 기금에 대한 예탁금이 하나의 세부사업에 편성되었는데, 이 중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국회 승인변경 이외에 협의변경(11.26.)으로 2,700억원을 감액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664억 5.300만원만 집행하여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이 73.2%에 불과하였고 국회승인 변경(7.5.) 대비 집행률은 51.1%에 불과한 상황임.

[2025년 기타기금 예탁 사업의 계획 및 집행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연번	기금명	당초 계획액 (공자기금→00기금)	제1회 추경 증감분 (5.2.)	제2회 추경 증감분 (7.5.)	협의변경 (11.26.)	계획현액 (연말기준) (A)	집행액 (B)	불용액	집행률 (B/A)
1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	-	22,672	22,672	22,672	22,672	-	100.0
2	국가유산보호기금	8,170	8,170	8,170	8,170	8,170	8,170	-	100.0
3	국민건강증진기금	904,168	904,168	912,123	912,123	912,123	912,123	-	100.0
4	기후대응기금	319,910	319,910	319,910	319,910	319,910	319,910	-	100.0
5	남북협력기금	1,211,853	1,211,853	891,853	621,853	621,853	455,400	166,453	73.2
6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	127,666	127,666	127,666	127,666	-	100.0
7	대외경제협력기금	633,951	633,951	633,951	633,951	633,951	480,000	153,951	75.7
8	방송통신발전기금	177,258	187,258	187,258	187,258	187,258	187,258	-	100.0
9	사학진흥기금	172,840	172,840	172,840	172,840	172,840	105,419	67,421	61.0
10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103,500	103,500	103,500	103,500	103,500	103,500	-	100.0
11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824,354	2,324,354	2,274,354	2,274,354	2,274,354	2,214,371	59,983	97.4
12	수산발전기금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	100.0
13	양곡증권정리기금	370,000	370,000	370,000	370,000	370,000	324,143	45,857	87.6
14	외국환평형기금	38,066,251	38,066,251	38,066,251	38,066,251	38,066,251	37,631,134	435,117	98.9
15	임금채권보장기금	57,000	57,000	57,000	57,000	57,000	57,000	-	100.0
16	정보통신진흥기금	287,944	376,237	376,237	376,237	376,237	376,237	-	100.0
17	주택도시기금	-	-	170,000	170,000	170,000	170,000	-	100.0
18	축산발전기금	240,000	240,000	240,000	240,000	240,000	190,000	50,000	79.2
합계		44,477,199	45,075,492	45,033,785	44,763,785	44,763,785	43,785,003	978,782	97.8

자료: 재정경제부

다음 **‘기타기금 예수원금 상환(9130-910)’** 사업의 경우 15개 기금에 대한 예수원금 상환액이 하나의 세부사업에 편성되었는데, 이 중 방사물폐기물관리기금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224억원(0.5%) 초과 집행하였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은 1,000억원(△14.2%) 과소 집행하였음.

재정경제부는 당초 계획 대비 2024년 하반기 예수 소요가 달라짐에 따라 2025년 해당 기금으로의 예수원금 상환액이 당초 계획액과 다르게 집행되었다고 설명함.[95]

[2025년 기타기금 예수원금 상환 사업의 계획 및 집행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연번	기금명	2025년 당초 계획액	2025년 집행액	2025년 불용액	집행률
1	국민체육진흥기금	360,000	360,000	-	100.0
2	국유재산관리기금	860,876	860,876	-	100.0
3	농지관리기금	700,000	700,000	-	100.0
4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3,866,300	3,888,700	-	100.5
5	보훈기금	120,000	120,000	-	100.0
6	복권기금	70,000	70,000	-	100.0
7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4,850,090	4,850,090	-	100.0
8	임금채권보장기금	50,000	50,000	-	100.0
9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700,000	600,000	100,000	85.7
10	전력산업기반기금	100,000	100,000	-	100.0
11	주택도시기금	12,348,692	12,348,692	-	100.0
12	근로복지진흥기금	50,000	50,000	-	100.0
13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11,000	11,000	-	100.0
14	사법서비스진흥기금	30,000	30,000	-	100.0
15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150,000	150,000	-	100.0
합계		24,266,958	24,189,358	100,000	99.7

자료: 재정경제부

95) 재정경제부는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 대한 예수원금 상환의 초과 집행 이유로 당초 2025년 예산상 예수원금 상환금액이 3조 8,663억원이었으나, 2024년도 하반기에 224억원을 추가 예수하여 2025년에 실제 상환해야 할 예수원금 금액은 계획대비 224억원 증가한 3조 8,887억원이 되었다고 설명함.
재정경제부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에 대한 예수원금 과소 집행이유로, 2024년 하반기 100,000백만원의 추가 예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5년 예산상 예수원금 상환금액을 7,000억원 편성했으나, 기금 자금 여건으로 인해 2024년에 실제 예수를 하지 못함으로써 2025년에 실제 상환해야 할 예수원금 금액은 계획 대비 1,000억원 감소한 6,000억원으로 이를 상환한 것임

마지막으로 **‘기타기금 예수이자 상환(9220-920)’** 사업의 경우 18개 기금에 대한 예수이자 상환액이 하나의 세부사업에 편성되었는데, 이 중 국제교류기금에 대한 예수이자 3억 3,500만원은 당초 편성된 것과 달리 전액 미집행되었음. 2024년 7월 국제교류기여금 요율 인하로 인한 자금소요 변경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 제출(2024.9.) 이전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용하게 된 것임.[96]

96) 재정경제부는 당초 2025년 예산상 국제교류기금으로부터 196억 9,900만원의 예수금 및 이에 따른 예수이자 상환 3억 3,500만원을 편성했으나, 2024년 7월 기여금 요율 인하에 따라 국제교류기여금 수입이 2024년 683억원에서 2025년 496억원으로 감소하여 국제교류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할 자금이 부족하게 되었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제교류기금으로부터 예수받지 못해 이와 관련된 이자상환도 불필요하게 되었다고 설명함.

[2025년 기타기금 예수이자 상환 사업의 계획 및 집행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연번	기금명	당초 계획액 (공자기금→00기금)	제1회 추경 증감분 (5.2.)	제2회 추경 증감분 (7.5.)	협의변경 (11.26.)	계획현액 (연말기준) (A)	집행액 (B)	불용액	집행률 (B/A)
1	국민체육진흥기금	42,104	42,104	43,116	43,116	43,116	34,644	8,472	80.4
2	국유재산관리기금	117,402	117,402	117,762	117,762	117,762	114,479	3,283	97.2
3	국제교류기금	335	335	335	335	335	-	335	0.0
4	기술보증기금	6,595	6,595	6,595	6,595	6,595	5,337	1,258	80.9
5	농지관리기금	11,092	11,092	11,092	11,092	11,092	3,423	7,669	30.9
6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06,192	106,192	106,192	106,192	106,192	108,191	△1,999	101.9
7	보훈기금	3,574	3,574	3,574	3,574	3,574	3,204	370	89.6
8	복권기금	2,925	2,925	2,925	2,925	2,925	2,252	673	77.0
9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기금	212,259	212,259	212,259	212,259	212,259	166,977	45,282	78.7
10	임금채권보장기금	472	472	472	472	472	472	-	100.0
11	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기금	19,336	19,336	19,336	19,336	19,336	16,854	2,482	87.2
12	전력산업기반기금	2,671	2,671	6,790	6,790	6,790	1,189	5,601	17.5
13	주택도시기금	370,271	370,271	375.629	375.629	375,29	383,326	△7,697	102.0
14	근로복지진흥기금	1,866	1,866	1,866	1,866	1,866	1,388	478	74.4
15	산업기술진흥 및사업화촉진기금	339	339	339	339	339	321	18	94.7
16	군인복지기금	1,020	1,020	1,020	1,020	1,020	309	711	30.3
17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017	1,017	1,017	1,017	1,017	861	156	84.7
18	자동차사고피해 지원기금	5,317	5,317	5,317	5,317	5,317	4,143	1,174	77.9
합계		904,817	904,817	915,666	915,666	915,666	847,371	68,295	92.5

자료: 재정경제부

이처럼 공공자금관리기금과 특별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사업은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이 사실상 동일한 단위로 편성됨에 따라, 개별 특별회계·기금에 대한 내부거래를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있고, 개별 특별회계·기금에 대한 내부거래 계획액이 잘못 편성되거나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집행하더라도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기존에 예수·예탁 예산이 편성된 회계 간 또는 기금 간의 자금 소요 조정은 주요항목(프로그램) 내 변동이므로 조정 규모가 크다고 하더라도 기금운용계획의 자체변경으로 가능하며. 프로그램 자체의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증액 범위가 20% 이내인 경우[97] 또는 회계·기금에 신규로 자금을 예탁하는 경우 등에도 기금운용계획의 자체변경만으로 자금 소요를 조정할 수 있음.

2025년 등기특별회계에 대한 300억원 신규 예탁 사례는 이와 같은 사업구조의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줌.[98] 이는 회계·기금별 예탁 예산을 각각 단일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고 기금운용계획의 자체변경을 통해 특정 회계에 대한 예탁 관련 내역사업을 신설하여 예탁을 실시한 것으로, 이와 같은 내역을 국회는 예탁 시점이 아닌 회계연도가 경과한 이후 결산 시점에서야 명확하게 확인하게 되었음.

재정경제부는 "2026년도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작성 시부터 회계·기금별 예탁금 등 세부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겠다"고 설명하였으나, 이는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을 개별 회계·기금별로 분리하여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 단계에서의 정보 제공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99]

현재와 같은 사업구조가 유지되는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타 회계·기금으로의 내부거래는 프로그램 총액 변동이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나의 세부사업 내 자금 조정을 이유로 임의로 변경될 수 있고, 이와 같은 자금 조정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100]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 17번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에는 재정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기금 간 자금 전·출입 요건 구체화 및 실적 국회 보고가 포함되

---

97)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98)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경기 둔화로 등기수수료 세입이 급감하여 대법원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부족 예상액을 요청하자 "특별회계 예탁(8540-853)" 사업 내에 등기특별회계 내용을 신설하여 예탁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내역사업 신설 시 기획재정부장관(예산실)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이라는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국회 의결 없이 자체변경 절차로 처리됨.

99) 예컨대 '기타기금 예탁' 세부사업은 외국환평형기금·주택도시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등 18개 기금에 대한 예탁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일괄 편성하고 있어, 국회는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시 '기타기금 예탁 44조 4,772억원'이라는 단일 총액만 심의할 수 있을 뿐, 어느 기금에 얼마를 예탁할지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심의·통제할 수 없는 구조임.

100)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관련 사업을 세분화하여 편성할 경우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국채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공자기금 본연의 역할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함.

어 있는데, 상기한 내용을 감안할 때 공공자금관리기금의 회계 및 타 기금으로의 내부거래는 국회 보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임.[101]

따라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타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이를 국회에서 면밀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공공자금관리기금과 타 특별회계·기금과의 내부거래에 대해 ① 예탁·예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회계·기금에 대해서는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편성하고, ② 그 외 회계·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서에 회계·기금별 세부내역을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101) 대한민국 정부,「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9., p.37.

〈지 출〉

17. 국고채이자상환(개인투자용 국채포함): 청약률 제고를 위한 가산금리 대폭 인상 부적정 등

가. 개 요

‘국고채이자상환(개인투자용국채포함)’ 사업은 국고채 발행에 따른 국고채 이자 상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30조 4,690억 3,800만원 중 30조 2,736억 9,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4%)되고 1,953억 4,000만원이 불용되었음.[102]

[2025년도 국고채이자상환(개인투자용국채포함)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국고채이자상환 (개인투자용국채포함)	29,977,898	30,469,038	-	30,469,038	30,273,698	-	195,340	34,315,479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여 소액 단위로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로, 손실 위험이 없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따른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함. 정부는 국채 수요기반 다변화를 통해 국채시장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안정적 장기투자처를 제공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노후 대비 등을 위한 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를 도입하고, 2024년 6월 처음으로 발행하였음.

개인투자용 국채는 2024년 6월에는 10년물(복리채)과 20년물(복리채)만 발행하였으나 2025년 3월부터 5년물(복리채)을 추가 발행되었으며, 2026년 4월부터 3년물(이표채·복리채)이 추가로 발행되고 있음.[103]

---

102) 공공자금관리기금-국고채이자상환(개인투자용 국채 포함)(1071-780)(재정경제부 국고실)

103) 복리채는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합한 이자율을 1년 복리로 계산하여 만기일에 원금과 함께 일괄 지급하고, 이표채는 매년 지급하는 정기이자와 만기에 지급하는 추가이자로 구분되어 지급됨.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이후 연도별 발행 실적]

(단위: 억원)

발행년도	3년물 (2026.4.~)		5년물 (2025.3.~)		10년물 (2024.6.~)		20년물 (2024.6.~)	
	발행한도	발행액	발행한도	발행액	발행한도	발행액	발행한도	발행액
2024	미발행		미발행		7,900	5,980	2,600	1,398
2025			7,500	7,501	5,300	3,793	1,300	762
2026.4.	200	200	2,600	2,600	3,200	3,200	1,000	1,000
합계	200	200	10,100	10,101	16,400	12,973	4,900	3,160

자료: 재정경제부

개인투자용 국채는 판매대행기관(미래에셋증권) 전용계좌를 통해 매월 청약의 방식으로 발행하며, 1인당 최소 10만원부터 연간 2억원까지 구매 가능함.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만기일에 일괄 지급되고, 이자소득 분리과세(14%, 매입액 기준 총 2억원 한도)가 적용됨. 중도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가산금리, 연복리 및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음.

나. 검토의견

첫째, 개인투자용 국채의 청약률을 높이기 위한 가산금리 인상은 개인의 국채 매입을 유도할 수 있으나, 이는 정부의 조달비용 상승 역시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재정경제부는 가산금리 산정에 있어 국채 대중화라는 정책적 목표와 국채 발행에 따른 조달비용 절감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개인투자용 국채는 2024년 6월 도입 이후 상품별 만기 구조와 거시경제 여건,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청약률 및 발행 실적에서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임. 2024년도 총 발행액은 7,376억원으로 당해 연도 총 발행한도인 1조 500억원(10년물 7,900억원, 20년물 2,600억원) 대비 약 70.2%의 실적을 기록함.

정부는 장기물 수요 부진을 타개하고자 2025년 3월부터 만기를 대폭 단축한 5년물(복리채)을 추가 도입함. 5년물 도입 직후인 2025년 상반기에는 자산형성 목적의 소액투자 수요가 유입되면서 청약률이 122~192%로 비교적 양호한 청약 실적을 기록함.

2025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개인투자용 국채 전반의 수요 동력이 급격히 약화되었음. 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기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으로 시중 자금 유입이 확대되었고, 고금리 예금 등 시중 금융상품과의 금리 격차가 축소되면서 국채의 상대적 투자 매력도가 저하됨. 이에 따라 양호하던 5년물조차 2025년 7월 청약률이 67%로 급락하였고, 10월에는 57%까지 떨어지며 청약 미달 사태가 발생하였음.

[월별 상품별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현황]

(단위: 억원)

발행년월		5년물(2025.3.~)				10년물(2024.6.~)				20년물(2024.6.~)				발행액 합계
		계획	청약	발행	청약률(%)	계획	청약	발행	청약률(%)	계획	청약	발행	청약률(%)	
2024	6월	-	-	-	-	1,000	3,493	1,231	349	1,000	769	769	77	2,000
	7월	-	-	-	-	1,500	2,910	1,703	194	500	297	297	59	2,000
	8월	-	-	-	-	1,500	1,761	1,761	117	500	136	136	27	1,897
	9월	-	-	-	-	1,300	388	388	30	200	67	67	34	455
	10월	-	-	-	-	1,300	486	486	37	200	53	53	27	539
	11월	-	-	-	-	1,300	411	411	32	200	75	75	38	486
	소계	**-**	**-**	**-**	**-**	**7,900**	**9,449**	**5,980**	**120**	**2,600**	**1,398**	**1,398**	**54**	**7,378**
2025	1월	-	-	-	-	800	737	737	92	200	132	132	66	869
	2월	-	-	-	-	800	432	432	54	200	73	73	37	505
	3월	600	1,151	790	192	500	353	353	71	100	57	57	57	1,200
	4월	700	1,149	912	164	400	240	240	60	100	48	48	48	1,200
	5월	800	1,266	933	158	400	314	314	79	100	52	52	52	1,299
	6월	900	1,095	1,095	122	400	231	231	58	100	51	51	51	1,377
	7월	900	606	606	67	400	262	262	66	100	63	63	63	931
	8월	900	945	945	105	400	345	345	86	100	83	83	83	1,373
	9월	900	932	932	104	400	316	316	79	100	72	72	72	1,320
	10월	900	511	511	57	400	236	236	59	100	54	54	54	801
	11월	900	778	777	86	400	327	327	82	100	78	78	78	1,182
	소계	**7,500**	**8,431**	**7,501**	**112**	**5,300**	**3,793**	**3,793**	**72**	**1,300**	**762**	**762**	**59**	**12,056**
2026	1월	900	1,196	900	133	400	1589	400	397	100	566	100	566	1,400
	2월	600	1,149	600	192	800	2,201	800	275	300	667	300	222	1,700
	3월	600	1,129	600	188	900	2,372	900	264	300	584	300	195	1,800
	4월	500	1,221	500	244	1,100	1,837	1,100	167	300	572	300	191	700 (3년물200)
	5월	500	1,068	518	214	1,100	1,140	1,100	103	300	282	282	94	2,000 (3년물100)
	소계	**3,100**	**5,763**	**3,118**	**186**	**4,300**	**9,139**	**4,300**	**213**	**1,300**	**2,671**	**1,282**	**205**	**8,700 (3년물300)**
합계		**10,600**	**14,194**	**10,619**	**140**	**17,500**	**22,381**	**14,073**	**128**	**5,200**	**4,831**	**3,442**	**93**	**28,134**

주 1) 3년물은 2026년 4월부터 발행되었고, 이는 별도 도표로 작성함.
2) 연물별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한도는 재정자금 수요 및 국채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3)「개인투자용 국채 규정」제4조에 따라 통상 12월은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하지 않음

자료: 재정경제부

10년물과 20년물은 더욱 부진하여, 10년물은 2025년 3월 이후 연말까지 단 한 번도 청약률 100%를 넘지 못하고 50~80% 대에 머물렀으며, 20년물은 연중 대부분 50% 안팎의 저조한 청약률을 보임. 결과적으로 2025년 연간 총 발행액은 1조 2,057억원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약 5,000억원 증가하였으나, 연간 정부 발행 계획이었던 1조 3,000억원에는 1,000억원가량 미달하는 결과를 초래함.

[월별 상품별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금리]

(단위: 연 %)

발행년월		5년물 (2025.3.~)			10년물 (2024.6.~)			20년물 (2024.6.~)		
		표면금리	가산금리	적용금리	표면금리	가산금리	적용금리	표면금리	가산금리	적용금리
2024	6월	-	-	-	3.540	0.15	3.690	3.425	0.30	3.725
	7월	-	-	-	3.275	0.15	3.425	3.220	0.30	3.520
	8월	-	-	-	3.185	0.22	3.405	3.085	0.42	3.505
	9월	-	-	-	2.980	0.22	3.200	3.000	0.42	3.420
	10월	-	-	-	3.000	0.4	3.400	2.920	0.5	3.420
	11월	-	-	-	3.050	0.35	3.400	3.025	0.45	3.475
	12월	-	-	-	-	-	-	-	-	-
2025	1월	-	-	-	2.665	0.5	3.165	2.750	0.5	3.250
	2월	-	-	-	2.840	0.35	3.190	2.770	0.5	3.270
	3월	2.685	0.35	3.035	2.840	0.35	3.190	2.705	0.5	3.205
	4월	2.680	0.35	3.030	2.830	0.35	3.180	2.700	0.5	3.200
	5월	2.440	0.59	3.030	2.700	0.48	3.180	2.560	0.64	3.200
	6월	2.480	0.55	3.030	2.695	0.485	3.180	2.715	0.485	3.200
	7월	2.655	0.375	3.030	2.885	0.5	3.385	2.825	0.675	3.500
	8월	2.625	0.405	3.030	2.835	0.55	3.385	2.805	0.695	3.500
	9월	2.580	0.450	3.030	2.820	0.565	3.385	2.865	0.635	3.500
	10월	2.585	0.445	3.030	2.835	0.55	3.385	2.805	0.695	3.500
	11월	2.735	0.295	3.030	2.885	0.5	3.385	2.945	0.555	3.500
	12월	-	-	-	-	-	-	-	-	-
2026	1월	3.245	0.30	3.545	3.410	1.00	4.410	3.365	1.25	4.615
	2월	3.385	0.20	3.585	3.520	1.00	4.520	3.565	1.10	4.665
	3월	3.390	0.20	3.590	3.710	1.00	4.710	3.580	1.28	4.860
	4월	3.735	0.10	3.835	3.695	1.05	4.745	3.840	1.10	4.940
	5월	3.530	0.30	3.880	3.715	1.05	4.765	3.610	1.30	4.910
	6월	3.940	0.10	4.040	4.295	0.50	4.795	4.145	0.80	4.945

주) 3년물 복리채와 이표채의 금리는 별도 도표로 작성함
자료: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2026년 이후 재정경제부)는 2025년 말 청약 미달 지속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2026년 1월부터 가산금리를 상당한 수준으로 인상하였음.[104] 10년물 가산금리는 기존 0.50% 수준에서 1.00%로 50bp 인상되었고 20년물 가산금리는 0.55% 수준에서 1.25%로 70bp 상향 조정되었으며, 2026년 4월의 경우 10년물 가산금리가 1.05%까지 추가 상승함. 이에 따라 2026년 4월 기준 개인투자용 국채의 금리는 5년물 3.835%, 10년물 4.745%, 20년물 4.940%에 달하여 시중 제1금융권 정기예금 금리를 상회하는 수준이었음.

이에 따라 2026년부터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실적이 증가하여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의 누적 발행액은 정부의 연간 총 발행계획인 2조원 수준을 넘는 5조 4,000억원을 기록하였음. 이와 같은 높은 수준의 가산금리 책정이 개인의 국채 매입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으나, 국채를 발행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자부담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 보유 시 ‘연복리’로 계산되어 이자가 지급되므로 만기 시점에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이 지급하는 이자는 가산금리 인상분 외 연복리로 포함된 이자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재정경제부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량 확대 외에 가산금리가 유발하는 재정 부담분까지 균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인투자용 국채의 수요 진작을 위해 지나치게 높은 가산금리를 산정할 경우 예금 등 다른 금융상품의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정경제부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가산금리 산정에 있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투명하고 일관적인 가산금리 산정방식을 수립하여 가산금리 산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105]

둘째, 개인투자용 국채는 국채의 만기구조 장기화와 국민의 장기자산형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3년물과 5년물의 도입은 당초 개인투자용 국채의 도입취지와 상이한 측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체 국민의 장기자산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단기물 발행을 지양하고 1인당 매입한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104) 개인투자용 국채의 최종 적용금리는 발행 전월 국고채 낙찰금리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표면금리’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부여하는 ’가산금리’를 합산하여 결정됨. 2024년 도입 초기부터 2025년 연말까지 정부가 부여한 가산금리는 5년물 0.35%~0.59%, 10년물 0.15%~0.565%, 20년물 0.30%~0.695% 수준에서 미세 조정되는 흐름을 보였음. 특히 2025년 하반기에는 시중 지표금리 변동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에게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 합산금리를 5년물 3.030%, 10년물 3.385%, 20년물 3.500% 수준으로 완전히 고정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함.

105) 재정경제부는 최근 국고채 낙찰금리(표면금리)의 급격한 상승을 고려하여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적용금리를 전월과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2026년 6월과 같이 가산금리를 전월 대비 0.5%p 조정하는 경우 시장참여자의 기대와 달라 오히려 혼선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개인투자용 국채는 2024년 도입 당시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인 초장기(10년, 20년) 투자처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노후 대비 등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2025년 5년물과 2026년 3년물이 도입되는 등 단기물이 도입되는 형태로 제도가 개편되고 있음.

[2024년 개인투자용 국채 출시 관련 보도자료]

○(개념)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여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
※ 개인투자자에게 저축수단 제공을 목적으로 소액 단위로 발행하는 국채로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발행 중
○(도입목적) 국채수요 다변화 + 개인의 안정적 자산형성 지원
- 현재 국채 발행량의 대부분을 국내 금융기관이 소화하고 있어, 향후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수요기반을 다변화할 필요
* 국채 보유비중(2023년말) : 국내기관 78.1%, 외국인 20.4%, 개인 1.5%
-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인 초장기(10년, 20년) 투자처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노후 대비 등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 (상품구조) 10년물·20년물 두 종류로 만기일에 원금·이자 일괄 지급,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 연복리 및 분리과세(14%) 혜택 부여

자료: 기획재정부, "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무위험 투자상품, 개인투자용 국채 나온다", 2024.1.19.

[2026년 개인투자용 국채 3년물(이표채, 복리채) 발행 내역]

(단위: 연 %, 억원)

		표면금리	가산금리	적용금리	계획	청약	발행	청약률(%)
3년물 이표채	4월	3,470	0.00	3.470	100	103	100	103
	5월	3.450	0.00	3.450	50	45	45	90
	6월	3.565	0.00	3.565	30	20	20	65
	소계	-	-	-	180	168	165	93
3년물 복리채	4월	3.470	0.00	3.470	100	146	100	146
	5월	3.450	0.00	3.450	50	85	55	170
	6월	3.565	0.00	3.565	70	39	39	56
	소계	-	-	-	220	270	194	123
3년물 전체	4월	3.470	0.00	3.470	200	249	200	125
	5월	3.450	0.00	3.450	100	130	100	130
	6월	3.565	0.00	3.565	100	59	59	59
	합계	-	-	-	400	438	359	110

자료: 재정경제부, 한국예탁결제원

장기물 개인투자용 국채의 경우 개인 투자자가 자금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나 최근 도입되고 있는 단기물의 경우 만기까지의 기간이 짧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장기 투자처 제공이라는 당초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취지와 상이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106]

또한 재정경제부는 2026년 9월부터 개인들이 보유한 퇴직연금 계좌(DC형, 개인형 IRP)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롭게 도입할 계획으로,[107] 지금과 같이 개인투자용 채권을 별도로 청약하여 매입하는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결과적으로 현재 개인투자용 국채의 경우 당초 도입취지였던 장기물의 발행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 청약 수요 역시 다른 금융상품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단기물 중심으로 발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와 더불어, 국채 매입의 고액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서민 자산형성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현행 2억원인 1인당 연간 매입 한도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가산금리 및 복리 혜택이 적용되는 자산 규모의 상한선을 조정하고[108] 개인투자용 국채의 매입에 따른 인센티브가 정책적으로 자산형성이 필요한 계층에 집중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106) 또한 안정적인 국채 관리를 위해서는 국채 만기가 적정 수준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는데, 단기물 비중의 확대는 국채 만기의 단기화 및 잦은 차환 발행으로 이어질 수 있음.

107) 재정경제부, “일반국민들이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개인투자용 구채에 직접 투자하는 제도를 최초 도입”, 2026.2.12.

108) 투자금액별 개인투자용 국채 보유 현황

투자금액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1억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합계
투자자 수(명)	18,070	13,662	7,305	2,784	4,484	1,035	47,340
비중(%)	38.17	28.86	15.43	5.88	9.47	2.19	100

【대외경제협력기금】

〈지 출〉

18. 대개도국 차관: 세부사업 간 대규모 자체전용 부적정

가. 개 요

‘대개도국 차관’ 단위사업(3301)은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개발도상국과의 호혜적 경제협력을 달성하기 위해 장기저리의 양허성 차관제공을 제공하는 것으로,[109] 2025년도 계획현액 2조 699억 5,000만원 중 1조 8,709억 8,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0.4%)되고 1,989억 6,200만원이 불용되었음.[110]

[2025년도 대개도국 차관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대개도국 차관	2,149,950	2,069,950	-	2,069,950	1,870,988	-	198,962	1,900,600
아시아차관	870,189	728,689	-	728,689	592,671	-	136,018	823,517
아프리카차관	380,458	704,172	-	704,172	694,087	-	10,085	622,965
중동-CIS차관	85,999	160,499	-	160,499	157,064	-	3,435	163,411
중남미차관	38,089	30,089	-	30,089	29,106	-	983	17,641
민간·국제기구 협력차관	775,215	446,501	-	446,501	398,061	-	48,440	273,066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109)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은 개발도상국에 대해 장기간 저리의 양허성 차관 방식의 유상원조를 전담하는 기금으로, 1986년 공포된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으며, 동 기금의 운용 ·관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수출입은행에 수행하고 있음.

110) 대외경제협력기금-대개도국 차관(3331)(재정경제부 개발금융국)

동 단위사업은 지역 및 분야별로 구분된 5개 세부사업(아시아차관,[111] 아프리카차관,[112] 중동-CIS차관,[113] 중남미차관,[114]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115])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검토의견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기금운용계획은 국회에서 심의, 확정한 바에 따라 충실하게 집행될 필요가 있으나 대개도국차관 사업의 경우 연례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의 자체변경을 이루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국가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①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②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③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에 주요항목(프로그램) 지출금액 범위 안에서 정부가 자체적으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116]

이에 따라 대외경제협력 지원 프로그램 내 대개도국차관 사업 역시 프로그램 예산액의 총액 변경 없이 프로그램 내 사업 간의 예산액이 변동되는 경우 국회의 심의 없이 재정경제부가 자체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

111) 대외경제협력기금-아시아차관(3331-301)(재정경제부 개발금융국)

112) 대외경제협력기금-아프리카차관(3331-303)(재정경제부 개발금융국)

113) 대외경제협력기금-중동·CIS차관(3331-305)(재정경제부 개발금융국)

114) 대외경제협력기금-중남미차관(3331-306)(재정경제부 개발금융국)

115) 대외경제협력기금-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3331-309)(재정경제부 개발금융국)

116)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2.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로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목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2025년 기획재정부는 아시아차관 사업은 당초 대비 1,415억원(△16.3%), 아프리카차관은 3,237억원(85.1%), 중동-CIS차관은 745억원(86.6%), 중남미차관은 80억원(△21.0%),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은 3,287억원(△42.4%)을 변경하였음.

당초 국회에서 의결하였던 기금운용계획을 기준으로 집행률을 살펴보면, 아시아차관은 68.1%, 아프리카차관은 182.4%, 중동-CIS 차관은 182.6%, 중남미 차관은 76.4%,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은 51.3%으로, 세부사업 기준으로 당초 기금운용계획과 달리 집행되었음. 이러한 방식의 집행은 2022~2024년 집행 현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음.

[2022~2025년 대개도국차관 사업 기금운용계획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구분	당초 (A)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당초 (A)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대개도국차관	1,333,423	1,230,556	1,217,604	98.9	98.9	1,502,976	1,502,976	1,396,071	92.9	92.9
아시아차관	639,379	464,159	464,154	72.6	100.0	705,400	500,307	456,839	64.8	91.3
아프리카차관	319,980	308,175	304,946	95.3	99.0	304,852	234,680	188,685	61.9	80.4
중동-CIS 차관	79,531	21,348	21,260	26.7	99.6	131,972	10,946	9,631	7.3	88.0
중남미 차관	47,171	37,006	29,230	61.9	79.0	36,396	13,918	13,264	36.4	95.3
민간·국제기구 협력차관	247,362	399,868	398,014	160.9	99.5	324,356	743,125	727,652	214.3	97.9

(단위: 백만원, %)

연도	2024					2025				
구분	당초 (A)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당초 (A)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대개도국차관	2,031,979	2,031,979	1,848,544	91.0	91.0	2,149,950	2,069,950	1,870,988	87.0	90.4
아시아차관	849,890	717,780	631,608	74.3	88.0	870,189	728,689	592,671	68.1	81.3
아프리카차관	416,981	416,981	405,278	97.2	97.2	380,458	704,172	694,087	182.4	98.6
중동-CIS 차관	112,383	133,575	107,143	95.3	80.2	85,999	160,499	157,064	182.6	97.9
중남미 차관	43,864	35,206	23,849	54.4	67.7	38,089	30,089	29,106	76.4	96.7
민간·국제기구 협력차관	608,861	728,437	680,666	111.8	93.4	775,215	446,501	398,061	51.3	89.2

자료: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는 대개도국 차관사업의 당초 계획 대비 집행 부진 또는 초과 집행의 사유로, 기본적으로 EDCF 차관사업은 다년간에 걸쳐 지출되는 인프라사업으로 제도적 기반 및 인적 역량이 부족한 수원국 주도로 사업이 추진됨으로 인해, 여러 지연 요소(행정절차 지연 등)가 상존하는 동시에 소요사태·정권변경·국가채무관리 등 현지 정치·경제·사회 변화에도 큰 영향을 받는 등 집행액 변동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함.[117]

[2025년 대개도국차관 단위사업의 기금운용계획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목	세목	세사업	금액	계획수정 사유
자체변경 (2025.5.9)	450	450-04	아프리카 차관	226,714	- 지역별 집행수요 전망증감액 반영 등
자체변경 (2025.5.9)	450	450-04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226,714	- 지역별 집행수요 전망증감액 반영 등
국회승인 (2025.7.4)	450	450-04	중남미 차관	△8,000	- 지역별 집행수요 전망증감액 반영 등
국회승인 (2025.7.4)	450	450-04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72,000	- 지역별 집행수요 전망증감액 반영 등
자체변경 (2025.11.26)	450	450-04	아시아 차관	△141,500	- 지역별 집행수요 전망증감액 반영 등
자체변경 (2025.11.26)	450	450-01	아프리카 차관	97,000	- 지역별 집행수요 전망증감액 반영 등
자체변경 (2025.11.26)	450	450-04	중동-CIS 차관	74,500	- 지역별 집행수요 전망증감액 반영 등
자체변경 (2025.11.26)	450	450-04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30,000	- 지역별 집행수요 전망증감액 반영 등
합 계				△80,000	

자료: 재정경제부

117) 재정경제부는 주요 세부사업별 집행부진 및 초과 집행사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음.

□ (아시아차관) 수원국의 대외채무관리를 위한 집행 이연(공공주택단지 건설사업: 144억원, 135억원), 영유권 분쟁에 따른 군사적 충돌에 따른 공정 지연에 따른 집행 이연(IT 파크 건립사업 155억원), 수원국 국회 휴회에 따른 예산 반영절차 지연(하수처리시설 구축사업 59억원) 등 수원국의 정치·경제·사회 변동에 따른 사업공정 및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불용이 발생함.

□ (아프리카차관) 당초 2025년 기금운용계획 상에 반영되어 있지 않던 대형 기자재차관 사업(교외선/메트로 철도차량 공급사업(승인액 1,732백만불))이 2025년 1월 승인되었으며, 기자재차관의 성격상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여 당해연도 실제집행(2,297억원) 되고, 2024년 공정 및 입찰 지연되었던 사업이 당해연도 집행되는 등 당초대비 집행소요가 증가함.

□ (중동-CIS차관) 의료기자재 공급사업이 본구매 입찰 지연에 따라 2024년 지급예정이었던 선수금 및 기성금 집행이 2025년으로 이연되어 당초 대비 집행액 증가(+436억원)하고, 전자정부 통합데이터센터 건립사업은 본구매 체결 지연에 따라 2024년 예정이었던 선수금이 2025년으로 이연되어 당초 대비 집행액이 증가(+270억원)하는 등 당초 대비 집행소요가 증가함.

□ (중남미차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중남미지역 긴급차관 등 50억원 감액 및 수원국 측 입찰지연(종합병원 건립사업) 등으로 집행소요가 감소함.

그러나 대개도국차관 사업은 2025년 세 차례(5.9., 7.4., 11.26.)에 걸쳐 기금운용계획변경이 이루어졌으나, 이 중 국회승인을 거친 경우는 제2회 추경 한 차례(7.4.)에 불과하고 아시아차관·아프리카차관·중동-CIS차관 사업은 자체변경만으로 계획액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음.

수원국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국회 심의 취지와 달리 세부 사업 간 대규모로 계획을 변경하는 행위는 지양할 필요가 있음. 국회가 의결한 기금운용계획은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가재정법」상 자체변경 제도는 예측 불가능하거나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정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재정경제부는 수원국의 행정지연, 특이소요(아프리카 대형 기자재 차관) 및 정세 변화 등 대외적 요인을 변동 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아프리카 및 중동-CIS 차관 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액 대비 80%를 초과하는 대규모 증액이 이루어졌으며 연례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지역별 차관사업의 계획액의 증감 조정이 상당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개도국차관 사업의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에 있어 집행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집행가능성에 대한 정교한 검토를 기반으로 대개도국차관 사업의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자체변경이 적정 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118]

118) 참고로 재정경제부는 당초 계획대비 지출금액이 20%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기금운용위원회 보고절차 등을 신설하였다고 설명하나, 여전히 대개도국 차관 단위사업의 자체변경이 과다한 상황으로 보다 실효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19. 경협증진자금 사업진행컨설팅: 당해연도 계획액의 전액 불용 및 상이한 세부사업의 예산 혼용 부적정

가. 개 요

‘경협증진자금 사업진행컨설팅’ 사업은 개도국 경협증진자금 차관사업의 사업진행 단계별 지원을 통해 유망사업을 발굴하여 차관지원의 경쟁력 및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22억 700만원 중 6억 2,600만원이 집행(집행률 28.4%)되고 15억 8,100만원이 불용되었음.[119]

[2025년도 경협증진자금 사업진행컨설팅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경협증진자금 사업진행컨설팅	1,545	1,545	662	2,207	626	-	1,581	945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경협증진자금 사업진행컨설팅은 2025년 당초 편성한 계획액이 전액 불용되는 등 계획액이 면밀히 편성되지 않았고, 하나의 지원사업에 대해 두 세부사업이 집행되어 예산의 분리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재정경제부는 향후 실제 사업수요를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기반한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2025년 경협증진자금 사업진행컨설팅 사업은 사업준비컨설팅(사업타당성조사) 3건 10억 7,900만원, 사업실시컨설팅(환경사회영향평가) 1건 4억 6,600만원을 합하여 15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120] 실제로는 실질적인 용역 발주나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해 연도에 편성된 계획액은 전액 불용되었음.

---

119) 대외경제협력기금-경협증진자금 사업진행컨설팅(3337-641)(재정경제부 개발금융국)

120) 경협증진자금 사업진행컨설팅 중 사업준비컨설팅은 우량사업 발굴 및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개도국 유망 후보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 및 보완 등 사전준비를 지원하고, 사업실시컨설팅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제 환경·사회기준 충족이 요구됨에 따라, 환경·사회영향평가등 사업실시를 지원하는 것임.

[2025년 경협증진자금 사업진행컨설팅 계획 및 집행 내역]

	2025년 계획	2025년 결산
사업준비컨설팅	2건×4억 7,900만원 + 1건×4억 7,900만원×0.25 = 10억 7,900만원	- (1건 이월사업 6억 2,600만원 집행)
사업실시컨설팅	1건×4억 6,600만원 = 4억 6,600만원	-
합계	15억 4,500만원	- (전년도 이월액 6억 6,200만원 중 6억 2,600만원 집행)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실제로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이 아닌 전년도 이월액 6억 6,200만원 중 6억 2,600만원에 불과함.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최근 공적개발원조(ODA) 점검 등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조정 과정에서 전반적인 추진 일정이 조정되었고, 이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신규 용역 발주가 지연되어 예산 불용이 불가피했으며, 향후 사전 준비강화를 통해 용역을 조기 발주하는 한편,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률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임.

그러나 결과적으로 다른 사업에 활용될 수 있었던 재원이 2025년도 동 사업의 예산으로 편성된 후 불용됨에 따라 보다 집행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활용되지 못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음.

또한 ODA 사업의 특성상 수원국과의 협상 지연, 내부 심사절차 지연 등에 따라 사업 일정이 빈번하게 변동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 실제 사업수요 및 집행가능성을 보다 면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임.[121)]

한편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사업진행컨설팅’(3376-302) 사업과 ‘경협증진자금 사업진행컨설팅’(3337-641) 사업의 예산이 특정 ODA 사업에 혼용되어 집행되는 경우가 있었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된 주요 컨설팅 사업 중 2022년 방글라데시 우타라 하수처리시설 구축사업 사업타당성조사(F/S), 2023년 인도네시아 발리 경전철 사업 사업타당성조사(F/S), 2024년 방글라데시 다카 메트로 4호선 건설사업 사업타당성조사(F/S))의 경우 소요 비용을 사업진행컨설팅 사업과 경협증진자금 사업진행컨설팅 사업에서 공동으로 집행하고 있음.

121) 참고로 경협증진자금 사업진행컨설팅 사업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경협증진자금 사업진행컨설팅 연례적 이월 과다로, 연내 집행률 제고를 위한 연초 발주 확대 등 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경협증진자금 사업진행컨설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컨설팅 명	계약 방식	계약액	용역기간	당해연도 집행액	차년도 집행액	관련사업 추진경과
2022	사업준비 지원	케냐 콘자 스마트 DMC 조성사업 F/S 보완 추가용역	수의 계약	70.0	2022.8 ~2022.12	70.0	-	EDCF 지원 추진中
2022	사업준비 지원	방글라데시 우타라 하수처리시설 구축사업 F/S	경쟁 입찰	1,231* (492.6)	2022.12 ~2023.12	147.8	344.8	EDCF 지원 추진中
2022	사업실시 지원	케냐 콘자 스마트 DMC 조성사업 ESIA	수의 계약	699.0	2022.12 ~2023.11	279.6	419.4	EDCF 지원 추진中
2023	사업준비 지원	인도네시아 발리 경전철 사업 F/S	수의 계약	1,589.0* (993.1)	2023.10 ~2024.11	397.3	569.0	수원국, 사업추진 여부 검토중
2023	사업준비 지원	필리핀 세부 콘솔라시온-릴로안 우회도로 건설사업 F/S 보완 용역	수의 계약	56.0	2023.12 ~2024.2	56.0	-	금융구조 협의中
2024	사업준비 지원	방글라데시 다카 메트로 4호선 건설사업	경쟁 입찰	4,875* (945)	2024.5 ~2025.12	283.5	625.6	EDCF 지원 검토중

주)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진행컨설팅비 및 경협증진자금 사업진행컨설팅비 공동 지원 사업으로, 경협증진자금 사업진행컨설팅비 해당금액을 괄호안 별도 기재

자료: 재정경제부

이처럼 동일한 ODA 사업의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두 세부사업에서 혼용하여 집행할 경우 전체 사업비를 파악하기 어려워 국회의 예산 심의가 내실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업비를 우회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수원국의 사업준비 상태, 타당성조사 착수 가능 시점 등을 사전에 조사하는 등 예산의 집행가능성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간 예산을 혼용하여 집행하는 경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복권기금】

〈총 괄〉

20. 총괄: 복권수익금 법정배분제도 개편 관련 폭넓은 의견수렴 필요

가. 개요

복권기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35%는 법정배분사업으로서 10개 기금·기관(이하 “법정배분기관”이라 함)에 의무적으로 배분되고 있으며, 배분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122]

---

12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3.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7. 지방자치단체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7조(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100분의 12.583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100분의 10.371
3.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100분의 5.310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00분의 6.356
5.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100분의 14.286
6. 지방자치단체: 100분의 17.267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100분의 17.267
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0분의 4.286

[최근 3년간 복권판매액, 복권수익금 및 법정배분액 현황]

(단위: 억원)

	2024년	2025년	2026년
복권판매액	72,918	76,879	80,958
복권수익금*	29,684	31,314	32,891
법정배분액	10,401	11,051	11,430

주) 복권판매액에서 당첨금 및 유통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법정 및 공익사업 재원 활용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복권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택법, 산림법 등에 근거하여 10개의 기관으로 분산된 복권발행기관을 국무총리 소속[123]하에 설치한 복권위원회로 일원화하고, 복권기금을 신설하여 이를 공익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2004년 제정되었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 당시 복권기금의 수익금 중 30%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에 따라 기존 10개 발행기관의 기존 용도에 배분하도록 법정배분제도를 규정하였음. 이후 2009년 「문화재보호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에 문화재보호기금[124]이 추가되면서 이를 고려하여 법정배분비율을 복권수입금의 35%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2016년 복권기금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법정배분대상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제외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음.[125]

[2025년도 법정배분사업 배분/비율]

(단위: %)

구분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복지증진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	국가유산보호기금	지방자치단체	제주도특별회계	사회복지모금회	산림환경증진자금	보훈복지의료공단
법정배분비율	12.583	10.371	5.310	6.356	14.286	17.267	17.267	4.286	5.846	6.428
실제배분비율(가감 후)	10.066	8.297	5.307	7.288	14.929	18.034	17.265	4.145	7.015	7.654

자료 : 기획예산처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00분의 5.846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00분의 6.428

123) 현재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임.

124) 현행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125) 다만, '주택도시기금'이 법정배분기관에서 제외되었음에도(11개 기관 → 10개 기관), 배분비율은 동일하게 35%로 유지되는 중임.

[최근 3년간 복권기금의 법정배분 비율 현황]

(단위: %)

구분	과학기술 진흥기금	국민체육 진흥기금	근로복지 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 창업진흥기금	국가유산 보호기금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국민체육 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국가유산청
법정배분비율	12.583	10.371	5.310	6.356	14.286
2024년	⑦ 12.017	⑧ 8.838	② 6.107	③ 6.992	⑥ 14.672
2025년	⑤ 12.461	⑩ 8.324	④ 5.576	② 7.474	⑨ 13.075
2026년	⑥ 10.066	⑨ 8.297	⑧ 5.307	③ 7.288	④ 14.929
구분	지방자치 단체	제주도 특별회계	사회복지 모금회	산림환경 증진자금	보훈복지 의료공단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제주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산림청	보훈복지 의료공단
법정배분비율	17.267	17.267	4.286	5.846	6.428
2024년	⑨ 16.335	⑤ 17.267	⑩ 4.008	① 7.015	④ 6.749
2025년	⑧ 17.253	⑥ 17.267	⑦ 4.286	① 7.015	③ 7.269
2026년	⑤ 18.034	⑦ 17.265	⑩ 4.145	① 7.015	② 7.654

주) 원기호는 해당연도 복권기금 법정배분사업 종합평가 순위임
자료: 기획예산처

나. 검토의견

현행 복권수익금 법정배분제도는 변화된 재정여건, 사업수요 등을 면밀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성과평가를 통한 재원의 가감조정 역시 실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기획예산처는 이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정수익금을 법정배분 받는 기관의 경우 개편에 있어 다양한 이견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개편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음.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복권위원회가 법정배분기관의 자금소요 및 성과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법정배분비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배분액을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126]

그런데 복권기금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재원을 차등 배분함으로써 경직적 배분구

12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복권기금의 운용·관리 및 평가) ③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제23조제2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된 사업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이하 "복권기금사업"이라 한다)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제27조에 따른 복권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다.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조를 개선하고 성과 환류를 통해 사업성과를 개선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기관의 수입구조 및 취약계층 지원 등을 고려한 2단계·3단계 조정을 통해 실제로는 성과평가 결과와 다소 상이하게 배분액이 지원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음.

2025년 법정 배분사업의 법정배분 계획액은 1단계 종합평가, 2단계 기관 자금소요, 3단계 감액재원의 성과 우수사업·취약계층 지원사업 가산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는데, 단계별 가감조정으로 인해 복권기금 사업평가에 따른 환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 가감조정에서 종합평가 상위기관인 산림환경증진자금은 20%,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15%, 보훈복지의료공단은 10%, 근로복지진흥공단은 5% 가산하되, 종합평가 하위기관인 국민체육진흥기금은 △20%, 국가유산보호기금은 △15%, 지방자치단체는 △10%, 사회복지모금회는 △5% 감액하였음.

그러나 2단계·3단계 가감조정을 거친 결과,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모금회는 1단계 감액조정을 상쇄되었으며 과학기술진흥기금은 2단계 감액조정되어 오히려 일부 성과평가 하위기관보다 배분계획액이 감액되었음.

[가감조정에 따른 2025년도 복권기금 법정배분 계획액]

(단위: 억원)

평가 순위	법정배분기관	2024년 배분액	2025년 가감조정					2023년 결산 차액 (E)	최종 배분 계획액 (F=A+B+C+D+E)	증감 (F-A)	
			기초 법정 배분 (A)	1단계 (B)	2단계 (C)	3단계 (D)	가감율 (%)				(%)
	합 계	10,402	10,924	△258	△33	291	-	128	11,051	128	1.2
1	산림환경증진자금	730	639	128	-	-	+20.0%	9	775	137	21.4
2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728	694	104	-	18	+17.6%	10	826	132	19.0
3	보훈복지의료공단	701	702	70	-	22	+13.1%	7	801	99	14.1
4	근로복지진흥기금	635	580	29	-	-	+5.0%	8	617	37	6.4
5	과학기술진흥기금	1,251	1,375	-	△13	-	△1.0%	13	1,374	0	0.0
6	제주도특별회계	1,796	1,886	-	-	-	-	22	1,908	22	1.2
7	사회복지모금회	417	468	△23	-	23	-	6	474	6	1.2
8	지방자치단체	1,699	1,886	△151	-	149	△0.1%	22	1,906	20	1.1
9	국가유산보호기금	1,526	1,561	△211	-	78	△8.5%	20	1,448	△112	△7.2
10	국민체육진흥기금	920	1,133	△204	△20	-	△19.7%	11	920	△212	△18.8

주) (1단계) 종합평가(성과평가+자금소요평가) 결과 상·하위 4개 기관에 대해 각각 20%, 15%, 10%, 5% 차등 배분
(2단계) 기관 자체수입·여유자금 및 사업수요 등 감안 추가 감액
(3단계) 1~2단계 감액재원을 성과 우수사업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에 가산
(결산차액) 복권법 시행령 제17조 제7항에 따라 2023년 배분하여야 할 금액과 기 배분된 금액 차액을 정산
자료: 기획예산처

2026년 복권기금 법정배분 계획액을 살펴보더라도, 2단계 가감조정에서 과학기술진흥기금과 국민체육기금을 감액한 후 3단계 가감조정에서 해당 재원을 성과평가 하위기관인 제주도특별회계·근로복지진흥기금·사회복지모금회 등에 지원함에 따라, 성과평가 하위기관인 제주도특별회계·근로복지진흥기금·사회복지모금회는 사실상 1단계 감액조정분이 상당부분 상쇄되었음.

[가감조정에 따른 2025년도 복권기금 법정배분 계획액]

(단위: 억원)

평가 순위	법정배분기관	2025년 배분액	2026년 가감조정					2024년 결산 차액 (E)	최종 배분 계획액 (F=A+B+C+D+E)	증감 (F-A)	
			기초 법정 배분 (A)	1단계 (B)	2단계 (C)	3단계 (D)	가감율 (%)				(%)
	합 계	11,051	11,473	△8	△366	374	-	△43	11,430		
1	산림환경증진자금	775	671	134	-	-	20.0	△3	802	131	19.5
2	보훈복지의료공단	801	737	111	-	30	19.1	△3	875	138	18.7
3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826	729	73	-	34	14.7	△3	833	104	14.3
4	국가유산보호기금	1,448	1,639	74	-	-	4.5	△6	1,706	67	4.1
5	지방자치단체	1,906	1,981	-	-	88	4.4	△7	2,062	81	4.1
6	과학기술진흥기금	1,374	1,444	-	△289	-	△20.0	△5	1,150	△294	△20.4
7	제주도특별회계	1,908	1,981	△79	-	79	0.0	△7	1,973	△8	△0.4
8	근로복지진흥기금	617	609	△61	-	61	△0.1	△3	606	△3	△0.5
9	국민체육진흥기금	920	1,190	△161	△77	-	△20.0	△4	948	△242	△20.3
10	사회복지모금회	474	492	△98	-	82	△3.3	△2	474	△18	△3.7

주) (1단계) 종합평가(성과평가+자금소요평가) 결과 상·하위 4개 기관에 대해 각각 20%, 15%, 10%, 5% 차등 배분
(2단계) 기관 자체수입·여유자금 및 사업수요 등 감안 추가 감액
(3단계) 1~2단계 감액재원을 성과 우수사업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에 가산
(결산차액) 복권법 시행령 제17조 제7항에 따라 2023년 배분하여야 할 금액과 기 배분된 금액 차액을 정산
자료: 기획예산처

이는 근본적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 및 시행령의 법정배분비율이 20년간 고정되어 있어 법정배분기관의 변화된 재정여건, 사업수요 등을 면밀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즉,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법정배분비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을 하더라도 기본배분액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 배분되고 있으며 법정배분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외에 기관의 자금 소요 등을 함께 고려함에 따라 성과평가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것임.

한편 기획예산처는 복권기금의 재원배분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정배분비율 개편, 성과평가에 따른 가감조정의 비율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법 시행령을 입법예고(2026.6.5.~2026.7.15.)하였음.

해당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일몰제를 도입하여 2030년 이후 법정배분사업을 모두 공익사업으로 전환하고, ② 2029년까지 법정배분제도를 유지하되 법정배분비율을 현행 35%에서 '35% 이내'로 탄력적으로 규정하며, ③ 일몰제 도입 전 법정배분사업의 최대 가감조정 폭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하고, ④ 복권위원회 위원장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격상하며, ⑤ 기존 법정배분기관에 대한 안정적 지원 문구를 신설하고 공익사업 전환 이후에도 현행과 같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가. 법정배분비율 탄력적 운용 및 최대 가감조정 폭 확대(안 제23조) 1) 일몰제 도입 전(2029.12.31.)까지 법정배분제도를 유지하되, 현행 복권기금 성과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35%로 고정된 법정배분비율을 35%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2) 일몰제 도입 전 법정배분사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성과평가 결과에 의한 가감조정 폭(±20%)은 현행 유지하되 자체수입, 여유재원 등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가 조정(±20%)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가감조정 폭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함. (안 제23조제2항 신설) 나. 법정배분사업 일몰제 도입(안 제22조 ~ 제27조, 제22조의2, 제23조의2, 제25조의2, 제26조의2, 제27조의2) 현행법상의 법정배분사업은 일정기간(2029년 12월 31일) 동안 지원 보장 후 사업재편,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사업으로 전환함. 다. 기존 법정배분기관의 안정적 지원 신설(안 제23조의3 신설) 기존 법정배분기관에 대한 안정적 지원 문구를 신설하고, 공익사업 전환 이후에도 「보조금법」 적용 제외는 현행 유지함. 라. 복권위원회 구성 개편(안 제14조) 복권위원회 위원장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격상하고, 이에 따라 위촉위원 외의 위원은 관계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함.

자료: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공고 제2026-116호,「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6.6.5.

복권수익금 법정배분제도가 경직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이와 같은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이나, 법정배분사업의 공익사업 전환, 법정배분비율의 변경, 성과평가 가감조정 폭 확대 등에 대해서는 현재 복권수익금을 배분받는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음.

특히 기획예산처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법정배분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보장하고 해당 기간이 경과할 경우 공익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나, 법정배분사업을 수행하던 기관의 입장에서는 2030년부터 재원의 배분방식이 변경됨에 따라을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재원 배분이 재정당국에 의해 임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하며 개편 방향에 대해 이견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임.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복권수익금 법정배분제도의 개편에 있어 기금,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개편에 있어서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회에도 개편계획 및 추진현황을 보고할 필요가 있음.

〈지 출〉

21.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햇살론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필요

가. 개 요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사업은 저소득·저신용 청년층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해 햇살론유스를 통해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456억 4,0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127]

[2025년도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30,640	45,640	-	45,640	45,640	-	-	-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사업은 당초 기금운용계획에서 햇살론유스 사업 2,000억원 공급을 위한 보증재원 300억원과 사회적 배려자(전체의 20%로 추정)에 대한 햇살론유스 이차보전 예산 6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햇살론유스 보증공급액을 1,000억원 확대하기 위해 150억원이 추가 편성되었음.

[2025년도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사업 계획액 편성 근거]

구분	편성 근거
본예산	(1) + (2) = 30,640백만원 (1) 보증재원 30,000백만원 = 200,000백만원(보증공급액) × 15%(대위변제율) × 100%(보증비율) (2) 이차보전 재원 640백만원 = 200,000백만원(보증공급액) × 20%(사회적배려자 비중) × 1.6%p(이차보전율)
1회 추경	○ 보증재원 15,000백만원 = 100,000백만원(보증공급액) × 15%(대위변제율) × 100%(보증비율)

자료: 기획예산처

127) 복권기금-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6436-329-460)(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햇살론 유스 상품 개요]

◦ (개요) 대학생·청년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학업·취업에 전념하여 향후 제도권금융 안착을 지원하는 보증부 대출상품(2020.1월 출시)
◦ (사업근거) 「복권법」제23조제3항제3호, 「서민금융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55조의2제2항제1호
◦ (지원대상)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만 34세 이하인 자로서, ①취업준비생(대학생·미취업청년 등), ②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③청년사업자(창업 1년 이하)
◦ (상환방식) 최대 7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별도 거치기간 최대 8년)
◦ (대출한도) 1인당 생애 1,200만원 이내에서 용도에 따라 지원 *예) 1,200만원을 대출받은 뒤 동 금액을 전액 상환하여도 재대출 불가 - (일반생활자금) 1회(6개월) 300만원, 연간 600만원 이내 지원 - (특정용도자금) 연간 900만원 이내 필요자금만큼 지원(학업·의료·주거 등 용도증빙 필요)
◦ (이용금리) 일반 年 5%, 사회적배려대상자 年 2%(보증료율 0.1~1%p 포함) - 사회적배려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 보증료율 감면: 사회적배려대상자 : △0.9%p,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공자 : △0.5%p
◦ (보증조건) 보증비율 100%, 직접보증
◦ (취급기관) 7개 은행(기업, 신한, 전북, 광주, 토스, 하나, 제주은행)

자료: 기획예산처

나. 검토의견

햇살론유스 이차보전 사업은 근거법령 마련 지연,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신청 부진 등으로 인해 예산의 집행실적이 저조하였으므로, 기획예산처와 금융위원회는 향후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등 햇살론 개편 시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햇살론유스 이차보전 사업은 햇살론유스 보증 신청자 중 사회적배려대상자 청년을 대상으로 은행금리의 1.6%p를 이차보전(利差補塡)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차보전을 통해 사회적배려대상자의 햇살론유스 이용금리를 연 2.0% 수준으로 낮춰 이자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128]

128) 사회적배려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자활근로자·근로장려금 수급자·등록 장애인·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을 의미함.

[햇살론 유스 이차보전 사업 개요]

◦ (개요) 햇살론유스 보증 신청자 중 ‘사회적배려대상자’ 청년 대상 저리 자금지원
◦ (사업근거) 「서민금융법」제2조제5호아목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호
◦ (지원대상) 햇살론유스 보증 신청자 중 사회적배려대상자*
 - 사회적배려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 (지원내용) 은행금리 1.6%p 이차보전
 → 사회적배려대상자 햇살론유스 이용금리 연 2.0%*
 * 2.0% = [3.5%(사회적배려대상자 은행금리) - 1.6%(이차보전: 정부재원)]
 + [1.0%(보증료율) - 0.9%(보증료율 인하: 서민금융진흥원)]
◦ (지원절차) ① 보증 신청 → ② 대상 결정 → ③ 대출 실행 및 정산
 ①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보증 신청
 ② 서민금융진흥원이 심사를 통해 이차보전 대상 결정
 ③ 은행에서 대출실행 후 서민금융진흥원이 은행에 이차보전금 정산

자료: 기획예산처

2025년 햇살론유스 이차보전 사업은 햇살론유스 전체 보증공급액 2,000억원의 20%인 400억원에 대해 1.6%p 이차보전하기 위해 6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지원금액은 보증공급액 160억 6,000만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5,580만원이 집행되었음.

[2025~2026년 햇살론유스 이차보전 예산 월별 지급내역]

구분	2025.6~9월	2025.10~11월	25.12월	2026.1	2026.2	2026.3	2026.4
(사회적배려자) 햇살론유스 신청건수(건)	4,043	2,306	1,145	1,375	911	1,082	1,252
(사회적배려자) 햇살론유스 지원건수(건)	2,974	1,811	937	1,037	750	885	927
(사회적배려자) 햇살론유스 지원금액(억원)	83.5	50.5	26.6	29.1	21.3	25.1	25.9
이차보전 지원건수(건)	1,997	3,658	4,545	5,582	6,332	7,217	8,144
이차보전 지원금액(백만원)	14.6	23.2	18.0	59.9	69.3	86.0	31.5
평균 이차보전 지원금리(%p)	1.6%p						

주) (2025년) 실제 지급한 정산 내역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 실적을 기재하였음. 정산 기간 동안 대출실행 후 이차보전 정산금 산정·지급되는 구조로, 월별 구분이 불가하여 정산 기간으로 산정
(2026년) 이차보전 지원금액의 경우 실제 지급 전(전산 시스템 개발 중)인 관계로 추정치를 산출(2026.2분기 종료 후 정산 예정)

자료: 기획예산처

이와 같이 이차보전 예산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2025년 6월부터 사업이 시행되었고 햇살론유스 신청자 중 사회적배려대상자의 비율(10.2%)이 예산 편성 시 예상치(20%)보다 낮았기 때문임.

햇살론유스 이차보전 사업을 위해서는「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서민에 대한 금융생활 지원사업으로 서민이 대출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사업을 추가하는 등 근거법령이 개정될 필요가 있었는데, 해당 시행령은 입법예고(2024.11~12.), 법제처 심사(2025.2.) 이후 2025년 3월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129]되었으며 전산개발, 관련 기관 간 협의 등이 이루어진 2025년 6월부터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음.

또한 기획예산처 및 금융위원회는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 사회적배려대상자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사회적배려대상자가 햇살론유스 지원액 중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로는 2025년 햇살론유스 지원액 중 10.2%만 사회적배려대상자로 나타났음.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및 금융위원회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당시 기존 지원비중과 이차보전 도입에 따른 사회적배려대상자 증가를 감안하여 이차보전 예산이 부족하지 않게 추정하고자 노력하였으며, 2026년의 경우 전년 대비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원비중이 상승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햇살론유스 보증공급액 중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원 비중]

(단위: 건,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6
전체	건	57,868	91,222	97,110	106,533	66,462	86,361	41,050
	금액	2,234	3,452	3,094	3,016	1,856	2,410	1,144
사회적 배려대상자	금액	148	199	217	207	147	245	141
	(비중)	6.6%	5.8%	7.0%	6.9%	7.9%	10.2%	12.3%

자료: 기획예산처

결과적으로 2025년 동 사업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은 예산 편성 이후 시행령 개정 등의 사전 준비가 지연되었다는 점, 사업대상자 추계가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 등에 기인하므로, 기획예산처와 금융위원회는 향후 서민금융안정기금 개정 등에 따른 햇살론 체계개편과 그에 수반되는 후속 법령개정·업무협의 및 전산개발 등의 사전작업을 면밀히 준비할 필요가 있음.[130]

---

129)「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아. 그 밖에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법 제2조제5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 이 법에 따라 서민이 대출받은 자금의 이차보전(利差補塡) 사업

130) 이데일리, "포용금융 추진단 출범하는데... 서민금융법 개정 하세월", 2026.6.1.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지　출〉

22. 특별인프라펀드: 연말 모펀드 신설 등 펀드구조 변경 부적정

가. 개　요

‘특별인프라펀드’ 사업은 출자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출자전용 민간투자사업 특별 인프라펀드를 조성하고 이에 출자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1,000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131]

[2025년도 특별인프라펀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특별인프라펀드	100,000	100,000	-	100,000	100,000	-	-	-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5년도 특별인프라펀드 사업 개요]

◦ 펀드명 : KIAMCO 인프라지분투자 사모투융자신탁(일반)
◦ 설립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투자대상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1호 내지 제2호 또는 혼합방식(BTO+BTL)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법인 지분증권
◦ 운용방식 : 블라인드 방식(투자대상을 미리 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펀드를 설정하고 투자대상이 확보되면 투자하는 방식)
◦ 운용사 : 산은인프라자산운용㈜
◦ 납입방법 : 투자대상 확정에 따라 운용사가 요청하는 경우 개별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약정 총액 일시에 납입
◦ 투자기간 : 신탁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
◦ 목표 수익률 : 국고채(5년) + 1.1% 이내
◦ 투융자신탁보수 : 순자산총액의 연 0.1% 이내
◦ 사업별 투자기간 : 실시계획 승인 이후부터 운영개시일 3개월 이내
◦ 투자 한도 : 사업별 투자약정금액은 펀드 매입약정금액의 50% 이하,
개별 투자대상 사업의 총 자기자본 출자 지분의 1/3이하 및 총 민간투자비의 5% 이하

자료: 기획예산처

131)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특별인프라펀드(2032-460)(재정경제부 재정관리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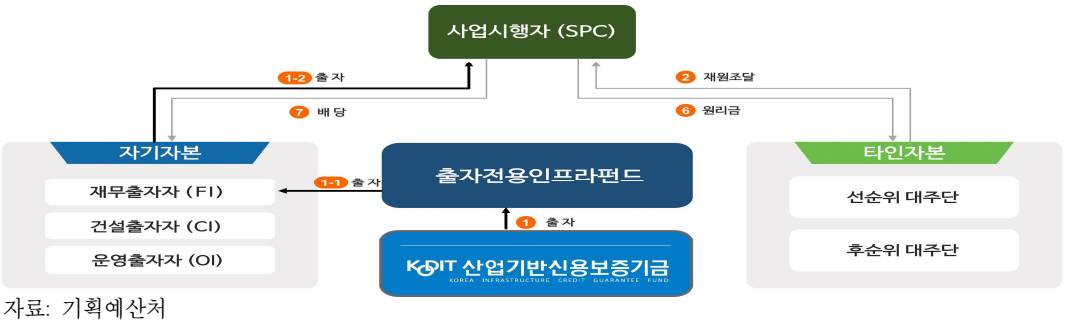
나. 검토의견

2025년 12월 기획재정부는 특별인프라펀드의 구조를 변경하고 모펀드에 자금을 일시 납입하였는데, 기획예산처는 보다 체계적인 펀드 운용을 위하여 사전에 펀드 운용 방식을 명확하게 확정하고 펀드 출자를 위한 예산이 보다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민간투자 사업시행자에 대한 신용보증을 위해 조성·운영되는 기금이나,[132] 민자사업의 출자금 모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5년도 예산에는 특별인프라펀드 예산이 1,000억원 편성되고, 2026년도 예산에는 BTL특별인프라펀드 예산이 500억원 편성되었음.

당초 기획재정부가 수립한 최초 계획에 따르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개별 민간투자사업의 자금 소요가 발생할 때마다 펀드에 자금을 납입하는 캐피탈 콜(Capital Call) 방식으로 특별인프라펀드에 직접 출자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음.

[특별인프라펀드 구조도]



자료: 기획예산처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상 실시계획 승인, 금융약정 체결 등 실제 집행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연내 자금 소요가 구체화되지 않음에 따라 2025년도 펀드 출자를 위한 예산이 불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133]

---

13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① 민간투자사업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제34조제1항 각 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한다.

133) 대한경제, "신용보증기금 연내 투자 못한 특별인프라펀드 출자액 회수 방침", 2025.7.29.
대한경제, "특별인프라펀드 불용 막자... 자금 보관 별도 펀드 조성 추진", 2025.11.21.

[2025년 특별인프라펀드 조성 및 투자 관련 일자별 추진내역]

일 자	추진내역	비 고
2024.12.11.	· 출자 전용 특별 인프라펀드 출자 지침 마련	기획예산처
2024.12.27.	·「출자 전용 특별 인프라펀드 업무처리기준」 마련	산기반신보
2025.02.12.	· 신보-펀드 운용사 투자계약 체결	산기반신보
2025.08.08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투자 승인(591억원)	산은인프라
2025.11.03.	·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투자 승인(260억원)	
2025.12.03.	· 신보 출자 방법 변경(기획재정부 펀드 출자 지침 변경) (前) 신보→특별인프라펀드 (後) 신보→모펀드→특별인프라펀드	기획예산처
2025.12.09.	· 신보-펀드 운영사와 모펀드 투자계약 체결	산기반신보
2025.12.18.	· 신보-모펀드에 1,000억원 출자 (총 조성액 2,000억원 / 신보(재정) 1,000억원 + 산은 1,000억원)	산기반신보
2025.12.23.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투자 집행(591억원)	산은인프라

자료: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2026년 이후 기획예산처)는 2025년 12월 3일 펀드 출자 지침을 개정하여, 기존 '특별인프라펀드 직접 출자' 구조를 '신보 모펀드를 통한 간접 출자' 방식으로 변경하였음. 개편된 방식 하에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2025년 12월 9일 펀드 운용사와 모펀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9일 후인 12월 18일 모펀드에 1,000억원의 출자금 전액을 일시납입 처리하였음.

[2025년 특별인프라펀드 기금 집행방식 변경내역]

구 분	최 초	변 경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46조(기금의 운용) - 특별인프라펀드 출자만 가능	제46조(기금의 운용) - 특별인프라펀드에 대한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모펀드) - 특별인프라펀드 출자(자펀드)
출자지침	기금 → 특별인프라펀드에 Capital Call[주] 방식으로 출자	기금 → 모펀드에 출자금 전액 일시납 → 모펀드가 특별인프라펀드에 Capital Call 방식으로 출자

주) Captial Call이란 실제 투자가 발생할 때 투자자가 펀드에 자금을 납입하는 방식임
자료: 기획예산처

「국가재정법」의 단년도 회계원칙 하에서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특별인프라펀드에 대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출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당해연도 중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출자 소요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출자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됨. 이와 같은 방식은 펀드의 실제 자금소요시점에 출자금 집행이 이루어지나 투자대상사업의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출자금이 집행되기 어려운 구조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특별인프라펀드 조성방식이 기금이 직접 특별인프라펀드로 출자하는 방식에서 기금은 모펀드로, 모펀드는 자펀드로 출자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회계연도가 경과한 이후에도 모펀드가 출자금을 활용(자펀드 출자)할 수 있게 됨. 그러나 이는 펀드의 실제 자금소요시점에 출자금을 집행하여 재원의 적기 활용을 추진하기 위해서 캐피탈 콜 방식을 추진한 당초 취지와 상이한 측면이 있으며, 투자대상 확보 이전까지 자금이 모펀드에 유보되는 결과로 이어짐.

또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동 사업 집행액은 모펀드 출자금을 기준으로 산정됨에 따라 편성된 예산 전액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나 실제로 자펀드를 통해 집행된 금액은 2025년 12월 기준 591억원 수준임. 이는 당초 특별인프라펀드 출자를 위해 편성된 2025년도 예산(1,00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예산안 편성 시 2025년 내 실제 투자소요를 면밀하게 추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음.

특별인프라펀드의 투자승인 이후 실제 집행까지 이루어진 것은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591억원) 1건에 그치고 있음. 그 외에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260억원)의 경우 투자 승인은 2025년 11월에 완료되었으나 실제 투자금 집행이 이루어지 않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800억원)의 경우 2026년 7월 투자 승인 심의가 진행중에 있음.

결과적으로 총 2,000억원(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1,000억원, 산업은행 1,000억원 매칭)의 펀드 조성액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2026년 7월 기준 591억원(집행률 29.6%) 수준임.

[2025년 특별인프라펀드의 실제 투자내역]

(단위: 억원, %, 2026.7. 기준)

	사업명	사업자	사업기간	총사업비	펀드 투자승인액	전체 출자지분 대비 비중	실제투자액 (2025.12. 기준)	실제투자액 (2026.7. 기준)
1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서부광역메트로(주)	공사 6년, 운영 40년	21,287	591	33.3	591	591
2	발안~남양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발안남양도로(주)	공사 4년, 운영 40년	4,463	260	32.4	-	-
3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지타엑스씨(주)	공사 5년, 운영 40년	49,272	800 (투자 심의 진행중)	13.9	-	-

자료: 기획예산처

이와 같이 모펀드 내에서 자펀드로 실제 출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모펀드 내에 자금이 예치되는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으며, 참고로 특별인프라펀드의 경우 2026년 7월 기준으로 모펀드에 약 572억원 수준의 자금이 예치되어 있는 상황임.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재정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출자방식,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기반으로 펀드 출자를 위한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모펀드에 자금이 장기간 유보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투자대상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국유재산관리기금】

〈지 출〉

23. 대법원 청주지법 충주지원 신축: 연례적인 기금운용계획변경 지양 필요

가. 개 요

‘대법원 청주지법 충주지원 신축’ 사업은 노후(건축연도 1979년)된 대법원 충주지원 청사의 이전·신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5년도 당초 계획액은 38억 1,500만원이었으나, 자체변경을 통하여 전액 감액하였음.[134]

[2025년도 대법원 청주지법 충주지원 신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대법원 청주지법 충주지원 신축	3,815	-	-	-	-	-	-	100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대법원 청주지법 충주지원 신축 연도별 사업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총 계	**47,719**	**100**	**351**	**3,717**	**9,645**	**9,223**	**12,342**	**12,341**
ㅇ토지매입비	15,029	100	1	2,986	2,986	2,986	2,985	2,985
ㅇ공사비	28,956	-	-	-	5,791	5,791	8,687	8,687
ㅇ시설부대경비	3,734	-	350	731	868	446	670	669
- 기본설계비	799	-	350	449	-	-	-	-
- 실시설계비	704	-	-	282	422	-	-	-
- 감리비	2,132	-	-	-	426	426	640	640
- 시설부대비	99	-	-	-	20	20	30	29

자료: 대법원

134) 국유재산관리기금-대법원 청주지법 충주지원 신축(1331-413)(재정경제부 국고실, 대법원 기획조정실)

나. 검토의견

대법원 청주지법 충주지원 신축 사업의 경우 3년 연속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예산액 전액이 감액되었는데, 사업 추진여건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이와 같은 취지의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이 연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청주지법 충주지원 신축 사업은 총사업비 477억 1,900만원 규모의 청사 건립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건설보상비 34억 3,800만원, 실시설계비 3억 5,200만원 및 시설부대비 2,500만원 등 총 38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전액 감액되었으며, 해당 재원은 2025년 12월 수원법원 위탁개발 임차료 재원으로 집행되었음.

[2025년 대법원 청주지법 충주지원 신축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5년							2026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청주지법 충주지원 신축	**3,815**	**-**	**-**	**-**	**-**	**-**	**-**	**100**
- 건설보상비(410-00)	3,438	-	-	-	-	-	-	100
- 기본설계비(420-01)	-	-	-	-	-	-	-	-
- 실시설계비(420-02)	352	-	-	-	-	-	-	-
- 공사비(420-03)	-	-	-	-	-	-	-	-
- 감리비(420-04)	-	-	-	-	-	-	-	-
- 시설부대비(420-05)	25	-	-	-	-	-	-	-

자료: 대법원

동 사업의 경우 2023년과 2024년 역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예산액이 전액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문화재발굴조사, 매장유산 보전 및 공공청사 면적 변경 협의 지연 등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가 늦어졌고 후속 절차도 지연되고 있다는 입장임.

[청주지법 충주지원 신축 사업 기금계획변경 내역(2023~2025년)]

(단위: 백만원)

년도	구분	목	세목	세사업	금액	계획수정 사유
2025	자체변경 (2025.12.17.)	410	00	청주지법 충주지원 신축	△3,438	불용이 예상되는 건설보상비 및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를 수원법원 위탁개발 임차료로 기금운용계획 변경
		420	02	청주지법 충주지원 신축	△352	
		420	05	청주지법 충주지원 신축	△25	
	합 계				△3,815	
2024	자체변경 (2024.12.10.)	410	00	청주지법 충주지원 신축	△3,438	불용이 예상되는 건설보상비 및 기본설계비를 수원법원 위탁개발 임차료로 기금운용계획 변경
		420	01	청주지법 충주지원 신축	△799	
	합 계				△4,237	
2023	자체변경 (2023.12.28.)	410	00	청주지법 충주지원 신축	△1,278	불용이 예상되는 건설보상비를 수원법원 위탁개발 임차료로 기금운용계획 변경
	합 계				△1,278	

자료: 대법원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연례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후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감액조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였다고 보임.

따라서 재정경제부와 대법원은 인허가 등 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철저하게 검토하여 집행가능한 수준의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대법원 청주지법 충주지원 신축 사업 향후 건립계획]

일 자	추진내용
2027. 09. ~ 2028. 04.	기본설계용역 실시
2028. 05. ~ 2029. 02.	실시설계용역 실시
2029. 08.	공사 착공
2032. 02.	준공

자료: 대법원

【기　타】

24.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가. 개　요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기획재정부에 대해 시정요구 101건(중복 2건 포함)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시정 29건·주의 13건·제도개선 61건이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29	13	60	2	100
예비비	-	-	-	-	1	-	1
합계	-	-	29	13	61	2	101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시정요구사항 101건에 대해 89건을 조치완료(조치율 88.1%)하고 12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100	88	88.0	12
예비비	1	1	100.0	-
합계	101	89	88.1	12

국회가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면서 채택한 부대의견 중 기획재정부 2025회계연도 결산 관련 부대의견은 아래와 같음.

[기획재정부 관련 2025년도 예산안 등 부대의견]

구분	부대의견
2025년도 본예산	(1) 정부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감액된 세출 및 기금지출사업 (법정 의무지출 사업과 예산총칙에 따른 사업은 제외)에 대해서 이·전용, 예비비 배정,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사업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반영하여 국회 의결을 거쳐 확보하도록 한다.
	(2) 정부는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25) 기획재정부는 성과가 저조한 재정사업이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국회에 보고한다.
	(26) 기획재정부는 향후 한국수출입은행 출자를 통해 집행되는 여신이 우리나라 수출산업 전반에 균형감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2024회계연도 결산	(1) 기획재정부는 국채 발행 증가로 인한 국가신인도 하락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점을 고려한다.
	(14)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주식 매각에서 최다액 출자자 승인 변경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불법부당행위가 밝혀지거나 YTN 최다액 출자자가 변경 승인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필요한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

나. 검토의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국가재무제표의 전기오류수정손익 규모가 여전히 작지 않은 상황으로, 재정경제부는 지속적으로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국가회계법」 제1조에서는 국가회계는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제공하여야 하며, 또한 같은 법 제4조에서는 국가회계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해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135] 그러나 국가재무제표에서의 지속적인 전기오류수정손익의 발생은 회계적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유발하여, 「국가회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회계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과정에서 2012~2024년간 전기오류수정손익이 총 155.9조원에 이르는 등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저하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기획재정

135) 「국가회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회계와 이와 관계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회계의 원칙) 국가회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1. 국가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부는 국가재무제표 오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된 바 있음.

재정경제부는 각 부처가 소관 결산서를 적정하게 작성하여 전기오류수정손익 규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5 국가결산보고서 작성시 재무제표 주석에 부처별 전기오류수정손익 규모(표)를 포함하였고, 전기오류수정손익과 관련된 국유재산·물품 교육을 3회에서 5회로 확대하는 등 교육을 강화하여 조치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음.

[국가재무제표 오류 해소대책 마련 관련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 요구 유형	조치결과	조치 상황
(5) 국가재무제표 오류 해소 대책 마련 필요	○ [지적사항] 「국가회계법」에 따라 2011회계연도부터 국가결산보고서에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데 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2012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재무제표에 반영된 전기오류수정손익이 총 155조원 수준임 ○ [시정요구사항] 기획재정부는 국가재무제표 오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제도 개선	○ 각 부처가 소관 결산서를 적정하게 작성하여 전기오류수정손익 규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25국가결산서 작성시 재무제표 주석에 부처별 전기오류수정손익 규모(표)를 포함 (5월말 국회제출예정) * (기존) 부처 결산서 주석에는 전기오류수정 규모를 표시하나, 국가결산서에는 부처별 규모 미포함 ○ 조치완료일: 2026년 4월 6일(국가결산보고서 국무회의 의결) ○ 전기오류수정손익 관련 교육 비중을 확대(2025년부터 국유재산·물품 교육 3회→5회)하는 등 교육 강화 ○ 조치완료일: 2025년 6월~12월 (결산교육 반영)	조치 완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 2026.5.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주석 6 전기오류수정 및 회계처리방법의 변경)과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주석 19 전기오류수정 및 회계처리방법의 변경)을 비교해보면, ①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에 대해 이유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고, ② 중대하지 않은 전기오류수정 변경에 대해 부처별 전기오류수정손익 발생규모를 명시하였으며, ③ 회계추정의 방법에 대해서도 회계추정의 변경에 따른 명세를 도표로 작성하는 등 전기오류수정 등의 사항에 대해 비교적 충실하게 작성되었음.

다만, 국가결산보고서의 주석을 상세히 작성함에도 불구하고, 전기오류수정손익 규모 자체는 2023년과 2024년에 비해 증가한 5.7조원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국가재무제표상 전기오류수정손익 발생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기오류수정이익	5.9	2.8	9.0	7.5	3.7	6.4	5.0	2.6	3.3	2.7	40.3	1.0	1.4	3.1
전기오류수정손실	6.7	1.6	4.6	4.4	3.6	9.5	3.8	4.3	5.6	1.9	13.3	3.0	2.0	2.6
합계	12.6	4.4	13.6	11.9	7.3	15.9	8.8	6.9	9.0	4.6	53.6	4.0	3.4	5.7

자료: 재정경제부

특히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서는 '저리융자금에 대한 대손상각비', '일반융자금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계상금액' 관련 사항이 중대한 전기오류수정 변경 사항으로 제시되었음.

[주석 19 전기오류수정 및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 1) 중대한 전기오류수정 변경]

○ 고용노동부는 전기 재무제표에서 저리융자금에 대한 대손상각비 및 융자보조원가 충당금 계정재분류 사유로 발생한 중대한 오류사항에 대하여 비교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전기말 재정상태표 상 자산 및 부채 총계상 변동되는 금액은 없으며, 전기말 재정운영표상 재정운영결과도 변동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회계처리방법의 변경에 따라 계정과목을 재분류함에 따라 비교표시 되는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재정상태표상 순자산 증감 이나 재정운영표 상 재정운영결과의 변동은 없습니다.

○ 단기저리융자금을 단기일반융자금으로 변경함에 따라 단기일반융자금이 42,472백만원 증가하였으며 단기저리융자금이 42,472백만원 감소하였으며, 당기말 비교표시된 재무제표는 변동된 금액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저리융자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를 대손충당금에서 융자보조원가충당금으로 변경 함에 따라 융자보조비용과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이 각각 14,381백만원 증가하였으며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이 각각 14,381백만원 감소하였으며, 당기말 비교표시된 재무제표는 변동된 금액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일반융자금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계상금액을 보조원가충당금에서 현재가치 할인차금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타의이자비용과 현재가치할인차금이 각각 616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융자보조비용과 보조원가충당금이 각각 616백만원 감소하였으며, 당기말 비교표시된 재무제표는 변동된 금액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6.5., p.1370

이처럼 재정경제부는 향후 융자보조원가충당금 및 대손충당금과 관련된 전기오류수정 변경사항이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처리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국 세 청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129억 3,100만원(4.4%)이 많은 3,093억 5,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74억 4,700만원(△15.7%)이 감소됨.[2)]

[2025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364,074	364,074	366,798	2,724	296,420	296,420	309,351	12,931	△57,447
총수입	364,074	364,074	366,798	2,724	296,420	296,420	309,351	12,931	△57,447

2025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28억 8,500만원(△0.1%)이 적은 2조 11억 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64억 3,900만원(3.4%)이 증가됨.

문의: 02-6788-5679

---

2)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5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1,951,242	1,951,242	1,934,676	△16,566	2,004,000	2,004,000	2,001,115	△2,885	66,439
총지출	1,951,242	1,951,242	1,934,676	△16,566	2,004,000	2,004,000	2,001,115	△2,885	66,439

나.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964억 2,000만원으로, 15조 9,366억 9,1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3,093억 5,100만원이 수납(수납률 1.9%)되고 14조 3,691억 2,100만원은 미수납되어 1조 2,582억 1,9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296,420	296,420	-	296,420	15,936,691	309,351	14,369,121	1,258,219
합 계	286,420	296,420	-	296,420	15,936,691	309,351	14,369,121	1,258,219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조 40억원으로, 2조 11억 1,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28억 8,5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2,004,000	2,004,000	-	-	-	2,004,000	2,001,115	-	2,885
합 계	2,004,000	2,004,000	-	-	-	2,004,000	2,001,115	-	2,885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5회계연도 말 기준 국세청 자산은 전년 대비 2조 8,880억원이 증가한 12조 5,748억원으로, 이는 금융자산이 2조 8,866억원, 기타자산이 48억 4,900만원 각각 증가한 것에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6,796억원 증가한 5조 9,738억원으로 기타부채 8,198억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2조 2,084억원이 증가한 6조 6,010억원임.

2025회계연도 국세청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2,7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94억 6,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11조 6,198억원으로 전년 대비 9조 2,406억원 증가하였음.

[2025회계연도 국세청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 (A)	2024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12,574,797	9,686,815	2,887,982	29.8
		금융자산	9,391,989	6,505,393	2,886,596	44.4
		유·무형자산	3,175,484	3,178,947	△3,463	△0.1
		기타자산	7,324	2,475	4,849	195.9
	부 채		5,973,844	5,294,292	679,552	12.8
		차입부채	71,887	70,223	1,664	2.4
		충당부채	1,725,447	1,867,326	△141,879	△7.6
		기타부채	4,176,510	3,356,743	819,767	24.4
	순자산		6,600,953	4,392,523	2,208,430	50.3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271,453	261,984	9,469	3.6
	재정운영순원가		11,619,769	2,379,210	9,240,559	388.4
	재정운영결과		11,619,769	2,379,210	9,240,559	388.4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2025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재정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는 없음.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국세청은 납세편의 제고를 통한 소관 세입예산 조달,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성장을 세정측면에서 뒷받침, 공정과세 실현으로 조세정의 확립, 조직문화 혁신으로 미래세정 준비 등을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77개의 세부사업을 통해 수행하였음.

2025년도 국세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국세청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에 대해 수납한 금액에 대해서만 징수결정하여 통고처분 이후 벌금상당액의 징수·수납 관리가 불투명한 문제가 있으므로, 벌금 및 과료의 징수결정 시기를 통고처분 시점으로 앞당기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세외수입에 대해 면밀히 수납관리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가산금은 불납결손액이 전년 대비 5배 수준으로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납액은 전년의 72%에 불과하므로, 국세청은 가산금에 대한 징수노력을 강화하고 세외수입에 대해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셋째,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법인 추가, 의견진술 수당 지급, 고충민원 추가 등 연이은 제도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국세청은 저조한 사업실적을 개선하기 위한 본질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넷째,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사업과 같이 법률 시행시기 유예 등으로 인해 집행할 수 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불용을 원칙으로 하고, 예산이 당초 목적과 달리 활용되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국세청은 당초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 예산의 전용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여 신규사업인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우회하는 것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입〉

1. 징계부가금: 국세청의 공직윤리 제고 노력 강화 필요

가. 개 요

‘징계부가금’은 「국세기본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경우에는 해당 징계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에서 부과되는 비목으로, 징수결정액 3억 6,600만원 중 1억 1,100만원이 수납(수납률 30.3%)되고 미수납액 2억 5,500만원이 발생하였음.[3][4]

---

3) 일반회계-징계부가금(56-564)(징세법무국)

4) 「국세기본법」
제87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 ①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收受)하였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따른 징계절차에서 그 금품 수수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대상 세무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전후에 금품 수수를 이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징계위원회에 감경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을 요구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이하 각 목 생략)

[2025년도 징계부가금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징계부가금	39	39	366	111	255	-	30.3	63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국세청은 소속 공무원의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과 관련된 징계부가금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세공무원의 공직윤리 및 청렴 교육을 강화하고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22~2026년 국세청의 징계부가금 편성 및 수납 현황을 살펴보면, 징계부가금의 징수결정액은 2022년 200만원에서 2023년 1억 6,300만원, 2024년 2억 7,900만원, 2025년 3억 6,600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수납액은 2022년 200만원에서 2023년과 2024년 각각 600만원, 2025년 1억 1,1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2022~2026년 국세청 징계부가금 편성 및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2	30	30	30	2	2	6.7	100.0	-	-
2023	30	30	30	163	6	20.0	3.7	-	157
2024	20	20	20	279	6	30.0	2.2	273	-
2025	39	39	39	366	111	284.6	30.3	255	-
2026	63	63	-	-	-	-	-	-	-

자료: 국세청

국세청의 징계부가금 징수결정액이 증가한 이유는 국세공무원의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과 관련된 징계처분이 증가한 것에 기인함.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징계부가금 관련 징계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6명(파면 1명, 강등 2명, 정직 1명 등), 2024년 11명(파면 3명, 해임 1명, 정직 1명 등), 2025

년 12명(해임 1명, 강등 1명 등)으로 징계처분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2025년 징계부가금 관련 징계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성실 의무 위반 1건, 청렴의무 위반 9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2건으로 대부분 청렴의무 위반에 따라 징계부가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남.

[국세청 소속 공무원 징계부가금 관련 징계처분 현황]

(단위: 명)

연도	구분	합계	성실 의무 위반	복종 의무 위반	직장 이탈 금지 위반	비밀 엄수 의무 위반	청렴 의무 위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기타/ 중복
2023	파면	1	1	-	-	-	-	-	-	-
	해임	-	-	-	-	-	-	-	-	-
	강등	2	-	-	-	-	2	-	-	-
	정직	1	-	-	-	-	1	-	-	-
	감봉	2	-	-	-	-	2	-	-	-
	견책	-	-	-	-	-	-	-	-	-
	불문경고 등	-	-	-	-	-	-	-	-	-
	계	6	1	-	-	-	5	-	-	-
2024	파면	3	1	-	-	-	2	-	-	-
	해임	1	1	-	-	-	-	-	-	-
	강등	-	-	-	-	-	-	-	-	-
	정직	1	-	-	-	-	1	-	-	-
	감봉	1	-	-	-	-	1	-	-	-
	견책	4	-	-	1	-	1	2	-	-
	불문경고 등	1	-	-	-	-	1	-	-	-
	계	11	2	-	1	-	6	2	-	-
2025	파면	-	-	-	-	-	-	-	-	-
	해임	1	1	-	-	-	-	-	-	-
	강등	1	-	-	-	-	-	1	-	-
	정직	-	-	-	-	-	-	-	-	-
	감봉	2	-	-	-	-	2	-	-	-
	견책	7	-	-	-	-	6	1	-	-
	불문경고 등	1	-	-	-	-	1	-	-	-
	계	12	1	-	-	-	9	2	-	-
합계		29	4	-	1	-	20	4	-	-

자료: 국세청

참고로 국세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는 4등급, 청렴체감도는 5등급, 청렴노력도는 3등급으로, 전년대비 각각 1등급, 2등급, 1등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5][6] 이는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국세청의

5)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국공립대학 등 공공기관의 종합적인 청렴수준을 평가하

종합청렴도는 하위 30%, 청렴체감도는 하위 7%에 해당하는 것임.

는 것으로,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및 청렴노력도 평가 결과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1등급은 상위 0~6.7%, 2등급은 상위 6.7~30.9%, 3등급은 상위 30.9~69.2%, 4등급은 상위 69.2~93.3%, 5등급은 상위 93.3~100%에 해당함.

6) 국민권익위원회, 「2025년도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5.12., p.119.

[2025년도 공공기관(차관급 중앙행정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구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1등급	법제처 (▲1등급) 질병관리청 (▲1등급)	국가데이터처 (-) 질병관리청 (▲2등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법제처 (▲1등급)	부패실태 평가 (감점)
2등급	국가데이터처 (-) 농촌진흥청 (-) 새만금개발청 (▲1등급) 인사혁신처 (-) 조달청 (-) 지식재산처 (▲2등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농촌진흥청 (▼1등급) 법제처 (▲1등급) 새만금개발청 (▲1등급) 우주항공청 (2024 미평가) 원자력안전위원회 (▲1등급) 조달청 (-)	인사혁신처 (-) 조달청 (-) 지식재산처 (▲3등급) 질병관리청 (-)	
3등급	관세청 (▲1등급) 국가유산청 (▲1등급) 기상청 (-) 방위사업청 (-) 병무청 (-) 산림청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1등급)	관세청 (-) 병무청 (-) 식품의약품안전처 (▲2등급) 인사혁신처 (▼1등급) 지식재산처 (-)	국가데이터처 (-) 국가유산청 (▲1등급) 국세청 (▼1등급) 기상청 (▼1등급) 농촌진흥청 (-) 방위사업청 (-) 병무청 (-) 산림청 (-) 새만금개발청 (▲1등급) 식품의약품안전처 (-) 해양경찰청 (-)	
4등급	국세청 (▼1등급) 소방청 (-) 우주항공청 (2024 미평가) 재외동포청 (2024 미발표) 해양경찰청 (▼1등급)	국가유산청 (-) 기상청 (-) 방위사업청 (▲1등급) 산림청 (-) 소방청 (▼1등급) 재외동포청 (2024 미발표) 해양경찰청 (▼1등급)	경찰청 (▼1등급) 관세청 (-) 소방청 (▲1등급) 원자력안전위원회 (▲1등급) 재외동포청 (2024 미발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등급)	
5등급	경찰청 (▼1등급)	경찰청 (-) 국세청 (▼2등급)	우주항공청 (2024 미평가)	

주 1) 기관명 가나다순, 괄호 안은 2024년도 대비 등급 변화 정도임
2) ▲: 전년 대비 등급 상승, ▼: 전년 대비 등급 하락, -: 전년과 등급 동일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2025.12., p.119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증가에 대해 공직윤리 및 청렴의무 관련 교육을 강화하여 금품 및 향응수수 등으로 인한 청렴의무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5년 기준으로 국세청의 징계부가금 징수결정액 3억 6,600만원 중 1억 1,100만원만 수납되고 2억 5,500만원은 미수납되어 미수납률이 69.7%에 달하는 상황이므로, 국세청은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 등에 따라 시효가 정지된 경우 외에는 징계부가금을 징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7)]

7) 국세청은 각 지방청별로 징계부가금 체납자에 대하여 소득발생 및 재산증가 현황 점검 보고서를 분기별로 제출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공매·추심 등 강제징수를 속행하는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통하여 징계부가금 수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함.

2. 벌금 및 과료: 벌금의 징수결정 시기를 통고처분 시점으로 앞당기는 방안 검토 필요

가. 개 요

‘벌금 및 과료’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포탈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으로, 징수결정액 580억 6,500만원이 전액 수납(수납률 100.0%)되었음.[8)]

[2025년도 벌금 및 과료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벌금 및 과료	59,230	59,230	58,065	58,065	-	-	100.0	53,353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국세청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 수납액에 대해서만 징수결정하여 통고처분 이후 벌금상당액의 징수·수납 관리가 불투명한 문제가 있으므로, 벌금 및 과료의 징수결정 시기를 통고처분 시점으로 앞당기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세외수입에 대해 면밀히 수납관리할 필요가 있음.

국세청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조세 포탈 등 각종 불법행위 및 의무 불이행 시 위반행위한 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수납하고 있음.[9)] 그런데 국세청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 부과 시, 통고처분 시점에는 징수결정하지 않고 벌금 상당액이 납부되어 수납된 후 사후적으로 징수결정하고 있음.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국세청은 조세범칙 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통고처분한 후, 통고서를 송

8) 일반회계-벌금 및 과료(56-561)(징세법무국)

9) 면세유의 부정 유통,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부정발급, 가짜석유제품의 제조·판매, 체납처분 면탈, 장부의 소각·파기, 성실신고 방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명의대여행위 등,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원천징수의무자의 미징수, 허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

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통고대로 이행하면 벌금을 수납(징수결정)하고,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고 있음.[10] 벌금상당액의 납부방식은 현금,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직불카드 등으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와 동일함.

국세청은 벌금의 납부·수납 절차를 납입의 고지에 의한 징수결정 후 수납이 아니라, 수납 후 징수결정하는 경우(자진납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11]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납증빙서류를 송부받은 때 징수결정함에 따라, 벌금을 통고대로 이행(수납)한 경우 수납과 징수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국세청의 '벌금 및 과료' 세입과목은 언제나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동일할 수밖에 없어 벌금형의 통고처분 이후 통고 미이행한 벌금액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

---

10)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통고처분)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 또는 몰취(沒取)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이하 "납부신청"이라 한다)를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1.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
2.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⑤ 제1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은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제17조(고발)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12조(통고처분)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를 마친 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조세범칙사건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조세범칙행위자 및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별로 통고서를 작성하여 통고하여야 한다.

11)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수납후 징수결정) ① 수입징수관은 납입의 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이 출납공무원, 한국은행 등, 제92조제1항에 따른 대리점(이하 "국고대리점"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설치한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 및 국세 외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이하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납입된 경우에는 해당 출납공무원, 한국은행등, 국고대리점, 체신관서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송부된 수납증빙서류(이하 "수납증빙서류"라 한다)에 따라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하는 경우의 징수결정일은 수납증빙서류를 접수한 날로 하되, 수납된 월을 경과하여 접수한 때에는 수납된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납증빙서류를 수납된 회계연도를 경과하여 접수한 때에는 수납된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2022~2026년 국세청 벌금 및 과료 편성 및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2	52,483	52,483	52,483	62,376	62,376	118.8	100.0	-	-
2023	53,000	53,000	53,000	46,463	46,463	87.7	100.0	-	-
2024	57,546	57,546	57,546	47,664	47,664	82.8	100.0	-	-
2025	59,230	59,230	59,230	58,065	58,065	98.0	100.0	-	-
2026	53,353	53,353	-	-	-	-	-	-	-

자료: 국세청

[2025년 국세청 벌금 및 과료 결산내역]

○ 징수결정액(580억 6,500만원)
○ 수납액(580억 6,500만원)
○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해당사항 없음

자료: 국세청

한편 관세청도 국세청과 마찬가지로 「관세법」에 따른 관세포탈죄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 부과 시, 관세범에게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통고 처분한 후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통고대로 이행하면 벌금을 수납하고,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고 있음.[12)]

그러나 관세청은 국세청과 달리 통고처분이 있을 때 징수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징수결정 시점과 수납시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이에 관세청은 납기미도래에 따른 벌금 미수납액 발생을 파악하고, 결산 자료에서도 이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음.

---

12) 「관세법」

제311조(통고처분)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1.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2.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⑤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316조(통고의 불이행과 고발) 관세범인이 통고서의 송달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난 후 고발이 되기 전에 관세범인이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2026년 관세청 벌금 및 과료 편성 및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2	1,235	1,235	1,235	2,423	2,166	175.4	89.4	255	3
2023	3,790	3,790	3,790	4,338	3,980	105.0	91.7	358	-
2024	2,432	2,432	2,432	4,549	4,330	178.0	95.2	219	-
2025	4,339	4,339	4,339	5,497	5,205	120.0	94.7	292	-
2026	4,571	-	-	-	-	-	-	-	-

자료: 관세청

[2025년 관세청 벌금 및 과료 결산내역]

○ 징수결정액(54억 9,700만원)
○ 수납액(52억 500만원): 범칙사건 통고처분 벌금
○ 미수납액(2억 9,200만원): 납기미도래(5,800만원), 체납자무재산등(200만원), 체납정리중(2억 3,200만원)

자료: 관세청

이처럼 과세관청 간 벌금에 대한 징수결정 처리방식에 차이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징수결정 시기를 관세청과 같이 벌금에 대한 통고처분 시점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먼저 통고처분 시점에 징수결정을 처리할 경우 국가가 부과한 총 벌금 규모, 실제 수납액, 납기 미도래 금액 및 통고 미이행 금액 등의 재정 정보가 명확하게 산출되어 국가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음.

국세청과 같이 수납 이후 사후적으로 징수결정을 수행할 경우에는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항시 일치하여 통고처분 부과내역 대비 통고 미이행 금액을 파악하기 어려운 관리 사각지대를 형성하게 됨.

다음 통고처분은 미납 시 강제징수 대신 고발 조치로 전환되는 특성이 있으나 행정청이 공식적으로 납부를 통지한 통고처분액(벌금상당액)에 대해서는 통고처분 시점에 징수결정을 처리하여 장부(수입징수부)에 기록하고, 기한 내 미납으로 인해 고발절차로 이관될 시 해당 징수결정을 취소 또는 감액하는 방식이 국가 회계 원칙에 보다 부합할 것으로 보임.

다만 국세청에서는「관세법」제23조에서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로 통고처분과 고발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국세기본법」제28조에는 소멸시효

의 중단과 정지 사유로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만 명시되어 있어 국세청이 통고처분한 벌금은 확정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벌금 및 과료의 징수결정 및 집행관리는 예·결산 등 내부적인 행정처리의 방식으로 납세자의 불복여부 및 방식과 관련된 통고처분의 처분성이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고, 최근 대법원은 통고처분이 임의적 승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통고처분이 제도가 불복절차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지적하는 등 국세청과 다른 판단을 한 바 있음.[13)]

참고로 벌금 및 과료에 대해서는 검찰청과 관세청은 사전 징수결정 방식을, 국세청과 경찰청은 사후 징수결정 방식을 따르고 있는 등 정부 부처 내에서도 벌금 및 과료에 대한 징수결정 방식이 상이한 상황임.[14)]

따라서 국세청은 벌금의 징수결정시기를 통고처분시로 앞당겨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

13) 최근 대법원 판례(2025다210837)는 위법한 중복조사로 인해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벌금을 납부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 방법을 일절 허용하지 않고 법률관계를 완결시키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며, 위법한 통고처분에 의해 납부된 벌금 상당액은 소급하여 법률상 원인을 흠결한 것이 되어 국가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마땅히 납세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본 바 있음.

14) 경찰청(사후징수결정, 국세청 동일): 대표적으로「도로교통법」제163조~제165조 위반행위에 대해 통고처분 후 미이행 시 즉결심판
검찰청(사전징수결정, 형벌확정): 형사재판 벌금형 확정 금액으로, 미수납시 강제징수 또는 노역
관세청(사전징수결정, 시효중단규정): 관세법에 따라 통고처분이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효력 가짐(확정력有) 통고처분 미이행시 고발 후 사전결정한 벌금을 결정취소

3. 가산금: 가산금의 대규모 불납결손 및 저조한 수납실적 부적정

가. 개 요

‘가산금’ 은 종전의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 체납국세에 가산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2019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가산금이 징수·수납되고 있으며, 징수결정액 15조 6,877억 9,600만원 중 1,764억 8,100만원이 수납(수납률 1.1%)되고 미수납액 14조 2,639억 1,8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1조 2,473억 9,700만원이 불납결손되었음.[15)]

[2025년도 가산금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가산금	174,150	174,150	15,687,796	176,481	14,263,918	1,247,397	1.1	187,590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종전의 「국세징수법」에서는 납세의무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중)가산금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매월 체납된 국세의 1,000분의 12(2019년에는 10,000분의 7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국세청이 징수하도록 하였음.[16)]

2018년 말 「국세징수법」이 개정되어 2020년부터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과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고 종전의 가산금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통합되기 전인 2019년에는 가산금을 종전과 같이 징수하되 그 비율을 1천분의 12에서 1만분의 75로 인하하여 체납자의 세금 납부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음.[17)] 이에 2020년부터는 납세자의 국세체납 시 본세(本稅)에 더해 납부지연가산

15) 일반회계-가산금(58-581)(징세법무국)

16) 「국세징수법」(법률 제116098호, 2018.12.31. 일부개정 이전)
제21조(가산금)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 ·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세가 부과·징수되어 국세수입에 계상되고 있음.

국세청은 2019년 납세의무 성립분까지의 가산금에 대해서는 2020년 이후에도 지속해서 징수·수납하고 있는 상황으로, 당해연도 가산금의 미수납액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수입의 징수결정액으로 이월되어 누적되고 있음.[18]

나. 검토의견

가산금의 불납결손액이 전년 대비 5배 수준으로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납액은 전년의 72%에 불과하므로, 국세청은 가산금에 대한 징수노력을 강화하고 세외수입에 대해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2025년 국세청의 가산금 수납, 미수납 및 불납결손 현황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 15조 6,878억원 중 1,765억원이 수납되었고, 14조 2,639억원이 미수납되었으며,[19] 1조 2,474억원이 불납결손되었음.[20] 이를 전년과 비교해보면 2025년 가산금의 수납액은 1,765억원으로 2024년 수납액 2,414억원 대비 27% 감소하였으나, 2025년 불납결손액은 1조 2,474억원으로 2024년 불납결손액 2,104억원 대비 493% 급증한 것임.

---

1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16098호, 2018.12.31. 일부개정 이전)
제3조(가산금 폐지에 관한 특례)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을 계산할 때는 제21조제2항 본문 중 “1천분의 12”를 “1만분의 75”로 본다.

18)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징수결정금액의 이월) ① 수입징수관은 매 회계연도의 징수결정금액중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의 수입의 징수결정금액으로 이월하여야 한다.
③ 전 회계연도에서 이월된 징수결정금액으로서 계속하여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재차 이월하여야 한다.

19) 미수납액 14조 2,639억원을 살펴보면, ① (납부기한 등 연장) 14억원은 재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의 사유로 세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납부기한을 유예하였고, ② (정리유예) 3,882억원은 소송진행 중, 압류·매각의 유예 등으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체납정리가 유예되었으며, ③ (정리중체납액) 13조 8,743억원은 체납자의 재산상태·거소 등 채권확보와 현금징수를 위해 국세청이 관리 중에 있음.

20) 불납결손액 1조 2,474억원을 살펴보면, ① (강제징수 중지) 1,550억원은 강제징수비와 우선하는 채권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등의 사유로 불납결손 하였고, ② (소멸시효 완성) 1조 917억원은 가산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③ (납부의무 면제) 7억원은 법령에 의한 납부의무 소멸로 불납결손 하였음.

[최근 3년간 가산금의 수납, 미수납 및 불납결손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납부기한 연장	정리유예	정리중 체납액	소계	강제징수 중지	소멸시효 완성	납부의무 면제	소계
2021	15,504,800	554,108	11,222	366,159	14,096,032	14,473,413	66,776	409,790	713	477,279
2022	15,431,309	364,862	8,865	343,771	14,467,997	14,820,634	18,456	226,471	886	245,813
2023	15,361,135	273,762	3,505	362,915	14,466,586	14,833,006	13,409	240,237	721	254,367
2024	15,302,544	241,413	2,031	211,884	14,636,817	14,850,732	7,079	202,538	782	210,399
2025	15,687,796	176,481	1,368	388,200	13,874,350	14,263,918	154,956	1,091,729	712	1,247,397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2025년 가산금 수납액의 감소 이유로, 2020년부터 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전환되어 징수결정 규모 자체가 감소하고 있고, 체납액 징수 시 가산금이 국세보다 후순위로 징수되며,[21] 소득·재산이 없어 징수하지 못한 미수납액이 다음연도 징수결정액으로 이월·누적되어 기간이 경과할수록 징수가 어려워지는 등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함.

또한 불납결손액이 급증하게 된 원인으로 ① 2020년 이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체납자의 재기지원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재산을 압류해제하였고, 압류해제 이후 중단된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되어 2025년에 이르러 소멸시효 완성이 늘어난 측면이 있고,[22][23] ② 감사원으로부터 국가결산보고 시 결손처분·정리보류 이후 가산되는 중가산금을 국가채권에 반영하지 않은 부분이 지적되어 2025년 5월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집계가 누락되었던 중가산금을 일괄 반영하였고, 이로 인해 2025년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의 가산금이 증가하였다고 설명함.[24]

---

21) 국세체납액의 징수순위는 강제징수비, 국세, 가산금 순임.

22)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5억원 미만) 또는 10년(5억원 이상)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데,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국세의 강제징수비 및 가산금에도 효력이 미치게 됨.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 국세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각 기간이 지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되는데, 압류재산 해제 후 별도의 소멸시효 중단·정지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진행되게 됨.

23) [국세청의 연도별 압류해제 건수]

(단위: 천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압류해제	139	200	228	136	118	89	84

자료: 국세청

이처럼 2025년 가산금 징수결정액의 8%에 달하는 1조 2,474억원을 불납결손으로 처리하였으며, 미수납된 세외수입의 실제 수납액과 수납률은 전년 대비 동반 하락하였음.

회수불가능한 장기·악성 채권에 대한 결손 처리는 징수 실익이 없는 건들을 회계상 우선 정리하여 한정된 행정력을 징수 가능성이 높은 유효 미수납액에 집중시키기 위한 목적일 때 그 행정적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수납률이 전년 대비 하락한 현상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징수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24) [국세청의 2025년 월별 가산금 불납결손액]

(단위: 억원)

202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가산금 결손액	124	187	250	164	1,600	1,480	1,472	949	897	1,978	1,994	1,379

자료: 국세청

〈세 출〉

4.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사업: 국선대리인 활용 실적 부진을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사업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국선대리인이 무료로 불복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억 1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25)]

[2025년도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1,312	1,312	-	△298	1,014	1,014	-	-	1,115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169	169	-	△68	101	101	-	-	169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국선대리인 제도는「국세기본법」제59조의2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시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국선대리인을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무료로 불복대리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한 제도임.[26)]

---

25) 일반회계-납세자 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3133-300)(납세자보호관실)

26)「국세기본법」
제59조의2(국선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 신청인 및 제81조의15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재결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관청을 말하며, 제81조의15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개인인 경우:「소득세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영세납세자는 ① 개인납세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보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이고, ② 법인납세자의 경우 매출액 3억원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의 자로서 청구세액이 5,000만원 이하인 자임.

[국선대리인의 지원요건]

청구세액	납세자 구분	지원 요건	
5천만 원 이하	개인납세자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재산가액	• 보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
	법인납세자	수입금액	• 매출액 3억 원 이하
		자산가액	• 자산가액 5억 원 이하

주) 상속세 · 증여세 · 종합부동산세 관련 청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자료: 국세청

국선대리인은 관련 경력 3년 이상의 세무사·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로 구성되고, 영세납세자를 위한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함. 지원대상 업무는 영세납세자가 청구하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 등이고, 2026년부터 고충민원도 추가되었음. 국선대리인은 청구인 면담부터 불복청구서 작성·보완, 법령 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위원회 참석 및 의견진술 등의 업무를 수행함.

[국선대리인의 역할]

청구인 면담	증거수집 등	청구서 작성	항변서 작성	위원회 참석
■ 청구인 면담 통해 처분 및 사실관계 확인 ■ 불복방향 등 의견교환	■ 국선대리인이 직접 증거수집 또는 현장확인	■ 불복청구서에 대해 청구인과 의견교환 ■ 증거수집 반영	■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 처분청 의견에 대한 반박 ■ 위원들에게 의견진술

자료: 국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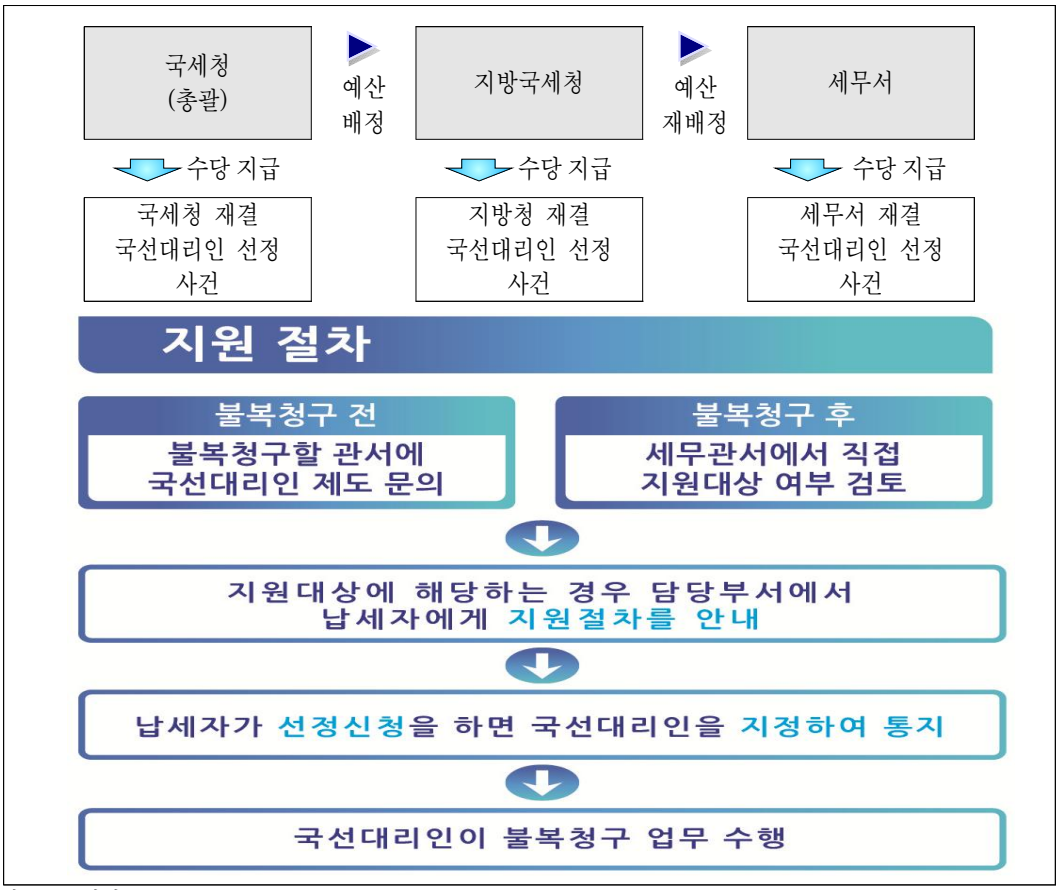
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나. 법인인 경우: 수입금액과 자산가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과 자산을 말한다)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신청 또는 청구일 것
4.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신청 또는 청구일 것

② 재결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선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국선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선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대리인에 관한 제59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국선대리인의 자격, 관리 등 국선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선대리인제도 개요도]



자료: 국세청

나. 검토의견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법인 추가, 의견진술 수당 지급, 고충민원 추가 등 연이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국세청은 저조한 사업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 내실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025년 국선대리인제도 운영 사업은 국선대리인 지원 716건과 의견진술 174건을 전제로 수당 1억 3,3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1억 6,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국선대리인 지원 457건과 의견진술 121건에 대한 수당 8,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100만원이 집행되었음.

[2025년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사업 상세내역]

	2025년 예산	2025년 결산
금액	1억 6,900만원	1억 100만원
세부 내용	· 국선대리인 수당: 133백만원 (716건×150천원) + (174건×150천원)	· 국선대리인 수당: 87백만원 (457건×150천원) + (121건×150천원)
	· 제도안내: 20백만원 (포스터2천부×2천원) + (리플릿400천부×40원)	· 제도안내: 13백만원 (포스터2.5천부×250원) + (리플릿140천부×92원)
	· 국선대리인 운영비용: 15백만원 (위촉장200개×5천원) + (간담회비용 325개×40천원) + (감사패7개×200천원)	· 국선대리인 운영비용: 0.6백만원 (감사패 3개×187천원)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2025년 예산안을 2023년 말 실적을 바탕으로 편성하였는데,[27]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건수를 2023년 541건 대비 32.3% 증가한 716건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지원건수는 457건으로 2023년 대비 84건 감소하였다고 설명함. 또한 당초 174건의 의견진술을 예상하였으나, 총 121건의 의견진술 수당만 지급되어 예산보다 집행실적이 저조하였다는 의견임.

[2025년 국선대리인 수당 예산 및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차 이 (B-A)
	예산(A)	결산(B)	
기본 수당	1억 740만원 (716건*150천원)	6,850만원 (457건*150천원)	3,890만원 (259건*150천원)
의견진술 수당	2,610만원 (174건*150천원)	1,820만원 (121건*150천원)	790만원 (53건*150천원)
합 계	1억 3,350만원	8,670만원	4,680만원

자료: 국세청

동 사업의 일차적인 부진 원인은 영세납세자의 신청건수 및 국선대리인 지원건수가 감소한 것에 기인한 것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국선대리인 신청건수는 566건에서 464건으로, 지원실적은 541건에서 442건으로, 지원 후 불복인용건수는 60건에서 57건으로 각각 감소하였음.

27) 참고로 2023년부터 국선대리인 제도의 청구세액 기준이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되었음.

[2021~2025년 국선대리인 신청 및 지원현황]

(단위: 건)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6.
신청건수(A)	410	440	566	526	464	257
지원실적(B)	396	415	541	499	442	239
지원거부(A-B)	14	25	25	27	22	18
지원 후 불복인용(C)	52	54	60	81	57	41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2023년 청구세액 기준 상향(3,000만원→5,000만원 이하), 2024년 지원대상에 영세 법인납세자 추가, 2025년 의견진술 수당 15만원 지급, 2026년 지원범위를 고충민원까지로 확대하는 등 국선대리인 지정 대상을 지속해서 넓혀 왔음.

[국선대리인 제도 변경 내역]

시기		2014.3.~	2018.2.~	2020.1.~	2023.2.~	2024.4.~	2026.1.~
청구 세액		1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납세자	개인	영세개인(소득 5천만원·재산 5억원 이하)					
	법인	-				영세법인(수입3억원·자산5억원이하)	
지원 대상		이의신청,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 추가			고충 민원 추가

자료: 국세청

그러나 이러한 외연 확장 이후 2023년을 기점으로 신청 건수와 실제 지원실적은 조정 국면을 보임. 이는 공급(대리인 지정)의 문턱을 낮추는 구조적 변혁만으로는 영세 납세자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거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함.

특히 국선대리인으로 위촉된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전문인력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선대리인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유인이 크지 않을 수 있음. 현재 지급되는 소액의 수당이나 상징적인 위촉패 증정 등은 전문가들의 시간과 노력에 상응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28)29)]

한편 업무 난이도에 비해 보상이 낮다 보니 대리인들의 적극적인 사건 수임이나 깊이 있는 변론을 기대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인력 활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음. 국선대리인이 319명이나 위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지원건수는 총 442건에 불

28) [국선대리인 1인당 국선대리 지원실적 현황]

과해 1인당 지원건수는 1.4건에 그치는 상황임.[30)]

아울러 대리인의 서비스 품질 저하는 영세납세자의 불복인용률 하락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최근 국선대리인을 선임했을 때의 인용률과 미선임 시의 인용률 격차가 과거 5년 평균에 비해 좁혀지고 있음.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 선임의 실익을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선임에 따른 구제 성과를 지속적으로 안내·제고할 경우 제도 이용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임.

(단위: 건, 명)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6.
국선대리인 1인당 지원실적	0회	77	90	75	57	99	169
	1회	93	123	104	137	113	113
	2회	53	75	69	73	65	41
	3회이상	56	38	74	53	42	15
합 계(위촉인원)		279	326	322	320	319	338
국선대리인 지원건수		396	415	541	499	442	245
국선대리인 1인당 평균지원건수		1.4	1.3	1.7	1.6	1.4	0.7

자료: 국세청

29) 참고로 국선대리인 1인당 국선대리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2025년의 경우 국선대리인 319명 중 31%인 99명은 지원실적이 없었고, 35%인 113명은 1년간 1회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극적인 국선대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대해 국세청은 영세납세자가 전국 어디에서나 국선대리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불복사건이 적은 관서에도 최소 인원의 국선대리인을 위촉하여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있어 1인당 지원실적이 낮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함.

30)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국세청의 위촉한 국선대리인은 총 319명임.

[국선대리인 직능별 구성현황]

(2025.12.31. 현재, 단위: 명, %)

계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319	270	84.6	20	6.3	29	9.1

자료: 국세청

[국선대리인 활동 관서별 구성현황]

(2025.12.31. 현재, 단위: 명, %)

계	서울청	중부청	인천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319	89	61	50	31	24	20	44

자료: 국세청

[국선대리인 선임 여부에 따른 소액 불복사건 인용률 비교]

(단위: %, %p)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5년 평균
국선대리인 선임 불복인용률(A)	17.0	20.3	16.3	22.8	17.6	18.8
대리인 미선임 불복인용률(B)주)	8.1	5.3	5.2	7.1	5.8	6.3
불복인용률 차이(A-B)	8.9	15.0	11.1	15.7	11.8	12.5

주) 대리인 미선임 불복인용률은 2023년 2월 개전 전에는 대리인이 없는 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를, 그 이후에는 대리인이 없는 청구세액 5,000만원 이하의 불복청구건에 대한 인용률임

자료: 국세청

이를 종합하면, 국세청은 단순한 국선대리인 제도의 적용 대상 확대나 참여 독려에서 벗어나, 국선대리인 스스로가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유인체계를 구조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사업: 시행시기 유예로 집행 불가능한 예산의 연례적 이용 부적정

가. 개 요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사업은 매월 수집한 소득자료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등에 제공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0억 6,000만원 중 10억 4,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8%)되고, 1,300만원이 불용되었음.[31)]

[2025년도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실시간 소득 파악제도 운영	2,560	2,560	-	△1,500	1,060	1,047	-	13	1,911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실시간 소득파악제도는 일정 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에 대해 소득정보를 기반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려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20년 12월 발표)에 따라,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등의 소득 과세자료의 제출주기를 기존 연·반기·분기에서 매월로 단축하여 국세청이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고 이를 근로복지공단 등에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복지혜택을 지원하고 국민편의를 제고하려는 제도임.

2026년 현재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3 및 제173조 등에 따라,[32)] 일용근로자

31) 일반회계-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3137-300)(복지세정관리단)

32)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본문 생략)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

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및 기타소득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용역제공자의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월별 제출되고 있고,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별로 제출되고 있으며 2027년부터 제출주기가 월별 제출로 단축될 예정임.

[실시간 소득파악 대상별 소득자료의 제출주기 및 기한]

소득자	대상	소득자료명	제출주기 및 기한
일용 근로자	·근로 제공 시간·일수에 따라 대가를 받는 자로,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미만 고용된 자* * 지자체 일자리 사업, 시간제 근로자, 건설현장 근로자 등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상용 근로자	·3개월 미만 고용되었더라도 월정액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거나, 시급이나 일급으로 지급받더라도 동일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고용된 자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반기별 제출→ 월별 제출(’27 예정) (지급일이 속한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인적 용역 사업 소득자	·물적시설·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자로 보험설계사·학원강사·방문판매원 등(40개 업종)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월별 제출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인적 용역 기타 소득자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용역(강연료, 자문료 등)을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자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기타소득)	
용역 제공자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중 주로 최종소비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아 원천징수되지 않는 9개 업종* 종사자 * 골프장 캐디,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가사도우미, 물품운반, 중고자동차판매원, 목욕관리사,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골프강사, 헬스트레이너, 요가·필라테스 강사, 체력훈련가 등)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월별 제출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자료: 국세청

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제173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용역제공자”라 한다)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국세청은 법률 시행시기 유예 등으로 인해 집행할 수 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불용을 원칙으로 하고, 예산이 당초 목적과 달리 활용되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소득세법」의 실시간 소득 파악 관련 근거 규정은 여러 차례 개정되어오고 있음. 2021년 7월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단축되고, 2021년 11월 용역제공자의 과세자료 제출주기가 단축되었으며, 2024년 1월 기타소득자의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단축되었음.

다만 상용근로소득자의 월별 제출 관련 근거규정은 2022년 12월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당초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시행시기가 2023년 말과 2025년 말 두 차례 유예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임.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추진 경과]

- (2020. 11.) 소득파악 TF(전담조직 최초 출범*)
* (배경) 코로나19로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어려움과 사회안전망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이에 소득정보 연계 등 고용보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출범
(출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관계부처 회의(2020.10.)에서 기재부의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TF와 함께 국세청 소득파악TF 발표
- (2020. 12.)「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발표
* 일정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에 대해 소득정보 기반으로 보편적 고용안전망 제공
- (2021. 2.)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법안 통과(2021.7. 시행)
- (2021. 3.) 임시조직으로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
- (2021. 6.) 용역제공자의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법안 통과(2021.11월 시행)
- (2022. 2.) 정식(한시)조직으로 소득자료관리단 출범
- (2022. 12.) 복지세정관리단으로 이관, 소득자료관리과로 명칭 변경
- (2022. 12.) 상용근로·기타소득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법안 통과(2024.1월 시행)
- (2023. 12.) 상용근로소득 월별제출 시행 유예 법안 통과(2026.1월 시행)
- (2025. 12.) 상용근로소득 월별제출 시행 재유예 법안 통과(2027.1월 시행)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2025년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운영 사업의 제도 홍보비 등 운영비를 18억 9,700만원 편성하였으나, 연말 상용 근로소득자의 제출주기 단축이 유예됨에 따라 실제로는 3억 9,700만원만 집행하였음. 법률 시행시기 조정 등으로 인해 당초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예산을 불용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관련 예산을 불용시키지 않고 나머지 15억원을 타 사업의 재원으로 이용하여 집행하였음.

[2025년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사업 이·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이용 (2025.12.16.)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3137-300)	210-01	1,500	인건비 (7101-100)	110-01	인건비 보수 부족에 따른 승인 이용

자료: 국세청

동 사업은 2024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의과정에서도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사업의 시행시기 유예에도 불구하고 관련예산의 이용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이미 지적된 바 있음.

2024년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사업 예산을 불용시키지 않고 16억 1,800만원을 타 사업의 재원으로 이용 집행하였는데, 이에 예산편성 당시의 목적대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재정법」이 규정하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따라 불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이미 제시된 바 있음.[33)]

[2024년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사업 이·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이용 (2024.4.29.)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3137-300)	210-01	429	압류재산공매 (2232-301)	210-02	2024.4.29. 압류재산공매 대위등기비 예산 부족에 따른 이용
이용 (2024.9.20.)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3137-300)	210-01	1,114	조사활동지원 (2131-302)	310-03	탈세제보 신고포상금 예산 부족에 따른 이용
이용 (2024.12.10.)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3137-300)	210-01	75	대전청 기본경비 (7124-252)	210-02	지방청 및 소속기관 공공요금 부족에 따른 이용

자료: 국세청

33)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부처별 1권”, 2025.8.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사업이 편성된 2022년 이후 편성 및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3~2025년 본예산 대비 집행률이 50%를 하회하여 사업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2023년을 제외한 연도마다 불용이 예상되는 일반수용비를 다른 사업에 이용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음.

[2022~2025년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실집행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2	9,640	9,332	-	△3,103	6,229	5,623	60.3	90.3	-	606
2023	8,213	8,213	-	-	8,213	3,645	44.4	44.4	-	4,568
2024	3,390	3,390	-	△1,618	1,772	1,659	48.9	93.6	-	113
2025	2,560	2,560	-	△1,500	1,060	1,047	40.9	98.8	-	13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휴직·퇴직 등에 따른 결원율 예측이 어려웠고 2024년 확정된 「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안」이 2025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인건비 부족이 발생함에 따라 다른 사업의 불용 예산을 부득이하게 이용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편성된 예산이 당초 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이·전용을 통해 타 사업에 활용되는 일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세청은 동 사업에 대해 국회에서 심사하여 확정한 대로 집행하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

6. 엔티스 고도화 사업: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ISP 사업의 전용을 통한 신규 추진 부적정

가. 개 요

‘엔티스 고도화’ 사업은 국세행정 AI 전환 및 세무플랫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5억 2,000만원 중 4억 3,900만원이 집행(집행률 84.4%)되고, 8,100만원이 불용되었음.[34)]

[2025년도 엔티스 고도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엔티스 전산시스템 운영(정보화)	45,412	45,412	-	200	45,612	45,316	-	296	37,914
엔티스 고도화	-	-	-	520	520	439	-	81	-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5년도 예산의 엔티스 전산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에는 ‘엔티스 고도화’ 내역사업이 편성되지 않았으나, 국세청은 2025년 5월 동 사업 내 ‘엔티스 운영 및 유지관리’ 내역사업의 관리용역비 3억 2,000만원을 전용(비목변경)하고 국세행정지원 시스템 운영(7133-500) 사업의 공공요금 2억원을 전용하여 마련한 재원 5억 2,000만원을 바탕으로 앤티스 고도화 내역사업을 추진하였음.

엔티스 고도화 사업은 ‘국세행정 AI 전환 및 세무플랫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를 수립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5억 2,000만원 중 4억 3,900만원이 집행되었음. 구체적으로는 ① 국세행정의 AI 전환을 위한 국세 AI 인프라 구축 방안 수립, ② AI·빅데이터 혁신과제 발굴 및 구체화, ③ AI 전환 뒷받침 위한 조직·전문인력 확충 및 AI 인프라 보안관리 대책 마련, ④ AI 전환 기반 조성을 위한 데이터 연계 체계 마련, ⑤ AI 인프라 도입 등에 따른 엔티스 시스템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임.

34) 일반회계-엔티스 전산시스템 운영(정보화)(5431-301)(정보화관리관실)

[2025년도 엔티스 고도화 사업 이·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5.22)	국세행정지원 시스템 운영 (7133-500)	공공요금 [210-02]	△200	엔티스 전산시스템 운영(7133-501)	일반연구비 [260-01]	세무플랫폼 대응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위한 예산 자체 전용
전용 (2025.5.22)	엔티스 전산시스템 운영(7133-501)	관리용역비 [210-15]	△320	엔티스 전산시스템 운영(7133-501)	일반연구비 [260-01]	

자료: 국세청

[국세행정 AI 전환 및 세무플랫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개요]

○ 사업 개요
- (사업명) 국세행정 AI 전환 및 세무플랫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사업기간) 계약일 ~ 2025. 12. 31.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예산현액 5억 2,000만원 / 계약액 4억 3,500만원(조달수수료 400만원 제외)

○ 사업 내용
① 국세행정의 AI 전환을 위한 국세 AI 인프라 구축 방안 수립
- 국세청 AI·빅데이터 혁신과제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GPU 기반의 AI 시스템과 최신 생성형 AI 모델을 도입하고 최적의 학습방안 제시

② AI·빅데이터 혁신과제 발굴 및 구체화
- 국세행정의 AI 전환을 통해 납세서비스 향상, 공정과세 구현, 국세행정 생산성 제고 등 세정업무 전 분야에 걸쳐 근본적 차원의 혁신 방안 수립

③ AI 전환 뒷받침 위한 조직·전문인력 확충 및 AI 인프라 보안관리 대책 마련
- 국세청에 적합한 AI 추진 전담 조직과 전문인력 확충 방안 제시
- AI의 책임성, 투명성, 안정성, 차별 방지 등을 확보하기 위한 「AI 활용 및 보안 가이드라인」 수립 및 설명 가능한 AI(Explainable AI, XAI) 구현 방안 마련

④ AI 전환 기반 조성을 위한 데이터 연계 체계 마련*
- 홈택스 스크래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Open API 기반의 데이터 연계 체계 수립 및 이용 수수료 산정·부과·징수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
*민간투자형 SW사업 추진에 대한 적격성(사업타당성, 재정적격성) 검토 및 계획 수립

⑤ AI 인프라 도입 등에 따른 엔티스 시스템 고도화 방안 마련
- AI 인프라 도입, Open API 및 이용 수수료 부과·징수 시스템 개발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엔티스 시스템 고도화 방안 제시

자료: 국세청

나. 검토의견

국세청은 당초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타 사업 및 비목 예산의 전용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여 신규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였는데, 이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우회하는 것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의 '엔티스 전산시스템 운영(정보화)' 세부사업에는 엔티스 고도화 사업이 포함되지 않았고 국회 심사과정에서 엔티스 고도화 사업에 대한 증액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세청은 '국세행정 AI전환 및 세무플랫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ISP'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용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였음.

국세청은 2025년 5월 '국세행정지원 시스템 운영' 사업의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과 '엔티스 전산시스템 운영' 사업의 관리용역비(210-15목)를 이 사업을 위해 일반연구비(260-01목)으로 전용하였음.

[이·전용 등 세부내역]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5.22)	국세행정지원 시스템 운영 (7133-500)	공공요금 [210-02]	△200	엔티스 전산시스템 운영(7133-501)	일반연구비 [260-01]	세무플랫폼 대응 정보화전략계획 (ISP) 수립을 위한 예산 전용
전용 (2025.5.22)	엔티스 전산시스템 운영(7133-501)	관리용역비 [210-15]	△320	엔티스 전산시스템 운영(7133-501)	일반연구비 [260-01]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2025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세무플랫폼 대응 정보화전략계획과 관련한 증액 의견이 있었고 국회 심사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전용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일부 증액의견이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국회 확정 예산에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신규 사업을 부처가 전용을 통해 추진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및 전용 관련 규정과 상이한 측면이 있음. 「국가재정법」에서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임.[35)]

또한「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역시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등 목적 외 사용을 유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청은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35)「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46조(예산의 전용)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기　타】

7.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가. 개　요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국세청에 대해 시정요구 20건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주의 3건·제도개선 17건이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계
결산	-	-	-	3	17	20
예비비	-	-	-	-	-	-
합계	-	-	-	3	17	20

국세청은 시정요구사항 20건에 대해 14건을 조치완료(조치율 70%)하고 6건을 조치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20	14	70	6
예비비	-	-	-	-
합계	20	14	70	6

국회가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면서 채택한 부대의견 중 국세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관련 부대의견은 아래와 같음.

[국세청 관련 2025년도 예산안 등 부대의견]

구분	부대의견
2025년도 본예산	(19) 국세청은 국토교통부 및 한국부동산원과 협의하여 비주거 부동산 기준시가 고시 업무의 조속한 이관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한다.

나. 검토의견

2025년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국세청이 대형집단상가 등 기준시가 고시 사업을 조속히 이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는 부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는 여전히 공전되고 있으며 사업이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국세청의 '대형집단상가 등 기준시가 고시' 사업은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및 일반건물 가격을 고시하여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기준가액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8억 5,400만원 중 28억 5,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1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년도 대형집단상가 등 기준시가 고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대형집단상가 등 기준시가 고시	2,886	2,886	-	△32	2,854	2,853	-	1	3,07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국세청이 고시하는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중심 상권의 상업용 건물 등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평가되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세청은 2005년부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구분소유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거래시세를 조사하여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한 기준시가를 매년 고시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국세청은 상속세,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가액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① 전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②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3,000㎡ 또는 100개호 이상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에 대한 거래 시세를 조사하여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있음.

그러나 2016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일괄하여 공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국세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불필요한 행정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국토교통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표준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조사·평가·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으나,[36]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일괄하여 공시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별도로 조사하여 고시하고 있는 상황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공시지가 등 각종 부동산 가격을 일괄하여 공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2016년 마련되었음에도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해 국세청에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해당 고시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이관하라는 것임.

이러한 지적에 따라 2025년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는 '국세청은 국토교통부 및 한국부동산원과 협의하여 비주거 부동산 기준시가 고시 업무의 조속한 이관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한다.' 라는 부대의견이 채택된 바 있음.

---

36)「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 평가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 ·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 · 평가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공시 등) 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 ·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 · 군 · 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 ·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표준주택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표준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 · 산정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 · 공시 등) 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시 · 군 · 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 ·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 · 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 ·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시업무 이관을 위한 국세청의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내역]

연번	협의내용	일자
1	공시제도 도입시기 및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조회 요청	2023.05.
2	공시제도 도입시기 및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조회 요청	2024.05.
3	국토부의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도입 시기 및 진행 현황 협의	2025.02.
4	공시가격 일원화 관련 진행 상황 확인 및 협의 요청	2025.07.
5	기준시가 고시사업 사업이관 업무협의	2026.04.

자료: 국세청

그러나 국세청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기준시가 가격 공시 주체 일원화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나, 국세청과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는 공전하는 상황이고 2026년에도 여전히 기준시가 공시업무 이관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세청에서 수행하고 있음.[37)]

[2021~2026년 국세청의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기준시가 가격 공시]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고시건수	1,871,970	2,162,068	2,289,626	2,406,504	2,490,451	2,610,739
예산액	2,469	2,886	2,886	2,886	2,886	2,982
운영방식	일반경쟁 → 수의 한국부동산원	일반경쟁 → 수의 한국부동산원	일반경쟁 → 수의 한국부동산원	일반경쟁 → 수의 한국부동산원	일반경쟁 → 수의 한국부동산원	일반경쟁 → 수의 한국부동산원

자료: 국세청

2025년도 본예산 심사 시의 부대의견에도 불구하고 2026년 6월 현재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는 공전하고 사업이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실질적인 사업이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37) 국토교통부의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표준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되어 있고, 국세청의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기준시가 가격공시 사업은 연례적으로 일반경쟁 후 단독유찰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에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어 사실상의 기준시가 산정 및 공시업무는 모두 한국부동산원에서 수행되고 있음.

관 세 청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417억 1,500만원(△41.6%)이 적은 585억 7,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2억 3,100만원(56.9%)이 증가됨.[1)]

[2025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120,072	120,072	37,345	△82,727	100,291	100,291	58,576	△41,715	21,231
총수입	120,072	120,072	37,345	△82,727	100,291	100,291	58,576	△41,715	21,231

2025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70억 1,600만원(△1.1%)이 적은 6,512억 3,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0억 1,500만원(△1.2%)이 감소됨.

문의: 02-6788-5679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5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662,375	662,375	659,249	△3,126	658,250	658,250	651,234	△7,016	△8,015
총지출	662,375	662,375	659,249	△3,126	658,250	658,250	651,234	△7,016	△8,015

나.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002억 9,100만원으로, 8,225억 2,3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585억 7,600만원이 수납(수납률 7.1%)되고 7,592억 5,1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46억 9,7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100,291	100,291	-	100,291	822,523	58,576	759,251	4,697
합 계	100,291	100,291	-	100,291	822,523	58,576	759,251	4,697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6,586억 9,100만원으로, 이 중 6,512억 3,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9%)되고 18억 5,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56억 3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658,250	658,250	441	7,615 △7,615	-	658,691	651,234	1,854	5,603
합 계	658,250	658,250	441	7,615 △7,615	-	658,691	651,234	1,854	5,603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5회계연도 말 기준 관세청 자산은 전년 대비 191억 4,000만원이 감소한 1조 5,432억 100만원으로, 이는 금융자산이 127억 6,700만원 감소하고, 기타자산이 124억 9,700만원 감소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60억 7,200만원 증가한 1,499억 3,300만원으로, 이는 충당부채 129억 900만원 증가, 차입부채 68억 3,100만원 감소에 기인하였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252억 1,200만원이 감소한 1조 3,932억 6,800만원임.

2025회계연도 관세청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1,822억 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4,3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7,749억 1,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7억 600만원 감소하였음.

[2025회계연도 관세청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 (A)	2024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1,543,201	1,562,341	△19,140	△1.2
		금융자산	22,609	35,376	△12,767	△36.1
		유·무형자산	1,510,451	1,504,326	6,125	0.4
		기타자산	10,141	22,639	△12,498	△55.2
	부 채		149,933	143,861	6,072	4.2
		차입부채	93,839	100,670	△6,831	△6.8
		충당부채	55,893	42,984	12,909	30.0
		기타부채	201	208	△7	△3.4
	순자산		1,393,268	1,418,480	△25,212	△1.8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182,248	180,505	1,743	1.0
	재정운영순원가		774,911	787,617	△12,706	△1.6
	재정운영결과		774,911	787,617	△12,706	△1.6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2025회계연도 관세청 결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간 거래는 없음.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관세청은 ① 수출입 통관 및 물류 촉진, ② 국가 재정수입 확보, ③ 대외 경제질서 확립, ④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보호 등을 총 53개의 세부사업으로 수행하였음.

2025년도 관세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관세청은 산하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 등에 대해 행정목적의 사용을 이유로 건물 대여료를 감면하고 있으나, 감면 대상 적용 및 감면 수준이 일관되지 않아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확대와 통관과정에서의 적극적인 개장검사의 시행 등을 통해 통관 과정에서 위해물품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셋째, 관세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한 수출입화물 검사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해연도 예산 및 신청건수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지원율을 수시로 변경하여 예측가능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지원율을 보수적으로 산정하고 장기간 유지하여 수출입화물 검사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넷째, 부산신항 컨테이너 검색기는 주요 부품의 다수 고장으로 인한 수급 차질과 인허가 문제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되었으므로, 관세청은 향후 노후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 사업 시 유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입〉

1. 건물대여료: 건물대여료 감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설정 필요

가. 개 요

‘건물대여료’는 관세청이 소유한 건물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민간에 임대함에 따라 민간 임대료 등이 수납되는 비목으로, 징수결정액 3억 8,600만원이 전액 수납(수납률 100.0%)되었음.[2][3]

[2025년도 건물대여료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건물대여료	350	350	386	386	-	-	100.0	441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관세청은 세관이 보유한 건물에 대해 한국원산지정보원,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관세사회,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등과의 건물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공용재산의 사용료를 건물대여료 비목으로 수납하고 있음.

---

2) 일반회계-건물대여료(51-512)(심사국)

3)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관세청은 산하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 등에 대해 행정목적의 사용을 이유로 건물 대여료를 감면하고 있으나, 감면 대상 적용 및 감면 수준이 일관되지 않아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관세청은 본부세관 건물 등의 일부를 공공기관인 한국원산지정보원과 공직 유관단체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관세사회 등에게 「국유재산법」에 따라 공용재산으로서 임대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수납하고 있음.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는 공용재산에 대한 사용료율을 원칙적으로 5% 이상으로 하되,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2.5%로 사용료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어 적용할 수 있도록 함.[4)]

[2025년 기준 관세청 보유 건물 및 건물대여료 징수현황]

(단위: 천원, %)

연번	소관 부서	소재지	면적(㎡)	공시지가(천원/㎡)	사용료율	건물 사용료	임차인	계약방식	2024년 징수액	2025 징수액(환급액)	2026 징수 예상액
1	서울세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32.53	26,820	5	20,403	서울지방관세사회	수의계약	19,345	20,403	21,407
2	*서울세관*		*108.59*	*26,820*	*2.5*	*32,285*	*한국원산지정보원*	*수의계약*	*31,940*	*32,285*	*34,050*
3	*서울세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52.92*	*1,442*	*2.5*	*5,465*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수의계약*	*5,523*	*5,465*	*5,494*
4	*성남세관*	*경기도 성남시 야탑동*	*660.92*	*4,132*	*2.5*	*104,532*	*한국원산지정보원*	*수의계약*	*96,281*	*104,532*	*109,759*
5	*성남세관*		*223/107*	*4,132*	*2.5*	*6,779*	*한국원산지정보원*	*수의계약*	*5,976*	*6,779*	*6,000*
6	인천공항세관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70.45	601.6	5	1,651	인천공항관세사회	수의계약	1,997	1,651	1,610
7	인천공항세관		14.51	601.6	5	414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수의계약	417	414	412
8	인천공항세관		970.13	601.6	5	38,272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수의계약	38,009	38,272	38,479

4) 「국유재산법 시행령」

(단위: 천원, %)

연번	소관 부서	소재지	면적(㎡)	공시지가(천원/㎡)	사용료율	건물 사용료	임차인	계약 방식	2024년 징수액	2025 징수액 (환급액)	2026 징수 예상액
9	인천세관	인천 중구 항동7가	30.24	464	5	3,421	한국관세사회	수의 계약	3,240	3,421	3,462
10	인천세관	인천 연수구 송도동	240.52	685	4	17,508	디에스푸드원	일반 경쟁	-	17,508 (△4,205)	18,000
11	*인천세관*		*65.29*	*685*	*2.5*	*2,983*	*국제우편 물류센터*	*수의 계약*	-	*2,983*	*3,105*
12	인천세관		75.23	685	5	7,001	(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	수의 계약	-	7,001	7,500
13	부산세관	부산시 중구 중앙동4가	55.46	3,719	5	2,223	미성세탁소	수의 계약	2,252	2,223	2,124
14	부산세관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8	808.5	5	884	한국관세사회 부산지부	수의 계약	884	-	-
15	평택세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21.06	549.6	5	1,078	(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	수의 계약	1,770	1,078	1,063
16	군산세관	군산시 해망로	299.32	401.6	5	4,605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의 계약	4,598	4,605	4,610
17	*관세청*	*대전 서구 둔산동 (임차숙소)*	*4,559*	*977.1*	*2*	*89,095*	*직원*	*대부 (수의계약)*	*136,129*	*89,095*	*89,877*
18	*관세청*	*대전 서구 둔산동 (합숙소)*	*1,622*	*3,709*	*2*	*52,632*	*직원*	*대부 (수의계약)*	*83,390*	*52,632*	*55,095*

주) 기울임(이탤릭체)은 공용재산의 사용료율을 절반 이상 감면한 임차계약을 표현한 것임
자료: 관세청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제6호 단서의 경우에는 총괄청이 해당 요율이 적용되는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그러나 관세청은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에 대해서 일부 청사에서는 사용료 감면을 적용하나 다른 청사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등 일관된 기준 없이 적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관세청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소재한 서울본부세관 건물과 경기도 성남시 야탑동에 소재한 성남세관 건물 중 일부를 한국원산지정보원에 수의계약 형태로 임차하면서 행정목적의 수행을 이유로 사용료율을 절반 수준인 2.5%를 부과하고 있음.

한편 공직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 대해서는 서울본부세관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료율을 2.5%로 부과하되 인천공항세관 건물에 대해서는 5%를 적용하고 있음. 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 마찬가지로 공직 유관단체에 해당하는 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등에 대해서는 사용료율을 감면하지 않고 5%를 적용하고 있음.

또한 세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와 관세 관련 연구 등을 수행하는 (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 대해서는 사무소별로 사용료 감면 여부가 다른 상황이고, 공직 유관단체에 대해서도 사용료 감면 여부가 상이하여 사용료 감면의 합리성이 모호한 측면이 있음.[5)]

따라서 관세청은 산하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 등에 대해 행정목적의 사용을 이유로 건물대여료를 감면하는 대상 및 감면 수준이 일관적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6)]

5)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의 경우 지식재산권 신고업무 민간위탁 사업,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검사보조 민간전문가 위탁용역,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직원 교육 등 관세청의 연구용역 및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 달리 5%의 사용료율을 적용받고 있음.

6) 참고로 관세청은 각 세관 및 임차인별로 상이한 공용재산 사용료율을 부과하는 문제를 인지하고 향후 일관된 요율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겠다는 계획임.

〈세 출〉

2. 특송화물 통관지원 사업: 안전성 검사 및 특송화물의 개장검사 확대 등을 통한 통관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특송화물 통관지원’ 사업은 특송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함과 동시에 특송통관장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장비를 통해 사회안전 위해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64억 6,200만원 중 64억 4,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7%)되고, 1,900만원이 불용되었음.[7]

[2025년도 특송화물 통관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특송화물 통관지원	6,582	6,582	-	△120	6,462	6,443	-	19	12,622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특송화물(특송물품)이란, 글로벌 특송사(DHL·FedEx·UPS 등)나 구매대행·배송대행업체 등 특송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으로, 이른바 해외직구 물품이나 수출입 화물을 의미함.[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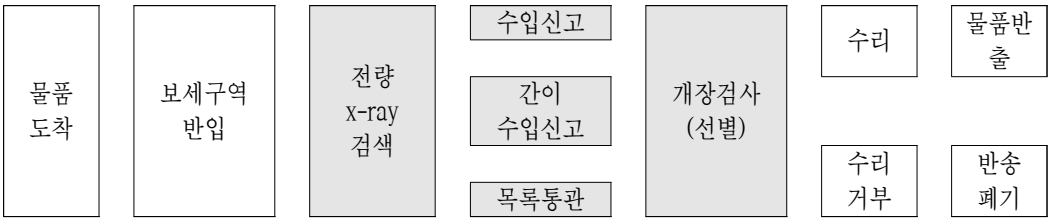
관세청의 특송화물 중 위해물품에 대한 대응은 사전 구매분석(안전성 검사)와 통관단계에서의 X-ray 검색, 수입·목록통관의 적정여부 분석, 개장검사 등을 통해 이루어짐. 또한 관련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서 위해물품으로 확인된 정보를 사전에 공유받아 검사 선별에 활용하고 있으며, 해외직구 식품 등에 대

7) 일반회계-특송화물 통관지원(1132-302)(통관국)

8) 특송화물의 수입통관 방식은 물품가격 기준으로 목록통관, 간이수입신고 및 일반수입신고로 이루어짐. ①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 등에 대해서는 특송업체가 제출하는 ‘통관목록’ 만으로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고, ② (간이수입신고)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초과 2,000달러 이하 물품은 절차가 간소화된 간이수입신고를 하고 신고정보가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이 허용되며, ③ 미화 2,000달러 초과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함.

해서는 통관단계에서 소관 부처 전문가와 합동으로 검사하고 있음.

[특송화물 통관 절차]



주 1) 관세청은 통관 단계에서 위해물품을 적발하기 위해 특송물품·우편물에 대해 전량 x-ray 검색을 시행하고, x-ray 검색 또는 통관심사, 우범물품 선별기준 등을 통해 추가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해 개장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2) 음영을 칠한 부분은 통관단계에서의 위해물품 검사절차를 의미함
자료: 관세청

나. 검토의견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확대, 통관과정에서의 적극적인 개장검사 시행 등을 통해 통관 과정에서 위해물품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관세청은 해외직구 및 국내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직접 구매하여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성검사 적발률이 18.7%에 달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구매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관세청은「관세법」제246조의3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 등이 개별 법령에서 정한 성분·품질 등 수출입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고 있음.[9] 해외 판매 중이거나 국내 유통 중인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성분 분석을 실시하고,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의 정보를 분석하여 위험정보를 수집하고 검사 선별에 활용함.

9)「관세법」
제246조의3(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① 관세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세관장으로 하여금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물품의 성분 · 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이하 “안전성 검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은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세관장과 공동으로 안전성 검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2024년부터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도 구매 및 성분 분석을 실시하고 있는데, 2024년에는 해외직구 물품 구매검사 1,401건 중 198건이 적발(적발률 14.1%)되고, 2025년에는 411건 중 77건이 적발(적발률 18.7%)된 것으로 나타나 국내 유통 물품에 비해 높은 수준의 적발률을 보임.

[최근 5년간 연도별 구매검사 분석 및 적발 현황]

(단위: 백만원, 건,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구매검사	예산액	15	20	20	20	24
	집행액	15	20	20	20	24
분석건수	해외직구	-	-	-	1,401	411
	국내유통	386	396	128	60	102
	소계	386	396	128	1,461	513
적발건수	해외직구	-	-	-	198	77
	국내유통	29	26	-	7	4
	소계	29	26	-	205	81
적발률	해외직구	-	-	-	14.1	18.7
	국내유통	7.5	6.6	-	11.7	3.9
	소계	7.5	6.6	-	14.0	15.8

주) 수출입통관 촉진 및 안전관리(1131-301) 사업의 '수출입물품 안전성 위반 위범업체 및 물품조사' 내 내역사업에 따른 구매검사 현황을 도표로 정리한 것임

자료: 관세청

한편 특송물품의 전체 통관건수 대비 개장검사율과 목록통관의 적발률이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특송물품의 개장검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관세청은 특송물품에 대해 x-ray 검색, 통관심사 및 우범물품 선별기준을 통해 검사 지정된 물품에 대해 개장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전자상거래 물품의 증가속도에 비해 특송물품 개장검사가 활발히 수행되지 못하여 개장검사율이 2020년 3.7%에서 2025년 1.6%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특송물품 개장검사 실적]

(단위: 천건,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5.
특송물품 개장검사 건수(A)	2,336	2,072	1,923	2,132	2,551	3,010	1,104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건수(B)	63,578	88,380	96,120	131,443	181,184	185,937	70,042
개장검사율 (A/B)	3.7	2.3	2.0	1.6	1.4	1.6	1.6

자료: 관세청

이와 더불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 소액 자가사용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없이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통관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목록통관을 통한 위해물품 반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최근 5년간 연도별 특송화물 목록통관 적발현황]

(단위: 건, %)

연도	세관장 확인대상[1]	지재권 침해	사회안전[2] 위해물품	기 타[3]	적발건수 합계(A)	목록통관 건수(B)	적발률 (A/B)
2021	56,408	34,624	4,483	144,658	240,173	64,816,432	0.37
2022	80,989	62,326	8,011	142,213	293,539	70,151,572	0.42
2023	90,563	67,749	7,557	94,182	260,051	102,540,525	0.25
2024	174,659	84,625	9,388	170,878	439,550	145,770,512	0.30
2025	138,099	48,634	15,323	218,400	420,456	147,569,279	0.28
2026.5.	68,622	16,705	1,738	108,647	195,712	52,674,873	0.37

주 1) 세관장 확인대상은 검역, 위해 식·의약품, 수입요건 미비 등을 의미함
2) 사회안전 위해물품은 모의총포·도검류 등을 의미함
3) 기타 위해물품은 품명·수하인 상이, 저가신고, 수량과다 등으로 특송화물 목록통관 검사결과 적발된 것을 의미함

자료: 관세청

따라서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확대, 통관과정에서의 적극적인 개장검사의 시행 등을 통해 통관과정에서 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3. 수출입화물 검사지원 사업: 세관검사비용 지원율의 잦은 변경 지양 필요

가. 개 요

‘수출입화물 검사지원’ 사업은 세관검사로 인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국가가 화주가 부담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67억 500만원 중 66억 9,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8%)되고 1,300만원이 불용되었음.[10]

[2025년도 수출입화물 검사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수출입화물 검사지원	6,705	6,705	-	-	6,705	6,692	-	13	5,495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수출입통관을 위해 소요되는 일반적인 비용은 원칙적으로 화주가 부담해야 하나, 「관세법」에서는 관세행정의 목적상 세관 검사로 인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예외적으로 화주가 부담하는 비용을 국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11]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화물 검사결과,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검사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2019년 말 관세법이 개정되어 2020년 7월부터 시행 중으로, 수입화물의 경우 관리대상화물과 부두직통관 검사, 수출물품의 경우 적재지 검사와 신고지 검사에 대해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 상·하차료 등을 지원하는 것임.

---

10) 일반회계-수출입화물 검사지원(1131-304)(통관국)

11) 「관세법」
제173조(세관검사장) ②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 · 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항에서 “검사비용”이라 한다)은 화주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해당 화물에 대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대외무역법」 등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수출입화물 검사 지원 사업 개요]

- (대상업체)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검사유형) • 수입: ① 관리대상화물 검사, ② 부두직통관 검사 • 수출: ③ 적재지 검사, ④ 신고지 검사(중고차, 생활 및 플라스틱 폐기물) - (대상물품) 컨테이너 화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은 물품 중, 검사 결과 수출입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그 외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 (지원항목)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 상·하차료, 컨테이너 내장물품 적출·입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자료: 관세청

[수출입화물 검사 지원 사업 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선별·검사 실시	세관	관리대상·부두직통관수입화물, 적재지 · 신고지검사 물품에 대한 선별, 검사 실시
⇩		
② 검사비용 신청	화주 · 관세사	민간 위탁업체에 검사비용 신청
⇩		
③ 신청내용 심사	위탁업체	검사비용 신청내용 확인 및 지급결정, 지급액 확정 및 통보
⇩		
④ 심사완료건 검증	구로지원센터	위탁업체의 지급기준 적용, 지급액 산정 적정성 등 심사결과에 대한 검증 실시
⇩		
⑤ 검사비용 지급	세관	검사비용 지급

자료: 관세청

나. 검토의견

관세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한 수출입화물 검사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해연도 예산 및 신청건수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지원율을 수시로 변경하여 예측가능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지원율을 보수적으로 산정하고 장기간 유지하여 수출입화물 검사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수출입화물 검사 지원 사업은「관세법」제173조제3항에서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세청은 예산 상황 및 신청·지원실적 등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율을 수시로 변경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 7월에는 중소기업 화주를 대상으로 관리대상화물·부두직통관·수출적재지 검사에 대해 검사비용을 100% 지원하였음. 사업 초기에 지원실적이 저조하자 2021년에는 중견기업 화주에 대해서도 검사비용을 100% 지원하고, 수출신고지 검사에 대해서도 검사비용을 지원하였음.

2023년에는 지원예산 조기 소진 우려로 인해 9월부터 중견·중소기업 화주에 대한 검사비용 지원율을 100%에서 60%로 낮추었음.

2024년 3월에는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 및 수출입 기업의 자발적 법규준수 의식을 높인다는 이유로 중견기업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였고 5월에는 중소기업의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이유로 중소기업 화주에 대한 지원율을 60%에서 100%로 상향하였으며, 11월에는 중견기업 화주에 대해 다시 60%의 지원혜택을 부여하였음.

2025년 10월에는 연중 예산의 조기소진 등을 이유로 중견기업의 검사비용 지원율을 60%에서 50%으로, 중소기업의 지원율을 100%에서 80%로 다시 하향 조정하였음.

[수출입화물 검사 지원 사업 대상 및 지원율 변화 내역]

(단위: %)

구분	20.7. ~ 20.12.		21.1. ~ 21.10.		21.11. ~ 23.8.		23.9. ~ 24.2.		24.3. ~ 24.4.		24.5. ~ 24.10.		24.11. ~ 25.9.		25.10. ~ 현재	
	지원대상	지원율	지원대상	지원율	지원대상	지원율	지원대상	지원율	지원대상	지원율	지원대상	지원율	지원대상	지원율	지원대상	지원율
관리대상화물검사	-	-	중견	100	중견	100	중견	60	-	-	-	-	중견	60	중견	50
	중소	100	중소	100	중소	100	중소	60	중소	60	중소	100	중소	100	중소	80
부두직통관검사	-	-	중견	100	중견	100	중견	60	-	-	-	-	중견	60	중견	50
	중소	100	중소	100	중소	100	중소	60	중소	60	중소	100	중소	100	중소	80
수출적재지검사	-	-	중견	100	중견	100	중견	60	-	-	-	-	중견	60	중견	50
	중소	100	중소	100	중소	100	중소	60	중소	60	중소	100	중소	100	중소	80
수출신고지검사	-	-	-	-	중견	100	중견	60	-	-	-	-	중견	60	중견	50
	-	-	-	-	중소	100	중소	60	중소	60	중소	100	중소	100	중소	80

자료: 관세청

이처럼 관세청은 당해연도 예산 상황 및 신청·지원실적 등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율을 수시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화주의 예측가능성을 낮추고 수출입화물 검사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관세법」에 따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업의 취지는 수출입화물의 통관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화주가 부담하여야 하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가 이를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세 화주의 비용경감, 공익성 확보 및 민원해소 등을 위해 시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임.

이를 고려할 때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검사비용 지원은 배정된 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산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12)]

12) 한편 관세청은 수출입화물 검사 결과 조사의뢰·통고처분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서는 검사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26년 2월부터 과거 적발이력에 따라 검사비용 차등지급(50%)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는데, 이와 같이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을 통해 화주 및 통관업체가 스스로 위해물품이 수출·입되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도록 환류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 사업: 부산신항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 지연

가. 개 요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 사업은 원활한 통관을 지원하고 마약류·위해물품 등의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컨테이너 화물을 X-Ray 방식으로 검색할 수 있는 장비(이하 ‘컨테이너 검색기’라고 함)를 도입·교체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54억 8,600만원 중 50억 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1.2%)되고, 4억 2,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400만원이 불용되었음.[13)]

[2025년도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통관감시장비 현대화	15,666	15,666	152	△99	15,719	14,780	429	510	19,287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	5,446	5,446	40	-	5,486	5,003	429	24	4,702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사업은 노후 컨테이너 검색기를 철거하고 신규 컨테이너 검색기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리스방식으로 대금이 지급됨에 따라 신규 컨테이너 검색기가 도입 완료되면 5년간 분기마다 리스사에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임.

2025년에는 부산신항 1센터 북측 노후 컨테이너검색기 재구축 사업을 완료하여 연말에 1회 리스료를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추진 중 장비 부품수급·인허가 절차 등의 지연이 발생하여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임차료를 이월하였음.

13) 일반회계-통관감시장비 현대화(1443-300)(정보데이터정책관)

[2025년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 사업 집행내역]

ㅇ 컨테이너검색기 도입: (예산현액) 54억 8,600만원 → (집행) 50억 3,300만원

구분(단위: 백만원)	예산현액	집행	이월	불용
컨테이너검색기 임차료	4,973	4,550	405	18
컨테이너검색기 도입지원	163	139	24	-
컨테이너검색기 철거비용	350	344	-	6
합 계	5,486	5,033	429	24

ㅇ 불용액 및 이월액
- 부산신항 컨테이너검색기 구축 사업 지연에 따른 4억 2,900만원 이월
- 광양항 임차료 1,800만원, 공사비 500만원 등 2,300만원 불용

자료:관세청

나. 검토의견

부산신항 컨테이너 검색기는 주요 부품의 다수 고장으로 인한 수급 차질 및 인허가 문제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되었으므로, 관세청은 향후 노후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 사업 추진 시 유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부산신항 1센터 북측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 사업은 2006년 도입된 부산신항 1센터(북측) 컨테이너 검색기 노후화에 따라 최초 건물 부문은 리모델링하고 장비만 교체하는 방식의 재구축 사업으로, 사업 추진 중 장비 부품 수급 및 인허가 절차 등으로 인해 지연이 발생하였음.

[부산신항 1센터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사업 개요]

◦ (주요내용) 2006년 도입된 부산신항 1센터(북측) 컨테이너 검색기 노후화에 따른 최초 건물 부문은 리모델링하고 장비만 교체하는 방식의 재구축 사업
- 컨테이너 검색에 필요한 검색 장비(양방향 투과 및 후방산란 방식) 철거 및 교체, 기존 건물 대수선, 기존 사무실 리모델링 및 관련 폐기물 처리, 제반 부대설비의 도입 · 설치 및 건축물 안전영향평가(구조 안전 등) · 하자보증을 포함
- 운용 요원 및 유지관리 인력의 교육훈련, 제작자 소속 전문가를 장비 인수 후 최소 1년간 상주시켜 유지관리 및 기술을 이전하고, 납품일로부터 5년간 유지관리
- 컨테이너 트레일러 이동을 위한 진출입로 등 모든 면적은 안전성 평가 후 재시공하고, 울타리(출입문 포함), 석축, 배수구, 계근대 등 성능 개선 후 재활용 또는 교체
- 기존 방사선발생장치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방사화 측정 후 폐기처분 또는 보관 후 폐기 처분하여야 하며, 방사화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방사선 인허가를 진행하여야 함

◦ (계약금액 / 사업기간) 74.8억원 / 2024.3. ~ 2026.3.
* 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업자의 계속 이행 의사로 계약 연장(~2026.3.31.)

◦ (사업추진 특이사항) 사업추진 중 장비 부품수급·인허가 절차 등 지연 발생

자료:관세청

[부산신항 컨테이너 검색기 구축 사업 추진 절차]



자료: 관세청

먼저 컨테이너 검색기 중 부품 수급 문제에 대해 살펴보면, 가속기 주요 부품인 전자총의 고장으로 인해 부품 수급 후 중간검수를 진행하였고, 부품 수급으로 인해 계약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지체상금을 부과하였음.

전자총은 방사선 발생을 위한 에너지 가속 장치로, 제작사는 전자총 부품을 총 4개 보유하였으나, 1차 자체 테스트(2025.8.22.)에서 2개가 고장나고 2차 중간 검수(2025.8.28.)에 나머지 부품 2개 모두 고장이 발생하여, 제작사가 해외 제조사로부터 해당 부품을 재구매하여 조달(2025.10.26.)한 후 중간검수를 재이행한 바 있음.[14]

관세청은 당초 계약기간(2024.12.17.~2025.11.17.) 내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지체상금 발생을 통보하고, 사업자가 납기 연장을 신청하자 컨테이너 검색기 사업 계약기간을 지체상금 부과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2024.12.17.~2026.3.31.)하고, 사업 완료(2026.5.11.) 후 현재 가동 중으로, 7월 지체상금 9.6억원을 부과하였음.[15]

과거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사업에서도 이와 같이 부품 수급 등의 문제로 인해 사업 지연 및 해지가 다수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16][17] 향후 노후화된 컨테이너 검색기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한 주기적인 사업진행 상황 협의 등을 통해 부품 수급 등의 이유로 지연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14) ① 주계약자, 제작사의 해당부품 수급 방안 강구를 위한 각 업체 대표 소집 긴급회의 실시(2025.9.29.), ② 제작사의 해당부품 수급 및 향후 추진방향 협의(2025.10.31.), ③ 제작사 공장 현장 점검(2025.11.4) 및 현장 테스트 진행 중간검수 재이행

15) 지체상금은 당초 계약기간 완료 다음일(2025.11.18.)로부터 사업완료시점(2026.5.11.)까지 지체상금 일수(175일)를 계산하여 9.6억원을 부과함.

16) 2018년도 해상 특송화물 인프라 구축 사업의 경우 X-ray 검색기의 주요 기능이 제안요청서 등의 요건에 미달되어 계약을 최종 해지하였음.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부처별 1권」, 2019.10.

또한 부산 신항 컨테이너 검색기 인·허가 시 심의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4차례의 보완요구 후에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사용허가가 승인되는 등 인·허가 승인 과정에서도 지연이 발생하였음.

관세청은 인·허가 준비 시 통상 소요기간(30일)을 고려하였으나, 국내 최초 방식의 장비로 인해 심의기관의 보완 요구사항이 많았고,[18]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완사항에 대해 사업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장기간(약 100일) 소요되어 승인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함. 그리고 지속적인 보완요구 통보와 인·허가 대행업체 현장 방문 등 전문 인·허가 업체 추가 섭외 지시 등 조속한 대응을 독촉하여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입장임.

다만 컨테이너 검색기 계약 당시 혼합방식의 도입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준비 시 통상적인 소요기간을 상정하였는데, 기본계획 수립 시에 신규 방식 도입으로 인한 인·허가 절차의 지연을 감안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컨테이너 검색기 인·허가 진행내역]

	〈 진행 단계 〉	〈 단계별 진행 사항 〉
①	**최초 제출** **(주계약자 → 심의기관)** 2025.10.27.	■ (주계약자) 방사선원 허가 신청 최초 접수
②	**1차 보완 통보** **(주계약자 ← 심의기관)** 2025.11.11.	■ (심의기관) 방사선안전보고서, 방사선 안전 시뮬레이션(MCNP) 결과 등 전체 서류 ⇒ 보완 통보
③	**1차 보완 및 제출** **(주계약자 → 심의기관)** 2025.11.25.	■ (주계약자) 보완 사항에 대한 자료 재작성 및 제출
④	**2차 보완 통보** **(주계약자 ← 심의기관)** 2025.12.5.	■ (심의기관) 방사선 안전 시뮬레이션(MCNP) 결과 도출에 대한 기술적 근거 및 신뢰성(오차범위) ⇒ 보완 통보 ■ (관세청) 인·허가 대행업체 현장 방문(2025.12.17)
⑤	**2차 보완 및 제출** **(주계약자 → 심의기관)** 2025.12.19	■ (주계약자) 방사선 안전 시뮬레이션(MCNP) 재수행 및 방사선안전보고서 재작성 및 제출
⑥	**3차 보완 통보** **(주계약자 ← 심의기관)**	■ (심의기관) ①2차 보완 내용 ⇒ 재 보완 통보, ②NCRP(공인 방사선방호 기준) 결과로 대체 제출 가능 통보

18) 기존에는 투과형 단일 방식이었으나, 이번 컨테이너 검색기는 투과 방식과 후방산란형이 혼합된 방식으로서, 최초 방식인만큼 방사선 안전 시뮬레이션(MCNP) 결과 등의 추가보완이 지속적으로 요구된 바 있음.

	2025.12.24	■ (주계약자) 3차 보완 기한 연장 신청(~2026.1.26)
⑦	**3차 보완 제출 (주계약자 → 심의기관)** 2026.1.19	■ (주계약자) ①인허가 전문 사설업체 추가 계약, ②방사선 안전 시뮬레이션(MCNP) 및 공인 방사선방호 기준(NCRP) 결과 제출
⑧	**4차 보완 통보 (주계약자 ← 심의기관)** 2026.1.23	■ (심의기관) 방사선안전 시뮬레이션(MCNP) 및 방사선안전보고서 재검토 통보
⑨	**4차 보완 제출 (주계약자 → 심의기관)** 2026.1.26	■ (주계약자) 공인 방사선방호 기준(NCRP) 결과 재보완 후 제출
⑩	**사용 허가 승인 (주계약자 ← 심의기관)** 2026.2.9	■ (심의기관) 신규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사용 승인

자료: 관세청

관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컨테이너 검색기 12대 중 2대가 이미 내용연수를 도과하여 향후 노후 컨테이너 검색기 교체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상황이므로, 관세청은 향후 노후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 사업 추진 시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2026년 8월 현재 컨테이너 검색기 운영 현황]

세관	설치부두명(형식)	설치완료일	사용기간	비고
부산세관 (4대)	부산 감만(고정식)	2021. 5.	5년 4월	
	부산신항 남측부두(고정식)	2013. 10.	12년 10월	
	부산신항 북측부두(고정식)	2026. 4.	4월	
인천세관 (4대)	부산항 신선대(고정식)	2018. 5.	8년 4월	
	인천 남항(고정식)	2005. 8.	21년 1월	노후
	인천 신항(고정식)	2018. 5.	8년 4월	
평택세관 (2대)	인천 통합검사장(고정식)	2023. 12.	2년 8월	2식
	평택항 동부두(고정식)	2020. 3.	6년 6월	
광양세관	평택 PNCT(조립식)	2012. 6.	14년 2월	노후
군산세관	광양항(고정식)	2021. 12.	4년 8월	
	군산항(이동식)	2024. 12.	1년 9월	

주) 인천 남항 컨테이너 검색기는 폐기대상 장비이나 항만·선사 요청으로 운영 중으로 향후 운영량을 고려하여 폐쇄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고, 평택세관의 조립식 검색기는 평택 통합검사장 구축 시 교체할 예정임
자료: 관세청

【기　타】

5.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가. 개　요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관세청에 대해 시정요구 16건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시정 3건·제도개선 13건이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3	-	3	-	16
예비비	-	-	-	-	-	-	-
합계	-	-	3	-	3	-	16

관세청은 시정요구사항 16건에 대해 15건을 조치완료(조치율 93.8%)하고 1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16	15	93.8	1
예비비	-	-	-	-
합계	16	15	93.8	1

나. 검토의견

관세청은 저조한 과태료·과징금·가산금 수납률을 제고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조치완료로 제출하였으나, 관세청의 과태료·과징금·가산금 수납률은 개선되지 않고 있고,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거나 소관 부처에 개정건의안을 제출한 것만으로는 시정요구사항을 이행완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세청은 2024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저조한 관세청 과태료 수납률 개선 필요’, ‘과징금 수납률 개선방안 마련 필요’ 및 ‘가산금 수납률 개선방안 마련 필요’라는 3건의 시정요구사항(제도개선)이 채택되었음.

[2024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조치상황 (2026.4.30.)
저조한 관세청 과태료 수납률 개선 필요	관세청은 「외국환거래법」을 소관하는 기획재정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소관하는 법무부 등 유관부서와 TF 구성을 통해 제재수단을 강화하고, 과중한 징수·체납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인적·물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과태료 수납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 과태료 수납률 제고,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주무부처 협의 및 의원입법발의 - 과태료 수납률 제고방안 수립(2025.9.1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을 위한 법무부 협의 실시(2025.10.3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 2건 의원입법 발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위한 기재부 협의 실시(2025.11.26.)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1건 의원입법 발의	조치완료 (조치완료일: 2025.12.4.)
과징금 수납률 개선방안 마련 필요	관세청은 저조한 과징금 수납률을 개선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제도개선)	○ 과징금 수납률 제고 및 관련 법 개정안을 주무부처에 제출 - 과징금 수납률 제고방안 수립(2025.12.17.) - 과징금 수납률 개선을 위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산업부에 제출(2025.12.23.)	조치완료 (조치완료일: 2025.12.23.)
가산금 수납률 개선방안 마련 필요	관세청은 가산금의 저조한 수납률을 개선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제도개선)	○ 체납 정리 및 은닉재산 추적 활동 강화 - 빅데이터 활용, 가상자산 추적·압류 및 지자체와 합동단속, 가택수색·금융자산 조사 등 은닉재산 추적 강화 ○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건의	조치완료 (조치완료일: 2025.12.31.)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4.5.

관세청은 과태료 수납률 개선과 관련하여 「과태료 수납률 제고방안」을 수립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외국환거래법」의 개정안과 관련하여 관련 부처와 협의하였다고 설명하고, 과징금 수납률 재선과 관련하여 「과징금 수납률 제고방안」을 수립하고 「대외무역법」의 개정의견을 산업통상부에 제출하였으며, 가산금 수납과 관련하여 체납 정리 및 은닉재산 추적 활동을 강화하고 「관세법 시행령」의 개정의견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2025년 과태료·과징금·가산금의 수납률은 전년 대비 개선수준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의 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소관 부처와의 협의·건의 만으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충실히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2021~2025년 관세청의 과태료·과징금·가산금의 수납현황을 살펴보면, ① 과태료는 2025년 수납액이 2024년 대비 2배 가량인 264억 4,200만원 수납되어 예산 대비 수납률과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예년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② 과징금은 2025년 수납액이 2024년 대비 감소한 30억 8,900만원으로, 예산 대비 수납률과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전년도에 비해 악화되었음. ③ 가산금은 2025년 수납액이 2억 8,300만원으로 예년에 비해 수납액, 예산 대비 수납률 및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19]

[2021~2025년 관세청의 과태료·과징금·가산금 수납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과태료	예산	9,247	4,813	7,426	8,892	10,917
	징수결정액	41,469	54,887	64,433	87,678	88,777
	결산 (수납액)	5,279	10,421	10,780	12,156	26,442
	예산 대비 수납률	57.1	216.5	145.2	136.7	242.2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12.7	19.0	16.7	13.9	29.8
과징금	예산	2,541	2,617	3,068	2,857	3,956
	징수결정액	5,933	6,711	7,318	7,233	6,706
	결산 (수납액)	2,720	3,431	3,993	3,553	3,089
	예산 대비 수납률	107.0	131.1	130.1	124.4	78.1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45.8	51.1	54.6	49.1	46.1
가산금	예산	1,260	1,000	1,356	1,319	1,042
	징수결정액	459,429	515,459	573,525	633,708	697,141
	결산 (수납액)	1,473	1,972	1,675	△2,763	283
	예산 대비 수납률	116.9	197.2	123.5	△209.5	27.1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0.3	0.4	0.3	△0.4	0.1

자료: 관세청

19) 가산금은 행정소송 패소로 인해 2024년에 이미 납부한 가산금의 환급이 이루어져 (-)의 수납액을 기록하였음.

또한 고액 과징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안은 아직 국회 심사 중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외국환거래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유사한 내용의 「대외무역법」 개정안은 아직 발의·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또한 「관세법 시행령」 제277조를 개정하여 은닉재산 추적 및 징수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최저 지급기준을 낮추려는 건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않고 있음.

이처럼 관세청은 저조한 과태료·과징금·가산금 수납과 관련하여 법령 개정 관련 타 부처와의 협의 및 개정안 건의를 이유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조치완료로 제출하였으나, 수납률이 개선되지 않았고 부처와의 협의가 법령 개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향후 시정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조 달 청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219억 6,700만원(6.0%)이 많은 3,883억 5,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8억 4,800만원(△8.0%)이 감소됨.[1)]

[2025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354,039	354,039	422,200	68,161	366,385	366,385	388,352	21,967	△33,848
총수입	354,039	354,039	422,200	68,161	366,385	366,385	388,352	21,967	△33,848

문의: 02-6788-5688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5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49억 300만원(△2.0%)이 적은 2,402억 6,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4억 6,800만원(△2.6%)이 감소됨.

[2025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242,486	242,486	246,733	4,247	245,168	245,168	240,265	△4,903	△6,468
총지출	242,486	242,486	246,733	4,247	245,168	245,168	240,265	△4,903	△6,468

나.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7,376억 9,800만원으로, 8,379억 5,6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7,730억 1,600만원이 수납(수납률 92.2%)되고 649억 4,000만원은 미수납 되었음.

[2025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조달특별회계	737,698	737,698	-	737,698	837,956	773,016	64,940	-
- 손익계정	459,472	459,472	-	459,472	561,633	496,693	64,940	-
- 자본계정	278,226	278,226	-	278,226	276,323	276,323	-	-
합 계	737,698	737,698	-	737,698	837,956	773,016	64,940	-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7,410억 8,800만원으로, 이 중 7,273억 7,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1%)되고 12억 5,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24억 5,0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조달특별회계	737,698	737,698	3,390	±1,752	-	741,088	727,379	1,259	12,450
- 손익계정	459,472	459,472	434	±1,638	-	459,906	452,799	828	6,279
- 자본계정	278,226	278,226	2,956	±114	-	281,182	274,579	431	6,171
합 계	737,698	737,698	3,390	±1,752	-	741,088	727,379	1,259	12,450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5회계연도 말 기준 조달청 자산은 전년 대비 69억 800만원이 감소한 2조 5,826억 6,800만원으로, 이는 유·무형자산이 801억 1,000만원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산과 기타자산이 각각 26억 9,700만원, 843억 2,100만원 감소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28억 1,000만원 증가한 115억 8,400만원으로 차입부채와 기타부채가 각각 27억5,900만원, 5,100만원 증가된 데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97억 1,800만원이 감소한 2조 5,710억 8,400만원임.

2025회계연도 조달청의 프로그램순원가는 △753억 2,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9억 9,2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72억 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2억 2,900만원 감소하였음.

[2025회계연도 조달청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 (A)	2024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2,582,668	2,589,576	△6,908	△0.3
	금융자산	1,682,420	1,685,117	△2,697	△0.2
	유·무형자산	893,931	813,821	80,110	9.8
	기타자산	6,318	90,639	△84,321	△93.0
	부 채	11,584	8,774	2,810	32.0
	차입부채	10,733	7,974	2,759	34.6
	충당부채	-	-	-	-
	기타부채	851	800	51	6.3
	순자산	2,571,084	2,580,802	△9,718	△0.4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75,323	△112,315	36,992	△32.9
	재정운영순원가	△124,966	△195,966	71,000	△36.2
	재정운영결과	7,204	17,433	△10,229	△58.7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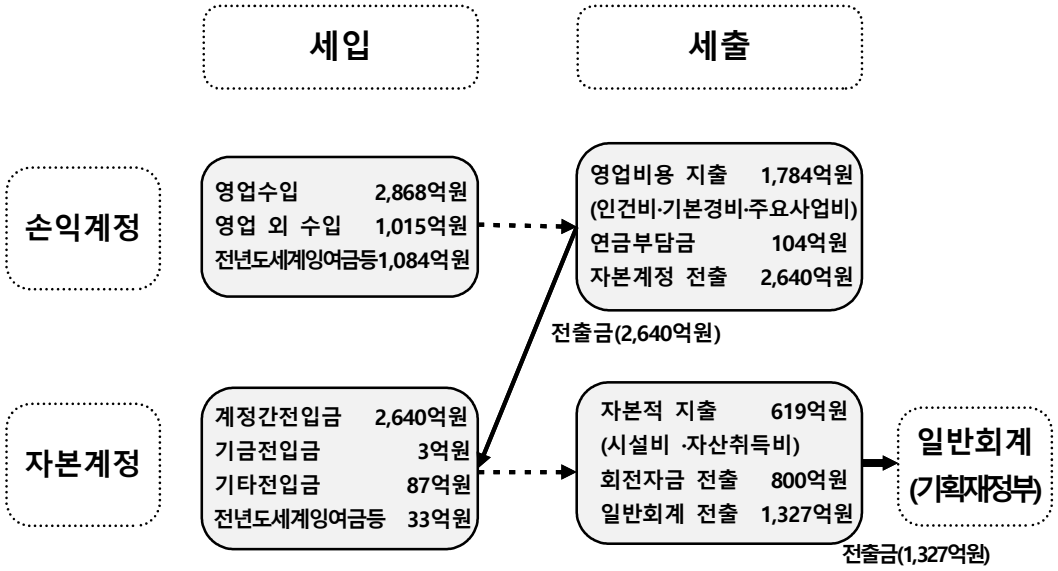
2025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재정은 조달특별회계 1개 회계로 구성됨.

조달특별회계는 자체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하는 정부기업특별회계로 세입·세출예산 외에 별도로 보유하는 회전자금으로 수요물자사업과 비축물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익금은 조달특별회계 세입으로 계상함.

회계 간 거래를 살펴보면, 조달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327억원, 회전자금으로 800억원이 각각 전출되었음.

조달특별회계 재정흐름은 다음과 같음.

[2025 회계연도 조달청 조달특별회계 재정흐름도]



주) 총계 기준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 조달청은 더 두텁고 촘촘한 지원으로 조달기업 Scale-Up, 공공조달 성장사다리를 활용한 글로벌 도약 촉진, 국민 안전과 품질 최우선의 조달물자 계약·관리, 공공비축 강화로 공급망 안정화 지원을 정책목표로, 총 28개의 세부사업에서 혁신제품 임차 시범구매 도입 및 혁신제품 지원센터 설립, 혁신제품 해외실증 규모 확대 및 나라장터 수출, 안전관리물자 점검 주기 단축, 원자재 비축 재고 확대 및 노후 비축기지 신축 등을 수행하였음.

2025년도 조달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시설계약사업수입(손익)의 경우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미수납액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향후 조달청은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미수납액 증가 관련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조달청은 공공혁신조달사업의 정책목표 달성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추가 설정 등 성과지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혁신제품 지정 시 상용화 여부 등 확인 업무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셋째, 조달청은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인해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나라장터 통합이 지연되었으므로, 통합 대상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하는 등 일정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넷째, 회전자금 전출금을 통한 비축사업은 선입선출을 원칙으로 비축창고별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비축물자 재고관리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비철금속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비축물자 사업자의 전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조달특별회계】

<세 입>

1. 시설계약사업수입(손익): 세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 및 증가하는 미수납액 대책 마련 필요

가. 개 요

‘시설계약사업수입(손익)’ 은 공사계약, 기술용역, 맞춤형서비스, 총사업비 검토, 설계적정성 검토, 공사원가사전검토에 따른 수수료가 수납되는 세입과목으로, 2025년도 예산액은 528억 6,900만원이고, 616억 5,0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555억 6,500만원이 수납(수납률 90.1%)되었음.[2)]

[2025년도 시설계약사업수입(손익)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시설계약 사업수입	52,869	52,869	61,650	55,565	6,085	-	90.1	58,680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 조달특별회계-시설계약사업수입(손익)(45-454)(시설사업국)

나. 검토의견

시설계약사업수입(손익)의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미수납액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세입예산 추계를 보다 정확히 하고 증가하는 미수납액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시설계약사업수입(손익)의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5년간 예·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매년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음.

[2021년~2025년 시설계약사업수입(손익)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1	37,869	37,869	-	37,869	45,709	43,449	114.7	95.1	2,260	-
2022	38,917	38,917	-	38,917	46,321	43,023	110.6	92.9	3,298	-
2023	39,306	39,306	-	39,306	49,752	45,355	115.4	91.2	4,397	-
2024	40,686	40,686	-	40,686	61,033	55,189	135.6	90.4	5,844	-
2025	52,869	52,869	-	52,869	61,650	55,565	105.1	90.1	6,085	-

자료: 조달청

또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미수납액 규모 및 발생 사유별 현황을 보면, 수요기관의 예산부족으로 인한 미수납 규모 및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21년~2025년 미수납액 규모 및 미수납액 발생 사유]

(단위: 백만원, %)

사유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수요기관 예산부족	**412**	**1,267**	**2,221**	**2,856**	**3,304**
납기미도래	1,848	2,031	2,176	2,988	2,781
합계	**2,260**	**3,298**	**4,397**	**5,844**	**6,085**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중	**4.9**	**7.1**	**8.8**	**9.6**	**9.8**

자료: 조달청

이와 관련하여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조달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서 시설계약 요청 시 조달수수료 납부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시설계약사업수입 미수납액 발생 최소화 방안 마련'을 시정요구(제도개선)한 바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관련 제도가 개선되지 않은 채 미수납액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조달청은 시설계약사업수입 미수납액 증가에 따른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시설계약사업수입 미수납 상위 10개 기관]

(단위: 백만원)

기관명	미수납액	미수납액 규모 상위 3개 사업	사업명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846	111	포항-안동1-1 국도건설공사(1공구)
		109	안동-영덕 국도건설공사
		86	국도 20호선 산청 신안-생비량 도로건설공사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703	41	영동-용산1-2 도로건설공사
		40	충청내륙고속화(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36	영동-보은 도로건설공사
국방시설본부	243	134	22-국-00부대 설계용역(B596)
		31	24-D-00부대 설계용역(B532)_P지역(운영센터)
		11	22사단 53여단 2대대(탑동) 개편
법무부	186	141	태백교도소 신축 공사
		41	전주교도소 이전 신축공사
		4	인천구치소 수용동 증축공사(건축)
㈜강원랜드	179	90	그랜드호텔 및 마운틴콘도 환경개선 건축공사
		51	그랜드호텔 및 마운틴콘도 환경개선공사 감독권한대행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12	그랜드호텔 및 마운틴콘도 환경개선 통신공사
경찰청 충청북도경찰청	129	90	단양경찰서 신축사업
		15	단양경찰서 신축사업 건축공사
		13	단양경찰서 신축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04	104	수원보훈요양원 증축사업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102	20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
		20	안마항 정비공사
		12	수품항 정비공사
근로복지공단본부	97	97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공사
문화체육관광부	89	55	(가칭)송현동 국립문화시설(이건희 기증관) 건립사업 설계용역
		29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건축공사
		5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자료: 조달청

〈세 출〉

2. 공공혁신조달사업: 혁신조달 관련 성과지표 개선 등

가. 개 요

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함)[3]에 따라 5개 세부사업을 통해 혁신제품 지정·구매제도, 혁신제품 지원센터 운영, 혁신제품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으로 공공분야에 혁신제품 구매를 활성화하는 공공혁신조달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공공혁신조달사업이 포함된 5개 세부사업의 결산현황을 보면, 2025년도 예산현액 750억 100만원 중 727억 9,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1%)되고, 9억 6,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2억 4,500만원이 불용되었음.[4]

---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① 조달청장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이하 “혁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공구매를 지원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시범구매 및 공급
2.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27조의2(혁신제품 지원센터) ① 조달청장은 제27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제품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발굴과 추천
2. 수요기관과 조달기업 대상 교육·홍보 및 컨설팅
3.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조달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4.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해외 사례 조사
제28조(국제조달 협력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① 조달청장은 조달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내 관련 기관 및 각 국 조달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조달특별회계-공공혁신조달사업(혁신조달기획관)

[2025년도 공공혁신조달사업 관련 세부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정부조달 국제협력제제 구축 (1233-331)	4,505	4,505	-	-	4,505	4,252	-	253	5,195
아태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1233-332)	2,644	2,644	-	-	2,644	2,399	214	31	4,534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1235-334)	15,007	15,007	171	△8686	15,178	13,785	433	960	15,625
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R&D) (1235-338)	2,968	2,968	-	-	2,968	2,968	-	-	8,000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1237-433)	49,706	49,706	-	-	49,706	49,391	314	1	82,706
합 계	74,830	74,830	171	△8686	75,001	72,795	961	1,245	116,060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첫째, 공공혁신조달사업은 예산과 혁신제품 매출액이 급격히 성장하며 매년 성과목표를 초과 달성해 왔으나, 이는 혁신제품 지정 건수 자체의 확대에 기인한 측면도 있으므로, 정책목표 달성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추가 설정 등 성과지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공공혁신조달사업은 2019년 ‘공공구매 조달확산’ 정부혁신 역점과제 선정에 따라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등을 시작으로 도입된 이후 매년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5회계연도 예산은 614억 3,500만원으로 사업 개시 연도인 2019년 예산(24억 3,400만원)과 비교하여 약 25배 수준으로 크게 확대됨.

[2019년~2025년 공공혁신조달사업 관련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	혁신제품 시범구매	2,400	29,301	44,500	46,500	48,300	53,000	49,400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혁신제품 선정 및 관리비	34	354	369	346	346	432	432
	경진대회 및 홍보비	-	200	200	200	200	200	200
	혁신제품 지원센터 운영	-	380	900	1,480	2,410	2,265	2,865
	지역기반 혁신제품 구매확산	-	-	-	-	100	100	100
	기타 운영경비 (공공요금,여비, 사업추진비 등)	-	12	54	51	52	51	50
	혁신제품 임차	-	-	-	-	-	-	3,500
공공혁신 수요기반 혁신제품 (R&D)	연구개발비 및 기평비	-	-	-	-	1,716	1,816	2,968
정부조달 국제협력 체제 구축	수출혁신제품 해외실증 애로해소	-	-	-	-	-	-	1,200
아태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ODA)	필리핀 혁신기술기반 결핵진단 관리강화 (ODA)	-	-	-	-	-	-	720
합 계		2,434	30,247	46,023	48,577	53,124	57,864	61,435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공공혁신조달사업이 시작된 지 7년이 경과하였고 관련 예산 역시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 규모에 걸맞은 사업 성과가 달성되고 있는지와 성과 측정방식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조달청의 2025년 성과계획서상 혁신제품 관련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를 살펴보면, 성과지표는 혁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매출액이며, 연간 혁신제품 공공조달시장 판매실적의 합계치를 기준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있음.

조달청은 전년 실적 수준으로 해당연도 목표치를 설정(2025년은 전년 실적이 아닌 목표치수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매년 성과계획서상 성과달성도는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21년~2025년 공공혁신조달사업 관련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성과달성도]

(단위: 억원)

성과지표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혁신제품 매출액 (억원)	목표	1,800	2,452	4,285	7,394	10,000	2024년 혁신제품 구매목표액	연간 혁신제품 공공조달시장 판매실적 합계
	실적	2,452	4,157	7,394	9,755	10,447		
	달성도	136.2	169.5	172.6	131.9	104.5		

자료: 조달청

공공혁신조달사업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혁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확산'[5]이므로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판매실적을 설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으며, 혁신제품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2021년 2,452억원 대비 2025년 실적은 1조 447억원으로 약 4.3배 증가)한 것 역시 조달청의 중요한 성과라 판단됨.

그런데 혁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판매실적 증가는 공공혁신조달사업의 수행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혁신제품 품목수가 2020년 345개 대비 2025년 2,774개로 약 8배 증가하였음을 볼 때 혁신제품군 자체가 증가한 원인 역시 있을 것으로 보임[6].

5) 다만, '혁신제품의 국·내외 조달시장 진출 확산' 외에도 혁신기업 지원에 따른 국가 기술력 향상, 공공분야 실증 등을 통한 혁신기업의 민간시장 진출 지원, 해외조달시장 진출 등의 목표도 주요한 국가차원의 정책 목표일 것임.

6) 특히,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2022년 및 2023년은 2021년 및 2022년에 걸쳐 혁신제품 지정건수가 크게 증가(2021년 623건, 2022년 606건 지정)함에 따른 후속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보임.

[연도별 혁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판매실적 및 지정 현황]

(단위: 억원, 개)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공공조달시장 매출액	-	1,800	2,452	4,157	7,394	9,755	10,447
누적 지정건수 (해당연도 신규 지정건수)	66	345 (279)	968 (623)	1,574 (606)	1,858 (284)	2,280 (422)	2,774 (494)

주) 2019년 10월에 혁신제품 지정이 시작됨에 따라 2019년 공공조달시장 매출액은 미집계함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혁신제품 발굴을 통한 지정건수 증가 및 혁신제품의 국내 공공조달시장 판매실적 증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국가 전체적인 정책목표는 공공조달시장을 발판으로 혁신조달기업들이 내실있는 성장을 이루어 국·내외 시장에 진출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조달청은 혁신시제품의 상용화, 혁신제품의 기술력 및 글로벌 경쟁력 향상, 해외조달시장 진출 등 혁신조달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에 공공조달시장이 기여한 바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추가 설정하는 등 현행 성과 관리 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필리핀 혁신기술기반 결핵진단 관리사업의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의 해외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아태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 운영 세부사업과 사업의 본질 및 내용에 있어 이질적이므로, 향후 유사 사례의 편성·집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아태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사업은 아태지역의 정부조달 투명성 증대와 부패 감소 등을 지원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전자조달 시스템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5년도 아태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아태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2,644	2,644	-	-	2,644	2,399	214	31	4,534
키르기스스탄 전자조달시스템 구축	1,380	1,380	-	-	1,380	1,349	-	31	3,990
필리핀 혁신기술기반 결핵진단 관리 강화	730	720	-	-	720	506	214	-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조달청은 2025년에 아태 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사업(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키르키스스탄에 나라장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여 공공조달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내기업의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키르기스스탄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사업’과 국내의 혁신제품을 제공하고 전문가를 파견하여 개도국의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며 혁신제품의 ODA 사업 참여 활성화를 지원하는 ‘필리핀 혁신기술기반 결핵진단관리 강화사업’을 신규로 수행하였음.

조달청은 ‘필리핀 혁신기술기반 결핵진단관리 강화사업’은 우리나라의 이동식 X-ray, AI 의료영상판독 솔루션, 방사선보호 가운 등 혁신제품을 구매하여 필리핀에 제공하고, 결핵조사 관련 전문가를 파견하는 ODA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기존 ODA 사업인 아태 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하였다고 함.

그러나 아태 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사업은 나라장터 등 전자조달 시스템의 구축을 지원하고 해당 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거나 전자조달 시스템 도입국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등의 사업으로, 2025년에 신설된 필리핀 혁신기술기반 결핵진단 관리사업의 경우 조달 네트워크 구축과는 관련성이 없고 국내의 혁신제품을 구매하여 필리핀에 보급하고 향후 혁신제품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임.

따라서 필리핀 혁신기술기반 결핵진단 관리사업의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의 해외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아태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 운영 및 키르기스스탄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사업과 사업의 본질 및 내용에 있어 이질적이므로 아태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 운영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향후 조달청

은 예산 과목에 어긋나는 편성 · 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셋째, ‘유형2’ 혁신제품 지정의 경우 기술보유기업의 매출 자료만 검증하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으므로, 향후에는 협업 참여기업의 매출까지 철저히 대조·확인하여 상용화 여부를 검증하여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혁신제품은 중소벤처기업부 등 15개 관계기관[7]의 국가연구개발(R&D) 결과물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유형1’ 제품과 조달청이 상용화 전 시제품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유형2’ 제품으로 구분됨.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유형2) 현황(2022~2025년)]

(단위: 건,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혁신제품 지정건수(A)	192	112	140	191	635
협업체 지정건수(B)	17	16	12	10	55
비중(B/A)	8.9	14.3	8.6	5.2	8.7

자료: 조달청

혁신제품은 특허나 신기술 인증 등을 보유한 제조업체가 제조설비를 갖추어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기술보유기업(추진기업)과 제조기업(참여기업)이 협업체를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음.

「조달사업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조달청 소관 ‘유형2’ 혁신제품은 상용화 전 시제품 가운데 초기 판로 확보와 상용화 지원이 필요한 제품에 한해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조달청 고시) 제17조제5호 등은 신청 제품이 이미 시중에 판매되고 있거나 업체가 시중에 판매 중인 상품과 동일한 경우 등 이미 상용화된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은 혁신제품 지정(심사)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조달청은 상용화 전 시제품에 대한 초기 판로지원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구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구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 구 특허청(현 지식재산처), 해양경찰청,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혁신제품의 상용화 여부를 검토·판단하여야 함. 특히 협업체 형태로 신청한 경우에는 기술보유기업뿐만 아니라 제조기업의 매출 자료도 제출받아 검증할 필요가 있음. 만약 신청 제품의 매출액이 제품 단가의 10배를 초과하여 발생했거나, 최초 매출이 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은 기술보유기업이 제조기업과 협업체를 구성해 혁신제품을 신청한 경우, 기술보유기업만을 대상으로 매출 자료를 제출받아 상용화 여부를 확인해 오다가 2026년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음.[8)]

향후 조달청은 혁신제품 지정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기업인 기술보유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체 등 협업 참여기업에 대해서도 매출장을 대조·확인하여 제품 상용화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혁신제품 지정 및 관리 업무 전반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8) 조달청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2025.8. 11.부터 참여기업(제조기업)도 추진기업(기술보유기업)과 동일하게 매출원장을 제출하도록 공고서에 반영하였다고 설명함.

3.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사업: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G-PASS 기업) 제도 성과제고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사업은 해외조달기관·국제기구와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며 한국형 전자조달 시스템을 해외에 확산·보급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45억 500만원 중 42억 5,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4.4%)되고, 2억 5,300만원이 불용되었음.[9)]

[2025년도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4,505	4,505	-	-	4,505	4,252	-	253	5,195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제도	66	66	-	-	66	66	-	-	66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제도(이하 “G-PASS 기업”이라 함)’는 국내 조달시장에서 기술력, 품질 등을 검증받고 수출경쟁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G-PASS 기업으로 지정하여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임.

G-PASS 기업 지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해외조달시장 진출 노력 및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지정하고, 해외수출실적 또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노력도에 따라 지정등급(A·B·C 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G-PASS 기업 지정기간은 5년이며, 최대 2회까지 재지정이 가능함.

9) 조달특별회계-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1233-331)(기획조정관실)

[G-PASS 기업 지정 절차]

신청서 접수	◦대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중견·중소기업
현장역량진단	◦대상: 최근 3년간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 ◦G-PASS 지정관리용역 위탁수행기관이 신청기업을 현장 방문하여 수출역량 및 준비 정도 등을 점검
지정심사	◦1차 심사: 해외조달시장 진출 노력, 진출의지 및 가능성 심사 ◦2차 심사: G-PASS 기업으로서의 적합성 등 심사하여 최종 결정
지정	◦해외수출실적 및 수출노력도에 따라 A, B, C 등급 부여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나. 검토의견

G-PASS 기업 본래의 사업목적인 해외조달시장 진출 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진출 지원사업과의 연계방안, 해외조달시장 수출실적 관리 방안 등 성과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G-PASS 기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 12월 말 기준 1,501개 기업이 지정되었음.

[G-PASS 기업 지정 현황]

(단위: 개사)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487	538	663	832	1,022	1,114	1,263	1,422	1,501

자료: 조달청

G-PASS 기업에 지정되면, 조달청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등의 우대를 받으며, 국내조달시장 입찰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G-PASS 기업 지정 혜택]

구분	내용	비고
G-Pass 기업 대상 지원사업	◦해외조달시장 개척단 파견사업	G-PASS 기업 중 B등급[10] 이상 기업에 한함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사업 선정 우대 (가점 부여)	◦해외조달시장 맞춤형 종합지원사업(+3점) ◦해외조달시장 수출전략기업육성사업(+5점) ◦해외전시회 지원사업(+5점)	
수출기업 입찰지원	◦우수조달물품 신인도 가점(+1점) ◦중소기업자간 계약이행능력심사 가점(+1점)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1점) ◦물품·용역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평가(최대 7.5점) ◦용역 카탈로그 계약 종합평가(최대 5점)	
협력기관의 우대사항	◦기술보증기금 보증심사 우대 및 기술보증수수료 인하 ◦기업은행 환전 및 해외송금 수수료 감면 ◦특허청 ip기반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가점 부여 ◦수출입은행 '히든 챔피언 프로그램'(금리 우대, 수출성장자금 대출한도 확대 등) 신청자격	
기타	◦G-PASS 지정마크 마케팅 활용 가능	

자료: 조달청

G-PASS 기업 지정제도는 2025년도에 6,600만원이 편성·집행되었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G-PASS 기업 해외수출 현황을 보면, G-PASS 기업 지정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정기업의 해외수출실적은 그에 비해 정체된 수준이며, 해외조달시장 진출 실적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조달청은 G-PASS 기업으로부터 수출 실적을 제출받지 아니하고 관세청의 통관자료를 제출받아 G-PASS 기업의 해외수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매년 G-PASS 기업

10) 다음의 수출실적기준 또는 해외조달시장진출 노력 기준 중 하나를 충축하는 경우
◦ 수출실적기준: 최근 3년간 수출누계액이 10만불 이상
◦ 해외조달시장 진출 노력
- 미국 연방조달청 다수공급자물품공급계약(MAS) 등록
- 해외조달시장 공급사 등록 실적이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 해외조달시장 입찰제안서 제출
- 해외인증 신규 취득
- 조달청 수출지원사업 참여

중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은 전체 지정기업의 40% 수준이며, 매년 늘어나는 지정기업 수에 비해 해외수출 금액 역시 정체되어 있는 상황임.

[연도별 G-PASS 기업 해외수출 현황]

(단위: 개사, 백만달러)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지정기업 수(A)		1,022	1,114	1,263	1,422	1,501
해외수출 기업 수(B)		393	434	470	557	631
	비중(B/A)	(38.5%)	(39.0%)	(37.2%)	(39.2%)	(42.0%)
해외수출 금액		1,246	1,507	1,633	1,628	1,716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또한 조달청은 G-PASS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수출실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본래의 사업목적인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의 성과를 관리하는데 다소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조달청은 공공조달 수출상담회,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 지원사업, 해외조달시장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 등 해외시장진출 지원사업과 G-PASS 기업 지정제도의 연계 방안 마련 등 해외수출실적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해외조달시장 수출실적 관리방안[11]을 마련하여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11) 대상기업으로부터 해외조달시장 수출 실적을 제출받고 그 정확성을 검증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해외조달시장 수출실적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4.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관련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등

가. 개 요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은 노후화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의 혁신적인 조달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43억 6,100만원 중 134억 4,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3.6%)되고, 9억 1,900만원이 불용되었음.[12)]

[2025년도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구축(정보화)	14,436	14,436	55	△130	14,361	13,442	-	919	18,854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 사업은 나라장터 시스템 개편, AI·빅데이터·클라우드 분야의 신기술 적용 및 자체조달기관 통합 개발을 위한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사업과 정보시스템 프로젝트 관리조직(PMO) 운영 및 사무공간 임차·사업운영·관리 등을 위한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사업 관리’ 사업의 2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12) 조달특별회계-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정보화)(1131-505)(디지털공정조달국)

나. 검토의견

첫째,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사업의 지연에 따른 예산편성과 집행간 괴리가 발생하였으므로, 조달청은 향후 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계획수립을 통해 당초 국회에서 확정된 세부내역을 과도하게 변경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은 조달 업무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범정부 전자조달 플랫폼으로서, 2002년 개통 이후 20년 이상 운영되어 왔음. 그러나 사용자 급증에 따른 처리 속도 저하와 검색 기능의 불편 등으로 조달기업 및 수요기관의 시스템 개선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조달청은 2021년부터 시스템 전면 개편을 골자로 하는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음.

조달청은 당초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을 2024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순연되면서 계획보다 지연된 2025년 1월에 시범 개통을 거쳐 같은 해 3월에서야 정식 개통하였음.

조달청은 이와 같은 개통 지연 사유에 대해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방물자 품질보증시스템의 신규 개발, 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 기간 중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 주요 핵심 분야에 대한 추가 테스트 실시 등을 들고 있음.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사업 연장 내용 및 연장 사유]

계약차수	계약 기간 및 금액		비고
총차 계약	최초	2022. 6. 23. ~ 2024. 6. 22. / 82,089백만원	
	최종	2021. 6. 23. ~ 2025. 2. 20. / 85,833백만원	
장기 1차 계약	최초	2021. 6. 23. ~ 2022. 3. 20. / 18,744백만원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방물자 품질 업무가 조달청으로 위탁됨에 따라 국방물자 품질보증시스템 신규 개발 필요
장기 2차 계약	최초	2022. 3. 21. ~ 2022. 12. 31. / 27,784백만원	
	변경	2022. 3. 21. ~2023. 3. 31. / 30,288백만원	
장기 3차 계약	최초	2023. 1. 1. ~ 2023. 12. 31. / 29,679백만원	계약기간 중 코로나-19 확산, 대규모 DB 변경에 따른 난이도 상승
	변경	2023. 1. 1. ~ 2024. 3. 31. / 29,679백만원	
장기 4차 계약	최초	2024. 5. 2. ~ 2024. 10. 21 /. 7,122백만원	추가 테스트 실시, 연말 개통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 사전 제거 등 고려하여 계약자와 연장 합의
	1차 변경	2024. 5. 2. ~ 2024. 12. 31. / 7,122백만원	
	2차 변경	2024. 5. 2. ~ 2025. 2. 20. / 7,122백만원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와 같은 차세대 나라장터의 개통 지연은 사업 관리의 차질에 그치지 않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저하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조달청은 차세대 나라장터 교육 등을 위한 경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2025회계연도에 나라장터구축추진단과 11개 지방청에서 총 11회(전용 1회, 세목 조정 10회)에 걸쳐 당초 편성된 예산 중 6억 7,400만원을 전용 및 조정하여 집행하였는바, 이는 예산 편성과 집행 간의 심각한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조달청은 당초 2025회계연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일반수용비(210-01목)로 2억 2,5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용역비(210-15목)로부터 예산을 충당(2025. 1. 2.)하였음.

그러나 이후 다른 사업의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해당 일반수용비(210-01목)에서 다시 8회에 걸쳐 세목 조정을 단행하였음. 결과적으로 관리용역비에서 충당한 일반수용비 2억 2,500만원 중 실집행액은 1억 5,200만원(집행률 67.6%)에 불과하였고, 3,200만원이 불용되면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2025년도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 중 일반수용비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일반수용비 (210-01목)	-	-	-	△41 225	184	152	-	32	-

자료: 조달청

또한 조달청은 2025년 1월 2일 관리용역비(210-15목)에서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로 8,000만원을 세목 조정하였고, 같은 해 4월 28일에는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에서 공공요금(210-02목) 및 임차료(210-07목)로 1,300만원을 재차 세목 조정하였음. 이후 다시 6회에 걸쳐 해당 예산을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로 되돌리는 세목 조정을 실시하였는바, 이처럼 반복적이고 일관성 없는 예산 조정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조치임.

[2025회계연도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지연에 따른 예산 전용 및 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일자)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목-세목		세부사업 명	목-세목	
전용 (2025.4.12.)	차세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구축 (1131-505)	관리용역비	28	차세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구축 (1131-505)	일반 연구비	PMO 계약금액 부족분 충당
	소계		28			
세목조정 (2025.1.2.)	차세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구축 (1131-505)	관리용역비	225	차세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구축 (1131-505)	일반 수용비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확산 및 사업관리 예산 반영
			25		공공요금 및제세	
			222		임차료	
			80		시설장비 유지비	
			40		일반 용역비	
세목조정 (2025.4.28.)	차세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구축 (1131-505)	시설장비 유지비	3	차세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구축 (1131-505)	공공요금 및제세	외부 사무실 임차료 및 통신비 납부
			10		임차료	
세목조정 (2025.6.4.)	차세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구축 (1131-505)	일반수용비	13	차세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구축 (1131-505)	임차료	교육용 전광판 대여 임차료 지급
세목조정 (2025.6.27.)	차세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구축 (1131-505)	일반수용비	7	차세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구축 (1131-505)	임차료	차새대 나라장터 교육장소 대관료
세목조정 (2025.7.10.)	차세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구축 (1131-505)	일반수용비	2	차세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구축 (1131-505)	임차료	차세대 나라장터 교육 노트북 임차 부족분 충당
			1		시설장비 유지비	
세목조정 (2025.7.23.)	차세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구축 (1131-505)	일반수용비	5	차세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구축 (1131-505)	시설장비 유지비	차새대 나라장터 교육장소 대관료
세목조정 (2025.9.25.)	차세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구축 (1131-505)	일반수용비	6	차세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구축 (1131-505)	시설장비 유지비	차새대 나라장터 교육장소 대관료
세목조정 (2025.10.16.)	차세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구축 (1131-505)	일반수용비	5	차세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구축 (1131-505)	시설장비 유지비	차새대 나라장터 교육장소 대관료
세목조정 (2025.10.24.)	차세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구축 (1131-505)	일반수용비	1	차세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구축 (1131-505)	시설장비 유지비	차세대 나라장터 교육 노트북 임차 부족분 충당
세목조정 (2025.12.1.)	차세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구축 (1131-505)	일반수용비	1	차세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구축 (1131-505)	시설장비 유지비	차세대 나라장터 교육 노트북 임차 부족분 충당
	소계		646			
합 계			674			

자료: 조달청

더구나 당초 본예산에 전혀 편성되지 않은 예산 과목인 일반수용비(210-01목)로 예산을 조정 후, 집행 시에는 업무추진비(240목) 또는 기타운영비(210-16목)로 집행하여야 할 온누리상품권 구입 비용을 일반수용비(210-01목)에서 지출하였음. 이는 예산의 비목에 맞지 않는 집행임.[13)]

[예산비목 위반 집행 사례]

(단위: 원)

비목명	집행일	출납공무원	지급액	지급용도
일반수용비 (210-01)	2025.7.17.	경남지방조달청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2,500,000	온누리상품권 구매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처럼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사업의 개통 지연에 따른 운영 경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나라장터구축추진단과 11개 지방청에서 총 11회에 걸쳐 예산을 전용·조정함으로써 예산 편성과 집행 간의 괴리가 발생하였는바, 향후 조달청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당초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세부 내역을 과도하게 변경하여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함.

둘째, 조달청은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사업의 개통 지연으로 개별 기관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나라장터 통합 일정 역시 연쇄적으로 순연되었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지연 없이 25개 대상 기관의 시스템 통합이 적기에 완수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대부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조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방위사업청 등 28개 기관은 내부 업무처리 시스템과의 연계 편의성 등을 이유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공공조달 창구 분산에 따른 조달기업의 불편, 예산의 중복 투입, 보안 및 안정성 취약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조달시스템 통합 요구가 이어져 왔음.

이에 조달청은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사업 추진 당시 국회와 감사원 등의 지적을

13)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p.149.
- 일반수용비(210-01목) 지침: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사무용품, 인쇄비, 소모성 물품 구입, 수수료 및 사용료) 및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비(홍보물제작비 등)

수용하여, 2022년 12월 자체전자조달시스템 통합 계획을 수립하였음. 이 계획에 따르면 관련 법령상 통합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3개 기관[14]을 제외한 25개 기관의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2024년 상반기부터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통합하기로 되어 있었음.

그러나 차세대 나라장터의 개통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당초 1차 통합 대상이었던 7개 기관의 시스템 통합이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시기인 2025년 2월 이후로 미뤄지는 등 전체적인 통합 일정이 순연되었음.

이와 같은 통합 지연은 조달기업의 불편을 지속시키고, 해당 기관들의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부담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조달시스템 통합 동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따라서 조달청은 추가적인 지연 없이 25개 기관의 자체전자조달시스템 통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통합 대상 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하는 등 추진 일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자체전자조달시스템 통합기관 및 통합 시기 변경 내역]

구분	통합 회차	통합기관	통합시기
당초	1차(7개)	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4년 상반기
	2차(8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기연구원, ㈜에스알, 한전KDN, 한국국토정보공사	2024년 하반기 ~ 2025년 상반기
	3차(6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국제협력단	2025년 하반기
	4차(4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2026년까지
변경	1차(6개)	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에스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5년 1월
	2차(6개)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환경공단	2025년 상반기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조폐공사, 한국석유공사,	2025년 하반기
	3차(5개)	한국마사회	2026년 상반기
		한전KDN,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국제협력단	2026년 하반기
	4차(8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27년 이후

주) 향후 통합대상 기관의 대응개발 진행상황 및 기관 사정 등에 따라 통합기관 및 시기 조정 가능
자료: 조달청

14) 방위사업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교직원공제회

5.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사업: 희소금속 재포장 사업 관리 철저 필요

가. 개 요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사업은 정부조달사업 운영 및 등록 물품에 대한 관리, 혁신제품 지정 및 확산,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운영, 불공정 조달 행위 조사, 비축물자 보관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51억 7,800만원 중 137억 8,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1.8%)되고, 9억 6,000만원이 불용되었음.[15)]

[2025년도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15,007	15,007	171	86 △86	15,178	13,785	433	960	16,625
희소금속 재포장	234	234	-	-	234	-	234	-	234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019년까지 비철금속 6종은 조달청이, 희소금속은 조달청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나누어 비축하여 왔으나, 2019. 6. 13. 이원적인 금속 비축사업 운영체계로 인한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금속자원 비축기관 협의회에서 전략비축 목적의 희소금속은 광업공단이 비축하는 것으로 ‘금속자원 비축제도 개선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조달청 보유 희소금속 9종을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단계적으로 이관하여야 함.

이에 2020년 6월 「희소금속 이관 및 이관 전 관리 공동기준」이 마련되어 조달청이 보유한 희소금속 9종을 2022년까지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이관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2022년 9월에 공동기준을 개정하여 이관 시한을 삭제하고 조달청 보유 희소금속의 이관을 비축기지 여유공간, 이관자금 등 여건을 고려하여 조속히 완료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또한 희소금속 이관 전까지 희소금속에 대한 관리책임이 조달청에 있고 그에 따라

15) 조달특별회계-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1235-334)(공공물자국)

희소금속 이관 시 포장지 훼손이 있는 경우 조달청이 재포장을 실시하여야 함을 세부 조건에 명시함에 따라 2025년 신규사업으로 희소금속 재포장 경비 2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음.

[희소금속의 이관 및 이관 전 관리 공동기준 변경 내용]

구 분	당초 희소금속 이관 기준 (2020년 6월)	변경 희소금속 이관 기준 (2022년 9월)
이관 시기	조달청과 광물공사는 심의·확정된 이관방법에 따라 희소금속 9종의 인도, 검수검사, 대가지급을 2022년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한다	조달청과 광해광업공단은 심의·확정된 이관방법에 따라 희소금속 9종의 인도, 검수검사, 대가지급을 비축기지 여유공간, 이관자금 등 여건을 고려하여 조속히 완료하도록 노력한다.
매입 가격	이관 당시의 국제가격(단, 국제가격이 없는 광종은 유통시장가격)	좌 동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나. 검토의견

조달청은 이관 전 희소금속의 변질·멸실을 막기 위한 재포장 예산을 확보하고도 협의 지연으로 전액 이월하였는데, 희소금속의 최종 이관 시까지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우선순위가 높은 품목부터 신속히 재포장을 실시하고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조달청은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희소금속을 이관하기 전까지는 조달청에 보관 책임이 있고 「희소금속 이관 전 관리공동기준」에 따라 희소금속 출고 전 포장에 훼손이 있는 경우 재포장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

이에 조달청은 2024년 4월에 희소금속 재포장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희소금속 ○○톤에 대해 재포장이 필요하고 소요예산이 약 10억 4,9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희소금속 품목별 이관계획안을 마련하였음.[16)]

16)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및 「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희소금속별 재고량이 비공개자료로 분류되어 희소금속 품목별 재고량과 재포장 소요량을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재고량 정보는 가림처리함.

[희소금속 품목별 이관계획(안)]

구 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품 목	인듐	탄탈럼	바나듐(오산화)	바나듐(오산화)	비스무스	바나듐(페로)	바나듐(페로)	스트론튬	페로실리콘	망간	리튬
재고량(톤)	△△	△△	△△	△△	△△	△△	△△	△△	△△	△△	△△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희소금속의 경우 습기에 노출되어 내용물 뭉침 우려가 있고, 일부 희소금속은 내용물이 외부로 노출됨으로 인해 변질·멸실될 위험이 있으므로, 희소금속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포장 사업은 계획대로 시급히 추진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조달청은 2025년에 신규로 편성된 희소금속 포장 사업비 2억 3,400만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을 이월하였는데, 이는 희소금속 포장용역 계약이 2025년 12월에서야 체결되었기 때문임.

이에 조달청은 한국광해광업공단과의 협의가 지연되어 계약 체결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희소금속의 변질·멸실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이를 조기에 집행하지 않은 것은 설득력이 떨어짐.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희소금속 이관이 완료되는 시기가 현재로서 불확실하며 연간 이관량을 고려할 때 이관 완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희속금속 이관계획대로 사업이 수행되지 않으면 그동안 희소금속의 변질 및 멸실이 상당히 진행되어 가치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달청은 희소금속 재포장 우선순위가 높은 희소금속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재포장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희소금속의 이관이 완료되기까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6. 공급망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 실시설계 연장계약을 고려한 사업 추진 철저 필요

가. 개 요

‘공급망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은 국가비상사태나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원자재의 안정적 보관과 효율적 비축사업을 위해 노후화된 창고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4억 7,700만원 중 2억 7,600만원이 집행(집행률 57.8%)되고, 1억 1,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8,300만원이 불용되었음.[17)]

[2025년도 공급망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공급망 대응 인프라 구축	477	477	-	-	477	276	117	83	3,072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조달청은 국가비상사태 시 물가안정과 수급 조절 및 원자재의 안정적 보관과 효율적 비축사업을 위해 2025년부터 신규사업으로 노후화된 경남 비축창고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경남 비축창고 재건축 사업 개요]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내용
건립규모	부지면적 17,470㎡ 연면적 6,000㎡
사업기간	2025 ~ 2027
총사업비	12,127(시설비 10,481, 설계비 473, 감리비 1,147, 시설부대비 26)

자료: 조달청

17) 조달특별회계-공급망 대응 인프라 구축(7162-510)(공공물자국)

나. 검토의견

경남 비축창고 재건축 사업은 경관조명, 태양광 설치를 위한 추가 설계 및 예산의 반영으로 인한 순연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사업관리 강화가 필요함.

경남 비축창고 재건축 사업은 2025.4월부터 2026.6월까지 설계용역 및 기술용역을 거쳐 시설공사는 2026.7월부터 2027.12월까지 약 15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시설공사 공고 후 2026년 하반기 중 장기계속계약 형태로 계약체결 예정임.

[경남 비축창고 재건축 사업 추진 계획]

업 무 내 용	2025년				2026년				2027년				비고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약정체결													
용역 발주 협의, 입찰공고 및 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설계용역 및 기타 기술용역				예산 협의 등		예산 협의 등							용역기간 : 8개월 사업비 협의(설계적정성검토, 예산 등) 기간 별도
시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 체결													공사 및 용역발주 협의
시설공사													공사기간: 15개월 (철거기간 포함)
건설사업관리 용역													용역기간: 16개월('28년1월)

자료: 조달청

그런데 경남 비축창고 재건축 사업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기관이 건축주인 신축·증축·개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업무시설은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되는 에너지로 사용토록 하는 '공공기관 설치 의무화 제도'의 적용 대상이고,「창원시 경관 조례」적용을 받으므로, 경관조명, 태양광 설치를 위한 추가 설계 및 예산을 실시설계에 반영함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연장됨.[18)]

[경남 비축창고 재건축 사업 실시설계 변경을 반영한 소요예산(추계)]

(단위: 백만원)

구분	당초	증액	변경	비고
공사비	10,481	2,004	12,485	· 경관조명 관급자재 33백만원, 태양광 관급자재 1,325백만원, 공사비 646백만원
감리비	1,147	143	1,290	
시설부대비	26	2	28	
설계비	473	-	473	
합 계	12,127	2,149	14,276	

자료: 조달청

이와 같이 경관조명, 태양광 설치를 위한 추가 설계 및 예산을 실시설계에 반영함에 따라 향후 기획예산처와 예산 협의,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조건 등에 따라 사업추진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

특히 비축창고 재건축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비철금속 목표재고량 확보를 위한 추가구매 등이 함께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축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비철금속 활용이 필요한 국내 제조업체에게 원활한 제공이 어렵게 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조달청은 비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남 비축창고 재건축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재점검하여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사업집행 부진 예방과 사업의 조기 달성을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봄.

18) 당초: 2025.4.30.~2026.2.3. → 변경: 2025.4.30.~2026.8.31.

7. 회전자금 전출금 사업: 비철금속 재고순환 관리 철저 필요 등

가. 개 요

‘회전자금 전출금’ 사업은 조달특별회계의 잉여금 일부를 회전자금으로 적립하여 조달물자대금대지급 및 원자재 비축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800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되었음.[19]

[2025년도 회전자금 전출금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회전자금 전출금	80,000	80,000	-	-	80,000	80,000	-	-	80,000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회전자금은「정부기업예산법」제13조[20]에 따라 세입·세출 외로 운용되고 있으나, 그 재원이 정부 전입금 등으로 구성되고 비축물자 구입 등 정책적 지출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정부 재정자금의 성격을 가지는 자금임.

나. 검토의견

첫째, 조달청은 비철금속 방출 시 선입선출 등 적극적인 재고순환을 해야 함에도, 지방청별 여건과 이용업체의 선택 구매 등을 이유로 당해연도 입고분을 먼저 방출하여 재고관리에 소홀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선입선출 원칙을 바탕으로 비축창고별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재고관리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

19) 조달특별회계-회전자금 전출금(9701-971)(공공물자국)

20)「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회전자금의 보유 및 운용) ①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외에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회전자금”이라 한다)을 보유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가 회전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전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국고금 관리법」제3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비철금속은 장기 보관하면 손상 또는 변질로 인한 품질 저하가 우려되므로 비축물자를 방출할 때에는 이전 연도에 입고하여 이월재고로 남아 있는 물자를 최근에 입고한 물자보다 가급적 먼저 방출하는 선입선출 등의 방법을 통한 적극적인 재고순환을 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2021년부터 2026년 4월 말까지 비철금속 6종(구리, 알루미늄, 아연, 납, 주석, 니켈)에 대한 입고 및 출고 현황을 보면, 2024년과 2025년의 경우 이미 이전 연도에 입고한 물자가 있는데도 체계적 재고순환 방안 없이 당해연도에 입고한 물자를 먼저 방출함에 따라 2022년에 입고한 물자가 2026. 4. 30. 현재까지 재고로 보관되어 있는 등 재고순환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21)]

[2021년~2025년 구리(전기동) 입고 및 출고 현황[22)]]

(단위: 톤)

연도	이월재고 (기초연도 재고)	입고	방출(대여 제외)			연도말 재고	당해연도 입고(1) 중 2026.4월 말 기준 남아있는 연말 재고 현황
		당해연도 (1)	이월분	당해연도 입고분	소 계		
2021	□□	□□	□□	□□	□□	□□	-
2022	○○	○○	○○	○○	○○	○○	○○
2023	××	××	××	××	××	××	××
2024	○○	○○	○○	○○	○○	○○	○○
2025	□□	□□	□□	□□	□□	□□	□□

자료: 조달청

비철금속 장기 보관 시 손상·변질로 인한 품질 저하가 우려되므로 방출 시 선입선출 등의 방법으로 재고순환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나중에 들어온 당해연도 입고분을 이월된 재고보다 먼저 방출하는 등 재고순환하지 않아 장기보관으로 인한 산화, 변색 등으로 재고관리의 효과성 감소가 우려됨.

이에 조달청은 지방청간 입고 및 방출에 따른 소요되는 기간이 다르고, 이용업체에서 비축창고까지의 지리적 접근성 등을 반영하여 직접 방출 지방청을 선택 구매하다 보니 일부 품목에 대해 나중에 들어온 당해연도 입고분을 이월된 재고보다 먼저 방출하였다고 설명함.

---

21) 비철금속을 재고순환 하지 않는 사례: 비철금속 6종 중 구리, 주석, 아연은 2024년과 2025년의 경우 이미 이전 연도에 입고한 주괴가 이월재고로 남아 있는데도 당해연도에 입고한 물자를 먼저 방출함에 따라 2022년에 입고한 구리, 주석, 아연 주괴 일부가 2026. 4. 30. 현재까지 재고로 관리되고 있음.

2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및 「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비철금속별 재고량이 비공개자료로 분류되어 품목별 재고량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

향후 조달청은 선입선출을 원칙으로 비축창고별(9개소)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비축물자 재고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비축물자 입고 시에는 추후 방출 시 선입선출에 부합하도록 비축창고별 적재 보관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조달청은 비철금속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고, 비축물자 사업자의 전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비철금속의 국제 가격 동향을 나타내는 런던금속거래소 가격지수(LMEX지수)는 2021년 4,502선까지 상승한 후 2023년까지 하락세를 보였음. 그러나 이후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원자재 공급 차질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다시 반등하여, 2025년에는 5,095포인트까지 급등한 데 이어 2026년 4월 말 현재는 5,532포인트까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

[2021년~2026년 비철금속 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지수)

품 목	2021년 말	2022년 말	2023년 말	2024년 말	2025년 말	2026년 4월말
알루미늄	2,806	2,361	2,336	2,517	2,968	3,526
구리	9,692	8,387	8,476	8,706	12,504	13,016
납	2,329	2,335	2,031	1,922	1,962	1,938
아연	3,630	3,025	2,641	2,974	3,064	3,363
주석	39,635	24,800	25,175	28,900	40,900	49,550
니켈	20,925	30,425	16,300	15,100	16,485	19,325
LMEX(지수)[23]	**4,502**	**3,984**	**3,762**	**3,906**	**5,095**	**5,532**

자료: 조달청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비철금속 등 원자재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국내 중소 제조업체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조달청의 비축제도는 '재난·국가위기 등 비상시비축'과 '장단기 원활한 물자 수급 및 물가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비철금속 가격이 급등하여 중소기업의 원자재 조달 부담이 극에 달했던 2025년에 비철금속 방출 중단 사태가 총 30회[24]에 걸쳐 발생하였음.

이와 같은 방출 중단 현황을 감안할 때, 조달청이 국내 비철금속 시장의 수요 예측

23)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거래되는 6대 비철금속의 가중평균 가격지수

24) 2025년 방출 중단 실적 30회 중 1회는 비축물자 연도 이월 결산작업을 위한 판매중단임.

및 비축물자 확보 등 시장 변화에 상응하는 상시 대응 조치를 충분히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조달청은 향후 비축물자의 국내 수요 예측을 제고하고, 원자재 가격 급등기에 중소기업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축물량 확보 및 방출 관리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봄.

[2025년 비철금속 방출 중단 현황]

순번	기간	품명	사유
1	25.1.14.	알루미늄(서구산-업체)	주간판매한도량 소진
2	25.1.18~1.21.	알루미늄(서구산-업체)	주간판매한도량 소진
3	25.1.24.	알루미늄(서구산/비서구산-업체)	주간판매한도량 소진
4	25.1.24~2.4.	알루미늄(서구산-조합)	주간판매한도량 소진
5	25.2.7~2.11.	알루미늄(서구산/비서구산-업체)	주간판매한도량 소진
6	25.2.14~2.18.	알루미늄(서구산-업체/비서구산-업체,조합)	주간판매한도량 소진
7	25.2.19~3.4.	알루미늄(비서구산-조합)	주간판매한도량 소진
8	25.2.21~2.25.	알루미늄(비서구산-업체)	주간판매한도량 소진
9	25.2.24~2.25.	알루미늄(서구산-업체)	주간판매한도량 소진
10	25.2.28~3.4.	알루미늄(서구산/비서구산-업체)	주간판매한도량 소진
11	25.3.11.	알루미늄(비서구산-업체)	주간판매한도량 소진
12	25.3.20~4.1.	알루미늄(비서구산-조합)	주간판매한도량 소진
13	25.3.21~3.25.	알루미늄(비서구산-업체)	주간판매한도량 소진
14	25.3.27~4.1.	알루미늄(비서구산-업체)	주간판매한도량 소진
15	25.4.5~4.8.	아연	주간판매한도량 소진
16	25.4.8.	알루미늄(비서구산-업체)	주간판매한도량 소진
17	25.4.8~4.15.	알루미늄(비서구산-조합)	주간판매한도량 소진
18	25.4.10~4.15.	아연	주간판매한도량 소진
19	25.4.17~4.22.	아연	주간판매한도량 소진
20	25.4.24~4.29.	아연	주간판매한도량 소진
21	25.5.12~5.13.	아연	주간판매한도량 소진
22	25.6.10.	아연	주간판매한도량 소진
23	25.6.24.	아연	주간판매한도량 소진
24	25.8.1.	니켈(도금용)	판매가격 재고원가 이하
25	25.8.5.	니켈(도금용)	판매가격 재고원가 이하
26	25.8.6.	니켈(도금용)	판매가격 재고원가 이하
27	25.12.12.	전기동-업체	주간판매한도량 소진
28	25.12.18~12.24.	알루미늄	알루미늄주괴 비축 계획량 달성을 위한 방출중단
29	25.12.24.	아연	아연주괴 비축 계획량 달성을 위한 방출 중단
30	25.12.26~26.1.14.	전 품목	비축물자 연도 이월 결산작업을 위한 판매중단

자료: 조달청

비철금속의 비축 제도가 국가위기 등 비상시 대비와 비축 자원의 공급을 통한 수급 안정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려면, 충분한 비축과 더불어 적절한 시기에 적극적인 방출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나, 현재 조달청의 경우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구매원가보다 판매단가가 더 높은 경우에 판매방출을 실시하고 있고, 판매단가가 저렴한 시기에 방출할 경우 비싸게 사서 싸게 판다는 비판이 우려되고 책임 소재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방출 제도가 다소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봄.[25)]

조달청 방출 결정의 경우 평상시에는 계약담당관(전략비축물자과장)이 비축물자를 판매 또는 대여의 방법으로 방출할 수 있으며, 방출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 비축업무심의회에서 심의하고 있음.

이처럼 방출 절차 운영의 경직성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급등 등 일시적인 수급 불안이 발생하였을 때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안정화시키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므로, 비축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판매가격으로 방출되도록 하여 조달청 직원의 책임소재에서 보다 자유롭게 하는 등 비축물자 방출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또한 조달청은 비축물자 재판매(전매) 여부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024. 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전매행위 적발을 위해 2025년부터 국세청 협조를 받아 전년도 비축물자 이용 실적이 있는 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분석하여 전매행위 여부에 대해 전담직원 2명이 연간 1회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25)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25조(방출가격) ① 조달청장은 국내외 가격, 시장동향, 수급상황 등과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하여 산출 된 구매원가를 고려하여 방출가격을 정한다. 다만,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품목의 방출가격은 품목의특성에 따른 구매방법, 운용방식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물품대금 및 프리미엄
2. 부대비용(입항료, 하역비, 검수료, 검정료, 관세, 부가세, 운송비, 하차입고비, 화재보험료, 보관관리비, 출고상차비, 신용장수수료, 잡비용, 이자, 기타)
⑥ 계약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원가이하로도 방출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에 따른 방출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전쟁, 대규모 재난, 경제위기와 같은 국민경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2. 품목의 특성상 장기 보관시 품질저하, 유통기한 도래 등 상품가치 하락이 우려될 경우
3. 수요 감소에 따라 비축목표량 초과분을 처분할 경우
4. 원자재 파동 등으로 국내 원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5. 5년 이상 보관된 물자로써 재고순환이 필요하거나 구매자가 없는 경우
6. 대체재 개발 또는 산업동향 변화에 따라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7. 제24조의2에 따른 긴급방출의 경우

그런데 최근 3년간 전매행위 여부 조사 현황을 보면, 2023년 29건, 2024년 2건, 2025년 2건으로 연례적으로 전매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조달청은 현행 연간 1회 정기조사뿐 아니라 전담직원 확충, 수시조사, 정기조사 횟수 확대, 실태조사도 추가 도입하여 비축물자 전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023년~2025년 전매행위 여부 조사 현황]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조사기간	2023.3월~4월	2024.5월~8월	2025.5월~8월
조사대상	감사원 통보 전매의심 업체 88개사	2023년도 비축물자 이용업체 298개사	2024년도 비축물자 이용업체 297개사
조사품목	납, 니켈, 동, 아연, 알루미늄, 주석	좌 동	좌 동
조사자료	매입매출장, 매출세금계산서 등	매입매출장, 매출세금계산서 등	매입매출장, 매출세금계산서* 등 *2025년부터 국세청 자료 연계
조사방법	대상업체의 비축물자 배정 현황 및 매출 실적 등 대조	좌 동	좌 동
조사결과 (전매내역)	29개* 업체 적발 * 감사원에서 통보받은 88개 업체 중 전매 적발한 업체수	2개 업체 적발 A사 : 알루미늄(49,981kg) 전매 B사 : 알루미늄(25,993kg) 전매	2개 업체 적발 C사 : 알루미늄(2,245kg) 전매 D사 : 아연(8,961kg) 전매
조치(처분) 결과*	29개 업체 : - 이용업체 등록 말소 - 전매차익(72백만원) 환수 처분	- A사(자진신고) : 즉시 등록 말소하고, 자진신고 감안 등록제한 기간 1개월 처분 - B사(전매인정) : 즉시 등록 말소하고, 조사협조도 감안 등록제한 기간 3개월 처분	- C사(자진신고) : 즉시 등록 말소하고, 자진신고 감안 등록제한 기간 1개월 처분 / 전매차익(1백만원)은 환수 조치 - D사(자진신고) : 즉시 등록 말소하고, 자진신고 감안 등록제한 기간 1개월 처분

주 1) 전매업체 처분 : 적발업체 처분 시 등록제한 및 환수 금액은 전매차익에 따라 상이하나, 자료요청에 협조하거나 자진신고 시 감경 가능

2) ① 전매차익이 1천만원 이하 : 6개월, ② 전매차익이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12개월, ③ 전매차익이 5천만원 초과 또는 최근 1년간 전매 횟수 2회 이상 : 24개월(다만, 자료요청 협조 시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자진신고 시 1개월 이상으로 감경 가능)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기　타】

8.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조달청에 대해 시정요구 15건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시정 3건· 주의 1건· 제도개선 11건이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3	1	11	-	15
예비비	-	-	-	-	-	-	-
합계	-	-	3	1	11	-	15

조달청은 시정요구사항 15건에 대해 11건을 조치완료(조치율 73.3%)하고 4건을 조치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15	11	73.3	4
예비비	-	-	-	-
합계	15	11	73.3	4

국가데이터처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회계연도 국가데이터처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3억 3,800만원(△9.4%)이 적은 32억 4,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500만원(△3.7%)이 감소됨.[1)]

[2025회계연도 국가데이터처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3,610	3,610	3,366	△244	3,579	3,579	3,241	△338	△125
총수입	3,610	3,610	3,366	△244	3,579	3,579	3,241	△338	△125

문의: 02-6788-5685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5회계연도 국가데이터처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245억 7,300만원(△4.4%)이 적은 5,381억 9,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81억 100만원(31.2%)이 증가됨.

[2025회계연도 국가데이터처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425,267	425,267	410,091	△15,176	562,765	562,765	538,192	△24,573	128,101
총지출	425,267	425,267	410,091	△15,176	562,765	562,765	538,192	△24,573	128,101

나.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국가데이터처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35억 7,900만원으로, 32억 5,4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32억 4,1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6%)되고, 1,3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5회계연도 국가데이터처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3,579	3,579	-	3,579	3,254	3,241	13	-
합 계	3,579	3,579	-	3,579	3,254	3,241	13	-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국가데이터처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5,629억 600만원으로, 5,381억 9,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6%)되고, 247억 1,4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국가데이터처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562,765	562,765	65	76	-	562,906	538,192	-	24,714
합 계	562,765	562,765	65	76	-	562,906	538,192	-	24,714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5회계연도 말 기준 국가데이터처 자산은 전년 대비 40억 6,600만원이 감소된 2,870억 5,800만원으로, 이는 금융자산이 142억 9,400만원으로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무형자산이 18억 5200만원, 기타자산이 34억 8,100만원 각각 감소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9,900만원 감소된 4억 1,000만원으로 충당부채 2억 2,900만원의 감소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39억 6,700만원이 감소된 2,866억 4,800만원임.

2025회계연도 국가데이터처의 프로그램순원가는 3,681억 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38억 2,4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5,750억 1,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13억 7,500만원 증가하였음.

[2025회계연도 국가데이터처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 (A)	2024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287,058	291,124	△4,066	△1.4
		금융자산	14,294	13,027	1,267	9.7
		유·무형자산	270,692	272,544	△1,852	△0.7
		기타자산	2,072	5,553	△3,481	△62.7
	부 채		410	509	△99	△19.4
		차입부채	389	259	130	50.2
		충당부채	21	250	△229	△91.6
	순자산		286,648	290,615	△3,967	△1.4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368,109	234,285	133,824	57.1
	재정운영순원가		575,013	433,638	141,375	32.6
	재정운영결과		575,013	433,638	141,375	32.6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2025회계연도 국가데이터처 결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는 없음.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국가데이터처는 민생통계 생산·서비스, 역동경제와 기업경영 지원, 인구위기 대응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총 74개의 세부사업에서 통계 작성·제공, 국가통계의 신뢰 회복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음.

2025년도 국가데이터처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국가데이터처는 지방청PC의 윈도우11설치 사업을 편성된 예산 없이 타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는데, 필수적인 정보보안 수요는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적정 예산을 반영한 후 집행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가데이터처는 2027년 제66차 ISI 세계통계대회 개최 취소로 인한 예산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제행사 유치 시 재정분담 및 역할분담 합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셋째, 국가데이터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경제총조사 시범예행조사 조사지역을 확정한 후 예산을 편성하고, 조사원 수당 등 사업비 집행잔액을 활용하는 경우 홍보성 예산 확대보다는 경제총조사 시범예행조사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조사체계 검증 및 운영역량 강화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할 필요가 있음.

넷째, 부재·불응 가구의 증가로 인구주택총조사의 응답률이 하락하고 있으므로, 향후 국가데이터처는 인터넷조사 참여율을 높이는 등 조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국가데이터처는 농림어업총조사 조사명부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실제 조사규모에 부합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지방청정보화 사업: 필수 정보보안 예산에 대한 철저한 검토 필요

가. 개 요

‘지방청정보화’ 사업은 지방청 통계·행정업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전산장비(HW, SW)를 제공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7억 8,400만원 중 7억 5,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8%)되고, 3,400만원이 불용되었음.[2)]

[2025년도 지방청정보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정보시스템관리 (정보화)	5,941	5,941	-	132	6,073	5,975	-	99	5,996
지방청정보화	624	624	-	160	784	751	-	34	624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국가데이터처는 지방청PC의 윈도우11설치 사업을 편성된 예산 없이 타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는데, 필수적인 정보보안 수요는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적정 예산을 반영한 후 집행할 필요가 있음.

국가데이터처는 2025년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10 기술지원 종료(2025.10.14.)

2) 일반회계-정보시스템관리(정보화)(2031-306)(통계서비스국)

에 따른 보안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6개 지방청 PC 5,171대에 대해 윈도우11 전환 설치를 진행하였음.

윈도우10 기술지원이 종료될 경우 보안업데이트 등이 제공되지 않아 PC보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윈도우11 전환은 필수적인 정보보안 소요로 볼 수 있음.

[2025년 국가데이터처 지방청 윈도우11 전환 내역]

(단위: 백만원)

지방청	전환 수량	전환비용
경인지방데이터청	1,151	32
동북지방데이터청	738	19
강원지방데이터지청	392	10
호남지방데이터청	1,400	31
동남지방데이터청	873	22
충청지방데이터청	617	20
합계	5,171	133

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런데 국가데이터처는 관련 비용을 2025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고, 다른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사업비 1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5년도 지방청 윈도우11 설치비용 충당을 위한 예산 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 명(사업코드)	목-세목	금액
내역변경	통계DB통합및포털서비스(정보화) (2031-302)	관리용역비 (210-15)	△26
	S-GIS DB구축(정보화) (2031-304)	관리용역비 (210-15)	△25
	나라통계시스템구축(정보화) (2031-305)	관리용역비 (210-15)	△81
동일 세부사업 내 타 내역사업의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사용	정보시스템관리(정보화) (2031-306)	관리용역비 (210-15)	△28.5
	・정보시스템 및 사무용 전산장비 유지관리사업(2025~2026년)(1차년도) △4 ・2025년~2026년 통계청 업무포털(UBIS)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사업(1차년도) △3 ・정보자원관리\(EA운영) 및 PMS 유지관리사업(2025~2026년)(1차년도) △1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유지관리 사업(2025년~2027년)(1차년도) △20 ・2025~2027년 통계청 사이버보안관제센터 위탁운영 사업(1차년도) △0.5		
합계			△160.5

자료: 국가데이터처

윈도우11 전환 설치 비용을 2025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가데이터처는, 윈도우7(2020.10.14. 기술지원 종료)에서 윈도우10으로 전환 시 국가정보원과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 3월부터 보안지원 중단에 대비한 이행사항을 여러 차례 통보하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동일하게 국가정보원 등의 대응지침이 사전에 고지될 것을 기대하였으나, 해당 지침이 2025년 4월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통보되어 2025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설명임.

그러나 윈도우10에 대한 기술지원 종료는 이미 2023년부터 사전에 공지되어 있었고,[3] 행정기관의 정보보안 및 업무연속성 확보 측면에서 대응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타 부처의 대응지침 시달이 없었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등을 활용하여 대응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국가데이터처는 향후 PC 운영체제 교체 일정 등 예측 가능한 필수 정보보안 수요는 사전에 면밀히 계획을 수립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임.

3) "윈도우10은 2025년 10월 14일 지원 종료에 도달함. 현재 버전인 22H2가 윈도우10의 최종 버전이 될 예정임." Windows 10, version 22H2 end of support date updated (Last updated on 04/28/2023) (https://learn.microsoft.com/en-us/lifecycle/announcements/windows-10-22h2-end-of-support-update)

2. 국가통계 발전 사업: 연례적인 세목조정 지양 필요

가. 개 요

‘국가통계 발전’ 사업은 국가통계발전포럼 개최,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 통계기반 주요정책 지원 등을 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1억 2,900만원 중 11억 1,0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3%)되고, 1,900만원이 불용되었음.[4)]

[2025년도 국가통계 발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가통계정책추진	6,673	6,673	-	-	6,673	6,458		215	6,751
국가통계 발전	1,129	1,129			1,129	1,110		19	1,209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국가데이터처는 국가통계발전포럼 사업의 실제 수행구조를 예산 편성 단계부터 충실히 반영하여 반복적인 세목조정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국가데이터처는 국가통계 주요 현안에 대한 생산자와 이용자의 소통 확대 및 국가통계 발전방향 논의를 위하여 2011년부터 매년 국가통계발전포럼을 개최하고 있음.

2025년 제14회 국가통계발전포럼은 ‘센서스 100년, 앞으로의 국가통계 100년’을 주제로 8월 28일 개최되었으며, 관련 예산은 일반용역비 1억 1,400만원 등 총 1억 2,240만원이 집행되었음.

4) 일반회계-국가통계정책추진(1031-301)(통계정책국)

[2025년도 국가통계발전포럼 비목별 예산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비목	편성내역	예산액	세목조정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일반수용비	발표자 수당, 자료집 인쇄 등	28	△28	-	-	-
임차료	버스 및 장비 임차	3	△3	-	-	-
국내여비	포럼 참가자 여비	3.5	-	3.5	3.4	0.1
사업추진비	업무 간담회	5	-	5	5	-
일반용역비	포럼 개최 용역비	88	31	119	114	5
합계		127.5	-	127.5	122.4	5.1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처는 2025년도 국가통계발전포럼 개최를 위하여 일반수용비 2,800만원, 임차료 300만원, 일반용역비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일반수용비 및 임차료 예산을 일반용역비로 세목조정하여 일반용역비를 1억 1,900만원으로 증액하고 행사대행 용역비로 집행하였음.

[2025년 국가통계발전포럼 개최 목적의 세목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세목조정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025.3.17.)	국가통계정책추진 (1031-301)	210-01	28	국가통계정책추진 (1031-301)	210-14	제14회 국가통계발전포럼 행사대행 용역
세목조정 (2025.3.17.)	국가통계정책추진 (1031-301)	210-07	3	국가통계정책추진 (1031-301)	210-14	

자료: 국가데이터처

이러한 예산 조정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국가데이터처는 2023년과 2024년에도 일반수용비를 일반용역비로 조정하여 행사대행 용역비를 충당하였음.

[2023~2024년 국가통계발전포럼 개최 목적의 세목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023.3.22.)	국가통계정책추진 (1031-301)	210-01	18	국가통계정책추진 (1031-301)	210-14	제12회 국가통계발전포럼 행사대행 용역
세목조정 (2024.3.26.)	국가통계정책추진 (1031-301)	210-01	25	국가통계정책추진 (1031-301)	210-14	제13회 국가통계발전포럼 행사대행 용역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처는 국가통계발전포럼 사업을 행사대행 용역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세목조정을 하였다는 설명이나, 이러한 반복적인 세목조정은 적정하지 않으므로, 국가데이터처는 국가통계발전포럼의 실제 사업수행 방식과 집행구조를 예산편성 단계부터 정확히 반영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3. 국제통계협력강화 사업: 2027년 세계통계대회 개최 취소 및 관련 예산 낭비 부적정

가. 개 요

‘국제통계협력강화’ 사업은 국제회의 참가 및 개최,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등을 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3억 1,500만원 중 22억 1,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6%)되고, 1억 100만원이 불용되었음.[5)]

[2025년도 국제통계협력강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제통계협력강화	2,315	2,315	-	-	2,315	2,214	-	101	3,153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국가데이터처는 2027년 제66차 ISI 세계통계대회 개최 취소로 인한 예산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제행사 유치 시 재정분담 및 역할분담 합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국가데이터처는 2023년 7월, 2027년 개최되는 제66차 국제통계기구(ISI: Inter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 세계통계대회(WSC: World Statistics Congress)[6)]를 유치하였다고 발표하였음. 국가데이터처는 동 대회를 통하여 국내 통계·데이터 기술의 국제적 확산, 국제통계 협력 강화, 국내 전문가의 국제무대 진출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였으며,[7)], 총사업비는 37억원으로 계획하였음.

---

5) 일반회계-국제통계협력강화(7031-303)(국제협력담당관)

6) 세계통계대회는 통계학자, 정부·국제기구 및 민간기업의 통계전문가들이 모여 통계에 관한 이론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는 대회로 1887년부터 2년마다 개최되고 있음

7) 통계청 보도자료, ‘우리나라, 국제통계기구(ISI) 2027년 세계통계대회(WSC) 유치 성공’ (2023.7.11.)

[개최 취소된 2027년 제66차 ISI 세계통계대회 개요]

○ 기간: 2027년 7월 8일 ~ 7월 15일(잠정) ○ 장소: 부산 벡스코 컨벤션센터 ○ 참가 규모: 외국인 2,000명, 내국인 1,000명 ○ 총사업비: 37억원 ○ 주요 행사: 논문 발표, 국제기구 및 각국 통계기관장 협력회의, 국제통계기구(ISI) 이사회・위원회・총회, 시상식 등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7년 제66차 ISI 세계통계대회(WSC) 정책성 등급 조사 연구용역 결과보고서」(2024.8.)

국가데이터처는 대회 유치 이후 2024년 4월 ISI와 MOU를 체결하고 2025년 10월부터 세부 합의문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음. 그러나 세부 합의문 작성 과정에서 재정 및 역할 분담 등에 대해 국가데이터처와 ISI 간의 이견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ISI는 국가데이터처에 2025년 12월 대회 개최 취소 및 개최지 변경(잠비아, 루사카)을 통보하였음.

[2027년 제66차 세계통계대회 유치·취소 경과]

시기	내용
2023.3.	국가데이터처, 2027년 제66차 세계통계대회 유치 제안서 제출 〈국가데이터처의 재정 지원 부담 부문 제안 내용〉 대회 개최에 소요되는 대회장 및 PCO 등 일정 부문의 비용을 국가데이터처가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예정(30억원 내외). 단, 예산규모 및 지원내용(외빈초청, 홍보 등)은 ISI 사무국과 협의를 통해 증액 등 변동 가능
2023.5.	ISI 실사단 국가데이터처 방문 〈재정지원 및 협력 프로세스에 대한 국가데이터처의 입장〉 기존의 유사한 규모 국제대회에 할당된 한국 정부의 예산 지원액을 기반으로 30억을 제안하였고, 예산이 확정 이후 운영 권한은 국가데이터처와 ISI의 협의에 따르므로, 개도국 역량개발을 위한 참가자 초청 등에 필요한 예산을 유연하게 할당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임
2023.7.	2027년 제66차 세계통계대회 한국(부산)개최 최종 결정
2024.4.	제66차 ISI 세계통계대회 개최를 위한 대한민국 국가데이터처 · ISI · 부산광역시 · 한국통계학회 간 양해각서(MOU) 체결 제2조 역할과 책임 b. 국가데이터처의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ii) 한국 정부의 예산절차에 따라 개최지 선정 입찰시 제시한 지원금액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확보하는 예산 범위내에서 a)행사장 비용(PCO 선정, 회의장소 제공 등) b)개도국 등 통계 역량개발 프로그램 지원 c)저개발 국가 초청 경비 등 필요한 부분을 지원한다. 필요시, 향후 각 부문별 세부 예산내역 및 집행 사항에 대해서는 ISI와 별도 협의한다.

시기	내용
2025.10.~11.	ISI, 세부 합의문 초안 제시 국가데이터처, 세부 합의문 수정안 제시 개·폐회식, 리셉션, 시상식 등의 비용 부담, 파트너사 후원금·전시장 수입 귀속 주체 등에 대해 이견
2025.11.20.	ISI, 국가데이터처에 11.30.까지 합의 촉구
2025.12.3.	ISI, 2027년 제66차 세계통계대회 개최 취소 및 개최지 변경(잠비아, 루사카) 통보

자료: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가데이터처와 ISI 간 세부 합의문 관련 주요 이견 사항]

구분	ISI 입장	국가데이터처 입장
개·폐회식, 리셉션, 갈라디너 등 행사 비용 부담	개·폐회식 문화행사, 갈라디너 공연, 환영리셉션, 회원 리셉션, 시상식, 식음료, AV, 보험 등을 개최국이 부담	대부분의 비용 부담은 수용하되, 정부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확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세부 내용은 조정 필요
개도국 지원 및 통계역량 강화 프로그램	저개발국 발표자(40~50명)의 등록비·항공료·체재비 지원과 통계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비를 개최국이 부담	원칙적으로 지원에는 동의하지만 정부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세부 규모는 추후 협의
등록수입 귀속	참가등록비는 ISI가 관리하고 ISI 운영비, 사무국 인건비, 집행위원·직원 출장비 등에 사용하며 ISI에 귀속	등록수입 자체보다는 국내 참가자 지원 방안을 요구. 할인등록 등에 따른 비용은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
후원금 및 전시장 수입 귀속	국내 후원금은 개최국에, 국제 후원금은 ISI에 귀속	기본 구조에는 동의하였으나 국내 파트너 모집과 후원 규모 등은 국내 기관과 추가 협의 필요
행사 운영 권한	ISI가 학술프로그램, 단기강좌, 위성회의, 웹사이트, 등록시스템, 마케팅 등 대회 전반 운영을 담당	국내 행정절차, 예산, 부산시·한국통계학회 등과의 조정 권한 존중 요청
협상 일정 및 계약 체결	2025년 11월 말까지 최종 합의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대회 준비를 계속하기 어려움	국내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정부 예산 절차상 시간이 필요하므로 지속 협의를 통해 합의 필요

자료: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가데이터처는 ISI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회 개최 취소를 통보했다는 설명임. 하지만 국가데이터처가 대회 유치 이후 2년 이상 협의를 진행하였음에도 재정부담 및 역할 분담에 관한 최종 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한 것은 사업 추진 전반이 면밀하게 준비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임.

또한 국가데이터처는 대회 유치 이후 정책성 등급조사 연구용역(4,500만원),[8] 대회

8) 정책성 등급 조사는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기획예산처훈령) 및 「국제행사관리지침」(기획

홍보물 제작(5,000만원), 제65차 세계통계대회에서 홍보부스 운영(2,000만원) 등 대회 준비를 위한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대회 개최가 무산되면서 사실상 불필요한 매몰비용만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2027년 제66차 세계통계대회 개최 관련 예산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일자	집행내역	집행액
2024.8.	2027년 제66차 세계통계대회 정책성 등급 조사 연구용역	45
2025.4.	2027년 제66차 세계통계대회 홍보물 제작 용역 사업	50
2025.6.	2027년 제66차 세계통계대회 준비를 위한 영상장비 임차	10
2025.9.	2027년 제66차 세계통계대회 관련 과학프로그램위원회 화상회의 통역비 지급	1.2
2025.9.	2027년 제66차 세계통계대회 홍보부스 운영 [장소: 2025년 제65차 세계통계대회(네덜란드 헤이그)]	20
2025.10.	2027년 제66차 세계통계대회 관련 자료 번역료 지급	0.5
합계		126.7

자료: 국가데이터처

따라서 국가데이터처는 향후 국제행사 유치 시 재정지원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개최권 확보 이후에는 재정분담 및 역할 분담에 관한 최종 합의를 조속히 확정하여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사업취소로 인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예산처훈령)에 따라 국제행사의 개최 필요성과 국고지원의 적정성을 사전에 평가하는 절차임. 주요 조사기준은 행사개최의 공익성, 행사개최 계획의 우수성, 주관기관의 관리역량, 국고지원 요구의 적절성 등이며, 평가결과(점수)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에 따라 총사업비 대비 국고지원의 상한 비율을 차등하여 적용함. 총사업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국제행사는 정책성 등급이 1~3등급(60점 이상)인 경우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 지원하는데, 2027년 제66차 ISI 세계통계대회는 87.29점을 받았음.

4. 경제총조사 시범예행조사 사업: 조사지역 선정에 대한 사전협의 미흡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부적정 등

가. 개 요

‘경제총조사 시범예행조사’ 사업은 2026년 실시하는 경제총조사에 대비하여 2차례의 시범조사(2023・2024년)에서 발굴된 개선사항과 조사방법・조사항목 등을 최종 점검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4억 2,700만원 중 11억 7,700만원이 집행(집행률 82.5%)되고, 2억 5,000만원이 불용되었음.[9)]

[2025년도 경제총조사 시범예행조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경제총조사	1,427	1,427	-	-	1,427	1,177	-	250	65,924
시범예행조사	1,427	1,427	-	-	1,427	1,177	-	250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첫째, 국가데이터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경제총조사 시범예행조사 조사지역을 확정한 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국가데이터처는 2025년 경제총조사 시범예행조사 예산을 편성하면서 54,000개 사업체 조사, 총 조사인력 302명, 조사기간 36일을 계획하였음. 그러나 실제 사업 수행 과정에서는 조사지역 변경에 따라 조사규모가 40,000개 사업체로 축소되고, 총 조사인력은 218명, 조사기간은 28일로 조정(2025.6.17.~7.21.)되었음.

9) 일반회계-경제총조사(3033-306)(경제통계국)

[경제총조사 시범예행조사 변경내역]

구분	예산 편성	실제 수행내용	예산 편성과 실제 수행내용 차이	변경 사유
조사지역	서울·부산의 대규모 구	부산 북구, 경기 안성시, 경북 경산시	△1개 지역	지자체와의 협의 미비
조사규모	54,000개 사업체	40,000개 사업체	△14,000개 사업체	조사지역 사업체 규모 반영
조사인력	302명 (관리자 52명, 조사원 250명)	218명 (관리자 44명, 조사원 174명)	△84명 (관리자 △8명, 조사원 △76명)	조사규모 및 조사일수 반영
조사일수	36일	28일	△8일	

자료: 국가데이터처

이에 대해 국가데이터처는 2010년 1차 경제총조사부터 시범예행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별 대표성과 사업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서울과 부산 지역의 대규모 구에서 실시하였기 때문에 이번 시범예행조사도 그간의 사례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10][11]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가중 및 자체 통계조사 실시 등으로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시범예행조사 실시에 협조적인 지역으로 변경하였다고 하였음.[12]

그러나 시범예행조사는 본조사 직전 실시되는 최종 준비조사로 조사지역·조사규모 및 현장운영 방식 등 핵심 사업요소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상당 수준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국가데이터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 없이 그간의 관행을 전제로 사업을 계획하여 조사지역 등 사업계획에 변경이 발생하였고, 결과적으로 편성된 예산도 상당액이 불용되었음.

또한 국가데이터처는 부산 북구 등이 소규모이지만 우리나라 전체 산업구조를 골고

10) 서울은 산업별 분포(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업, 제조업)가 우리나라 전체 산업별 분포와 유사하고 신산업 사업체 포착에 유리하며, 부산은 서울에 없는 항만, 해운 등 운수업 사업체가 다수 분포

11) 경제총조사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 실시 지역

구분	1차 시험조사	2차 시험조사	시범예행조사
1차(2010년 기준)	부산 사상구, 경기 안성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기 수원시	서울 강서구, 부산 부산진구, 제주 제주시
2차(2015년 기준)	부산 금정구, 대구 수성구	대전 유성구	서울 구로구, 부산 사상구
3차(2020년 기준)	인천 서구, 광주 북구	경기 의왕시	서울 구로구, 부산 수영구

자료: 국가데이터처

12) 국가데이터처는 부산 북구는 도소매업·운수업·숙박음식점 비율이 높고, 경기 안성시와 경북 경산시는 제조업 비율이 높아 우리나라 전체 산업구조를 골고루 반영하고 있다는 설명임

루 반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나, 시범예행조사는 본조사에 앞서 실제 조사환경을 최대한 유사하게 구현하여 조사체계와 운영방식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조사지역 변경으로 조사규모가 축소되고 당초 계획한 조사환경이 변경됨에 따라 시범예행조사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검증 범위와 실증자료도 당초 계획에 비해 제한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국가데이터처는 향후 경제총조사 시범예행조사를 위한 예산편성 단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가능성, 조사환경 및 수행여건 등에 대한 협의를 충실히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조사규모·조사인력 등 사업계획을 보다 충실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가데이터처는 조사원 수당 등 사업비 집행잔액을 활용하는 경우 홍보성 예산 확대보다는 경제총조사 시범예행조사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조사체계 검증 및 운영역량 강화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할 필요가 있음.

예산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조사지역 및 규모 조정, 조사인력 운영 규모 축소로 인해 일용임금 2,700만원, 조사원 수당 3억 3,200만원[13], 조사원 교통지원비 2,700만원, 고용부담금 1,400만원 등 인건비성 경비 4억원이 집행되지 않았음.

[경제총조사 시범예행조사 예산 편성 및 집행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비목	내역	예산액(A)	집행액(B)	예산액과 집행액 차이(A-B)
일용임금	조사관리자, 입력·내검·분석요원 인건비	255	228	27
일반수용비	조사원 수당	722	390	332
	조사원 교통지원비	54	27	27
	조사표 및 조사용품	103	111	△8
	홍보비(홍보용품, 언론홍보 등)	97	220	△123
	상황실 운영	23	14	9
	자문, 번역, 회의 등	15	56	△41
	소계	1,014	818	196
공공요금및제세	안내문 우편요금, 콜센터 전화요금	32	30	2
임차료	사무집기류 등 임차	21	20	1
일반용역비	콜센터 운영·홍보 컨설팅 용역 등	50	41	9

13) 국가데이터처는 통계조사 시 조사관리자, 조사지원담당자, 조사원으로 구분하여 조사인력을 채용하는데 조사관리자와 조사지원담당자는 민간근로자로, 사업체·가구 등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조사원은 도급계약방식(조사완료 시 수당 지급)으로 고용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

비목	내역	예산액(A)	집행액(B)	예산액과 집행액 차이(A-B)
국내여비	국내여비	15	15	0
사업추진비	사업추진비	9	9	0
손실보상금	손실보상금	2	1	1
고용부담금	조사관리자, 입력·내검·분석요원 4대보험료	29	15	14
합계		1,427	1,177	250

자료: 국가데이터처

반면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조사표 및 조사용품비 3,100만원, 홍보비 1억 3,600만원 등 1억 6,700만원이 추가 집행되었음. 신규 집행 내역은 보이스 레코딩 기능 조사원증 케이스 구매, 온라인조사 참여 인센티브, 사후 감사장 발송, 경제총조사 인지도 제고 홍보 등임.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사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내역	집행일	집행액
조사표 및 조사용품	시범예행조사용 보이스 레코딩 기능 조사원증 케이스	5.28.	23
	경제총조사 인지도 제고용 영문 리플릿 제작	12.9.	8
	소계		31
홍보비	시범예행조사 홍보용 버스랩핑(부산)	7.23.	28
	시범예행조사 온라인조사 참여인센티브(모바일상품권)	8.20.	50
	시범예행조사 감사장 및 사후 홍보자료 제작	9.5.	29
	경제총조사 인지도 제고용 키링 제작	12.26.	10
	경제총조사 인지도 제고용 통계센터 벽면 활용 홍보코너 구성	12.26.	14
	경제총조사 인지도 제고용 버스랩핑(국가데이터처 관용차량), 대형 현수막 제작	12.26.	5
	소계		136
합계			167

자료: 국가데이터처

시범예행조사의 조사참여율 제고를 위해 일정 수준의 홍보활동은 필요하다고 보이나, 시범예행조사의 핵심 목적은 본조사에 대비한 조사운영 체계 및 조사방식 검증에 있다는 점에서 조사규모 축소로 발생한 여유재원이 조사 핵심기능 강화보다 홍보성 집행으로 소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14)]

14) 「국가재정법」 제45조 및 제46조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예외적으

특히 2026년에 실시하는 경제총조사 본조사(2026.6.1.~2026.7.22.) 예산에는 홍보 예산 62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말에 경제총조사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2026년도 경제총조사 홍보 예산]

(단위: 백만원)

비목	내역	예산액
일반수용비(210-01)	인터넷조사 참여자 인센티브(약 17,000개 × 3만원)	518
	지자체 자체홍보 등	1,927
일반용역비(210-14)	홍보 콘텐츠 제작 등	3,775
합계		6,220

자료: 국가데이터처

따라서 국가데이터처는 조사원 수당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불용처리하고, 불가피하게 활용하는 경우 경제총조사 시범예행조사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조사체계 검증 및 운영역량 강화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이·전용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사규모 축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은 불용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 시범예행조사의 핵심 목적 범위 안에서 사용해야 함.

5. 인구주택총조사 사업: 부재·불응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인구주택총조사’ 사업은 우리나라 모든 인구와 가구, 주택의 규모 및 특성을 파악하여 정책 수립·학술연구 및 기업경영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143억 6,900만원 중 1,043억 2,000만원이 집행(집행률 91.2%)되고, 100억 4,900만원이 불용되었음.[15]

[202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인구주택총조사	115,826	115,826	-	△189	115,637	105,585	-	10,051	5,595
인구주택총조사	114,559	114,559	-	△189	114,369	104,320	-	10,049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거처를 대상으로, 전체 가구의 20%에 해당하는 약 500만 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진행되었음. 조사는 2025년 10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약 한 달간 시행되었고, 인터넷·모바일·전화를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우선 진행한 뒤 미응답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태블릿PC를 지참해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나. 검토의견

부재·불응 가구의 증가로 인구주택총조사의 응답률이 하락하고 있으므로, 향후 국가데이터처는 인터넷조사 참여율을 높이는 등 조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5년에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의 응답률은 92.2%로 2015년 97.6%, 2020년 96.3%에 비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15) 일반회계-인구주택총조사(3034-307)(조사관리국)

불응과 부재로 인해 조사되지 못한 가구는 2015년 8만 8,000가구(2.4%), 2020년 15만 2,000가구(3.8%), 2025년 35만 1,000가구(7.9%)로 증가하였음. 이는 조사대상 가구수 증가의 영향도 있을 수 있으나 최근 1인가구 증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강화 등으로 조사원 방문에 대한 응답 기피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인구주택총조사 응답률]

(단위: 천 가구, %)

구분	조사 대상	조사 완료	인터넷			전화	방문면접			부재	불응
			소계	모바일	PC		소계	태블릿	종이		
2015 (10.24.~11.15.)	3,598	3,510	1,750	-	1,750	-	1,760	-	1,760	48	40
	(100.0)	(97.6)	(48.6)	-	(48.6)	-	(48.9)	-	(48.9)	(1.3)	(1.1)
2020 (10.15.~11.18.)	4,057	3,905	1,551	1,164	387	231	2,123	2,091	32	104	47
	(100.0)	(96.3)	(38.2)	(28.7)	(9.5)	(5.7)	(52.3)	(51.6)	(0.8)	(2.6)	(1.2)
2025 (10.22.~11.18.)	4,485	4,134	1,608	1,409	199	172	2,353	2,346	8	300	52
	(100.0)	(92.2)	(35.9)	(31.4)	(4.4)	(3.8)	(52.5)	(52.3)	(0.2)	(6.7)	(1.2)

주) 괄호 안은 비율
자료: 국가데이터처

응답방식의 측면에서는 인터넷조사 확대를 통해 조사 효율성을 높이고 조사원 의존도를 완화하려는 정책 방향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조사는 2015년 48.6%에서 2020년 38.2%, 2025년 35.9%로 오히려 하락하였음.

반면 방문면접조사 비율은 2015년 48.9%에서 2020년 52.3%, 2025년 52.5%로 증가하였음. 방문면접조사는 조사원 채용, 교육, 관리 등에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조사방식으로, 국가데이터처는 인구주택총조사 수행을 위해 조사원 등 29,911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채용된 인원은 776명이 적은 29,135명이었음.

[인구주택총조사 인력 채용 계획 및 실제 채용 현황]

(단위: 명)

구분	업무	채용 계획	실제 채용	계획인원과 실제 채용인원 차이
총관리자	조사원 지도 및 현장조사 업무 총괄	252	252	0
조사관리자	부재가구 확인 및 불응가구 설득 지원, 조사자료 내용점검	2,683	2,674	△9
조사지원담당자	조사원 지침교육, 조사용품 수령·배부·관리 등	975	888	△87
도급조사원	조사안내문 배부, 방문조사 실시, 응답 거부 가구 설득 등	26,001	25,321	△680
합계		29,911	29,135	△776

자료: 국가데이터처

또한 2025년 총조사 과정에서 조사원 채용 미달 등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조사기간이 연장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조사원 확보 어려움으로 인해 총조사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2025 인구주택총조사 시 조사원 채용 미달 등의 사유로 조사기간이 연장된 지역]

(단위: 백만원)

연번	지역(시군구)	조사 완료일	조사 기간 연장 사유	조사원(명)	
				목표 인원	채용 인원
1	서울 동작구	11.21.	취약 조사구 추가 조사	190	179
2	서울 관악구	11.21.	일부 조사원 조사 내용 확인	305	300
3	경기 수원시 권선구	11.23.	조사원 채용 미달	159	133
4	경기 안양시 동안구	11.19.	일부 조사원 진척률 부진	128	122
5	경기 평택시	11.30.	조사원 채용 미달	300	276
6	경기 양평군	11.22.	일부 조사원 진척률 부진	69	69
7	충남 당진군	11.20.	중도포기 조사원 진척률 부진	108	99
8	충남 예산군	11.20.	취약조사구 조사 진행	45	45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의 주요 정책 수립과 재정배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대표적인 조사인 만큼, 국가데이터처는 응답률 하락과 부재·불응 증가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행정자료 활용 확대, 모바일 중심의 응답환경 개선, 응답자 편의성 제고 등을 통해 인터넷조사 참여율을 높이고 방문면접조사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변화하는 조사환경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6. 농림어업총조사 사업: 모집단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통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가. 개 요

‘농림어업총조사’ 사업은 농림어업을 경영하는 가구와 가구원의 규모·구조·분포·특성을 파악하여 정책 수립과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555억 2,600만원 중 469억 3,200만원이 집행(집행률 84.5%)되고, 85억 9,400만원이 불용되었음.[16)]

[2025년도 농림어업총조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농림어업총조사	56,447	56,447	-	△920	55,526	46,932	-	8,594	3,354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국가데이터처는 농림어업총조사 조사명부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실제 조사규모에 부합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농림어업총조사는 전국의 모든 농가·임가·어가와 행정리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5년 주기의 전수조사로, 2025년에는 12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34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음.

국가데이터처는 2025년도 예산 편성 시 조사대상 가구 수를 278만 가구로 추정하여 조사원 인건비, 조사표 및 조사용품 제작비, 우편요금 등을 편성하였으나, 이후 행정자료 연계 및 조사명부 정비를 통해 최종 조사대상 가구 수가 234만 가구로 확정됨에 따라 예산 편성 당시 추정치보다 44만 가구(15.8%) 감소하였음.

그 결과 조사대상 가구 수에 비례하여 집행되는 조사원 수당, 조사관리자 인건비,

16) 일반회계-농림어업총조사(3035-308)(사회통계국)

조사표 및 조사용품 제작비 등의 집행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었고, 관련 예산의 집행률도 55.5~86.6% 수준에 그쳐 인건비 등 주요 비목에서 총 80억 3,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2025년도 농림어업총조사 인건비 등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비목	구분	예산액 (A)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불용액	집행률 (B/A)
일용임금	조사관리자 등 인건비	7,818	△150	7,668	6,771	897	86.6
일반수용비	조사원 수당	35,589		35,589	29,909	5,680	84.0
	조사원 교통지원비	2,633		2,633	2,019	614	76.7
	지침서, 조사표, 조사용품 등	2,428		1,535	1,347	188	55.5
공공요금 및 제세	조사안내문 우편 발송 등	1,548		1,548	1,114	434	72.0
고용부담금	조사관리자 등 4대보험료	877		877	659	218	75.1
합계		50,893	0	49,850	41,819	8,031	82.2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처는 2025년 예산 편성 당시 농지대장 등 22종의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조사대상을 추정하였고, 이후 2024년 가구주택기초조사 결과, 농림어업총조사 시범예행조사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병원 입소자 명부 및 취업통계등록부 등을 추가로 연계·분석하여 조사대상을 정비하였다는 설명임.

[농림어업총조사 조사대상 명부 정비 내역]

(단위: 가구)

시기	자료 이용 전 조사대상	자료 이용 후 조사대상	자료 이용 전·후 차이	정비내용
1차 (예산편성 전)	-	2,775,642	-	농지대장, 수협조합원가입명부, 임업경영체 등 행정자료(22종)의 경영주 정보 연계 검토
2차 (2025.4.1. ~2025.7.31.)	2,775,642	2,377,636	△398,006	가구주택기초조사(2024.11.8.~11.27.) 결과 및 농림어업총조사 시범예행조사(2024.12.3.~12.18.) 결과 반영
3차 (2025.4.1. ~2025.7.31.)	2,377,636	2,344,925	△32,711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병원 입소자 명부(2024.11.1. 기준) 및 국가데이터처 취업통계등록부(2023년 기준 자료, 2025.6.생산) 연계 검토

주) 2차와 3차는 조사명부 최종 작성 단계에서 동시에 순차 적용되었으며, 최종 적용 순서에 따라 차수 구분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처는 농림어업총조사 조사명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자료 연계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조사대상 가구 수가 예산 편성 당시 추정치보다 15.8% 감소하였다는 것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활용한 조사명부의 정확성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예산 편성 규모와 최종 조사대상 규모 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여 대규모 불용이 발생한 점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국가데이터처는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조사명부 작성에 활용할 수 있는 행정자료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고, 사전에 확보 가능한 자료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적극 반영함으로써 조사대상 규모 산정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아울러 정확한 조사명부에 기반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과다편성과 불용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기　타】

7.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국가데이터처에 대해 시정요구 14건(중복 1건 포함)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시정 3건・주의 1건・제도개선 11건이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3	1	11	1	14
예비비	-	-	-	-	-	-	-
합계	-	-	3	1	11	1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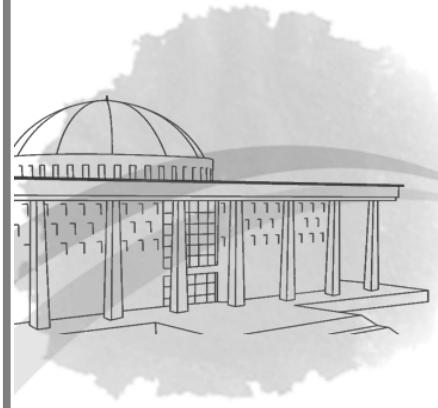
국가데이터처는 시정요구사항 14건에 대해 11건을 조치완료(조치율 78.6%)하고 3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14	11	78.6	3
합계	14	11	78.6	3

교육위원회



교 육 부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1조 368억 9,400만원(12.9%)이 적은 6조 9,755억 8,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56억 7,000만원(6.2%)이 증가됨.[1)]

[2025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354,156	354,156	561,173	207,017	492,265	492,265	407,269	△84,996	△153,904
기 금	6,903,149	6,903,149	6,008,696	△894,453	7,520,218	7,520,218	6,568,320	△951,898	559,624
총수입	7,257,305	7,257,305	6,569,919	△687,436	8,012,483	8,012,483	6,975,589	△1,036,894	405,670

문의: 02-6788-5683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5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4,294억 1,600만원(0.4%)이 많은 103조 2,762억 6,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조 4,202억 900만원(11.2%)이 증가됨.

[2025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89,614,625	89,614,625	86,363,800	△3,250,825	98,089,605	95,845,839	96,394,544	548,705	10,030,744
기 금	6,174,208	6,174,208	6,492,254	318,046	6,778,798	7,001,008	6,881,719	△119,289	389,465
총지출	95,788,833	95,788,833	92,856,054	△2,932,779	104,868,403	102,846,847	103,276,263	429,416	10,420,209

나.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9조 7,856억 2,500만원으로, 19조 7,759억 4,1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9조 7,403억 6,2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8%)되고, 355억 4,7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3,1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371,737	371,737	-	371,737	210,024	174,627	35,365	3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032	5,032	-	5,032	1,074	962	112	-
- 지역자율계정	-	-	-	-	167	55	112	-
- 지역지원계정	5,032	5,032	-	5,032	904	904	-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	-	-	3	3	-	-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	-	-	-	0	0	-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102,013	3,102,013	-	3,102,013	3,257,757	3,257,757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6,663,592	16,306,843	-	16,306,843	16,307,086	16,307,015	70	-
합 계	20,142,374	19,785,625	-	19,785,625	19,775,941	19,740,362	35,547	31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17조 1,350억 5,800만원으로, 116조 8,452억 2,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8%)되고 808억 4,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089억 9,2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99,322,129	97,078,363	12,013	11,866 △11,866	699,993	97,800,572	97,666,292	18,675	115,60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25,595	325,595	-	-	-	325,595	314,147	-	11,448
- 지역자율계정	8,309	8,309	-	-	-	8,309	8,309	-	-
- 지역지원계정	317,005	317,005	-	-	-	317,005	305,557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200	200	-	-	-	200	200	-	-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81	81	-	-	-	81	81	-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102,013	3,102,013	-	-	128,852	3,230,865	3,230,865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6,127,278	15,770,529	3,530	3,913 △3,913	-	15,778,027	15,633,923	62,165	81,939
합 계	118,877,015	116,276,500	15,543	15,779 △15,779	828,845	117,135,058	116,845,227	80,840	208,992

주) 총계 기준

다. 기금 결산

2025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14조 2,783억 1,200만원으로, 12조 5,114억 4,2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2조 4,355억 5,6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4%)되고, 732억 6,5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26억 2,0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입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3,713,273	13,713,273	11,872,864	11,838,360	31,940	2,564
사학진흥기금	565,039	565,039	638,578	597,196	41,325	56
합 계	14,278,312	14,278,312	12,511,442	12,435,556	73,265	2,620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14조 2,783억 1,200만원으로, 12조 4,355억 5,600만원이 지출(집행률 87.1%)하였으며, 1,602억 9,0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3,713,273	13,713,273	-	13,713,273	11,838,360	-	118,437
사학진흥기금	565,039	565,039	-	565,039	597,196	-	41,853
합 계	14,278,312	14,278,312	0	14,278,312	12,435,556	-	160,290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5회계연도 말 기준 교육부 자산은 전년 대비 4조 5,162억 1,000만원이 증가된 67조 1,362억 8,600만원으로, 이는 금융자산이 3조 8,811억 3,800만원 증가되고 유무형자산이 6,087억 9,100만원, 기타자산이 262억 8,100만원 증가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3,424억 3,000만원 증가한 2조 4,028억 5,000만원으로 차입부채 3,375억 5,400만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4조 1,737억 7,900만원이 증가한 64조 7,334억 3,500만원임.

2025회계연도 교육부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102조 4,197억 5,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조 3,358억 5,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96조 9,360억 1,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조 9,283억 400만원 증가하였음.

[2025회계연도 교육부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 (A)	2024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67,136,286	62,620,076	4,516,210	7.2
		금융자산	33,943,392	30,062,254	3,881,138	12.9
		유무형자산	32,492,459	31,883,668	608,791	1.9
		기타자산	700,435	674,154	26,281	3.9
	부 채		2,402,850	2,060,420	342,430	16.6
		차입부채	2,376,054	2,038,500	337,554	16.6
		충당부채	2,977	3,102	(125)	△4.0
		기타부채	23,819	18,818	5,001	26.6
	순자산		64,733,435	60,559,656	4,173,779	6.9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102,419,759	92,083,904	10,335,855	11.2
	재정운영순원가		100,679,440	90,646,596	10,032,844	11.1
	재정운영결과		96,936,018	87,007,714	9,928,304	11.4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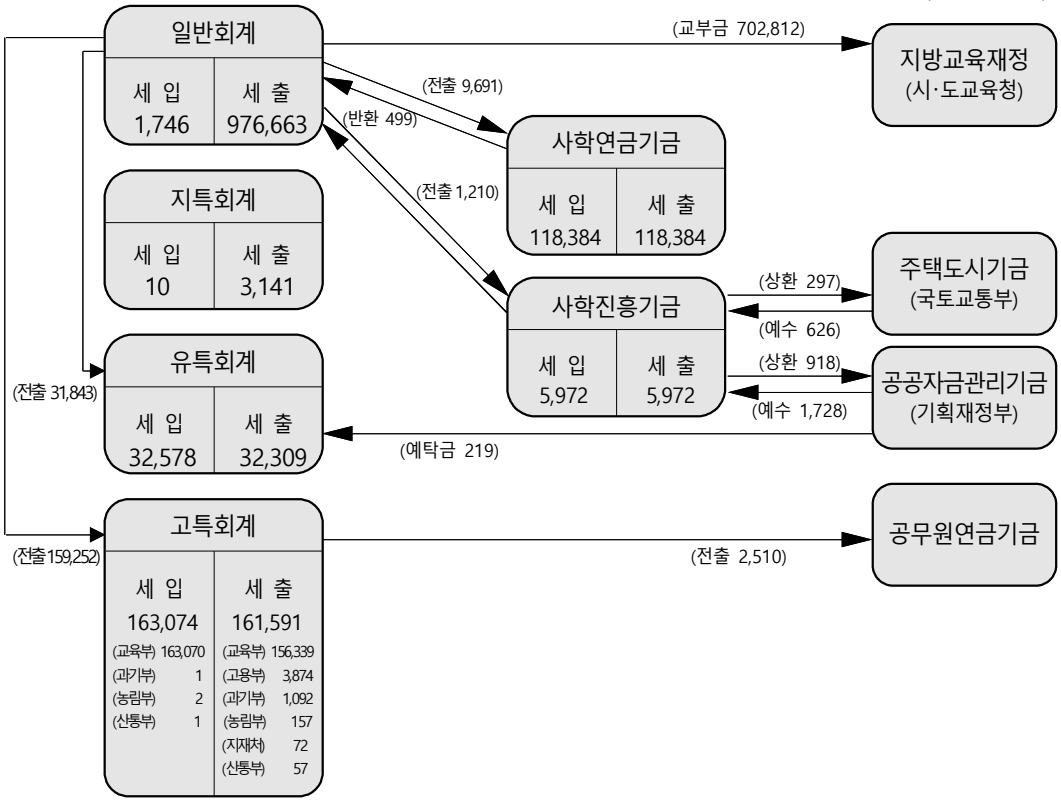
2025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재정은 일반회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4개 회계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및 사학진흥기금의 2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3조 1,843억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15조 9,252억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으로 9,691억원, 사학진흥기금으로 1,210억원이 각각 전출되었으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2,510억원 전출되었음. 또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219억원이 예탁되었음.

다음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사학진흥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금 1,728억원을 받고, 예수원금 및 예수이자 918억원이 상환되었으며,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예수금 626억원을 받고, 예수원금 및 예수이자 297억원이 상환되었음.

[2025회계연도 교육부 재정흐름도]

(단위 : 억원)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교육부는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 경감, 지역대학의 동반성장 지원, 국가책임 교육·돌봄체계 구축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총 240개 세부사업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추진 등 대학 자율역량강화,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학술연구 역량 강화, 보육지원 강화 등을 수행하였음

2025년도 교육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 개편이 논의될 경우 연중 교부금 규모 변경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불안정 해소 측면,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으로 장기 편성되고 있는 사업의 이관 필요성 등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초·중등 교육 재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교육부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에서 매년 각 대학의 계열별 교원 확보 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지원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 동안 이를 전혀 시행하지 않은 결과 현재 76개 사립대학 예체능 계열 전임교원 수가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심각한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시정조치가 필요함.

셋째, 2025년도 교육부 기본경비 예산의 이월률은 11.4%에 달하였는데, 이는 방만한 재정 운용에 기인한 측면이 있고, 한편, 정책기획관 기본경비(총액 비대상) 예산을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액하여 다른 실·국 기본경비에 부족분이 발생하면 보전하는 여유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조속한 시정이 필요함.

넷째, 보육교직원 인건비 예산이 매년 과소 편성되어 사업 간 조정이나 예비비 사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교육부는 영아반 교사 증가 추세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은 국가-광역지자체 매칭사업으로 사업구조가 전면 개편된 2025년 실집행률이 80.4%로 종전에 비해 하락하였으므로, 교육부는 향후 광역지자체의 사업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여섯째, 2025년도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 예산의 실집행률이 62.4%로 저조하므로 향후 직업계고 졸업자 감소 추세와 지급방식 변경 후 1·2차 지원금 지원실적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사업기간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일곱째, 2025년 RISE 사업예산의 45% 이상이 8월 이후 교부되었으나, 각 지자체의 매칭재원 확보와 사업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조기 교부될 필요가 있고, 사실상 교육부가 사업계획을 수립·집행하는 의대교육혁신 지원사업은 RISE사업으로 편성하여 구체적 사업내용에 대한 국회 심의를 우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각 지역에서 대학 등에 RISE 지원금을 교부할 때 이른바 "온정주의에 기반한 나눠먹기" 경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여덟째, 국가장학금 2유형 사업에서 2025년 2학기 한시적으로 104억 300만원의 학업장려금을 지원한 것은 상당수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함에 따라 동 사업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불용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에서 심의한 예산 내역과 다르게 집행한 것으로 국가재정의 효율적 활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아홉째, 일부 국립대학 시설확충사업에서 수년째 집행이 저조한 사례도 발견되므로 교육부는 전년도 실집행률이 저조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파악한 후 당해 연도에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금액을 교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2025년 제2차 추경에서 1,565억 1,500만원이 증액된 국립대학 시설보수사업은 2025년 12월 말까지 실집행액(3,395억 6,900만원)이 본예산액(3,796억 5,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향후 추경 증액분이 적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열째, 사학진흥기금 학교경영 지원사업 예산 일부가 일반회계 사립대학 경영지원 사업예산과 함께 정보시스템 계약 통합발주 재원으로 사용된 것은 예산의 체계적 편성·집행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열한째, 2025년 한시적으로 운용된 병원 필수의료 역량강화 지원(융자) 사업은 필수 진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병원 시설 및 운영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립대학 부속병원에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나, 목적·융자대상 및 융자금 용도가 사학진흥기금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중 교부금 규모 변경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불안정성 해소방안 검토 필요 등

가. 개 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70조 2,812억 3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2)]

[202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주1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보통교부금	69,659,572	67,732,259	-	-	67,732,259	67,732,259	-	-	73,582,087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743,713	726,916	-	-	726,916	726,916	-	-	676,421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247,905	242,306	-	-	242,306	242,306	-	-	225,473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1,067,409	1,033,814	-	-	1,033,814	1,033,814	-	-	1,352,842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560,839	545,908	-	-	545,908	545,908	-	-	601,263
계	72,279,438	70,281,203	-	-	70,281,203	70,281,203	-	-	76,438,086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 일반회계-보통교부금(1501-300), 지역현안 특별교부금(1502-300),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1502-301), 국가시책 특별교부금(1502-302),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1502-303) (교원교육자치지원관)

지방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자치단체(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와 시・도교육청 기금을 통해 운용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현황을 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이 68.7~78.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93.0~95.0%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이전수입	813,886	1,037,484	864,484	850,676	904,017
중앙정부 이전수입	655,688	866,461	703,175	693,341	744,68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12,811**	**822,070**	662,665	656,011	707,542
- 보통교부금	586,221	789,444	634,165	622,614	677,323
- 특별교부금	17,159	23,532	19,472	23,958	25,489
- 증액교부금	9,431	9,094	9,028	9,439	4,729
국고보조금	3,709	6,100	5,840	5,224	4,831
특별회계전입금	39,168	38,290	34,700	32,106	32,309
지자체 이전수입	155,414	169,341	158,400	155,173	157,377
기타 이전수입	2,784	1,682	2,878	2,162	1,959
자체수입	15,379	11,587	10,981	9,519	9,740
지방채 및 기타	44,709	43,452	77,529	80,642	54,912
내부거래	6,787	6,108	36,779	68,345	50,292
합계	**880,760**	**1,098,632**	**989,773**	**1,009,182**	**1,018,961**

주) 2021~2024년은 결산 기준이며, 2025년은 가결산 기준
자료: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97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운용되었으며, 최초 법정교부금은 내국세의 11.8%와 당해연도 의무교육기관의 교원 봉급 전액, 당해연도 공립 각급학교 교원의 봉급 반액에 해당하는 봉급교부금이었음.

2001년 초・중등학교에 대한 국가지원금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국세의 연동 비율이 11.8%에서 13.0%로 상향조정되었고, 2005년 봉급전입금 통합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보전 등을 사유로 19.4%로 상향되었으며, 2008년 20.0%, 2010년 20.27%, 2019년 20.46%, 2020년 20.79%로 법정교부율은 지속적으로 상향되어 왔음.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내국세 및 교육세에 연동하여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함에 따라 학생 1인당 교부금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6년 43조 1,615억원에서 2025년 70조 2,812억원으로 62.8% 증가하는 동안, 교부금 지원대상 학생 수는 602만명에서 513만명으로 14.8% 감소함에 따라 학생 1인당 교부금은 2016년 716만원에서 2025년 1,371만원으로 91.5% 증가하였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이: 2016~2025]

(단위: 억원, %, 만명, 만원/명)

구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A)		교부금 지원 대상 학생 수(B)		1인당 교부금(A/B)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2016	431,615	9.5	602	△3.4	716	15.5
2017	465,910	7.9	583	△3.2	799	11.6
2018	524,528	12.6	570	△2.2	920	15.1
2019	605,305	15.4	556	△2.5	1,088	18.3
2020	535,431	△11.5	544	△2.2	985	△9.5
2021	603,371	12.7	535	△1.7	1,128	14.5
2022	812,976	34.7	532	△0.6	1,528	35.5
2023	653,637	△19.6	526	△1.1	1,241	△18.8
2024	646,572	△1.1	520	△1.1	1,243	0.2
2025	702,812	8.7	513	△1.3	1,371	10.3

주) 보통교부금 산정기준학교의 학생 수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재정리

이러한 배경에서 교부금 규모 산정방식을 교육 수요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음.

2026년 6월 기획예산처장관은 학생 수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해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교부금 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① 교부금 총액은 줄어들지 않도록 하고, ② 학생 1인당 교부금은 매년 늘리며, ③ 초중등학교 재정의 안전성을 지키고, ④ 고등, 평생, 유아교육에 힘을 보태며, ⑤ 학령인구 변화를 산정기준에 반영한다는 5가지 원칙을 제시하였음.[3)]

한편, 2026년 교육감협의회에서는 ① 교부금 산정방식이 매년 재정당국의 판단과 협의에 좌우되면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이 침해될 수 있고, ② 교육비는 학교・학급 수에 따른 고정비용이 크며, 돌봄・안전・디지털・미래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③ 지방교육재정은 기금 고갈과 교육세의 타 용도 이관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④ 교원단체・학부모단체 등도 우려하고 있는 점을 들어 내국세 연동구조 개편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음.[4)]

3) 기획예산처 (유튜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개편하려는 걸까 (2026.6.29.)

나. 검토의견

첫째,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연중 변경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나, 이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2년 추경으로 10조 9,854억원 증액된 반면, 2023년·2024년에는 각각 10조 3,910억원, 4조 2,524억원이 미교부되었고, 2025년에는 1조 9,982억원이 추경으로 감액되었으며, 2026년에는 4조 7,693억원이 증액되는 등 매년 실제 교부되는 금액 규모가 본예산과 달라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음.

[최근 5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결산]

(단위: 억원)

구분	본예산(A)	추경 증감(B)	불용(C)	결산 (D=A+B+C)	세계잉여금 정산(E)	당해연도 교부 (F=D+E)
2022	650,595	109,854	0	760,450	52,526	812,976
2023	757,607	-	△103,970	653,637	0	653,637
2024	688,732	-	△42,524	646,208	364	646,572
2025	722,794	△19,982	0	702,812	0	702,812
2026	716,687	47,693	집행중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재정리

이와 같은 연중 교부금액 변경은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영을 저해할 수 있음. 2023년·2024년 각 시도교육청은 발생한 교부금 감액에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활용 이외에도 각각 2조 9,308억원, 2조 3,023억원의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했으며, 2025년에도 시설비 8,159억원, 인건비 3,907억원 등 총 1조 5,765억원을 지출구조조정하였음.

[2023~2025년 교부금액 변경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대응]

(단위: 억원)

구분	①세입감소		시·도교육청 대응						
	보통교부금 감액	기타 (지자체 전출금 등)	②기금 활용		③ 기금전출금	④ 지출 구조조정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시설비	인건비	예비비	기타
2023년	△104,141	△1,965	19,449	6,736	△50,613	△14,341	△5,000	△3,000	△6,967
2024년	△44,567	5,707	6,843	888	△8,107	△10,679	△4,152	△3,342	△4,850
2025년	△19,273	441	-	-	△3,067	△8,159	△3,907	△938	△2,761

자료: 교육부

4)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보도자료] 미래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성명서 발표 (2026.7.10.)

[2025년 교부금 추경 감액에 대한 시.도교육청별 대응 현황]

(단위: 억원)

구분	①세입감소		시・도교육청 대응						
			②기금 활용		③ 기금 전출금	④ 지출 구조조정			
	보통교부금 감액	기타 (지자체 전출금 등)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시설비	인건비	예비비	기타
서울	△1,727	821	-	-	-	△445	△281	-	△179
부산	△1,064	418	-	-	-	-	△646	-	-
대구	△862	539	-	-	-	△323	-	-	-
인천	△1,070	352	-	-	-	△499	△34	△5	△180
광주	△577	153	-	-	-	△239	△37	-	△148
대전	△579	393	-	-	-	△100	△35	△2	△50
울산	△477	17	-	-	-	△51	△156	△30	△224
세종	△251	23	-	-	-	-	△227	-	-
경기	△4,718	△313	-	-	△3,067	△1,326	△477	△252	91
강원	△867	△2,183	-	-	-	△2,340	△208	△200	△302
충북	△780	-	-	-	-	△528	-	-	△252
충남	△1,098	527	-	-	-	△372	△90	△12	△97
전북	△1,000	63	-	-	-	△433	△375	-	△130
전남	△1,086	-	-	-	-	△551	△254	△53	△228
경북	△1,289	△342	-	-	-	△263	△446	△261	△661
경남	△1,526	145	-	-	-	△515	△511	△68	△287
제주	△303	△171	-	-	-	△174	△129	△55	△115
계	△19,273	441	-	-	△3,067	△8,159	△3,907	△938	△2,761

주) 2025년 12월 기준 시・도교육청 제출 자료
자료: 교육부

현행과 같이 내국세 및 교육세 세입액에 연동하여 교부금 규모를 정할 경우 세수 추계 변경 등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변경되어 지방교육재정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는 측면도 있으므로 교부금 구조 개편이 논의될 경우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수능시험 시행 지원 등 일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은 법정 국가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국고로 편성하지 않고 장기간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함으로써 국회 예산안 심의를 우회하여 집행된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교부금 구조 개편이 논의될 경우 해당 사업을 특별교부금이 아닌 다른 국고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에서는 국가시책사업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5)]

그러나 2025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16년 이전에 개시하여 10년이 넘은 사업에 집행된 금액은 2,688억 3,900만원으로 전체 1조 338억 1,400만원의 26.0%에 달했으며, 5년 이상 계속된 사업에 집행된 금액은 전체의 33.6%인 3,472억 3,200만원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10년 이상 계속사업 현황(2025년 기준)]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2025년 교부액	시작연도
6-27. 진학지원	수능시험 시행지원	35,215	2003
6-27. 진학지원	수능모의평가 시행지원	2,400	2003
3-11. 미래교육 체제구축	EBS 교육방송 지원	19,009	2004
1-04. 기초학력보장	기초학력 보장 지원	23,789	2006
1-04. 기초학력보장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 지원	27,485	2006
4-19.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18,689	2006
3-13. 체육・예술교육	예술교육 활성화	7,000	2007
3-18. 학부모교육	학부모 지원 기반 강화	1,202	2009
3-18. 학부모교육	학부모 소통 강화	2,148	2009
6-27. 진학지원	대입전형 지원시스템	8,561	2009

5) 2025년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 p.10

> 1. 국가시책사업 수요 - 바. 운용방법
> ○ 국가시책사업의 사업기간은 당해연도 내로 하되, 동일 사업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을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성과평가 및 연장평가와 국가시책사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 사업부서에는 사업계획 수립시 국가시책사업 종료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사업 제도화 및 지방이양 등에 관한 대책을 포함하여 신청
> - 국가시책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경우, 사전예고를 통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예산 확보 등의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
> - 3년 이상(초과) 지원사업은 순차적 시도교육청 이양 등을 위해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일정비율 감액(전년도 예산기준 10% 등)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2025년 교부액	시작연도
6-27. 진학지원	대입상담센터	4,311	2009
6-27. 진학지원	고교대상 직업교육 진로진학 지원	1,200	2009
7-30. 행·재정운영지원	시·도교육청 평가	10,405	2009
1-03. 늘봄학교	늘봄학교 운영 체제 구축	23,801	2010
7-30. 행·재정운영지원	지방교육재정 분석 지원	11,237	2010
3-15. 글로벌교육지원	어린이동화 교류대회	70	2011
4-20. 학생성장 통합지원	학생상담통합지원	6,604	2011
5-23. 학폭대응	학교폭력 신고·사안처리 및 화해·분쟁 조정 지원	30,125	2011
7-30. 행·재정운영지원	지방교육행·재정 운영 지원	3,780	2011
3-12. 교수학습 자료개발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운영	1,302	2012
3-14. 창의융합교육	인성·시민역량 함양	1,685	2012
5-23. 학폭대응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운영 지원	3,136	2012
6-26. 진로교육	진로교육정보망 통합 운영 및 고도화	2,340	2012
3-16. 교육전념 여건조성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7,191	2013
5-23. 학폭대응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3,000	2013
7-28. 과학행정체계 구축	나이스 교육통계시스템 조사	648	2013
3-12. 교수학습 자료개발	독도교육 활성화 지원	2,300	2014
4-20. 학생성장 통합지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2,700	2014
4-20. 학생성장 통합지원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	5,400	2014
6-25. 직업교육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내실화	2,106	2014
계		268,839	

자료: 교육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 사업내용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각 시·도교육청이 아닌 교육부(주관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6] 이 사업이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이 정한 3년을 넘어 장기간 지속되는 국가사무인 경우에는 특별교부금보다는 일반 국고예산으로 편성하여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교부금 구조 개편이 논의될 경우 사무 주체별 재원을 더욱 명확히 하여 국가가 수행해야 할 사무의 경우 장기 계속 국가시책사업 예산을 특별교부금이 아닌 다른 국고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사업 주관부서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을 국가시책심의회에서 심의한 후 교육부장관이 결정·교부하는 방식으로 운용됨.

셋째, 2024년과 2025년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이 교육자치단체와 일반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교육발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지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교부금 일부가 지역산업·일자리 육성, 지역 대학 지원 등에 활용된 경우도 있음.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초·중등 교육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교부하며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7)]

동 교부금은 주로 학교 시설사업 등에 사용되어 왔으나, 2024년과 2025년에는 일부가 교육발전특구 지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2025년의 경우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7,269억원 중 47.8%인 3,473억원이 교육발전특구 지원금으로 사용되었음.

[2024년·2025년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사업 결산]

(단위: 억원)

연도	지역현안 특별교부금(A)	교육발전특구 지원금(B)	비율(B/A)
2024년	5,675	1,892	33.3%
2025년	7,269	3,473	47.8%

자료: 교육부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청과 일반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교육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이 재원으로 활용되고 일반 자치단체에서는 지방비를 대응투자하였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으나,

2025년에도 일부 교육발전특구에서 특별교부금을 대학 지원사업이나 지역 산업·일자리 육성사업에 활용한 경우가 있음. 이는 초·중등교육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용도를 벗어난 것임.[8)]

---

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

8)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행 지방자치 관련 법령상 교육감이 소관하는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서, 시·도 교육감 소관사무가

[2025년 교육발전특구 사업계획 일부]

(단위: 백만원)

지역	세부사업		교부금	지방비	비고
춘천	지역과 함께 하는 글로컬대학	대학별 특화과정	350	0	고등교육 지원
정선	아라리 청년 정주	글로컬 대학과의 연계	70	0	
		지역 정주 청년 일자리 지원	294	0	지역산업·일자리 육성
경남	지역별 특화과제	우주항공	2,573	3,009	
		스마트제조	900	298	
		나노	1,650	965	
		미래조선	45	0	
		자동차의생명	1,349	1,394	
파주	자족도시 성장산업 육성	모빌리티 신성장산업 육성	200	0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향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초·중등 교육 이외 재원으로 활용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교육발전특구 관련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유형
(29)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지	○[지적사항] -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은 지역교육 혁신 및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역맞춤형 교육과정	시정

아닌 고등교육 사무에는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임.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 · 체육 · 문화 · 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 · 운영 · 지도

제135조(교육 · 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 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 · 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 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 · 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 · "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제38조(교육비특별회계) 시 · 도의 교육 · 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역현안 특별교부금 대상 사업 적절성 검토 필요	(늘봄학교, 유보통합, 디지털전환 등) 프로그램 운영을 주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어 기존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으로 수행하고 있는 정책사업과 유사한 내용을 다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동 사업은 교육부장관이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과 시범지역 지정기준 및 추진일정 등을 수립하고, 교육부장관이 특구를 지정·운영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성격, 내용 및 사업추진체를 고려하여 동 사업을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대상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국비 지원 방안도 모색하도록 할 것	
(30)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성과평가 및 법적 근거 마련 검토 필요	○[지적사항] -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은 교육부가 정책을 입안·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시책의 성격이 있으므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대상 사업과 같이 사업성과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음.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추진 기간이 제한적임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에 엄정한 평가를 통해 성과관리에 충실을 기하고 시범사업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적절한 재원을 모색할 것	제도개선
(31)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 미흡과 용도 일탈 점검 필요	○[지적사항]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은 교육발전특구의 법적 근거가 없고, 2024년도 예산안에서도 관련 예산(정책연구용역 2억원)이 전액 삭감되는 등을 고려하면 사회적 합의 없이 전국단위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보임. 교육발전특구 교부액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등 지역간 불균형 우려가 있고, 학생 안전에 집행하여야 할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이 교육발전특구에 집행됨.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등 교육을 위한 재원인데, 동 사업은 대학 계약학과, 외국인 전담학과, 지역인재전형, 산학연 연계 프로젝트 등 고등교육 및 RISE사업 연계 과제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동 사업 추진 시 법적 근거 부재를 해소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교육부는 고등교육 연계 과제는 별도 재원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조를 정비하고, 집행점검과 회수체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그 결과를 보고할 것	제도개선
(32)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범위 및 규모 적정 수준 조정	○[지적사항]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은 법적 근거 없이 2024년부터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으로 추진되고 있음.동 사업은 시범사업임에도 56개 특구에 대규모 교부금을 지원하고 있어 시범사업의 취지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예산 운용임. 지역현안특별교부금의 상당액을 교육발전특구 시범	시정

필요 등	사업에 집행함에 따라 학교시설 신·증축이 시급한 지역현안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됨. ○[시정요구사항] 교육부는 법적 근거 없이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으로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교부방식을 재검토하고, 시범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며, 지역현안특별교부금이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교육현장 현안사업에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 고등교육 재정지원: 각 대학의 계열별 전임교원 확보 관련 관리 감독 의무 준수 필요

가. 개 요

2025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중 고등교육 재정지원예산은 총 14조 8,431억원으로 2021년 10조 8,988억원에서 4년만에 36.2% 증가하였음.

[2021~2025년도 교육부 소관 고등교육 재정지원 예산 추이]

(단위: 억원)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고등교육 재정지원예산(교육부 소관)	108,988	114,532	128,550	141,610	148,431

주) 2021~2024년 자료는 각 연도별 '고등교육 재정지원정보 분석보고서'(한국사학진흥재단)를 참조하였고, 2025년 자료는 보고서 발간을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조사중인 자료로서 향후 자료 확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자료: 교육부

주요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의 2025년도 예산(제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을 살펴보면, ①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4조 9,807억원이 편성되었고, ② 국립대학 인건비·기본경비·교육기반조성·시설확충·국립대학법인 지원 등을 포괄하는 국립대학 운영지원 예산으로 4조 9,249억원이 편성되었으며, ③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1조 9,410억원, ④ 대학혁신지원 사업 7,961억원, ⑤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 사업 5,930억원 등이 편성되었음.

[주요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교육부 소관) 예·결산]

(단위: 억원)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2645-300)	44,460	46,005	53,050	49,807	49,807	51,161
국립대학 운영지원 (2700)	46,377	48,934	49,051	49,249	48,077	52,399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2301-400)	3,460	12,037	20,010	19,410	19,335	21,403
대학혁신지원 (2301-300)	11,010	10,029	7,961	7,961	7,961	8,192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2446-300)	5,290	5,116	5,930	5,930	5,930	6,208

주 1) 2025년 추경은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말함.
2)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중 2025년도 예산액(추경)이 큰 5개 사업임. 다만, "국립대학 운영지원" 은 국립대학 인건비, 국립대학 기본경비, 국립대학 교육기반조성, 국립대학 시설확충, 국립대학법인 운영 지원, 국립대학병원 여건개선 사업 등을 포괄함.

나. 검토의견

교육부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에서 매년 각 대학의 계열별 교원 확보 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지원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 동안 이를 전혀 평가하지 않은 결과 현재 76개 사립대학 예체능 계열 전임교원 수가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해 심각한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시정조치가 필요함.

「대학설립·운영 규정」에서는 대학이 확보해야 하는 교사(校舍),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음.

교원의 경우 계열별로 '교원 1인당 학생수' 기준을 정하여 계열별 학생정원에 따라 대학이 확보해야 하는 계열별 교원의 수(이하 "교원정원")가 산출되도록 하고 있으며(제6조제1항, 〔별표5〕), 운영중인 대학은 겸임·초빙교원 등 비전임교원을 정원의 3분의 1 범위 안에서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9조), 각 대학은 계열별 교원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전임교원을 확보해야 함.

[「대학설립·운영 규정」(교원 확보기준 관련)]

제6조(교원) ① 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5에 따른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전문대학원으로서의 대학원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5분의 1(대학에 두는 전문대학원은 3분의 1), 전문대학원으로서의 대학원대학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3분의 1, 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둘 수 있으며, 겸임교원등에 관한 산정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특례) ⑤ 운영 중인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전문대학원으로서의 대학원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제외한다)은 제6조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교원 정원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겸임교원등을 둘 수 있다.

〈별표 5〉

교원산출기준(제6조제1항 관련)

계열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교원 1인당 학생수	25	20	20	20	8

① 2026년 6월 현재 계열별 전임교원 확보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대학은 총 125개교에 달하며, 특히 사립대학 76개교는 예체능 계열에서 전임교원 확보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계열별 전임교원확보율 및 전임교원 확보기준 미준수 대학 현황(2026년 6월)]

(단위: %, 개교)

계열	전임교원확보율			전임교원 확보기준 미준수 대학 수		
	국립	공립	사립	국립	공립	사립
인문사회	100.6	100.5	87.5	1	0	7
자연과학	88.1	108.6	78.9	4	0	59
공학	79.4	79.0	68.1	2	0	43
의학	199.8	0.0	347.8	0	0	3
예체능	**74.1**	**91.7**	**53.1**	**5**	**0**	**76**
총계	96.0	91.6	87.6	**12**	**0**	**113**

자료: 교육부

② 각 학과별 전임교원 확보율이 수년간 현저히 낮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국민대 공간디자인학과는 학생정원이 133명이나 전임교원 수는 2023년 이후 계속 1명으로 2025년 2학기 전임교원 강의비율은 26.4%였으며, 세종대 무용과는 학생정원 144명이나 전임교원 수는 2023년 이후 계속 2명으로 2025년 2학기 전임교원 강의비율은 20.8%에 불과하였음.

[전임교원 확보율이 낮은 일부 학과 현황]

(단위: 명)

대학	학과(전공)	학생 정원	교원 정원	전임교원 확보기준주	전임교원 현황			전임교원 강의비율 (25년 2학기)
					2023년	2024년	2025년	
경희대	태권도학과	295	15	10	4	3	4	28.2%
국민대	공간디자인학과	133	7	5	1	1	1	26.4%
성균관대	무용학과	148	8	6	3	2	1	12.7%
세종대	무용과	144	8	6	2	2	2	20.8%
	체육학과	144	8	6	2	2	1	20.8%
숭실대	예술창작학부 영화예술전공	152	8	6	2	1	1	11.1%
이화여대	무용과	152	8	6	1	1	2	15.8%
중앙대 (제2캠퍼스)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	132	7	5	2	2	2	23.0%
	음악학부(성악전공)	104	6	4	2	2	2	20.2%
홍익대	산업스포츠학과	110	6	4	1	1	1	36.7%

주) 「대학 설립·운영 기준」에서는 “계열별” 교원정원과 전임교원 확보율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임교원 수가 적은 학과 현황 파악에 용이하도록 “학과별” 교원정원과 전임교원 확보기준을 제시함.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및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③ 학생 수가 100명이 넘어 적어도 4~6명 이상의 전임교원이 필요한 학과에 실제 재직 중인 전임교원이 수년간 1~2명에 불과하고 그 부족분을 안정적인 채용이 보장되지 않은 강사 등 비전임교원으로 보완함에 따라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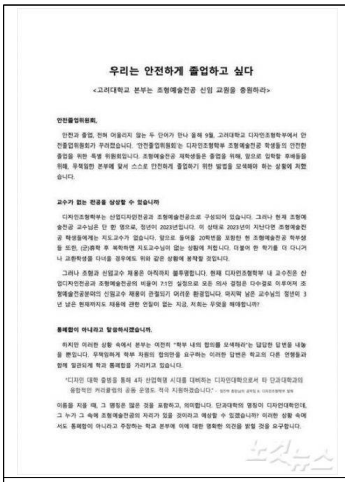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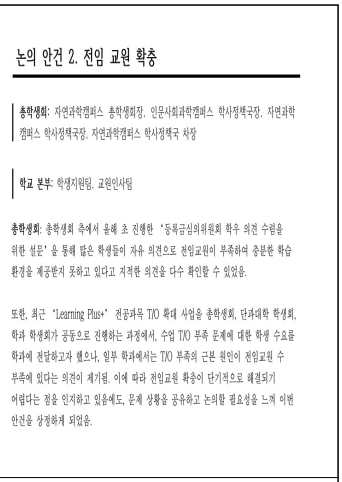
실제로 각 대학 학보를 비롯한 언론에는 전임교원 부족에 따른 학생 피해를 호소하는 기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전공과목 개설 부족, 학생 지도·상담 부족, 수업 간 연계성 부족, 졸업작품 완성도 관리 부족, 채용정보 및 연계지원 부족, 치열한 수강신청 경쟁, 장학금 및 추천서 수령 제한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전임교원 부족에 따른 학생 피해를 지적하는 각 대학 학보 및 언론기사]

기사 제목	전임교원 부족에 따른 피해 내용
계열별 차이 큰 전임교원 확보율, 균형 있는 확보 필요해 〈국민대신문, 2026.5.11.〉	"전임교원의 수가 부족하면 수업 간 연계성 부족, 학생 개별 지도와 상담 부족, 졸업 작품의 지도 및 완성도 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학생은 느는데… 몇 년째 '제자리걸음' 인 전임 교원 수 〈서강학보, 2026.3.22〉	"전임 교원이 부족하다 보니 개설되는 전공과목의 종류가 부족하다" "전공과목을 선택해 수강하기는커녕 개설된 과목을 모두 들어야 겨우 학점을 채울 수 있는 상황" "교수님께서 한 번에 1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강의하다 보니, 모든 학생들에게 세세한 지도를 해 주기엔 어렵다고 말씀하셨다"
전임교원 부족에 수강신청도 '발목' 〈단대신문, 2025.10.14.〉	"전임교원의 역할은 강의뿐만 아니라 학생의 진로지도와 학과 운영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전임교원의 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교육의 질이 학생들의 기대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임교원 확보율 85%...학과별 편차 심해 - 교원법정정원 도달하기에 턱없이 부족 〈이대학보, 2025.8.31.〉	"순수 미술은 스승에 따라 학풍이 결정되는데, 우리대학 학생들은 졸업 학년이 되기 전까지 전임교원의 수업을 들어보지 못한 채로 졸업 전시 지도교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 "무용과 학생들은 교수들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춤의 정체성인 '메소드' 를 지도받을 기회의 부족, 장학금 및 추천서 수령의 어려움 등"
교수가 없어 졸업논문도 못 쓴다는 이곳... 이대 무용과엔 무슨 일이? 〈한국일보, 2024.5.29.〉	"학위논문을 지도해줄 전공 교수님이 없어서 포기했어요. 언제 전임교수가 뽑힐지 모르니 졸업은 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타 학교는 교수님을 통해 무용단 입사나 면접 등 채용 상황을 알게 되고, 교수님 이름으로 공연을 열어 춤을 알리기도 하는데 우리 과는 "
"교수님이 필요해요", 전임교원 부족 문제 이어져 〈동덕여대학보, 2023.3.2.〉	"국가고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전공과목이 열리지 않고, 일부 수업은 정규학기가 아닌 계절학기에 개설되는 상황" "전공필수 과목조차 분반이 부족해 매 학기 전쟁 같은 수강신청을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복수전공을 포기할 뻔했다고 토로"
'전임교수 가뭄' 앓는 미대생들.."순수예술 죽고 있다 " 〈CBS노컷뉴스, 2020.1.12.〉	"전임교원이 부족해 커리큘럼 자체가 부실해지는 등" "전공 전임 교수는 졸업 전시회 관련 수업만 담당하고 학기마다 선생님이 다르다 보니 그간의 작업을 설명하느라 학기 중 한 달을 쓴다" "강사들은 여건상 다른 대학들에서도 수업을 하다 보니 학생들의 프로젝트에 온전히 관심을 갖기 어려운 게 현실"

일부에서는 전임교원 부족문제의 피해당사자인 학생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서는 경우도 있음. 실제 2020년 고려대 디자인조형학부 학생들은 학내 대자보를 통해 전임교원 충원을 촉구하였고, 2024년 이화여대 무용과 학생들은 투명한 교수 채용을 촉구하는 시위를 열었으며, 2025년 성균관대 총학생회는 학교당국과의 협의에서 전임교원 확충 문제를 논의하였음.

[전임교원 부족의 피해당사자인 학생들의 자구책]

<table>
<tr>
<td> 
</td>
<td>  </td>
<td> 
</td>
</tr>
<tr>
<td>대자보
(고려대 디자인조형학부, 2020년)</td>
<td>시위
(이화여대 무용과, 2024년)</td>
<td>총학생회-학교당국 협의
(성균관대, 2025년)</td>
</tr>
</table>

대학을 지도·감독하는[9] 교육부는 전임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할 것임. 대학교원 채용은 본질적으로 대학의 자율성[10][11]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사무이나, 교육당국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전임교원 부족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상황을 방치해도 되는 것은 아님.

특히, 「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10조에서 교육부는 각 대학의 교원 확보기준 충족 여부 등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지원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9) 「고등교육법」
제5조(지도 · 감독) ①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指導) · 감독을 받는다.

10) 「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④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11) 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할 때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사립학교법」 제53조의5,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초심사→전공심사→면접심사'를 거쳐야 하며, 상당수 대학은 학칙이나 정관에서 '학과 심의 후 본부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4조의3제3항 등 관계 법령에서는 각 단계별 심사위원 구성, 통과기준 등을 대학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학설립·운영 규정」(교육부의 관리감독 부분)]

제10조(기준 등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 등)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을 설립 · 경영하는 자 및 대학에 대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 또는 의무부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편제가 완성된 대학의 교사 및 교원에 대한 평가는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되, 교원의 경우에는 4월 1일 현재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해당 대학을 설립 · 경영하는 자 및 대학에 대한 학과등 또는 전공의 증설, 학생정원의 증원, 학생의 모집, 행정 및 재정지원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제11조(보고) 대학을 설립 · 경영하는 자 및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국외에 설치 · 운영 중인 교사를 포함한다) · 교지 ·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을 매년 4월 30일(10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교원보유현황의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사 · 교지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은 4월 1일 현재, 교원은 4월 1일 및 10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RISE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을 비롯한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서 각 대학의 계열별 전임교원 확보기준 충족 여부 평가 결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음.

RISE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교육평가원의 기관평가인증에서 인증된 대학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을 하는데, 기관평가인증에서는 대학 전체의 전임교원 및 겸임교원 확보율만을 기준으로 하여 계열별 전임교원 확보 현황은 평가하고 있지 않으며, 지원 금액을 대학별로 배분할 때도 이에 따른 차등을 두고 있지 않음.

[대학기관인증평가 기준 중 교원 확보율 부분]

평가준거 **3.1 교원 확보 및 구성**

대학은 교원 임용정책과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절차를 통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교원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다.

보고서 주요 내용

1. 전임교원 및 겸임교원 확보율: 최근 2년 자료, 최근 2년간 평균 【양식 3.1-1】, 【양식 3.1-2】

산출식	기준값
$A(\%) = \frac{\text{전임교원 수(명)}}{\text{교원 법정정원(명)}} \times 100$ $B(\%) = \frac{\text{겸임교원 수(명)}}{\text{교원 법정정원(명)}} \times 100$ 전임교원 및 겸임교원 확보율 = A + min(0.3×B, 4.0%)	64%

※ 학생정원 기준 및 재학생 기준 중, 전임교원 및 겸임교원 확보율이 낮은 수치 사용
※ min(a, b): a와 b 중 작은 값
※ 의학계열은 제외함

2. 교원 확보계획에 따른 임용 절차 및 방법
3. 교원의 소속별, 직제별, 유형별 구성 【양식 3.1-3】, 【양식 3.1-4】
4. 교원 임용정책에 따른 교원 유형별 임용목적 및 담당 업무 주요 현황
5. 강사 임용 절차 및 방법

자료: '4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 기준' (2024.12.) p.66

그 결과, 2025년 대학혁신지원 사업예산을 가장 많이 지원받은 상위 10개 대학 중 9개 대학이 예체능 계열 전임교원 확보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별 약 114억원에서 150억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받았고,

2025년 RISE 사업예산을 가장 많이 지원받은 상위 10개 대학 중 4개 대학이 예체능 계열 전임교원 확보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별 약 191억원에서 314억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받았음.

[2025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규모 상위 10개교 지원액 및 전임교원 확보율]

(단위: 백만원, %)

대학	2025년 지원금	교원 법정정원(학생정원 기준) 대비 전임교원 확보율					
		인문사회 계열	자연과학 계열	공학계열	예체능 계열	의학계열	합계
계명대	15,053	69.4	83.0	69.0	47.0	366.7	80.4
영남대	13,710	61.4	91.6	79.7	45.1	211.4	80.0
동아대	13,200	74.4	78.8	53.7	48.3	421.4	76.8
연세대	13,194	87.8	143.3	75.6	69.6	262.1	120.8
조선대	12,736	79.1	91.0	49.0	42.4	114.8	72.2
경희대	12,440	87.0	125.8	73.0	37.7	149.2	94.5
단국대	12,439	77.5	80.7	66.3	62.6	261.9	81.8
고려대	11,632	82.5	125.1	75.5	49.0	457.3	105.1
가천대	11,513	69.7	120.5	92.3	39.1	386.0	105.2
인하대	11,457	87.5	144.4	67.8	61.2	551.7	98.9

주)「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6조, 제9조에 따르면, 교원 법정정원의 2/3 이상의 전임교원 확보 필요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및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2025년도 RISE사업 지원규모 상위 10개교 지원액 및 전임교원 확보율]

(단위: 백만원, %)

대학	2025년 지원금	교원 법정정원(학생정원 기준) 대비 전임교원 확보율					
		인문사회 계열	자연과학 계열	공학계열	예체능 계열	의학계열	합계
국립경국대	46,901	85.8	80.7	102.0	137.5	0	92.1
경북대	31,427	101.6	81.0	67.6	54.4	220	97.5
포항공과대	31,005	0	195.7	86.6	0	0	111.4
제주대	29,527	108.0	88.3	87.0	68.4	348	117.4
울산대	26,972	56.4	105.8	68.0	54.7	839.2	158.9
경상국립대	24,110	90.2	84.4	75.4	88.5	278.8	98.5
충북대	23,652	108.5	77.4	62.1	70	226.3	94.3
전북대	22,141	105.7	84.4	69.0	54.2	147.3	92.8
강원대	21,042	95.2	82.0	70.3	67.1	279.7	92.1
부산대	19,120	90.9	81.7	69.8	63.1	180	94.8

주)「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6조, 제9조에 따르면, 교원 법정정원의 2/3 이상의 전임교원 확보 필요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및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학생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설 정도로 전임교원 부족에 따른 학생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교육부가 「대학 설립·운영규정」에 규정된 교원 확보기준 충족 여부를 재정지원정책에 반영하라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기본적인 관리감독조차 해태하면서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적절한 시정조치가 필요할 것임.

3. 기본경비 과다 이월 지양 필요

가. 개 요

‘본부 기본경비’ 사업은 교육부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를 집행하려는 것으로 기관운영 기본경비, 정책기획관 기본경비 등 총 3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2025년도 예산현액 183억 9,400만원 중 149억 5,500만원이 집행(집행률 81.3%)되고, 20억 9,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3억 3,700만원이 불용되었음.[12)]

[2025년도 본부 기본경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주]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기관운영 기본경비 (총액대상)	2,935	2,935	46	52	3,032	2,978	20	34	2,960
감사관 기본경비 (총액대상)	54	54	7	3	63	61	3	-	60
사회정책협력관 기본경비(총액대상)	8	8	3	△4	7	4	-	3	-
정책기획관 기본경비(총액대상)	208	208	38	△121	126	122	3	0	140
대변인 기본경비 (총액대상)	24	24	6	△3	27	22	3	2	24
디지털교육기획관 기본경비(총액대상)	22	22	9	△9	22	18	4	-	25
교원학부모지원관 기본경비(총액대상)	40	40	13	△24	29	25	4	-	40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기본경비(총액대상)	26	26	6	△3	29	26	3	-	26
평생직업교육정책관 기본경비(총액대상)	27	27	7	2	36	32	3	-	27
지역인재정책관 기본경비(총액대상)	20	20	1	8	29	27	2	-	25

12) 일반회계-본부 기본경비(7011)(운영지원과 등)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권]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교육복지돌봄 지원국 기본경비 (총액대상)	28	28	8	△5	31	26	5	-	33
책임교육정책관 기본경비(총액대상)	45	45	7	△4	48	47	1	-	47
글로벌교육기획관 기본경비(총액대상)	26	26	18	△23	21	12	2	7	26
인재정책기획관 기본경비(총액대상)	45	45	14	△18	41	40	1	-	45
학생건강정책관 기본경비(총액대상)	21	21	5	△10	16	14	2	-	28
영유아교육·보육 통합추진단 기본경비(총액대상)	12	12	1	-	13	11	2	-	17
보육정책관 기본경비(총액)	77	77	26	△73	30	15	1	14	49
의대교육지원관 기본경비(총액대상)	-	-	-	-	-	-	-	-	18
기관운영 기본경비 (총액 비대상)	2,364	2,364	349	267	2,980	2,343	543	94	2,246
감사관 기본경비 (총액 비대상)	512	512	105	39	656	570	53	32	510
사회정책협력관 기본경비(총액비대상)	415	415	153	△295	273	160	-	113	-
정책기획관 기본경비 (총액 비대상)	4,660	4,660	278	△2,635	2,303	1,996	245	61	4,756
대변인 기본경비 (총액 비대상)	686	686	40	252	978	857	79	42	700
디지털교육기획관 기본경비(총액 비대상)	445	445	36	△18	463	263	163	37	437
책임교육지원관 기본경비(총액 비대상)	529	529	11	215	755	666	71	18	620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기본경비(총액 비대상)	411	411	28	70	509	356	107	46	468
평생직업교육정책관 기본경비(총액 비대상)	374	374	41	184	599	514	29	57	470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주]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지역인재정책관 기본경비(총액 비대상)	595	595	45	315	954	824	86	45	775
교육복지돌봄지원국 기본경비(총액 비대상)	470	470	41	-	511	332	111	68	470
책임교육정책관 기본경비(총액 비대상)	610	610	87	104	801	596	142	63	710
글로벌교육기획관 기본경비(총액 비대상)	466	466	46	173	685	508	77	99	483
인재정책기획관 기본경비(총액 비대상)	707	707	40	673	1,419	929	142	347	707
학생건강정책관 기본경비(총액 비대상)	380	380	33	22	435	286	75	74	422
영유아교육·보육 통합추진단 기본경비(총액 비대상)	361	361	56	△40	377	183	114	79	355
보육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39	39	9	48	96	92	3	2	66
의대교육지원관 기본경비(총액 비대상)	-	-	-	-	-	-	-	-	210
본부 기본경비	17,642	17,642	1,613	+2,427 △3,285	18,394	14,955	2,099	1,337	17,995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첫째, 2025년도 교육부 기본경비 예산의 이월률은 11.4%에 달하였으며, 이는 2024년도 예산을 이월하면서 추진한 사업을 2025년에 완료하지 못하고 2026년에 시행하는 등 사업관리를 방만하게 한 것에 기인하므로 시정이 필요함.

2025년도 교육부 기본경비 예산현액 183억 9,400만원 중 20억 9,900만원이 이월되어 이월률은 11.4%에 달하였으며, 최근 교육부 기본경비 이월 규모는 2023년 7억 6,300만원에서 2024년 16억 1,300만원, 2025년 20억 9,9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2023~2025년도 본부 기본경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D=A+B+C)	집행	다음연도 이월			불용
	본예산	추경(A)					금액(E)	비율(E/A)	비율(E/D)	
2023	14,101	14,101	1,917	2,038 △1,366	16,793	15,202	763	5.4%	4.5%	655
2024	16,668	16,668	763	2,575 △2,055	17,948	15,992	1,613	9.7%	9.0%	343
2025	17,642	17,642	1,613	2,427 △3,285	18,394	14,955	2,099	11.9%	11.4%	1,337

자료: 교육부

「국가재정법」 제48조제2항제5호[13]에서 경상적 경비를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연말연초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회계연도 분리에 따른 비효율적 예산 집행을 예방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 만큼 이월 규모는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2025년 교육부 기본경비 이월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은 방만한 재정운용에 기인한 측면이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직원 글로벌 역량개발 연수를 재추진하기로 하면서 2024년도 국외업무여비 예산 중 3,400만원을 2025년으로 이월하였고, 2025년에는 다른 사업예산에서 5,000만원을 변경(증)하여[14] 2025년도 국외업무여비

13)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③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 경우 이월한도는 해당 경비에 대한 예산의 100분의 15로 한다.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 기본경비 이월범위
○ 각 중앙관서의 기본경비 예산총액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목을 제외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경비의 이월범위에 사고이월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복리후생비
나. 직책수행경비

14) 2025.4.1. 정책기획관 기본경비(총액비대상)(7011-253)에서 국외업무여비(220-02) 7,000만원을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비대상)(2011-250) 예산으로 변경하였고, 이후 이 중 2,000만원을 국외교육여비(220-03)으로 세목조정하였

예산현액이 1억 7,300만원이 되었으나, 2025년 11월 연수대상자를 선정하고 2026년 3월 연수를 시행하면서 2024년에서 이월한 예산 중 300만원은 불용되고, 2025년 예산 중 1억 3,300만원이 2026년으로 이월되었음.

2024년도 예산을 이월하면서 추진한 연수사업을 2025년에 완료하지 못하고 2026년에 시행하면서 2024년도 예산에서 이월한 예산 일부는 불용처리하고, 2025년도 기본경비 국외업무여비 예산현액의 76.8%에 달하는 1억 3,300만원을 2026년으로 이월한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기본경비 이월제도를 폭넓게 해석하여 국가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025년도 본부 기본경비(총액비대상) 국외업무여비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기관운영 기본경비 (총액비대상)	2,364	2,364	349	267	2,980	2,343	543	94	2,246
국외업무여비	90	90	34	50	173	37	133	3	85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직원 글로벌 역량개발 연수사업 개요]

▸ (연수대상) 무보직 4급 이하 일반직·전문직 20명
▸ (연수주제) 연수대상자 확정 후 선발자가 직접 연구주제·연구국 선정(6박 8일)
▸ (추진일정) 대상자 등 선정(매년 11월경) → 연수 준비(12월) → 국외연수(차년도 2~3월)
▸ (소요예산) 약 99,900천원
▸ (비 고) 1996년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코로나-19로 중단된 후 2026년 재개

자료: 교육부

둘째, 2025년도 정책기획관 기본경비(총액 비대상) 예산이 2023년에 비해 20억원 이상 증액 편성되어 다른 실·국 기본경비 부족분을 보전하는 여유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투명한 재정 운용이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조속한 시정이 필요함. 한편, 예산 일부를 정책기획관 기본경비(총액 비대상)에서 정책기획관 기본경비(총액대상)로 조정하여 집행한 것은 총액인건비 증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예산 집행지침에 위반됨.

정책기획관 정원은 2023년 53명에서 2025년 64명으로 20.7% 증가한 반면, 정책기회관

음.

기본경비 예산은 2023년 25억 6,100만원에서 2025년 46억 6,000만원으로 82.0% 증가하였고, 2025년에는 이 중 56.5%인 26억 3,500만원을 다른 실·국 기본경비 등으로 이관(내역변경 또는 이·전용)하여 집행하였음.

[2023~2025년도 정책기획관 정원 변동내역]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정책기획관 정원 (비상안전담당관실 포함)	53명	65명	64명

자료: 교육부

[2023~2025년도 정책기획관 기본경비(총액비대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금액(B)	비율(B/A)				
2023	2,561	2,561	524	△809	31.6%	2,276	1,868	228	180
2024	3,224	3,224	228	△1,254	38.9%	2,198	1,893	278	27
2025	4,660	4,660	278	△2,635	56.5%	2,303	1,996	245	61

자료: 교육부

2025년 3월 25일 인재정책관 기본경비로 6억 1,300만원을 이관되는 등 9개 부서 기본경비로 총 13억 900만원이 이관되었고, 이후에도 7월까지 매월 각 부서 기본경비에 각 700만원부터 1억 2,300만원까지 상당한 금액이 이관되어 부족분을 보충하였으며, 11월 6일에는 다시 9개 부서 기본경비로 총 3억 5,200만원을 이관하였고, 12월 12일에는 국립학교 인건비 사업으로 3억 6,200만원이 승인 이용되었음.

[2025년 정책기획관 기본경비(총액비대상)에서 다른 사업으로의 이·전용 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일자	세부사업		금액
		~에서	~으로	
내역변경	'25.3.25.	정책기획관 기본경비 (총액비대상) (7011-253)	대변인 기본경비(총액비대상)(7011-254)	230
			교원학부모지원관 기본경비(총액비대상)(7011-256)	151
			평생직업교육정책관 기본경비(총액 비대상)(7011-258)	175
			인재정책기획관 기본경비(총액 비대상)(7011-267)	613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기본경비(총액 비대상)(7011-257)	20
			책임교육정책관기본경비(총액 비대상)(7011-261)	20
			글로벌교육기획관 기본경비(총액 비대상)(7011-263)	20
			학생건강정책관 기본경비(총액 비대상)(7011-269)	20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기본경비(총액 비대상)(7011-273)	60

(단위: 백만원)

구분	일자	세부사업		금액
		~에서	~으로	
	’25.3.31.		글로벌교육기획관 기본경비(총액 비대상)(7011-263)	100
	’25.4.1.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비대상)(7011-250)	123
	’25.5.13.		평생직업교육정책관 기본경비(총액 비대상)(7011-258)	7
	’25.5.21.		감사관 기본경비(총액 비대상)(7011-251)	12
	’25.6.2.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기본경비(총액 비대상)(7011-257)	50
	’25.7.8.		지역인재정책관 기본경비(총액 비대상)(7011-259)	100
	’25.11.6.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비대상)(7011-250)	83
			지역인재정책관 기본경비(총액 비대상)(7011-259)	170
			교원학부모지원관 기본경비(총액 비대상)(7011-256)	45
			책임교육정책관 기본경비(총액비대상)(7011-261)	30
			학생건강정책관 기본경비(총액 비대상)(7011-269)	8
			감사관 기본경비(총액 비대상)(7011-251)	7
			디지털교육기획관 기본경비(총액 비대상)(7011-255)	2
			인재정책기획관 기본경비(총액 비대상)(7011-267)	6
			글로벌교육기획관 기본경비(총액 비대상)(7011-263)	1
	’25.11.17.		교원학부모지원관 기본경비(총액 비대상)(7011-256)	15
	’25.12.2.		교원학부모지원관 기본경비(총액 비대상)(7011-256)	2
	’25.12.9.		정책기획관 기본경비(총액대상)(7011-203)	8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비대상)(7011-250)	10
			지역인재정책관 기본경비(총액 비대상)(7011-259)	5
			책임교육정책관 기본경비(총액비대상)(7011-261)	2
			인재정책기획관 기본경비(총액 비대상)(7011-267)	4
승인 이용	’25.12.12.		국립학교 인건비(1701-110)	364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조직개편이나 예상치 못한 현안 발생 등에 대응하여 타 부서 기본경비 부족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정책기획관 기본경비에 여유 재원이 편성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각 부서별 기본경비를 각각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함으로써 부서의 규모와 성격에 따른 적정 금액이 배정되도록 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과도한 여유재원을 활용한 방만한 예산 집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

2025년도 정책기획관 기본경비 예산을 2023년에 비해 20억 9,900만원 증액 편성하여 여유재원을 확보한 후 다른 부서 기본경비가 부족할 때마다 보전하는 것은 투명한 재정 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과다 편성된 기본경비는 감액하는 등의 시정조치가 필요함.

한편, 2025년 12월 9일 ‘정책기획관 기본경비(총액 비대상)’ 사업에서 ‘정책기획관 기본경비(총액대상)’ 사업으로 800만원이 이관되어 인건비 외 운영경비로 사용되었으나,

이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로의 이·전용과 예비비의 사용 등을 통한 총액인건비 규모의 증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집행지침[15]에 위반되는 조치로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셋째, 2025년 10월 1일 사회정책협력관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7일 기본경비 집행잔액 일부를 다른 부서 기본경비로 변경하여 집행한 것은 조정된 기존 업무 지속 수행을 위한 예산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기본경비 예산을 편성내역과 달리 자의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부적절함.

2025년 10월 1일「정부조직법」개정으로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지 않게 되면서 같은 날「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되어 사회정책협력관이 폐지되었음.

2025년도 '사회정책협력관 기본경비(총액비대상)' 본예산(4억 1,500만원)과 2024년도 이월예산(1억 5,3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5억 6,800만원 중 2025년 9월까지 글로벌교육기획관 기본경비 등으로 1억 5,500만원을 변경(감)했고, 2025년도 1억 6,000만원 집행하여 2025년 10월 부서 폐지 당시 집행잔액이 약 2억 5,000만원 이상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2025년 11월 7일 동 기본경비 예산 중 2억 4,060만원을 다른 부서 기본경비로 변경하고, 나머지 1억 1,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폐지된 부서의 기본경비 집행잔액을 전액 반납하지 않고, 일부를 다른 부서 기본경비로

15)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53

<별첨>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인건비 예산 운영 개요

■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로의 이·전용과 예비비의 사용 등을 통한 총액인건비 규모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① 각 기관은 총액인건비에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및 예산을 계획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건비 및 운영경비를 삭감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행기관은 수시직제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액인건비 증가 소요는 원칙적으로 기 확정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충당하여야 한다.

③ 다만, 환율인상, 긴요한 대규모 인력수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총액인건비에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거쳐 총액인건비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간의 전용은 집행지침 상의 '자체 전용권 위임범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총액인건비제 시행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

① 의도적 절감노력에 의해 발생한 잉여재원은 인건비와 운영경비간 전용이 가능하다.

② 각 경비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부족이 발생한 경우 인건비와 운영경비 간 전용이 가능하다.

■ 총액인건비 대상경비는 총액인건비 비대상 경비로 우회 집행할 수 없다.

변경·집행한 것은 조정된 기존 업무 지속 수행을 위한 예산의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라 할 것임.

[2025년도 사회정책협력관 기본경비(총액비대상)에서 다른 사업으로의 이·전용 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일자	세부사업		금액
		~에서	~으로	
내역 변경	'25.3.6.	사회정책협력관 기본경비 (총액비대상)	글로벌교육기획관 기본경비(총액비대상)	50
			지역인재정책관기본경비(총액비대상)	3
			평생직업교육정책관 기본경비(총액비대상)	2
	'25.4.24.		인재정책기획관 기본경비(총액비대상)	50
	'25.9.10.		책임교육정책관 기본경비(총액비대상)	50
	'25.11.7.		정책기획관 기본경비(총액비대상)	122.6
			대변인 기본경비(총액비대상)	18

자료: 교육부

【일반회계】

<세 출>

4. 보육교직원 인건비 사업: 적정 예산 편성으로 이·전용 및 예비비 사용 지양 필요

가. 개 요

‘보육교직원 인건비’ 사업은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을 통해 양질의 보육·교육 여건을 제공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조 2,755억 1,2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16)]

[2025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비비 (D)	예산현액 (A+B+C+D)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1,961,911	1,961,911	-	6,751	103,460	2,072,122	2,072,122	-	-	2,184,435
보육교직원 인건비	1,169,743	1,169,743	-	2,310	103,460	1,275,512	1,275,512	-	-	1,329,289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기초적인 보육환경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예산이 매년 과소 편성되어 사업 간 조정이나 예비비 사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교육부는 영아반 교사 증가 추세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16) 일반회계-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1640-404)(영유아정책국)

보육교직원 인건비 사업은 최근 5년간 이·전용(증) 또는 예비비 사용이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증액된 예산 규모는 2021년 57억 7,900만원, 2022년 169억 8,600만원, 2023년 406억 2,400만원, 2024년 341억 8,600만원, 2025년 1,057억 6,9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음.

[2021~2025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결산]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1	867,388	867,388	-	5,779	-	873,167	873,167	100.7	-	-
2022	938,174	938,174	-	16,986	-	955,159	955,159	101.8	-	-
2023	1,018,934	1,018,934	-	**26,168**	**14,456**	1,059,558	1,059,558	104.0	-	-
2024	1,123,712	1,123,712	-	**933**	**33,254**	1,157,898	1,157,898	103.0	-	-
2025	1,169,743	1,169,743	-	**2,310**	**103,460**	1,275,512	1,275,512	109.0	-	-

자료: 교육부

2025년에는 당초 예산보다 1,057억 6,900만원이 초과 집행되었는데,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영아반(0-2세) 교사 지원인원이 계획보다 5,841명 많은 4만 6,646명이 되면서 당초 예산액보다 1,250억 9,000만원이 초과 집행된 것이 주요 원인임.

[2025년도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인건비 예산산출근거 및 실집행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명)

구분		예산 산출근거		예산 실집행내역		차이	
		인원(A)	금액(B)	인원(C)	금액(D)	인원(C-A)	금액(D-B)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인건비	원장	8,081	175,490	7,501	166,361	△580	△9,129
	영아반 교사	40,805	587,594	46,646	712,684	**5,841**	**125,090**
	유아반 교사	15,600	84,240	10,111	54,928	**△5,489**	**△29,312**
	조리원	8,081	126,569	7,658	124,452	△423	△2,117

자료: 교육부

영아반교사 인건비는 소요액의 8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반면, 유아반 교사 인건비는 30%를 지원하는데,[17] 이는 영아반은 아동 3~7명당 보육교사 1명이 배정되어 보육료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반면, 유아반은 교사 대 아동비율이 1:15 또는 1:20으로 상대적으로 보육료 수입이 많은 점을 감안한 것임.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기준)]

구분	영아반			유아반		장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이상	
교사 : 아동 수(원칙)	1 : 3	1 : 5	1 : 7	1 : 15	1 : 20	1 : 3

자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2(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정리

따라서 영아반교사 지원인원이 계획보다 많아지면 보육교직원 지원인원이 계획과 같거나 줄었더라도 총 지원금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증가할 수 있음.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영아반 교사 인건비에서 2023년 650억 4,000만원, 2024년 600억 8,600만원, 2025년 1,250억 9,000만원의 초과 지급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동 사업예산에서 부족액(2023년 406억 2,400만원, 2024년 341억 8,600만원, 2025년 1,057억 6,900만원)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2023~2025년도 영아반교사·유아반교사 인건비 지원예산 산출근거 및 실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명)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산출 근거(A)	집행 내역(B)	차이 (B-A)	산출 근거(C)	집행 내역(D)	차이 (D-C)	산출 근거(E)	집행 내역(F)	차이 (F-E)
영아반 교사	지원 인원	36,846	39,653	2,807	**40,805**	43,136	2,331	**40,805**	46,646	**5,841**
	지원 금액	483,532	548,572	65,040	559,674	619,760	60,086	587,594	712,684	**125,090**
유아반 교사	지원 인원	16,600	11,394	△5,206	15,600	10,832	△4,768	15,600	10,111	△5,489
	지원 금액	81,691	56,880	△24,811	80,237	55,198	△25,039	84,240	54,928	△29,312

자료: 교육부

17) '2026년도 보육사업 안내'(교육부) p.334 참조

[2023~2025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예산 산출근거 및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명)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산출 근거(A)	집행 내역(B)	차이 (B-A)	산출 근거(C)	집행 내역(D)	차이 (D-C)	산출 근거(E)	집행 내역(F)	차이 (F-E)
지원인원	84,544	78,572	△5,972	88,642	83,614	△5,028	87,612	86,847	△765
지원금액	1,018,934	1,059,558	**40,624**	1,123,712	1,157,898	**34,186**	1,169,743	1,275,512	**105,769**

주)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인건비(영아반교사·유아반교사·원장·조리원)·영아전담어린이집·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인건비 등을 모두 합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사업의 지원금액임.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영아반교사 인건비 지원 예산액을 2023년 4,835억 3,200만원, 2024년 5,596억 7,400만원, 2025년 5,875억 9,400만원으로 매년 증액 편성하고 있으나, 집행액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2023년 이후 연도별 출생아 수가 증가하고 영유아(0~2세)의 어린이집 취원율이 매년 높아지면서 영아반 교사 수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2021~2025년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

(단위: 명)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출생아 수	260,562	249,186	230,028	238,317	254,457
합계출산율	0.808	0.778	0.721	0.748	0.800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2023~2025년도 어린이집 취원율 및 평균 이용인원 추이]

(단위: 명)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0세반	취원율	22.4%	22.9%	23.3%
	인원	80,174	87,253	91,818
1세반	취원율	85.0%	85.7%	86.7%
	인원	201,672	200,560	200,060
2세반	취원율	90.9%	91.5%	90.1%
	인원	247,938	232,145	229,447

자료: 교육부

그러나 2025년도 예산액은 영아반 교사 40,805명을 기준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4년도 예산 기준인원과 동일한 수치임. 2021년 이후 보육교직원 인건비 예산 부족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과 최근 영아반 증가 추세를 면밀히 분석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결과, 2025년 영아반 교사 지원인원과 지원금액에서 각각 5,841명, 1,250억 9,000만원 초과분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명에도 미치지 못하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황이 수년째 반복되면서 출생률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정작 기초적인 보육환경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예산이 매년 과소 편성되어 사업 간 조정이나 예비비 사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예산 편성이 정책 우선순위와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시정이 필요할 것임.

5.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사업: 공사 지체에 따른 예산 이월 및 불용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가. 개 요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사업은 국립부설학교 시설 신·증축, 노후된 건물의 개축·리모델링, 기존 건물 유지 보수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41억 8,700만원 중 152억 8,700만원이 집행(집행률 44.7%)되고 133억 8,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5억 2,300만원이 불용되었음.[18)]

[2025년도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57,435	57,435	7,368	-	64,803	44,895	13,387	6,520	61,329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26,819	26,819	7,368	-	34,187	15,276	13,387	5,523	30,764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동 사업의 2025년도 집행률이 44.7%에 불과한데, 이는 2024년 12월 건물 개축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전기·통신 등 부대공사 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 2025년 일정 지체로 부대공사는 착공도 못하고 관련 비용을 불용처리하는 등 방만한 사업관리에 기인한 측면이 있으므로, 교육부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국립부설학교 42개소(어린이집 6개소 포함)의 시설 신·증축 등을 지원하는 동 사업의 집행률은 연례적으로 70% 내외로 저조했었는데, 특히 2025년 집행률은 44.7%에 불과했고, 불용액이 55억 2,300만원에 달했음.

18) 일반회계-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1702-300)(학교정책관)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사업 결산(2021~2025년)]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1	36,450	36,450	4,851	-	41,301	32,880	90.2	**79.6**	5,061	3,360
2022	29,248	29,248	5,061	-	34,309	26,750	91.4	**78.0**	3,678	3,881
2023	27,398	27,398	3,678	-	31,076	20,195	73.7	**65.0**	10,276	605
2024	29,454	29,454	10,276	-	39,730	27,161	92.2	**68.4**	7,368	5,201
2025	26,819	26,819	7,368	-	34,187	15,276	57.0	**44.7**	13,387	5,523

자료: 교육부

구체적으로 전북대 부설고 본관동 개축사업과 한국우진학교 교실·주차장 증축사업에서 각각 30억 9,200만원, 15억 1,5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년도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사업 중 집행부진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공사	본예산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제주대 부설고 교실증축[주]	5,153	175	5,328	218	4.1%	4,907	203
한국경진학교 교사동 증축[주]	4,573	-	4,573	390	8.5%	3,711	472
전북대 부설고 본관동 개축	1,357	3,091	4,448	843	18.9%	514	**3,091**
한국우진학교 교실·주차장 증축	5,314	3,378	8,692	4,127	47.5%	3,050	**1,515**

주) 제주대 부설고 교실증축사업은 설계용역 지연, 감리용역 수행을 위한 총사업비 변경 등으로 사고이월되었으나, 2026년 5월 공정율 35%로 2026년 12월 준공예정이며, 한국경진학교 교사동 증축사업은 건축 인허가 지연, 조달절차 중 국가정보관리원 화재 등으로 사고이월되었는데, 2026년 5월 공정율 45%로 2026년 10월 준공예정이라고 함.

자료: 교육부

그 사유를 살펴보면, 전북대 부설고 본관동 개축사업은 2024년 예산현액은 71억 2,900만원이었는데, 총사업비 협의 등으로 2024년 연내 본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자 2024년 12월 전기·통신·소방 등 부대공사 계약부터 체결하였으나, 2025년 공사 일정이 지체되면서 부대공사에 착공하지 못해 2024년도 예산에서 이월된 부대공사비용 30억 9,100만원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 따라 재이월이 금지[19]되어 전액 불용되었음.

19)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그러나 ① 본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그 해 12월에 부대공사 계약을 체결한 점이나,[20] ② 2025년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당초 예견할 수 있었던 시험기간 및 우기·혹서기 공사 중지 등으로 공사가 지체되어 해당 예산을 불용처리한 점은 교육부의 사업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임.

[전북대 부설고 본관동 개축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2	952	-	952	929	-	23
2023	1,500	-	1,500	6	1,486	8
2024	5,643	1,486	7,129	1,328	3,091	2,710
2025	1,357	3,091	4,448	843	514	3,091
2026	11,100	514	11,614	집행중		

자료: 교육부

[2025년 전북대 부설고 본관동 개축사업 불용사유]

(불용사유) 2024년 조달청 설계검토와 기획처 총사업비 협의가 11월까지 장기화되면서 본공사 조달청 계약체결이 안 되어 예산을 전기·소방·통신 등 부대공사로 계약하여 사고이월(31억) 하였으나, 2025년 3월 본공사 계약 및 4월 착공 이후 시험기간 공사 중지, 우기·혹서기 등 기상악화로 본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부대공사도 착공이 안 되어 사고이월예산(31억)이 부득이 불용됨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재정리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0) 교육부에 따르면, 당초 2024년 예산으로 본공사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총사업비 협의 완료 후인 11월 조달청에 계약체결을 의뢰하자 입찰공고기간, 적격심사기간, 계약기간 등에 60일 이상이 소요되어 연내 계약체결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전기·소방 등 부대공사는 각각의 설계금액이 30억원 이하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 의뢰 없이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에 따라, 2025년 12월 3일 입찰공고를 한 후 2024년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 각각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설명함.

(단위: 원)

구분		기초금액(설계금액)	공고일	계약금액	계약일자	착공일	비고
본공사	건축	11,018,737	2024.12.23.	8,894,554	2025.03.25.	2025.04.16.	조달청 입찰
부대공사	기계	670,267	2024.12.03.	589,988	2024.12.20.	-	자체 입찰
	전기	1,333,537	2024.12.03.	1,166,104	2024.12.24.	-	
	통신	853,554	2024.12.03.	750,540	2024.12.24.	-	
	소방	661,893	2024.12.03.	584,972	2024.12.23.	-	

한편 한국우진학교 교실・주차장 증축사업은 주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약 13개월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2024년에서 사고 이월된 예산 일부가 2025년 집행되지 못하면서 15억 1,5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2026년 6월 현재 공동도급한 시공사에 의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함.

[한국우진학교 교실·주차장 증축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1	352	-	352	7	344	1
2022	2,658	344	3,002	304	-	2,698
2023	2,284	-	2,284	53	2,228	3
2024	3,575	2,228	5,803	1,104	3,378	1,321
2025	5,314	3,378	8,692	4,127	3,050	1,515
2026	4,979	3,050	8,029	집행중		

자료: 교육부

[2025년 한국우진학교 교실·주차장 증축사업 불용·이월 발생사유 및 향후 전망]

(불용사유) 2024년 감리선정 지연, 주 시공사 채권압류 등으로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예산이 사고이월(34억) 되었으며, 2025년 주 시공사 부도, 가설 및 기초공법 변경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기계약된 사고이월 예산의 집행이 어려워 불용됨
(이월사유) 상기 사유로 공사 지연되어 2025년 예산으로 계약된 사업예산 사고이월
※ 주 시공사 가압류 및 부도로 2024~2025년 약 13개월 지연
(향후전망) 현재 주 시공사는 제외되었고, 공동도급한 시공사가 공사 추진하여 2027년 1월 준공예정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재정리

그러나 주 시공사 가압류 등이 진행될 경우에는 연대책임이 있는 공동도급 시공사에 즉각적인 계약이행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공사지연을 최소화함으로써 예산 불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총사업비 변경 절차, 인허가 지연, 주시공사 부도 등에 따라 공사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지체되는 것은 일정 부분 불가피할 수도 있으나, 적어도 사고이월된 예산이 다음 연도에도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되는 일은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당해 연도 예산 불용을 방지하기 위해 12월에 공사일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는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6.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사업: 국고-광역지자체 매칭사업으로 사업구조 전면개편 후 실집행률 제고 노력 필요

가. 개 요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사업은 경제적 여건 등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일반 성인 등의 자기계발 및 자아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평생교육강좌 수강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1인당 35만원 상당, 우수이용자 70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85억 6,100만원 중 284억 7,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7%)되고 8,200만원이 불용되었음.[21)]

[2025년도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28,561	28,561	-	-	28,561	28,479	-	82	28,557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2023년까지는 전액 국고사업(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사업)으로 시행되었으나, 지역의 평생교육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사업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광역 지자체 중심의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22)23)]에 따라 2024년 일부가 국고-지자체 매칭사업으로 시범 운영되었고, 2025년부터는 사업 전부가 국고-광역지자체 매칭사업(국고보조율 70%)으로 개편되었음.

---

21) 일반회계-평생교육바우처 지원(4131-304)(평생교육지원관)

22) 2020년 국정감사 등에서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전 국민의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광역 시도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23) 2021년 12월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평생교육법」 제16조의2제5항에서는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이 지방자치단체 사무라는 점을 전제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평생교육법」
제16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⑤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등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 사업구조 개편]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일반 바우처	전액 국고 - 예산 178억 3,000만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국고사업예산 179억 5,500만원 ・(시범) 국고-지방비 매칭(30억 8,700만원) : 울산・충남・제주 참여	전액 국고-광역지자체 매칭 - 국비예산 227억 1,200만원 - 노인, 디지털 바우처 포함
장애인 바우처	전액 국고사업 - 예산 9억 1,500만원 - 국립특수교육원 시행	전액 국고-기초지자체 매칭 - 국비예산 19억 8,500만원	전액 국고-광역지자체 매칭 - 국비예산 26억 4,600만원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재정리

참고로 동 사업예산(국비)은 2019년 25억 900만원에서 2025년 285억 6,100만원으로 약 11.4배 증가하였으며, 지원인원은 2019년 6,401명에서 2025년 10만 5,198명으로 6년 동안 약 16.4배 증가하였음.

[2019~2025년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 예산 및 지원인원 현황]

(단위: 백만원, 명)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예산액(국비)	2,509	3,444	7,384	14,073	20,595	26,219	28,561	28,557
실집행액(국비)	2,453	3,373	7,274	14,056	20,032	23,090	22,975	집행중
실집행률	97.8%	97.9%	98.5%	99.9%	97.3%	88.1%	80.4%	집행중
지원인원	6,401	10,374	22,528	42,874	62,615	77,083	105,198	집행중

주) 운영경비 등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정리

나. 검토의견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은 국가-광역지자체 매칭사업으로 사업구조가 전면 개편된 2025년 실집행률이 80.4%로 종전에 비해 하락하였으므로, 교육부는 향후 광역 지자체의 사업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 실집행률(운영경비 제외)은 전액 국고사업으로 추진된 2023년에는 97.3%에 달하였으나, 일부 시범사업이 도입된 2024년 88.1%이었고, 국고-광역지자체 매칭사업으로 전면 개편된 2025년에는 80.4%로 더욱 하락하였음.

[2023년~2025년도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액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예산액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예산액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출연금)	17,830	17,830 (17,627)	**98.9%**	17,955	17,955 (17,500)	**97.5%**	-	-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 (자치단체경상보조)	-	-	-	3,087	1,802 (1,631)	**52.8%**	20,948	20,895 (16,764)	**80.0%**
노인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 (자치단체경상보조)	-	-	-	-	-	-	1,764	1,760 (1,277)	72.4%
장애인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출연금)	915	915 (566)	61.9%	-	-	-	-	-	-
장애인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 (자치단체경상보조)	-	-	-	1,985	1,407 (813)	41.0%	2,646	2,646 (1,789)	67.6%
평생교육바우처 사업 운영(출연금)	1,850	1,850 (1,839)	99.8%	2,992	2,992 (2,953)	98.7%	3,001	3,001 (2,967)	98.9%
장애인 평생교육바우처 사업 운영				200	(193)	96.5%	202	(178)	88.1%
합계	20,595	20,595 (20,032)	**97.3%**	26,219	24,349 (23,090)	**88.1%**	28,561	28,480 (22,978)	**80.4%**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2025년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광역지자체 주관으로 사용기관을 일괄 재등록하고 바우처 이용기준을 재정비하는 등 전반적인 기반구축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실집행률이 하락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이 사업 지역별·내역사업별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에서 일부 시·도의 실집행률은 95%가 넘는 반면, 일부는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의 시·도별 실집행률은 48.7%에서 98.8%까지로 그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국고사업으로 수행하면 지역과 무관하게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어 실제 이용자가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 편중될 수 있는 반면, 시·도별 인구에 비례하여 국비 보조금을 배정[24]하는 현행 구조에서는 모든 시·도의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을 수 있는 측면도 있으므로 그 장점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각 시·도에 배정된 예산의 실집행률이 제고되어야 할 것임.

24) 2025년에는 각 광역지자체의 19세 이상 주민 수를 기준으로 사업예산을 배정하였음.

[2025년도 시·도별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지역	일반 평생교육바우처 (디지털 포함)			노인 평생교육바우처			장애인 평생교육바우처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서울	3,924	3,233	82.4	330	240	72.7	391	309	79.0
부산	1,363	1,158	85.0	115	84	73.0	176	102	**58.1**
대구	969	806	83.1	82	59	72.0	131	93	71.2
인천	1,227	1,118	91.1	103	95	92.2	152	103	**67.9**
광주	566	495	87.5	48	44	91.7	69	68	98.8
대전	585	477	81.5	49	36	73.5	71	60	84.3
울산	442	323	73.0	37	31	83.8	51	25	**49.8**
세종	90	82	90.7	7	6	85.7	13	11	88.1
경기	5,498	4,039	73.5	463	300	**64.8**	583	391	**67.0**
강원	630	479	76.0	53	31	**58.5**	102	55	**53.6**
충북	650	497	76.4	55	38	**69.1**	97	62	**63.9**
충남	866	777	89.7	73	49	**67.1**	135	91	**67.5**
전북	716	703	98.2	61	60	98.4	132	98	74.1
전남	739	501	**67.8**	62	36	**58.1**	138	67	**48.7**
경북	1,052	716	**68.1**	88	50	**56.8**	180	104	**57.8**
경남	1,312	1,102	84.1	111	96	86.5	189	124	65.5
제주	266	258	97.0	23	22	95.7	36	26	73.5
합계	20,895	16,764	80.2	1,760	1,277	72.6	2,646	1,789	67.6

주) 국비 교부액 및 교부된 국고예산의 실집행액으로 2025년 12월 31일 기준이며, “실집행액”은 이용자가 평생교육강좌를 신청하고 이용권으로 결제하여 실제 교육비로 사용이 완료된 금액으로서,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한은 12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이용자 카드에서 회수되어 이후 사용이 불가함.

자료: 교육부

또한 지자체별 실집행률은 수요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제공 여부, 평생교육기관의 접근성 및 주기적인 바우처 이용 안내 등 제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지자체의 사업관리와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것임.

교육부는 각 지자체별 사업관리 실태와 실집행률 추이 등을 주기적으로 추적·관리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는 한편, 실집행률이 극히 저조한 경우에는 지방비 매칭 사업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차년도 예산 배정에 환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7. 한국어능력시험운영 사업: 수입대체경비 적정 예산 편성으로 초과지출 규모 축소 필요

가. 개 요

‘한국어능력시험운영’ 사업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들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한국어 학습방향을 제시하고 한국어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52억 7,300만원 중 141억 1,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2.4%)되고 11억 5,800만원이 불용되었음.[25)]

[2025년도 한국어능력시험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립국제교육원 연수 및 교육과정 운영(수입대체경비)	8,602	8,602	4	9,282	17,888	16,557	-	1,331	7,334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6,786	6,786	4	8,483	15,273	14,115	-	1,158	5,537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수입대체경비인 한국어능력시험 운영사업 예산이 연례적으로 과소하게 편성되어 초과지출 규모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교육부는 세입·세출 예산 편성 시 최근 수납실적·집행실적과 추이를 감안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사업은 국내외에서 연간 15회 내외 시행[26)]되고 있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입대체경비로 운영되고 있음.

25) 일반회계-국립국제교육원 연수 및 교육과정 운영(수입대체경비)(4532-650)(국립국제교육원)

26) 2025년 TOPIK PBT 6회, IBT 5회 및 말하기 시험 2회 시행되었음.

최근 한국어능력시험(TOPIK) 지원자 수가 2021년 약 33만명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5년에는 약 57만명이 되었으며, 응시수수료 수납액은 2021년 92억 1,500만원에서 2025년 167억 3,600만원으로 81.6% 증가하였고, 시험운영예산 집행액은 2021년 87억 6,900만원에서 2025년 141억 1,500만원으로 61.0% 증가하였음.

그러나 세입예산액은 2021년 81억 6,200만원에서 2025년 67억 7,500만원으로 오히려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2021년 50억 1,000만원에서 2025년 67억 8,600만원으로 35.4% 증액되는데 그침에 따라 초과수입 및 초과지출 승인액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으며, 2025년도 시험운영 예산 집행액은 141억 1,5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집행률은 208.0%에 달하고 있음.

[최근 5년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지원자 수 및 결산]

(단위: 명, 백만원, %)

연도	지원자 수	세입			세출					
		예산액 (A)	수납액 (B)	초과수입액 (B-A)	예산액 (C)	초과지출 승인액	예비비등	예산현액	집행액 (D)	집행률 (D/C)
2021	330,016	8,162	9,215	1.053	5,010	3,982	44	9,036	8,769	175.0
2022	357,395	5,383	7,286	1,903	5,245	2,517	2,272	10,034	9,568	182.4
2023	421,812	8,700	13,078	4,378	6,086	5,132	-	11,218	10,635	174.7
2024	493,287	6,546	14,827	8,281	6,546	5,948	-	12,494	12,105	184.9
2025	566,665	6,775	16,736	9,961	6,786	8,483	4	15,273	14,115	208.0

주 1) 예산액은 추가경정예산 기준
2) 세입은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65-651)임
3) 2022년에는 코로나19 관련 방역 및 추가인력 투입 등으로 예비비 편성
자료: 교육부

수입대체경비는 예견하기 어려운 행정 서비스 수요 급증 시 해당 세입으로 즉시 경비를 충당함으로써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나,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27]로 이를 남용할 경우 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용될 필요가 있음.

27)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수입대체경비 예산을 과소계상할 경우 부처의 지출한도 내에서 타 사업 예산 확보가 용이하고 국회 사전심의를 받지 않는 초과지출을 통해 집행의 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어 부처가 선호할 수 있으나, 이러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관행은 재정 운용 투명성을 확보한 뒤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수입대체경비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도 수입대체경비의 연례적 과소계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교육부는 예산 편성 시 전년도 수입 수납실적 및 예산 집행실적과 최근 추이를 고려하여 초과지출승인 규모가 최소화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8.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 직업계고 졸업자 감소추세와 제도 변경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적정 예산 편성 필요 등

가. 개 요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고졸청년의 초기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직업계고 고등학교(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포함)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836억 1,6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28]

[2025년도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102,380	102,380	-	-	102,380	102,380	-	-	102,530
취업연계 장려금	83,616	83,616	-	-	83,616	83,616	-	-	83,616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종래에는 장려금을 신청한 학생이 정해진 기간 내에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면 500만원의 장려금을 선지급하였으나, 2023년 4월 국무조정실 합동점검 결과 근속유지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29]가 있었고, 2025년 졸업자부터는 중소·중견기업 취업 후 3개월 간 근무하면 2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9개월 추가 근무하면 3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음.

28) 일반회계-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4606-300)(학교지원관)

29) 2018년~2022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점검결과, 부적격자 지급(1,503건), 의무종사 등 사후관리 부적절(15,100건), 환수절차 불이행(2,190건, 29.5억원), 장려금 장기간 지연지급 등 운영 미흡(5,826건) 등이 적발되었으며, ㉠ 장려금 지급절차 개선(취업방식 및 대학 진학형태 기준 명확화, 보조금 교부시기 조정, 사업간 업무협력체계강화 등), ㉡ 장려금 수급자 사후관리 강화(보증보험 선가입 의무화, 의무종사 이행단계별 장려금 분할지급 검토, 취업심사시 고용보험 가입정보 활용 의무화), ㉢ 장려금 업무절차 개선, ㉣ 기타 사업관리 강화 등이 권고되었음.

[취업연계 장려금 제도 변경]

종래(2024년 졸업자까지 적용)	변경(2025년 졸업자부터 적용)
장려금을 신청한 학생이 중소·중견기업 취업 시 500만원 지급 이후 12개월 의무종사 미이행시 환수	장려금을 신청한 학생이 중소·중견기업 3개월 근무 시 200만원 지급 이후 추가 9개월 근무 시 300만원 추가 지급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재정리

나. 검토의견

2025년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 예산의 실집행률이 62.4%로 저조하나, 향후 직업계고 졸업자 감소 추세와 지급방식 변경 후 1·2차 지원금 지원실적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사업기간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한국장학재단 보조사업으로서 2022년과 2023년에는 사업예산 1,020억원이 전액 실집행되었으나, 2024년부터 실적이 하락하여 2025년에는 예산액 836억 1,600만원 중 62.4%인 522억 500만원이 실집행되었음.

[2022~2025년 취업연계 장려금 집행 추이]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지원인원
2022	102,000	102,000	100.0%	20,400명
2023	102,000	102,000	100.0%	20,400명
2024	102,000	79,425	77.9%	15,885명
2025	83,616	**52,205**	**62.4%**	(1차) 13,759명 / (2차) 8,229명

주) 2025년도 예산의 실집행액(실집행률)은 2026년 5월 31일 기준
자료: 교육부

2025년도 예산 실집행액이 2년 전인 2023년도의 51.2% 수준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원대상인 직업계고 졸업인원 감소와 제도변경에 따른 지급요건 강화에 기인한 것임.

우선 교육부에서 매년 11월 발표하는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업계고 졸업자 수는 2021년 78,994명에서 2025년 59,661명으로 25.5% 감소하였고 취업자 수도 2025년 15,296명으로 2023년에 비해 21.7% 감소하면서 취업장려금 지원실적이 줄어든 측면이 있음.

[2022~2025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현황]

(단위: 명, %)

연도	취업률[1]	진학률	졸업자 중 취업자비율	상세 자료					
				졸업자	취업자	진학자	입대자	제외 인정자	미취업자[2]
2022	57.8	45.2	29.6	**76,760**	**22,709**	34,686	1,873	942	16,550
2023	55.7	47.0	27.3	**71,591**	**19,526**	33,621	1,940	971	15,533
2024	55.3	48.0	26.3	**63,005**	**16,588**	30,216	1,716	1,059	13,426
2025	55.2	49.2	25.6	**59,661**	**15,296**	29,373	1,523	1,049	12,420

주 1) 취업률(%) = 취업자 / [졸업자-(진학자+입대자+제외인정자)] x100 , 진학률 = 진학자/졸업자 x100
2) 졸업한 사람 중 취업자 및 진학자, 입대자, 제외인정자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은 자
자료: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 정리

다만, 2025년 장려금 지급실적을 2023년과 비교하면, 동 기간 졸업자(또는 취업자) 수가 감소한 비율보다 더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이는 지급방식 변경의 영향으로 보임.

2025년 1차 지원금을 받은 13,749명은 종래 방식에 따르면 50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었으나, 제도변경에 따라 2025년에는 200만원만 받았고, 이 중 2026년 5월말까지 9개월 추가 근무하여 2차 지원금 300만원을 추가로 받은 인원은 7,820명에 불과하였으므로 지급방식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2025년도 예산 실집행액은 더 많았을 것임.

또한, 2024년도 예산 실집행액이 794억 2,500만원으로 전년보다 감소하였는데, 종래에는 다음 연도(2025년) 졸업예정자가 2024년 2학기 재학 중 취업하는 경우 2024년도 예산에서 장려금이 지급되었을 것이나,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되면서 2024년도 예산으로 2025년 졸업예정자를 지원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2024년 예산 실집행액이 감소한 측면도 있음.[30]

30) 2023년 졸업자 중 취업자는 19,526명이나, 당해 연도 예산에서는 20,400명에게 장려금이 지원되었는데, 이는 2024년 2월 졸업예정자가 2023년 10월 이후 재학 중 취업한 경우 2023년 예산에서 장려금이 지원됨에 따른 것으로 보임.

[2025년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 개요(일부)]

ㅇ (지원내용) 1차 200만 원, 2차 300만 원 분할지급

ㅇ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취업연계 장려금을 신청하고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재직)하는
❶ 직업계고 3학년, ❷ 일반고 3학년 中 직업교육 6개월(180일) 이상 위탁과정 참여 학생

ㅇ (취업기한) **2025. 9. 30.까지 3개월 간 취업 및 재직 이력**이 있어야 함

정규학기 졸업(예정)으로 고용보험 전산정보로 확인하여 취업(재직) 이력을 확인 후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로 필요)

ㅇ (재직인정 기한) **2024. 10. 1.(사업기준일) ~ 2027. 3. 31.까지 30개월 동안의 취업 및 재직 이력만 인정**

ㅇ (분할지급) **3개월 재직 시 200만원, 추가 9개월 재직 기간 확인 시 추가 300만원 지원**(전체 12개월 재직=500만 원)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재정리

교육부는 동 사업 2025년도 예산액을 전년에 비해 18.0% 감액된 836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집행액은 62.4%인 522억 500만원에 불과하여 직업계고 졸업자 감소 추세와 지급방식 변경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예측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음. 향후에는 제반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기초로 적정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한편 변경된 제도에서는 2025년도 졸업자는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후 2027년 3월까지 9개월 추가 근무요건을 충족하면 2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2026년 5월까지는 2025년도 예산으로 지원하고, 이후 2027년 3월까지는 2026년도 예산으로 지원하게 됨.

[2025년도 취업연계 장려금 예산 기간별 실집행액]

(단위: 백만원)

대상	예산액	실집행액		
		2025년 1월~12월	2026년 1월~5월	계
2025년 졸업자	83,616	31,154 (37.3%)	21,051 (25.2%)	52,205 (62.4%)

주) 변경된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5년도 예산은 전액 2025년도 졸업자를 대상으로 지원되었지만, 2026년도 예산부터는 2025년 졸업자와 2026년 졸업자를 모두 지원하게 됨.

자료: 교육부

2025년도 예산으로 2026년 5월 지원금을 집행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31]에 부합하지 않고, 동일 연도 졸업자에 대한 2차 지원금은 수 개 연도 예산으로 나누어 집행될 수 밖에 없으며, 학교 학사일정이나 정산기간을 감안하여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32]도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사업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31)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32) 참고로, 동 세부사업의 다른 내역사업인 ‘현장실습 지원금’ 사업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및 정산기간을 감안해 그 사업기간을 매년 5월말까지로 산정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도 있음.
다만, 현재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4606-300)의 두 내역사업인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과 ‘현장실습 지원금’ 사업은 아무런 연관성 없이 각각 시행되는 별도의 사업이고,
오히려 다른 세부사업인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사업(4606-302)은 기업현장교사 지도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현장실습 참여수당을 지원하는 ‘현장실습 지원금’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예산의 체계적 편성·집행을 위해 사업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장실습 지원금’과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사업은 같은 세부사업으로 통합하고 직업계고 현장실습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설정하되,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은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하고 그 사업기간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9.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사업과 통합 및 비목 변경 필요

가. 개 요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중앙부처·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18개소)·유관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및 고졸 청년의 취업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 차원의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8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33]

[2025년도 중앙취업지원세터 운영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1,800	1,800	-	-	1,800	1,800	-	-	1,800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사업은 직업계고 거점학교에서 졸업생 모니터링 및 이력관리, 면담 및 멘토링, 미취업자 취업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4억 5,0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34]

[2025년도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2,450	2,450	-	-	2,450	2,450	-	-	3,050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33) 일반회계-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4606-301)(학교지원관)

34) 일반회계-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4606-304)(학교지원관)

나. 검토의견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과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사업은 주된 목적이 청년 취업 지원으로 동일하고 사업내용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교육부는 사업관리비 절감 및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두 사업의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예산 18억원이 집행되었는데, 동 사업은 중앙취업지원센터가 기업 및 유관 기관과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청년 일자리를 발굴하고 취업 정보를 수집·관리·제공하는 한편, 현장실습 및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함.

[중앙취업지원세터 운영 지원사업 개요 및 2025년 예산 집행내역]

사업목적	중앙부처,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18개 소), 유관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고졸 취업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 차원의 취업지원센터 운영
사업시행주체	한국장학재단
2025년도 예산 집행내역	○ 1,800백만원 · 협력체계 구축 300백만원 · 일자리 발굴 및 매칭 300백만원 · 현장점검 및 센터 운영 900백만원 · 역량강화 지원 300백만원
2025년 주요실적	○ 고졸 청년 취업 활성화 업무협약 3년 연속 목표 대비 100% 달성 ○ 고졸 청년 일자리 발굴, 안내건수 전년 대비 24.8%↑(11,875건→14,821건, +2,946건) ○ 취업지원 유관기관 간 협의체 개최 전년 대비 7배↑(2회→14회) ○ 특별채용 추천 기업수 전년 대비 확대(4곳→5곳, +1곳) ○ 역량강화 교육 수료자 2년 연속 1,500명 이상 지원(1,534명) ○ 대국민 고졸 취업 SNS 소통지수 전년 대비 56.2%↑(88.2만 명→137.8만 명, 49.6만 명) ○ 현장실습 특별 지도·점검 전년 대비 2배↑(40곳→80곳) ○ 정부 추진「일자리 첫걸음 플랫폼」구축 기반 마련
성과지표	○ 시·도교육청 및 직업계고 관계자(교원, 학생 등) 등 사업수혜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결과 (100점 기준 만족도 조사에 대한 응답 평균) (최근 5년간 목표치 달성)
근거법률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3(취업지원센터 설치 · 운영) ① 교육부장관 및 시 · 도교육감은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재정리

한편,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사업은 직업계고 거점학교에 전담 상담관과 상담공간을 마련하여 취업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에서 24개 거점학교당 1억원씩 지원하고, 사업관리주체인 한국장학재단에 5,000만원이 교부되었음.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사업 개요 및 2025년 예산 집행내역]

<table>
<tr><td>사업목적</td><td colspan="2">미취업·진로미결정 직업계고 졸업생에게 친근감 있는 거점학교와 연계하여 진로상담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등 졸업 후까지도 지속 지원</td></tr>
<tr><td>사업시행주체</td><td colspan="2">한국장학재단</td></tr>
<tr><td>2025년도
예산 집행내역</td><td colspan="2">○ 2,450백만원
· 사업비 : 2,400백만원(24개교 × 100백만원)
· 사업관리비 : 50백만원(1식 × 50백만원)</td></tr>
<tr><td rowspan="5">2025년
거점학교 현황
(24개교)</td><td>권역</td><td>거점학교</td></tr>
<tr><td>수도권
(9개교)</td><td>경기자동차과학고, 서울동구고, 세그루패션디자인고, 영락의료과학고, 일신여자상업고, 정석항공과학고, 홍천농업고, 근명고, 인천금융고</td></tr>
<tr><td>충청권
(6개교)</td><td>동아마이스터고, 충주상고, 청주공고, 대전여상, 아산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고, 공주마이스터고</td></tr>
<tr><td>영남권
(4개교)</td><td>경북기계공고, 구미전자공고, 경주정보고, 창원기계공고</td></tr>
<tr><td>호남권
(5개교)</td><td>전남여상, 전북기계공고, 여수석유화학고, 동일미래과학고, 전주공고</td></tr>
<tr><td>성과지표</td><td colspan="2">사업참여자 중 취업자 수 (최근 5년간 목표치 달성)</td></tr>
<tr><td>근거법률</td><td colspan="2">「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개인별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취업의욕과 능력 증진, 취업 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td></tr>
</table>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재정리

두 사업은 사업목표가 청년 취업 지원으로 동일하고, 중앙취업지원센터에서 수집·관리하는 취업 정보를 각 거점학교를 통해 제공하면 그 효과가 제고될 것이므로 밀접하게 연계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고, 사업관리비 절감과 체계적인 성과관리 측면을 고려하면 두 사업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음.

교육부도 2026년 5월 재정지원사업 평가결과 사업성과 제고 및 예산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두 사업 간 통합이 권고됨에 따라 두 사업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구조 개편(통합)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한편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3제1항에서는 “교육부장관”은 취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사업의 법적 근거로 제시되는 「청년고용특별촉진법」 제8조의4에서는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주체를 “정부”로 규정하고 있음.

관련 법령에 따르면,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사무와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등의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사무는 모두 국가사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할 경우 관련 예산은 민간경상보조(320-01목)가 아닌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로 예산 비목을 조정하여 편성·집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 출〉

10. 어린이집 확충 사업: 실집행률 제고 위한 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여 공공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66억 8,400만원 중 185억 8,300만원이 집행(집행률 69.6%)되고, 81억 100만원이 불용되었음.[35)]

[2025년도 어린이집 확충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어린이집 확충	26,684	26,684	-	-	26,684	18,583	-	8,101	22,462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임차·리모델링 비용 등을 보조(국고보조율 50%)하는 것인데,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여 2022년 이후 예산이 매년 감액 편성되고 있으며,

2025년 예산액은 266억 8,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5.9%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 69.6%인 185억 8,300만원이 교부되고, 각 지자체의 실집행액(2025년 12월말)은 124억 9,300만원에 그쳐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이 46.8%에 불과하였음.

35)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어린이집 확충(1634-300)(영유아정책국)

[2022~2025년도 어린이집 확충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실집행액 (C)	집행률 (B/A)	실집행률 (C/A)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22	60,903	49,678	-	-	49,678	49,520	19,131	99.7%	38.5%	-	158
2023	49,170	32,427	-	-	32,427	32,178	11,517	99.2%	35.5%	-	249
2024	41,654	41,654	-	-	41,654	25,498	14,838	61.2%	35.6%	-	16,156
2025	26,684	26,684	-	-	26,684	18,583	12,493	69.6%	46.8%	-	8,101
2026	22,462	22,462	-	집행중							

자료: 교육부

참고로 ‘공보육 이용률’[36]은 2023년 40.0%에서 2025년 45.8%로 상승하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서 제시한 목표치[37]를 달성하였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편차가 발견되고 있음.

[시도별 공보육 이용률(2026년 6월)]

(단위: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68.3	50.7	60.9	41.1	49.4	54.2	37.0	70.2	40.4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54.1	46.2	41.6	46.1	53.8	40.5	44.1	45.7	48.8

주) “공보육이용률” :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의미함.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교육부는 각 지자체에 교부된 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적시 집행되지 않는 경우 추가 교부를 하지 않는 등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른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축지원 예산은 관련 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집행 부진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36)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에서 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을 말함.

37)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음.

> **1-3-①.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
> □ 아동돌봄기관의 공공성 강화
> ○ (국공립 등 공보육 확충)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 확충 등 공보육 이용률 50% 달성(~’25년)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 국공립 유치원 지속 확충

동 사업 2025년 세부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리모델링 지원비용으로 132억 9,800만원이 교부되어 87억 2,500만원(교부액 대비 실집행률 65.6%)이 집행된 반면, 신축 지원비로 교부된 23억 6,400만원 중에는 22.9%인 5억 4,100만원이 집행되었음.

신축은 부지 확보, 건축 인허가, 시공사 선정 등 관련 절차가 복잡하여 리모델링에 비해 실집행률이 저조할 수는 있으나, 교육부는 제반 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교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2025년도 신축지원예산이 교부된 8개 지자체 중 5개에서 교부예산 실집행률이 1% 미만으로 극히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어린이집 확충사업 시도별·유형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지역	신축			리모델링			장기임차			기자재비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서울	1,016	5	**0.5%**	1,468	1,077	73.4%	-	-	-	124	65	52.3%
부산	-	-	-	550	377	68.6%	-	-	-	60	45	75.0%
대구	-	-	-	575	475	82.6%	500	500	100.0%	85	75	88.2%
인천	-	-	-	1,061	717	67.6%	-	-	-	135	125	92.6%
광주	-	-	-	**300**	**131**	**43.7%**	-	-	-	**30**	**10**	**32.0%**
대전	-	-	-	781	557	71.3%	525	375	71.4%	120	80	66.6%
울산	-	-	-	**275**	**67**	**24.4%**	-	-	-	**20**	**0**	**0.0%**
세종	173	0	**0.0%**	-	-	-	-	-	-	-	-	-
경기	653	435	66.5%	3,940	2,508	63.6%	-	-	-	423	349	82.5%
강원	323	0	**0.0%**	**425**	**139**	**32.7%**	-	-	-	**45**	**15**	**33.3%**
충북	-	-	-	**858**	**309**	**36.0%**	-	-	-	**105**	**35**	**33.3%**
충남	-	-	-	652	651	100.0%	-	-	-	65	65	100.0%
전북	78	76	97.2%	503	359	71.4%	-	-	-	50	25	50.0%
전남	41	0	**0.0%**	294	162	55.3%	75	0	**0.0%**	35	20	57.1%
경북	55	0	**0.0%**	923	617	66.9%	125	0	**0.0%**	80	55	68.8%
경남	25	25	98.9%	693	579	83.6%	225	25	**11.1%**	95	65	68.4%
계	2,364	541	**22.9%**	13,298	8,725	**65.6%**	1,450	900	**62.1%**	1,472	1,029	**69.9%**

주) 강원도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신축예산 3억 2,300만원이 교부되었으나, 전혀 집행되지 않았음.
자료: 교육부

한편「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7조에서는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하되,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38)]

그러나 2025년 교육부의 예산 교부실적을 살펴보면, 일부 자치단체(대구)와 같이 동 지침에 부합하는 분할 교부가 이루어지고 최종 실집행률도 높은 경우가 있는 반면, 울산·강원·충북 등 일부에서는 최초 교부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어 최종 실집행률이 5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나는 경우도 보임.

[2025년도 어린이집 확충 사업 교부내역 및 실집행률]

(단위: 백만원, %)

지자체명	교부일자	교부일자	교부일자	교부일자	교부일자	합	실집행액	실집행률
	교부액	교부액	교부액	교부액	교부액			
서울	2025-02-18	2025-10-27	2025-12-10			2,608	1,147	44.0
	1,471	868	269					
부산	2025-02-18	2025-04-21	2025-10-27			610	422	69.2
	368	200	43					
대구	2025-02-18	2025-04-21	2025-07-24	2025-10-27	2025-12-03	1,160	1,050	90.5
	410	55	420	170	105			
인천	2025-03-17					1,196	842	70.4
	1,196							
광주	2025-02-18	2025-12-03				330	141	42.7
	275	55						
대전	2025-02-18	2025-07-24	2025-10-27	2025-12-03		1,427	1,012	71.0
	784	400	73	170				
울산	2025-02-18	2025-04-21				295	67	22.7
	135	160						
세종	2025-12-03					173	0	0
	173							

38)「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위: 백만원, %)

지자체명	교부일자	교부일자	교부일자	교부일자	교부일자	합	실집행액	실집행률
	교부액	교부액	교부액	교부액	교부액			
경기	2025-03-17	2025-12-10				5,016	3,292	65.6
	4,736	280						
강원	2025-02-18	**2025-04-21**	**2025-07-24**			793	**154**	**19.4**
	240	**225**	**328**					
충북	2025-02-18	**2025-07-24**				963	**344**	**35.7**
	908	**55**						
충남	2025-02-18					717	716	99.9
	717							
전북	2025-02-18	2025-10-27				631	460	72.9
	576	55						
전남	2025-02-18	2025-07-24	2025-10-27			445	**182**	**40.9**
	341	80	24					
경북	2025-02-18	2025-04-21	2025-10-27	2025-12-03		1,183	672	56.8
	863	80	110	130				
경남	2025-02-18	2025-04-21	2025-10-27			1,038	694	66.9
	853	55	130					

자료: 교육부

강원도의 경우 교육부는 어린이집 설치장소인 신축 아파트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2025년 실집행률이 저조했다고 설명하나, 2025년 2월 교부된 2억 4,0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아 잔여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월과 7월 각각 2억 2,500만원, 3억 2,800만원이 재차 교부되고, 그 결과 2025년 최종 교부액 7억 9,300만원 중 실집행액은 1억 5,400만원에 그치게 된 것은 적절한 관리감독의 결과라고 보기 어려움.

세종의 경우 2025년 12월 3일 1억 7,300만원이 최초 교부되고 연내 실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연말에 보조금을 교부하면 지자체에서는 연내 매칭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 교부받은 예산을 이월 또는 불용 처리할 수 밖에 없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고등 ·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 출〉

1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보조금 조기 교부 필요 등

가. 개 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은 지자체 주도로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대학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대학별 강점 및 특성을 고려한 대학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이 지역혁신에 기여하고 글로컬대학 등 지역의 우수대학 육성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조 9,410억 5,000만원 중 1조 9,335억 1,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6%)되고 75억 3,100만원이 불용되었음.[39)]

[2025년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2,001,000	1,941,000	-	50	1,941,050	1,933,519	-	7,531	2,140,335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첫째, 2025년 RISE 사업예산의 45% 이상이 8월 29일 이후 교부되었으나, 향후에는 각 지자체에서 매칭재원 확보와 사업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국고보조금이 조기 교부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이하 “RISE”) 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국고보조금의 20% 이상 지방비를 의무매칭하는 사업으로 각 지역RISE위원회에서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과제를 발굴·기획한 후 공모를 통해

39)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2301-400)(대학지원관)

선정된 대학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음.[40]

2025년도 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 금액 총 1조 6,309억 9,000만원 중 45.1%인 7,355억 400만원이 2025년 8월 29일 이후 교부되었음.

[2025년도 RISE 사업예산 시·도별 교부시점]

(단위: 백만원)

구분	1차 (1.31.)	2차 (2.24.)	3차 (4.30.)	4차 (5.30)	5차 (6.30.)	6차 (8.29.)	7차 (9.3.)	8차 (10.2.)	9차 (10.17.)	10차 (10.30.)	11차 (12.3)	총 교부액
금액	500,000	200,000	100,000	50,000	45,486	50,000	425,000	78,870	26,400	26,400	128,834	1,630,990
	895,486					735,504						
비율	30.7%	12.3%	6.1%	3.1%	2.8%	3.1%	26.1%	4.8%	1.6%	1.6%	7.9%	100.0%
	54.9%					45.1%						

자료: 교육부

이 중 상반기에 확정된 각 시・도별 배분액의 실제 교부가 하반기에 이루어진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2025년 8~9월 각 시・도별 배분액이 확정되었음.

2025년도 RISE 예산 세부항목 중 의대교육혁신 지원금(총 551억 5,000만원), 매칭률 인센티브(총 530억원), 글로컬대학 지원금(총 3,831억 8,000만원)은 각각 8월 29일, 9월 15일, 9월 30일에 시・도별 배분액이 확정되었음.

[2025년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내역별·시도별 배분]

(단위: 백만원)

항목	주요내용	배정예산	시・도별 배분액 확정시점
기본배분	RISE 사업으로 통합된 기존 사업예산 집행실적 기초 배분	956,080	24.11.25
글로컬대학	글로컬대학(30개교)에 5년간 교당 약 1,000억원 지원	383,180	**25.9.30.**주)
계획・체계 구축・운영 우수	㉠ 시도 RISE계획 우수성과 ㉡시도 RISE체계 구축・운영의 우수성 측면에서 우수 지자체 선정 인센티브 지급 (영역별 최우수 5개・100억원 내외, 우수 5개・50억원 내외)	150,000	25.1.31.
늘봄	대학 중심의 지역별 늘봄학교 프로그램 공급체계 구축 위해 우수계획 수립 지자체(5개 내외) 추가 지원	21,241	25.2.24.
시범지역	타 시도에 앞서 RISE 체계 구축 완료(전담부서 및 전담기관 조기 지정(23.7.))하여 우수모델 개발 등 추진한 7개 지자체	21,000	24.11.1.
매칭률 인센티브	지자체별 재정여건(재정자주도)과 지방비 매칭률(지역별 1차 추경 완료시점 기준)을 고려해 배분 (지역 투자 확대 유도)	53,000	**25.9.15.**
의대 교육혁신	의과대학이 학교별・지역별 교육여건을 고려한 교육과정 혁신 및 교육 정상화를 통해 우수 의료인력 양성하도록 지원	55,150	**25.8.29.**

주) 2023・2024년에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 관련 지원금은 2025.6.19. 배정되었지만, 2025년 9월에 추가 선정된 대학에 대한 지원금은 2025.9.30. 배정됨.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재정리

40) 시・도별 공모과제 지원금 외에 글로컥대학 지원금, 의대교육혁신 지원금 등이 각 대학 등에 교부됨.

그러나 교육부가 보조금이 지나치게 늦게 교부할 경우 각 지자체에서 매칭재원[41]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으며, 내실 있는 사업 준비가 어려워질 수 있음.

2025년 대학 등의 RISE 사업비(국고보조금) 실집행률(2026년 2월말)은 69.8%에 그쳤는데, 보조금이 9월 이후 교부될 경우, 지방비 매칭, 과제 발굴·기획, 공모, 사업자 선정을 거치면 사실상 연말에 과제 수행에 착수할 수 있으므로 실집행률이 저조할 수 밖에 없음.

[2025년 RISE 사업 실집행률 현황]

(단위: 개교(개소), 백만원)

실집행률 (2026년 2월말 기준)			0%~30%	30%~50%	50%~70%	70%~80%	80%~100%	계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수	합 계		17	32	112	77	122	360
	지원 금액	100억 이상	-	-	18	12	10	40
		50억~100억원	1	4	16	13	14	48
		10억~50억원	4	13	53	39	41	150
		10억원 미만	12	15	25	13	57	122
교부금액			16,852	66,415	698,967	453,469	391,874	1,627,578
실집행액			2,618	27,835	437,257	335,893	333,212	1,136,815

주) 시·도별 공모과제 지원금, 글로컬대학 지원금, 의대교육혁신 지원금 등이 모두 포함됨.
자료: 교육부

2025년에는 동 사업예산 중 6,891억 6,500만원이 수시배정(지출 전 협의)사업으로 관리되었으며, 재정당국은 RISE 사업 관련 지자체의 관리계획, 여건 등에 따라 배분액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배정을 유보하였다가 2025년 7월 25일 5,528억 2,400만원, 11월 25일 1,288억 1,200만원을 각 배정하였음.

41) 2025년도 시·도별 지방비 매칭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17개 시·도가 모두 국고보조금의 20% 이상 지방비를 매칭하였으나, 향후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고보조금의 조기교부가 필요할 것임.

(단위: 백만원, %)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국비	63,998	163,685	85,818	22,310	92,965	77,977	51,852	15,179	65,263
지방비	21,650	32,737	17,177	4,462	18,593	15,595	10,371	3,036	13,432
매칭률	33.8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6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국비	141,125	109,034	135,237	117,211	95,191	210,286	138,186	45,674	**1,630,990**
지방비	30,141	23,219	30,065	42,467	32,447	50,874	27,650	9,134	**383,055**
매칭률	21.4	21.3	22.2	36.2	34.1	24.2	20.0	20.0	**23.5**

자료: 교육부

[2025년 RISE 사업 수시배정 사유 및 예산 배정일]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예산액(추경)	수시배정				
		대상액	배정액	집행액	수시배정 사유	예산배정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1,941,000	689,165	681,636	681,634	구체적인 사업계획 확인 필요	7.25. (552,824) 11.25. (128,812)

자료: 교육부

RISE 사업예산은 2025년에 처음 편성[42]된 예산으로 규모가 2조원이 넘으며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므로 향후에는 지방비 매칭재원 확보와 내실 있는 사업준비, 예산의 적시 집행을 위해 국고보조금이 조기 교부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교육부는 2026년[43]에는 각 지자체의 사업성과 등에 대한 연차점검 결과를 당해 연도 보조금 예산 배분에 반영한다는 계획으로 2026년 국고보조금 중 총 4,000억원이 연차점검 결과가 확정되는 9월말 이후 배분될 계획으로 설명하고 있음.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1차연도 연차점검 추진계획(안)]

1 연차점검 개요

- ㅇ (점검대상)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 ㅇ (점검내용) ❶자율성과지표 달성도(정량), ❷시·도 추진과정(정성)
- ㅇ (환류규모) **총 4,000억 원**
  ※ 연차점검 결과에 따라 지역별 등급을 부여하여 4,000억 원 내 차등 지급
- ㅇ (점검방법) 상대평가, 정량·정성평가, 서면·합숙평가
- ㅇ (점검절차)

자료제출	사전OT	사전검토	본 점검	종합심의	확정·안내
보고서 및 증빙 제출	연차점검 위원회 대상 사전OT	온라인 사전검토	서면·대면 점검	연차점검 위원회 결과 고려 등급 심의	**환류규모 확정·안내**
각 지자체 (필수)			연차점검 위원회		
자료제출			현장 점검		
서면의견서			대학 면담		
각 대학 (선택)	중앙 앵커위원회	연차점검 위원회	현장점검단	중앙 앵커위원회	**교육부**
(~7월 중)	(8월 초)	(8월 초)	(8월 중)	(9월)	**(9월 말~)**

자료: 교육부

42) 2024년까지는 RISE 시범사업 성격이 있는 RIS 사업이 편성·집행되었음.

43) 참고로 2026년 RISE사업을 재구조화하며 사업명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로 변경하였음.

둘째, 의대교육혁신 지원사업은 사실상 교육부가 사업계획을 수립·집행함에도 불구하고 RISE사업으로 편성되어 구체적 사업내용에 대한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우회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RISE 사업예산은 기본배분액, 글로컬대학 지원금, 시·도별 인센티브(RISE 계획 및 사업추진체계, 시범사업, 매칭률), 늘봄 지원금 및 의대교육혁신 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5년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내역별·시도별 배분]

(단위: 백만원)

지역	기본배분	글로컬 대학	지역역량 기반					합계 (백만원)
			계획·체계 구축·운영 우수	늘봄	시범 지역	매칭률 우수	의대 교육혁신	
예산	956,080	383,180	150,000	21,241	21,000	53,000	55,150	1,639,651
서울	43,998	-	8,500	4,000	-	4,400	3,100	63,998
부산	101,545	44,640	3,500	-	3,000	3,500	7,500	163,685
대구	58,870	11,148	3,500	-	3,000	1,000	8,300	85,818
인천	9,010	-	3,500	4,300	-	3,500	2,000	22,310
광주	48,570	14,920	17,375	4,300	-	3,500	4,300	92,965
대전	52,294	7,608	12,375	-	-	1,000	4,700	77,977
울산	33,222	11,130	3,500	-	-	2,500	1,500	51,852
세종	11,679	-	3,500	-	-	-	-	15,179
경기	43,063	-	13,500	-	-	3,500	5,200	65,263
강원	71,305	55,920	8,500	-	-	1,000	4,400	141,125
충북	55,779	26,880	17,375	-	3,000	3,500	2,500	109,034
충남	81,822	24,300	17,375	4,340	-	5,400	2,000	135,237
전북	66,086	35,625	3,500	-	3,000	5,400	3,600	117,211
전남	47,291	31,000	8,500	-	3,000	5,400	-	95,191
경북	124,786	66,200	8,500	4,300	3,000	2,500	1,000	210,286
경남	73,086	42,500	13,500	-	3,000	4,400	1,700	138,186
제주	33,674	5,000	3,500	-	-	2,500	1,000	45,674
배정(합계)	956,080	376,870	150,000	21,240	21,000	53,000	52,800주	1,630,990

주) 11억 3,000만원은 KAMC(의대협회) 배정 / 가톨릭관동대 지원예정액(10억원) 포함 의대 잔액 12억 2,000만원 불용 처리
자료: 교육부

① 의대교육혁신 지원금은 각 의과대학이 (관할 지자체와 함께) 작성한 사업수행계획을 교육부(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중앙RISE위원회가 대학별 교부액을 최종 확정하면, 지자체는 배정된 지원금을 해당 의과대학에 교부하는 방식으로 집행되었음.

교육부에서 기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각 대학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을 심사하여 대학별 교부금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므로 각 지역RISE위원회 및 RISE센터에서 지역 특성에 맞춘 사업계획을 수립·집행하는 RISE 사업체계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교육부는 RISE 사업비 교부조건으로 “의대교육혁신 지원액의 지원대상 및 사업기간은 담당부서의 별도 안내에 따라 집행 및 관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의대교육혁신 지원은 교육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집행한다는 점에서 다른 예산사업과 동일하면서도 (각 지역 RISE 체계에 따라 구체적 사업내용이 수립되도록 설계된) RISE 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 국회 심의단계에서는 구체적 사업내용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없었음.

[2025년 의대교육혁신 지원 사업계획]

□ **사업 개요**
- ○ **사업목표** 의과대학이 학교별·지역별 교육여건을 고려한 교육과정 혁신 및 교육 정상화를 통해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도록 지원
- ○ **사업예산** 551.5억 원 ※ 40교 540.2억(자치단체경상보조), 의대협회 11.3억(민간경상보조)
- ○ **사업기간** 2025.6. ~ 2026.5.
- ○ **지원대상** 의과대학 39교, 의학전문대학원 1교 / 의대협회(KAMC)
- ○ **추진방식** **의과대학**이 지자체와 함께 의대 교육혁신 계획을 기획·제출하면, **교육부(평가위원회)**에서 계획에 대한 평가를 거쳐 **RISE 위원회**가 대학별 지원액을 최종 결정
  - 대학·지자체가 제출한 교육혁신 계획의 내용, 의대 교육 정상화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주요 내용**

1 **(의과대학) 대학별 교육혁신 계획 수립 및 추진**
- ○ **사업 내용** 지역 여건·학교 강점·학생 수요 등을 바탕으로 대학이 다양한 과제들을 선택·조합·발굴하여 특성화된 혁신사업 설계·운영
- ○ **사업비 지원** 대학별 교육혁신 계획 및 교육 정상화 노력, 성과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540.2억원 차등 지원
  - 지역 의대(32교)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의대 교육혁신 지원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서울 소재 의대(8교)에도 일부 지원 추진

※ 대학별 사업계획서 제출 현황,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지원대학 수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2 **(의대협회) 의대교육 혁신을 위한 연구 및 선도사례 창출 등 지원**
- ○ **추진 방향**
  - AI 기반 의학교육 모델 확산, 문제은행 등 학습지원 D/B 구축 등 교육혁신 과제 선도적 수행
  - 의대 간 공동 추진이 필요한 과제 관련 연구 실시 및 선도사례 창출을 위한 허브(hub) 기능 수행
  - 대학별 교육계획 컨설팅 등 의대 혁신 성과 관리를 지원하고, 의학교육 발전을 위한 아젠다 등 제안 병행
- ○ **추진과제 및 예산 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교육부 협약**을 통해 세부 추진과제 확정 및 11.3억원 예산(민간경상보조) 지원

자료: 교육부

② 교육부는 RISE 사업 의대교육혁신 지원액으로 배정한 551억 5,000만원 중 11억 3,000만원은 그 비목을 자치단체경상보전(330-01목)에서 민간경상보조(320-01목)로 변경(25.9.11.)한 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Korea Association of Medical Colleges, 이하 “의대협회”)에 교부하였음.

교육부는 이에 대해, 사업계획 수립 당시 의정 갈등 이후 의대생 복귀에 따라 24·25학번을 한 번에 교육해야 하는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개선과 의과대학의 다소 폐쇄적인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종 평가 정보와 교육 콘텐츠를 개방하는 등 대학 간 공동 과제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함.

그러나 애초에 의대교육혁신 사업이 RISE 사업이 아닌 일반 국고사업으로 편성되었다면, 예산 편성·심의과정에서 의대협회 지원의 필요성이나 적절성 등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을 수 있고, 국회 심의·확정한 예산내역에 따라 의대협회 지원금이 집행될 수도 있었을 것임.

따라서 교육부는 2025년 의대교육혁신 지원 사업과 같이 실질적으로 일반 국고사업이면서도 RISE 사업 내에 편성하여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우회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임.

셋째, 각 지역에서 RISE 사업 공모과제 수나 과제별 수행 대학(컨소시엄)의 수를 지나치게 많이 산정하여 지역 소재 대학들에 지원금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온정주의에 기반한 나눠먹기"는 지양되어야 할 것임. 기관평가미인증·경영위기대학에 대한 RISE 지원금 교부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교육부는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각 시·도 RISE위원회에서는 지역에 필요한 과제를 발굴·기획한 후 이를 수행할 대학이나 컨소시엄을 공모하여 선정된 대학(컨소시엄)에 지원금을 교부하고 있으며, 2025년 RISE 국고보조금 예산 중 총 1조 3,410억 3,600만원이 각 시·도의 RISE 공모과제 지원금으로 사용되었음.

2025년 RISE 공모과제 현황을 살펴보면, 17개 시·도에서 총 289개 과제가 공모되었고 과제별 지원금은 평균 46억 4,000만원이었으며, 1개 과제당 평균 7.4개의 과제수행주체(대학이나 컨소시엄)가 선정되었고, 선정된 대학(컨소시엄)에는 평균 6억 2,800만원이 지원되었음.[44]

---

44) 2025년 RISE 사업 공모과제별 지원금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지원금이 1억원 미만인 과제는 3개임.

(단위: 개)

구간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계
과제 수	3	29	32	48	177	289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재정리

한편, 2025년도 RISE 사업 공모과제별 수행주체 수는 아래와 같으며, 11개 이상이 선정된 과제 75개임.

경기도는 공모과제 지원예산 총 490억 9,700만원으로 18개 과제를 공모하면서 과제당 24.6개의 수행주체를 선정함에 따라 선정된 대학(협의체)별 지원금은 1억 1,100만원에 불과하게 되었는데, 지원금액이 지나치게 적을 경우 효과적인 과제 수행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2025년 각 지역 RISE 공모과제 현황]

(단위: 백만원, 개)

지역	공모과제 예산(합)	과제 수(A)	과제별 지원금 (평균)	과제별 수행 대학(컨소시엄) 수(평균)	선정대학 (컨소시엄) 지원금(평균)	신청=선정 과제주 수(B)	비율(B/A)
강원	91,077	12	7,590	10.1	753	8	66.7%
경기	49,097	18	2,728	24.6	111	10	55.6%
경남	106,772	12	8,898	9.9	897	11	91.7%
경북	161,613	46	3,513	4.2	842	29	60.4%
광주	87,602	18	4,867	8.4	580	8	44.4%
대구	77,771	18	4,321	5.2	827	12	66.7%
대전	74,522	13	5,732	8.6	665	10	76.9%
부산	126,426	16	7,902	8.0	988	16	100.0%
서울	57,700	12	4,808	5.9	813	2	16.7%
세종	13,389	12	1,116	2.6	432	4	33.3%
울산	42,565	31	1,373	1.0	1,330	31	100.0%
인천	23,299	14	1,664	4.5	370	8	57.1%
전남	71,191	14	5,085	8.9	574	5	35.7%
전북	89,401	16	5,588	5.6	1,005	8	50.0%
제주	44,809	8	5,601	2.8	2,037	8	100.0%
충남	128,109	17	7,536	11.0	685	5	29.4%
충북	95,694	12	7,974	13.2	606	3	25.0%
합계	1,341,036	289	4,640	7.4	628	178	61.6%

주) “신청=선정 과제” : 공모과제에 신청한 대학(컨소시엄) 수와 선정 대학(컨소시엄) 수가 같은 경우를 의미함.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재정리

한편 11개 시·도에서는 공모과제의 50% 이상에서 신청 대학(컨소시엄)의 수와 선정 대학(컨소시엄)의 수가 같아 사실상 신청 대학(컨소시엄)이 100% 선정되는 결과가 나타났음.[45]

(단위: 개)

과제별 수행주체 (대학(컨소시엄) 수	1개	2개~5개	6개~10개	11개 이상	계
해당 과제 수	60	80	74	75	289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재정리

45) 신청 대학(컨소시엄)이 모두 선정되는 현상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어 보임.

이는 각 지역에서 해당 지역 소재 대학들에 RISE사업예산을 골고루 배분하는 이른바 “온정주의에 기반한 나눠먹기”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46] 공모과제 수 또는 과제별 수행 대학(컨소시엄) 수가 지나치게 많거나 신청 대학(컨소시엄)이 사실상 모두 선정되는 것은 이러한 지적이 타당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한편, 기관평가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경영위기대학으로 선정된 대학 중 13개 대학에 RISE 사업비 총 56억 8,000만원이 지원되었음. 이는 해당 대학이 RISE 과제에 단독으로 참여하는 것은 금지되나 다른 대학이 주관하는 컨소시엄에는 참여하는 것은 지역RISE위원회가 결정할 경우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나, 지자체장과 지역대학 총장이 공동위원장인 지역RISE위원회에 엄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일반재정지원 제한대학에 대한 RISE 지원금 교부현황(2025년)]

(단위: 백만원)

지역	대학	국비			지방비		
		교부액	집행액	집행률	교부액	집행액	집행률
광주	동강대학교	2,191	1,731	79.0%	387	305	78.8%
충북	극동대학교	1,362	989	72.6%	209	95	45.5%
경기	국제대학교	602	536	89.0%	98	88	89.8%
강원	송호대학교	477	197	41.3%	85	35	41.2%
경기	수원과학대학교	207	114	55.1%	58	32	55.2%
경기	김포대학교	172	109	63.4%	28	18	64.3%
경기	화성의과학대학교	141	80	56.7%	39	22	56.4%
경기	여주대학교	129	61	47.3%	21	10	47.6%
부산	부산예술대학교	120	119	99.2%	30	27	90.0%
경기	예원예술대학교	117	107	91.5%	33	30	90.9%
전남	광양보건대학교	90	71	78.9%	10	8	80.0%
충남	금강대학교	51	40	78.4%	0	0	-
대전	한국침례신학대학교	21	21	100.0%	0	0	-
계		5,680	4,175	73.5%	998	670	67.1%

주) 2026년 2월말 기준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재정리

① 지역 소재 대학의 수가 극히 적은 일부 지역의 경우 이러한 현상은 불가피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공모과정에서 경쟁이 없음에 따라 사업의 효과성이 저해되는 문제는 발생하게 됨.
② 과제 설계 시 수행자 수를 지나치게 많이 설정함에 따라 신청 대학(컨소시엄)이 모두 선정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관리가 적절했는지 점검이 필요한 경우라 할 수 있음.
③ 대학 단독뿐만 아니라 컨소시엄 참여를 허용함에 따라 각 대학들이 경쟁 없이 선정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그러나 가치나 철학이 서로 다른 대학이 과제지원금 수령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사업의 효과성은 크게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46) 교육부가 2026년 4월 발표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추진방안’에서도 “형식적 형평성과 온정주의에 기반한 나눠먹기‘, ’ 소규모 과제로의 과도한 분절‘이 관찰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 연차 점검을 통한 시·도별 대학 선정과정 적절성 평가 및 환류, ㉡ 2026년 이후 신규과제 공고시 성과미흡 대학·기관평가 미인증대학·경영위기 대학 전면제한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하고 있음.

12.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불용이 예상되는 재원 활용을 위한 일회적 학업장려금 지원 지양 필요 등

가. 개 요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공평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4조 2,709억 9,9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47)]

[2025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5,305,047	4,980,747	-	-	4,980,747	4,980,747	-	-	5,116,057
국가장학금 지원	4,485,299	4,270,999	-	-	4,270,999	4,270,999	-	-	4,366,988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은 등록금을 동결하고 교내 장학금을 확충하는 대학은 소속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 1유형 외에 추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나, 2025년 상당수 대학에서 등록금을 인상함에 따라 동 사업 참여대학이 2023년 248개교에서 2025년 71개교로 감소하였고, 예산 집행액은 2024년 3,111억 1,700만원에서 2025년 1,247억 8,000만원으로 감소하였음.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 추이]

(단위: 백만원, 개교)

연도	예산액	참여대학	집행액
2023년	300,000	248	295,671
2024년	350,000	234	311,117
2025년	130,000	71	124,780

주)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교육부

47)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2645-300)(평생교육지원관)

나. 검토의견

첫째, 2025년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 참여대학이 감소하면서 각 대학별 평균 지원금이 늘어난 결과, 경제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9구간·10구간 학생들이 주로 수혜를 입게 되어 국가장학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교육부는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등으로 2025년 동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수가 2023년 234개교의 30.3%인 71개교에 불과하게 되자 2025년 본예산액 2,600억원의 일부인 1,035억원만 각 대학에 배분한 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산액을 1,300억원으로 감액하였고, 이후 나머지 271억원을 추가 배분하였음.[48)]

대학노력 연계 장학금사업 참여 대학이 감소하였으나 총 지원예산은 그보다 적게 감소함에 따라 각 대학별 평균 지원금은 2024년 10억 9,900만원에서 2025년 17억 5,400만원으로 증가하였음.[49)]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개교)

연도	예산액	총 지원금액	세부 지원내역					
			대학노력 연계				신편입생 지원금	재난 장학금
			등록금 지원실적(A)	학업장려금 지원실적(B)	참여대학 수 (C)	대학별 지원금 (A+B)/C〕		
2023	300,000	295,671	235,529	-	**248**	**950**	59,976	166
2024	350,000	311,117	257,179	-	**234**	**1,099**	53,884	54
2025	130,000	124,780	114,146	10,403	**71**	**1,754**	-	231

주)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교육부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 지원금은 등록금 지원금, 신편입생 지원금, 재난장학금 등으로 사용됨.

등록금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2024년에는 전체 지원금액의 80.4%가 기초·차상위부터 8구간까지의 학생에게 지원되었던 반면, 2025년 동 구간 지원금액 비율은 37.8%로 감소하였고, 대신 9구간 및 10구간 지원금액 비율이 각각 58.9%, 3.3%로 전년(19.2%, 0.2%)보다 크게 늘어났으며, 1인당 평균 지원금액도 9구간 141만원, 10구간 92만원으로 전년(81만원, 67만원)에 비해 증가하였음.

48) 연중 교부금 반환금 등이 있어 총 교부액은 1,283억원임.

49) 대학별 지원금은 각 대학 규모, 교내 장학금 지급률, 등록금 인하율 등을 기준으로 산출된 '대학별 노력분'에 비례하여 배분되나, 구체적 지원금액은 '전체 참여대학 노력분 합계'를 모수로 상대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전체 참여대학 수가 (예산액 감액보다 큰 비율로) 감소하면서 각 대학별 평균 지원금액은 증가하게 된 것임.

즉, 2025년 각 대학에 배정된 지원금액이 늘어나자 주로 9구간·10구간 학생이 그 수혜를 입게 된 것인데, 이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재정 운용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2024년·2025년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 구간별 지원현황(등록금)]

(단위: 명, 백만원, 만원)

학자금 지원구간	2024년				2025년			
	지원인원 (A)	지원금액 (백만원) (B)	비율 (B/C)	1인당 지원금 (만원) (B/A)	지원인원 (A′)	지원금액 (백만원) (B′)	비율 (B′/C′)	1인당 지원금 (만원) (B′/A′)
기초	98	147	0.1%	150	51	83	0.1%	163
차상위	128	182	0.1%	142	35	56	0.0%	160
1구간	29,124	21,152	8.2%	73	4,383	3,037	2.7%	69
2구간	25,981	18,844	7.3%	73	3,527	2,460	2.2%	70
3구간	28,640	19,767	7.7%	69	3,596	2,466	2.2%	69
4구간	39,361	30,520	11.9%	78	6,228	5,573	4.9%	89
5구간	20,451	14,210	5.5%	69	3,121	2,639	2.3%	85
6구간	60,180	39,288	15.3%	65	9,817	7,963	7.0%	81
7구간	38,456	22,054	8.6%	57	8,012	6,213	5.4%	78
8구간	78,816	41,200	16.0%	52	16,755	12,640	11.1%	75
9구간	61,192	49,411	**19.2%**	**81**	47,824	67,248	**58.9%**	**141**
10구간	600	404	**0.2%**	**67**	4,106	3,767	**3.3%**	**92**
합계(C)	370,813	257,179	100.0%	69	105,031	114,146	100.0%	109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은 각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유인하기 위한 보상책으로 운영하면서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각 대학이 일정한 범위에서[50] 자체 수립할 수 있게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2025년의 경우 재정지원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재정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임.

교육부는 향후 국가장학금 제도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 지원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50) 1유형·다자녀 장학금 신청자 중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까지의 학생에게 필수경비를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경우 등에는 10구간도 지원할 수 있음.

둘째, 국가장학금 2유형 사업에서 2025년 2학기 한시적으로 104억 300만원의 학업장려금(생활비)을 지원한 것은 국가재정의 효율적 활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024년까지는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에서 등록금 외에 신·편입생 지원금을 지원하였으나, 2025년도부터는 신·편입생 지원금 제도를 폐지하고, 등록금만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2025년 1학기 장학금 지급계획도 이를 전제로 수립·시행되었음.[51)]

그러나 2025년 7월 28일 교육부가 승인한 2학기 장학금 지급계획에서는 2025년 2학기에 한시적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까지의 학생에게 250만원(기초생활수급자는 500만원) 이내의 학업장려금(생활비 명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2025년도 예산안이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5년 6월 23일 국회 제출)의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바 없는 새로운 제도임.

[2025년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 예산 산출내역 및 집행내역]

구분	본예산	추경예산	집행	
예산액	2,600억원	1,300억원	1,247억 8,000만원	
내역	·등록금 지원 ※ 다만, 재난장학금(세월호·포항·여객기사고·특별재난지역) 등 사업예산에서 충당		·등록금 지원	1,141억 4,600만원
			·재난장학금 지원	2억 3,100만원
	-		**·학업장려금 지원**	**104억 300만원**

자료: 교육부

[2025년 국가장학금 2유형 학업장려금 지원 개요]

· 2025년 2학기 한시 시행 ·학자금지원 5구간까지 학기당 250만원 이내(기초생활수급자 500만원 이내) ·학제별·학생별 한도 미적용, 수혜횟수 미합산, 중복지원 방지대상에서 제외(생활비 명목)

자료: 교육부

결과적으로 2025년 국가장학금(2유형은) 등록금 1,141억 3,600만원, 학업장려금 104억 300만원, 재난장학금 2억 3,100만원을 합하여 총 1,247억 8,000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률은 추가경정예산액 1,300억원의 96.0%에 달하게 되었음.

51) 다만, 세월호 피해자 가족 대학교육비, 포항 재난 가족 대학교육비,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 등록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가족 대학교육비 지원 등 재난장학금은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을 활용하는 점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집행됨.

생활비 명목의 학업장려금은 종래 국가장학금에서 지원된 적이 없는데,[52] 2025년 상당수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며 2유형 참여율이 저조하여 예산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에서 심의한 예산 내역과 다르게 집행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2026년에는 종래와 같이 생활비 명목의 학업장려금은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사업수혜자에게 예측가능성이 없는 일회적 지원은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경제상황이나 정책목적 등에 특별한 변화가 없음에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사유로 1개 학기 동안 한시적으로 장학금 지급기준을 변경하여 지급할 경우 사업수혜자인 일반 학생들의 신뢰를 깨뜨릴 우려가 있음.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제도가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수행할 필요가 있고,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회적 선심성 사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집행하는 사례는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52) 학자금 대출의 한 유형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생활비대출은 시행되고 있으나, 장학금 지원이 이루어진 적은 없음.

13.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가. 개 요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은 대학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부족한 시설확충,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교육환경 여건 개선으로 교수·학습 및 연구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조 1,185억 8,600만원 중 1조 1,034억 3,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6%)되고 2억 4,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49억 900만원이 불용되었음.[53)]

[2025년도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립대학 시설확충	1,092,909	1,115,224	3,362	-	1,118,586	1,103,437	240	14,909	910,898
확충사업	354,200	354,200	134	-	354,334	346,917	-	7,417	182,916
보수사업	379,650	536,165	3,167	-	539,332	537,514	240	1,578	480,782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내역사업인 **‘확충사업’**은 부족한 시설의 신·증축, 노후시설의 개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교육여건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2025년 예산현액 3,543억 3,400만원 중 3,469억 1,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9%)되고 74억 1,700만원이 불용되었음.

또 다른 내역사업인 **‘보수사업’**은 기존 건물에 대한 시설물 성능개선 및 유지 보수비 등을 지원하여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학습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2025년 예산현액 5,393억 3,200만원 중 5,375억 1,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7%)되고 2억 4,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5억 7,800만원이 불용되었음.

5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국립대학 시설확충(2740-300)(대학지원관)

나. 검토의견

첫째, 일부 국립대학 시설확충사업의 집행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사례가 발견되므로, 교육부는 전년도 실집행률이 저조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파악한 후 당해 연도에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금액을 교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25년에는 37개 대학에서 추진중인 89개 사업에 총 3,469억 1,700만원이 교부되었는데, 이 중 28개 사업의 실집행률(2026년 2월말[54] 기준)이 30% 미만이며, 해당 사업에 교부된 총 1,097억 4,900만원 중 4.7%인 51억 7,300만원이 실집행되었음.

[2025년 국립대학 시설확충(확충사업) 실집행률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실집행률 (2026년 2월말 기준)	0%~30%	30%~50%	50%~70%	70%~100%	계
사업 수	28	16	10	35	89
교부금액	109,749	47,304	39,829	150,035	346,917
실집행액	5,173	19,314	24,831	139,064	188,383

자료: 교육부

특히 일부 사업에서는 전년도 실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예산이 추가 교부된 후 전혀 실집행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경북대 '권역별 반도체연구소' 사업은 2024년 실집행률이 3.4%에 불과하여 57억 4,000만원이 이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 56억 9,900만원이 추가 교부되었고, 2025년 실집행액은 대학측 예산현액 114억 3,900만원의 0.06%인 700만원에 그쳤음.

충남대 '4권역 반도체 공동연구소 신축' 사업은 2023년 교부된 예산 6억 7,900만원이 전액 이월된 후 2024년 실집행액이 4억 6,300만원에 그쳐 재이월[55]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과 2025년 각각 56억 5,600만원과 63억 2,500만원이 추가 교부되었고,

54) 대학 회계연도가 매년 2월 말일까지라는 점을 감안하였음.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대학회계) ⑤ 대학회계의 회계연도는 그 해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종료한다.

55)「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1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연도 지출로 명시된 금액

2025년 실집행액은 대학측 예산현액 121억 9,700만원의 0.1%인 1,500만원에 그쳤음.

[2023년~2025년 국립대학 시설확충(확충사업) 실집행 현황주]

(단위: 백만원)

대학	사업명	총 사업비	사업 기간	2023			2024			2025		
				부처 교부	대학 실집행		부처 교부	대학 실집행		부처 교부	대학 실집행	
					예산 현액	집행		예산 현액	집행		예산 현액	집행
경북대	권역별반도체 공동연구소	16,417	23-28	679	679	475	5,740	5,944	204	5,699	11,439	7
충남대	4권역반도체 공동연구소신축	16,417	23-28	679	679	0	5,656	6,335	463	6,325	12,197	15
국립경국대	동물백신 실증센터신축	7,819	24-27	0	0	0	295	295	146	6,042	6,189	146
충남대	스마트영농 창업융복합기술 혁신센터신축	30,047	23-27	650	650	20	664	1,294	630	6,968	7,534	448
충남대	디지털융합인재 양성관신축	36,085	23-27	758	758	95	758	1,421	1,036	10,220	10,605	673
군산대	공대1,4호관리 모델링	15,029	23-27	611	611	0	4,770	5,381	317	7,929	12,986	996
순천대	기초교육관리 모델링및증축	18,947	24-28	0	0	0	500	500	483	5,165	5,165	582
순천대	첨단공학관 신축	11,538	24-26	250	250	0	2,000	2,250	385	5,214	7,079	1,083
경북대	상주창의융합 교육관신축	23,589	22-26	5,000	5,345	3,473	3,360	5,211	3,087	8,491	10,615	2,211

주) 2025년 대학교부액 50억원 이상이면서 대학의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 30% 이하인 사업 현황임.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일부 사업에서 대학 내부협의 지연이나 총사업비 조정 등에 따라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하나, 전년도 실집행률이 저조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당해 연도에는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금액을 교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예산 배분과 집행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립대학시설확충 보수사업예산은 2025년 제2차 추경에서 1,565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말까지 실집행액(3,395억 6,900만원)이 본예산액(3,796억 5,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교육부는 향후 추경 증액분이 적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보수사업 본예산은 3,796억 5,000만원이었는데,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5,361억 6,500만원으로 1,565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2025년 12월말 각 대학의 실집행액은 총 3,395억 6,900만원으로 본예산액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보수사업 예산이 본예산 대비 1,957억원 증액된 5,753억 5,000만원 편성되어 있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증액 규모가 1,565억 1,500만원으로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률은 크게 저조한 것임.

[2025년도 국립대학 시설확충(보수사업) 실집행 현황(2025년 12월말)]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대학교부액)	대학 실집행액 (2025년 12월말)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379,650	536,165	3,167	-	539,332	537,514	339,569	240	1,578

주) 추가경정예산은 연내 집행될 필요가 있으므로, 2025년 12월말 실집행 현황을 확인함.
자료: 교육부

이는 대학 시설공사는 학생안전과 소음 등을 감안하여 주로 방학기간 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인 측면도 있겠으나, 2026년도 예산도 1~2월에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5년 7월 제2차 추경을 통해 당해 연도 예산을 증액하여 학내 노후시설의 즉각적인 보수와 조속한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려 했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특히 일부 대학에서는 2026년 4월말 기준 실집행액이 2025년도 본예산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으므로, 교육부는 향후 추경으로 증액된 예산이 연내 적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임.

[국립대학 시설확충(보수사업) 실집행 현황주1]

(단위: 백만원)

학교	본예산	추경예산 (A)	실집행(2025년 12월말)		실집행(2026년 4월말)	
			실집행액(B)	실집행률(B/A)	실집행액(C)	실집행률(C/A)
국립경국대	8,150	11,970	4,311	36.0%	8,654	72.3%
경북대	**20,993**	**30,103**	**11,047**	**36.7%**	**20,574**	**68.3%**
목포대	9,063	13,274	4,968	37.4%	12,941	97.5%
경상국립대	16,566	25,676	10,506	40.9%	22,497	87.6%
순천대	9,033	13,246	5,887	44.4%	9,865	74.5%
서울과기대	**8,033**	**12,105**	**5,739**	**47.4%**	**7,616**	**62.9%**
충남대	15,690	24,662	12,298	49.9%	21,735	88.1%
한국해양대	9,358	11,951	6,765	56.6%	10,793	90.3%
전북대	19,913	29,023	17,113	59.0%	26,705	92.0%
부경대	14,136	18,347	11,863	64.7%	17,440	95.1%

주) 2025년 12월말 기준 보수사업 실집행률이 낮은 대학 10개교 현황임.

자료: 교육부

【사학진흥기금】

<지 출>

14. 학교경영 지원사업(수입대체경비): 대학정보화시스템 관련 다른 일반회계 사업예산과 통합발주 지양 필요

가. 개 요

‘학교경영 지원사업(수입대체경비)’ 사업은 학교법인·대학 및 산학협력단을 대상으로 교육행정연수, 경영 컨설팅 및 정보화시스템 보급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10억 9,900만원 중 10억 8,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1%)되고 1,000만원이 불용되었음.[56]

[2025년도 학교경영 지원사업(수입대체경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학교경영 지원사업 (수입대체경비)	1,099	1,099	-	1,099	1,089	-	10	1,843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사립대학에 대하여 대학정보화시스템 보급, 교육행정연수 등을 지원하면서 수납되는 정보화시스템 사용료, 연수비용 등 사업운영수입에서 초과수입이 발생하면 관련 경비에 사용할 수 있는 수입대체경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운영수입이 수납되는 기타잡수입(사학지원계정)[57]의 2025년도 계획현액은 10억 9,9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2억 800만원으로 초과수입이 발생하였으나, 동 지출사업은 초과지출 없이 집행되었음.

56) 사학진흥기금-학교경영 지원사업(수입대체경비)(2302-450)(대학지원관)

57) 사학진흥기금-기타잡수입(사학지원계정)(69-691)(대학지원관)

[2025년도 기타잡수입(사학지원계정)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액		징수결정액(B)	수납액(C)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C/B)	2026년도 계획액
	당초	수정(A)						
기타잡수입(사학지원계정)	1,099	1,099	1,208	1,208	-	-	100.0	1,044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5년도 기타잡수입(사학지원계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주요 수납내역
사학교육행정 연수지원	582	641	641	연수수입
대학 경영 컨설팅지원	20	25	25	컨설팅 용역
대학 정보화지원	493	542	542	U-ERP 사용료 수익
사학기관 재산관리지원	4	-	-	-
계	1,099	1,208	1,208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사학진흥기금 학교경영 지원사업 예산 일부가 일반회계 사립대학 경영지원 사업예산과 함께 정보시스템 계약 통합발주 재원으로 사용된 것은 예산의 체계적 편성·집행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육부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교육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대학정보화시스템(U-ERP, University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소요비용을 동 사업 예산에만 편성하지 않고, 일반회계 '사립대학 경영지원 사업'[58]의 내역사업으로 '사립대학 회계시스템 고도화(4차)' 예산을 함께 편성하여 집행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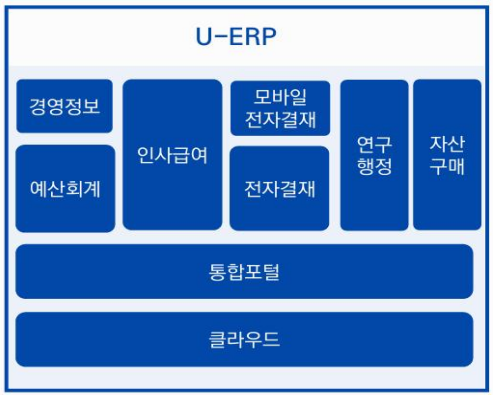
2023년 이후에는 두 사업 예산을 재원으로 U-ERP 고도화(新시스템 개발)사업 및 U-ERP 운영·유지보수(舊시스템 운영)사업 계약을 통합발주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일반회계 사업예산 15억 1,200만원과 사학진흥기금 사업예산 4억 9,200만원이 U-ERP 고도화 및 유지관리 계약의 재원으로 집행되었음.

58) 일반회계-사립대학 경영지원 사업(2301-303)(대학지원관)

[대학정보화시스템(U-ERP)]

□ U-ERP(대학정보화시스템) : 사립대학의 행정 업무 지원을 위해 개발된 표준 ERP시스템
  * 사학기관 총 115개(대학)에서 총 202개 시스템 사용중 (2026년 3월 기준)

□ U-ERP 고도화(4차) 사업
- 모바일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
- 연구행정시스템·자산구매 관리시스템 고도화
- 독립적 운영 가능한 산학협력단 예산회계, 전자결재, 연구행정시스템 구축



자료: '2026 대학정보화시스템(U-ERP) 안내자료'(한국사학진흥재단) 참조

[2025년 대학정보화시스템(U-ERP) 계약 통합 발주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일반회계 - 사립대학 경영지원		사학진흥기금 - 학교경영 지원사업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2021	200	200	-	-
2022	-	-	520	463
2023	2,440	2,418	529	493
2024	1,725	1,716	522	496
2025	1,525	1,512	493	492

자료: 교육부

동일한 정보화시스템 관련 예산을 일반회계와 사학진흥기금에 각각 분리하여 편성한 후 동일한 계약의 재원으로 통합하여 집행하는 것은 투명하고 체계적인 예산 편성·집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수입대체경비 예산은 수입과 지출에 상호 관련성이 있어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편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대체경비 지출예산을 다른 사업예산과 함께 통합 발주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교육부는 당초 계획했던 U-ERP 고도화 사업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는 동 시스템 관련 예산은 일반회계 사업에 편성하지 않고, 모두 사학진흥기금 '학교경영 지원사업'에 편성했다고 설명하나, 향후 체계적이지 않은 예산 편성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15. 병원 필수의료 역량 강화 지원(융자) 사업: 사학진흥기금과 부합하지 않는 융자사업 시행 지양 필요 등

가. 개 요

‘병원 필수의료 역량 강화 지원(융자)’ 사업은 사립대학 부속병원의 필수진료 인프라 유지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1,200억 5,000만원 중 1,200억원이 집행(집행률 100.0%)되고, 5,000만원이 불용되었음.[59)]

[2025년도 병원 필수의료 역량 강화 지원(융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병원 필수의료 역량 강화 지원(융자)	120,050	120,050	-	120,050	120,000	-	50	-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융자(사학진흥기금)’ 사업의 내역사업인 **‘정원증원 의대(부속병원) 융자’** 사업은 지역·필수의료 분야 의사인력 확충정책의 일환으로 정원이 증원된 의대에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1,728억 4,0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60)]

[2025년도 정원증원 의대(부속병원) 융자 사업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융자(사학진흥기금)	218,063	218,063	-	218,063	218,063	-	-	178,646
정원증원 의대(부속병원) 융자	172,840	172,840	-	172,840	172,840	-	-	-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59) 사학진흥기금-병원 필수의료 역량 강화 지원(4333-353)(의대교육지원관)

60) 사학진흥기금-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융자(사학진흥기금)(2861-300)(대학지원관)

나. 검토의견

첫째, 2025년 한시적으로 운용된 병원 필수의료 역량강화 지원(융자) 사업은 사립대학 부속병원의 필수진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병원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나, 사학(私學) 전반의 환경 개선을 위한 기금의 본래 목적을 대표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교육부는 향후 동 기금이 본래 목적인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병원 필수의료 역량강화 지원(융자)사업은 2025년 한시적으로 편성되어 사립대학 부속병원의 필수진료 인프라 유지 확충 등을 위해 총 12개 병원에 1,200억원을 융자 지원하였음.

[2025년도 병원 필수의료 역량 강화 지원(융자)사업 융자 현황]

(단위: 백만원)

병원	융자일시	용도	융자액
고려대 안암병원	12.22.	중환자, 고위험산모, 응급, 감염병상 확장 및 리모델링 공사	20,000
단국대 부속병원	12.22.	의료장비 PET CT 교체	4,100
동국대 경주병원	9.30.	신종 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구축	789
	9.30.	응급의학과 전문의 인건비 지급	2,640
동국대 일산병원	10.31.	중증 응급 등 필수진료 강화를 위한 신속대응 의료체계 구축	736
	10.30.	응급환자 진료 단계별 대응체계 및 신속대응 시스템 구축	3,615
순천향대 구미병원	8.28.	MRI 노후에 따른 교체	2,000
아주대 부속병원	11.26.	응급/중증/외상 분야 등의 의료장비 구입	10,849
연세대 원주세브란스	11.26.	수술실·신생아중환자실 등 필수진료과목 노후장비 개선 등	9,000
원광대 부속병원	11.28.	중증 및 응급환자를 위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시설공사	624
	9.30./11.28.	중증 및 응급환자를 위한 MRI 등 장비 도입 사업	11,531
	9.30.	필수의료 의료진 유지 및 충원 인건비	7,607
원광대 산본병원	9.12.	필수유지 의료진 유지 및 충원 인건비	2,000
한양대 부속병원	11.28.	CT 및 MRI 장비 노후에 따른 교체	8,135
한양대 구리병원	11.28.	DSA 장비 장비 노후에 따른 교체	2,300
	10.29.	의료진 유지 및 충원	6,000
인하대 부속병원	12.22.	중증환자실 의료공간 확충을 위한 의료용 건물 매입(대환)	28,074
총계			120,000

자료: 교육부

참고로 동 사업 융자재원 1,200억원과 후술하는 정원증원 의대(부속병원) 이자 지원금 10억 1,200만원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 2025년 한시적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사학진흥기금으로 1,210억 1,200만원이 전입되었음.

[2022~2026년도 일반회계에서 사학진흥기금으로 전출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계획액		이체등 증감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 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A)								
2022	-	-	-	-	-	-	-	-	-	-
2023	-	-	-	-	-	-	-	-	-	-
2024	-	-	-	-	-	-	-	-	-	-
2025	121,787	121,787	-	121,787	121,012	121,012	99.4	100.0	-	-
2026	-	-	-	-	-	-	-	-	-	-

자료: 교육부

사학진흥기금은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사학교육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61]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서는 기금 사용처를 사학기관의 토지·건물과 교육용 설비·기자재의 개수·보수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으로 정하고 있음.[62]

병원 필수의료 역량강화 지원(융자) 사업은 필수진료 인프라 유지 확충을 목적으로 사립대학이 아닌 부속병원에 대해 융자가 실행되어 의대 교육용 설비·기자재 확충이나 의대 교육환경 개선비용이 아니라 부속병원의 공공·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병원 장비 교체, 진료환경 개선 및 병원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사학진흥기금 본래 취지가 축소·한정된 측면이 있음.

교육부는 향후 동 기금이 본래 목적인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6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p.113 사학진흥기금 운용총칙안 (1) 기금의 사업목표 참조.

62)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기금의 사용) ① 사학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사학기관의 재산(토지 및 건물에 한한다)과 교육용 설비·기자재의 개수(改修)·보수(補修)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제1호 외의 자금으로서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사학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제1호에 따른 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4의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학기관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
5.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6. 그 밖에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청산지원계정은 제6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지원 대상인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위하여 사용한다.

둘째, 정원증원 의대(부속병원) 융자사업은 의대건물 신·증축 및 기자재 확충 등을 위해 저금리 융자 지원받은 7개 대학이 2025학년도에 1회적으로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한 후 2026학년도부터 원래대로 복귀하여 정책 혼란 속에 국가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된 측면이 있으나, 향후 사업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유사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내역사업인 '정원증원 의대(부속병원) 융자' 사업은 2024년 9월 의과대학 증원정책 추진과정에서 발표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방안'의 일환으로 2025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되었으며, 각 대학에서 의대 건물 신축·리모델링이나 부속병원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동 기금의 대학별 융자누적액 한도와 관계없이 저금리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여 7개 대학에 총 1,728억 4,000만원의 융자가 실행되었음.

[정원증원 의대(부속병원) 융자사업 융자조건]

일반 융자	정원증원 의대(부속병원) 융자
융자이자율 산출방식*에 따라 분기별 변동금리 (2024년 3분기 기준 연 2.77%)	고정금리 연 1.5% (2025년에 한하며 2026년부터 변동 가능)
※ 일반융자는 연간 융자지원 한도액 적용하나, 정원증원 의대 융자는 한시적으로 2025년도 예산 범위 내 한도 제한 없이 지원 ※ 2025년에 한해 정원증원 의대(부속병원)의 시설 확충 융자는 설계용역 계약 체결 및 건축허가 완료 시 청구 가능	

자료: 교육부

[2025년도 정원증원 의대(부속병원) 융자사업 융자현황]

(단위: 백만원)

학교(병원)	융자일시	용도	융자액
고신대학교	12.26.	의과대학 운영자금 지원 사업	1,600
단국대학교	7.30.	부속병원 운영비 대환(정원증원사태 관련)	16,333
동국대학교 (분교)	9.5. / 12.22.	의과대학 의학관 리모델링	2,236
	12.22.	의과대학 신의학관(실습실 및 강의실 등) 신축	2,235
	8.19. / 11.27.	임상교육 제공을 위한 시설환경 구축(경주)	2,235
	7.28.	병원 운영 자금(일산)	28,319
대구가톨릭대학교	8.22.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9,990
순천향대학교	5.12.	의학교육 실습 기자재 도입	40,000
연세대학교	5.27. / 12.22.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부속병원신축사업(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48,714
인하대학교	11.28.	의학교육 기자재 확충	326
	11.28.	의과대학 교육실습동 리모델링(1관) 및 신축(2관)	19,652
	11.28.	의과대학 신규채용 교원 인건비	1,200
총계			172,840

자료: 교육부

세부사업인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융자(사업)’ 융자실적을 보면, 2023년·2024년에는 의대 융자 비중(융자금액 기준)이 각각 49.2%, 23.7%였으나, 2025년에는 83.3%로 증가하였음.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융자(사학진흥기금) 사업 현황]

(단위: 개교,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대학 수	총 융자액 (비율)	대학 수	총 융자액 (비율)	대학 수	총 융자액 (비율)	대학 수	총 융자액 (비율)
일반 융자	非의대	10	100,722 (100.0%)	6	38,065 (50.8%)	12	52,642 (76.3%)	11	36,513 (16.7%)
	의대	-	-	4	39,242 (49.2%)	3	16,358 (23.7%)	3	8,710주 (4.0%)
정원증원 의대(부속병원) 융자	의대	-	-	-	-	-	-	7	172,840 (79.3%)
	계	10	100,722	10	77,307	15	69,000	21	218,063

주) 2025년 의대 융자금액은 정원 증원과 관련성이 낮은 사업으로, 의대·부속병원에 일반융자로 지원한 실적임.
자료: 교육부

그러나 융자받은 7개 대학 모두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한 후 2026학년도부터는 원래대로 복귀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정책 혼란 속에 일부 사립대학이 저금리 융자 혜택을 받게 된 측면이 있음.

[의과대학 모집인원 추이]

(단위: 명)

학교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고신대학교	76	76	100	76
단국대학교	40	40	80	40
동국대학교(분교)	49	49	120	49
대구가톨릭대학교	40	40	80	40
순천향대학교	93	93	150	93
연세대학교(분교)	93	93	100	93
인하대학교	49	49	120	49

자료: 교육부

동 사업 편성 당시에도 의과대학 증원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동 정책이 중단된 이후인 2025년 11월~12월에 융자가 실행되었다는 점에서 융자목적이나 자금용도, 저금리 조건 등 융자실행조건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수행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임.[63]

향후 정책 혼란 속에 과도한 예산 지원으로 국가재정 운영에 비효율을 초래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부는 사업관리를 철저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63) 이에 대해 교육부는 융자 실행 당시 2027학년도 모집인원 증원 논의가 지속되고 있었던 점, 의정 갈등에 따른 사립대학 부속병원 운영난, 이탈·복귀한 교육인원 중첩(24·25학번)으로 유발된 강의·실습실 과밀·부족현상 등을 완화하고 “의학교육 정상화”라는 궁극적 정책 목표를 실현하고자 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임.

【기　타】

16.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교육부에 대해 시정요구 90건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시정 8건·주의 6건·제도개선 76건이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8	6	74	-	88
예비비	-	-	-	-	2	-	2
합계	-	-	-	-	76	-	90

교육부는 시정요구사항 90건에 대해 68건을 조치완료(조치율 75.6%)하고 22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88	66	75.0	22
예비비	2	2	100.0	-
합계	90	68	75.6	22

국회가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면서 채택한 부대의견 중 교육부 2025회계연도 결산 관련 부대의견은 아래와 같음.

[교육부 관련 2025년도 예산안 등 부대의견]

구분	부대의견
2025년도 본예산	(14) 교육부는 비정규직 학교영양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시·도교육청이 적정규모의 식생활지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5) 교육부는 학교 관련 민원에 대해 전담민원창구를 운영하는 등 교육부·교육청·경찰청·지방정부가 협력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3) 교육부는 대전 초등학생 사망과 같은 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여 학교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내 CCTV 설치 확대 등 학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10) 교육부는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에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 방안을 수립하여 2026년 본예산 심의 전까지 국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

국가교육위원회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5만원임.

[2025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	-	-	-	-	-	0.05	0.05	0.05
총수입	-	-	-	-	-	-	0.05	0.05	0.05

2025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11억 5,800만원(△11.2%)이 적은 91억 8,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800만원(△1.9%)이 감소됨.[1)]

문의 : 02-6788-5683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5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10,279	10,279	9,382	△897	10,342	10,342	9,184	△1,158	△198
총지출	10,279	10,279	9,382	△897	10,342	10,342	9,184	△1,158	△198

나.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0원으로, 5만원이 징수결정되어 5만원이 수납되었음.

[2025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	-	-	-	0.05	0.05	-	-
합 계	-	-	-	-	0.05	0.05	-	-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11억 9,100만원으로, 91억 8,400만원이 집행(집행률 82.1%)되고 10억 3,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9억 7,5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10,342	10,342	849	-	-	11,191	9,184	1,032	975
합 계	10,342	10,342	849	-	-	11,191	9,184	1,032	975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5회계연도 말 기준 국가교육위원회 자산은 전년 대비 9,500만원이 증가된 31억 5,800만원으로, 이는 유·무형자산이 일반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등에 따라 7,300만원 감소하였으나 무형자산이 업무포털 구축 등으로 3억 4,200만원이 증가되고 기타자산이 1억 7,400만원 감소한 데 기인함. 부채는 없음.

2025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96억 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억 6,300만원 증가되었으며, 재정운영결과는 96억 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억 6,300만원 증가됨.

[2025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 (A)	2024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3,158	3,063	95	3.1
		금융자산	0	0	0	-
		유무형자산	1,440	1,171	269	23.0
		기타자산	1,718	1,892	△174	△9.2
	부 채		0	0	0	-
		차입부채	0	0	0	-
		충당부채	0	0	0	-
		기타부채	0	0	0	-
	순자산		3,158	3,063	95	3.1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0	0	0	-
	재정운영순원가		3,158	3,063	95	3.1
	재정운영결과		0	0	0	-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2025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재정은 일반회계 1개 회계로 구성됨.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국가교육위원회는 안정적이고 일관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중장기 교육 의제에 관한 집중 논의,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한 체계적 국가교육과정 개발·고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참여 및 공론화 확대 등을 추진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중장기 교육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수행하였음.

2025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국가교육위원회는 조직 확대에 따라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2026년 기본경비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2025년 기본경비의 12.0%(사고이월 제외)에 달하는 예산을 이월함으로써 부족분을 보충하려고 하였으나, 이는 연말연초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 경상경비 이월을 허용하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시점을 당초 발표했던 2025년 3월에서 2026년 3월로 한 차례 연기한 후 다시 2027년 3월로 연기하면서 대토론회 운영 등 교육발전계획 수립과 관련된 2025년 사업예산 일부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이 차질 없이 적시에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일정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 사업: 다음 연도 경비 부족에 대비한 기본경비 이월 지양 필요

가. 개　요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 대상)’ 사업은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5억 4,600만원 중 3억 9,300만원이 집행(집행률 72.0%)되고 1,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 4,200만원이 불용되었음.[2)]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 비대상)’ 사업은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0억 5,000만원 중 15억 3,700만원이 집행(집행률 75.0%)되고 3억 3,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 8,200만원이 불용되었음.[3)]

[2025년도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 (총액 대상)	546	546	-	-	546	393	11	142	568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 (총액 비대상)	1,917	1,917	133	-	2,050	1,537	331	182	1,736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 일반회계-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 대상)(7019-200)(국가교육위원회)

3) 일반회계-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 비대상)(7019-250)(국가교육위원회)

나. 검토의견

국가교육위원회는 조직 확대에 따라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2026년 기본경비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여 2025년 기본경비의 12.0%(사고이월 제외)를 이월함으로써 부족분을 보충하려고 하였으나, 이는 연말의 과도한 예산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경상경비 이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2025년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에서 일반수용비(210-01목) 1억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 8,000만원, 임차료(210-07목) 7,800만원 등 총 3억 4,2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 중 사고이월액 4,600만원을 제외한 이월액은 2억 9,600만원으로 기본경비 예산총액 24억 6,300만원의 12.0%에 달함.

[2025년도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 비목별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비목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내역변경 (세목조정)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이월 사유
기본경비 총액대상 (7019-200)	특근매식비 (210-15)	17	0	0	17	16	1	0	기본경비 이월
	기타운영비 (210-16)	63	0	0	63	53	10	0	기본경비 이월
기본경비 총액비대상 (7019-250)	일반수용비 (210-01)	473	0	114	587	486	102주)	0	기본경비 이월
	임차료 (210-07)	168	18	0	186	108	78	0	기본경비 이월
	시설장비유지비 (210-09)	157	0	0	157	59	80	18	기본경비 이월
	일반용역비 (210-14)	374	0	△150	224	156	46	23	사고이월 (SNS계약기간 연장)
	국내여비 (220-01)	55	0	0	55	33	22	0	기본경비 이월
	사업추진비 (240-01)	29	0	0	29	28	1	0	기본경비 이월
	관서업무추진비 (240-02)	38	0	0	38	37	1	0	기본경비 이월
	자산취득비 (430-01)	208	46	0	254	253	1	0	기본경비 이월

주) 2025.12.26. 일반용역비(210-14목)에서 일반수용비(210-01목)로 1억 5,000만원 세목조정한 후, 일반수용비(210-01목)에서 1억 200만원이 이월됨

국가교육위원회는 2025년 12월 30일 직제 개정으로 조직과 인력 규모가 확대[4]되었으나, 필요 경비가 2026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관련 법령 및 지침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이월한 것이라고 설명함.

그러나 「국가재정법」 제48조제2항제5호[5]에서 경상적 경비를 이월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연말연초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회계연도 분리에 따른 비효율적 예산 집행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 다음 연도 기본경비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규모보다 더 많이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내역을 보면, 국가교육위원회 인건비 예산은 직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부안보다 9억 7,700만원 증액된 반면,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 예산은 포상금 2,000만원만 증액되었음.

---

4) (기존) 1처 3과 36명 → (개편) 1처 6과 54명 (3과 신설, 18명 증원)

5)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③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 경우 이월한도는 해당 경비에 대한 예산의 100분의 15로 한다.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 기본경비 이월범위
○ 각 중앙관서의 기본경비 예산총액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목을 제외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경비의 이월범위에 사고이월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복리후생비
나. 직책수행경비

[2026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결과(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 변경 부분)]

(단위: 백만원)

소관	회계	사업명	정부안	증액	비고
국가교육위원회	일반	**국가교육위원회 인건비**	3,411	**977**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비대상)(포상금)	1,716	**20**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지원	4,456	165	
		(국민의견수렴 및 현장소통 활성화)	(669)	(100)	
		(국가교육과정 개발·고시 지원)	(370)	(65)	

자료: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정보시스템)

국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2026년도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 예산은 23억 400만원[6]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국가교육위원회는 이에 맞추어 기관을 운영해야 하는 것이며, 이와 달리 부족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2025년 예산 2억 9,600만원을 2026년으로 이월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한편 국가교육위원회는 2025년 12월 26일 광고료 등에 충당하기 위해 기본경비 중 일반용역비(210-14목) 예산 1억 5,000만원을 일반수용비(210-01목)로 세목조정하였으나, 이후 기본경비 일반수용비(210-01목) 예산 1억 200만원이 2026년으로 이월되었음.

[2025년 국가교육위원회 예산 세목조정 내역(일부)]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025.12.26.)	기본경비 총액비대상 (7019-250)	210-14	150	기본경비 총액비대상 (7019-250)	210-01	광고료 등 충당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결국 국가교육위원회는 실제 필요했던 금액 이상을 세목조정하여 2026년으로 이월되는 기본경비 예산에서 일반수용비(210-01목) 비중을 늘게 된 것으로 보이나, 집행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업 필요성이 없음에도 예산비목을 임의로 조정할 경우 예산을 비목별로 구분 편성하고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

6)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대상) 5억 6,800만원과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비대상) 17억 3,600만원을 합산한 금액임.

하고자 한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음.

국가교육위원회는 향후 경상적 경비 이월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다음 연도 기본경비 예산의 부족분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2.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사업: 국가교육발전계획 적시 수립·시행 필요

가. 개 요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은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 고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 국가교육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53억 3,300만원 중 43억 3,000만원이 집행(집행률 81.2%)되고 6억 9,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억 1,300만원이 불용되었음.[7)]

[2025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4,617	4,617	716	-	5,333	4,330	690	313	4,621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시점을 당초 발표했던 2025년 3월에서 2026년 3월로 한 차례 연기한 후 다시 2027년 3월로 연기하면서 대토론회 운영 등 교육발전계획 수립과 관련된 2025년 사업예산 일부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음.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이 차질 없이 적시에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일정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국가교육위원회는 2025년 5월 계약금액 1억 200만원, 계약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대토론회 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대토론회를 3회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로는 2025년 12월 23일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보고회를 1회 개최함에 그치고, 동 계약의 계약기간을 2026년 6월까지로 연장하면서 소요예산 일부(3,069만원)를 이월하였음.

7) 일반회계-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7031-316)(국가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준비와 연계하여 대토론회를 기획·추진하고 있는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시점이 2026년 3월에서 2027년 3월로 1년 순연되면서 2025년 하반기에는 당초 계획과 달리 대토론회를 1회만 개최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국가교육발전계획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8]으로 2022년 9월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는 2024년 9월 국가발전계획 주요방향(안)을 공개하면서 2025년 3월까지 발전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하였으나,

2024년 11월 전문위원회 파행에 따른 전면 재구성[9]을 거쳐 계획 수립시점을 2026년 3월로 연기하였고, 2025년 9월 제2기 위원회[10]가 출범한 후에는 그 시점을 2027년 3월로 1년 더 늦추겠다고 발표하였음.[11]

[국가교육발전계획 추진경과]

일자	주요내용	비고
2024. 9. 25.	- 주요방향(안) 및 향후 일정 공표 * 2025년 3월 계획 발표 추진	출범 2주년 대토론회
2024. 11. 22., 12. 27.	-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파행 및 재구성	제38차·제40차 전체회의
2025. 1.20. 2025. 2. 6.	- 일정 연기 * 2025년 5월 시안 마련, 2026년 3월 계획 확정	제42차 전체회의 2025년 업무계획 발표
2025. 9. 13.	- 제2기 위원장 임명 (제2기 위원회 출범)	
2025. 12. 18.	- 일정 연기 * 2027년 3월까지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마련	제63차 전체회의 2026년 업무계획 보고

자료) ‘2024년 국가교육위원회 백서’ 및 국가교육위원회 보도자료

8)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①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교육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9)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는 쟁점에 대한 사전조율 의혹, 전문위원회 보고서 유출 의혹 등 7월부터 내부 갈등이 시작되었다. 이후 일부 위원들이 회의 불참을 선언하는 등 정상적으로 교육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웠으며, 갈등 심화로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대부분이 사의를 표명하였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이 진행중에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국가교육위원회는 자문 및 사전검토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하기로 결정(국가교육위원회 제38차회의, 2024.11.22.)하였다. 이후 논의를 거쳐 OOO 전 OO대학교 총장과 OOO OO대학교 명예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제2기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21명을 위촉(국가교육위원회 제40차회의, 2024.12.27.)하였다.” -‘2024 국가교육위원회 백서’, 국가교육위원회, p.68

10)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음. 1기 위원회는 2022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활동하였고, 2025년 9월 2기 위원회가 출범함.

11) 국가교육위원장은 2026년 11월 3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임 국교위는 당초 올 9월에 시안을 만들려고 했으나, 그러지 못했고, 이미 늦었다”며 “현재로서는 전부 1년씩 (또) 순연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년 9월 ‘2028~2037 계획’ 시안을 발표하기 위해 준비중”이라고 발언함 -‘국교위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내년 9월이라야 시안 나올 듯’, 아시아경제, 2025.11.4.

대입제도 등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은 교육 현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후 수립될 필요가 있겠으나, 당초 발표한 계획 수립시점이 전문위원회 파행, 위원회 재출범 등에 따라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국가교육위원회는 충실한 내용을 담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이 적시에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일정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기　타】

3.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 시정요구 6건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제도개선 6건이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	-	6	-	6
예비비	-	-	-	-	-	-	-
합계	-	-	-	-	6	-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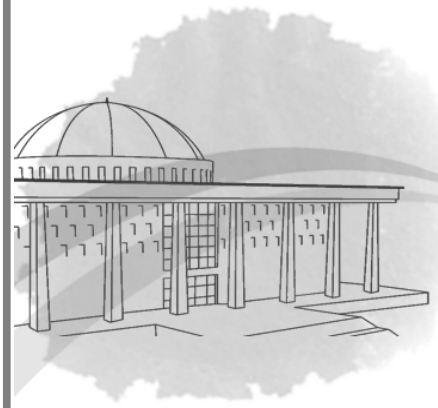
국가교육위원회는 시정요구사항 6건에 대해 6건을 조치완료(조치율 100.0%) 보고하였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6	6	100.0	-
예비비	-	-	-	-
합계	6	6	100.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1조 8,367억 700만원(11.8%)이 많은 17조 4,044억 5,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조 209억 6,900만원(△5.5%)이 감소됨.[1)]

[2025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산	12,909,076	12,909,076	12,840,491	△68,585	12,756,116	12,756,116	12,350,209	△405,907	△490,282
기금	3,113,894	3,113,894	5,584,935	2,471,041	2,811,634	2,811,634	5,054,248	2,242,614	△530,687
총수입	16,022,970	16,022,970	18,425,426	2,402,456	15,567,750	15,567,750	17,404,457	1,836,707	△1,020,969

문의: 02-6788-5698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5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3,493억 6,700만원(1.7%)이 많은 21조 2,496억 7,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조 9,359억 8,100만원(16.0%)이 증가됨.

[2025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산	16,344,265	16,344,265	16,162,881	△181,384	16,929,780	18,917,795	19,269,055	351,260	3,106,174
기금	2,152,211	2,152,211	2,150,810	△1,401	1,883,627	1,982,510	1,980,617	△1,893	△170,193
총지출	18,496,476	18,496,476	18,313,691	△182,785	18,813,407	20,900,305	21,249,672	349,367	2,935,981

나.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2조 7,561억 1,600만원으로, 12조 3,733억 6,0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2조 3,502억 8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8%)되고, 230억 9,700만원은 미수납되어 5,6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392,267	392,267	-	392,267	347,197	342,994	4,146	5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029	12,029	-	12,029	22,215	22,215	-	-
- 지역자율계정	-	-	-	-	3,059	3,059	-	-
- 지역지원계정	11,954	11,954	-	11,954	19,100	19,100	-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45	45	-	45	26	26	-	-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30	30	-	30	30	30	-	-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	-	-	-	92	92	-	-
우편사업특별회계	5,378,351	5,378,351	-	5,378,351	4,929,431	4,913,047	16,385	-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자본계정	214,446	214,446	-	214,446	201,539	200,319	1,220	-
손익계정	5,163,905	5,163,905	-	5,163,905	4,727,892	4,712,728	15,165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5,786,760	5,786,760	-	5,786,760	6,124,518	6,122,283	2,235	-
자본계정	32,267	32,267	-	32,267	36,291	36,291	-	-
손익계정	5,754,493	5,754,493	-	5,754,493	6,088,227	6,085,992	2,235	-
우체국보험특별회계	1,105,924	1,105,924	-	1,105,924	866,838	866,809	29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중앙과학관)	40,696	40,696	-	40,696	41,711	41,518	193	-
자본계정	9,239	9,239	-	9,239	10,922	10,922	0	-
손익계정	31,457	31,457	-	31,457	30,789	30,596	193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과천과학관)	40,089	40,089	-	40,089	41,358	41,250	109	-
자본계정	7,379	7,379	-	7,379	7,996	7,996	-	-
손익계정	32,710	32,710	-	32,710	33,362	33,254	109	-
합 계	12,756,116	12,756,116	-	12,756,116	12,373,360	12,350,208	23,097	56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4조 8,955억 2,600만원으로, 23조 5,899억 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4.8%)되고 1,079억 9,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조 1,976억 2,6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8,593,081	10,557,136	9,197	△3,008	12,922	10,576,247	10,513,412	25,686	37,149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20,694	420,694	-	-	-	420,694	409,051	-	11,643
- 투자계정	420,694	420,694	-	-	-	420,694	409,051	-	11,64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920,355	944,315	1,187	-	-	945,502	900,293	1,861	43,347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 지역지원계정	798,435	822,395	1,187	-	-	823,582	778,994	1,861	42,726
- 지역자율계정	112,980	112,980	-	-	-	112,980	112,359	-	621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5,270	5,270	-	-	-	5,270	5,270	-	-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3,670	3,670	-	-	-	3,670	3,670	-	-
소재부품장비경쟁력 강화특별회계	425,764	425,764	-	-	-	425,764	424,438	-	1,326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109,206	109,206	-	-	-	109,206	109,206	-	-
우편사업특별회계	5,378,351	5,378,351	52,775	-	4,177	5,435,303	4,824,686	69,667	540,949
- 자본계정	214,446	214,446	52,453	-	0	266,899	192,639	66,703	7,556
- 손익계정	5,163,905	5,163,905	322	-	4,177	5,168,404	4,632,047	2,964	533,393
우체국예금특별회계	5,786,760	5,786,760	6,760	-	-	5,793,520	5,467,286	6,491	319,743
- 자본계정	32,267	32,267	6,494	-	-	38,761	31,331	6,052	1,378
- 손익계정	5,754,493	5,754,493	266	-	-	5,754,759	5,435,955	439	318,365
우체국보험특별회계	1,105,924	1,105,924	536	-	-	1,106,460	866,048	510	239,902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중앙과학관)	40,696	40,696	1,380	-	-	42,076	36,349	3,712	2,015
- 자본계정	9,239	9,239	1,012	-	-	10,251	6,216	3,712	323
- 손익계정	31,457	31,457	368	-	-	31,825	30,133	-	1,692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과천과학관)	40,089	40,089	665	-	-	40,754	39,135	68	1,552
- 자본계정	7,379	7,379	663	-	-	8,042	7,587	47	409
- 손익계정	32,710	32,710	2	-	-	32,712	31,548	21	1,143
합 계	22,820,920	24,808,935	72,500	△3,008	17,099	24,895,526	23,589,904	107,995	1,197,626

주) 총계 기준

다. 기금 결산

2025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2조 4,314억 8,500만원으로, 4조 6,851억 7,1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4조 6,810억 9,1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9%)되고, 40억 8,1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5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입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				
과학기술진흥기금	198,646	198,646	181,483	181,483	-	-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263,053	263,053	370,096	370,096	-	-
방송통신발전기금	870,450	880,450	1,782,596	1,778,986	3,610	-
정보통신진흥기금	1,001,043	1,089,336	2,350,996	2,350,526	471	-
합 계	2,333,192	2,431,485	4,685,171	4,681,091	4,081	-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2조 4,314억 8,500만원으로, 2조 3,067억 7,000만원이 지출(집행률 94.9%)되고 178억 7,7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과학기술진흥기금	198,646	198,646	-	198,646	181,483	-	3,114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263,053	263,053	-	263,053	261,596	-	69
방송통신발전기금	870,450	880,450	-	880,450	817,977	-	1,739
정보통신진흥기금	1,001,043	1,089,336	-	1,089,336	1,045,714	-	12,955
합 계	2,333,192	2,431,485	-	2,431,485	2,306,770	-	17,877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5회계연도 말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산은 전년 대비 5,454억 1,800만원이 증가된 19조 8,300억 4,100만원으로, 이는 유무형자산이 365억 700만원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자산이 2,493억 4,300만원 증가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4,477억 5,600만원 증가된 9조 2,656억 8,900만원으로 차입부채 6,439억 3,900만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976억 6,200만원이 증가된 10조 5,643억 5,200만원임.

2025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14조 206억 4,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조 3,588억 800만원 증가되었고, 재정운영결과는 12조 8,000억 3,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조 5,203억 1,000만원 증가됨.

[2025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무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A)	2024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19,830,041	19,284,623	545,418	2.8
		금융자산	7,144,226	6,811,644	332,582	4.9
		유·무형자산	12,398,081	12,434,588	△36,507	△0.3
		기타자산	287,734	38,391	249,343	649.5
	부 채		9,265,689	8,817,933	447,756	5.1
		차입부채	8,113,389	7,469,450	643,939	8.6
		충당부채	169,895	150,918	18,977	12.6
		기타부채	982,405	1,197,565	△215,160	△18.0
	순자산		10,564,352	10,466,690	97,662	0.9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14,020,649	11,661,841	2,358,808	20.2
	재정운영순원가		13,424,921	10,902,737	2,522,184	23.1
	재정운영결과		12,800,033	10,279,723	2,520,310	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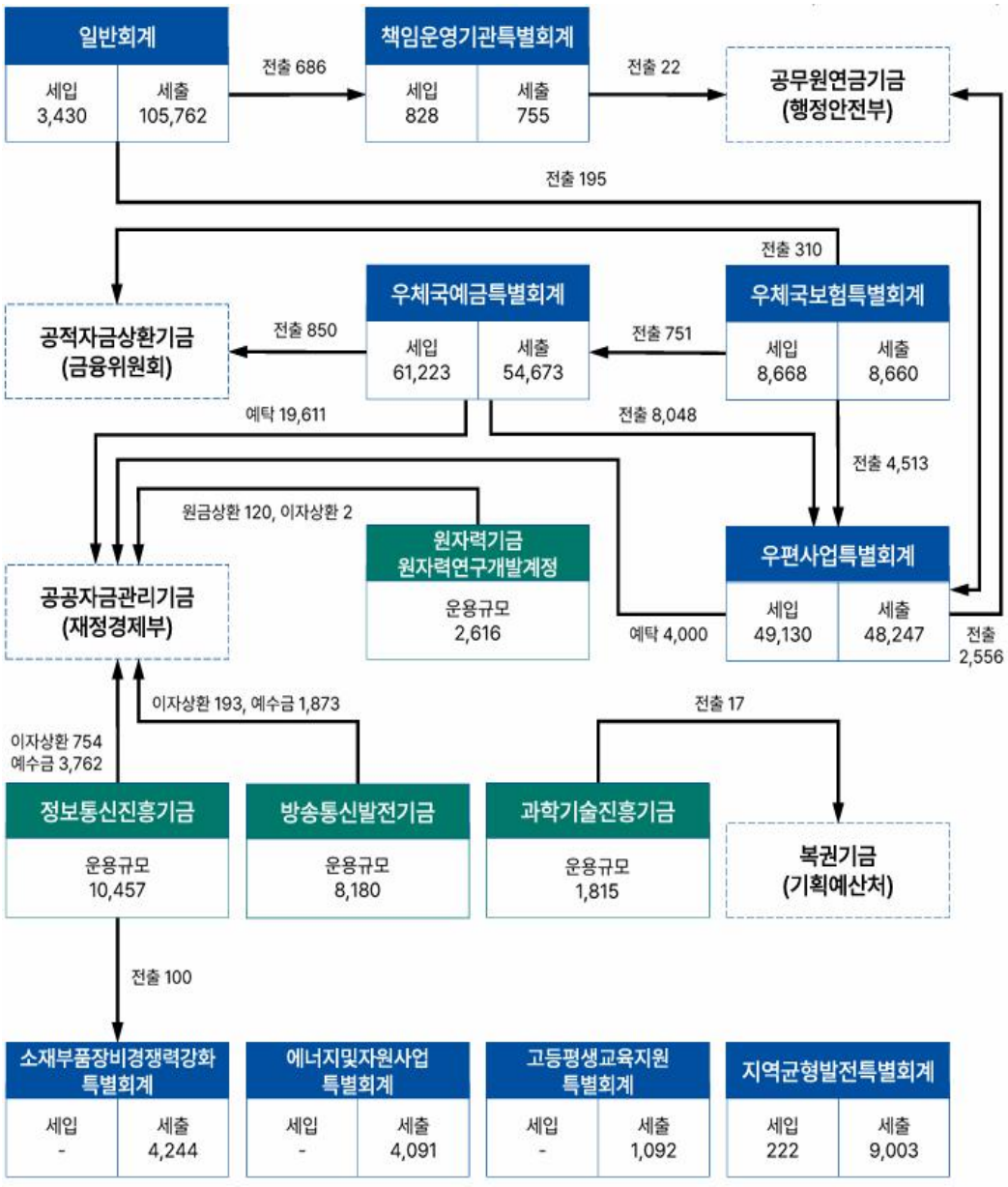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2025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재정은 일반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의 9개 회계와 과학기술진흥기금,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의 4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계·기금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로 686억원, 우편사업특별회계로 195억원이 전출되었음. 또한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 우편사업특별회계,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각각 4,513억원, 310억원이 전출되었음.

다음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정보통신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각각 754억원, 193억원이 이자상환되었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이 각각 3,762억원, 1,873억원을 예수하였으며,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120억원이 원금상환되었고, 2억원이 이자상환되었음. 또한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복권기금으로 17억원이 전출되었음.

[2025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정흐름도]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선도형 R&D 지원, AI·디지털 혁신 강화, 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를 2025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총 715개 세부사업에서 3대 게임체인저(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기술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확보, AI·디지털 대전환, 미래를 이끌 핵심인재 양성, 국제공동 연구 등 첨단기술 협력 확대 등을 수행하였음.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사업을 통해 구축된 연구시설장비에 포함된 GPU 등록 절차를 2026년 4월 이후부터 실시하고 있어 그 이전에 구축된 GPU의 현황 파악이 어렵고, 비R&D 사업을 통해 구축된 GPU 자원에 대하여는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부 재원이 투입된 GPU 자원 전반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현황 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2025년 추가경정예산 사업추진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사업비를 출연받은 전담기관이 민간기업인 수행기관에 사업비를 100% 선금으로 지급하여 수행기관의 폐업·횡령 및 결과물 품질 저하에 대한 대응 수단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사례가 존재하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사업추진 시 선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셋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식품연구원 시설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지 확보 문제로 사업이 장기간 중단되었음에도 매년 이월을 승인하여 관련 재원 59억 5,000만원이 10여년간 한국식품연구원에 계류 중이므로, 향후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출연금의 이월 승인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반납을 요구하는 등 출연금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넷째, 극한부품 시험입증 지원사업은 2025년 12월 26일이 되어서야 과제 선정이 완료되었고, 당초 목표한 3개 과제 중 2개 과제만 선정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차질이 발생하였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제 선정 현황을 이후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향후 유사 사업추진 시 충실한 수요조사 및 사업기획을 거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정보과학인적기반조성 사업의 국제공동연구 추진 과제를 운영함에 있어 해외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지연 및 공동 평가 운영 과정

에서의 과제 선정 지연 등 차질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여섯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산업은행출자(AI컴퓨팅 인프라 확충) 사업을 통해 SPC 설립을 지원하여 GPU 15,000장을 구축하여 산학연에 서비스하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별도 사업을 통해 GPU 약 10,000장을 시장가의 5~10% 수준의 자부담만으로 공급하고 있는바, 향후 SPC가 시장가 수준의 서비스 단가로 수요자를 유치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므로, SPC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일곱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025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술개발 및 보급 지원 사업 수행 중 사업기간을 차년도까지 연장하는 협약 변경 과정에서 이월 금액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과보고서에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약 변경 시 이월 금액 표시 명확화, 결과보고서 기재 내실화 등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여덟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근거로 공개소프트웨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정부지원비율을 100%로 조정하였는데, 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매칭하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아홉째, AI 혁신펀드 사업은 자펀드 결성이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되고 있고 단년도 사업으로 종료될 예정이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펀드 결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업종료 이후에도 펀드 운용 전반에 대한 점검·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정부 GPU 확보 사업: 사업관리 강화 및 GPU 현황 관리 체계 마련 필요

가. 개 요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을 추진하면서, 2028년까지 공공 부문 첨단 GPU 5만 2,000장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2)]

[정부 GPU 확보 계획(안)]

(단위: 만장)

구 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계
합 계	**1.3**	**2.4**	**1.5**		**+@**		**5.2+@**
□ AI컴퓨팅자원활용기반강화 사업 (2025년도 제1회 추경)	1.3	-	-	-	-	-	1.3
□ AI컴퓨팅자원활용기반강화 사업 (2026년도 본예산)	-	1.5	-	-	-	-	1.5
□ 국가 플래그십 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 고도화 사업	-	0.9	-	-	-	-	0.9
□ 한국산업은행출자(AI컴퓨팅 인프라 확충) 사업	-	-	1.5		+@		1.5+@

자료: 「국가 AI 혁신을 위한 첨단 GPU 확보·배분방향」, 2025.12.18.을 바탕으로 재작성

정부의 GPU 확보 계획은 크게 세 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첫째, AI컴퓨팅자원활용기반강화 사업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신규 추진되었고, 내역사업인 GPU 서버확충 사업 및 GPU 통합운영환경 구축 사업을 통해 1조 4,608억원을 투입하여 네이버클라우드(H200 3,056장), NHN클라우드(B200 7,656장), 카카오(B200 2,424장)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총 1만 3,136장의 GPU를 확보하였으며, 확보된 GPU 중 정부활용분 10,456장은 국가 AI 프로젝트, 산학연 연구개발, 스타트업

2) 「국가 AI 혁신을 위한 첨단 GPU 확보·배분방향」(2025.12.18.)을 참고하여 작성

AI 서비스 고도화 등에 활용하기 위해 2026년 3월부터 순차 배분을 개시하였음.[3)4)]

이어 2026년 본예산을 통하여 2조 805억원 규모의 추가 GPU 확보・구축・운용 사업을 공모하여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2026년 6월 8일 사업자 선정 결과에 따르면 기존에 유통되는 GPU(H200, B200 등)보다 최신의 고성능 모델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 9,704장(베라루빈 2,016장, B300 7,688장)을 구축할 계획으로, 당초 계획한 B200 15,000장보다 30%를 상회하는 성능(B200 19,000장 수준)을 갖출 것으로 예상됨.[5)]

이 중 6,376장(베라루빈 2,016장 B300 4,360장)은 정부활용분으로 독자 AI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국가 AI 프로젝트, 산・학・연의 AI 모델・서비스 개발 및 고도화 등을 지원하는데 활용될 계획임.

둘째, 국가 플래그십 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 고도화 사업은 슈퍼컴퓨터 6호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휴렛팩커드 간 3,825억원 규모 계약(2025.5.)을 통해 GPU 8,496장을 2026년 연내 서비스 개시하여 대형 국가 과학 연구 지원 및 AI 학습・추론에 지원할 예정으로, GH200 8,336장과 H200 160장이 포함될 예정임.[6)]

셋째, 한국산업은행출자(AI컴퓨팅 인프라 확충) 사업은 정부와 민간의 합동출자를 통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동 법인을 통해 국가AI컴퓨팅 센터를 설립한 이후 GPU 1만 5,000장 이상을 확보해 시장에 GPU 서비스를 공급할 계획으로, 2025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공모에서 참여자가 없어 유찰되었음. 이후 공모 조건을 수정하여 2025년 9월 8일 수정공고 후 2026년 5월 11일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총 사업비 2조원 이상 규모로 2028년 가동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임.

---

3) 본문의 H200, B200은 NVIDIA에서 제작한 GPU 기종으로, 학습 벤치마크(MLPerf Training v4.1) 결과 B200이 H200 대비 사전학습・파인튜닝 속도가 약 2배 빠른 것으로 나타남.

4) 정부활용분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은 GPU를 구축한 CSP사에 대한 운영비 성격으로 CSP가 자체 활용하며 클라우드 기반 GPU 서비스를 통해 AI 산업・연구 현장의 부족한 컴퓨팅 자원을 공급하고, 자체 AI 모델・서비스 고도화에도 활용할 계획임.

5) 본문의 B300은 NVIDIA에서 제작한 GPU 기종으로 B300이 B200에 비하여 약 1.5배의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베라루빈은 GPU와 CPU, 초고속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칩으로 2026년 하반기 출시 예정임.

6) GH200은 ARM CPU와 GPU H100이 통합된 연산가속기 칩임.

나. 검토의견

첫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한 국내 GPU 확보 주요 사업들이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됨에 따라 산·학·연의 GPU 수요가 적기에 충족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 계속 추진 중인 각 사업의 일정 및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관리하여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해 ① AI컴퓨팅자원활용기반강화 사업, ② 국가 플래그십 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 고도화 사업, ③ 한국산업은행출자(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사업을 병행 추진하였으나, 세 사업 모두 당초 계획 대비 일정이 지연되었음.

① 먼저 AI컴퓨팅자원활용기반강화 사업은 202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진되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5월 수립한 「첨단 GPU 확보 추진방안」에서 GPU 확보·구축 및 순차 서비스 개시 시점을 2025년 10월로 계획하였으나, 사업자 선정(2025.7.28.) 이후 GPU 구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실제 산·학·연 배분은 2026년 3월에야 시작되었음.

② 다음으로 국가 플래그십 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 고도화 사업의 경우,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GPU 가격 급상승과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하여 입찰이 4차례 유찰되었고, 이후 2024년 3월~10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거쳐 예산 1,554억원을 추가 투입하였으며, 사업 추진 후 2년 5개월이 경과한 2025년 5월에야 사업자를 선정하였음. 현재는 메인시스템 구축이 지연되면서 2026년 연내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추진 중임.[7)]

③ 마지막으로 한국산업은행출자(AI컴퓨팅 인프라 확충) 사업의 경우, 정부가 민간 주도 SPC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나 공공지분 51% 구조, 민간 매수청구권 조항, 국산 AI 반도체 활용 의무 등의 조건으로 인하여 1·2차 공모가 연달아 유찰되었고, 이후 정부 지분율 완화 등 공모 조건을 조정한 3차 공모에서 삼성SDS 주도 컨소시엄이 단독 입찰하여 2026년 5월 11일 최종 선정되었으며, 당초 2027년 개소 목표에서 2028년 가동 목표로 일정이 변경되었음.

이처럼 세 사업 모두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됨에 따라 산·학·연의 GPU 수요가 적기에 충족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계속 추진 중인 각 사업의 일정 및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관리하여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7) 과학기술정보통시부에 따르면 당초 2023년 8월 경 계약체결을 전제로 2024년 10월부터는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었음.

필요가 있음.

[정부 GPU 확보 현황]

(단위: 만장)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안)	2028년(안)	2029년(안)	계
		1분기	2분기	3분기(안)	4분기(안)				
합 계	**0.75**	**0.55**	**1.5**	**-**	**1.66**	**1.74**		+@	**4.6+@**
□ AI컴퓨팅자원활용기반강화 사업(2025년도 제1회 추경)	0.75	0.55	-	-	-	-			1.3
□ AI컴퓨팅자원활용기반강화 사업(20256년도 본예산)주)	-	-	-	-	0.76	0.24			0.9
□ 국가 플래그십 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 고도화 사업	-	-	-	-	0.9	-			0.9
□ 한국산업은행출자(AI컴퓨팅 인프라 확충) 사업	-	-	-	-	-	1.5		+@	1.5+@

주) 당초 NVIDIA B200 1.5만장 구축을 목표로 하였으나, 최신의 고성능 모델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 9,704장(베라루빈 2,016장, B300 7,688장)을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둘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사업을 통해 구축된 연구시설장비에 포함된 GPU 등록 절차를 2026년 4월 이후부터 실시하고 있어 그 이전에 구축된 GPU의 현황 파악이 어렵고, 비R&D 사업을 통해 구축된 GPU 자원에 대하여는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부 재원이 투입된 GPU 자원 전반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현황 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GPU는 AI 서비스 개발 및 다양한 R&D에 활용될 수 있는 핵심인프라이므로 정부 재정을 투입하여 확보한 GPU는 공공자원으로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축·보유 및 활용 현황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GPU 구축 현황이 종합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 자원의 중복 구축 또는 구축 후 미활용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확인하고 시정하기 어렵고, 향후 GPU 관련 예산 편성 및 배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국내 GPU 현황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그런데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GPU 관련 사업은 GPU 구축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과정에서 GPU를 활용하거나 AI 기반 서비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GPU 구매를 포함하게 되는 사업도 다수 존재하며, 후자의 경우 사업의 주된 목적이 GPU 확보가 아닌 만큼 구축된 GPU 자원의 현황이 별도로 집계되거나 관

리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3,000만원 이상의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 GPU 서버 등 고가의 장비는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 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 이하 "ZEUS"라 함)에 등록되어 있기는 하나, 2026년 4월 이전까지는 GPU가 포함된 서버 단위로 등록이 이루어져 GPU 자체의 현황을 별도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2026년 4월부터는 장비 등록 시 해당 장비에 포함된 GPU 현황을 함께 등록하도록 하였음.[8)]

다만 2026년 4월 이전에 구축된 GPU에 대하여는 여전히 현황 파악이 곤란한 상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4월 이전에 구축된 연구시설장비 장비의 경우에도 GPU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ZEUS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AX프로젝트 사업이나 의료혁신생태계조성(닥터앤서3.0) 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재정사업을 통하여 과제 수행기관이 GPU를 구매한 경우도 있음.[9)]

동 사업들의 경우 국가재정을 지원받아 GPU를 구매하였으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장비 등록 의무 자체가 없어, 사업추진 과정에서 구매된 GPU 현황을 별도로 집계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체계는 부재한 상황임.

이처럼 R&D 사업의 경우 2026년 4월 이전 구축분에 대한 GPU 현황 파악이 곤란하고 비R&D 사업의 경우 등록 의무 자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정부 재원이 투입되어 구

---

8)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시설장비"란 연구개발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며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능과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별표 1에 따라 구성되는 연구장비와 연구시설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연구장비"란 1백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과학기술활동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을 말한다.
나. "연구시설"이란 특정 목적의 연구개발활동(시험, 분석, 계측, 교육, 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하나 또는 복수의 연구장비로 이루어진 독립적인 연구공간을 말한다.
10.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 : 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이란 영 제42조제4항제2호의 종합정보시스템(이하 "ZEUS"라 한다)을 말한다.
제28조(정보등록) ① 연구기관의 장은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와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제27조에 따라 자산등재 완료 후 30일 이내에 ZEUS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등록대상이 되는 연구시설장비의 기준은 별표 7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9) 공공AX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과제 추진 과정에서 총 21억 7,500만원이 활용되어 GPU 서버 46개 구매가 이루어졌으며, 의료혁신생태계조성(닥터앤서3.0) 사업의 경우 과제 추진 과정에서 총 4억 3,700만원이 활용되어 15개의 GPU 서버 구매가 이루어짐.

축된 GPU 전체의 규모와 활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및 비R&D 사업을 아우르는 범정부 GPU 구축·활용 현황 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향후 GPU 관련 사업추진 및 GPU 배분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추가경정예산 사업 집행 관련: 과제 지원 시 선금 전액 지급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가. 개 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제1회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3개 세부사업을 신설하거나 증액하였으며, 해당 사업의 2025년도 예산현액 3조 2,234억 6,700만원 중 3조 2,221억 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6%)되었음.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가경정예산 사업 결산]

(단위: 개, 백만원, %)

세부사업 수	2025년도 예산액	2025년도 예산현액(A)	2025년도 집행액(B)	집행률(B/A)
33	3,223,467	3,223,467	3,222,105	99.96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검토의견

2025년 추가경정예산 사업추진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사업비를 출연받은 전담기관이 민간기업인 수행기관에 사업비를 100% 선금으로 지급하여 수행기관의 폐업·횡령 및 결과물 품질 저하에 대한 대응 수단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사례가 존재하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사업추진 시 선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25년 제1회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추진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사업비를 출연받은 전담기관이 과업 수행을 위하여 사업수행기관에 과제비를 지원하거나,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국비 지원액을 전액 선금 지급한 사례들이 발견되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사업비를 출연받은 전담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또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 규정」에 따라 계약의 체결·이행 등을 하게 되며, 동 규정들은 선금 지급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각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10]

한편「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은 공사 등의 입찰·계약의 집행과 관련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동 예규 제34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11]

이상의 규정에 비추어볼 때 각 전담기관의 계약담당자가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선금 지급 한도가 70% 이내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하나, 기획재정부가「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34조제1항에 따른 선금지급한도를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을 2025년 1월1일 ~ 2025년 12월31일까지 적용함에 따라 각 전담기관이 선금을 100% 지급할 수 있게 된 것임.[12]

---

10)「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 "정부" 및 "국고"는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기관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본다.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④ 기타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 "정부", "국고"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기관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본다.

11)「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사 등의 입찰·계약의 집행과 관련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4조(적용범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12)「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중 선금지급 확대 관련 내용 발췌

□ (선금지급한도 확대)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제1항의 선금지급한도를 100분의 70 → 100분의 100으로 확대*   * '25.12.31. 선금 신청분까지 적용

[추경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 수행비용을 100% 선금으로 지급한 사례]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최종과제 수행기관 유형	과제 분류	비고
지역디지털인재양성지원	ICT이노베이션스퀘어조성	기업 + 기관 컨소시엄	본예산 + 추경	기존 협약을 수정하여 예산 교부 (본예산: 분할교부 추경: 일괄교부)
World Best LLM 데이터 활용 지원	WBL 프로젝트 데이터 지원	기업 + 기관 컨소시엄	추경	선금 전액 지급
AI컴퓨팅자원 활용기반 강화 (2026-357)	GPU임차	기업	추경	일부 계약에 대하여 선금 전액 지급
AI 기반 침해대응체계 구축	-	기업	추경	선금 전액 지급
인터넷 경로 보안 고도화	-	기업	추경	선금 전액 지급
AI반도체 실증지원	국산 AI반도체 조기상용화 지원	기업	추경	선금 전액 지급
	AX실증지원	기업	추경	선금 전액 지급
	최적화설계지원	기업	추경	선금 전액 지급
융합서비스 글로벌시장 진출지원	AI-반도체 해외실증 지원	기업	본예산	선금 70% 지급
		기업	추경	선금 전액 지급
피지컬AI 핵심기술 PoC 사업	PINN 모델 제조 융합데이터 수집·실증	기업 + 기관 컨소시엄	추경	선금 전액 지급
	피지컬AI 선도모델 수립 및 PoC	기업 + 기관 컨소시엄	추경	선금 전액 지급
공공AX 프로젝트	-	기업	추경	선금 전액 지급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경제위기에 따른 내수·민생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신속한 자금 집행이 필요한 측면이 있더라도, 해당 과제의 수행기관이 민간기업인 점을 고려하면 사업비를 100% 선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 이후 수행기관의 폐업·횡령 등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환수하거나 사업을 정상화할 수단이 제한되며, 분할지급 방식에 비해 결과물의 품질을 담보할 수단도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예외 적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음.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접수기업 평가 과정에서 수행계획서·결산보고서 등을 통해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제 과제 수행 가능

성을 점검하였으며, 추경 사업의 회계연도 내 집행 필요성을 고려하여 선금으로 과제비 전액을 지급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사전 평가를 통해 재정 위험도가 높은 기업을 탈락시켰다고 해도 선금을 전액 지급한 이후 수행기관의 폐업·횡령 등 예기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일괄지급 방식은 분할지급 방식에 비해 결과물의 품질을 담보할 수단이 부족함.

'AI-반도체 해외실증 지원' 사업과 같이 본예산을 통해 지원된 과제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수준의 사전 검증 절차를 거치면서도 분할지급 방식을 선택한 사례도 있는데, 이는 사전 검증과 분할지급이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시사함.

또한 추가경정예산 사업의 회계연도 내 집행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100% 선금 지급하는 것이 아닌 중간 점검을 통해 과제 수행 현황을 확인하고 과제비를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기간 내 분할 집행하는 것도 가능함.

추가경정예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속한 집행 필요성 외에 수행기관의 재정 위험 및 결과물 품질 저하에 대한 대응 방안의 필요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과제비를 100% 선금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4대 과학기술원 시설 지원: 행정 절차에 따른 적정 예산 편성 필요 등

가. 개 요

과학기술원 시설지원 사업은 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육・연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및 건축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903억 2,0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13)]

[2025년도 4대 과학기술원 시설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한국과학기술원 시설 지원(R&D)	48,540	48,540	-	-	48,540	48,540	-	-	17,365
광주과학기술원 시설 지원(R&D)	17,146	17,146	-	-	17,146	17,146	-	-	24,356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시설 지원(R&D)	14,150	14,150	-	-	14,150	14,150	-		11,707
울산과학기술원 시설 지원(R&D)	10,484	10,484	-	-	10,484	10,484	-	-	8,605
합계	90,320	90,320	-	-	90,320	90,320	-	-	62,033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13) 일반회계-한국과학기술원 시설 지원(R&D)(2231-424)(미래인재정책국)
일반회계-광주과학기술원 시설 지원(R&D)(2231-427)(미래인재정책국)
일반회계-대구경북과학기술원 시설 지원(R&D)(2231-405)(미래인재정책국)
일반회계-울산과학기술원 시설 지원(R&D)(2231-401)(미래인재정책국)

나. 검토의견

첫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대 과학기술원 시설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총사업비 관리대상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후 관리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 지연 및 이월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유사 시설지원 사업 기획 시 총사업비 관리대상 해당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반영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원 시설 지원 사업을 통하여 각 과학기술원이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중 일부 사업이 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교부된 예산이 과다하게 이월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총사업비 관리대상 지정에 따른 지연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지정 시점	2024				2025			
		교부액 (부처→과기원)	예산 현액	실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교부액 (부처→과기원)	예산 현액	실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울산과학기술원 시설 지원 (Challenge 융합관 건립)	2023.12.	4,584	4,584	501	4,083	9,084	13,167	-	13,167
광주과학기술원 시설 지원 (차세대 AI반도체 첨단공정 FAB 구축)	2023.12.	4,000	4,000	82	3,918	6,465	10,383	139	10,244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시설 지원 (산학연 D-센서 실험시설증축)	2023.12.	14,501	16,433	2,200	14,233	11,285	25,518	8	25,51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사업들은 당초「총사업비 관리지침」제3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고에서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총사업비 관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2023년 12월부터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는 입장임.[14)]

14)「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조(관리대상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리대상 사업 및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

각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설계 과정에서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 및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 등 추가적인 행정절차가 수반되었으며, 지정 시점(2023년 12월)을 고려하면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는 이러한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지정에 따른 지연 상황 및 추가적인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고려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면밀히 고려하지 못하고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각 과학기술원에 교부된 예산의 대부분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었음.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유사 시설지원 사업을 기획할 때 총사업비 관리대상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수반되는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 및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 등의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충분히 반영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둘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대 과학기술원 시설지원 사업 예산을 월별로 분할교부하고 있으나, 교부받은 국비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이 추후 반납 없이 해당 기관에 귀속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미집행이 누적될 경우 기관에 귀속되는 이자수익만 증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 기관의 실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교부시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대 과학기술원에 시설구축비를 지원함에 있어 각 기관에 예산을 월별로 분할교부하고 있으며, 교부받은 국비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추후 반납 없이 해당 기관이 활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15]

---

1. 국고에서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사업추진 과정에서 국고 지원규모가 증가하고, 총사업비가 제1항의 관리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15)「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07쪽

○ 정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출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은 원칙적으로 ‘혁신법’ 제13조에 따라 처리한다. 非연구개발사업은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처리하되,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시 주무부처가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한 별도의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하는 등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다만, 출연기관의 기관운영 출연금(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의 경우에는 기관 세입에 계상하되, 필요시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각 지연 사업의 출연금 월별 교부현황]

(단위: 백만원)

교부월	Challenge 융합관 건립 사업 교부예산 (울산과학기술원)	차세대 AI반도체 첨단공정 FAB 구축 사업 교부예산 (광주과학기술원)	산학연 D-센서 실험시설증축 사업 교부예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025.1.	130	-	304
2025.2.	398	-	504
2025.3.	619	-	448
2025.4.	990	-	1,234
2025.5.	715	-	923
2025.6.	1,323	424	5,447
2025.7.	82	547	118
2025.8.	49	337	127
2025.9.	64	2,599	-
2025.10.	411	1,064	748
2025.11.	174	202	500
2025.12.	359	1,292	932
합계	9,084	6,485	11,285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 결과 각 기관의 실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조기에 교부할 경우, 집행되지 못한 채 대기 중인 국비 교부액 규모가 연초부터 누적되면서 해당 기관에 귀속되는 이자수익만 증가하게 되는 문제가 심화될 수 있음.

[각 시설지원 사업의 이자수익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Challenge 융합관 건립 사업 이자수익 (울산과학기술원)	차세대 AI반도체 첨단공정 FAB 구축 사업 이자수익 (광주과학기술원)	산학연 D-센서 실험시설증축 사업 이자수익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025년 이자수익	92	110	202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 기관의 실제 집행 가능성 및 사업 추진 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부 시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4. 2025 APEC AI 영상 콘텐츠 공모전 개최 지원: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회계·기금 혼용 주의 필요

가. 개 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2025 APEC AI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였음.

[2025 APEC AI 영상 콘텐츠 공모전 개요]

□ 2025 APEC AI 영상 콘텐츠 공모전 개요
- ㅇ (목적) APEC 계기 한국문화와 우리 AI 기술을 결합한 축제를 통해 한국문화의 가치와 특색을 알리고 AI 3대 강국 도약 토대 마련
- ㅇ (명칭) 2025 APEC AI 영상 콘텐츠 공모전
- ㅇ (주최/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콘텐츠진흥원
- ㅇ (주제) 한국문화의 재해석을 통해 보여주는 지속 가능한 내일
  - (부문 및 소재) 한국문화의 현대적 재해석과 APEC 키워드* 활용 3~5분 내외의 생성형 AI 영상 공모

부문	내용
① 영상 일반	・ 미디어아트・단편 영화 등 자유 영상 콘텐츠
② 뮤직비디오	・ K팝 스타일 등 뮤직비디오(저작권 문제없는 순수 창작 음원 등 활용)

*APEC의 핵심 가치인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을 키워드로 활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보조사업자인 한국콘텐츠진흥원과 2025년 신기술융합콘텐츠 글로벌 페스티벌 개최를 지원하던 중 이를 APEC과 연계하기 위하여 기존 용역사인 A업체와 APEC 행사 연계를 위한 글로벌 AI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기 위한 추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공모전을 공동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2025년 9월 12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으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기존에 수행중이던 AI반도체 최적화 설계지원 사업 예산(7,000만원)과 부처협업 기반 AI 확산 사업 예산(5,000만원)을 활용하여 A업체와 “2025 APEC AI영상 콘텐츠 공모전 운영 위탁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음.

[2025 APEC AI 영상 콘텐츠 공모전 관련 예산 활용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활용예산	합계
일반회계	AI반도체 실증지원 (AI반도체 최적화 설계 지원)	70	120
정보통신진흥기금	AI산업육성 (부처협업 기반 AI 확산)	5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나. 검토의견

첫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 APEC AI 영상 콘텐츠 공모전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 목적과 내용이 상이한 AI반도체 최적화 설계지원 사업 및 부처협업 기반 AI 확산 사업의 예산을 사용하였는바,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 「국가재정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 APEC AI 영상 콘텐츠 공모전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 9월 12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으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AI반도체 최적화 설계지원 사업과 부처협업 기반 AI 확산 사업의 예산을 활용하여 동 공모전 개최를 지원하였음.

그런데 두 사업은 모두 APEC AI 영상 콘텐츠 공모전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 「국가재정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16]

① AI반도체 최적화 설계지원 사업은 국산 NPU가 다양한 모델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AI 모델 호환성 확대, 맞춤형 설계 등 지원 및 설계에 필요한 IP 활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본사업과 동 공모전은 서로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모전 기획 단계에서는 NPU 인프라 활용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하였으나, 이후 NPU 조건으로 인한 국가 데이터센터 유찰 등 상황이 발생하여 공모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NPU 관련 조건을 완화하게 되었으며, 공모전 공고문에 국산 생성형 AI 서비스 사용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는데, 이는 사업 목적 중 하나인 “AI모델 SW 라이선스 확보·활용 기반 조성“에 부합한다

16)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는 입장임.

그러나 기획 단계에서 NPU 관련 조건을 포함하기로 논의하였다는 사실은 오히려 해당 조건이 동 사업 예산 활용의 전제였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해당 조건을 삭제한 시점에서 동 사업과 동 공모전의 연관성은 없어진 것으로 보임.

또한 국산 AI 라이선스 비용 지원의 경우 공모전 참가 요건에 국산 AI 활용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국산 AI를 활용한 사용자에게 사후에 10만원의 이용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결과 총 251건의 서면심사 대상 건 중 실제 지원 건수는 21건에 불과하였고, 지원 대상인 캐럿·딥브레인AI 등 국내 생성형 AI 서비스가 국산 NPU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여전히 NPU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② 부처협업 기반 AI 확산 사업의 경우 AI 전문성을 보유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다른 부처가 협업하여 각 부처의 소관 업무 중 AI 도입이 가능한 업무를 선정하고, 별도 공모를 통하여 민간기업을 선정하여 AI 기술 및 솔루션의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공모전이 부처 간(과기정통부-문체부) 협력을 기반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한국문화 관련 영상 콘텐츠를 공모하여 문화 분야 AI 활용을 확산하고자 개최된 것으로 목적에 부합한다는 입장임.

그러나 동 공모전은 단순히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영상 콘텐츠를 공모하는 행사로 부처협업 기반 AI 확산 사업의 수행 방식인 AI 적용 업무 선정 및 수행기업 공모를 통한 지원 구조와 차이가 있어 사업의 취지와 행사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사업 목적과 직접적 연관성이 부족한 행사·공모전 등에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2025 APEC AI 영상 콘텐츠 공모전 개최 지원을 위한 용역은 실적에 따라 집행액이 변동되는 국산 AI 이용비용 지원 비용을 포함하고 있었음에도 총액확정계약으로 체결되어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는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025 APEC AI 영상 콘텐츠 공모전 개최 지원 용역을「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제4조제1항에 따른 총액확정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면서 공모전 참가자 중 국산 AI를 활용한 사용자에게 1인당 최대 10만원씩 선

착순 500명을 대상으로 이용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해당 항목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지원 실적은 210만원에 그쳐 잔액 1,790만원이 사후정산 없이 용역업체에 귀속되었음.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선착순 500명·1인당 최대 10만 원 지원(5,000만원)은 계획상 최대 규모이며, 용역사와의 계약 시에는 2천만 원 수준을 상정하고 초과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약 3주의 짧은 공고기간 등의 영향으로 참여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축소되었다는 입장임.

그러나 총액확정계약은 원칙적으로 사후정산이 금지되어 실제 집행 실적과 무관하게 계약금액 전액이 지급되는 구조이므로, 참여 인원에 따라 집행액이 유동적으로 결정되는 이용비용 지원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 사후정산이 가능하도록 이를 제안요청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17)]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비용 지원과 같이 집행액이 유동적으로 결정되는 과업을 포함한 용역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공고나 제안요청서 등에 사후정산 조건을 명시하거나 해당 과업을 직접 수행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셋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 APEC AI 영상 콘텐츠 공모전 개최 지원을 위하여 일반회계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지원받은 사업의 예산을 혼용하였는데, 국회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를 지적한 바 있으므로, 회계와 기금의 예산이 그 재원과 용도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어 관리되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 APEC AI 영상 콘텐츠 공모전 개최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일반회계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예산으로 충당하였는데, 이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그 재원과 용도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되는 회계와 기금의 예산을 특정 행사 개최를 위해 혼용한 것이어서 부적절함.

특히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17)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4조(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① 수요기관은 행사대행용역 계약을 총액확정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후정산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서 정한 사후정산이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정산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와 같이 총액확정계약에서 사후정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정산한다는 사실, 정산요건 등을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등에 명시해야 한다.

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개최를 지원함에 있어 회계와 기금의 예산을 혼용한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회계와 기금의 예산이 그 재원과 용도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되도록 하여 향후 예산과 기금이 혼용되어 집행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의 시정요구를 한 바 있음.

[회계·기금 혼용 관련 시정요구 조치결과]

구분	내용
시정요구명	(110) 예산 및 기금의 재원과 용도 구분 필요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수준)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국가재정법」및「국고금관리법」에 따라 회계와 기금의 예산이 그 재원과 용도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되도록 하여 향후 예산과 기금이 혼용되어 집행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주의)
조치상황	조치완료
조치결과	ㅇ「국가재정법」및「국고금관리법」에 따라 회계와 기금의 예산이 그 재원과 용도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할 계획

자료:「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반회계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예산이 구분 없이 혼용되어 특정 행사 개최에 사용된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회의 기존 시정요구 사항이 실제 사업 집행 과정에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등 회계와 기금의 예산이 그 재원과 용도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어 관리되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R&D) 사업: 연구개발 정산금 회수 노력 강화 필요

가. 개 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관리하는 ICT R&D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성과제고를 위한 기획평가관리비는 일반회계·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하여 지원되고 있음.

먼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일반)(R&D) 사업은 2025년도 예산현액 89억 3,0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18)]

[2025년도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일반)(R&D)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 (일반)(R&D)	8,930	8,930	-	-	8,930	8,930	-	-	10,356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다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정진)(R&D) 사업은 2025년도 계획현액 146억 7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19)]

[2025년도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정진)(R&D)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 (정진)(R&D)	14,607	14,607	-	14,607	14,607	-	-	15,122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18) 일반회계-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일반)(R&D)(7602-301)(정보통신산업정책관)

19) 정보통신진흥기금-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정진)(R&D)(7602-303)(정보통신산업정책관)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방발)(R&D) 사업은 2025년도 계획현액 107억 2,2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20]

[2025년도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방발)(R&D)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 (방발)(R&D)	10,722	10,722	-	10,722	10,722	-	-	11,012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관리하는 R&D사업 종료과제의 정산 후 연구개발비 미수납액이 누적되고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과제 정산 이후 장기간 회수가 지연되는 과제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정산금이 국고로 반납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7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고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21]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전문기관으로서 정산이 완료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회수를 하여야 하나, 2025년까지 정산이 완료된 과제의 회수금 중 6억 7,800만원이 아직 국고로 반납되지 않고 있음.

20) 방송통신발전기금-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방발)(R&D)(7602-302)(정보통신산업정책관)

2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연구개발과제 정산에 따른 회수금 반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당해연도 정산 결과 회수 결정 금액	주관·참여기관 → 전담기관 납부액	미수납액					누적 미수납액
			납부중	납부 유예	법적 조치중	회생/파산	계	
2022	8,324	8,322	-	-	-	2	2	182
2023	10,203	9,927	257	-	-	19	276	458
2024	11,349	11,197	90	-	-	62	152	610
2025	8,720	8,652	68	-	-	0	68	678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6호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할 때까지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가 제한됨.[22)]

그런데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연구개발과제 정산 이후 회수가 지연되고 있는 과제 현황을 보면 2022년 ~ 2024년 종료과제에 대하여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유로 한 제재처분이 2026년 7월이 되어서야 이루어졌음.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납부를 독려하기 위하여 수차례 독촉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연구개발비 환수와 달리 회수 시에는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어 상대가 독촉에 불응하여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등 실효적인 회수 방안은 없는 실정임.

---

2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6.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6]

참여제한 처분기준(제59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는 제외한다)에 대한 위반행위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참여제한 기간
2)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6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할 때까지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과제 정산 이후 장기간 회수가 지연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을 조속히 진행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정산금이 국고로 반납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일반회계】

<세 출>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액인건비제 운영 관련: 총액인건비 운영 실적 보고의 정확성 제고 필요

가. 개 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액인건비제 관련 2025년도 예산현액 2,173억 9,500만원 중 2,128억 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9%)되었고 4억 1,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4억 9,7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년도 총액대상 인건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립전파연구원 (총액대상 인건비,R&D)	12,924	12,924	-	-	12,924	12,509	-	45	12,691
중앙전파관리소(총액대상 인건비)	65,515	65,515	-	483	65,998	66,330	-	38	68,998
국립전파연구원(총액대상,R&D)	1,488	1,488	-	-	1,488	1,334	-	154	1,602
중앙전파관리소(총액대상)	1,741	1,741	-	△175	1,566	1,494	-	22	1,622
총액대상 인건비	73,742	73,742	-	-	73,742	72,241	-	894	76,188
총액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	3,928	3,928	137	△27	4,038	3,633	267	135	4,177
총액대상 감사관 기본경비	57	57	3	-	60	55	3	2	57
총액대상 대변인 기본경비	53	53	10	-	63	64	5	1	53
총액대상 정보통신산업정책관 기본경비	86	86	13	-	99	79	14	2	86
총액대상 정책기획관 기본경비	461	461	95	△173	383	279	15	17	576
총액대상 국제협력관 기본경비	83	83	5	-	88	92	5	-	83
총액대상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기본경비	146	146	7	-	153	130	19	7	146
총액대상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84	84	1	-	85	94	2	1	84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아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기본경비									
총액대상 거대공공연구정책관 기본경비	81	81	3	-	84	78	-	9	81
총액대상 과학기술정책국 기본경비	103	103	10	-	113	108	3	3	103
총액대상 미래인재정책국 기본경비	86	86	9	-	95	92	4	-	86
총액대상 연구개발투자심의국 기본경비	187	187	25	△15	197	173	17	-	187
총액대상 성과평가정책국 기본경비	92	92	10	△15	87	80	5	2	92
총액대상 소프트웨어정책관 기본경비	103	103	9	△10	102	94	7	3	103
총액대상 방송진흥정책국 기본경비	87	87	3	-	90	71	-	-	0
총액대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기본경비	133	133	5	-	138	127	10	1	133
총액대상 정보통신정책관 기본경비	104	104	7	-	111	105	5	3	104
총액대상 통신정책국 기본경비	100	100	2	△10	92	89	10	3	100
총액대상 전파정책국 기본경비	69	69	17	-	86	77	6	1	69
총액대상 비상안전기획관 기본경비	40	40	1	-	41	40	0	2	40
총액대상 인공지능기반정책관 기본경비	101	101	3	-	104	116	10	4	101
보험총액기본경비	10	10	-	-	10	9	-	1	10
경영기획총액기본경비	7,224	7,224	-	-	7,224	7,029	-	195	7,216
우편총액기본경비	8	8	-	-	8	8	-	-	16
소속기관총액기본경비	27,685	27,685	-	413	28,098	26,887	3	1,209	27,327
예금총액기본경비	10	10	-	-	10	7	-	3	10
인건비(손익계정,총액인건비대상)	6,961	6,961	-	95	7,056	7,023	-	33	7,104
기본경비(손익계정,총액인건비대상)	2,469	2,469	-	△95	2,374	2,226	-	148	2,888
인건비(손익계정, 총액인건비대상)	7,328	7,328	-	-	7,328	7,159	-	169	6,965
기본경비(손익계정,총액인건비대상)	3,123	3,123	-	-	3,123	2,741	-	382	2,888
전산운영경비(손익계정, 총액인건비대상)	137	137	-	-	137	129	-	8	137
합계	**216,549**	**216,549**	**375**	**471**	**217,395**	**212,802**	**410**	**3,497**	**222,123**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가보상비를 절감하여 직제팀 운영 및 직급상향 운영을 하고 있으나, 보수 비목으로 전용하여 활용하지 않아 총액인건비제 운영 실적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고 있으므로 운영 실적 보고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절감된 연가보상비를 직제팀 운영 및 직급상향에 활용하는 내용으로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립한 운영 방안대로라면 연가보상비 및 특수업무수당 중 절감한 부분은 이·전용 등을 통하여 직제팀 운영 및 직급 상향에 활용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절감재원이 이·전용을 통해 활용되지 않고 전액 불용 처리되고 있음.

[최근 5년간 총액인건비제 절감재원]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연가보상비	262	267	299	218	179
특수업무수당	-	-	-	-	33
합계	262	267	299	218	212
이·전용을 통한 활용 여부	×	×	×	×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절감재원을 보수 비목으로 전용하여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가보상비 및 특수업무수당을 절감하여 직제팀 운영 및 직급 상향에 활용하였다는 내용의 총액인건비 운영 실적을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에 통보하였는바, 이는 예산 절감 이후에 전용 및 활용 절차가 없었음에도 절감재원을 활용한 것으로 통보한 것으로서 총액인건비 운영 실적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문제가 있음.

현재와 같이 연가보상비 등 항목의 절감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수 비목으로 전용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총액인건비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절감된 비목을 보수 비목으로 전용하는 절차를 이행하여 총액인건비 운영 실적 보고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7. 한국식품연구원 시설 지원(R&D): 장기 이월 출연금 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한국식품연구원 시설 지원(R&D)’ 사업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식품연구원의 시설 설립 및 관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5억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23)]

[2025년도 한국식품연구원 시설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한국식품연구원 시설 지원	500	500	-	-	500	500	-	-	1,500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식품연구원에 연구개발출연금을 교부하고, 한국식품연구원이 자체부담금과 지방비 매칭금액을 더하여 한국식품연구원 경북 본원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음.

[한국식품연구원 경북 본원 건축사업 개요]

- 규모 : 연면적 4,944.17㎡(약 1,496평)/ 지하 1층 ~ 지상 3층
- 총사업비 : 141.87억원(국비)
- 사업 수행기간 : 2014년 ~ 2028년
- 추진 배경 : 영남권 산·학·연·관 연구개발 허브 조성 및 식품R&D 기반 지역 특화산업 창출 등을 위한 거점 마련
- 설립 목적 : 지역 내 유관·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기반 구축 및 그린바이오 식품R&D 역할 주도

23) 일반회계-한국식품연구원 시설 지원(R&D)(2241-448)(기초원천연구정책관)

[연도별 국비, 지방비, 자체부담금 투입 현황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합계
국비	300	-	2,300	3,712	-	-	500	1,500	5,200	700.2	14,212.2
지방비 (경북도)	-	-	650	928	-	-	-	807.5	1,300	178.55	3,864.05
지방비 (구미시)	-	-	650	928	-	2,640	-	807.5	1,300	178.55	6,504.05
민자 (자체부담)	-	-	433	619	-	-	-	538	867	119.7	2,576.7
합계	300	-	4,033	6,187	-	2,640	500	3,653	8,667	1,177	27,157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검토의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식품연구원 시설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지 확보 문제로 사업이 장기간 중단되었음에도 매년 이월을 승인하여 관련 재원 59억 5,000만원이 10여년간 한국식품연구원에 계류 중이므로, 향후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출연금의 이월 승인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반납을 요구하는 등 출연금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식품연구원 시설지원 사업을 통하여 한국식품연구원 경북 본원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식품연구원은 이를 위하여 2016년 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나 2017년 7월 경북 구미시가 한국식품연구원에 20년간 무상제공하기로 하였던 부지에 대하여 무상제공 기간 종료 후 부지매입을 요청함에 따라 관련 법적 검토가 필요하게 되면서 사업이 중단되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비 63억 1,200만원을 한국식품연구원에 교부하였는데,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이 중 59억 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한국식품연구원에 교부된 채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월되어 왔음.

[연도별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교부액	집행액	이월액	비고
2014	300	-	300	
2015	-	-	300	
2016	2,300	159	2,441	설계용역 착수

(단위: 백만원)

연도	교부액	집행액	이월액	비고
2017	3,712	203	5,950	설계용역 완료
2018	-	-	5,950	부지매입 문제 해소 위한 관계기관 협의
2019	-	-	5,950	
2020	-	-	5,950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 발의
2021	-	-	5,950	과기출연기관법 개정 완료
2022	-	-	5,950	신규 MOU체결
2023	-	-	5,950	총사업비 조정 (재설계비 반영(자체 재원), 사업기간 2년 연장('24→'26))
2024	-	5	5,945	재설계 착수 (재설계비는 지자체·기관 자체재원으로 집행 중이며, 국비 중 9백만원을 재설계 기타 경비로 지출)
2025	500	4	6,441	
합계	**6,812**	**371**	-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후 2021년 8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출연연 공유지 무상 대부기간 상한선이 50년으로 연장되고 무상 대부기간 종료 후 부지매입 의무가 발생(20년 분할납부 가능)함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은 2022년 12월 경북도·구미시 등과 부지 무상 대부기간 종료 후 구미시의 부지매입비 지원을 포함한 신규 MOU를 체결하였으며, 2023년 6월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조정 승인 이후 사업이 정상 재개되어 2026년 3월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완료 등 설계 마감 단계에 있음.

사업재개 이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2024년에는 과거부터 이월되어 오던 59억 5,000만원 중 500만원이 설계용역 착수에 활용되었고, 나머지 59억 4,500만원은 2025년으로 이월되었음. 여기에 2025년 신규 교부된 5억원을 포함한 64억 4,500만원 중 400만원이 집행된 후 잔액 64억 4,100만원이 2026년으로 이월되었음.[24]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연구개발 출연금을 지원받은 기관은 당해 회계연도 연구비를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년 이월을 승인하여 왔음.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월을 승인하면서도 반납을 요구하지 않아 교부된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9월 중 공사 착공 시 이월된 예산 전액을 집행할 수 있다는 입장임.

재원이 10년간 한국식품연구원에 계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결과적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었으나, 사업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집행이 불필요하거나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오히려 토지 매입 이슈 해소를 위해 관계 기관과 적극 소통하면서 각 진행 단계별로 당시 합리적인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여러 차례 사업 기간을 연장해 왔다는 입장임.

그러나 그 결과 장기간 누적 발생한 이자수익이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적립되어 향후 이 사업의 기관 자체부담금으로 활용될 계획이고, 이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외에 기관부담금도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연도 중 사업이 재개되는 경우 우선 기관부담금을 활용하도록 하되 이후 추진 일정에 맞추어 국비를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실제로 2024년 사업재개 이후 활용된 국비는 2024년 500만원, 2025년 400만원에 불과하였음.[25)26)]

특히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집행지침」 부터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시설비의 집행이 불필요하거나 사업추진이 불투명하여 계속적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 및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국고로 반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기도 하였는데, 해당 시점에는 장기 이월 중인 59억 5,000만원을 국고로 반납을 검토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보임.[27)]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이와 같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출연금의 이월 승인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반납을 요구하는 등 출연금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5)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7쪽

ㅇ 정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출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은 원칙적으로 ‘혁신법’ 제13조에 따라 처리한다. 非연구개발사업은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처리하되,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시 주무부처가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한 별도의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하는 등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다만, 출연기관의 기관운영 출연금(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의 경우에는 기관 세입에 계상하되, 필요시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26) 이자수익 규모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사업 교부액(국비, 지방비 등)에 대한 이자를 별도(연구개발적립금-명시성 사업) 관리하고 있어 2025년 말 기준 총 4억 4,600만원 (분담률에 따른 국비 비중 2억 6,760만원) 규모라고 설명함.

27)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집행지침」 220p.

8. 연구성과 관리·활용 및 운영지원 사업: 전문기관 실태조사 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연구성과 관리·활용 및 운영지원’ 사업은 국가연구개발 사업, 전문·전담 기관, 우수 사례 등 다양한 단위와 관점에서 성과 관리·활용 및 확산 기반을 마련해 국가연구개발 연구 성과의 질적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억 9,3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28)]

[2025년도연구성과 관리·활용 및 운영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R&D)	3,575	3,575	-	-	3,575	3,575	-	-	3,575
연구성과 관리·활용 및 운영지원	293	293	-	-	293	293	-	-	435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연구개발출연금을 교부하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이를 활용하여 연구성과관리활용 실태조사, 연구관리전문기관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성과관리 유통전담기관 운영 및 지원, 우수 연구개발성과 100선 선정·홍보 등을 수행하는 형태로 집행되고 있음.

28) 일반회계-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R&D)(1035-401(성과평가정책국)

나. 검토의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통해 실시한 연구관리 전문기관 실태조사에서 한국연구재단이 작성 기준을 오인하여 오류가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검증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향후 자료 제출 기관의 기준 이해도 제고 및 검증 절차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3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성과 관리·활용 및 운영지원 사업을 통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동 실태조사를 위탁하고 있음.[29)]

2025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연구재단의 책임평가위원제 적용 과제 비율이 신규과제 기준 1.9%로 다른 기관이 모두 100%인 것과 비교하여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시 평가등급 내 ‘극히 불량’ 등급을 포함한 과제비율이 각각 54.8%, 50.9%로 나타나 다른 기관이 모두 100%인 것과 비교하여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런데 이는 한국연구재단이 책임평가위원제 적용 현황 및 단계·최종평가 실시과제의 ‘극히 불량’ 등급 포함 항목 작성 기준을 잘못 해석하여 오류가 있는 자료를 제출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됨.

---

2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3조(전문기관 지정 ·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문기관 지정 ·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 운영 효율화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은 지정 해제 요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전문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의 기준 ·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작성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여 정정한 결과]

구분	작성기준(발췌)	연구재단 기존 제출자료	작성기준 적용으로 정정 시
책임 평가위원제 적용	단계평가 혹은 최종평가가 이루어진 과제 중 책임평가위원제가 적용된 과제 현황 파악	신규과제 중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과제가 일부 모수에 포함 * 6,059건 중 118건 적용으로 제출	147건 중 118건 적용
단계/최종평가에 극히불량 등급 도입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평가등급을… '극히 불량' 등급을 받은 과제를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등급 체계에 '극히 불량' 등급을 도입한 과제를 응답	실태조사 대상범위가 아닌 일부과제(예. 인문분야)가 모수에 포함 * 단계평가 1,218건 중 668건으로 제출 * 최종평가 1,115건 중 568건으로 제출	단계평가 796건 중 792건 적용(99.5%) 최종평가 662건 중 662건 적용(1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출자료에 대해 알리오 및 관련지침 등을 통한 검증과 필요시 해당 기관에 대한 확인 요청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이번 한국연구재단의 오류는 작성 기준 오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향후 기관 제출자료에 대한 검증 단계를 강화하여 정합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임.

그러나 한국연구재단이 실태조사 작성 기준을 오인하여 오류 자료를 제출한 것은 자료 제출 기관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일정한 검증 절차를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기준 오인으로 인한 오류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점은 검증 절차가 작성 기준의 적정한 이해 여부까지 확인하기에는 부족했음을 보여줌.

특히 2024년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연구재단의 책임평가위원제 적용 과제 비율은 100%였고,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시 평가등급 내 '극히 불량' 등급을 포함한 과제 비율은 각각 85.7%, 88.6%로 나타나고 있어 2025년 결과는 전년 대비 준수 비율이 급격히 하락했다는 점과 다른 기관들이 모두 100%인 것에 비하여 한국연구재단만 현저히 낮은 준수율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제출된 자료에 이상이 없는지 면밀한 검증 및 확인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임.

[2024년 및 2025년 실태조사 결과 비교 표]

(단위: %)

기관명	책임평가위원제 적용 과제 비율		평가 시 극히불량등급 포함 비율			
			단계평가		최종평가	
	2024	2025	2024	2025	2024	2025
한국연구재단	100	**1.9**	85.7	**54.8**	88.5	**50.9**
정보통신기획평가원	100	100	100	100	100	100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대상없음)	(대상없음)	100	100	100	100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00	100	100	100	100	100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00	100	100	100	100	10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00	100	100	100	100	100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00	100	100	100	100	100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대상없음)	(대상없음)	100	100	100	10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상없음)		100	100	100	100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대상없음)		100	100	100	100
한국콘텐츠진흥원	100	100	100	100	100	100
한국원자력안전재단	100	100	100	100	100	100
한국임업진흥원	100	100	(대상없음)	(대상없음)	100	10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대상없음)	(대상없음)	100	100	100	10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00	100	100	100	100	100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100	100	100	100	100	10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2024년 및 2025년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운영 실태조사 결과에서 발췌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향후 실태조사 추진 시 작성 기준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제출 기관의 기준 이해도를 높이고, 제출자료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여 전문기관에 대한 실태조사가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9. 극한부품 시험입증 지원사업(R&D) 사업(신규): 사업 기획 전 면밀한 과제 수요 조사 필요

가. 개 요

‘극한부품 시험입증 지원사업(R&D)’ 은 민간에서 개발되었으나 군사용으로 극한(極限)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무기체계에 활용되지 못하는 소자·부품을 대상으로 신뢰성 입증 및 체계 연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5억 9,5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30]

[2025년도 극한부품 시험입증 지원사업(R&D)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극한부품 시험입증 지원사업(R&D)	595	595	-	-	595	595	-	-	1,210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 연구개발출연금을 교부하면 한국연구재단은 공모를 통하여 각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 후 연구개발비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수행됨.

동 사업은 연구개발과제는 Track형 실증지원 과제와 체계연계 기반조성 과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체계연계 기반조성 과제를 통하여 Track형 실증지원 과제의 수요 발굴, 기획, 선정,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연구개발과제 현황]

과제유형	주요 내용
Track형 실증지원	· 국방분야에서 旣개발된 극한(極限) 환경용 소자·부품 중 체계 활용도·기술력이 높은 부품 대상 신뢰성시험 비용지원을 통해 민간 우수부품의 무기체계 적용 지원 - 국내 기술력 및 체계활용성이 높은 주요 분야(반도체, 배터리, 센서 등) 내에서 지원과제 선정 후 3년간 종합 실증 지원
체계연계 기반조성	· Track형 실증지원 사업 수요조사, 기획, 선정,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과 사업

30) 일반회계-극한부품 시험입증 지원사업(R&D)(1158-457)(미래전략기술정책관)

과제유형	주요 내용
	성과의 국방 분야 후속 연계 등 - 네트워크 구축 - 국방분야 연계 지원 - 시험·입증 비용지원 사업수행지원 - 극한부품정보 관리 등

자료: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계획서(극한부품시험입증지원사업)

나. 검토의견

극한부품 시험입증 지원사업은 2025년 12월 26일이 되어서야 과제 선정이 완료되었고, 당초 목표한 3개 과제 중 2개 과제만 선정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차질이 발생하였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제 선정 현황을 이후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향후 유사 사업추진 시 충실한 수요조사 및 사업기획을 거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극한부품 시험입증 지원사업을 2025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였는데 당초 과제 기획 및 공고를 2025년 3~4월 경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사업계획 수립에 상당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2025년 6월부터 체계연계 기반조성 과제 선정절차를 거쳐 2025년 8월 29일에 체계연계 기반조성 과제 수행을 개시하였으며, 이후 주제 발굴 및 수요조사를 거쳐 2025년 10월부터 Track형 실증지원 과제 선정 절차를 진행하였음.

[사업추진일정]

일자	과제 구분	내용	비고
~2025.5월	-	사업 예산 규모 조정 관련 추진방향 협의	총 예산 규모 당초: 118.5억원 → 조정: 59.8억원
6월 초	-	사업 시행계획 수립	사업 추진('25~'29)
6월 초~중	체계연계 기반조성	신규과제 선정 준비	운영계획서 작성
6.18.~7.18.		신규과제 공고	사업 공고 및 과제 접수
7.19.~8.29.		신규과제 선정	평가(준비), 협약 등
8.29.		신규과제 연구개시	8월 개시
9.15.		신규과제 착수보고	업무 방향 협의
9.16.~9.30.	-	주제 발굴 및 수요조사	국내 기업 8개 수요 확보
10.1.	-	지원 주제 선정	3개 주제 선정

일자	과제 구분	내용	비고
10.16.	Track형 실증지원	RFP 작성	3개 과제 대상
10.17.~10. 21.		RFP 사전공고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및 기획마루(plan.nrf.re.kr)
10.23.		RFP 확정	3개 RFP
10.28.~11. 26.		신규과제 공고	3개 RFP 대상
11.27.~12. 04.		재공고	3개 RFP 대상
12.18.		선정평가	평가대상 과제 수: 총 4개 과제
12.26.		신규과제 선정	2개 과제
12.30.		연구개발비 지급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Track형 실증지원 과제 선정 시 3개 분야에서 각 1개 과제 선정을 목표로 하였으나 2개 분야에서 지원기관이 각 1개에 그쳐 재공고를 실시하였고, 그 중 1개 분야는 단독 지원한 연구개발기관이 평가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음에 따라 최종적으로 2개 분야 2개 과제만 선정하는 데 그쳤음.

이와 같이 지원 과제 수가 저조하고 선정 일정이 지연된 것은 사업 기획단계에서 참여 가능 기관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과제 착수가 2025년 12월 26일에야 이루어졌음.[31)]

한편 2026년도 예산은 3개 과제에 대하여 각각 12개월간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반영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개 과제만 선정된 데다 과제 착수 시점도 지연된 상황이므로 예산이 실제 과제 선정 현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과제 선정 지연 및 미선정 상황을 반영하여 2027년도 예산안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향후 유사한 사업추진 시 충실한 사전 수요조사 및 사업기획을 거칠 필요가 있음.

31) 2025년도 예산안은 Track형 실증지원 과제를 6개월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었음.

10. UNIST 캠퍼스 건립(R&D) 사업: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교부 필요

가. 개 요

‘UNIST 캠퍼스 건립(R&D)’ 사업은 기초과학연구원의 UNIST 캠퍼스 건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32억 1,8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32)]

[2025년도 UNIST 캠퍼스 건립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조성	85,078	85,078	6,660	14,778 △14,778	91,738	88,866	1,955	917	30,145
기초과학연구원 건립	71,725	71,725	6,660	△1,593	76,792	73,920	1,955	917	11,136
UNIST캠퍼스 건립	14,811	14,811	-	13,185 △14,778	13,218	13,218	-	-	9,747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4년 5월 「기초과학연구원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초과학연구원을 건립 및 운영 중이며, 기초과학연구원의 UNIST 캠퍼스 건립은 2022년부터 착수하였음.

[기초과학연구원 UNIST 캠퍼스 건립 사업 개요]

- (설립목적) 기초과학연구원과 과기 특성화대학교가 연계하여 세계 최고 수준 기초과학 연구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사업규모) 사업비 566억 3,900만원(2026.6 기준) / 연면적 15,064㎡
- (사업기간) 2022~2028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2) 일반회계-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R&D)(1640-300)(연구성과혁신관)

나. 검토의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UNIST캠퍼스 건립 사업의 수행 방식을 정부 직접수행에서 출연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공사비·실시설계비 및 감리비 등 총 147억 7,800만원을 연구개발건축비로 전용하고 이 중 131억 8,500만원을 기초과학연구원에 교부하였는데, 기초과학연구원은 이를 전액 이월하였으므로 향후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교부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부터 UNIST 캠퍼스 건립 사업을 당초 정부 직접수행 방식으로 추진 중이었으나, 2025년 10월 과학벨트 추진단 해체(2023년 12월) 이후 전문성을 갖춘 기초과학연구원이 건립을 추진할 필요성, 소유·활용 기관의 책임성 제고, 불필요한 절차 해소를 이유로 기초과학연구원에 연구개발비를 출연하여 수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음.

이에 따라 2025년 10월 공사비 140억 1,100만원, 감리비 7억 4,100만원, 실시설계비 2,600만원 등 총 147억 7,800만원을 연구개발건축비로 전용한 후 이 중 131억 8,500만원을 기초과학연구원에 교부하였는데 기초과학연구원은 이를 전액 이월하였음.[33]

[2025년 UNIST 캠퍼스 건립 사업비 전용·교부·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비목	전용액	교부액	이월액	비고
공사비	14,011	-	-	-
감리비	741	-	-	-
실시설계비	26	-	-	-
소계	14,778	13,185	13,185	연구개발건축비로 비목 변경
내역조정	1,593	-	-	거점지구 인프라 구축으로 조정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2025년 6월 실시설계가 완료된 이후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설계가 완료된 시점이 2026년 1월인 점을 감안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내 공사 착공과 공사비 집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출연금을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음.[34]

33) 나머지 15억 9,300만원은 2025년 11월 내역조정을 통해 다른 내역사업인 거점지구 인프라 구축 사업에 활용되었음

34)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UNIST 캠퍼스 총사업비 조정은 2026년 1월(감리비) 최종 완료하였으나, 총사업비 중 공사비 협의 완료(10월) 후 공사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실제 수행체계 변경에 따른 행정 처리, 조달청과의 요건 검토·협의 등에 따라 공사 발주가 지연되었다는 입장임.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접수행 방식 하에서는 공사비 이월을 위해「국가재정법」제48조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또는 이를 위한 입찰공고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월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나, 이처럼 출연 방식으로 변경하여 기초과학연구원에 연구개발출연금을 교부함으로써 실집행 단계에서 이월이 가능해진 측면도 있음.[35)]

따라서 정부 직접수행 방식이 유지되었다면 전액 불용되었어야 할 131억 8,500만원이 사업수행 방식 변경 이후 기초과학연구원에 교부하는 형태로 집행되어 전액 이월되었는데, 이는「국가재정법」상 이월 제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교부한 것은「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취지에도 위배되는 측면이 있음.[36)37)]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사업수행 방식 변경 시 변경 사유의 적절성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 가능성도 면밀히 검토하여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출연금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35)「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6)「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8p.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출연사업의 실집행 실적 제고를 위해 월별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자금 교부시 사전에 지자체, 공공기관의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7)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직접 수행 방식을 유지하였다면 2025년 말 공사 발주를 실시하여 사고이월을 통해 집행을 차년도로 연기함으로써 최소한 불용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을 것이라는 입장임.

11. 한국고등과학원 시설 지원(R&D) 사업: 주요 내용 확정 후 예산안 편성 필요 등

가. 개 요

‘한국고등과학원 시설 지원(R&D)’ 사업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의 부설기관인 한국고등과학원의 시설 설립 및 관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9억 3,0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38]

[2025년도 한국고등과학원 시설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한국고등과학원 시설 지원(R&D)	930	930	-	-	930	930	-	-	6,321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한국고등과학원은 동 사업을 통하여 한국과학기술원 서울캠퍼스내에 ‘허준이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5년에 교부받은 예산 9억 3,000만원 전액을 이월하였음.

[허준이 기념관 개요]

- 규모 : 연면적 5,550㎡(약 1,679평)/ 지하 3층 ~ 지상 2층
- 총사업비 : 220억원(국비)
- 사업 수행기간 : 2025년 ~ 2029년
- 추진 배경: 2022년 허준이 교수의 필즈상 수상(한국계 수학자 최초 필즈상 수상)을 계기로, 수상 업적을 기념하고 수학 난제 연구, 미래인재양성 등을 위한 연구·교류 공간으로서 KAIST 서울캠퍼스 내에 ‘허준이 기념관’ 건립사업 추진
- 설립 목적: 연구공간 분산 해소를 통한 효율성 확보 및 전 세계 수학자들이 모여 교류와 협력, 새로운 연구성과 창출, 이를 통한 중장기 몰입연구가 가능하도록 수학 연구중심 공간 마련

38) 일반회계-한국고등과학원 시설 지원(R&D)(2221-426)(미래인재정책국)

나. 검토의견

‘허준이 기념관’ 건립을 위한 설계 발주 전 한국고등과학원과 한국과학기술원 간 내부 공간 분배 등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설계비 9억 3,000만원이 실집행 단계에서 전액 이월되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사업추진 시 주요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출연금 교부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한국고등과학원 시설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하여 한국과학기술원 서울캠퍼스 부지 내에 연구공간·학술교류공간·기념공간 등을 포함하는 복합시설인 ‘허준이 기념관’ 건립을 위하여 설계비 9억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한국고등과학원과 한국과학기술원 간 내부 공간 분배 등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한국고등과학원은 교부받은 예산 전액을 이월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허준이 기념관’건립 사업 주요 사항은 확정되었으나, 세부사항에 대한 기관간 이견 조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입장임.

[허준이 기념관 건립 관련 주요 협의 경과]

구분	내용	비고
2024.4.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2차 회의	한국과학기술원 서울캠퍼스 내 신축 필요성 논의
2024.5.~8.	관계기관 협의(3차례 진행)	신축·증축 방안, 부지위치, 공간 분배 등 논의
2024.8.	기획보고서 기재부 제출	
2025년 중	기관간 협의 장기화	건물명칭, 내부 공간 분배 비율 미확정
2026.3.	최종합의 완료	
2026.5말	설계 공고 예정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2024년 4월부터 8월까지 신축·증축 방안, 부지 위치, 공간 분배 등에 관한 관계기관 협의를 3차례 진행하고 2024년 8월 작성된 기획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등 예산 편성 전부터 기관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내부 공간 분배 비율과 같은 주요한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한 채로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 결과 2025년도 예산안 국회심의 과정에서 동 사업이 정부안 대로 확정되었음에 불구하고 2025년 중 협의가 완료되지 않고, 2026년 3월에 이르러서야 한국과학기술원과 한국고등과학원간의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결국 2025년에는 예산이 전액 실집행되지 못한 상황이 초래되었음.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원과 한국고등과학원간의 최종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실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집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없이 출연금을 매월 분할교부 하였음.

[한국고등과학원 시설 지원 사업 출연금 교부 현황]

(단위: 백만원)

회차	교부시점	교부예산
1차	2025.01.24	68
2차	2025.02.26	51
3차	2025.03.24	68
4차	2025.04.28	96
5차	2025.04.29	198
6차	2025.05.27	38
7차	2025.06.18	65
8차	2025.07.31	25
9차	2025.08.29	27
10차	2025.09.29	21
11차	2025.10.30	100
12차	2025.11.28	173
합계		**93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출연금을 조기에 교부하여 미집행이 누적될 경우 기관에 귀속되는 이자수익만 증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한국고등과학원은 2025년 교부된 출연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수입 1,100만원을 경상비로 집행하였음.[39)]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사업추진 시 주요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출연금 교부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39)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7쪽

> ○ 정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출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은 원칙적으로 '혁신법' 제13조에 따라 처리한다. 非연구개발사업은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처리하되,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시 주무부처가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한 별도의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하는 등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 다만, 출연기관의 기관운영 출연금(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의 경우에는 기관 세입에 계상하되, 필요시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12. 양자정보과학인적기반조성 사업: 국제공동연구 사업 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양자정보과학인적기반조성’ 사업은 폭발적 파급 잠재력을 지닌 양자정보과학 분야에 우수인재가 유입되고 고급인력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성장경로 구축 및 연구저변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29억 5,9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40]

[2025년도 양자정보과학인적기반조성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과학기술혁신 인재양성(R&D)	59,850	59,850	-	-	59,850	59,850	-	-	76,881
양자정보과학 인적기반조성	22,959	22,959	-	-	22,959	22,959	-	-	31,411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 연구개발출연금을 교부하면, 한국연구재단이 공모를 통해 선정한 각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수행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을 통하여 국제공동연구도 지원하고 있는데 연구개발과제 총 41개중 36개가 국제공동연구이며, 이 중 일반형은 22개, 별도과제형은 14개임.[41]

40) 일반회계-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R&D)(1744-411)(미래인재정책국)

41) 국제공동연구는 “일반형”, “공동기관형”, “별도과제형”으로 3가지 형태로 구분됨.
① “일반형”은 국내연구기관을 통해 해외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지급하는 과제임.
② “공동기관형”은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이 국내외 기관 모두와 협약하여 연구비를 지급하는 과제임.
③ “별도 과제형”은 각 국이 자국의 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지급하는 과제임.

나. 검토의견

양자정보과학인적기반조성 사업의 국제공동연구 추진 과제를 운영함에 있어 해외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지연 및 공동 평가 운영 과정에서의 과제 선정 지연 등 차질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정보과학인적기반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공동연구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 3개의 일반형 과제와 11개의 별도과제형 과제의 연내 집행률이 60%이하로 저조하였음.

[2025년도 집행률이 60%이하인 과제 목록]

(단위: 백만원)

과제 분류	과제명	2025년 국비 (A)	2025년 매칭자금 (B)	전년도 이월 등 (C)	예산현액 (A+B+C)	최종 집행액 (D)
일반형	(과제1)초전도 양자컴퓨팅 양자 오류정정 기술 고도화를 위한 국제 공동 연구	2,000	-	575	2,575	1,022
	(과제2)고체 점결합기반 양자 센싱용 하이브리드 소자 개발을 위한 국제 공동 연구	501	-	-	501	299
	(과제3)광집게 분자 합성 기반쌍극성 분자 양자컴퓨팅 플랫폼 개발	501	-	-	501	115
별도 과제형	<7K 잡음 온도의 다중 양자 센싱 지원 가능한 극저온 CMOS Low-IF ROIC	75	-	-	75	37
	광격자 양자 상태 생성기	75	-	-	75	20
	양자 센싱 고도화 위한 점결함 광물리 및 나노광학 기술 국제공동연구	75	-	-	75	-
	광자 수 분해 초전도 나노선 양자광검출기	75	-	-	75	14
	자유공간 광 링크를 통한 얽힘 분배: 고고도 풍선에서 시공간 곡률 시험까지 (QFREE)	75	-	-	75	31
	GaN 기반 집적형 양자센싱 플랫폼 연구	118	-	-	118	10
	온-칩 양자 마그논 센싱	118	-	-	118	7
	초전도 기반 큐비트 노이즈 저감을 위한 제조 공정 고도화	118	-	-	118	20
	주기적으로 분극반전된 2차원물질 적층구조를 이용한 고효율 얽힘 광자쌍 생성 기술 연구	118	-	-	118	-
	고임피던스 초전도 공진기를 이용한 실리콘 큐비트 제어	118	-	-	118	18
	NV 양자센싱 기반 고온 초전도체 및 반도체 결함 진단	118	-	-	118	37

주) 최종집행액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① 3개의 일반형 과제의 경우 국내연구기관을 통해 해외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국내연구기관이 해외연구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반하여 국제공동연구비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해외연구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지연으로 인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제공동연구비 집행이 전혀 되지 않았음.

[일반형 과제의 국제공동연구비 집행 현황 및 업무협약 체결 일정]

(단위: 백만원)

과제구분	과제수행기간	2025년까지 연구비 총액	국제공동연구비	비율	집행액	집행률	MOU 체결 여부	체결 시기 (예정)
과제1	2024-07-01 ~ 2028-12-31	3,000	1,500	50.0%	0	0%	체결	2026.06.04. (스위스 ETH)
과제2	2025-07-01 ~ 2029-12-31	501	135	26.9%	0	0%	체결	2025.12.26. (일본 ISCT) 2026.01.28. (미국 시카고대)
과제3	2025-07-01 ~ 2029-12-31	501	150	29.9%	0	0%	체결	2026.04.20. (미국 하버드) 2026.05.11. (스위스 ETH)

주 1) 과제1·2·3은 [2025년도 집행률이 저조한 과제 목록]에 포함되어있는 일반형 과제1~3을 의미함
2) 집행실적은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히 위 표의 ‘과제1’은 국가와 연구개발기관간 연구개발협약 체결을 통해 2024년 7월 1일부터 추진중으로, 1단계(2024.7.1.~2026.12.31.) 연구기간동안 “Distance-2 논리큐비트 소자의 제작 및 오류감지 시연”을 목표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기관과 해외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이 지연됨에 따라 국제공동연구비는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어 공동연구가 원활히 수행되지 않았을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부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의로 업무협약 체결이 다소 지연된 측면은 있으나, 연구기관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해외기관과의 실질적인 공동연구는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업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연구수행은 각 기관 간 역할 분담, 연구 범위, 성과 귀속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연구수행이 계획대로 이루어졌을지 우려되는 측면이 있으며, 지식재산권 문제는 국제공동연구 추진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한 채 연구개발이 개시된 것도 바람직하지 않음.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해외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1단계 종료를 앞두고 있는 과제에 대하여는 단계별 성과가 충실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② 한편 11개의 별도과제형 과제는 각 국이 자국의 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지급하는 과제인데 양국간 공동 평가 운영체계를 통한 과제 선정 절차를 거치면서 지연됨에 따라 집행률이 저조하였음.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간 협상 과정에서 상대국이 공동평가를 제안한 것이어서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였다는 입장이므로, 향후 유사 사업추진 시에는 상대국과의 협의과정에서 공동평가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13. 한국연구재단 기획평가관리비(일반)(R&D) 사업: 연례적 회계연도 불일치 개선 필요

가. 개 요

‘한국연구재단 기획평가관리비(일반)(R&D)’ 사업은 「한국연구재단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이 기초 · 원천연구(바이오·양자·반도체 등), 국제협력 등의 기획연구, 연구과제 평가·협약관리 및 사후 성과관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542억 6,5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42)]

[2025년도 한국연구재단 기획평가관리비(일반)(R&D)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한국연구재단 기획평가관리비 (일반)(R&D)	54,265	54,265	-	-	54,265	54,265	-	-	56,838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한국연구재단은 기획평가관리비를 활용하여 해외우수연구자유치사업 연구자지원단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용역 착수 시기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점점 연말로 지연되면서 회계연도 불일치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이 향후 용역계약 체결 시 계약 주기를 회계연도와 일치시키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한국연구재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해외우수과학자유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평가관리비 일부를 해외우수연구자유치사업 연구자지원단 용역 계약 체결에 활용하고 있음.

그런데 동 용역계약의 수행기간을 확인해보면, 첫 용역계약 체결연도인 2022년 이

42) 일반회계-한국연구재단 기획평가관리비(일반)(R&D)(7601-301(기초원천연구정책관)

후 2025년까지 매년 용역계약의 시작 시점이 연말로 지연되면서 회계연도의 불일치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음.

[해외우수연구자유치사업 연구자지원단 용역 계약기간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계약명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기간
2022	2022년도 해외우수과학자 유치사업 연구자지원단 업무 지원	- 해외우수과학자 유치를 위한 국내외사업 응대 및 홍보지원 - 유치된 해외우수과학자의 국내 장기 정주를 위한 기반조성 지원 - 종료과제 사후관리 및 종료 과학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	138	2022.06.21.~ 2023.06.20.
2023	2023년도 해외우수과학자 유치사업 연구자지원단 운영 지원	- 해외우수과학자 유치를 위한 사업 운영 및 국내외사업 응대 지원 - 유치된 해외우수과학자의 국내 장기 정주를 위한 기반조성 지원 - 종료과제 사후관리 및 외국인 연구자 DB 구축 지원	145	2023.11.16.~ 2024.11.14.
2024	2024년도 해외우수과학자 유치사업 연구자지원단 운영 지원	- 해외우수과학자 유치를 위한 사업 운영 및 국내외사업 응대 지원 - 유치된 해외우수과학자의 국내 장기 정주를 위한 기반조성 지원 - 종료과제 사후관리 및 외국인 연구자 DB 구축 지원	152	2024.11.15.~ 2025.11.14.
2025	2025년도 해외우수과학자 유치사업 연구자지원단 운영 지원	- 해외우수과학자 유치를 위한 사업 운영 및 응대, 홍보 지원 - 유치된 해외우수과학자의 국내 장기 정주를 위한 기반조성 지원 - 지원과제 및 종료과제 관리 및 외국인 연구자 DB 구축 지원	146	2025.12.23.~ 2026.12.22.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와 같이 회계연도 불일치 문제가 지속된 경위를 살펴보면, 2022년 최초 계약 시 과업 시작일이 회계연도와 일치하지 않게 설정된 것을 시작으로 이후 과업 기간의 연속성 유지를 이유로 동일한 계약 구조가 반복되었으며, 2023년·2025년에는 각각 유찰로 인한 재공고가 이루어지면서 계약 시점이 추가로 지연된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회계연도와 일치하지 않는 계약 구조가 반복되는 것은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이 향후 용역계약 체결 시 계약 주기를 회계연도와 일치시키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43]

43) 한국연구재단은 연구자지원단 과업 목적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2026년도 과업 수행을 위한 용역 계약 체결 시 과업 시작일을 1월부터 설정하여 회계연도를 일치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임.

14. AI컴퓨팅자원활용기반강화 사업(신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주의 필요 등

가. 개 요

‘AI컴퓨팅자원활용기반강화’ 사업은 AI 컴퓨팅 자원의 활용 및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서비스 개발 등 현장 수요 대응부터 생태계 조성까지 AI 산업의 전 주기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조 6,194억 3,8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44]

[2025년도 AI컴퓨팅자원활용기반강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AI컴퓨팅자원활용 기반강화	-	1,619,438	-	-	1,619,438	1,619,438	-	-	2,084,125
GPU 서버확충	-	862,496	-	-	862,496	862,496	-	-	1,399,875
GPU 통합운영 환경구축	-	598,342	-	-	598,342	598,342	-	-	683,250
GPU 임차지원	-	158,600	-	-	158,600	158,600	-	-	1,000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내역사업인 **‘GPU 서버 확충’** 및 **‘GPU 통합운영환경 구축’**은 국내 AI 생태계 지원을 위한 GPU 서버 확충 및 그에 따른 따른 대규모 클러스터링 비용을 지원하는 등 통합운영환경을 구축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조 4,608억 3,8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

다른 내역사업인 **‘GPU 임차지원’**은 글로벌 수준의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확보를 위한 실력 있는 국내 AI 기업에 대한 GPU 지원 및 독자 AI 파운데이션모델 프로젝트 사업 관리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586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

44) 일반회계-AI컴퓨팅자원활용기반강화(26022-357)(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

나. 검토의견

첫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GPU 서버확충 및 GPU 통합운영환경 구축 사업을 통하여 2025년 말까지 GPU 10,000장을 확보하는 한편 2025년 내에 확보된 GPU 자원 배분을 순차 개시할 계획이었으나, GPU 자원 배분이 2026년 3월부터 개시되었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네이버클라우드·카카오·NHN클라우드 등 3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2025년 말까지 GPU 10,000장을 확보·구축하는 한편 확보된 GPU 자원의 산학연 지원 배분을 2025년 내에 순차 개시할 계획이었음.

사업자별 구축 경위를 살펴보면 네이버클라우드와 카카오는 H200 3,056장(정부 활용분 2,296장) 및 B200 2,424장(정부활용분 2,040장)을 2025년 12월 중 구축 완료하였으며 이후 베타테스트 등 서비스 개시 전 준비 절차를 거쳤음.[45)]

NHN클라우드는 B200 7,656장(정부 활용분 6,120장) 중 510개 서버(4,080장) 규모의 대형 클러스터의 경우 구축 자체가 2026년 1분기 중 완료 예정이었으며, 전체 구축 완료 및 정식 서비스 개시는 2026년 3월에 이루어졌음.

[사업자별 GPU 서버 구축 일정]

구 분			GPU 구축일정(1서버 = 8 GPU)							
수행기관명	GPU 모델	구축 수량	25년 8월	25년 9월	25년 10월	25년 11월	25년 12월	26년 1월	26년 2월	26년 3월
네이버 클라우드	H200	서버 382대	발주 완료 (8/27)	-	입고 완료 (382대)	-	서버 구축	테스트 및 구축 완료	-	-
카카오	B200	서버 303대	발주 완료 (8/18)	입고 (62대)	입고 완료 303대)	-	서버 구축	베타서비스 개시 및 구축완료	-	-
NHN 클라우드	B200	서버 957대	-	발주완료 (9/10)	-	-	입고 (255대)	입고 (누적 297대)	입고 (누적 765대) 베타서비스 개시 (128서버)	입고 완료, 테스트 및 구축완료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5) 본문의 H200, B200은 NVIDIA에서 제작한 GPU 기종으로 B200이 H200에 비하여 약 2배의 성능을 가지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12월 말 공고를 통하여 2026년 초 구축 완료 예정이었던 GPU 4,224장(네이버와 카카오가 구축한 정부 활용분 GPU 활용)을 배분할 산·학·연을 모집하였으며, 2026년 3월부터 공급을 개시하였음.

<GPU 산·학·연 분야별 신청 및 선정 현황>

구분	신청			선정			신청 대비 선정 비율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서버	비율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서버	비율	
산업계	4,312장	539대	31.4%	**1,288장**	161대	30.5%	29.9%
학계	8,600장	1,075대	62.7%	**2,624장**	328대	62.1%	30.5%
연구계	800장	100대	5.8%	**312장**	39대	7.4%	39.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첨담 그래픽 처리 장치(GPU) 약 4천 장, 산·학·연 지원 개시」, 2026.3.3.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3월 16일 공고를 통하여 산업계에 GPU 2,000장을 추가 공급하였고, 2026년 4월부터는 수시모집을 통해 GPU 자원을 공급하고 있는데, 2026년 6월 기준으로 정부활용분 GPU 10,456장이 모두 할당되어 활용 중이라는 입장임.

이처럼 당초 2025년 내 구축 완료 및 자원 배분 개시를 목표로 추진된 사업이 결과적으로 2026년 3월부터 순차 배분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은, 사업 기획 단계에서 사업자별 구축 일정 리스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현재 GPU 구축 및 배분이 완료되어 활용 중인 상황이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유사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GPU 서버확충 및 GPU 통합운영환경 구축 사업 예산이 APEC 2025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기업부스 조성 지원 및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자 선정 관련 법률검토 등 동 사업 목적과의 연관성이 불분명한 용도로 집행되어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 「국가재정법」 제45조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GPU 서버확충 및 GPU 통합운영환경 구축 사업의 전담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동 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사업목적과 관련성이 적은 APEC 2025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에서 기업부스 조성을 지원하고 다른 세부사업[46]으로 추진 중인 국가 AI 컴퓨

46) 일반회계-한국산업은행출자(AI컴퓨팅인프라 확충)(2603-325)(인공지능기반정책관)

팅센터 구축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법률검토 등에 예산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 「국가재정법」 제45조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47]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집행 내역]

(단위: 원)

집행일자	집행내용	집행금액
2025-10-20	APEC 2025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기업부스조성용역추진	10,000
2025-11-11	APEC 2025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기업부스조성용역추진	21,800,000
2025-11-11	GPU 서버등AI컴퓨팅인프라구축을위한국가AI컴퓨팅센터구축사업 사전서류검토추진결과보고	600,000
2025-11-11	GPU 서버등AI컴퓨팅인프라구축을위한국가AI컴퓨팅센터구축사업 사전서류검토추진결과보고	600,000
2025-11-11	GPU 서버등AI컴퓨팅인프라구축을위한국가AI컴퓨팅센터구축사업 사전서류검토추진결과보고	600,000
2025-11-12	GPU 확보를위한국가AI컴퓨팅센터구축사업정량평가결과보고	300,000
2025-11-12	GPU 확보를위한국가AI컴퓨팅센터구축사업정량평가결과보고	300,000
2025-11-14	GPU 구매를위한국가AI컴퓨팅센터구축사업부지등법률검토결과보고[법무법인민후]	2,000,000
2025-11-14	GPU 구매를위한국가AI컴퓨팅센터구축사업부지등법률검토결과보고[법무법인비트]	2,500,000
2025-11-14	GPU 구매를위한국가AI컴퓨팅센터구축사업부지등법률검토결과보고[법무법인한별]	1,800,000
2025-11-14	GPU 구매를위한국가AI컴퓨팅센터구축사업부지등법률검토결과보고[법무법인바른]	3,300,000
2025-11-20	GPU 구매를위한국가AI컴퓨팅센터구축사업부지등법률검토결과보고[법무법인동인]	4,400,000
2025-12-17	GPU 확보를위한국가AI컴퓨팅센터구축사업용비품구매	1,930,800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지출부에서 발췌

① 먼저 APEC 2025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에서 기업부스 조성을 지원한 것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동 사업의 사업수행계획서상 세부사업 내용에 “사업설명회 및 국제행사에서의 사업 홍보, 국내 GPU 수요·활용처 조사 등 성공적인 사업 이행을 위한 각종 제반 사항 수행”이 명시되어 있고 AI 생태계 활성화라는 사업목적 달성의 일환으로 기업부스 조성을 지원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동 사업은 GPU 서버를 구축하고 이를 국내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에서의 기업부스 조성이 동 사업의 홍보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업부스 조성 지원도 NPU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국내 GPU 수요·활용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업수행계획서상의 포괄적 문구를 근거로 집행의 적정성을 인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

47)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② 다음으로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법률검토 예산을 집행한 것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동 사업에서 확보한 GPU를 국가 AI컴퓨팅센터 출자사업의 SPC에서 활용하고자 하였고, 두 사업이 AI고속도로 구축이라는 국정과제 하에 연관성을 가지므로 예산 활용이 적정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SPC를 통한 동 사업 GPU 활용 계획은 민간참여자 미응찰로 인한 유찰로 SPC 선정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철회되었으며,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SPC 법률검토 등의 비용이 동 사업 예산으로 집행된 것은 두 사업 간 실질적 연관성이 낮아진 상황에서의 집행임.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사업 목적과의 연계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특정 사업 예산이 해당 사업 목적과의 연관성이 불분명한 용도로 집행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셋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GPU 임차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GPU 임차 단가를 과다하게 예측하여 당초 계획 대비 150% 이상의 임차 물량이 확보되었고, 초과 확보된 물량의 일부가 당초 계획되지 않은 특화 AI FM 프로젝트 추진에 활용되었으므로, 향후 유사 사업추진 시 단가 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025년 GPU 임차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5년 5월 26일 WBL참가팀에 지원되는 GPU B200 1,000장과 H100 1,000장을 11개월간 임대할 수 있는 공급사를 모집하였음.[48)]

그 결과 B200 1,016장을 736억원, H100 1,016장을 326억 4,000만원에 임대하는 협약을 각각 체결하여 총 1,062억 4,000만원을 활용하여 WBL 참가팀에 대한 GPU 자원 지원이라는 사업목적을 달성하였음.

그런데 이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1,576억원으로 543억 6,000만원의 잔여예산이 발생하였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이 중 165억 5,454만원을 활용하여 산·학·연에 대한 GPU 지원에 활용하였고 348억 576만원을 특화 AI FM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GPU 지원에 활용하였음.

48) WBL참가팀은 정부가 (가칭)World Best LLM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한국형 독자 AI 모델 개발을 주도할 사업자 선정 결과 선정된 5개 팀을 의미함. 현재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정식 명칭으로 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추진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참가팀의 탈락이 진행되어 2026년 6월 현재 4개팀이 참여하고 있음.

[GPU 임차 현황 및 사용처]

(단위: 장)

구 분		2025.8.	2025.9.	2025.10.	2025.11. ~2025.12.	2026.1.~ 2026.6.	2026.7. ~2026.9.
총 확보자원	GPU_B200× 1,528	1,016	1,016	1,016	1,528(1,016+512)	1,528(1,016+512)	512
	GPU_H200 × 208	-	-	-	-	208	
	GPU_H100 ×1,538	1,016	-	1,144(1,016+128)	1,144(1,016+128)	1,538(1,016+128+394)	
WBL 참가팀 활용 (1062억 4,000만원)	GPU_B200	1,016	1,016	1,016	1,016	1,016	
	GPU_H100	1,016	1,016	1,016	1,016	1,016	
특화 AI FM 활용 (348억 576만원)	GPU_B200	-	-	-	512	512	512
일반 사용자 활용 (165억 5,454만원)	GPU_H200	-	-	-	-	208	
	GPU_H100	-	-	128	128	522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결과적으로 당초 계획 대비 150% 이상의 임차 물량이 확보된 것인데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가를 산업계 대상 GPU 임차 지원사업의 GPU 임차 단가(H100) 및 최신 GPU(B200)의 성능비를 고려하여 산출하였으나, 민간 CSP[49]와의 가격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협상력을 기반으로 기존 계획 대비 150% 이상의 지원 물량을 확보하게 된 것이라는 입장임.

그러나 민간 CSP와의 협상 과정에서의 정부 협상력이나 시장 가격 동향은 단가 산정 단계에서도 고려가 가능한 변수인 만큼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예상 임차 물량과 실제 임차 가능 물량이 50%가량 차이가 생긴 것은 과다한 측면이 있음.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당초 WBL 프로젝트 참가팀에 대한 GPU 임차 지원을 위해 동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후 초과 확보한 물량을 활용하여 산·학·연 사용자 및 특화 AI FM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GPU를 지원하여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내용으로 예산을 집행한 문제가 있음.

특히 산·학·연 등에 대한 GPU 제공 계획은 사업수행계획 수립 단계에는 반영된

49) Cloud Service Provider의 약자로 본문에서는 GPU 자원을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함.

반면에 특화 AI FM 프로젝트 지원에 관한 내용은 사업수행계획에도 명시가 되지 않았으므로, 초과 확보된 물량의 일부를 사업계획서에도 명시되지 않은 특화 AI FM 프로젝트 추진에 활용한 것은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집행으로 볼 수 있음.[50][51]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의 목적이 "국내 AI 생태계 지원을 위한 GPU 자원 임차비용 및 프로젝트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특정 분야에 특화된 AI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특화 AI FM 프로젝트 지원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입장임.

그러나 동 사업은 WBL 프로젝트 참가팀이 활용할 GPU가 다른 사업[52]을 통해 구축되기 전에 필요한 GPU를 임시(11개월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주된 목적은 WBL 참가팀 지원에 있으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사업수행계획에도 특화 AI FM 프로젝트 지원에 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예산 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특화 AI FM 프로젝트 지원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결과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 예산 348억 576만원을 활용하여 특화 AI FM 프로젝트 지원이라는 신규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국가재정법」 제45조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53]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GPU 임차 단가 산정 시 민간 CSP 협상 결과 및 시장 가격 동향을 충분히 반영하여 산정된 단가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초과 확보된 자원이 당초 계획한 사업 범위 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50) AI컴퓨팅자원활용기반강화 사업의 「2025년도 출연 사업수행계획서」 사업내용 중 발췌

- (추가물량 확보·지원) WBL 공급사 선정 과정에서 가격협상을 통해 절감한 예산으로 추가 물량을 확보하여 추가 공급 추진 * WBL 공급사 공모서에 추가 물량 제공 공급사 선정에 대해 명시하여 별도의 재공고 절차 없이 선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상황에 따라 재공고 가능) ** 5개 선정기업 중 B200 각 500장, H100 1,000장 우선 제공(3개 기업)하고, 추가 물량(최소 예상 100~200장)에 대해서는 WBL정예팀(차순위자) 및 산·학·연 등에 제공

5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추진 중인 2025년 9월 5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공문을 통하여 특화 AI FM 프로젝트 추진 협조를 요청하였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025년 9월 22일 ~ 10월 13일 공모를 통하여 2개 사업기관을 선정하여 특화 AI FM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GPU 자원을 할당하였음.

52) 동 사업의 다른 내역사업인 GPU 서버확충 및 GPU 통합운영환경 구축 사업

53)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15. 한국산업은행출자(AI컴퓨팅 인프라 확충) 사업(신규): 사업추진 시 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등

가. 개 요

‘한국산업은행출자(AI컴퓨팅 인프라 확충)’ 사업은 민·관 출자를 바탕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구축하여 첨단 AI반도체(GPU 등) 기반으로 AI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10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54]

[2025년도 한국산업은행출자(AI컴퓨팅 인프라 확충)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한국산업은행출자 (AI컴퓨팅 인프라 확충)	21,000	21,000	-	-	21,000	-	21,000	-	11,800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민·관 합작 투자를 통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정책금융 대출 등을 활용해 2.5조원 규모의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SPC 지분은 공공 29%, 민간 71%로 구성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통해 첨단 AI반도체(GPU 등) 1.5만장 이상을 2028년까지 우선 구축하고, 2030년까지 추가 확충해나갈 계획임.

54) 일반회계-한국산업은행출자(AI컴퓨팅인프라 확충)(2603-325)(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

나. 검토의견

첫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PC에 대한 800억원의 정부자금 출자 및 AI컴퓨팅 사업 추진 시 SPC 우선 사용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공공분야 지분이 축소되고, 산·학·연 지원 내용이 완화되었으며, 매수청구권 삭제로 인하여 공공출자금 회수 방안이 불투명해지는 등 공공성 축소가 우려되므로,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공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추진 과정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이 부재하여 두 차례 공고를 진행하였으나, 민간기업 선정에 실패한 이후 공공지분 감소(51%이상 → 29%), 매수청구권 조항 삭제 및 국산 AI반도체 도입 의무 삭제 등 공모요건을 수정하여 2026년 5월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음.

[2025년도 한국산업은행 출자(AI컴퓨팅 인프라 확충) 사업 추진현황]

구분	추진일정
2025.1.22.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실행계획 발표
2025.1.23.~5.30.	1차 공고 (사업설명회: 1차 2.7, 2차 3.7)
2025.6.2.~6.13.	2차 공고
2025.9.8.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국가 AI컴퓨팅 센터 추진 방안(안) 발표
2025.9.8.~10.21.	3차 공고 (사업설명회: 9.11)
2026.3.10.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26.5.11.	실시협약 체결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런데 정부자금 출자는 총 800억원으로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AI컴퓨팅 사업 추진 시 국가AI컴퓨팅센터 우선 사용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다른 재정사업과의 연계를 지원할 계획으로 SPC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비하여, 사업구조 개편으로 인한 공공성 축소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

예를 들어 ① ‘AI컴퓨팅 서비스 경쟁력 및 요금’과 관련하여 기존 공고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대학·연구소, 중소·스타트업 등에 대하여 이용 비용을 저렴하게 운영하도록 사업자에게 의무로 명시하고 있었던 반면, 수정된 공고서는 이를 AI 연구·개발 및 서비스 지원, 정부사업 연계 등 AI 정책 수요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제안으로 완화하여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의 요금할인 방안 등을 의무화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AI컴퓨팅 서비스 경쟁력 및 요금 관련 공고 내용 비교]

기존 공고서	수정 공고서
○ AI 컴퓨팅 서비스 경쟁력 및 요금 : 민간참여자는 국내 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AI컴퓨팅 서비스 모델 구성 · 제공 방안, 서비스 로드맵, 공공성 및 수익성을 고려한 부가 서비스 계획 등을 상세히 제시 필요 - **대학 · 연구소 및 중소 · 스타트업 등의 AI 연구 · 개발, AI서비스 지원을 위해 저렴한 수준으로 운영 필요** - 또한, 산업 · 연구계 지원(공공성)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성(사업성) 확보를 위해 부가서비스 운영(IaaS, PaaS, SaaS, 코로케이션 등) 추진	○ AI컴퓨팅 서비스 경쟁력 및 요금 : AI컴퓨팅 서비스 모델 구성 · 제공 방안 및 서비스 로드맵, 요금 체계 등은 민간 참여자 주도로 구성하고 운영 · 관리 - 다만, **대학 · 연구소, 중소 · 스타트업 등의 AI 연구 · 개발 및 서비스 지원, 정부 사업 연계 등 AI 정책 수요에 대한 인센티브(요금할인 등) 제공 방안도 제안 필요**

자료:「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SPC설립)」 사업 공고서에서 발췌

또한 ② 공모요건이 수정되면서 매수청구권이 삭제되었는데, 수정된 공고서는 공공출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을 정책적 필요성과 사업 여건, 민간 참여자 의견 등에 따라 논의될 예정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공출자금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함.[55]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고한 바와 같이 대학・연구소, 중소・스타트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사업참여계획서에 포함되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SPC 설립 이후 착공 등 서비스를 준비하는 중에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고, 향후 필요시 공공지분이 원활하게 매각될 수 있도록 민간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므로,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공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둘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산업은행출자(AI컴퓨팅 인프라 확충) 사업을 통해 SPC 설립을 지원하여 GPU 15,000장을 구축하고 AI연구・개발 및 서비스환경 조성 등을 하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별도 사업을 통해 GPU 약 10,000장을 시장가의 5~10% 수준의 자부담만으로 공급하고 있어 향후 SPC가 시장가 수준의 서비스 단가로 수요자를 유치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므로, SPC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AI컴퓨팅자원활용기반강화 사업을 통하여 GPU 약 10,000장을 확보하였고 이후 2026년도 사업을 통하여 10,000장 가량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며, 이를 산・학・연 수요자 및 국가 AI프로젝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55)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분 매각을 통한 방법으로 공공출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임.

등에 배분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산업계 사용자에 대하여 시장가격의 약 5~10% 수준의 자부담을 부과하고 있고, 학계・연구계에는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음.[56)]

[자부담금 부과 기준]

구분	산업계 사용자				학계・연구계 사용자
	일반 기업		청년 기업(50%)		
	GPU 1장 (월 기준)	서버1대 (월 기준)	GPU 1장 (월 기준)	서버1대 (월 기준)	
H200	40만원	320만원	20만원	160만원	무상 지원
B200	80만원	640만원	40만원	320만원	

주 1) 청년 기업 : 공고일 기준 대표자(공동 대표의 경우 1인 이상)가 청년에 해당 되며, 만 39세 이하(1986.04.01. 이후 출생)인 기업
2) GPU 신청은 서버 단위(1서버=8 GPU)로 이루어지며, 자부담은 배정된 GPU 서버수를 기준으로 산정
자료:「첨단 GPU 활용 지원 사업」 공모안내서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을 통하여 민간 SPC로 하여금 첨단 AI반도체(GPU 등) 15,000장을 구축하여 국내 산・학・연 수요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도록 하는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정부구매 GPU를 통해 시장 수요를 견인・활성화한 후 형성된 수요를 SPC를 비롯한 민간 CSP사에서 이어받는 구조를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정부 사업을 통해 시장가의 5~10% 수준으로 GPU를 이용해 온 수요자들이 향후 SPC의 시장가 수준 서비스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것인지는 불확실하며, 수요자의 단가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수요 축소 등에 따라 SPC의 수익구조가 계획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민간에 다양한 수익모델 설계 등을 요청・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이므로, 정부 주도의 서비스 공급 일정과 민간 주도의 CSP 서비스 본격화 시점 간의 연계 방안을 구체화하고, SPC의 수익구조를 점검하는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6)「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GPU) 약 4천장, 산・학・연 과제 공모 개시」, 2025.12.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6. 대규모 디지털전환 지원 사업(신규): 사업설계 적정성 제고 필요

가. 개 요

‘대규모 디지털전환 지원’ 사업은 대규모 정보화사업의 기획에서 개통까지 위험·이슈, 과업 범위, 성과·품질 등 주요 핵심사항 검토 및 기술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5억 9,6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57]

[2025년도 대규모 디지털전환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가정보화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정보화)	2,518	2,518	-	-	2,518	2,494	-	24	2,866
대규모 디지털전환 지원	1,596	1,596	-	-	1,596	1,596	-	-	1,600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사업출연금을 교부하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이를 활용하여 원내에 책임형기술지원센터를 구성하고 정부의 대규모 정보화사업에 대한 주요사항 검토 및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임.

57) 일반회계-국가정보화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정보화)(1946-507)(정보통신정책관)

나. 검토의견

대규모 디지털전환 지원 사업은 우수 민간 전문경력직 채용을 통한 책임형기술지원센터 운영을 목표로 하였으나, 단기계약 등 열악한 채용조건으로 인하여 두 차례 공고에도 불구하고 목표 인원의 일부만 충원하는 데 그쳤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채용조건을 조정하는 등 사업설계의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자정부 업무, ISP·ISMP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며 전문성을 축적해 온 NIA의 기존 인력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의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책임형기술지원센터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하였으며, 인건비는 6명·12개월 기준으로 편성하였음.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 첫해 채용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 근무 기간 및 인력을 조정한 후 7명을 채용하는 1차 채용공고('25.3.19.~4.2.)를 진행하였으며, 지원자 미흡으로 적격자가 전무하였음.

[대규모 디지털전환 지원 사업 민간 전문경력직 채용 일정]

구분	내용	비고
2025. 3.19.	1차 공고	공고인원: 7명
2025. 4. 2.	접수	
2025. 4. 4.	선정평가	
-	1차 채용	적격자 없음
2025. 6. 9.	2차 공고	
2025. 6. 23.	접수	
2025. 6. 30.	선정평가	
2025. 7. 21.	2차 채용	채용인원: 2명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후 학력·경력·자격증·정년 등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홍보를 확대하여 진행한 2차 채용공고('25.6.9.~6.23.)에서도 2명만 채용하여 결과적으로 실집행률이 45.1%로 집계되었음.[58)]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예산	집행액	집행률	2026년도 예산	비고
인건비	766	418.9	54.7	550	·전문계약직 채용 인건비 ※2025년도 집행액에는 외부전문

58) 참고로 2026년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2026년 3월 16일 1차 공고를 통해 3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4월 20일 채용 결과 2명만 채용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예산	집행액	집행률	2026년도 예산	비고
					가 자문 및 전문기관 용역비용으로 전용한 예산 포함
용역비	-	-	-	600	·2025년 전문인력 채용 여건 고려 및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 전문기술지원 등을 위한 용역비로 예산 항목 조정
장비비	530	122.3	23.1	150	·인력 부족 등 사업 여건으로 인해 구매 예정이었던 SW 등 장비 미도입
연구비	200	100.5	50.3	200	·인력 부족분에 따른 제반 연구비 불용
기타경비	100	77.8	77.8	100	·인력 부족분에 따른 경비 불용
합계	**1,596**	**719.6**	**45.1**	**1,600**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한경쟁 채용에 따른 채용 지연, 지방근무(대구) 및 단기계약(1년) 전문직 채용 등의 한계로 적격자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동 사업은 대규모 정보화 사업 대상 전문기술 지원을 위해 민간 인력을 채용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것임에도, 지방근무·단기계약이라는 채용조건은 그와 같은 수준의 전문인력 채용에 불리한 조건으로서 요구되는 전문성 수준 대비 채용조건이 다소 적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검토가 사업기획 단계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유사 사업 기획 시 요구되는 전문성 수준에 부합하는 채용조건을 설정하고 인력 확보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설계의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17.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술개발 및 보급지원(정보화) 사업(신규): 사업비 이월액 표시 등 사업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술개발 및 보급지원(정보화)’ 사업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이용편의 제공 의무화에 따라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91억 6,6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59)]

[2025년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술개발 및 보급지원(정보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술개발 및 보급지원(정보화)	-	9,166	-	-	9,166	9,166	-	-	2,000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사업출연금을 교부하였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이를 활용하여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술개발 및 보급, 키오스크 시험평가 비용 지원, 정책지원 및 홍보 등을 수행하였음.

59) 일반회계-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술개발 및 보급지원(정보화)(1945-507)(정보통신정책관)

나. 검토의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025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술개발 및 보급지원 사업 수행 중 사업기간을 차년도까지 연장하는 협약 변경 과정에서 이월 금액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과보고서에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약 변경 시 이월 금액 표시 명확화, 결과보고서 기재 내실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술개발 및 보급지원 사업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예산을 출연하여 추진하였으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4억 6,900만원을 2026년으로 이월하였고, 이 중 12억 800만원을 집행하여 2억 6,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나타남.

이월 사유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025년 말 기준으로 제도 시행 기간이 3개월 남은 점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잔여 예산을 활용하여 정책 홍보 및 시험평가비용 지원 등을 추가로 실시하였다는 입장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술개발 및 보급지원 사업 예산 집행 및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용도별 구분	2025		2026	집행잔액
	집행	실집행	실집행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운영 지원	4,936	4,927	-	9
우선구매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 시험평가비용 지원	1,300	859	370	71
키오스크 UI 플랫폼 연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모니터링 시스템 기능 개발	800	800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개발 컨설팅	200	200	-	
검증 전문가 인건비	366	321		45
평가장 임차료 및 운영비	180	95	45	40
검증위원회 운영	300	299	-	1
추가 컨설팅・교육・홍보, 평가장 추가임차 등	100	29	51	20
무인정보단말기 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	798	0	742	56
법제 및 정책연구	186	167	-	19
합계	**9,166**	**7,697**	**1,208**	**261**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체결한 사업 협약서상 사업비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협약 변경 시 이월 금액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채 예산을 이월하여 집행하였고, 이와 같은 이월 집행 경위를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2025년도에 집행한 것으로 작성하였음.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수행계획 변경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월도 함께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나, 사업수행계획 변경 승인과 이월 승인은 협약서상 각각 별도의 조문으로 구분되어 규정된 절차이고, 전자는 사업 내용·방식의 변경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회계연도를 넘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어서 협약 변경 시에는 사업수행계획 변경 승인과 이월 승인이 구분되도록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음.[60]

특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제출한 수정 사업계획서의 집행계획에 사업기간은 수정이 되었으나 집행계획액은 2025년도 내 집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협약 변경 시 이월 예정 금액이 명확히 표시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61]

---

60) 「2025년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사업 협약서」
제5조(사업비의 관리) ④ "을"은 지급받은 사업비의 사용잔액과 사업기간내·종료후 발생한 이자수입은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 협약서와 동일한 사업의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협약의 변경) "갑"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을"로부터 요청이 있어 그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별로 사업비, 출연시기 및 사업기간 등의 협약사항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61) 2025년 배리어프리 키오스키 기술개발 및 보급지원의 월별 집행계획서

[붙임1] 사업별 자금배정 및 월별집행계획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술개발 및 보급지원 사업 자금배정 및 월별 집행계획서

□ 사업명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술개발 및 보급지원
□ 사업기간 : 2025.5.1.~2026.2.28.
□ 수행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분기별 자금배정 및 월별 집행계획서

(단위: 백만원)

자금배정		집행계획		
분기	배정금액	월	집행계획액	세부내역
2분기	396	4월	-	-
		5월	198	○ 키오스크 시험평가기관 추가지정 ○ 키오스크 접종평가장 운영
		6월	198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술개발지원 사업 등 공고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지원 대상 키오스크 검증
3분기	6,978	7월	6,587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술개발지원 사업 등 선금 지급
		8월	196	○ 전국 설명회 및 전문인력 교육 진행 ○ 사업운영비 등 집행
		9월	195	○ 사업운영비 등 집행
4분기	1,792	10월	145	○ 사업운영비 등 집행
		11월	183	○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배포 ○ 사업운영비 등 집행
		12월	1,464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술개발지원 사업 등 잔금 지급
합계	9,166	-	9,166	-

※ 분기별 자금계획 및 월별 집행계획서는 기재부의 예산 배정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수행기관이 협약 변경 시 이월 금액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고, 이월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경위 및 집행 내역을 결과보고서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검수 과정에서도 이월 집행 내역이 정확히 작성되어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8. World Best LLM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신규): 사업비 이월액 표시 등 사업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World Best LLM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은 글로벌 수준의 독자적인 AI모델의 신속한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전폭 지원하고 AI모델 간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AI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00억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62]

[2025년도 World Best LLM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World Best LLM 데이터 활용 지원	-	30,000	-	-	30,000	30,000	-	-	30,000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사업출연금을 교부하였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이를 활용하여 WBL 참가팀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확보 지원 및 AI 모델의 성능 및 안전성을 평가·검증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수행하였음.

62) 일반회계-World Best LLM 데이터 활용 지원(2602-356)(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

나. 검토의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World Best LLM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 수행 중 사업기간을 차년도까지 연장하는 협약 변경을 진행하고 수정된 사업계획서에 이월 금액을 표기하였으나 이를 결과보고서에는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결과보고서 기재 내실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World Best LLM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예산을 출연하여 추진하였으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39억 5,000만원을 2026년으로 이월하였고 이 중 31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음.

이월 사유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WBL 데이터 공동구매 추가제공을 위해 2026년 2월까지 협약을 연장하고 예산을 이월하여 집행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이와 같은 이월 집행 경위를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2025년도에 집행한 것으로 작성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에 대한 검수 과정에서 시정 조치 등을 하지 않았음.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월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경위 및 집행 내역을 결과보고서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검수 과정에서도 이월 집행 내역이 정확히 작성되어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9.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확산 사업: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주의 필요

가. 개 요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확산’ 사업은 공공분야 온디바이스AI 대규모 수요 창출을 통한 국산 AI반도체 저변 확대를 위해 신규 실증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90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63]

[2025년도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확산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AI반도체 실증 지원	24,370	98,370	-	-	98,370	98,370	-	-	113,370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확산	9,000	9,000	-	-	9,000	9,000	-	-	24,000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온디바이스 AI서비스 실증·확산 사업 예산을 2026년도 신규 사업인 AI응용제품신속상용화지원사업의 과제 기획 지원에 활용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 「국가재정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신규사업으로 AI응용제품신속상용화지원사업(이하 “A사업”이라 함)을 기획하여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동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인 2025년 11월경 해당 신규사업의 추진을 전제로 신규과제 기획위원회 운영 등을 온디바이스 AI서비스 실증·확산 사업(이하 “B사업”이라 함)의 예산을 활용하여 지원하였음.

63) 일반회계-AI반도체 실증지원(2603-311)(정보통신산업정책관)

[AI응용제품신속상용화지원사업의 신규과제 기획 관련 지출 내역]

(단위: 원)

집행일자	집행내용	집행금액
2025-11-06	AI 응용제품신속상용화지원사업과제기획위원회운영지원용역	20,000
2025-11-14	AI응용제품신속상용화과제기획위원회착수회의운영관련회의	64,900
2025-11-14	AI응용제품신속상용화과제기획위원회착수회의운영관련회의	68,500
2025-11-20	AI 응용제품신속상용화과제기획위원회1차회의	175,000
2025-11-20	AI 응용제품신속상용화과제기획위원회1차회의	31,500
2025-11-19	AI 응용제품신속상용화지원사업과제기획위원회운영지원용역선금	32,130,000
2025-12-22	AI 응용제품신속상용화지원사업과제기획위원회운영지원용역잔금	13,770,000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사업은 B사업을 통해 육성한 국내 NPU 기업들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B사업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 B사업 예산을 활용하였다는 입장임.

① 그러나 A사업은 여러 부처가 소관 분야에 AX 도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다부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B사업의 후속사업이라거나 B사업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움.[64]

② 또한 A사업의 과업 범위는 보안·네트워크·생활 분야로 구분되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생활 분야만을 담당하고 보안·네트워크 분야는 다른 기관이 담당하고 있음에도, B사업 예산으로 A사업 전반의 과제 기획을 지원한 것은 B사업과의 연관성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소관 범위를 벗어난 부분까지 B사업 예산이 활용된 것임.[65]

특히 해당 지원은 A사업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아직 추진이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의 신규과제 기획을 B사업 예산으로 선제적으로 지원한 것이어서 B사업의 과업수행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목적을 벗어난 신규사업 과제 기획에 B사업 예산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 「국가재정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66]

---

6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B사업의 기획 용역비로 국내 NPU 기업 성장 가속화를 위한 국산 NPU 활용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A사업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도 국산 NPU 확산의 중요성에 공감하여, A사업을 통해 국산 NPU 생태계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사업 공모 시 국산 NPU 활용 우대 요건을 설정하여 연관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임.

65) 보안 분야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네트워크 분야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각각 수행하고 있음.

66)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20. 최고급AI해외인재유치지원(R&D) 사업(신규): 과제 선정 지연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가. 개 요

‘최고급AI해외인재유치지원(R&D)’ 사업은 기업 등이 해외 AI 우수연구자를 유치하여 도전적 AI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우수성과를 창출하고, AI 고급인재 양성 및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AI 연구생태계 조성 기여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50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67]

[2025년도 최고급AI해외인재유치지원(R&D)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최고급AI해외인재 유치지원(R&D)	-	5,000	-	-	5,000	5,000	-	-	10,000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연구개발출연금을 교부하였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이를 활용하여 연구개발기관에 연구비를 지원하였음.

동 사업은 World Best LLM 프로젝트(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와 연계를 염두에 두고 추진된 사업으로, WBL 참가팀으로 선정되는 5개 기관에 대하여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WBL 선정팀 5개 중 1개 팀만 해외인재 유치 지원을 희망함에 따라 나머지 4개 과제는 별도의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하였음.

67) 일반회계-최고급AI해외인재유치지원(R&D)(2232-327)(소프트웨어정책관)

나. 검토의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고급AI해외인재유치지원 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선정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이 단축되었으므로,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시 이를 반영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고급AI해외인재유치지원 사업을 2025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선정된 5개 과제에 대하여 1차년도 6개월, 2차년도 12개월, 3차년도 12개월 등 총 30개월간 지원할 계획이었음.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을 통하여 WBL 프로젝트 참가팀이 필요로 하는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WBL 참가팀 중 1팀만 연계를 희망함에 따라 나머지 4개 과제는 별도의 선정 절차를 거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협약체결이 예정보다 지연되었음.

[과제별 협약체결 현황]

과제명	협약체결일	2025년 과제 수행 기간	비고
정예 연구진 결집을 통한 초거대 LLM/VLM 고도화 및 아세안 언어 확장 기술 개발	25.8.27.	5개월	WBL 참가팀 연계 과제
AI 신약개발을 위한 글로벌 AI 인재 유치	25.9.29.	4개월	
멀티 에이전트형 AI 기반 기업정보 및 지식보호 통합 플랫폼	25.9.29.	4개월	
산업 제조 설비의 자율 제어 프레임워크를 위한 Physics-Aware Physical AI	25.9.29.	4개월	
실세계 조작과 보행을 위한 멀티모달 휴머노이드 파운데이션 AI 모델 개발	25.9.29.	4개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런데 1차년도 예산은 6개월분 전액이 이미 교부되었으며, 2026년에도 12개월분 예산이 편성 및 교부되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시 1차년도 수행기간이 단축된 점을 고려하여 3차년도에 해당하는 2027년도 예산은 적정 규모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21. AI챔피언프로젝트지원사업(R&D) 사업(신규, 종료):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조정 시 협의 절차 준수 필요 등

가. 개 요

‘AI챔피언프로젝트지원사업(R&D)’ 은 AI 인재가 겨루는 도전·경쟁형 R&D를 통해 AI 원천기술 개발 및 AI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혁신기술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00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68]

[2025년도 AI챔피언프로젝트지원사업(R&D)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AI챔피언프로젝트 지원사업(R&D)	-	10,000	-	-	10,000	10,000	-	-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연구개발출연금을 교부하였으며,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사회적·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공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를 연구개발기관으로 지정하였음.[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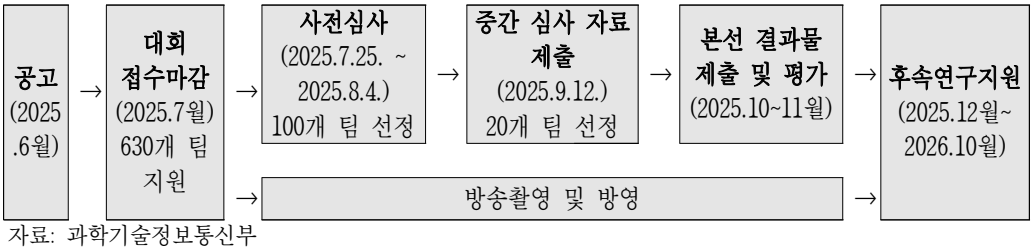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2025년 6월부터 「인공지능 챔피언 대회」를 개최하여 사전심사·중간심사 및 본선을 거쳐 11월에 5개의 수상팀을 선정하였으며, 각 수상팀에 대하여는 후속 연구개발이 지원되고 있음.

---

68) 일반회계-AI챔피언프로젝트지원사업(R&D)(2232-326)(소프트웨어정책관)

6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예고 및 공모 등)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모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4. 재난·재해, 경제여건 악화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

[AI 챔피언 프로젝트 사업 추진 경과]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검토의견

첫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근거로 공개소프트웨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정부지원비율을 100%로 조정하였는데, 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향후 과학기술혁신본부와의 협의를 거쳐 정부지원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①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②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③ 전문연구사업자가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면제할 수 있도록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음.[70]

---

7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라 한다)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게 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2.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행정규칙인「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27조 및 [별표 4] 제1호를 근거로 5개 수상팀 중 기업인 4개 팀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전액 면제하였으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별표 1] 비고 1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을 100%로 높여서 지원한 것이라는 입장임.[71)72)]

71)「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이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라 한다)의 지원기준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기준(제19조제3항 관련)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지원 비율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
다.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

비고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다. 다만,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 비율을 낮춘 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72)「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업"이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 중 해당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에 따라 개발되는 제품·장치·서비스의 구매를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개발되는 제품·장치·서비스의 성능평가·검증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27조(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기준) 장관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 지원기준과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부담기준은 영 제19조제3항 및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별표4]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제27조 관련)

그러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 1에서 명시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협의절차 없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위임을 받지도 않은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을 높인 것은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73]

또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1은 정부 지원비율의 상향 조정을 허용한 것인데, 정부 지원비율을 100%로 조정하는 것은 그 실질이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면제와 동일하며, 이를 비고 1의 조정 권한으로 허용한다면 면제 요건을 열거적으로 규정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 호가 사실상 의미를 잃게 되므로, 비고 1에 근거한 100% 지원은 제19조제2항의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면제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지원비율을 조정하는 경우 행정규칙이 아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협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음.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 또는 공기업
연도별 해당 연구개발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연도별 해당 연구개발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연도별 해당 연구개발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공개소프트웨어 과제의 경우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비율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로 지원 가능

73)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동 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을 높이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 바가 없다는 입장임.

둘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챔피언프로젝트지원사업의 수상팀에 대한 후속연구개발 지원 시 지원 규모(5억~30억원)와 연구내용이 상이한 수상팀 5개를 하나의 과제 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시키는 방식을 택하였는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에 따른 과제단위의 평가 구조상 각 팀별로 독립적·차등적 성과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챔피언프로젝트지원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챔피언 대회」를 추진하였고, 수상팀 5개팀(지원규모: A팀 30억원, B팀 12억원, C·D·E팀 각 5억원)에 대한 후속연구개발 지원을 위하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체결하였던 연구개발협약을 변경하여 수상팀 5개를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시켰음.

후속연구개발 지원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 수상팀과 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하는 방식도 있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경사업의 일정상 제약으로 인하여 협약을 신속히 체결할 필요가 있었고, 소수 인원으로 구성된 팀이 수상하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행정절차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연구팀이 후속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시키는 방식을 선택했다는 입장임.

그러나 각 수상팀이 수행하는 후속연구개발은 그 지원 규모가 최대 6배(5억원~30억원) 차이가 나고 그 내용이 각기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이들 수상팀을 하나의 과제에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시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에 따른 과제평가 시 수상팀별 성과에 대한 독립적·차등적 평가가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74]

---

7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은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려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취지, 목적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가단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평가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거나 형벌을 받은 사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한 연구개발과제나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평가단 구성 시 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 결과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일부 수상팀의 연구 성과가 부진하여 과제 전체의 평가 등급이 낮게 결정될 경우, 연구 성과가 우수한 팀도 동일한 평가 결과를 공유하게 되어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후속 연구개발 지원 시 수상팀별 성과관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과제 종료(2026년 10월 예정) 후 연구개발과제 평가 시 연구 성과가 우수한 팀이 과제 단위 평가 구조로 인하여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⑥ 제5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평가단의 구성 기준,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및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피지컬AI 핵심기술 PoC 사업(신규, 종료): 사업성과 발생 후 후속사업 기획 필요

가. 개 요

‘피지컬AI 핵심기술 PoC’ 사업은 국내 피지컬AI 기술 협업체계 구축 및 사전 실증 지원으로 글로벌 시장 신속 대응 및 피지컬AI 기술주권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426억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75][76]

[2025년도 피지컬AI 핵심기술 PoC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피지컬AI 핵심기술 PoC	-	42,600	-	-	42,600	42,600	-	-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사업출연금을 교부했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이를 활용하여 내역사업인 ‘피지컬AI 선도모델 수립 및 PoC’와 ‘PINN 모델 제조 융합데이터 수집·실증’을 각각 수행하였음.

75) 일반회계-피지컬AI 핵심기술 PoC(2233-353)(정보통신산업정책관)

76) PoC는 Proof of Concept의 약자로 아이디어 또는 기술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의미함.

나. 검토의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피지컬AI 핵심기술 PoC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성과가 발생하기도 전에 후속사업을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는데, 향후 사업성과를 충실히 확인한 후 후속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여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피지컬AI 핵심기술 PoC 사업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하였는데, 2025년 7월 25일 공고 후 8월 21일 선정평가를 거쳐 8월 29일 및 30일에 각각 2개 과제의 협약을 체결하였음.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제 협약체결 직후인 2025년 9월 3일에 동 사업의 후속사업인 ①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R&D) 사업 및 ② 인간-AI 협업형 LAM 개발·글로벌 실증(R&D) 사업을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그 전인 2025년 8월 18·27일 및 9월 2일에 해당 사업의 기획보고서 인쇄비에 예산을 집행하기도 하였음.

[2025년도 피지컬AI 핵심기술 PoC 사업 추진현황]

구분	추진일정
2025.7.25	피지컬AI 핵심기술 PoC 사업 과제 공고
2025.8.18.·27.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R&D)사업 기획보고서 인쇄
2025.8.29.·30.	피지컬AI 핵심기술 PoC 사업 과제 협약체결
2025.9.1.	피지컬AI 핵심기술 PoC 사업과제 착수
2025.9.2.	인간-AI 협업형 LAM 개발·글로벌 실증(R&D) 사업 기획보고서 인쇄
2025.9.3.	후속사업을 반영한 2026년도예산안 국회 제출
2026.1.14.	피지컬AI 핵심기술 PoC 사업 과제 결과평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의 성과가 발생하기도 전에 후속사업 기획하여 예산안에 반영한 것인데, 동 사업이 피지컬AI 분야 핵심기술에 대한 사전검증을 지원하여 본사업(후속사업)의 추진에 있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최적의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PoC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피지컬AI 핵심기술 PoC 사업과 후속사업의 연계도]

피지컬AI 핵심기술 PoC 사업		후속사업
① 피지컬AI 선도모델 수립 및 PoC		**①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R&D)**
(개념설계) 전략모델 기획 및 피지컬AI 공동 연구개발 센터, NPU 기술실증 스테이션, 피지컬 AI 실증 메타팩토리 등에 대한 개념 설계	→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운영
(플랫폼설계) 파운데이션모델 연구개발 최적 설계 및 디지털트윈 가상환경, Sim-to-Real, 협업지능 시스템 등 피지컬 AI 플랫폼 설계	→	기술 개발·검증
(인프라설계)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실증-존 인프라 설계	→	인프라 구축
(검증랩 구축) 기술 검증랩 2개소 구축	→	기술실증 테스트베드(7개 실증-존) 클러스터化
(사전 기술검증) 이기종 협업지능 피지컬AI 핵심 기반기술 개발·확산을 위한 사전 기술 검증(3개 기업)	→	기술 실증(55개 기업)을 통한 핵심기술 고도화
② PINN 모델 제조 융합데이터 수집・실증		**② 인간-AI 협업형 LAM 개발・글로벌 실증(R&D)**
(데이터플랫폼 개념설계) 데이터 정의・데이터 수집 구조 설계 및 제조기업 현장 데이터 수집(8개 기업, 294TB) 및 IT/OT 데이터 파이프라인 설계, 지식그래프 사전 설계	→	데이터수집 및 플랫폼 구축·운영
(사전 기술검증·설계) 정밀 행동제어를 위한 제조 공정별 물리데이터 분석 및 물리법칙을 적용한 PINN 모델 사전 설계, 디지털트윈 Pilot 설계	→	PINN 기반 핵심기술 및 물리지능행동모델(LAM) 개발·검증
(협력체계 구축) 로드맵·거버넌스 체계 수립	→	표준화·확산 통한 사업화추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사업 성과가 충분히 확인된 후 후속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여 예산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고, 현재 진행 중인 두 후속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이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동 사업의 성과가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3. 해외우수과학자 유치 사업: 해외우수과학자의 중도 포기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등

가. 개 요

‘해외우수과학자 유치’ 사업은 국내 산·학·연 연구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해외 우수 과학자를 국내 연구기관에 초빙하여 우수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국내 연구환경 국제화, 신성장동력 확보, 신진 연구인력 양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2025년 예산현액 439억 3,7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77]

[2025년도 해외우수과학자 유치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비비 (D)	예산현액 (A+B+C+D)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인재활용확산지원(R&D)	54,449	54,449	-	-	5,120	59,569	59,569	-	-	85,419
글로벌인재 교류・활용	48,397	48,397	-	-	5,120	53,517	53,517	-	-	65,169
해외우수과학자 유치	38,817	38,817	-	-	5,120	43,937	43,937	-	-	54,634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 연구개발출연금을 교부하면 한국연구재단이 공모를 통해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고 연구비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수행됨.

동 사업의 과제는 개인형 과제와 기관형 과제로 구분되며 개인형 과제는 다시 BrainPool(단기), BrainPool(장기), BrainPool+의 세가지 유형으로, 기관형 과제는 BrainPool(장기)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각 유형의 지원규모와 기간은 아래 표와 같음.

77) 일반회계-인재활용확산지원(R&D)(1744-412)(미래인재정책국)

[해외우수과학자 유치 사업 지원내용]

유형	개인			기관 (2025년 신규)
	BrainPool		BrainPool+	BrainPool
	단기 (2023년 종료)	장기		
초빙 대상	해외 거주 중인 박사학위 소지자 ※ 단,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로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 현지 산업체 5년 이상 경력도 인정			
지원 기간	6~12개월 ※산업체: 3~12개월 지원 가능	1년~3년	최장 10년(4+6)	최장 3년
지원 금액	최대 3.5억원 내외/년		6억 원 이내/년	3억~9억 원 이내/년
지원 내용	해외우수과학자의 인건비 및 유치경비 등		인건비, 체재비, 연구비, 기타 경비 등	해외우수과학자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연구비 자율 신청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예비비 51억 2,000만원을 배정하여 해외우수인재 유치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연구과제를 추진하였으며, 한국과학창의재단을 주관 연구개발기관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지정하였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과제를 통해 美 행정부의 연구비 삭감 및 비자비용 인상으로 인한 우수 인재의 해외 이동 검토 시 한국이 실질적인 연구·정착 선택지로 고려될 수 있도록, 2025년 10~12월까지 8차에 거쳐 4개 부처(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우주항공청) 및 대학·출연연·기업 등 총 46개 기관이 참여하여, 한인 및 외국인 연구자 총 1,627명을 대상으로 인재유치 지원 사업·채용 등 상담 부스 운영 및 정책 브리핑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

나. 검토의견

첫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외우수과학자 유치 사업의 효과 확인을 위하여 지원 대상자의 국내 잔류 여부를 계속하여 추적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우수과학자의 국내 잔류 비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사업을 통하여 해외의 우수한 과학자를 국내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에 유치함으로써 해외우수과학자와 국내 연구자간 협업을 통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해외 우수과학자의 국내 정착 유도를 통해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 사업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이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외우수과학자가 지원 종료 후에도 국내에 정착하여 활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정착하지 않은 해외우수과학자를 대상으로는 그 사유를 점검하여 사업의 내용에 환류시킬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러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2021년부터 설문조사를 통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5년부터는 조사방식을 변경하여 종료과제를 대상으로 최종보고서 제출 시 국내 잔류 계획을 첨부하도록 하였음.

[해외우수과학자 유치 사업 지원대상자 국내 잔류 현황]

(단위: 개, 명, %)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조사대상 및 방법	해외 우수 과학자 및 연구책임자 대상 설문조사					2025년 종료과제 대상 최종보고서 제출 시 연계
조사내용	과제 종료 후 해외 우수 과학자의 현 소속기관 및 직위, 현 체류국 등					국내 잔류 계획
조사기간	2021.7~8월	2022.8~10월	미실시	2024.10.16.~10.23.	▶ 방식변경	~2026.3월
대상과제 수(A)	336	429		791		81
응답자 수	133	294		421		76
국내 잔류자(B)	79	92		153		35 (국내 잔류예정자)
잔류비율(B/A)	23.5	21.4		19.3		46.0 (잔류 예정 비율)

주) 2021년 이후부터 설문조사를 통한 추적조사를 실시했고, 2023년에는 설문조사를 미실시하였음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러나 최종보고서 제출은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 1회에 한하여 이루어지므로 이후

계획에 따라 잔류가 이루어졌는지 지속적인 추적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해외우수과학자가 국내에 정착하지 않는(또는 못하는)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여 해외우수과학자가 국내에 잔류하는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둘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외우수과학자 유치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약 90%를 대학이 차지하는 등 참여기관이 학계에만 집중되고 있으므로, 산업계나 연구계가 이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지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해외우수과학자 유치 사업의 최근 10년간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유형별 분류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90%가량의 기관이 대학으로 집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해외우수과학자 유치 사업 주관연구개발기관 현황]

연도	대학	기업	연구기관	총계
2015	49개(82%)	-	11개(18%)	60개(100%)
2016	44개(88%)	1개(2%)	5개(10%)	50개(100%)
2017	41개(89%)	-	5개(11%)	46개(100%)
2018	65개(82%)	4개(5%)	10개(13%)	79개(100%)
2019	197개(90%)	4개(2%)	17개(8%)	218개(100%)
2020	140개(89%)	4개(3%)	14개(8%)	158개(100%)
2021	135개(89%)	5개(3%)	12개(8%)	152개(100%)
2022	128개(89%)	5개(3%)	11개(8%)	144개(100%)
2023	162개(88%)	8개(4%)	14개(8%)	184개(100%)
2024	106개(89%)	-	13개(11%)	119개(100%)
2025	119개(94%)	-	7개(6%)	126개(1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런데 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한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연구개발활동 수행기관수는 58,825개로 이 중 385개가 대학, 504개가 공공연구기관, 나머지 57,936개가 기업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업의 국내 대학의 참여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78)]

78) 2024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는 KOSIS 국가통계포털에서 국내통계-주제별통계-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에서 확인 가능함.

[2023년 연구개발수행기관 현황]

(단위: 개, %)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합계
504(0.9%)	385(0.7%)	57,936(98.5%)	58,825(100%)

자료:「2024년 연구개발활동조사」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대학, 연구기관, 기업 간 차별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이와 같이 차이가 발생한 것은 대학과 비교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기업의 해외인재 유치 관련 내부제도나 절차가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임.

그러나 국내 연구기관이나 기업도 연구개발의 주체로서 해외우수과학자를 유치·활용함으로써 국내 연구개발 역량 제고에 기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 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연구기관이나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셋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비비 51억 2,000만원을 배정받아 해외우수인재 유치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연구과제를 추진하였는데, 12억 6,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객관적인 인재 유치 성과 측정·검증에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적정 수준의 예비비를 신청하고 중장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예비비 51억 2,000만원을 배정받아 해외우수인재 유치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연구과제를 추진하여, 2025년 10~12월까지 8차례에 걸쳐 4개 부처(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우주항공청) 및 대학·출연연·기업 등 총 46개 기관이 참여하여 한인 및 외국인 연구자 총 1,627명을 대상으로 인재유치 지원 사업, 채용 등 상담 부스 운영, 정책 브리핑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

2025년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정산결과 교부된 51억 2,000만원의 75.3%인 38억 5,700만원만 활용되고 12억 6,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국가재정법」 제51조에 따라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규모로 예비비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과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적정 수준의 예비비를 신청할 필요가 있음.[79)80)]

---

79) 「국가재정법」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대한 소명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槪算)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이 불가능하였을 것
2. 해당 회계연도 중 시급하게 지출할 필요성이 있을 것
3. 기존에 편성된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울 것
4. 해당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할 것

[표 1] [해외우수인재 유치 및 네트워크 구축과제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과제명	기관명	국비지원	집행액	집행잔액
해외우수인재 유치 및 네트워크 구축	(주관)한국과학창의재단	3,200	1,981	1,219
	(공동)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20	1,876	44
합계		5,120	3,857	1,263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홍보가 실제 해외인재 유치로 이어진 성과에 대하여 10여 개 기관에서 전형 진행, 공동 연구, 채용 예정 등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4개 부처 및 46개 기관이 참여하고 1,627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충분히 가시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로 인한 어려움을 이유로 참여자의 채용 연계 여부를 직접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현행 성과관리 방식만으로는 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 규모에 걸맞은 실질적 성과가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하고, 참여기관에 대한 사후조사 강화 등 사업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 효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관리할 필요가 있음.

80)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와 산학연이 함께 해외 현지에서 유치 활동을 한 최초 사례로 사업 규모와 예산을 사전에 정확히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입장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 출>

24.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R&D) 사업: 연례적 이월 최소화 필요

가. 개 요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R&D)’ 사업은 의료 및 산업용 방사성동위원소의 국내 공급 안정화 및 수출을 위한 동위원소 생산 전용 원자로를 자력 설계·구축하는 한편, 최신 연구로 핵심기술을 실증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921억 2,100만원 중 1,498억 5,400만원이 집행(집행률 78.0%)되고, 422억 6,700만원이 불용되었음.[81]

[2025년도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R&D)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R&D)	192,121	192,121	-	-	192,121	149,854	-	42,267	155,500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 연구개발출연금을 교부하면, 한국연구재단은 연구개발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연구비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수행됨.

동 사업은 2012년 총사업비 2,900억원, 사업기간 2012~2016년으로 계획·착수되었으나, 사업부지 확보 문제·경주 지진(2016년 9월) 및 포항 지진(2017년 11월) 등으로 인한 건설허가 취득 지연·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및 총사업비 협의 등을 거치면서 6차례에 걸쳐 사업기간 조정이 이루어지는 등 사업이 장기간 순연되고 있음.

8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R&D)(1440-402)(미래전략기술정책관)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R&D) 사업의 사업기간 조정 현황]

구분	사업기간	총사업비	변경 사유
착수 시	2012.4.~2016.12.	2,900억원 (국비 2,500억원 지자체 400억원)	-
1차 사업기간 조정 심의 및 의결 (2014.10.)	2012.4. ~ 2018.3.	(상동)	건설허가 관련 법령개정 및 사업부지 확보 지연 등
2차 사업기간 조정 심의 및 의결 (2016.5.)	2012.4. ~ 2019.3.	(상동)	건설허가 취득 일정 지연
3차 사업기간 조정 심의 및 의결 (2019.3.)	2012.4. ~ 2019.12.	(상동)	건설허가 취득 일정 지연 ※ 2016.9월 경주지진 및 2017.11월 포항지진 발생
4차 사업기간 조정 심의 및 의결 (2019.5.)	2012.4. ~ 2023.12	4,389억원 (국비 3,989억원 지자체 400억원)	원자력안전위원회 건설허가 취득(2019.5월) 및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결과(2017.9월) 반영
5차 사업기간 조정 심의 및 의결 (2021.12.)	2012.4. ~ 2027.4	7,428억원 (국비 7,028억원 지자체 400억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2021.8월) 및 총사업비 협의 결과(2021.12월) 반영
6차 사업기간 조정 심의 및 의결 (2026.1.)	2012.4. ~ 2027.12.	8,100억원 (국비 7,685억원 지자체 415억원)	공사지연 상황 및 총사업비 협의 결과(2025.12월) 반영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검토의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 지연, 총사업비 협의조정 절차 소요, 원자력 시설 특성에 따른 설계변경 및 공정 지연 등의 사유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관리를 강화하여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업에서는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 지연, 총사업비 협의조정 절차 소요 등의 사유로 2022년 604억원, 2023년 407억 9,100만원, 2024년 199억 6,800만원의 이월이 각각 발생한 데 이어, 2025년에도 484억 3,500만원의 이월과 함께 422억 6,7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음.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 사업의 연도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2023				2024				2025			
교부액(선급금→연구원)	예산 현액	실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교부액(선급금→연구원)	예산 현액	실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교부액(선급금→연구원)	예산 현액	실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50,200	110,600	69,809	40,791	63,234	104,025	84,057	19,968	149,854	212,089	121,387	48,435

주) 2023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04억원이 포함된 금액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도 집행부진 사유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이 국내·외 유사 사례가 전무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현재까지 약 300건의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등 설계와 예산을 특정 시점에 확정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종합설계용역 계약 변경에 연동된 총사업비 조정 절차 소요, 설계변경에 따른 인허가 등 행정절차, 시공사·하도급업체 간 계약문제, 공종 간 간섭 및 부지 협소로 인한 장비 운용 제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불가피하게 이월·불용이 발생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집행 지연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상당한 규모의 이월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점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2025년에는 예산액의 47.2%가 불용되거나 최종집행단계에서 이월된 점을 고려하면 적정 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설계변경 범위 및 인허가 일정을 보다 명확히 관리하는 한편, 하도급 계약 리스크, 공종 간 간섭 등 집행 지연 요인을 사업 일정 및 예산 편성에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연례적인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세 출>

25. 3D프린팅산업 육성기반 구축 사업: 출장비 지급 시 규정 준수 필요

가. 개 요

‘3D프린팅산업 육성기반 구축’ 사업은 3D프린팅 산업육성을 위한 3D프린팅 활용·확산 지원, 전문 역량강화 및 산업 활성화 등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84억 5,9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82)]

[2025년도 3D프린팅산업 육성기반 구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3D프린팅산업 육성기반 구축	8,459	8,459	-	-	8,459	8,459	-	-	4,551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82)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3D프린팅산업 육성기반 구축(2137-301)(정보통신산업정책관)

나. 검토의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3D프린팅산업 육성기반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국외 출장 시 출장지 내 이동비를 별도 용역계약을 통해 지출하였음에도 출장자에게 일비를 전액 지급하여 NIPA 복무요령에서 정한 일비 감액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3D프린팅산업 육성기반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국의 피지컬 AI 동향 분석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획평가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합동 국외 출장을 실시하면서, 출장지 내 이동비·통역비 등 공통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사업인 국산AI반도체 기반 AX 디바이스 개발·실증 사업의 관리비 약 2,150만 원을 활용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그런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복무요령 제51조제3항은 "공용차량 또는 차량을 임차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장지 내 이동이 용역계약에 의해 제공된 차량으로 이루어진 이상 일비를 2분의 1만 지급했어야 함에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출장자 3인에게 일비 전액(총 785,400원)을 지급하였음.[83]

그에 따라 392,700원의 일비가 지급 기준 대비 초과 지급되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국외 출장 시 별도로 차량을 임차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일비 감액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84]

---

83) 「복무요령」(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내규)
제51조(여비계산) ③일비 및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계산하되, 공용차량 또는 차량을 임차하여 이용하는 경우와 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하고, 숙박비는 밤의 일수에 따라 계산하되, 항공 또는 선박 여행시에 소요되는 밤의 일수에 대한 숙박비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4)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과다 지급된 출장비(일비)는 환수하여 국고 반납 처리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과학기술진흥기금】

<지 출>

26. 연구성과스케일업 펀드 사업(신규, 종료): 주목적 투자의무비율 확대 필요

가. 개 요

‘연구성과스케일업 펀드’ 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공공기술사업화 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집중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시장 정착 및 성장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120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85]

[2025년도 연구성과스케일업 펀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연구성과스케일업 펀드	12,000	12,000	-	12,000	12,000	-	-	-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정부 출자비율을 50%로 하여 펀드 결성 목표액을 240억원으로 설정하고, 존속기간은 8년이며, 공공기술 사업화 중소 벤처기업에 약정 총액의 50% 이상을 투자할 계획임.

85) 과학기술진흥기금-연구성과스케일업 펀드(1836-407)(연구성과혁신관)

[연구성과스케일업 펀드 주요내용]

- 펀드 조성규모 : 240억원(정부 120억원, 민간 120억원 이상)
- 주목적 투자대상 및 비율 : 공공기술 사업화 중소 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50% 이상 투자
- 존속/투자기간 : 8년/4년
- 주요 내용

출자예산	결성 목표액	정부 출자비율	선정 운용사수
120억원	240억원	50%	2개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3월 21일에 계획액 120억원을 모태펀드(한국벤처투자 운용)에 출자하였고, 한국벤처투자는 2025년 3월 24일부터 4월 29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6월 30일에 운용사를 선정하였음.

[연구성과스케일업 펀드 사업 추진 현황]

사업 추진 내용	일자	비고
연구성과스케일업 펀드 모태펀드 출자	2025년 3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벤처투자
자펀드 운용사 모집공고	2025년 3월 24일 ~ 4월 29일	4개(2개 선정) 운용사가 접수
자펀드 운용사 선정	2025년 6월 30일	2개 운용사 선정
자펀드 결성	2025년 8월 12일·9월 30일	2개 자펀드 결성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검토의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성과스케일업 펀드 출자사업 공고 시 주목적 투자의무비율을 모태펀드의 출자비율과 동일한 50%로 설정하였으나, 이는 민간자금 유치를 통해 주목적 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액을 확대하려는 모태펀드 출자사업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으므로,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주목적 투자의무비율을 모태펀드 출자비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연구성과스케일업 펀드 사업을 통하여 한국벤처투자에 120억원을 출자하여 연구성과스케일업 모태펀드를 조성하였고, 이후 자펀드 운용사 모집 공고 시 자펀드의 주목적 투자의무비율을 50%로 설정하였음.

그러나 모태펀드 출자사업의 주된 취지가 민간자금 유치를 통해 주목적 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액을 확대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공공자금(모태펀드 출자금액) 외 민간자금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목적 투자의무비율을 모태펀드 출자

비율 보다는 높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 출자자는 정책이 아닌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하므로 주목적 투자의무비율을 높게 설정할수록 수익률 저조 및 회수 지연 등을 우려한 민간 출자 유인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고, 운용사 심사 시 주목적 투자의무비율을 상향하여 투자제안을 하는 경우 선정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정책 목적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입장임.

그러나 운용사 심사 시 상향 우대 방식은 공고상 의무비율에 구속력이 없어 실제 결성 비율을 보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동 사업의 선행사업인 공공기술사업화펀드 사업을 통해 결성된 공공기술사업화펀드의 경우 투자총액 대비 주목적투자액 비율이 94.8%로 집계되고 있어, 향후 유사한 사업추진 시 주목적 투자의무비율을 상향하더라도 민간 출자 유인이 크게 저해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함.

[공공기술사업화펀드 투자 현황]

(단위: 백만원, %, 2026.5.30. 기준)

구분	사업명	결성일자	결성총액 (A)	투자총액 (B)	주목적 투자액(C)	C/A	C/B
1	공공기술사업화펀드 (2021~2024)	2021-11-23	20,000	18,344	17,744	88.7	96.7
2		2022-10-31	46,000	21,049	21,049	45.8	100.0
3		2023-09-06	5,050	3,600	3,600	71.3	100.0
4		2023-09-08	8,300	7,223	6,921	83.4	95.8
5		2024-09-24	7,500	2,150	1,900	25.3	88.4
6		2024-12-06	6,740	5,471	3,605	53.5	65.9
합계			**93,590**	**57,837**	**54,819**	**58.6**	**94.8**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유사한 모태펀드 출자사업 추진 시에는 기존 모태펀드 출자 사업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자펀드의 실제 주목적 투자 실적을 참고하여 주목적 투자의무비율을 모태펀드 출자비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정보통신진흥기금】

<지 출>

27. AI 혁신펀드 사업(신규, 종료): 사업종료 후 펀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관리 필요

가. 개 요

‘AI 혁신펀드’ 사업은 AI 특화펀드를 통해 민간의 적극적 투자를 견인하고 국가 AI 혁신을 뒷받침할 도전적 스타트업·유망 AI・SaaS 기업을 발굴·육성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1,000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86]

[2025년도 AI 혁신펀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AI 혁신펀드	45,000	100,000	-	100,000	100,000	-	-	-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정부 출자비율을 50%로 하여 펀드 결성 목표액을 2,000억원으로 설정하고, 존속기간은 8년이며, 생성형 AI, AI 기반기술, AI 응용서비스 기업 등 AI 유망기술을 개발・제공하는 기업 및 AI 기술을 접목하는 SaaS 기업에 약정 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할 계획임.

[AI 혁신펀드 조성(안) 주요내용]

- 펀드 조성규모 : 2,000억원(정부 1,000억원, 민간 1,000억원 이상)
- 주목적 투자대상 및 비율 : 생성형 AI, AI기반 기술, AI 응용서비스 기업 등 AI 유망 기술을 개발・제공하는 기업 및 AI 기술을 접목・활용하는 SaaS[87] 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 존속/투자기간 : 8년/4년
- 주요 내용

86) 정보통신진흥기금-AI 혁신펀드(2602-334)(정보통신산업정책관)

구분	출자예산	결성 목표액	정부 출자비율	선정 운용사수	자조합별 최대출자액
당초 계획	450억원	900억원	50%	AI 분야 2개	300억원
				SaaS 분야 1개	300억원
추경 증액	550억원	1100억원	50%	AI분야(중형) 1개	300억원
				AI분야(대형) 2개	400억원
합계	1,000억원	2,000억원	50%	6개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3월 17일에 당초 계획액 450억원을 모태펀드(한국벤처투자 운용)에 출자하였고, 한국벤처투자는 2025년 2월 26일부터 4월 8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5월 30일 운용사를 선정하였음.

이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추가 확보된 550억원을 2025년 7월 28일에 모태펀드(한국벤처투자운용)에 출자하였고, 한국벤처투자는 2025년 5월 30일부터 7월 7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8월 28일에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하였음.

[AI 혁신펀드 사업 추진 현황]

사업 추진 내용	일자	비고
자펀드 운용사 모집공고 (본예산)	2025년 2월 26일 ~ 4월 8일	AI 분야 15개(2개 선정), SaaS 분야 3개(1개 선정)의 운용사가 접수
AI 혁신펀드 모태펀드 출자 (본예산)	2025년 3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벤처투자
자펀드 운용사 선정 (본예산)	2025년 5월 30일	3개 운용사 선정
자펀드 운용사 모집공고 (추경)	2025년 5월 30일 ~ 7월7일	중형 분야 12개(1개 선정), 대형 분야 3개(2개 선정)의 운용사가 접수
AI 혁신펀드 모태펀드 출자 (추경)	2025년 7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벤처투자
자펀드 운용사 선정 (추경)	2025년 8월 28일	3개 운용사 선정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7) SaaS(Software as a Service)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로서, 소프트웨어를 기기에 설치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및 제공 수단을 의미함.

나. 검토의견

AI 혁신펀드 사업은 자펀드 결성이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되고 있고 단년도 사업으로 종료될 예정이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펀드 결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업종료 이후에도 펀드 운용 전반에 대한 점검·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AI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AI 혁신펀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당초계획액 450억원을 출자하여 조성 예정이었던 자펀드 3개 중 2개는 2025년 11월 및 12월에 각각 결성되었으나 나머지 1개는 계획과 달리 2026년 6월 현재까지 결성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5월 30일에 운용사 선정이 완료되었으나 2025년 11월 24일 SaaS 분야 자펀드 운용사가 자금모집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펀드 결성을 포기함에 따라 추가 선정과정을 거치면서 자펀드 결성이 지연되었다는 입장임.

한국벤처투자는 추가선정을 위하여 2025년 12월 8일 자펀드 운용사 모집 공고를 진행하였고 8개 운용사가 지원하여 2026년 3월 3일 최종적으로 1개 운용사를 선정하였는데, 공고서 상 자펀드는 6월 3일까지(선정 후 3개월 이내)에 결성되어야 하나 자펀드 운용사가 펀드 확대를 위해 기한 연장을 요청하여 2026년 9월 3일까지 결성될 예정임.

한편 2026년도 예산안에 동 사업 예산이 반영되었으나 국회 심의 중 국민성장펀드와의 중복 우려 등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전액 감액되면서 단년도 사업으로 종료되었는데, 사업종료 이후에도 펀드의 운용기간인 8년 동안 운용 실적 및 투자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연된 자펀드 결성을 조속히 완료하여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투자 집행 시 국민성장펀드와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8년간의 펀드 운용 기간 전반에 걸쳐 투자 실적 및 성과에 대한 점검·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기　타】

28.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해 시정요구 120건(중복 15건 포함)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시정 6건·주의 49건·제도개선 80건이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5	48	80	15	118
예비비	-	-	1	1	-	-	2
합계	-	-	6	49	80	15	1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정요구사항 120건에 대해 93건을 조치완료(조치율 77.5%)하고 27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118	91	77.1	27
예비비	2	2	100.0	-
합계	120	93	77.5	27

국회가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면서 채택한 부대의견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회계연도 결산 관련 부대의견은 아래와 같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2025년도 예산안 등 부대의견]

구분	부대의견
2025년도 제2회 추경	(6) 정부는 광주 AX 실증밸리 조성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주도의 자펀드 결성 시 시장의 효율적인 자본 배분을 위해 정부 출자 비율을 관리하고 운용사 평가·검증 절차와 투자 실패 시 사후 관리 장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한다.
2026년도 본예산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사업의 분리발주 및불공정한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외부 전문가 위원회를구성하여 철저하게 규명하고, 향후 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미 공동협력연구 등 글로벌연구협력 추진과정에서, 국제협력 법령 미비로 인한 절차상 혼선을 연구자의 책임으로전가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회계연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685억 4,500만원(△10.2%)이 적은 6,011억 8,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4억 1,400만원(△3.7%)이 감소됨.[1)]

[2025회계연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30,844	30,844	8,075	△22,769	30,951	30,951	3,841	△27,110	△4,234
기 금	664,323	626,731	616,523	△10,208	638,778	638,778	597,343	△41,435	△19,180
총수입	695,167	657,575	624,598	△32,977	669,729	669,729	601,184	△68,545	△23,414

문의: 02-6788-5698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5회계연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3억 6,300만원(△0.1%)이 적은 2,681억 5,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6억 7,200만원(7.3%)이 증가됨.

[2025회계연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49,118	49,118	48,006	△1,112	48,738	48,738	49,470	732	1,464
기 금	201,142	201,142	200,478	△664	219,191	219,781	218,686	△1,095	18,208
총지출	250,260	250,260	248,484	△1,776	267,929	268,519	268,156	△363	19,672

나.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309억 5,100만원으로, 811억 9,1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38억 4,100만원이 수납(수납률 4.7%)되고, 760억 3,800만원은 미수납되어 13억 1,3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30,951	30,951	-	30,951	81,191	3,841	76,038	1,313
합 계	30,951	30,951	-	30,951	81,191	3,841	76,038	1,313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504억 5,700만원으로, 494억 7,0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0%)되고 1억 5,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8억 3,6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48,738	48,738	317	1,402	-	50,457	49,470	151	836
합 계	48,738	48,738	317	1,402	-	50,457	49,470	151	836

주) 총계 기준

다. 기금 결산

2025회계연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8,804억 5,000만원으로, 1조 7,825억 9,6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조 7,789억 8,6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8%)되고, 36억 1,0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5회계연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입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				
방송통신발전기금	870,450	880,450	1,782,596	1,778,986	3,610	-
합 계	870,450	880,450	1,782,596	1,778,986	3,610	-

주) 수납액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전체 금액이며, 총계 기준으로 작성

2025회계연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2,197억 8,100만원으로, 2,186억 8,600만원이 지출(집행률 99.5%)되고 10억 9,5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방송통신발전기금	870,450	880,450	-	880,450	817,977	-	1,739
(방미통위 소관)	219,191	219,781	-	219,781	218,686	-	1,095
합 계	219,191	219,781	-	219,781	218,686	-	1,095

주) 합계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사업 금액

라. 재무결산

2025회계연도 말 기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산은 전년 대비 6억 4,200만원이 감소된 37억 9,000만원으로, 이는 금융자산이 10억 9,700만원, 기타자산이 5,600만원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무형자산이 5억 1,200만원 증가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6,100만원 증가된 1억 2,300만원으로 차입부채 6,100만원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7억 300만원이 감소된 36억 6,700만원임.

2025회계연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159억 5,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2,200만원 증가되었으며, 재정운영결과는 555억 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600만원 감소됨.

[2025회계연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 (A)	2024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3,790	4,432	△642	△14.5
		금융자산	1,512	2,609	△1,097	△42.0
		유무형자산	2,249	1,737	512	29.5
		기타자산	29	85	△56	△65.9
	부 채		123	62	61	98.4
		차입부채	123	62	61	98.4
		충당부채	-	-	-	-
		기타부채	-	-	-	-
	순자산		3,667	4,370	△703	△16.1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15,959	14,637	1,322	9.0
	재정운영순원가		55,514	55,650	△136	△0.2
	재정운영결과		55,514	55,650	△136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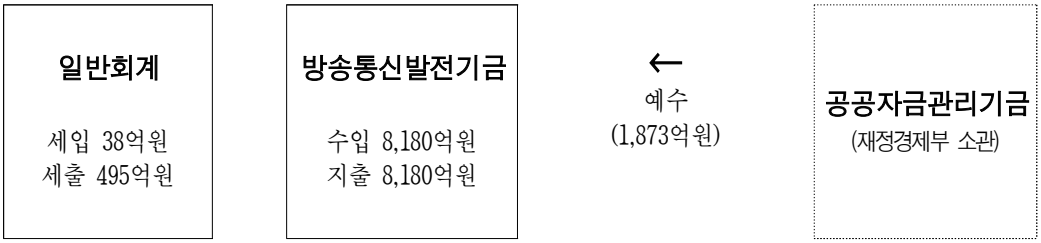
주) 2024년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무제표를 활용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2025회계연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재정은 일반회계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1,873억원이 예수되었음.

[2025회계연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정흐름도]



주 1)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관리 기금으로 지출액 8,180억원 중 사업비는 7,368억원이며, 이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사업비는 2,187억원임
2) 총계 기준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의 초석 마련을 위해 ①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②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③ 국민 중심의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총 74개 세부사업에서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 등을 수행하였음.

2025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다수의 사업을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해당 사업을 국가가 직접 수행하거나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사업의 내용과 수행 방식 간 불일치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둘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세입항목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불법스팸 관련 과태료 등의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세입 실적이 저조하므로, 장기미수납 채권에 대한 독촉 및 압류·추심 등을 통해 수납률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셋째, WBL 차세대 데이터 구축사업의 보조사업자인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실적보고서 작성 시 연내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2026년으로 이월 집행한 금액을 이월액에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 작성 시 이월 금액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넷째,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 구축이 발주 과정에서의 차종 변경, 제조사의 공장 가동 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 대비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으므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나눔버스 구축이 예정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디지털콘텐츠 코리아펀드 사업의 2025년도 예산을 활용한 모펀드 결성 시 민간 출자자 모집에 실패하였고, 이후 자펀드 결성도 연내 완료되지 않아 투자 개시가 2026년 6월 이후로 지연되면서 정부재정의 민간투자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펀드 결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민간경상보조 사업 총괄: 국가사무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지양 필요

가. 개 요

2025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총 42개 세부사업, 예산현액 2,351억 4,000만원 중 2,341억 2,000만원을 교부하였고, 보조사업자는 2,288억 4,500만원을 실집행하여 62억 9,5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음.

[2025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민간보조사업 결산]

(단위: 개, 백만원)

세부사업 수	예산현액(A)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조사업자 교부액	실집행액(B)	정산잔액 (A-B)
42	235,140	234,120	228,845	6,295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나. 검토의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다수의 사업을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해당 사업을 국가가 직접 수행하거나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사업의 내용과 수행 방식 간 불일치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금을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사무를 보조금(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지원하면 사업의 내용과 수행 방식 간 괴리가 발생하게 됨.

그런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5년 수행한 사업 중 그 사무의 성격이 국가사무임에도 보조사업으로 수행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음.

[국가사무를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추진 중인 사업 현황]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국가사무인 이유
재난방송 운영지원	재난방송 종합상황실 운영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재난방송 점검 및 송출 요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이 표에서 “방미통위”라 함)의 사무로 규정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의무지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용자 업무 평가는 방미통위의 사무로 규정
	통신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통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에 따른 통신분쟁조정제도는 국가가 직접 운영 중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	위치정보의 안전한 활용지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신고·보호조치 등 법령 이행을 지원하고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국가사무에 해당
클린인터넷 이용환경조성	클린인터넷서비스 환경조성	·청소년 보호조치 이행여부 상시점검을 포함하고 있어 이 부분은 국가사무에 해당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경험적 근거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정책네트워크 구성·운영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정책개발 지능정보사회 플랫폼 자율규제 활성화	·의제 발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연구반 운영 등 실질적 업무 내용이 방미통위의 이용자보호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국가사무에 해당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마련	부가통신사업자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	·부가통신사업자의 의무이행 점검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국가사무에 해당
인터넷 이용자보호 지원	인터넷 피해 상담센터 구축 운영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피해 해결 지원을 위한 것으로 국가사무에 해당
미디어다양성증진	시청점유율 조사 시청점유율 조사 분석 및 검증 등	·시청점유율 조사·산정 결과가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재허가 심사 및 조치명령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국가사무에 해당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방송법」 제35조의5제5항에서 방미통위의 사무로 규정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반구축	모니터링 분석시스템 구축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운영	·방송사업자의 의무준수 여부를 상시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것으로 국가사무에 해당
방송시장 상생환경 조성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외주제작 제도 점검 지원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점검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하여 국가사무에 해당
방송평가 기반조성	방송내용·편성·운영 영향평가 방송콘텐츠 경쟁력 평가 KI 시청자 평가지수 조사	·방송사업자의 방송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사무에 해당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국가사무인 이유
방송정보 활용기반 체계화	방송 통계포털 통합정보체계 구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통계작성 및 관리의 주체를 방미통위로 규정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북한 방송통신 이용실태 조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북한의 방송통신 조사·연구는 방미통위의 사무로 규정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	방송통신시장 서비스분야별 시장모니터링 실시	·방송통신시장 내 불공정 영업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것으로 국가사무에 해당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	모바일 앱 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보호	·모바일 앱 시장 내 사업자 의무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정책수립 및 법적 후속조치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사무에 해당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	인터넷 불편광고 금지행위 모니터링	·인터넷 불편 광고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정책수립 및 법적 후속조치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사무에 해당
방송시장불공정행위 조사지원	중소방송사업자 대상 공정경쟁실태 서면조사	·중소방송사업자의 공정경쟁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정책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사무에 해당
	불공정행위 행태개선	·방송시장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그 결과를 정책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사무에 해당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출자료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각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것에 대하여 다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민간경상보조 방식의 적절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확인됨.

첫째, 일부 사업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해당 사무가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민간경상보조 방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① 예를 들어 통신분쟁조정제도 운영 사업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에 따른 통신분쟁조정을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이용자에게 분쟁조정 신청 방법, 조정 절차 및 시스템 이용 방법 안내 등을 담당하는 상담센터 운영 및 지원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통신분쟁조정제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국가사무에 부합하며, 근거 조문도 문언상 제도의 운영 주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사무로 보아야 함.[2)]

2)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
2.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분쟁
3.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이용,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이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분쟁조정사건 처리 등 핵심 업무는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상담센터 운영 및 지원시스템 유지보수 등 부수적 업무를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으로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에는 인력과 행정력에 한계가 있어 민간경상보조 방식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국가사무에 필요한 부수적 업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민간사무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인력·행정력의 한계는 민간 위탁 방식으로 해소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사업수행방식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

② 또한 방송시장 상생환경 조성 사업의 내역사업인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사업 및 외주제작 제도 점검 지원 사업의 경우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점검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하여 국가사무에 해당함.

이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해당 사무는 국가사무임을 인정하면서도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방송사-제작사 간 거래와 관련한 계약서 등을 검토하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임,

그러나 계약서 등 민감자료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민간경상보조 방식이 정당화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민감자료를 민간보조사업자가 취급하는 현행 방식이 정보보호 측면에서 더 취약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직접 수행하거나 중립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는 방식으로도 동일한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둘째, 일부 사업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해당 사업의 내용이 국가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설득력이 떨어짐.

① 예를 들어 방송통신시장 서비스분야별 시장모니터링 실시 사업의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통신시장 내 불공정행위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 개선 노력 촉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민간경상보조가 적절하다는 입장이나, 민간의 자율규제를 장려하더라도 불공정행위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조치를 하는 것은 그 내용이나 법률 문언상 국가의 사무에 해당함.[3)]

---

4. 전기통신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분쟁
5.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
6.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분쟁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5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 5. (생략)

② 또한 부가통신사업자 불법유해정보차단기반 마련 사업의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법촬영물 유통방지가 민간사업자의 법적 의무이므로 이를 지원하는 사업은 민간사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나, 해당 사업에는 민간사업자의 법령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상시점검도 포함되어 민간의 의무이행을 지원하는 것과 이를 점검하는 국가사무가 혼재되어 있는데, 점검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가사무로 보아야 함.[4)]

따라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추진 중인 사업 중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사업을 국가가 직접 수행하거나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위탁 근거 법령이 없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3)「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3(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①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사업자를 차별하는 등 부당하게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급을 거절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신고를 받거나 이를 인지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내용을 포함하여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⑧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7항의 시책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유통 실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8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4)「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①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 · 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제3항에 따른 기록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 ·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운영 · 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조치의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

【일반회계】

<세 입>

2. 벌금 및 과료, 과태료, 가산금 등 일반회계 세입의 징수실적 지속 개선 필요

가. 개 요

‘벌금 및 과료’ 는 2010년 이전까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 함)」 상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불법스팸) 전송 제한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액으로, 2025년도 징수결정액 127억 7,600만원 중 5,700만원이 수납(수납률 0.45%)되고, 124억 9,400만원은 미수납되어 2억 2,500만원이 불납결손처리되었음.[5)]

‘과태료’ 는 「정보통신망법」 상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불법스팸) 전송 제한의무 위반, 전기통신사업자들의 위법행위, 「방송법」 위법행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액으로, 2025년도 징수결정액 379억 1,000만원 중 27억 6,600만원이 수납(수납률 7.3%)되고, 345억 5,800만원은 미수납되어 5억 8,600만원이 불납결손처리되었음.[6)]

‘가산금’ 은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 및 과징금 등에 대하여 법에 정한 비율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2025년도 징수결정액 292억 5,000만원 중 1억 7,800만원이 수납(수납률 0.61%)되고, 285억 6,900만원은 미수납되어 5억 300만원이 불납결손처리되었음.[7)]

---

5) 세입목명 : 벌금 및 과료(56-561)(기획조정관)

6) 세입목명 : 과태료(56-563)(기획조정관)

7) 세입목명 : 가산금(58-581)(기획조정관)

[2025년도 벌금 및 과료, 과태료, 가산금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 (A)						
벌금 및 과료	6	6	12,776	57	12,494	225	0.45	6
과태료	4,077	4,077	37,910	2,766	34,558	586	7.3	4,142
가산금	180	180	29,250	178	28,569	503	0.61	201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한편 2025년 총 미수납액(756억 2,100만원)의 98.8%인 747억 2,400만원은 불법스팸 전송 제한의무 위반자에게 부과된 것으로, 수입항목별 미수납액 비중은 벌금 및 과료 99.8%, 과태료 98.1%, 가산금 99.2%임.

[2025년 미수납액 중 불법스팸 전송 제한의무 위반 관련 미수납액]

(단위: 백만원, %)

구분	미수납액(A)	불법스팸 관련 미수납액(B)	비중(B/A)
벌금 및 과료	12,494	12,464	99.8
과태료	34,558	33,912	98.1
가산금	28,569	28,348	99.2
계	75,621	74,724	98.8

나. 검토의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세입항목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불법스팸 관련 과태료 등의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수납 실적이 저조하므로, 장기 미수납 채권에 대한 독촉 및 압류·추심 등을 통해 수납률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5년 말 기준 불법스팸 관련 미수납액 747억 2,400만원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되고 있는 장기 부실채권은 총 590억 8,400만원으로 79.1%를 차지하고 있고, 5~10년 기간으로 체납되고 있는 부실채권도 113억 6,800만원으로 15.2%임.

[불법스팸 관련 미수납액의 체납기간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10년 이상 (~'15.12월)	5년~10년 ('16.1월~'20.12월)	5년 이내 ('21.1월~'25.12월)	합 계
벌금및과료	12,464	-	-	12,464
과태료	23,401	7,079	3,432	33,912
가산금	23,219	4,289	840	28,348
합계	59,084 (79.1%)	11,368 (15.2%)	4,272 (5.7%)	74,724

자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관련 과태료 등 징수업무를 2018년 9월 방송통신사무소 신설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이관받을 당시부터 미수납액이 많았고, 미수납액이 대부분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부실채권인 사유로 징수에 어려움은 있으나 업무 이관 이후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높은 징수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임.[8)9)]

그러나 전체적인 과태료 등 수납실적이 낮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위법 및 불법행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앙전파관리소)에서 방통위에 이관(2018.9.28.)한 미수납액

(단위: 백만원)

계	벌금 및 과료	과태료	가산금
107,529	45,264	45,726	16,539

자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9) 2020~2025년 최근 6년간 당해연도 발생한 불법스팸 관련 과태료에 대한 징수율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당해년도 징수율 (당해연도징수액 /징수결정액)	57.5% (23억원 /40억원)	68.8% (25.1억원 /36.5억원)	67.9% (23.3억원 /34.3억원)	66.0% (24.5억원 /37.1억원)	71.6% (17.4억원 /24.3억원)	71.3% (18.4억원 /25.8억원)

자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에 부과되는 행정질서벌로서의 의무이행 유도가 어려워질 수 있고, 과태료의 미수납 기간이 길어질 경우 불납결손으로 처리되어 회수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장기채권의 지속적인 독촉 및 압류·추심 등의 적극적 노력을 통해 수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10]

10)「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결손처분)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는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5(결손처분) ① 법 제2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가 행방불명되어 「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는 등 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 출>

3. WBL 차세대 데이터 구축 사업: 실적보고서 작성 시 이월액 기재 필요

가. 개 요

‘WBL 차세대 데이터 구축’ 사업은 영상 등을 자동 생성하는 한국형 AI 모델 개발 기반 마련을 위해 국내 방송 영상 자료를 AI 학습용 데이터로 구축, 방송영상 데이터 활용 체계 마련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00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11][12]

[2025년도 WBL 차세대 데이터 구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WBL 차세대 데이터 구축 사업	-	20,000	-	-	20,000	20,000	-	-	-

주 1)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 동 사업은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된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집행내역을 포함하여 작성함

동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조사업자인 한국전파진흥협회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한국전파진흥협회는 방송미디어 제작 환경을 AI 기반으로 혁신하기 위해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방송미디어 분야 특화 AI 모델 개발 등에 활용하도록 관련 데이터 구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음.

참고로 구축된 데이터를 World Best LLM 프로젝트 참가팀이 요청할 경우 비상업적 활용을 전제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중임.

이후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사업으로 이관되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업의 관리를 맡고 있음.

---

11) 일반회계-WBL 차세대 데이터 구축(2602-356)(방송미디어진흥국)

12) WBL은 World Best LLM의 약자로 정부에서 개발 중인 한국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지칭함.

나. 검토의견

첫째, WBL 차세대 데이터 구축사업의 보조사업자인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실적보고서 작성 시 연내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2026년으로 이월 집행한 금액을 이월액에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 작성 시 이월 금액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국전파진흥협회는 WBL 차세대 데이터 구축사업의 보조사업자로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에 따른 이월승인 절차를 거쳐 교부받은 국비 10억 4,000만원을 2026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하였음.[13)]

그런데 한국전파진흥협회는 '2025년도 보조사업 최종실적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차년도에 집행된 금액을 이월액으로 기재하지 않고 2025년도 실집행액에 포함하여 보고하였음.

이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출원인행위가 2025년도에 완료되었으나 단순히 지출 시기가 차년도인 금액의 경우 통상적으로 집행액(실집행액)에 포함하여 최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왔고, e-나라도움 시스템 및 회계감사보고서상 차기 이월액이 "0"으로 표시되어 있어 이와 연계하여 작성한 것으로, 총괄표상 이월액은 회기 변경을 통해 차년도 예산액과 합산되어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장하는 지출원인행위의 완료는 「보조사업 실적보

---

13)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월을 위해서는 보조사업자는 해당연도 교부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중 이월이 필요한 금액 및 반납금액을 포함한 이월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연도 말까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의 이월 승인 시 제17조제2항을 준용하여 이월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⑥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5조제3호 단서에 따라 용역의 제공, 계약의 이행 등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같은 조 제8호에서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출액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면서 최종보고서 인쇄비와 검증수수료만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함.[14)]

따라서 연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관련 비용을 이월하여 집행한 경우에는 이월액으로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월된 금액 중 일반용역비 1,490만원은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통합 성과관리・확산지원 용역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월된 것으로, 동 계약은 그 기간이 2025년 12월 11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이고 결과보고서 제출이 2026년 1월, 이에 대한 검수는 2026년 2월에 각각 이루어져 2025년도에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음.

특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월 승인 절차를 직접 처리한 주체로서 이와 같은 이월이 지출원인행위의 완료 없이 이루어진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e-나라도움 시스템상 표시를 그대로 따라 이월액을 0원으로 기재한 실적보고서에 대해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이유로 정당화되기 어려움.[15)]

또한 실제 이월이 발생한 금액이 당해연도 집행액에 포함되어 보고되는 경우 국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이월 사실 및 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결산심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작성 시 이월액이 명확히 표시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14)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5조(보조사업비의 불인정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비 지출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해당 사업기한 종료 후 집행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기한 내에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정상적으로 보조사업비가 집행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재화의 입고, 용역의 제공, 계약의 이행 등은 사업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6. 보조사업비의 변경 및 이월 등 중앙관서의 장 등의 승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
8. 해당 사업기한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최종보고서 인쇄비, 검증수수료를 제외한다) 또는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지 않고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15) 참고로 e-나라도움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재정정보원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민간인 경우 e-나라도움시스템상 이월액은 실제 이월여부와 무관하게 0원으로 표기됨.

둘째, WBL 차세대 데이터 구축 사업은 구축된 데이터와 WBL 참가팀 간 연계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데이터 공개 플랫폼이 부재하여 데이터 확산에 한계가 있으므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Hub 활용을 검토하는 등 유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력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WBL 차세대 데이터 구축 사업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으로 신설되어 WBL 프로젝트 참가팀에 방송 분야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음.

그러나 2025년 10월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동 사업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으로 이관되었으므로, 동 사업을 통해 확보된 방송 분야 데이터를 WBL 참가팀의 수요와 매칭하기 위해서는 WBL 프로젝트 참가팀 선정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러 사업을 통해 구축된 AI 데이터를 일반에 공개하는 플랫폼으로 AI-Hub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에 상응하는 데이터 공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WBL 차세대 데이터 구축 사업을 통해 확보된 방송 분야 데이터 중 일반에 공개 가능한 데이터를 확산시킬 창구가 부재한 상황임.

따라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동 사업을 통해 구축된 방송 분야 데이터가 WBL 참가팀의 수요에 맞게 제공·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공개 가능한 데이터 확산을 위해 AI-Hub 활용을 검토하는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음.[16)]

16) 이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를 거쳐 일부 데이터를 AI HUB에 제공 하였으며(2026.5월) 향후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방송통신발전기금】

<지 출>

4.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사업: 나눔버스 도입 추가 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시청자권익증진 인프라 운영’ 사업은 지역적 격차없는 시청자 권익증진 기반 제공과 시청자의 방송참여, 미디어교육 접근을 위해 시청자미디어센터 등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10억 9,7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17]

[2025년도 시청자권익증진 인프라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22,433	22,433	-	22,433	22,418	-	15	21,363
시청자권익증진 인프라 운영	1,097	1,097	-	1,097	1,097	-	-	3,046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전 국민 대상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교육, 시청자 권익보호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동 사업을 통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는데, 2025년 교부현액 10억 9,700만원 중 8억 8,800만원이 집행되고 2억 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700만원이 불용되었음.

17) 방송통신발전기금-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3133-303)(방송정책국)

[2025년도 시청자권익증진 인프라 운영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A)	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1,097	-	1,097	888	202	7	81.0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나. 검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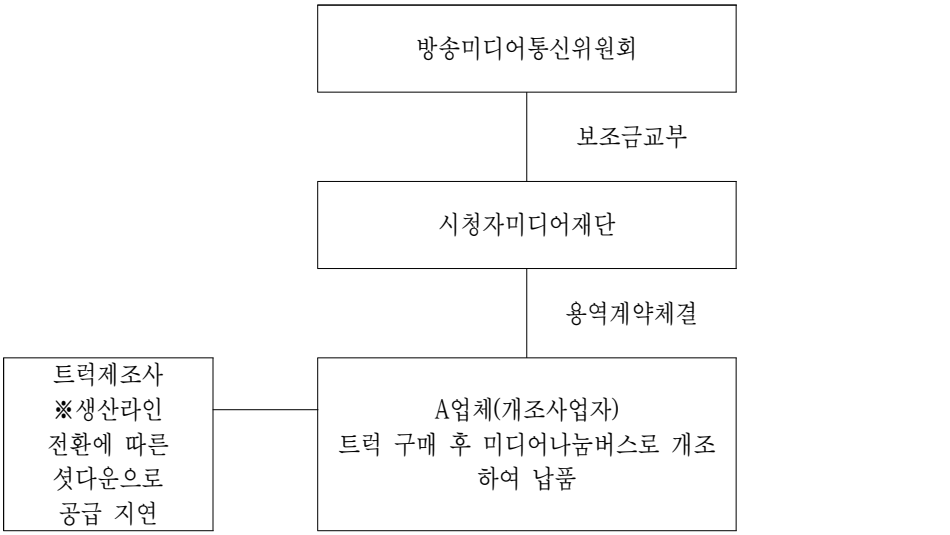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 구축이 발주 과정에서의 차종 변경, 제조사의 공장 가동 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 대비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으므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나눔버스 구축이 예정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예산을 보조하여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에 소외된 계층 및 지역에 미디어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구축·운영하는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2024년 말까지 총 8대의 나눔버스를 운영 중이었으나 일부 버스는 장애인의 이용이 어려워 2025년에는 장애인도 이용가능한 나눔버스 2대를 추가 구축할 계획이었음.

이를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장애인·비장애인 구분없이 이용 가능한 유니버셜 디자인의 저상형 전기버스로 미디어나눔버스 차량 제작을 추진(’25.6월) 하였으나, 중도에 저상형 전기버스는 운수사업자만 운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보조사업자인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운용할 수 있는 트럭으로 차종을 수정하고 장애인용 리프트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변경(’25.9월)하여 재입찰을 진행하였음.

이후 2025년 11월 17일 트럭제조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미디어나눔버스 구축에 착수하였으나 개조대상 트럭을 제조하는 제조사(현대차)의 생산 공장 중단으로 인하여 나눔버스 구축이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디어나눔버스 구축 예산 7억원의 28.9%인 2억 200만원이 이월되기도 하였음.

[미디어나눔버스 납품 현황]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히 2호차 나눔버스의 경우 2026년 12월까지 구축 예정인데, 시청자미디어재단은 현재 채용 공고를 통해 8월 1일 운영 개시를 전제로 운전직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어서 나눔버스 구축 일정이 계획대로 이행되더라도 인력 유휴에 따른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나눔버스 구축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18]

[나눔버스 차량별 제작 일정]

구분	계약	선금지급	차량확보	차량개조	차량 납품	검수	잔금지급
1호차	2025.11.17.	2025.11.28.	2025.12.3.	2025.12.8. ~ 2026.5.26.	2026.6.	2026.6.	2026.12.
2호차			2026.8월 중 (예상)	2026.8. ~ 2026.12.	2026.12.	2026.12.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8) 시청자미디어재단 공고 제2026-02호(2026.04.24.)을 참고함

5.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사업: 조정의 법정기한 준수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가. 개 요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사업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의 심의 등 법정직무 수행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145억 4,5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19)]

[2025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14,545	14,545	-	14,545	14,545	-	-	14,819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정 절차의 법정기한(14일) 초과 처리 비율 및 평균 처리기간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조정 신청 건수 증가 및 사건 복잡성 심화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한 대응 및 중재위원 위촉 지연 시 공백 방지를 위한 임기 특례 규정 도입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조정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3년 이후 해당 법정기한을 초과하여 처리되는 조정사건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평균 처리기간 역시 늘어나는 추세임.[20)]

---

19) 방송통신발전기금-언론중재위원회 지원(3132-309)(방송기반국)

2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조정신청) ① 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사건 처리 현황(2021~ 2025년)]

(단위: 건)

연도	조정사건 수	14일 초과 사건 수	14일 초과 사건 비율	평균처리 기간
2021	4,278	2,439	57.0%	17.9일
2022	3,175	1,288	40.6%	14.8일
2023	4,085	2,706	66.2%	21.5일
2024	3,937	2,760	70.1%	25.7일
2025	4,026	3,027	75.2%	28.7일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정 시점인 2005년 883건이었던 조정 신청 건수가 2025년에는 4,026건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조정 대상 매체 범위의 확대와 개별 사건의 복잡성 심화로 물리적 처리역량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가중된 데 따른 구조적 문제라는 입장임.

여기에 더하여 2025년에는 기존 중재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새로운 중재위원의 위촉이 지연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조정사건 처리 인력이 부족해짐에 따라 법정기한 초과 처리 비율과 평균 처리기간이 증가한 측면도 있음.

[2025년 언론중재위원 변동 현황]

(단위: 명)

변동 일자	2025.1.1.	2025.1.8.	2025.2.10.	2025.2.17.	2025.2.21.	2025.2.24.
총원	66	65	58	67	66	65
변동 사유	-	중재위원 사퇴	중재위원 사퇴	중재위원 위촉	중재위원 사퇴	중재위원 사퇴
변동 일자	2025.3.1.	2025.3.31.	2025.6.1.	2025.11.17.	2025.11.22.	2025.12.1.
총원	63	73	72	90	89	89
변동 사유	중재위원 사퇴	중재위원 위촉	중재위원 사퇴	중재위원 위촉	중재위원 사퇴	중재위원 사퇴 및 위촉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중재위원 위촉이 장기간 지연된다면 조정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임기가 만료된 중재위원이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조정) ②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는 등 중재위원 위촉 지연에 대비한 방안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구조적 요인에 따른 법정기한 초과 문제는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소될 필요가 있으므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언론중재위원회와 협의를 통하여 사건 유형별 처리 절차 효율화 등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21]

21) 이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도개선에 따르는 예산지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역할이나,「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이므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직접 제도개선 협의의 주체가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임.

6. 디지털콘텐츠 코리아 펀드 사업: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한 자펀드 결성 및 투자개시 필요

가. 개 요

‘디지털콘텐츠 코리아 펀드’ 사업은 글로벌 경쟁력 있는 콘텐츠·미디어 제작을 위해 투자제약이 적은 새로운 민간 중심의 콘텐츠·미디어 전용 펀드를 조성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50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22]

[2025년도 디지털콘텐츠 코리아 펀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디지털콘텐츠 코리아 펀드	5,000	5,000	-	5,000	5,000	-	-	500

주) 2026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디지털콘텐츠 코리아펀드 사업의 2025년도 예산을 활용한 모펀드 결성 시 민간 출자자 모집에 실패하였고, 이후 자펀드 결성도 연내 완료되지 않아 투자 개시가 2026년 6월 이후로 지연되면서 정부재정의 민간투자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펀드 결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디지털콘텐츠 코리아펀드 사업은 국내 콘텐츠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년간 각각 950억원 및 550억원을 출자하여 총 1,500억원의 국비를 투입하고 민간 매칭을 통해 약 1조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하려는 계획으로 추진되었으나, 2024년도 예산을 활용한 모펀드 결성 및 자펀드 운용사 선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본격적인 투자는 2025년 말이 되어서야 이루어졌음.[23]

---

22) 방송통신발전기금-디지털콘텐츠 코리아 펀드(1131-308)(방송미디어진흥국)

23) 2025년 10월1일 부터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되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동 사업을 수행 중임.

[2024년 예산을 활용한 IP확보 분야 자펀드 결성 일정]

사업 추진 내용	일정
모펀드 결성	2024년 11월 28일
자펀드 운용사 모집공고	2025년 2월 12일
자펀드 운용사 선정	2025년 4월 10일
자펀드 운용사 모집 재공고	2025년 5월 2일
자펀드 운용사 추가 선정	2025년 6월 17일
자펀드 결성	2025년 12월31일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4년 예산을 활용한 기술심화 분야 자펀드 결성 일정]

사업 추진 내용	일정
모펀드 결성	2024년 11월 28일
자펀드 운용사 모집공고	2025년 2월 12일
자펀드 운용사 모집 재공고	2025년 4월 16일
자펀드 운용사 선정	2025년 5월 27일
자펀드 결성	2025년 10월31일, 12월 31일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편 2025년도 예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50억원, 문화체육관광부 150억원, 합계 200억원)을 활용하여 추가 모펀드 결성이 추진되었으나, 2025년 4월부터 9월까지 투자자 및 정책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민간 출자자 모집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음에도 민간시장 위축으로 민간 출자자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정부예산만으로 모펀드를 결성하기로 결정되었고 2025년 9월 26일 모펀드 결성이 완료되었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모펀드 조성 시 민간출자자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당초 계획과 달리 정부재정 투입을 통한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향후 펀드 조성 시에는 민간 출자자 확보를 위한 사전 수요조사 및 시장 여건 분석을 충실히 실시하고, 적정한 사업 설계를 통해 정부재정의 마중물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모펀드 조성 이후 자펀드 운용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여 2025년 12월 29일 선정을 완료하였으나, 자펀드 운용사 선정 이후 6개월 이상의 자펀드 결성 기간이 부여됨에 따라 이른 시일 내 조합 결성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2026년 6월 이후에야 실제 투자가 개시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2025년도 예산의 투입효과가 2026년 하반기 이후에야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2024년도 예산을 활용한 자펀드의 경우에도 결성이 지연되면서 본격적인 투자가 2025년 말에야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자펀드 결성 및 투자개시가 지연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음.

[자펀드 운용사 선정 현황]

(단위: 억원, 개, 2026.5.29.기준)

지원 분야			모펀드		지정 출자	모펀드 출자 비율	목표 금액	결성 금액	운용사 수	비고
			재정	비재정	산은					
1호	블라인드 펀드	IP 확보	100	150	-	40% 이내	630	630	1	결성 완료
			160	240	-	40% 이내	1,000	905	1	결성 완료
		기술 심화	160	40	200	40% 이내	1,000	1,055	2	결성 완료
	프로젝트 펀드	1차	280	20	-	40% 이내	740	260	2개 이상주2)	추가선정·결성중
		2차	100	150	-	40% 이내	630	110	1개 이상주3)	추가선정·결성중
소계			800	600	200	40% 이내	4,000	2,960	7개 이상	-
2호	블라인드 펀드	IP 확보 및 기술 심화	200	-	-	40% 이내	500	-	1	결성중
합계			1,000	600	200	40% 이내	4,500	2,960	8개 이상	-

주1) 블라인드 펀드의 주목적 투자 비율은 50% 임
2) 현재 2개펀드 결성하였으나 잔여재원으로 추가 선정·결성 진행중
3) 현재 1개펀드 결성하였으나 잔여재원으로 추가 선정·결성 진행중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따라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5년 예산을 활용하여 조성 중인 2호 펀드의 자펀드 운용사가 기한 내에 자펀드를 결성하여 실제 투자가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하고, 2024년 예산을 활용하여 조성 중인 1호 펀드의 프로젝트 펀드 운용사 확보를 위한 추가 선정 절차는 2026년 6월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므로 운용사 선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음.

【기　타】

7.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대해 시정요구 26건(중복 6건 포함)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시정 6건·주의 9건·제도개선 11건이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6	9	11	6	26
예비비	-	-	-	-	-	-	-
합계	-	-	6	9	11	6	2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정요구사항 26건에 대해 17건을 조치완료(조치율 65.1%)하고 9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26	17	65.4	9
예비비	-	-	-	-
합계	26	17	65.4	9

원자력안전위원회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163억 3,800만원(△4.3%)이 적은 3,659억 7,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3억 7,700만원(9.1%)이 증가됨.[1)]

[2025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1,840	1,840	2,167	327	2,167	2,167	1,643	△524	△524
기 금	343,041	343,041	333,434	△9,607	380,149	380,149	364,335	△15,814	30,901
총수입	344,881	344,881	335,601	△9,280	382,316	382,316	365,978	△16,338	30,377

문의: 02-6788-5698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5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175억 1,300만원(△3.3%)이 적은 5,114억 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35억 7,800만원(9.3%)이 증가됨.

[2025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136,045	136,045	134,389	△1,656	148,765	148,765	147,066	△1,699	12,677
기 금	343,041	343,041	333,434	△9,607	380,149	380,149	364,335	△15,814	30,901
총지출	479,086	479,086	467,823	△11,263	528,914	528,914	511,401	△17,513	43,578

나.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1억 6,700만원으로, 17억 2,2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6억 4,300만원이 수납(수납률 95.4%)되고, 3,500만원은 미수납되어 4,4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2,167	2,167	-	2,167	1,722	1,643	35	44
합 계	2,167	2,167	-	2,167	1,722	1,643	35	44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487억 6,500만원으로, 1,470억 6,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9%)되고 2,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6억 7,7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148,765	148,765	-	-	-	148,765	147,066	22	1,677
합 계	148,765	148,765	-	-	-	148,765	147,066	22	1,677

주) 총계 기준

다. 기금 결산

2025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3,801억 4,900만원으로, 3,644억 2,0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3,643억 3,5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9%)되고, 8,400만원은 미수납되고 1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입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380,149	380,149	364,420	364,335	84	1
합 계	380,149	380,149	364,420	364,335	84	1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3,801억 4,900만원으로, 3,643억 3,500만원이 지출(집행률 95.8%)되고 4,4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380,149	380,149	-	380,149	364,335	-	44
합 계	380,149	380,149	-	380,149	364,335	-	44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5회계연도 말 기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자산은 전년 대비 393억 9,500만원이 증가된 2,576억 7,800만원으로, 이는 유무형자산이 5,100만원으로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산이 393억 8,800만원, 기타자산이 5,800만원 각각 증가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67억 5,600만원 증가된 563억 4,900만원으로 충당부채 66억 3,300만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326억 3,900만원이 증가된 2,013억 2,900만원임.

2025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2,481억 4,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1억 7,300만원 증가되었으며, 재정운영결과는 1,273억 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9억 2,200만원 감소됨.

[2025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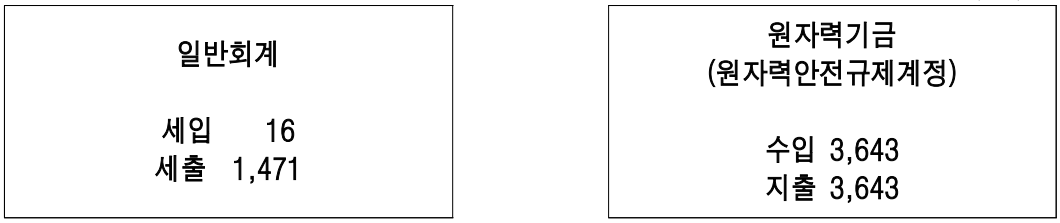
구 분			2025 (A)	2024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257,678	218,283	39,395	18.0
		금융자산	256,720	217,332	39,388	18.1
		유무형자산	899	950	△51	△5.4
		기타자산	59	1	58	5800
	부 채		56,349	49,593	6,756	13.6
		차입부채	0	0	0	0
		충당부채	49,593	42,960	6,633	15.4
		기타부채	6,757	6,633	124	1.9
	순자산		201,329	168,690	32,639	19.3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248,146	231,973	16,173	7.0
	재정운영순원가		267,475	284,263	△16,788	△5.9
	재정운영결과		127,369	137,291	△9,922	△7.2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2025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재정은 일반회계 1개 회계와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1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는 없음.

[2025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재정흐름도]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시설 규제시스템 혁신, 미래 원자로 규제 기반의 선제적 마련, 원자력사고 대비체계 고도화 등을 업무추진 방향으로 제시하고, 총 49개의 세부사업에서 원자력안전관리, 원자력안전연구, 원자력안전관리기반구축 등을 수행하였음.

2025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5년 총액인건비제 운영 과정에서 절감된 재원을 전용하여 활용하지 않아도 2개팀 기구운영이 가능하였으며, 총액인건비제 운영 실적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 잉여재원 여부를 파악하여 반영함으로써 운영 실적 보고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둘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연구개발적립금 일부를 옥외 방송통신 설비 보수, 화재감지 소방시설 보수 등 경상적 경비에 활용하여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적합하지 않게 사용하였으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연구개발적립금 집행 내역을 점검하고 향후 경상적 경비 해당 여부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셋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연구개발적립금 일부를 안내 전광판 구입 및 설치, 화분 및 수목식재 구입 등 경상적 경비에 활용하여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적합하지 않게 사용하였으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향후 이와 유사한 집행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상적 경비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원자력안전위원회 총액인건비제 운영 관련: 총액인건비 관련 적정 예산 편성 필요

가. 개 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의 2025년도 예산현액 167억 9,600만원 중 164억 5,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0%)되었고 3억 4,100만원이 불용되었음.[2)]

[2025년도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 관련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인건비	15,682	15,682	-	-	15,682	15,440	-	242	16,311
기관운영 기본 경비(총액대상)	994	994	-	1	995	911	-	84	1,041
기획조정관 기본 경비(총액대상)	29	29	-	1	30	27	-	2	29
안전정책국 기본 경비(총액대상)	25	25	-	-	25	24	-	1	24
방사선방재국 기본 경비(총액대상)	25	25	-	-	25	23	-	2	23
고리지역사무소 기본경비(총액대상)	10	10	-	△2	9	6	-	3	6
월성지역사무소	10	10	-	-	10	6	-	4	10

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는 서술된 바와 같으나, 총액인건비 예산 총액은 160억 400만원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기본경비(총액대상)									
한빛지역사무소 기본경비(총액대상)	7	7	-	-	7	5	-	2	7
한울지역사무소 기본경비(총액대상)	8	8	-	-	8	8	-	0	8
대전지역사무소 기본경비(총액대상)	5	5	-	-	5	4	-	1	5
새울지역사무소 기본경비(총액대상)	-	-	-	-	-	-	-	-	4
합계	16,795	16,795	-	-	16,796	16,454	-	341	17,468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5년 총액인건비제 운영 과정에서 절감된 재원을 전용하여 활용하지 않아도 2개팀 기구운영이 가능하였으며, 총액인건비제 운영 실적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 잉여재원 여부를 파악하여 반영함으로써 운영 실적 보고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작성한 2025년도 총액인건비 운영 실적에는 절감재원을 활용하여 2개팀 기구운영(12,720,000원) 및 직급상향(3,319,000원)에 소요되는 인건비 수요를 충당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런데 절감재원을 타 비목의 기관운영비나 인건비 수요에 활용하였다면 비목 간 전용 등 예산 변경 절차가 수반되었어야 함에도, 이에 해당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절감된 금액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총액인건비제 절감재원 및 운영 실적 현황]

(단위: 원)

절감재원 항목	절감계획 금액	운영 실적	활용 용도	이·전용 등 여부
특근매식비	10,440,000	12,720,000	2팀 기구 운영	X
연가보상비	6,170,000			
시간외 근무수당	3,770,000	3,319,000	직급상향	이·전용 대상아님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필요한 과운영비, 월정직책급이 기존 예산으로 충당되어 절감재원을 전용하여 활용할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인데, 이는 2개팀 기구운영에 필요한 비목의 예산에 잉여재원이 발생하고 있어 절감재원을 전용하여 활용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임.[3)]

나아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연가보상비 및 특근매식비를 절감하여 2개팀 기구운영에 활용하였다는 내용의 총액인건비 운영 실적을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에 통보하였는데, 이는 실제 예산 전용 및 활용 절차가 없었음에도 절감재원을 활용한 것으로 통보한 것이어서 총액인건비 운영 실적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문제가 있음.

연가보상비 및 특근매식비 절감은 이루어졌으나, 2개팀 기구운영에 필요한 비목의 예산 자체가 여유롭게 편성되어 있어 절감재원을 전용하여 활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인건비 절감 노력을 인센티브로 삼아 인건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총액인건비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인건비 등의 실제 집행 소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향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 운영 실적 보고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3)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5년 총액인건비 기구 운영을 위한 직책수행경비의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2025.6.20.~12.31., 약 6개월), 안전정책국장(2025.4.28.~12.31., 약 8개월)의 공석으로 일부 여유금이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입장임.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사업: 연구개발 적립금 집행 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사업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인건비, 경상비 등 기관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74억 8,000만원 중 267억 9,0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5%)되고 6억 9,000만원이 불용되었음.[4)]

[2025년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R&D)	27,480	27,480	-	-	27,480	26,790	-	690	36,453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4) 일반회계-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2031-401)(안전정책국)

나. 검토의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연구개발적립금 일부를 옥외 방송통신 설비 보수, 화재감지 소방시설 보수 등 경상적 경비에 활용하여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적합하지 않게 사용하였으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연구개발적립금 집행 내역을 점검하고 향후 경상적 경비 해당 여부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2025년 연구개발적립금 7억 8,200만원 중 7억 8,000만원을 집행하면서 이중 3억 9,800만원을 옥외 방송통신 설비 보수, 화재감지 소방시설 보수 등 경상적 경비에 사용하였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연도별 연구개발적립금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연구개발적립금	기초 적립금 누적액		517	140	188	300	104
	결산상 잉여금 중 적립액(결산상 잉여금)		33	350	1,120	67	678
	연간 적립금 운용 수익		-	-	-	-	-
	신규 적립		-	-	-	-	-
	지출액	기관발전사업	-	-	-	-	-
		자체연구사업	66	302	176	210	-
		생활방사선안전센터 설립 및 해수방사능실험실 개선	344	-	832	-	-
		청사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	-	-	53	-
		노후화된 청사건물 소방시설 등 개선	**-**	**-**	**-**	**-**	**398**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신속분석	-	-	-	-	382
		(소 계)	410	302	1,008	263	780
	기말 적립금 누적액		140	188	300	104	2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그런데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연구개발적립금을 기관고유연구 또는 기관목적사업(연구인프라 확충 등), 직원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기관발전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경상적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5)]

5)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10쪽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연구개발적립금 집행 내역 중 경상적 경비 부분 발췌]

(단위: 원)

집행일자	집행금액	주요 내용
2025-09-09	151,416,550	· 본관동 자동제어 시스템(빌딩자동제어시스템)
2025-09-09	400,000	· 본관동 자동제어 시스템(빌딩자동제어시스템) 원가계산 경비부분 상승분
2025-09-09	1,339,000	· 조달수수료
2025-09-09	200	· 조달수수료 (상승분 반영)
2025-10-16	2,130,000	· 오디오 앰프(POWER AMP) 480W*2
2025-10-16	5,481,000	· PA용 스피커 20W
2025-10-16	41,090	· 조달수수료 0.54%
2025-10-27	1,320,000	· [용역] 2025년 환경개선사업 소방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
2025-10-27	1,320,000	· [용역] 2025년 환경개선사업 통신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
2025-10-30	96,101,000	· [공사] 2025년 환경개선사업 통신공사
2025-11-11	138,459,247	· [공사] 2025년 환경개선사업 소방공사
합 계	398,008,087	-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해당 집행이 단순 유지·보수가 아닌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가 위치한 공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인프라 개선" 목적의 사업에 해당한다는 입장임.

그러나 옥외 방송통신 설비 보수, 화재감지 소방시설 보수 등은 시설의 기능 유지를 위해 일상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유지·보수 작업으로서, 연구인프라 확충에 해당하는 시설·장비의 신규 도입·증설·고도화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구인프라 개선 목적으로 보기 어려움.

또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주장처럼 해당 집행이 연구인프라 개선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집행 내용이 경상적 경비 성격을 가지는 이상 집행지침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경상적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요건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향후 연구개발적립금 집행 시 허용 용도에 해당하

- 연구개발적립금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되, 경상적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기관고유연구 또는 기관목적사업(연구인프라 확충, 차입금 상환,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등)
2) 직원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3) 기관발전사업(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기술창업 출연·출자 포함)

는지 여부 및 경상적 경비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3.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사업: 연구개발 적립금 집행 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사업은 「한국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인건비, 경상비 등 기관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32억 5,500만원 중 130억 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1%)되고 2억 5,100만원이 불용되었음.[6)]

[2025년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13,255	13,255	-	-	13,255	13,004	-	251	13,775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6) 일반회계-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2031-402)(방사선방재국)

나. 검토의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연구개발적립금 일부를 안내 전광판 구입 및 설치, 화분 및 수목식재 구입 등 경상적 경비에 활용하여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적합하지 않게 사용하였으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향후 이와 유사한 집행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상적 경비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2025년에 연구개발적립금 5억 9,300만원 중 5억 1,800만원을 직무급 컨설팅, 채용 프로세스 개선 컨설팅 및 공정채용 인증,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 자산관리시스템 도입 등 기관발전사업의 용도로 집행하였음.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연도별 연구개발적립금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연구개발적립금	기초 적립금 누적액		297	7	224	414	593
	결산상 잉여금 중 적립액(결산상 잉여금)		285	274	254	382	-
	연간 적립금 운용 수익		-	-	-	-	-
	신규 적립		-	-	-	-	-
	지출액	기관발전사업	38	-	22	203	518
		자체연구사업	-	57	-	-	
		인프라 구축 및 장비구입	537	-	42	-	
		(소 계)	575	57	64	203	518
	기말 적립금 누적액		7	224	414	593	75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그런데 연구개발적립금의 세부 집행 내용을 살펴보면 안내 전광판 구입 및 설치, 화분 및 수목식재 구입 등 기관의 일상적 운영 및 시설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상적 성격의 지출을 포함하고 있어 연구개발적립금을 경상적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음.[7)]

7)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10쪽

- 연구개발적립금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되, 경상적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기관고유연구 또는 기관목적사업(연구인프라 확충, 차입금 상환,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등)
2) 직원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3) 기관발전사업(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기술창업 출연·출자 포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연구개발적립금 집행 내역 중 경상적 경비 부분 발췌]

(단위: 원)

집행일자	집행금액	주요 내용
2025-06-16	5,500,000	· 연구동 4층 중회의실 내 디지털 전광판 설치 1 식
2025-06-23	6,000,000	· 스탠드형 전광판(설치위치: 연구동 1층 로비 입구)
2025-07-03	10,003,380	· 안내전광판 5 EA
2025-07-17	3,860,000	· 중회의실 내 실내전광판 증설작업
2025-07-22	30,420,500	· 연구동 옥외 디지털 전광판 설치
2025-11-10	2,970,000	· 화분 및 수목식재
2025-12-10	2,075,700	· 1층 휴게공간 장식물 설치 및 철거
2025-12-30	7,920,000	· 수목 식재 용역
합 계	68,749,580	-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연구개발적립금 집행 내역을 점검하고, 향후 허용 용도 및 경상적 경비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기　타】

4.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 시정요구 7건(중복 1건 포함)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주의 1건·제도개선 7건이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	1	7	1	7
예비비	-	-	-	-	-	-	-
합계	-	-	-	1	7	1	7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시정요구사항 7건에 대해 4건을 조치완료(조치율 57.1%)하고 3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7	4	57.1	3
예비비	-	-	-	-
합계	7	4	57.1	3

우주항공청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회계연도 우주항공청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순증한 16억 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억 8,400만원(△34.5%)이 감소됨.[1)]

[2025회계연도 우주항공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	-	2,566	2,566	-	-	1,682	1,682	△884
총수입	-	-	2,566	2,566	-	-	1,682	1,682	△884

2025회계연도 우주항공청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154억 3,900만원(△1.6%)이 적은 9,459억 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742억 1,700만원(154.5%)이 증가됨.

문의: 02-6788-5698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5회계연도 우주항공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395,308	395,308	371,758	2,369	961,414	961,414	945,975	△15,439	574,217
총지출	395,308	395,308	371,758	2,369	961,414	961,414	945,975	△15,439	574,217

나.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우주항공청 소관 세입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으나, 16억 8,2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전액 수납(수납률 100%)되었음.

[2025회계연도 우주항공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	-	-	-	1,682	1,682	-	-
합 계	-	-	-	-	1,682	1,682	-	-

주) 총계 기준

2025회계연도 우주항공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9,637억 8,300만원으로, 9,459억 7,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2%)되고 29억 8,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48억 2,2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우주항공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961,414	961,414	2,369	±8,030	-	963,783	945,975	2,986	14,822
합 계	961,414	961,414	2,369	±8,030	-	963,783	945,975	2,986	14,822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5회계연도 말 기준 우주항공청 자산은 전년 대비 53억 5,100만원이 증가된 449억 4,900만원으로, 이는 유·무형자산이 23억 2,600만원으로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자산이 76억 7,700만원 증가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900만원 증가된 1,000만원으로 차입부채 900만원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53억 4,200만원이 증가된 449억 3,900만원임.

2025회계연도 우주항공청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8,970억 4,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549억 8,600만원 증가되었으며, 재정운영결과는 9,430억 6,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812억 7,800만원 증가됨.

[2025회계연도 우주항공청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 (A)	2024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44,949	39,598	5,351	13.5
		금융자산	12,881	12,881	-	-
		유·무형자산	24,319	26,645	△2,326	△8.7
		기타자산	7,749	72	7,677	10,662.5
	부 채		10	1	9	900.0
		차입부채	9	-	9	순증
		충당부채	-	-	-	-
		기타부채	1	1	-	-
	순자산		44,939	39,597	5,342	13.5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897,042	342,056	554,986	162.3
	재정운영순원가		943,068	361,790	581,278	160.7
	재정운영결과		943,068	361,790	581,278	160.7

2. 2025회계연도 재정구조

2025회계연도 우주항공청 소관 재정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는 없음.

3.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위한 역량 확보를 2025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총 75개 세부사업에서 누리호 4차 발사, 첨단위성 개발·발사, 거버넌스 구축, 인재양성 및 문화확산, 국제협력 강화 등을 수행하였음.

2025년도 우주항공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드론제조 국산화 특화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사업은 용역 수행 중 특화단지 조성 부지가 변경되면서 용역이 중단됨에 따라 매몰비용이 발생하였고, 2025년 12월 31일이 되어서야 재공고를 하는 등 사업이 약 7개월가량 지연되고 있으므로, 우주항공청은 향후 용역 발주 전 주요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용역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 구축 사업은 금액이 확정되기 전 설계 공모를 거쳐 공모 및 업체 선정 당시 제시된 조건과 실제 계약 조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여 경쟁을 통한 최적 업체 선정이라는 공모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킨 문제가 있으므로, 우주항공청은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필요 금액이 확정된 이후 설계 공모를 거칠 필요가 있음.

셋째, 우주항공청은 혁신형재사용발사체핵심기술 사업을 2025년 신규사업으로 기획·추진하였으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문제로 인하여 사업을 중단하고 예산을 전액 불용하였는데, 향후 예산 편성 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절차를 준수하고 신규사업 기획 시 사업간 유사·중복에 대한 검토가 면밀히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넷째, 개방형 위성영상 서비스 시스템 개발 사업은 「전자정부법」 제67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가 진행되었어야 하나, 사전규격 공고 이후에 사전협의 필요성을 인지함에 따라 용역 발주 및 착수가 지연되었으므로, 우주항공청은 향후 사업추진 시 필요한 절차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우주항공청은 상시 재난감시용 성층권 드론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성층권에서 30일 이상 비행할 수 있는 태양광 드론 개발을 목표로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1.61일(38시간 36분) 비행에만 성공하여 사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원인을 면밀히 점검하여 후속사업에서는 목표한 성과를 달성할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드론제조 국산화 특화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사업(신규): 용역 발주 전 주요 내용 검토 강화 필요 등

가. 개 요

‘드론제조 국산화 특화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사업은 국내 드론 산업 육성과 국가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드론(국산 100%) 제조 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억원 중 9,600만원이 집행(집행률 48.0%)되고 1억 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9만 6,800원이 불용되었음.[2)3)]

[2025년도 드론제조 국산화 특화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드론제조 국산화 특화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200	200	-	-	200	96	103	0.1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 일반회계-드론제조 국산화 특화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1333-305)(우주항공산업국)

3) 조달 발주 수수료 1,500,000원 중 1,403,200원 납부 후 잔액 96,800원이 불용 처리됨.

나. 검토의견

드론제조 국산화 특화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사업은 용역 수행 중 특화단지 조성 부지가 변경되면서 용역이 중단됨에 따라 매몰비용이 발생하였고, 2025년 12월 31일이 되어서야 재공고를 하는 등 사업이 약 7개월가량 지연되고 있으므로, 우주항공청은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주요 내용에 대한 사전협의 및 검토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우주항공청은 드론제조 국산화 특화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5년 4월 28일 공고를 통해 2025년 5월 26일 업체선정 및 계약 후 용역에 착수하였으나, 이후 2025년 6월 7일 드론제조 국산화 특화단지 부지 재검토 필요성을 인지하면서 2025년 7월 29일 용역을 중단하였고, 최종적으로 2025년 12월 29일에 계약을 해지하였음.

우주항공청은 이후 2025년 12월 31일 재공고를 거쳐 2026년 2월 24일이 되어서야 신규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에 착수했는데 최초 사업 착수 시점과 비교하면 사업 추진이 사실상 9개월 정도 지연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드론제조 국산화 특화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일정]

일정	주요내용	비고
2025.4.28.	∙나라장터 공고 게시	
2025.5.26.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 체결	
2025.6.4.	∙착수전 회의 진행 - 기초 현황, 사업진행 방향 협의	우주항공청, 지자체, 용역업체 참여
2025.6.7.	∙착수 회의 진행 - 교도소 이전 및 부지 확보가 2030년 하반기 예상됨을 확인하고 창원시에 부지 불확실성 해소 요청	우주항공청, 지자체, 용역업체 참여
2025.7.29.	∙월간 회의 진행 - 부지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용역 중단 협의	우주항공청, 지자체, 용역업체 참여
2025.12.29.	∙기존 계약 해지	과업범위 변경(부지 관련 전국 광역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포함)에 따른 계약해지
2025.12.31.	∙재공고 게시	
2026.1.12.	∙기존계약 정산금 반납	
2026.2.24.	∙신규 용역계약 체결	2026.11.21. 완수예정

자료: 우주항공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지연 사유에 대하여 우주항공청은 당초 창원시 내 교도소를 이전하고 남은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기획연구 추진 과정에서 교도소 신설 및 운영 시점이 미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용역을 중단하였으며, 이후 특정부지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계약연장 의사가 없던 기존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업체를 선정하였다고 설명함.[4)]

결과적으로 사업의 주요 내용인 조성 부지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 발주 및 계약이 진행되었고 이로 인하여 차질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우주항공청이 사업 기획과정에서 조성 부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 및 검토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우주항공청은 부지확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었고 2025년 2월 28일 창원시로부터 구체적인 부지를 명시한 보고자료를 받은 후 용역의 발주 및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전검토가 부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임.

그러나 창원시 내 교도소 이전은 법무부 소관임에도 우주항공청은 법무부에 별도로 일정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창원시의 보고자료에만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추진기관으로서 자체적인 검증 노력이 미흡했던 측면이 있음.

특히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 체결 시점인 2025년 5월 26일 이전인 2025년 5월 6일에 새로운 교도소 완공 일정이 2029년 11월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이 신문기사를 통해 보도되어, 기존 교도소 부지는 그 이후에나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업 관련 모니터링에 소홀했던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임.[5)]

한편 우주항공청이 부지 문제로 기존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신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기존 업체에 지급된 4,800만원은 매몰비용이 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우주항공청은 기존 업체의 중간 성과물을 현 용역사와 공유하여 기확보된 조사·분석 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

4) 우주항공청은 2025년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이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사업 일정은 수립하지 않았으나, 용역결과 특화단지 설립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2027년부터는 특화단지 조성 사업에 착수해야하는 만큼 2030년 이후에 부지확보가 될 경우 착공이 지나치게 늦어질 우려가 있었다는 입장임.

5) “40년 주민 숙원 풀었다…도심 속 그 교도소, 2㎞ 외곽으로 이사”, 중앙일보

[드론제조 국산화 특화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사업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	1차 용역(계약규모: 200)			차년도 이월	2차 용역 (계약규모: 103.5)	
	선금		잔금			
	과업 수행분	정산 및 반납			선금	잔금(예정)
200	48	47	-	103.5	51.75	51.75

자료: 우주항공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기존 업체가 제출한 중간보고서는 국내외 주요 동향분석, 사업대상지를 경상남도 창원시로 전제하고 이루어진 현황조사 및 추진전략을 포함하고 있는데, 국내외 주요 동향분석과 같은 기초자료는 일부 활용할 수 있겠으나, 부지가 창원시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대상지를 창원시로 전제하고 이루어진 조사내용의 활용은 제한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우주항공청은 향후 용역 발주 전 주요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용역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 우주산업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R&D): 사업관리 강화 필요 등

가. 개 요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R&D)’ 은 민간 주도 우주개발 역량 강화 및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발사장, 우주환경 시험시설 및 특화지구별 거점센터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30억원이 전액 집행되었음.[6)]

[2025년도 우주산업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R&D)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R&D)	23,000	23,000	-	-	23,000	23,000	-	-	18,468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5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① 민간발사장, ②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③ 우주환경시험시설, ④ 위성개발혁신센터 ⑤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 구축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우주항공청은 사업추진을 위해 각 내역사업별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연구개발기관의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교부현액 315억 9,500만원 중 19억 3,560만원이 집행(최종집행률 6.1%)되고 296억 5,940만원이 이월되었음.

6) 일반회계-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R&D)(1333-302)(우주항공산업국)

[2025년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 최종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우주항공청		사업시행주체							
	본예산	집행액	교부액 (B)	전년도 이월액 (C)	매칭 (D)	교부 현액 (E= B+C+D)	최종 집행액 (F)	이월액	불용액	최종 집행률 (F/E)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	23,000	23,000	23,000	8,595	-	31,595	1,935.6	29,659.4	-	6.1
민간발사장 구축	2,600	2,600	2,600	1,891	-	4,491	222	4,269	-	4.9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구축	3,600	3,600	3,600	2,089	-	5,689	567	5,122	-	10.0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	10,000	10,000	10,000	1,419	-	11,419	458	10,961	-	4.0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	3,200	3,200	3,200	1,500	-	4,700	331.3	4,369	-	7.0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 구축	3,600	3,600	3,600	1,696	-	5,296	357.3	4,939	-	6.7

주) 사업시행주체 최종집행률은 2025.12.31. 기준임
자료: 우주항공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첫째,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 추진이 연례적으로 지연되고 있고, 일부 내역사업은 2025년 12월이 되어서야 설계에 착수하였으므로, 우주항공청은 향후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은 당초 총사업비 6,161억원 규모로 기획되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해당하였으나,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고(2023년 8월), 이후 2023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쳤음.[7)]

7)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우주항공청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총사업비를 3,808억원으로 확정한 후 2024년 10월 및 11월에 사업시행주체 선정을 완료하였으나, 이후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확정 절차를 거친 후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2025년 7월부터 이루어졌음.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 추진 경과 및 계획]

일자	내용	비고
2022년 12월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지정	총사업비 1조 406억원 규모
2023년 8월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총사업비 6161억원으로 조정
2023년 9월 ~ 2024년 7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총사업비 3,808억원 확정
2024년 10월 ~ 11월	내역사업별 사업시행주체 선정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내역사업은 공모 진행 그 외는 정책지정
2025년 1월 ~ 2월	사업 기본계획 수립	
2025년 3월	대형연구시설전문위원회 심의	
2025년 5월 ~ 6월	기본계획 기획재정부 협의 및 확정	
2025년 7월 10일	내역사업별 기본계획 고시	

자료: 우주항공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후 각 내역사업별로 시설 구축을 위한 설계 용역 공고 및 계약을 추진하였는데, 5개 내역사업 중 2개 내역사업은 2025년 12월이 되어서야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26년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1개 내역사업은 일괄입찰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2026년 6월에 일괄 입찰공고 예정임.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 · 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 · 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내역사업별 설계용역 착수 현황]

내역사업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기간
민간발사장 구축	2025.12.3. ~ 2027.10.2.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구축	2025.10.30. ~ 2026.12.30.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주	2025.9.6.~ 2025.12.10. 입찰안내서 작성 2026.6. 일괄입찰 공고예정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	2025.12.30. ~ 2027.3.2.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 구축	2025.8.5.~2026.9.30.

주)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 사업은 고정식 대형 장비위주 사업으로 설계단계부터 건축과 연계한 추진히 필요하여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임

자료: 우주항공청

이와 같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본계획 수립 등을 거치면서 사업이 순연되고 있으므로, 우주항공청은 우주분야 시설 구축을 통해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 제공이라는 동 사업 목적이 적시에 달성될 수 있도록 향후 추진되는 부지확보, 설계 및 건축 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둘째,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 구축 사업은 금액이 확정되기 전 설계 공모를 거쳐 공모 및 업체 선정 당시 제시된 조건과 실제 계약 조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여 경쟁을 통한 최적 업체 선정이라는 공모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킨 문제가 있으므로, 우주항공청은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필요 금액이 확정된 이후 설계 공모를 거칠 필요가 있음.

내역사업인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 구축 사업은 기본계획 고시가 이루어지기 전인 2025년 1월 24일에 건축 설계용역 공고를 진행하였는데,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정 건축 규모와 설계비를 명시하여 공고하였으나, 실제 계약은 예정 건축 규모를 50%, 설계비는 35% 각각 상승시켜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 구축 사업 추진 경과]

일자	내용	비고
2025년 1월 ~ 2월	사업 기본계획 수립	
2025년 1월 24일	건축 설계용역 공고	기본계획 확정 전 공고
2025년 5월 ~ 6월	기본계획 기획재정부 협의 및 확정	
2025년 7월 10일	내역사업별 기본계획 고시	
2025년 8월 5일	건축 설계용역 계약 체결	

자료: 우주항공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우주항공청은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디자인 공모를 통해 설계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이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하였다는 입장임.[8)]

그런데 공모는 한정된 예산 내에서 과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로, 각 참가 업체는 주어진 조건 내에서 과업수행계획을 제출하고 경쟁하게 되어 있으나, 이 사안에서는 업체 선정 이후 실제 계약금액과 건축금액이 공모 조건 대비 각각 35%, 50% 가량 증가되어 공모 당시 제시된 조건이 실제 계약의 기준으로 기능하지 못하였음.

특히 수정된 건축 규모는 기존 규모 대비 연면적이 5,033㎡에서 7,850㎡로 56% 가량 증가하였고, 사업수행기간도 12개월에서 14개월로 증가하는 등 금액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과업의 범위와 기간 자체가 증가하기도 하였음.

[건축 설계용역 공고서와 계약서 상 조건 비교]

(단위: 천원)

구분	공고 기준	계약 기준
예정 공사비	12,737,910	19,398,410
설계비	567,905	771,614
연면적	5,033㎡	7,850㎡
사업수행기간	12개월	420일(14개월)

자료: 우주항공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결과적으로 공모 조건과 실제 계약 조건 간의 차이로 인해 주어진 여건하에서 다수의 업체 간 충분한 경쟁을 통해 최적의 업체를 선정한다는 공모의 제도적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문제가 있으므로, 우주항공청은 향후 필요 금액이 확정된 이후 설계 공모를 거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9)]

---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 · 품질이나 경험 · 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 · 설계 · 감리 · 특수측량 · 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9) 이에 대하여 우주항공청은 향후 동일한 사항 발생 시 최적의 업체를 선정한다는 공모의 제도적 취지를 충분히 살려 추진하겠다는 입장임.

셋째, 민간발사장 구축 사업의 수행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사업 수행 과정에서 일부 예산을 기관이 자체 수행 중인 민간 소형발사체 발사장 구축 사업 추진에 활용하였으므로, 우주항공청은 해당 예산의 집행 내역을 면밀히 점검하고 목적 외 사용이 발생한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우주항공청으로부터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의 내역사업인 '민간발사장 구축'의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관련 예산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사업 수행 과정에서 일부 예산을 내역사업 본래의 목적이 아닌 기관이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민간 소형발사체 발사장 구축 사업을 위한 회의 진행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됨.

[민간발사장 내역사업 예산 중 민간 소형발사체 발사장 구축 사업 관련 회의비 집행내역]

집행일시	개 요	집행금액(원)
2025.2.17.	민간소형발사체 발사장 건설공사 공정 점검회의	200,000
2025.7.23.	민간소형발사체 발사장 구축 가스터빈발전기 제작설치 공장 제작 검수 회의	200,000
2025.11.24.	민간발사장 구축 관급자재 제작 설치 점검 회의	270,000
합계		670,000

자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두 사업은 모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수행하고 있으며 발사장 부지가 서로 인접해 있어 전기, 통신, 용수 등 부대시설을 공유할 예정이기는 하나, 사업규모·사업기간 및 사업내용이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이므로 각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해당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민간 소형발사체 발사장 구축 및 민간발사장 구축 사업 비교]

사업명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시설지원 (민간 소형발사체 발사장 구축 - 1단계 발사장)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 (민간발사장 구축 - 2단계 발사장)
총사업비	432억원	1,205억원
사업기간	2021.1.~2027.12.(7년)	2024.10.~2030.12.(6년 3개월)
사업내용	· 발사장 부지조성 및 포장 · 발사체 이송로 구축 · 전기, 통신, 용수 등 부대시설 구축	· 발사장 부지 확장 · 조립시험시설 구축 · 전기, 통신, 용수 등 부대시설 구축

사업명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시설지원 (민간 소형발사체 발사장 구축 - 1단계 발사장)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 (민간발사장 구축 - 2단계 발사장)
사업부지		

자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두 사업의 예산을 혼용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으며, 수행기관이 위탁받은 사업과 자체사업 간의 예산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운용함으로써 사업별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저해된 것으로 보임.[10]

따라서 우주항공청은 해당 예산의 집행 내역을 면밀히 점검하고 목적 외 사용이 발생한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0)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3. 민간우주산업생태계지원 사업(신규): 법률에 근거한 제도의 신속한 추진 필요 등

가. 개 요

‘민간우주산업생태계지원’ 사업은 우주경제의 중심축인 민간의 우주개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내 우주 분야 스타트업,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기술지정 제도 운영, 우주환경시험지원을 통해 기업의 제품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5억원 중 3억 1,400만원이 집행(집행률 62.8%)되고 1억 7,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300만원이 불용되었음.[11)]

[2025년도 민간우주산업생태계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민간우주항공산업 생태계조성	800	800	-	356 △356	800	587	173	40	900
민간우주산업 생태계지원	500	500	-	356 △356	500	314	173	13	500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신기술지정제도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과 우주환경시험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음.

① 우주신기술지정 제도는 정부가 우주분야 신기술에 대한 평가실시와 지정을 통해 기술 우수성과 신뢰성을 인정함으로써 우주기술 개발 및 보급 촉진에 활용하고 국내 우수기술을 보유한 우주기업 및 개인 개발자의 개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② 우주환경시험 지원은 민간의 우주개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간 우주기업 및 대학의 우주기기 개발품 검증을 위한 우주환경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것임.

11) 일반회계-민간우주항공산업생태계조성(1337-309)(우주항공산업국)

나. 검토의견

첫째, 우주신기술지정제도는 2022년 12월 근거 법률 시행 이후 관련 고시 제정(2024년 1월), 예산 반영(2025년), 1차 지정 실시(2026년 1월)까지 약 3년이 소요되는 등 제도 시행이 지연되었으므로, 우주항공청은 향후 법률에 근거한 제도 도입 시에는 그에 따른 예산 확보·운영 체계 구축이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이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우주항공청은 2025년 민간우주산업생태계지원 사업을 통하여 우주신기술지정제도 운영을 지원하였는데, 동 제도는 2022년 12월 시행된 「우주개발 진흥법」(법률 제18867호) 제18조의7(우주신기술의 지정 등)에 근거하여 도입되었음.[12)]

이후 정부는 법 시행 1년 후인 2024년 1월에야 「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였으며,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신기술지정 제도 운영을 위한 동 사업의 예산이 반영되었으나, 우주항공청은 2026년 1월이 되어서야 최초로 우주신기술을 지정하였음.

이에 대하여 우주항공청은 2025년에 두차례 우주신기술을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우주신기술지정제도 운영기관과의 계약과정에서 검토기간이 소요되었고, 우주신기술지정 신청건수가 52건으로 당초 예상(10건 내외)보다 많아 연내 2회 실시가 불가하다는 판단 후 계약을 연장('25.8.6.~'26.1.6. → '25.8.6.~'26.6.6.)하여 수행 중이라는 입장임.

---

12) 「우주개발 진흥법」
제18조의7(우주신기술의 지정 등) ① 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우주기술 중에서 국내에서 신규성 · 진보성 등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 기술을 보급 ·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새로운 우주기술(이하 "우주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우주기술
2. 외국에서 도입하여 익히고 개량한 우주기술
3. 다른 분야에 적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우주기술
② 제1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주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 · 생산한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 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자
④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주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해당 우주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그 기술의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기술환경의 변화 등으로 해당 우주신기술의 보급 · 활용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신기술의 지정 · 지정취소나 활용방법 또는 우선구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주신기술지정제도 도입 및 시행 연혁]

구분	내용
2022.6.10.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
2022.12.11.	· 개정「우주개발 진흥법」(법률 제18867호) 시행
2024.1.1	·「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 제정
2025.1.~	·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우주신기술지정제도 운영 지원
2025.8.	· 우주신기술지정제도 운영기관 선정
2026.1.	· 최초 신기술 지정 완료

자료: 우주항공청

결과적으로 우주신기술지정제도는 예산 확보 및 운영 준비가 지연됨으로써 법 시행 이후 관련 하위법령 제정, 3년이 경과한 후에야 실제 지정이 이루어져 우주기술 개발 촉진이라는 입법 취지를 조기에 실현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이와 유사한 신규 제도 도입 시에는 그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 예산 확보 및 운영 체계 구축이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이행 관리가 필요함.

둘째, 우주항공청은 우주환경시험지원기관 선정 시 공고서에 국비 외에 피시험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을 기재하지 않아 공모 지원자 간 정보의 불균형을 초래하였으므로, 향후 사업 추진 시 정확한 조건을 기반으로 공모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우주항공청은 우주환경시험 지원을 위해 시험을 희망하는 기업·대학 등(이하 “피시험기관”이라 함)을 우선 선정한 후, 해당 기업·대학이 제시한 시험 수요를 바탕으로 이를 수행할 우주환경시험 지원 기관을 별도 공고를 통해 선정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음.

이때 피시험기관 중 기업은 시험비용의 일부를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사업 규모는 국비지원액과 피시험기관의 자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이 됨.

그런데 우주환경시험 지원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서에는 국비지원액만 명시되었을 뿐, 피시험기관의 자부담금은 기재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선정된 기관은 시험수행의 대가로 국비 3억 4,528만 5,000원 외에 피시험기관의 자부담금 1억 4,586만 5,730원을 추가로 지원받았음.

[우주환경시험지원기관에 대한 비용지원 현황]

(단위: 원)

공고금액	실제 수령금액 (A+B)	국비지원액(A)	피시험기관 자부담금(B)	비고
350,000,000	491,150,730	345,285,000	145,865,730	단독응찰

자료: 우주항공청

결과적으로 선정된 우주환경시험 지원기관은 국비 지원액만으로도 필요한 시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지원하여 선정된 것임에도 피시험기관의 자부담금이 추가 제공되었는데, 우주항공청은 피시험기관의 자부담분만큼 국비 지원액을 덜 교부하는 등 예산 절감 방안을 검토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하여 우주항공청은 동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피시험기관 선정 공고 시에는 피시험기관의 자부담비율을 명시하였고, 피시험기관은 선정 신청 시 우주환경시험 지원기관과 시험비용 및 조건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우주환경시험 지원기관으로 지원하는 기관들은 피시험기관의 자부담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입장임.

그러나 공모는 지원 기관이 공고서에 제시된 조건을 바탕으로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하는 절차이므로, 공고서에 자부담금이 명시되지 않은 이상 지원 기관이 이를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또한 동 공모는 단독 응찰로 인하여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음.

결과적으로 과거 사업에 참여하여 피시험기관의 자부담금 존재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일부 시험지원기관만이 실제 사업 규모를 파악한 상태에서 공모에 지원할 수 있었던 구조로 보이며, 이는 공모 참가자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정보의 불균형을 초래한 문제가 있음.

따라서 우주항공청은 향후 우주환경시험지원기관 선정 시 피시험기관의 자부담 발생 사실과 그 규모를 공고서에 명시하여 정확한 조건을 기반으로 공모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4. 우주항공문화 저변 확대 사업(신규): 유사 목적의 행사 통합 발주 필요

가. 개 요

‘우주항공문화 저변 확대’ 사업은 우주항공분야의 국민적 관심 증대에 따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우주항공의 날 연계 우주항공주간 프로그램 확대, 청소년 대상 STEM 교육 등 창의인재 교육 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5억원 중 4억 9,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2%)되고 400만원이 불용되었음.[13)]

[2025년도 우주항공문화 저변 확대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우주항공문화 저변 확대	500	500	-	12 △12	500	496	-	4	1,436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우주항공청은 2025년 5월 27일 제1회 우주항공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연계된 2개의 행사 수행을 위한 4개의 용역을 별도의 계약으로 분리하여 각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우주항공청은 2025년 5월 27일 제1회 우주항공의 날을 맞아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 개최 및 우주항공주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 기획 및 운영 용역, 우주항공주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용역, 우주항공의 날 홍보물 추가 제작, 우주항공의 날 기념 홍보영상 기획 및 제작 용역 등 총 4개의 용역을 각각 별도로 수의계약하였음.

이에 대하여 우주항공청은 각각의 계약은 사업 목적·수행 장소·과업 범위가 상이하고 사천, 과천 등 전국 단위의 행사 운영 특성상 독립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었으

13) 일반회계-우주항공문화 저변 확대(1335-302)(우주항공정책국)

며, 사업 일정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규정에 맞게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①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과 우주항공주간 선포식의 초대장을 단일 문서로 통합 제작·배포하였고, 이를 우주항공주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용역 수행업체가 담당하였으며, ② 우주항공의 날 기념 홍보영상 기획 및 제작 용역으로 발주된 기념 홍보영상이 기념식에 직접 활용되었으며, ③ 우주항공의 날 홍보물 추가 제작 용역으로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 홍보 현수막을 제작하였음.

[각 행사와 용역계약 연계 현황]

행사명	용역명	연계 내용	계약방식	계약금액 (원)
우주항공의날 기념식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 기획 및 운영 용역	기념식 기획 및 총괄 운영	수의계약	50,000,000
	우주항공의 날 홍보물 추가 제작 용역	기념식 홍보를 위한 현수막 추가 제작	수의계약	11,740,000
	우주항공의 날 기념 홍보영상 기획 및 제작 용역	제작된 홍보영상을 기념식 본 행사에 상영	수의계약	20,000,000
	우주항공주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용역	기념식과 주간 선포식 초대장을 단일 문서로 통합 제작·배포	수의계약	49,900,000
우주항공주간 프로그램 운영		우주항공주간 프로그램 기획 및 총괄 운영		

자료: 우주항공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관련 용역 간 내용적 연계성이 명확히 확인되는 상황에서, 관련 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하였다면 계약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단가 인하를 기대할 수 있고 용역별로 중복되는 기획·관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우주항공청은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는 각 과업을 묶어 경쟁 입찰로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므로, 향후 유사한 기념행사 추진 시에는 관련 과업의 목적·장소·범위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연계된 용역이 불필요하게 분리 발주되지 않도록 계약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5.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R&D) 사업: 예산의 연내활용도 제고 필요 등

가. 개 요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 사업은 우주항공분야 중장기 미래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임무 설정을 위한 선행·탐색연구를 수행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96억 5,000만원 중 78억 5,300만원이 집행(집행률 81.4%)되고 17억 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9,200만원이 불용되었음.[14)]

[2025년도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	9,650	9,650	-	730 △730	9,650	7,853	1,705	92	6,000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연구비는 2025년도 예산현액 77억 3,000만원 중 60억 1,100만원이 집행(집행률 77.8%)되고 17억 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4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년도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 사업 비목별 집행 현황]

비목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시험연구비 (210-13)	2,000	2,000	-	△730	1,270	1,192	1,192	-	78	540
· 일반연구비 (260-01)	7,000	7,000	-	730	7,730	6,011	6,011	1,705	14	500
· 연구개발활동비등 (360-05)	650	650	-	-	650	650	141	-	-	4,960
합 계	9,650	9,650	-	-	9,650	7,853	7,344	1,705	92	6,000

자료: 우주항공청

14) 일반회계-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R&D)(1343-301)(우주항공임무본부)

나. 검토의견

첫째, 우주항공청은 2025년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 사업의 일반연구비로 총 67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중 22건(전체의 약 1/3)이 12월에 체결되어 과다한 이월이 발생하였으므로, 사전 수요조사 강화 및 계약 절차 조기 착수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우주항공청은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 사업 내 편성된 일반연구비를 활용하여 2025년도 총 67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22건이 2025년 12월에 계약을 체결하여 과제 착수가 연말에 집중된 문제가 있음.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 사업 내 일반연구비를 활용한 계약 착수시점]

(단위: 건)

착수시점	'25.5월	'25.6월	'25.7월	'25.8월	'25.9월	'25.10월	'25.11월	'25.12월	합계
건수	3	15	15	2	4	4	2	22	67

자료: 우주항공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하여 우주항공청은 유찰로 인한 일정 지연, 용역의 사전 기획 및 검토기간 소요로 인하여 계약 절차가 지연된 측면이 있고, 연말에 발생하는 긴급한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예산은 연말에 집행할 필요성도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연말에 발생하는 소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가 전체 과제의 1/3에 달하는 것은 과다한 측면이 있고, 결과적으로 17억 500만원이라는 상당규모의 예산이 이월된 문제가 있음.

따라서 우주항공청은 부서별 수요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등 용역의 사전 기획 및 검토기간을 최소화하고, 계약 착수 시기를 앞당겨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우주항공청은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 사업을 통해 우주항공 인재양성 및 문화확산 관련 연구를 지원하면서 우주항공의 날 기념 포상심사 위원수당 지급, 기념품 구매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로 일부 예산을 집행하였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우주항공청은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 사업에 편성된 시험연구비를 활용하여 우주항공 인재양성 및 문화확산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있는데, 2025년에는 이를 통하여 우주항공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관련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이나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관련 협의회 운영 등을 지원하였음.

그런데 우주항공청은 이 중 일부를 우주항공의 날 기념행사와 관련한 포상심사 위원수당 지급, 우주항공주간 선포식 현수막 제작 및 우주항공 문화 저변확대 기념품 제작 등에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인재양성·문화확산을 위한 정책 또는 사업 발굴이라는 사업 본연의 목적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행사성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 내 우주항공 인재양성 및 문화확산 목적 시험연구비 집행 내역]

(단위: 원)

용도	집행금액
우주항공문화 콘텐츠 활성화 협의회	6,135,000
우주항공 과학교육 정책 수립 협의회	6,046,500
우주항공 인프라분과 협의회	9,500,000
한국항공우주학회 정책포럼	3,550,000
우주항공의 날 기념 우주항공발전유공 포상심사 위원수당	1,400,000
우주항공주간 선포식 현수막	5,867,400
우주항공 문화 저변 확산을 위한 물품 구입	9,502,500
우주항공 문화 저변확대 기념품 제작	12,100,000
인쇄물 및 홍보물 제작 등	19,204,800
합계	73,306,200

자료: 우주항공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우주항공청 소관의 별도 세부사업인 ‘우주항공문화 저변 확대’ 사업을 통하여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 개최가 지원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특정 행사 지원을 위한 비용이나 기념품 제작 비용은 해당 목적에 부합하는 동 사업 예산을 통해 집행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시험연구비는 국가시험 연구기관 및 방위력 개선사업에서 시험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비로서 시험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념품 제작 비용은 별도 비목에 계상하여야 함.[15)]

따라서 우주항공청은 향후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 사업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우주항공 분야 전반의 정책·사업 발굴을 위한 기획연구나 협의지원 등 사업 본연의 목적에 집중하되, 특정 행사 지원이나 기념품 제작과 관련된 비용은 해당 용도로 편성된 사업과 비목의 예산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15)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29쪽

□ 시험연구비는 10개 경비를 통합한 비목이므로 동일 또는 유사 사업에 통합된 비목은 별도 계상을 제한
○ 다만, 해당 시험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는 별도 비목에 계상
* 연구과제 수행에 직접 관련이 없는 기념품 제작, 홍보책자 발간, 직원 워크숍 개최 비용 등

6. 혁신형재사용발사체핵심기술(R&D) 사업(신규): 사업기획 시 다른 사업과의 유사·중복 확인 필요

가. 개 요

‘혁신형재사용발사체핵심기술(R&D)’ 사업은 국가 우주자산 투사 응답성 향상을 위한 중소형 재사용발사체 핵심기술 개발을 민간기업 주도로 개발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50억원 전액이 불용(집행률 0.0%)되었음.[16)]

[2025년도 혁신형재사용발사체핵심기술(R&D)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혁신형재사용 발사체핵심기술 (R&D)	5,000	5,000	-	±3,180	5,000	-	-	5,000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2025년 3월 12일 일반연구비(260-01) 31억 8,000만원을 연구개발활동비(360-05)로 전용하여 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이 중단 결정됨에 따라 예산을 전액 불용하였음.

나. 검토의견

우주항공청은 혁신형재사용발사체핵심기술 사업을 2025년 신규사업으로 기획·추진하였으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문제로 인하여 사업을 중단하고 예산을 전액 불용하였는데, 향후 예산 편성 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절차를 준수하고 신규사업 기획 시 사업 간 유사·중복에 대한 검토가 면밀히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우주항공청은 2024년 5월 개청 이후 국가우주위원회 제1차 회의('24.5.30)에서 승인된 「우주항공 5대 강국 입국을 위한 우주항공청 정책 방향」의 추진전략 1-3(발사비용 혁신을 위한 재사용발사체 개발)에 의거하여 혁신형재사용발사체핵심기술 사업을 기

16) 일반회계-혁신형재사용발사체핵심기술(R&D)(1433-306)(우주수송부문)

획하였고, 동 사업을 2025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였음.

그런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편성 시 원칙적으로 거쳐야 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는 매년 6월 30일까지 마무리되어 기획재정부로 결과가 이관되는데, 우주항공청의 사업기획 시기가 이와 맞지 않아 동 심의를 거치지 못한 채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이 추가되었고 국회에서 확정되었음.

이후 우주항공청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2025년 3월 14일 사업수행 전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부처 간 유사 과제 추진이 확인되었음.[17]

이후 2025년 4월 과학기술혁신본부로부터 사업 일시 중단 요청을 받았고, 2025년 5월에 이루어진 2026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을 최종 중단하고 차년도 예산은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됨에 따라 2025년도 편성 예산은 전액 불용처리된 것임.

이렇듯 우주항공청이 혁신형재사용발사체핵심기술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최종적으로 중단한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음.

첫째, 우주항공청 개청 초기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자문회의 심의 일정에 맞춘 사업기획이 어려웠던 측면은 있으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유사·중복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는 실질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동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대규모 사업을 추진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18]

---

17)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84쪽에서 발췌

> 자.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미심의 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
> o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신규 주요 R&D 사업은 중앙관서의 장이 총사업비, 사업내용, 재원분담 주체간의 분담비율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사전협의를 진행하여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18)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 조정 등)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및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 · 분석 · 평가와 연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 · 사업별 투자우선순위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 조정 내역

3의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과학기술

둘째, 우주항공청은 사업을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유사·중복 사업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중복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하여 우주항공청은 예산 반영 이후인 2024년 12월 10일 경에 해당 국방과제가 추진 의결이 되어 유사·중복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입장이므로, 국방 사업과 우주항공 사업이 유사·중복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하여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하는 등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19)]

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하는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

4.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조정 및 연계
5.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적정성, 중점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6. 다수 부처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별 역할 분담
7. 기초연구와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9) 해당 국방 과제: 「지상기반 재사용 우주발사체 메탄엔진 기술」 과제 (제23-5차 방위사업기획관리 실무위, '24.12.10.경 추진 의결)

7. 초소형위성군집시스템개발(R&D) 사업: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출연금 교부 필요

가. 개 요

‘초소형위성군집시스템개발(R&D)’ 사업은 군집형 초소형위성과 활용시스템을 개발하여 국가안보 대응 및 고빈도 지구관측 역량 확보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49억 2,7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 되었음.[20]

[2025년도 초소형위성군집시스템개발(R&D)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초소형위성군집 시스템개발 (R&D)	24,927	24,927	-	-	24,927	24,927	-	-	3,278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되며 우주항공청은 연구개발기관인 KAIST 인공위성연구소 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연구개발출연금을 교부하고 KAIST 인공위성연구소는 초소형군집위성 개발을 총괄하고 발사하는 과업을 수행하고 있음.

초소형군집위성 1호기는 2024년 4월에 발사되어 현재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KAIST 인공위성연구소는 현재 초소형군집위성 2~6호기 및 7~11호기의 제작·발사를 수행하고 있음.

20) 일반회계-초소형위성군집시스템개발(R&D)(1533-301)(인공위성부문)

나. 검토의견

우주항공청은 초소형위성군집시스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사체 활용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불필요해진 발사비를 연구개발기관에 교부하여 약 70억원이 2027년 사업 종료 후 반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음.

우주항공청은 2025년도 초소형위성군집시스템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초소형군집위성 검증기와 2~6호기를 발사하기 위한 발사비 210억원을 편성하였고, 여기에 전년도 이월액 32억원을 더한 예산현액 242억원 중 120억원은 최종집행하고 122억원은 이월하였음.

우주항공청은 이월한 122억원 중 35억원은 2026년 중 초소형군집위성 검증기 발사와 초소형군집위성 2~6호기 발사 부대비용으로 집행하였고, 17억원은 2027년 초소형군집위성 7~11호기 발사 부대비용으로 집행할 예정이나 이를 제외한 약 70억원의 집행 잔액은 사업종료 후 반납될 것으로 예상됨.

[초소형위성군집시스템개발 사업 발사비 집행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안)			2027(안)		
	예산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초소형군집위성 검증기	7,826	4,622	3,204	21,000	12,034	12,170	-	1,616	8,691	-	1,700
초소형군집위성 2호 ~ 6호기		-			-			1,863			
합계	7,826	4,622		21,000	12,034	12,170	-	3,479	8,691	-	1,700

주) 발사비는 위성 호기별 구분 없이 배정
자료: 우주항공청

이는 우주항공청이 당초 초소형군집위성 2~6호기 발사 시 해외발사체를 활용할 계획으로 발사비를 산정하였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한국형 발사체(누리호)를 활용하여 발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기 때문임.

우주항공청은 발사체 활용계획 변경 검토 중에 당초 편성된 발사비 전액을 주관 연구개발기관에 교부하였는데, 이는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저촉되는 측면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해당 예산이 활용되지 않고 장기간 연구개발기관에 유보되었다가 반납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지양될 필요가 있음.[21)]

8. 위성활용혁신기반조성(R&D) 사업(신규): 필수 절차의 철저한 이행을 통한 사업 지연 방지 필요 등

가. 개 요

‘위성활용혁신기반조성(R&D)’ 사업은 개방형 서비스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위성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축적된 위성정보를 현장에서 널리 활용토록 하여 민간 및 공공부문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위성정보 활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9억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 되었음.[22)]

[2025년도 위성활용혁신기반조성(R&D)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위성활용혁신기반조성(R&D)	1,900	1,900	-	-	1,900	1,900	-	-	2,200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되며 우주항공청은 연구개발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연구개발출연금을 교부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개방형 위성영상 서비스 시스템 구축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21)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p. 28)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출연사업의 실집행 실적 제고를 위해 월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자금 교부시 사전에 지자체, 공공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2) 일반회계-위성활용혁신기반조성(R&D)(1337-314)(우주항공산업국)

나. 검토의견

첫째, 개방형 위성영상 서비스 시스템 개발 사업은 「전자정부법」 제67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가 진행되었어야 하나, 사전규격 공고 이후에 사전협의 필요성을 인지함에 따라 용역 발주 및 착수가 지연되었으므로, 우주항공청은 향후 사업추진 시 필요한 절차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개방형 위성영상 서비스 시스템 개발 용역을 추진하면서 「전자정부법」 제67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한 이후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에 사전협의를 요청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5년 10월 16일부터 21일까지 사전규격 공고를 먼저 진행하였음.[23)]

이후 2025년 10월 27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전자정부 모니터링 부서로부터 해당 용역이 전자정부 사전협의 대상 사업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통보받았으며, 뒤늦게 사전협의 절차를 수행하여 2025년 12월 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전협의 검토결과를 송부받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됨.

이로 인해 당초 용역 착수는 2025년 4분기 중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2026년 2월 11일에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는 사업추진 초기 단계에서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향후 정보시스템 개발 관련 용역을 추진할 경우 공고 전 단계에서 전자정부 사전협의 대상 해당 여부를 포함한 관련 법령상 요구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유사한 절차 누락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24)]

---

23) 「전자정부법」
제67조(사전협의)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의 상호연계 또는 공동이용과 관련한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추진하는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하여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을 추진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③ 사전협의의 대상사업,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3조(사전협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82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업계획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4) 이에 대하여 우주항공청은 향후 사업추진 시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하여 지연 없이 수행하겠다는 입장임.

둘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개방형 위성영상 시스템에 필요한 장비가 확정되기 전에 시스템 운영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GPU서버, 네트워크 스위치 등을 구매하였는데, 향후 필요한 장비가 확정된 이후 장비를 구매할 필요가 있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개방형 위성영상 서비스 시스템 개발 용역을 공고하기 전에 GPU서버, 네트워크 스위치 등의 장비를 구매하였는데,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장비가 확정되기 전에 구매할 경우 실제 시스템 요구사양과 구매 장비 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구매한 장비가 활용되지 못하거나 추가 장비를 재구매해야 하는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음.

이에 대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해당 장비를 위성정보 활용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연어 기반 AI 기술 사전탐색연구, 개발 요구사항 분석, 요소기술별 중장기 개발항목 도출 연구에 주로 활용하였고, 추후 개방형 위성영상 서비스 시스템에도 통합하여 부가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구매한 장비 현황]

(단위: 원)

연번	구매건명	용도개요	구매금액
1	AI 학습용 GPU 서버 구매	・위성영상 검색 특화 AI 기술 기반 자연어 주문검색 기술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GPU 서버 구축 - AI 기반 자연어 주문검색 기술개발을 위한 AI 학습용 GPU 서버 구축	82,213,000
2	네트워크 스위치 구매	・개방형 위성영상 시스템 구성을 위해 필요한 네트워크 스위치 장비 구매	37,180,000
3	위성영상 주문배포 가시화 연구를 위한 장비 구매	・위성영상 주문배포 가시화 연구 및 시험을 위한 환경 구축 및 장비 구매(Video Wall Server, 운용 PC 등)	8,400,000
4	자연어 처리 기술 연구를 위한 장비 구매	・자연어 처리 기술 연구를 위한 장비 구매(연구용 PC)	1,980,000

자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그러나 ① GPU 서버의 경우 11월 초에 구축되었는데 이때는 이미 개방형 위성영상 서비스 시스템 개발 용역의 사전규격 공고가 이루어진 이후이므로 개발 요구사항 분석 또는 개발항목 도출에 활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AI 기술 기반 자연어 검색기능 개발이 개방형 위성영상 서비스 시스템 개발 용역의 과업 범위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별도 장비를 사전에 구매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② 네트워크 스위치의 경우 개방형 위성영상 시스템에 접속하는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로 용역 내용에 포함된 성능요구사항인 지도기반 응답속도, 데이터베이스 응답속도, 서비스 응답속도 및 동시접속 허용범위 등에 대하여 업체 선정 후 협의를 거쳐 시스템 사양을 구체화하고 구매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25)]

따라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향후 시스템 개발 관련 장비를 구매할 경우 시스템 설계 및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후 필요한 장비의 사양과 수량을 명확히 특정하여 구매할 필요가 있음.

25) 개방형 위성영상 서비스 시스템 개발 용역 계약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내 관련 내용 발췌
Ⅳ. 제안요청내용 - 2. 과업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번호	요구사항 명칭
기능요구사항 (Functional Requirement)	FR-016	AI 기술 기반 자연어 검색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R-001	지도기반 응답속도
	PR-002	데이터베이스 응답속도
	PR-003	서비스 응답속도
	PR-004	동시접속 허용범위

9. (혁신도전형)상시 재난감시용 성층권 드론기술개발(R&D) 사업(종료): 사업성과 미달 원인 분석 및 후속사업 목표달성 방안 검토 필요

가. 개 요

‘(혁신도전형)상시 재난감시용 성층권 드론기술개발(R&D)’ 사업은 성층권에서 1개월 이상 비행하며 실시간 재난 영상과 기상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태양광 드론 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68억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 되었음.[26)]

[2025년도 (혁신도전형)상시 재난감시용 성층권 드론기술개발(R&D)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혁신도전형) 상시 재난감시용 성층권 드론기술개발 (R&D)	6,800	6,800	-	-	6,800	6,800	-	-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되며 우주항공청은 연구개발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연구개발출연금을 교부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재난감시용 드론 개발을 수행하였음.

26) 일반회계-(혁신도전형)상시 재난감시용 성층권 드론기술개발(R&D)(1733-301)(항공혁신부문)

나. 검토의견

우주항공청은 상시 재난감시용 성층권 드론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성층권에서 30일 이상 비행할 수 있는 태양광 드론 개발을 목표로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1.61일(38시간 36분) 비행에만 성공하여 사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원인을 면밀히 점검하여 후속사업에서는 목표한 성과를 달성할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우주항공청은 상시재난감시용 성층권 드론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성층권에서 30일 이상 비행할 수 있는 태양광 드론 개발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사업 종료 시점에서 실제 비행시험 시간은 1.61일(38시간 36분)에 그쳐 목표 대비 미흡한 성과를 기록함.

동 사업에서 목표로 한 30일 비행은 단순한 체공시간 달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30일간 연속되는 비행시험을 통해 임무장비 탑재 운용 가능 여부, 태양광 기반 전기추진 장치의 작동 신뢰성, 프로펠러 등 각종 부품의 내구성, 비행제어 기술 개발 및 성층권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의 결빙 등 다양한 문제 대응 능력 등을 개발하고 검증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각 연구개발기관이 환경시험을 거쳐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비행시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 사업의 성과가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그럼에도 각 연구개발기관은 연차보고서를 통하여 사업 목표 대부분을 100% 달성한 것으로 보고하였고, 30일 이상 장기체공 관련 목표의 경우 비행시험 결과 목표한 30일의 5.4% 수준인 1.61일만 달성하였음에도, 달성도를 80% 또는 90%로 보고하였으므로, 동 과제의 목표 달성도의 적설성 여부에 대하여 우주항공청에서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연차보고서 상 각 세부과제별 최종목표 달성 현황]

▣ (사업단 운영) 성층권드론기술개발사업단 운영		
1) 성층권드론기술개발사업단 운영		달성도
	1-1. 고도 12~18km 이상에서 30일 이상 장기체공	**80%**
	1-2. 대용량 스토리지 모듈 개발	100%
	1-3. 표준 ADS(Avionics Digital Data Bus) 인터페이스 모듈 탑재	100%
	1-4. (정량) 운용거리 50km(가시선) 이상	100%
▣ (1세부) 성층권 드론 체계종합 및 설계 기술개발		
1) 성층권 드론 체계종합 및 설계 기술개발		달성도
	1-1. (정량) 30일 장기체공 가능한 최대 이륙중량 150kg 이하 성층권 태양광 드론 개발	100%
	1-2. (정량) 초경량 비행체 개발: ≤2.5kg/㎡(익면하중, 시제기 제작 및 시험평가, 안	100%

		전계수 1.25, 환경조건 -70° ~40° C)	
		1-3. (정량) 고고도용 프로펠러 개발: ≥75%(고도 12km 야간 순항조건, 풍동시험)	100%
		1-4. (정성) 성층권 태양광 드론용 지상통제장비 개발	100%
▣ (2세부) 성층권 드론 비행체 기술개발			
	1) 성층권 드론 비행체 기술개발		
		1-1. (정성) 탑재 시스템 720시간 검증 (비행시험)	**90%**
		1-2. (정성) 전력 계통 통합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	100%
		1-3. (정량) 비행체 탑재용 전장 제작 중량 7.5 kg 이하 (중량 실측)	100%
		1-4. (정량) 가신선 통신링크 반경 : 50 km이상 (실비행시험을 통한 성능 검증)	100%
		1-5. (정량) 위성링크 데이터 전송율 : 38.4 Kbps 이상 (비행시험을 통한 데이터 전송율 검증)	100%
▣ (3세부) 성층권 드론 추진장치 개발 및 성능시험(일부 목표 수정)			
	1) 성층권 드론 추진장치 개발 및 성능시험	수정된 연구개발 목표 및 달성도	
	1-1. 작동 조건 : 외기온도 -0 ~ 40℃ 환경에서 30일 이상 연속 작동	1-1. 작동 조건 : 외기온도 -0 ~ 40℃ 환경에서 30일 이상 연속 작동	100%
	1-2. 비출력(무게, 용량, 토크) - 모터 중량 : 2.3kg / 인버터 중량 300g - 모터/인버터 용량 : 각 3kW 이상 - 모터 토크 : 10Nm 이상 - 모터 MPPT 용량 : 3kW 이상/ 인버터 MPPT 용량 : 3kW 이상 - MPPT 중량 : 900g 이하	1-2. 비출력(무게, 용량, 토크) - 모터+인버터 합산 중량 : 2.5kg - 모터+인버터 용량 : 3kW 이상 - 모터 토크 : 10Nm 이상 - MPPT 용량 : 1kW 이상 - MPPT 중량 : 250g 이하	100%
	1-3. 효율 - 모터 복합효율 : 94% 이상 / 인버터 복합효율 : 92% 이상 - MPPT 효율 : 97% 이상	1-3. 효율 - 모터+인버터 복합효율 : 92% 이상 - MPPT 효율 : 97% 이상	100%
	1-4. 위치정렬오차 : 3° 이내	좌동	100%
	1-5. MPPT 전압 - 입력 : 60V이상 - 출력 : 60V이상	1-5. MPPT 전압 - 입력 : 70V이상 - 출력 : 60V이상	100%
▣ (4세부) 성층권 드론 핵심기술 연구			
	1) 성층권 드론 핵심기술 연구		달성도
	1-1. 고효율 프로펠러설계 및 운용 성능해석		100%
	1-2. 공탄성 및 서보공탄성 해석 기술 개발		100%
	1-3. 신속 공력해석 프로그램 개발 및 전기체 공력성능 개선		100%
	1-4. 프로펠러 성능 계수		100%
	1-5. 프로펠러를 포함한 전기체 결빙 해석프로그램 개발		100%
	1-6. 결빙에 의한 임무수행이 불가한 기상조건을 판별하는 고정밀 모델 개발		100%
	1-7. 고도에 따라 변화하는 대기환경에 강건한 비행제어기술연구		100%
	1-8. 전기동력 시스템경량화 및 신뢰성 향상		100%

자료: 우주항공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우주항공청은 2026년도 신규사업으로 임무수요기반 성층권 드론 실증 플랫폼 개발(R&D) 사업을 추진 중으로, 이를 통해 성층권에서 90일간 비행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므로, 이번 사업의 실패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후속사업에서는 단계적 기술검증을 통해 목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10. 한국형발사체고도화(R&D) 사업: 기술이전 계약체결의 적정성 점검 및 제도개선 필요

가. 개 요

‘한국형발사체고도화(R&D)’ 사업은 한국형 발사체 기술 지속 고도화(신뢰성 향상)를 위한 반복 발사로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고, 한국형 발사체 개발 기술의 민간 이전을 통한 체계종합기업의 발굴·육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478억원 중 1,477억 3,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6,600만원이 불용되었음.[27)]

[2025년도 한국형발사체고도화(R&D)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한국형발사체 고도화(R&D)	147,800	147,800	-	-	147,800	147,734	-	66	125,300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선행사업까지 고려하면 총사업 규모가 2조 7,541억원(선행사업:1조 9,572억원, 동 사업: 7,969억원)에 사업기간은 19년(2010년 3월~2028년 12월)에 달하는 대규모 R&D 사업임.

[한국형발사체 관련 사업 개요]

□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 개요**
- (사업목표)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600 ~ 800km)에 투입할 수 있는 발사체 개발 및 우주발사체 기술 확보
- (기간/예산) 2010.3월 ~ 2023.6월 / 총사업비 1조 9,572 억원
- (수행주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 개요**
- (사업목표) 한국형발사체(누리호)의 반복 발사로 신뢰성 제고 및 민간 기술이전을 통한 국내 발사체 산업생태계 육성 및 발전
- (기간/예산) 2022.5월 ~ 2028.12월 / 총사업비 7,968.8억원
- (수행주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체계종합기업(한화에어로스페이스)

27) 일반회계-한국형발사체고도화(R&D)(1433-301)(우주수송부문)

나. 검토의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한국형발사체 기술이전 협상 과정에서 내부 산정기준이 외부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기술가치평가의 객관성 확보가 미흡하여 기술료가 과소 산정되었을 우려가 있으므로, 우주항공청은 기술료 협상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25년 7월에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을 통하여 확보한 발사체 기술의 일부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기술이전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료 협상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었음.

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내규는 기술이전 기술료 산정 시 대상기술의 개발에 직접 투입된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투입된 연구개발비가 참고 자료로는 활용될 수 있으나 R&D 특성상 기술의 가치가 투입된 연구개발비의 가치가 정비례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투입비용에 근거하여 기술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음.

특히 이러한 내규와 그간 이루어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기술이전 실적을 비교해 보면, 그 기술료가 직접비의 특정 비율 수준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이러한 점을 기술이전 상대방이 인지하고 있다면 협상 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예상하는 특정 수준의 기술료를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함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협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②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그간 기술이전 시 기술가치평가를 단일 기관으로부터 받아 왔으나, 이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기술이전 건과 같이 그 규모가 큰 경우에는 복수의 기술가치평가 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 기술가치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따라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향후 특정 규모 이상의 기술이전계약 체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복수의 기관으로부터 기술가치평가를 받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③ 지원된 국비 규모(약 2조원)를 고려하면 기술이전 규모(240억원)가 과소해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최종 기술이전 규모가 연구개발직접비의 2% 수준으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이전 규모인 직접비 대비 1~2% 수준과 유사하여 적정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그러나 발사체 기술은 그 전략적 가치·희소성 및 향후 성장가능성 등에 비추어 통상의 연구개발사업과는 차별적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국가연구개발성과와 동일한 기

준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향후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의 발사체 기술이전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주항공청은 금번 기술료 협상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향후 기술이전 시 국가기관의 협상력 제고 및 적정 국고수익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1. 단일통로항공기(Part25급)의 순수주익(Clean Wing)모듈 개발(R&D) 사업(종료): 연구개발환경 변화에 따른 조기중단 검토 강화 필요

가. 개 요

‘단일통로항공기(Part25급)의 순수주익(Clean Wing)모듈 개발(R&D)’ 사업은 엔진 후방장착 터보프롭기 주날개 모듈 최적화 개발을 통한 국제공동개발사업 참여 및 핵심부품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4억 2,8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28)]

[2025년도 단일통로항공기(Part25급)의 순수주익(Clean Wing)모듈 개발(R&D)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단일통로항공기 (Part25급)의 순수주익(Clean Wing)모듈 개발(R&D)	428	428	-	-	428	428	-	-	-

주) 2026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2023년 산업통상부 소관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되어 중앙행정기관이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연구개발출연금을 교부하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연구개발기관인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연구개발비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으며, 이후 2024년 5월 우주항공청이 개청함에 따라 우주항공청으로 사업이 이관되었음,

28) 일반회계-단일통로항공기(Part25급)의 순수주익(Clean Wing)모듈 개발(R&D)(1733-309)(항공혁신부문)

나. 검토의견

우주항공청은(산업통상부는) 사업추진 기반이 된 계약 해지로 연구개발목표 달성 필요성이 상당 부분 감소하였음에도, 사업추진 필요성을 즉시 재검토하지 아니하고 목표를 축소하여 수행을 지속하다가 특별평가를 통해 조기중단하였으므로, 투입된 연구개발비가 매몰되지 않도록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방안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단일통로항공기(Part25급)의 순수주익(Clean Wing)모듈 개발 사업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Embraer사와 차세대 중형 민항기 주익 개발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반으로 2023년부터 추진되었으나, 2023년 9월 사업추진의 기반이 된 공급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당초 연구개발목표의 달성 필요성이 상당 부분 감소하였음.

2024년도 예산안은 해당 계약 해지 이전에 편성되었으나 2024년도 정부 R&D 예산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당초 계획대비 삭감되어 교부되었고, 연구개발기관은 2024년부터 연구개발목표를 축소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계약 해지 상황을 반영하여 당초 계획대비 5.8% 수준으로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음.

[단일통로항공기(Part25급)의 순수주익(Clean Wing)모듈 개발 사업 국비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	2024	2025	총액
국비지원(최초)	3,213	8,800	7,420	19,433
국비지원(최종)	3,213	4,282	428	7,923

자료: 우주항공청

이후 연구개발기관이 2025년 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5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연구개발환경 변화를 이유로 과제 중단을 위한 특별평가를 요청하여 결국 사업이 조기중단되었음.

[단일통로항공기(Part25급)의 순수주익(Clean Wing)모듈 개발(R&D) 사업 추진 일정]

구분	내용
2022.12.19.	· 한국항공우주산업과 Embraer사간 공급계약 체결
2023.1 ~	· 단일통로항공기(Part25급)의 순수주익(Clean Wing)모듈 개발(R&D) 사업 수행
2023.7.	·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2023.9.26.	· 공급계약 해지
2024.2.	· 연구개발목표 축소
2025.5.7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중단을 위한 특별평가 신청
2025.6.9	· 특별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 중단

자료: 우주항공청

계약 해지로 인한 환경변화는 2023년 9월에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정부는 해당 시점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기중단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음에도, 연구개발목표만 축소한 채 약 2년간 수행을 지속하다가 연구개발기관의 요청에 따라 중단에 이르렀다는 점은 사업 관리상 적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29]

다만 동 사업의 연구개발과제는 최종평가 결과 “보통” 판정을 받았으며, 평가결과에 따르면 축소된 연구개발목표는 달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확보된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방안을 면밀히 수립하여 투입된 연구개발비가 매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2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요청을 인정한 경우
②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또는 연구책임자 등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　타】

12.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국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우주항공청에 대해 시정요구 12건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주의 6건·제도개선 6건이었음.

[2025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	6	3	-	9
예비비	-	-	-	-	3	-	3
합계	-	-	-	6	6	-	12

우주항공청는 시정요구사항 12건에 대해 12건을 조치완료(조치율 100%)한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5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9	9	100	-
예비비	3	3	100	-
합계	12	12	100	-